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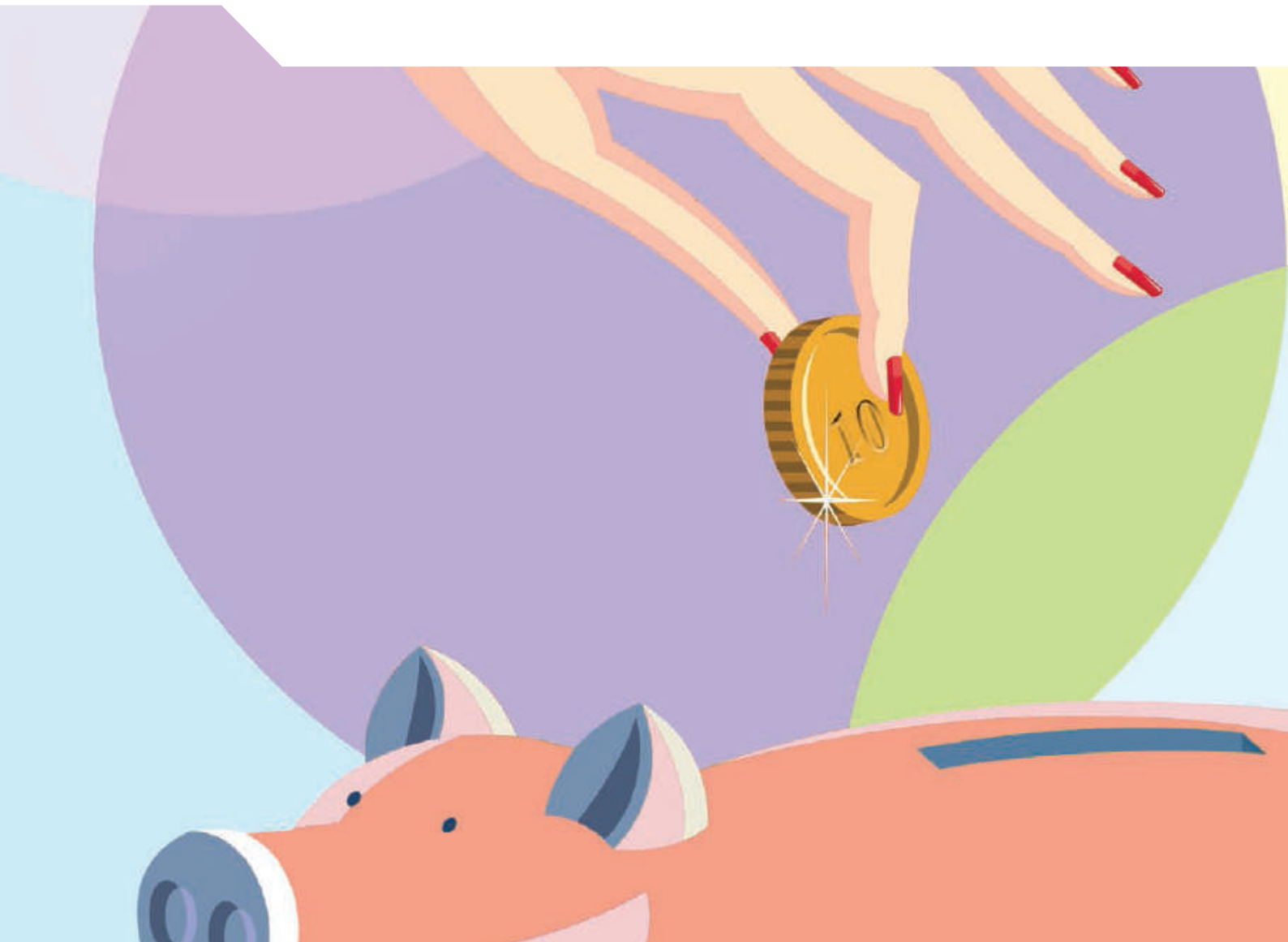


# 한 눈에 보는 연금 2015

OECD 회원국과 G20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제도

Pensions at a Glance 2015

OECD AND G20 INDICATORS





# 한 눈에 보는 연금 2015

OECD 회원국과 G20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제도

## Pensions at a Glance 2015

OECD AND G20 INDICATORS

번역의 질과 원본과의 일치 여부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의 책임사항이며,  
원본과 한국어판 사이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원본이 우선합니다.



OECD Korea Policy Centre

본 보고서는 OECD 사무총장의 책임 하에 출판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의견과 논의들이 OECD 회원국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본 문서와 여기에 포함된 지도는 영토, 도시 또는 지역의 이름, 국경 및 경계, 영토의 주권이나 그 지위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통계자료는 해당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했습니다. OECD가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른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역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진: 표지 © Stephanie Carter Illustration/Getty Images

---

본 출판물의 원본은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영문 및 불문으로 발간되었습니다.

*Pensions at a Glance 2015: OECD and G20 indicators/ Panorama des pensions 2015 : Les indicateurs de l'OCDE et du G20*

본 영문 및 불문 원본의 저작권은 2015년 영문 및 불문 원본을 출판한 OECD에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한국어판은 OECD와의 합의 과정을 거쳐 발간한 것으로 그 저작권은 OECD 대한민국의 정책센터에 있습니다.

---

OECD 출판물에 대한 수정사항은 [www.oecd.org/about/publishing/corrigenda.htm](http://www.oecd.org/about/publishing/corrigenda.htm) 참조

## 한국어판 서문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www.oecdkorea.org](http://www.oecdkorea.org))는 OECD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설립된 국제협력기구로서 OECD의 정책경험과 주요 관심사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회원국과 공유하고 이를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에서 보건, 사회복지, 연금 등 사회정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정책 본부는 OECD에서 발간하는 주요 자료들을 선별하여 한국어판으로 번역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본 “Pensions at a Glance 2015: OECD and G20 Indicators(한 눈에 보는 연금 2015: OECD 회원국과 G20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OECD가 2005년 이후 여섯 번째로 발간한 보고서로 OECD 국가의 연금정책과 그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1층 연금제도의 역할과 경력단절이 노후 연금수급액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어판 발간을 위하여 사회정책본부 우경미 부분부장과 김동준 연구원이 수고해 주었고,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실장과 유호선 연구위원이 감수를 해주셨습니다.

본 보고서가 제공하는 다양한 분석과 지표가 한국의 연금제도관련 정책과 연구를 위하여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6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장 나성웅

## 서문

이번에 발간되는 ‘한 눈에 보는 연금’ 제6판은 OECD 국가의 연금정책과 그 성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료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G20 회원국과 기타 주요 국가들의 지표도 함께 제공한다. 4개의 특별 장(제1장부터 제4장)에서는 최근의 연금개혁 동향, 1층 연금제도의 역할, 짧고 단절된 직업경력이 연금 수급액에 미치는 영향과 모형 파라미터 변화에 대한 미래 소득대체율의 민감도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OECD 고용노동사회정책국(Directorate for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의 사회정책과(Social Policy Division) 내 연금팀이 작성했다. 연금팀은 Hervé Boulhol, Anna Cristina D’Addio, Kristoffer Lundberg, Andrew Reilly로 구성되어 있다. 각국 공무원, 특히 OECD 사회정책 작업반(Working Party on Social Policy) 대표들과 OECD 연금전문가그룹 멤버들이 본 보고서에 적극적인 자문과 귀중한 조언을 제공하였다. OECD 국가의 경우 OECD 연금 모형의 결과는 각국의 당국이 확인하고 검증했다.

제1장 “최근의 연금개혁 동향”은 Kristoffer Lundberg가 작성했다. 제2장 “1층 연금제도의 역할”과 제4장 “모형 파라미터에 대한 소득대체율 민감도”는 모두 Andrew Reilly가 작성했다. 제3장 “불완전 직업경력이 연금 수급액에 미치는 영향”은 Anna Cristina D’Addio가 작성했다.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내용에 대한 개선과 수정은 Hervé Boulhol가 담당했다. 제2장과 제3장은 Ken Kincaid가 편집했다. 출간을 위한 원고는 Marlène Mohier가 준비했다.

사적연금과 관련된 지표들은 주로 OECD 금융기업국(Directorate for Financial and Enterprise Affairs) 내 사적연금팀의 Pablo Antolín, Stéphanie Payet, Romain Despalins가 제공했다.

본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각국의 공무원들과 OECD 동료들, 특히 Mark Pearson, Monika Queisser, Stefano Scarpetta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다. 본 보고서는 EU 집행위원회와 OECD가 함께 연구자금을 지원한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발간되었다.

## 목차

논평 - 향후 연금정책의 방향: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더 초점을 맞춰야.....	11
요약.....	15
제1장 최근의 연금개혁 동향.....	17
1.1. 서론.....	18
1.2. 개혁의 개요.....	21
1.3.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개선.....	23
1.4. 노후소득 적정성의 강화.....	29
1.5. 향후 과제.....	34
주석.....	36
참고문헌.....	36
부록 1.A.1 2013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연금개혁.....	37
제2장 1층 연금제도의 역할.....	49
2.1. 서론.....	50
2.2. 기초 및 최저 노령연금 수급조건.....	51
2.3. 급여 수준.....	54
2.4. 기여기반 기초연금과 최저연금의 수급자격이 안 될 경우.....	58
2.5. 급여의 향후 추이.....	64
2.6. 결론과 정책적 함의.....	72
참고문헌.....	74
부록 2.A1 여러 가지 연동 접근법의 효과에 관한 보충 수치들.....	75
제3장 불완전 직업경력이 연금 수급액에 미치는 영향.....	79
3.1. 서론.....	80
3.2. 기여공백의 이해를 위한 토대.....	82
3.3. 분절적 경력이 연금에 미치는 영향: 이론과 실제.....	93
3.4. 경력단절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연금제도적 장치들.....	94

3.5. 기여공백을 메우는 연금 크레딧 .....	95
3.6. 짧아지고 단절된 경력 시의 연금 수급액 시뮬레이션 .....	98
3.7. 정책적 평가: 경력단절을 보완하기 위한 위한 연금 크레딧과 기타 조치들 .....	106
3.8. 정책적 함의와 향후 과제 .....	108
주석 .....	110
참고문헌 .....	111
부록 3.A.1 육아 및 실업 관련 연금 크레딧의 주요 규정 .....	116
<b>제4장 모형 파라미터에 대한 소득대체율 민감도</b> .....	123
4.1. 서론 .....	124
4.2. 한 눈에 보는 연금 2013판 이후에 나타난 파라미터 변화의 영향 .....	125
4.3. 물가상승률 변화가 대체율에 미치는 영향 .....	126
4.4. 실질임금 변화가 대체율에 미치는 영향 .....	127
4.5. 수익률 변화가 미래 대체율에 미치는 영향 .....	128
4.6. 할인율 변화가 대체율에 미치는 영향 .....	130
4.7. 사망률이 미치는 영향 .....	131
4.8. 국가별 경제 가정 .....	131
참고문헌 .....	134
<b>제5장 연금제도의 설계</b> .....	135
공적연금제도의 구조 .....	136
기초연금, 선별적 연금, 최저연금 .....	139
소득비례연금 .....	142
현재 연금수급연령 .....	145
미래 연금수급연령 .....	148
<b>제6장 연금 수급액</b> .....	151
산정방법 및 가정 .....	152
총 연금대체율 .....	155
총 연금대체율: 강제 및 임의가입제도 .....	158
연금 및 연금 수급자에 대한 과세 .....	160
순 연금대체율 .....	163



순 연금대체율: 강제 및 임의가입제도 .....	166
총 연금자산 .....	168
순 연금자산 .....	171
<b>제7장 인구 및 경제적 측면</b> .....	175
출산율 .....	176
기대수명 .....	178
노인부양비 .....	180
고령 근로자의 고용률 .....	182
노동시장 실질은퇴연령 .....	184
은퇴 후 기대년수 .....	186
<b>제8장 노후소득과 노인빈곤</b> .....	189
고령자의 소득 .....	190
노후 소득빈곤 .....	192
평균 근로자 소득 .....	195
<b>제9장 연금제도의 재정</b> .....	197
강제적 연금기여금 .....	198
공적연금 지출 .....	200
연금 급여지출: 공적 및 사적제도 .....	202
공적연금 지출의 장기 전망 .....	205
<b>제10장 사적연금과 공적연금 적립금</b> .....	207
사적연금의 가입률 .....	208
사적연금제도의 구조 .....	211
연기금과 공적연금적립기금의 자산 .....	214
연기금과 공적연금적립기금의 자산 배분 .....	217
연기금과 공적연금적립기금의 투자 실적 .....	219
연기금 운영비용과 수수료 .....	221
확정기여형(DB) 기금 적립률 .....	223

제II장 한 눈에 보는 연금 2015: 국가별 현황	225
국가별 현황 가이드	226
아르헨티나	228
호주	230
오스트리아	235
벨기에	239
브라질	245
캐나다	248
칠레	252
중국	256
체코	259
덴마크	264
에스토니아	271
핀란드	275
프랑스	280
독일	285
그리스	289
헝가리	293
아이슬란드	297
인도	301
인도네시아	304
아일랜드	307
이스라엘	310
이탈리아	314
일본	318
한국	322
룩셈부르크	325
멕시코	329
네덜란드	333

뉴질랜드 .....	337
노르웨이 .....	340
폴란드 .....	344
포르투갈 .....	349
러시아 .....	356
사우디아라비아 .....	360
슬로바키아 .....	362
슬로베니아 .....	366
남아프리카공화국 .....	370
스페인 .....	372
스웨덴 .....	376
스위스 .....	382
터키 .....	388
영국 .....	392
미국 .....	396



## 논평

### 향후 연금정책의 방향: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 눈에 보는 연금 제6판은 마침 연금제도 및 노후소득에 관한 OECD의 주요 간행물 시리즈 창간 10주년이 되는 해에 발간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OECD 회원국과 G20 국가의 연금제도 및 정책에 관한 면밀한 연구,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에 관한 평가와 예측, 개혁에 대한 권고를 통해서 재정적으로 더 지속가능한 부과식(pay-as-you-go) 연금제도가 생겨났고 또한 안정적이고 적절한 노후 소득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다행히도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OECD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연금 영역에서 치열한 개혁이 시행되어 각국 정부는 자국의 연금제도의 핵심 파라미터를 바꾸었고 일부 정부는 연금제도 설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대개 공적연금의 역할은 축소하고 적립식 확정기여형연금에 더 큰 역할을 부여했다.

공식적인 연금수급연령의 연장에서 가장 뚜렷한 성과가 나타났다. 많은 국가가 이 핵심 파라미터를 65세 이후로 연장시켰다. 한 눈에 보는 연금 이전 판들에서 강조한 것처럼 67세가 실제로 핵심 파라미터가 되었고 몇몇 국가는 70세에 근접한 연령으로까지 상향 조정 중이다. 연금수급연령 연장은 잘 드러나는 정책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정치적으로 관철시키기가 쉽지 않는 문제였다; 기대수명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노년기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액은 동일하면서 근무기간은 더 길어질 것이라는 점을 대부분 시민들은 탐탁히 여기지 않는다.

물론 법적 규범을 설정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실제로 고령까지 근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몇몇 OECD 국가에서 근로자들은 여전히 공식적인 연금수급연령이 되기 훨씬 전에 노동시장에서 은퇴한다. 그러나 공식적인 연금수급연령과 실제 연금수급연령 간 차이는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국가에서 55-64세 근로자의 고용률이 크게 증가했다. 독일이 45%에서 66%로, 이탈리아가 31%에서 46%로 늘어나는 등 OECD 평균 52%에서 57%로 증가했다.

지난 10년간의 연금개혁은 효과가 있었다. 연금수급연령의 상향 조정, 조기수급제도의 축소, 급여산정 방식의 변경, 연금 지급액의 하향 조정을 통해서 미래 연금액을 줄이면서, 또한 근로 기간과 기여 기간을 늘림으로써 부과식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예를 들어, EU 고령화작업반(Ageing Working Group)의 최신 전망치에 따르면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 비중이 몇 년전만 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지만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 안정화될 것이며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지출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것이 잘 되어있으며 한 눈에 보는 연금의 지난 판들에서 설명했던 연금의 난제들을 국가들이 해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불행히도 대답은 “아니다”이다. 부과식 연금제도의 재정적 어려움의 해결은 문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의 다른 부분은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연금이 미래에 노인들의 적절한 삶의 조건을 제공하기에 충분할 것인지와 관련이 있다.

오늘날 대다수의 OECD 연금 수급자는 평균소득자만큼 괜찮은 수준의 삶을 누린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닌데 현재 퇴직자의 다수, 적어도 남성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제활동 기간 동안 안정된 직장에서 근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출발선 상에 선 이들이 “평생 일자리(job for life)”와 “평생 경력(career for life)”을 찾기는 힘들다. 특히 많은 국가에서 청년층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높다. 장년층 근로자들이 이전의 경기 침체기 때보다 이번 경제위기의 피해를 덜 받았던 반면, 청년층의 장기 실업률은 여전히 지나치게 높다. 또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즉, 근로기간을 연장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한다해도 이것이 모든 이의 옵션이 될 수는 없다; 연금수급연령이 아무리 높게 설정되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직무 스트레스와 쇠약해진 건강상태 때문에 일찍 은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일하지 않는 기간은 연금제도로부터 배제된 기간을 의미한다. 많은 국가에서 실업, 출산휴가, 병가 기간 동안에 연금 크레딧을 제공한다 해도, 본 보고서 제3장에서 시사하듯이, 지난 수십 년간 노동시장의 추이를 감안하면 많은 근로자의 미래 연금 수급액은 낮아질 것이다. 미래 연금 수급자들 중 가장 불행한 사람은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못한 청년들인데 이들의 전망은 더 암울하다.

미래 퇴직자의 적절한 연금을 위한 두 번째 주요 과제는 은퇴 저축의 투자와 관련이 있다. 금융위기가 처음 닥쳤을 때 공공의 관심사는 연기금에 미치는 영향과 일부 근로자들이 감수해야 할 손실에 맞춰져 있었다. 당시 우리가 보여주었듯이 대부분 국가에서 사적 및 공적 연금제도의 상호작용을 통해 취약계층의 퇴직자들이 노인빈곤으로 떨어지는 것은 대체로 막았지만, 은퇴가 가까운 많은 중산층 근로자들은 은퇴 후 삶의 계획을 크게 변경해야만 했다.

금융위기와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장기적 난제들이 나타났다. 현재의 저성장, 저금리 환경하에서 개인 저축가들과 종신보험 및 연금계약을 제공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금융서비스 제공자들 모두 적절한 연금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수익을 얻는 것이 어려워졌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는 사망률 표가 예상되는 기대수명 연장을 완벽하게 반영하지는 못한다. 이로 인해 연기금과 생명보험사들이 더 높은 수익을 찾기 시작하고 결국은 지급여력(solvency)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투자전략을 추구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금융부문 리스크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퇴직소득보장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

연금저축은 이상적으로는 수익이 다시 크게 증가할 수 있을 정도의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지만 확실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추세는 고용주가 위험을 부담하는 확정급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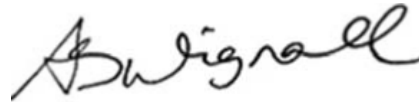
제도에서 개별 근로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확정기여형제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퇴직 연금제도에 자리잡고 있는 이러한 추세는 근로자의 기여액과 연금 급여 간 연관성이 매우 커진 공적 연금제도와 기대수명의 증가를 더 많이 감안하는 급여산식에서도 관찰된다.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했으므로, 정책 입안자들은 이제 연금제도가 모든 근로자에게 적절한 연금소득을 지급하도록 보장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 논의하듯이, 모든 국가에 노후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있지만 일부 국가의 안전망은 여전히 대부분의 노인이 노령빈곤으로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하지는 않다. 적정성은 빈곤 방지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근로기간과 삶의 과정에서 미래에 편안한 노후를 즐길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노동시장, 사회, 연금, 금융부문 정책의 긴밀하고 일관성있는 조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많은 국가에서 개인의 경력과 기여액의 추이에 근거해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연금 예상액 조회방법(pension calculators)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도구들이 OECD 연금 예상액 조회방법을 보완하고 개인과 정책 입안자 모두의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도구들이 제때 사용되고 행동을 촉진함으로써 사람들이 대응하기에 너무 늦어서 끔찍한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방지하자. 우리 OECD는 앞으로 10년간 전 세계 국가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자국의 연금체계를 분석하고 연금개혁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Stefano Scarpetta

OECD 고용노동사회정책국장



Adrian Blundell-Wignall

OECD 금융기업국장





## 요약

‘한 눈에 보는 연금’ 이번 판은 2013년 9월에서 2015년 9월 사이에 OECD 국가에서 시행되었거나 입법화된 연금개혁 조치들을 검토하고 분석한다. 본 보고서는 노인 보호의 첫 번째 단계인 1층 연금에 대해 국가별로 상세히 검토하고 짧은 경력의 연금 수급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본 보고서는 또한 파라미터 변화에 대한 미래 소득대체률의 민감도를 분석한다. 지난 보고서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OECD 회원국과 G20 국가들의 포괄적인 연금정책 지표들과 연금제도의 현황이 제공된다.

### 연금제도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해 계속 압박을 받고 있다

대부분 OECD 국가에서 경기회복이 부진한 상태이며, 그 결과 연금기여금은 계속 낮은 반면, 재정적 압박 때문에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이 더 시급해졌다. 금융시장의 장기적인 불확실성, 저수익과 기록적인 저금리는 확정기여형제도와 연금체계가 적정한 연금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문제들은 많은 국가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에 의해 더욱 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의 지속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55-64세 인구의 평균 고용률이 2014년까지의 10년간 7%p 상승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 평균 노동시장 유효 은퇴연령은 정상 은퇴연령보다 훨씬 낮다. 한국, 멕시코, 아이슬란드, 일본에서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가장 오랫동안 머문다; 남성은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가장 빨리 은퇴하는 반면, 여성은 슬로바키아, 폴란드,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빨리 은퇴한다.

###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

OECD 국가의 약 절반 정도가 지난 2년 동안 자국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수급자에게 덜 유리한 연동제도로 바꿈으로써 급여를 대체로 삭감했지만 절대적 측면의 삭감은 아니었다. 연금제도의 재정상태 역시 확정기여형제도의 증세와 기여율 상승을 통해 개선되었다. 재정 측면의 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약 1/3의 국가가 특정 인구집단의 연금소득 적정성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다.

최근 개혁의 주된 목적은 법정 수급연령을 높이고, 조기수급 규정을 강화하고, 근로기간 연장에 대한 유인책을 강화함으로써 은퇴를 지연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이 분배적 효과를 동반할 수 있겠지만, 고령에서의 근로 능력과 기대수명은 사회경제적 집단들 간에 다르다.

현행 법률에 의거하면 은퇴연령은 2014년 OECD 평균 64.0세에서 2060년에 65.5세로 늘어날 것이다. 2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남성은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그리스, 프랑스에서 여전히 65세 이전에 은퇴할 수 있을 것이다. 칠레, 이스라엘, 스위스에서만 여성이 남성보다 먼저 은퇴할 수 있을 것이다.

강제적 연금제도의 완전경력 평균임금 근로자에 대한 미래 순 대체율은 OECD 평균 63%이며 멕시코의 27%(인도네시아와 남아공에서 훨씬 더 낮음)에서 터키의 105%까지 다양하다. 연동으로

인해 총 대체율은 은퇴연령에서 80세 사이에 평균 6%p 하락한다.

## 1층 연금은 설계 및 빈곤퇴치 능력 측면에서 국가별 차이가 매우 크다

1층 연금은 모든 국가에서 존재하지만 구조와 가치는 매우 다르다. 평균적으로, 기여형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노인을 위한 안전망 지급액은 평균소득의 22%인데, 한국과 터키의 6%에서 뉴질랜드의 40%까지 다양하다. 개인의 기여 이력에 바탕을 둔 최저연금은 1/3의 국가에서 존재한다. 대부분의 국가가 20년 기여시 부분 급여를 지급하는데 최저연금 전액을 받으려면 평균 26년의 기여가 필요하다.

노인 빈곤율이 높고 안전망 급여액이 낮은 국가들에서 1인당 GDP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노인의 안전망 지급액을 늘릴 여지가 존재한다. 칠레, 한국, 멕시코, 터키가 이에 해당하며 스위스와 미국도 마찬가지다.

1층 연금의 대다수는 물가에 연동되고 그러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대체율이 하락하는데, 이는 물가가 임금보다 느리게 오르는 경향(특정 연령에서 집단별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의 연령별로도 그러함) 때문이다. 심각한 예산 압박에 처한 정부에게 있어서 물가연동은 매력적이지만, 물가연동이 엄격히 적용될 경우 노인 빈곤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

##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일부 국가에서는 짧은 경력이 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한다

짧은 경력은 연금 수급액을 크게 줄일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장치들을 통해 그 영향을 완화시킨다: 거주 또는 비교적 짧은 기여기간에 근거한 1층 연금, 최고 소득기간에 근거한 기준임금, 연금 크레딧. 이러한 장치들 덕분에 실직기간 1년(최대 10년까지)에 대해 노령연금이 OECD 평균 1%만 하락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장치가 없다면 연금은 2-2.5%가 하락할 것이다.

평균임금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5년 늦게 진입하면 소득 전망에 미치는 악영향 외에도 연금액이 평균 6% 줄어든다. 영향이 가장 큰 국가는 15%가 줄어드는 칠레와 멕시코이며, 다른 8개국에서도 1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프랑스와 룩셈부르크에서는 연금액이 각각 3%와 6%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페널티 없는 연금 수급권을 얻기 위해 각각 4년과 5년 늦게 은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평균임금을 받는 여성이 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5년간 경력을 단절한 경우 연금 소득이 평균적으로 약 4% 줄어든다. 독일,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멕시코, 포르투갈에서 가장 큰 하락이 기록된 반면, 약 1/3의 국가에서는 연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실업기간은 약간 더 크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비슷한 연금 수급액의 감소를 야기한다.

업무에 복귀하고도 경력중단으로 인해 너무 많은 손실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휴직기간과 급여수급액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정책 입안자들은 연금손실액을 낮게 유지시켜야 하지만, 동시에 장기휴직에 대한 높은 급여가 근로자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1장

# 최근의 연금개혁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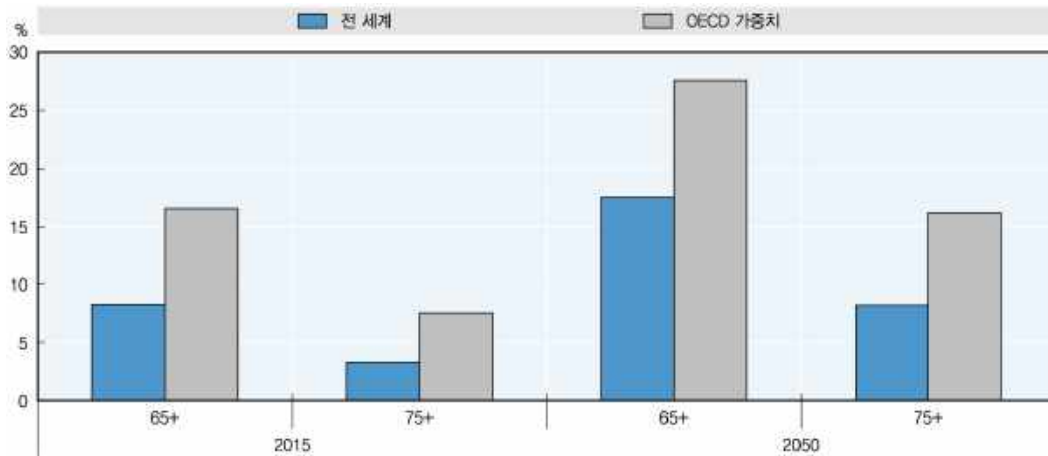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2013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OECD 34개국에서 시행되었던 연금 개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설명한다. 또한,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의 연금개혁을 살펴보았던 한 눈에 보는 연금 2013의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분석을 이어간다. 여기서 분석된 기간 동안에 경제성장은 부진했고 정부부채는 증가했다. 각국은 공적연금의 지출을 제한하는 동시에 급격히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적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대응해가고 있다.

이스라엘 통계자료는 해당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하였다. OECD가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른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역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1.1. 서론

각국의 연금제도는 적절한 연금소득을 제공하는 동시에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명연장과 낮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 고령화는 지속적인 도전과제를 제기한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8%에서 2050년에는 거의 18%로 증가하고 (그림 1.1.), OECD 국가에서는 16%에서 27%로 증가할 전망이다. 2050년에는 OECD 국가에서 75세를 넘는 인구의 비중이 현재 65세를 넘는 인구의 비중과 비슷해질 전망이다. 인구 고령화는 부과식 (PAYG) 연금제도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감소하고 있는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의 연금수준을 지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조차도 인구학적 변화에 의해 야기될 경제의 생산잠재력 저하의 영향에서 비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림 1.1. 65세 및 7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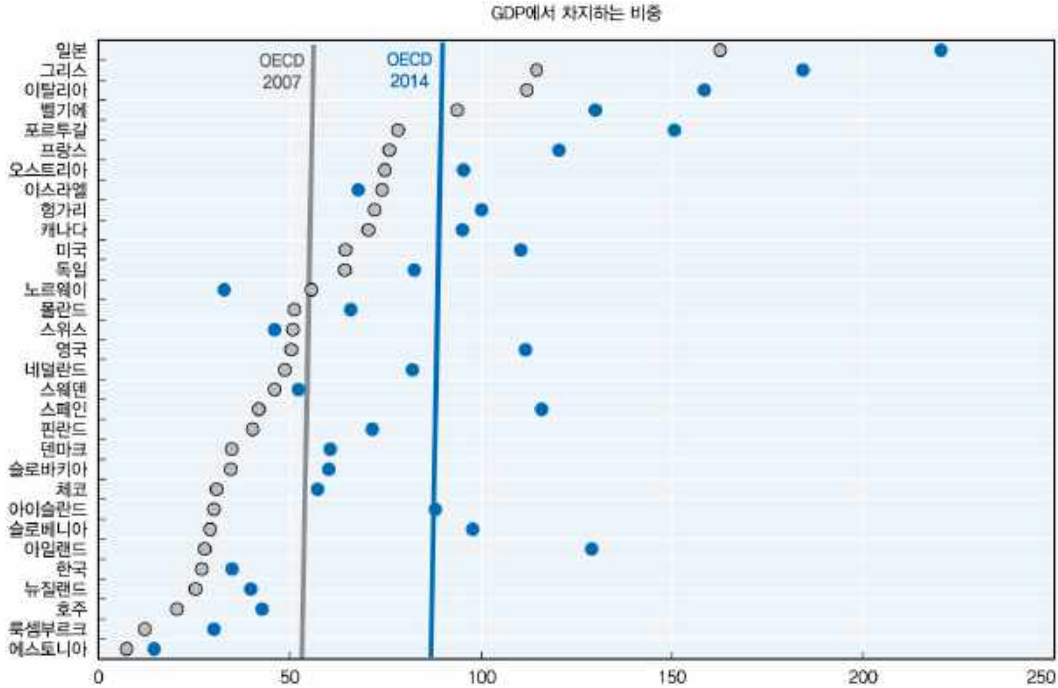
출처: United Nations(2013),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and OECD calculations.

<http://dx.doi.org/10.1787/888933300213>

많은 OECD 국가에서 경제위기와 이후의 부진한 경제성장, 대규모 정부부채는 재정압박을 더욱 가중시켰다. 많은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실업률, 기록적인 저금리, 인플레이가 계속되었다(OECD, 2015c). 그러므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가 되었다. 정부 총 금융부채는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2007년에 GDP의 55%에서 2014년에 88%로 급증했다(그림 1.2). 공적 연금지출이 2014년 OECD 국가 평균 총 공공지출의 18%를 차지함을 감안하면(제9장의 “공적연금지출” 참조), 연금개혁은 지출부문에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공재정을 건전화하고 부채율을 줄여야 하는 국가가 따르는 통상적인 전략이 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2013년 9월에서 2015년 9월 사이에 입법화된 연금 관련 조치들을 검토하고 분석한다. 많은 OECD 국가들이 미래의 연금지출을 제한하는 개혁을 최근 시행 중이다.

그림 1.2. 금융위기 전후 정부 총 금융부채, 2007년과 2014년(입수 가능한 최근 연도)



주: 총 부채 자료는 부채 구성요소의 정의 및 처리의 차이로 인해 국가별 비교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님.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룩셈부르크는 2013년, 스위스는 2012년 자료임.

출처: OECD (2015), OECD Economic Outlook 97 Database, <http://dx.doi.org/10.1787/eo-data-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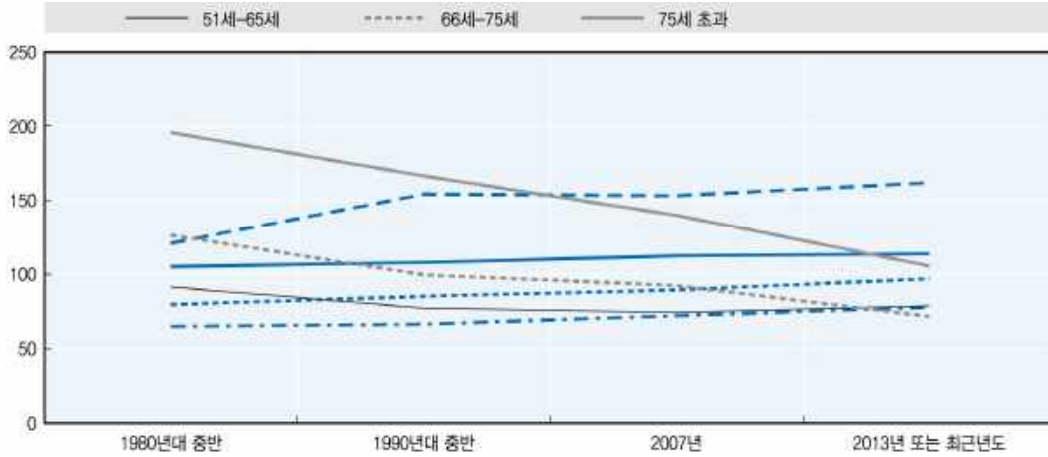
<http://dx.doi.org/10.1787/888933300228>

최신 전망치에 따르면, OECD 국가의 평균 연금지출은 현재 GDP의 9.0%에서 2050년에는 10.1%로 증가할 것이다.<sup>1</sup> 이는 연금지출이 2050년에 GDP의 거의 12%로 증가할 것이라는 2013년 예상보다는 낮은 수치이다(OECD, 2013). 이러한 전망치의 변화는 주로 EU 국가의 전망치 변경 때문인데, EU 고령화작업반(Ageing Working Group)은 연금에 대한 공적지출의 GDP 대비 비중이 대체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제9장의 “공적연금지출의 장기 전망” 참조). 평균지출의 증가는 한국과 터키가 주도하는데, 양국의 연금제도가 인구 고령화 상황에서 성숙되고 있기 때문이다.<sup>2</sup>

미래 연금부문 지출의 억제를 목표로 하는 개혁의 성공은 이전에 합의된 조치들의 효과적 이행과 추가적인 연금개혁을 위한 모멘텀을 유지하는데 달려있다. 개인에게 근로를 더 많이 더 오래 하라고 권장하는 조치들은 경제의 생산능력을 강화하고 그럼으로써 연금제도가 적정 노후소득 약속을 지킬 능력을 개선시킬 것이다. 그러나 근무기간을 늘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급여액이 생활수준의 급격한 하락과 노후 빈곤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노인의 상대적 소득빈곤율은 1980년 중반 이래 하락했으며, 그러므로 사회 내 다른 집단보다 소득이 높음을 시사한다(적어도 소득분포 최하층에서 해당됨) (그림 1.3). 1980년대 중반에는 75세 이상 인구가 평균적으로 다른 인구집단보다 빈곤할 확률이 월등히 높았지만, 현재는 빈곤위험이 청년층으로 이동했고, 상대적 노인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크게 하락해서 전체 기간에 대한 자료가 입수 가능한 18개국에서 평균적으로 66-75세 인구집단의 빈곤위험이 현재 가장 낮다. 반면에, 청년층은 현재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구집단이다(그림 1.3).

그림 1.3. OECD 국가들에서 빈곤이 노년층에서 청년층으로 이동했다  
 매년 전체 인구의 상대빈곤율 = 100, 1980년대 중반부터 2013년 혹은 자료가 입수 가능한 최근년도까지



주: 1980년 중반부터 자료가 입수 가능한 18개 OECD 국가들에 대한 OECD 비가중평균으로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터키, 영국, 미국이 해당.

Source: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http://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OECD(2014), Income Inequality Update - June 2014,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els/soc/OECD2014-Income-Inequality-Update.pdf](http://www.oecd.org/els/soc/OECD2014-Income-Inequality-Update.pdf).  
<http://dx.doi.org/10.1787/888933300231>

이러한 이동은 생애 후반기에 다소 심각한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다. 경력 초기단계에 장기간 고용되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는 상태(NEET)는 노동시장 전망, 가족형성, 보건 성과 및 궁극적으로 연금소득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제3장에서 불완전한 경력과 특히 안정된 고용으로의 낮은 진입이 연금 수급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집중적으로 다룬다.

### 주요 분석결과

대부분 OECD 국가들은 한 눈에 보는 연금 제5판(OECD, 2013) 발간 이래 자국의 연금제도를 바꾸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 재정건전화의 폭넓은 요구가 노력의 견인차가 되었고 대다수 국가는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개혁을 실제로 시행했다. 일부 국가는 개혁을 시행했고 동시에 최소한 특정 인구집단의 연금 적정성을 유지시키거나 개선했다.

####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개선

- 가장 인기있는 조치는 최저 수급연령과/또는 공식 수급연령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근로 유인책을 강화하고, 그럼으로써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연금 적정성을 보존하면서 기여기반 (contribution base)을 확충하는 것이다.
- 명목 급여를 직접적으로 삭감한 국가는 거의 없었다. 급여의 직접적인 삭감은 그 대상범위를 좁게 설정하거나 신규 퇴직자의 최초 연금 급여액을 조정하는 형태로만 이루어졌다.
- 훨씬 많은 국가들이 연금 급여의 연동을 덜 관대한 상향 조정 메커니즘으로 바꾸었다.
- 많은 국가들이 확정급여형제도에서 세금과 기여율을 높임으로써 세입을 늘렸다.
- 연금 행정비용을 억제하는 조치는 매우 흔했다.

### 노후소득 적정성의 증가

- 몇몇 국가들은 자발적 사적연금제도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 어떤 국가들은 소급적 연금 크레딧을 제공했거나 기여금 미납기간이 연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줄였다.
- 일부 확정기여형제도에서는 기여율을 인상했으며, 어떤 국가들은 연금 수급자의 소득에 대한 실효세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다.
- 다수의 국가에서 관리비가 감소했고 연금투자의 안전에 대해 몇 가지 개선이 이루어졌다.

본 장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섹션 1.2는 OECD 국가에서 지난 2년간 시행되었거나 결정되었던 연금개혁과 그 개혁이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적정성 개선에 미칠 영향에 관한 개요를 제공한다. 섹션 1.3은 급여를 삭감하는 조치와 기타 조치들을 구별함으로써 연금제도 재정을 강화시키는 조치에 초점을 맞춘다. 섹션 1.4는 소득의 적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분석한다. 섹션 1.5는 최근의 주요 연금정책 변화를 요약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본 장에 요약된 개혁의 상세 내용은 본 장의 끝부분 부록 표 1.A1.1에 제공된다.

## 1.2. 개혁의 개요

2013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거의 모든 OECD 국가는 자국의 연금제도를 바꾸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한 개혁이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소득 적정성에 미칠 예상 효과, 개혁의 영향 및 범위에 관한 개요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모든 개혁은 부정적(-), 불확실(빈칸), 긍정적(+)으로 등급이 매겨진다. 만약 어떤 국가가 개혁을 시행했는데 예상 효과에 관한 신호가 엇갈려서 나타나면, (+)와 (-)가 모두 나타난다. 평가된 범위는 좁음(narrow), 중간(medium), 넓음(broad)으로 나타나는 데 좁은 범위의 개혁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반면 넓은 범위의 개혁은 대다수의 인구에게 영향을 미친다. 마찬가지로 영향에 대한 평가는 대상 인구에 미치는 예상된 정량적 영향(quantitative impact)에 따라서 적음(minor), 중간(moderate), 큼(major)으로 나뉜다.

이러한 분석틀/framework)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개선과 연금 적정성의 강화 사이의 주된 상충관계(trade-offs)를 보여준다. 예를 들면, 확정기여형(DB)제도와 같이 기여금과 급여액 간 연관성이 약한 제도에서는 연금의 증가(감소)는 재정수지(financial balance)를 악화(개선)시킨다. 결과적으로, 표 1.1에서 더블 (+)를 달성한 국가들은 확정기여형(DC)제도에서 기여금 인상, 연금수급연령의 상향 조정 혹은 조기은퇴 경로의 단절 등 혼합적인 조치를 취했다. 호주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연금 수급연령의 상향 조정과 함께 기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 14개 OECD 국가는 대개 근로기간 연장을 통해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근로기간 연장은 특히 늘어나는 기대수명을 고려하면 유효 은퇴연령이 낮을 때 매력적이지만, 근로기간을 늘리고 노후 적정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종업원 모두의 행동이 변화되어야 한다.
- 소득 적정성의 개선도 흔한 조치인데, 11개 OECD 국가에서 최소한 특정 인구집단을 위해 연금 급여를 개선시킬 조치를 도입했다.
- 몇몇 국가들에서 엇갈리는 성과가 나타난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 개혁의 범위는 14개국에서 넓고(broad), 9개국에서 중간(medium), 3개국에서 좁은(narrow) 것으로 예측된다.

- 전반적인 영향 평가가 더 균형잡힌 의견을 보여준다. 3개의 OECD 국가에서 영향이 큰 것으로 (major) 평가된 반면, 13개국에서는 중간(moderate), 10개국에서는 적은(minor) 것으로 평가된다.
- 어떠한 변화도 시도하지 않은 국가는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멕시코, 슬로베니아, 터키, 미국이었다. 특히 그리스는 한 눈에 본 연금 제5판(OECD, 2013)에서 설명했던 중대한 정책적 조치가 실시된 이후에 어떤 변화도 시도하지 않았다.

표 1.1. 연금조치들 개관: 2013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소득 적정성	재정적 지속가능성	영향	범위
호주	+	+	큼	넓음
오스트리아		+	적음	중간
벨기에		+	큼	넓음
캐나다	+	+	중간	중간
칠레	+		적음	좁음
체코	-	-	적음	좁음
덴마크		+	중간	중간
에스토니아		새로운 조치 없음		
핀란드	-	+	중간	넓음
프랑스		+	중간	넓음
독일	+	-	중간	중간
그리스		새로운 조치 없음		
헝가리		새로운 조치 없음		
아이슬란드		새로운 조치 없음		
아일랜드	+/-		적음	중간
이스라엘	+		중간	넓음
이탈리아	+/-	+/-	중간	중간
일본	+	-	적음	중간
한국	+	-	적음	중간
룩셈부르크	+	-	적음	넓음
멕시코		새로운 조치 없음		
네덜란드	+/-	+	중간	넓음
뉴질랜드	+	+	적음	넓음
노르웨이	+		중간	넓음
폴란드		+	중간	넓음
포르투갈	-	+	큼	넓음
슬로바키아	-	+	중간	넓음
슬로베니아		새로운 조치 없음		
스페인	-	+	중간	넓음
스웨덴	+/-		적음	중간
스위스		+	적음	좁음
터키		새로운 조치 없음		
영국	+	+/-	중간	넓음
미국		새로운 조치 없음		

주: 연금개혁의 상세한 내용은 부록 1.A1 참조

<http://dx.doi.org/10.1787/888933300957>



연금개혁의 개요는 부록 1.A1에 제시된 상세한 설명을 통해 보완된다. 모든 개혁은 가입률, 다과화와 보장, 연금 급여, 세금, 연동, 근로 유인책, 행정적 효율성, 기타 개혁이라는 8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이 분류는 노후소득제도의 주된 목적들과 원칙들에 부합한다.

### 1.3.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개선

이 섹션은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개선시키는 정책 조치들을 다룬다. 여기에는 부록 1.A.1에서 설명하고 있는 2013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입법화된 조치들과 더불어 최근 2년간 시행된 개혁들이 포함된다. 첫 번째 부분은 순 연금 급여액을 삭감함으로써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개선한 최근 조치들에 초점을 맞추고 두 번째 부분은 기타 조치들을 제시한다.

#### 순 연금 급여액의 삭감을 통한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개선

순 연금 급여액의 삭감을 통한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개선은 몇 가지 방법을 통해 가능한데, 여기에는 급여수준이나 연금산식에서의 전면적 삭감, 자동조정 메커니즘을 통한 지급급여의 인상률 축소, 확정급여형제도의 기여율 상향, 연금소득에 대한 증세 및 사회보장기여분 인상 등이 포함된다. 다음 섹션에서 논의될 소득적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조치들은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압박을 늘릴 수 있으므로 반대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연금 급여

아주 극소수의 국가만이 명목급여의 삭감을 통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개선 조치를 취했다. 호주에서는 2017년 1월부터 노령연금(Age Pension)에 대한 자산조사를 대상을 세밀하게 설정하여 시행할 예정인데 이로 인해 얻는 자와 잃는 자가 생겨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공공지출(public money)을 절감할 것이다. 스페인에서는 2019년부터 매 5년마다 신규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최초의 연금 급여가 기대수명 증가에 근거해서 조정될 것이다.

#### 연금연동

은퇴기간이 오래 지속될수록 적정성을 위해서 연동이 더 중요해진다. 공적연금에 대한 지출을 제한하기 위해서 일부 국가들은 금융위기 이후 일시적인 조치로써 급여액의 연동을 동결했다. 그러나 물가와 임금 하락(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그리스와 같은 국가에서 연금 급여의 명목 동결은 실제로 급여의 상대적 가치를 높이고 현재 연금 수급자의 소득지위를 유리하게 변화시킨다. 결과적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연금지출 비중이 증가할 수 있다. 최근 2년 동안 연금 급여의 명목 동결은 흔치 않았다. 대신 많은 국가들은 덜 관대한 연동 옵션으로 이동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2015년까지 연동수준을 낮추기로 했다. 핀란드에서는 소득비례연금(earnings-related pensions)의 연동이 이전 산식에서는 1%를 훨씬 넘었지만 0.4%로 제한되었다. 프랑스는 연금 급여의 연동시점을 2014년 이후부터 4월이 아닌 10월로 늦추었다. 연금연동은 그리스의 경우 2011년 이래, 벨기에는 2015년 이래로 동결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2014-16년 기간 동안 누진적 “생계비용(cost-of-life)”에 입각한 연동으로 변경되었고, 일정수준 이상의 연금은 정액으로만 인상되었다. 2015년 4월에 헌법재판소는 2012년과 2013년에 이루어진 1,500유로를 초과한 급여에 대한 부분적 급여동결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한 최저연금의 최대 6배에 달하는 “손실연동액”에 대한

배상(reimbursement)은 연금 수준을 높이면서 공공재정에 큰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슬로바키아에서 연금 급여는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 정액으로만 인상되었고, 그 이후에는 종전처럼 임금과 소비자물가의 평균값이 아닌 소비자물가만을 고려하여 연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다른 국가들은 급여연동과 연금제도의 재정상태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동조정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스페인은 연금기여금 대비 지출비용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연금을 연동시킬 것이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초 지급되는 연금은 기대수명의 변화에 근거해서 결정될 것이다. 캐나다는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2018년부터 퀘벡연금제도(QPP)에 자동연동 메커니즘을 시행할 예정이다. 룩셈부르크에서는 기여금에 따라 급여액을 조정하는 “감액인자(reduction factor)”가 2013년에 도입되었다. 연간 기여금 수입이 연금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금 급여에 대한 미래의 임금연동이 가능할 것이다.

### 세금과 기여금

많은 국가들이 증세와 기여금 인상을 통해 공적연금의 재정조달을 위한 세입을 늘렸다. 여기에는 현재 연금소득에 대한 유효세 인상, 확정급여형제도의 기여금 인상(연금 수급액은 추가되지 않음), 연금기여금이나 연금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인가가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유효세 인상은 개혁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발적 제도에 대한 참여를 저해하고 저축율을 하락시킬 수 있다.

캐나다 퀘벡연금제도에 대한 기여율은 2011년 9.9%에서 2017년 10.8%로 상승할 것이다. 프랑스의 연금기여율은 2017년에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0.3%p씩 인상된다. 또한 세 자녀에 대한 10%의 연금 보너스는 과세 대상이 될 것이다. 핀란드에서 연금 수급자는 2013년부터 45,000유로를 초과하는 연금 소득에 대해 6%의 추가세(extra tax)를 납부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파트너들(social partners)은 민간 부문 근로자를 위한 강제적 소득비례제도(TyEL)에 대한 기여율을 2011년에서 2016년 사이에 매년 0.4%p씩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국가들은 자발적 제도의 기여금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줄였다. 아일랜드에서는 2014년에 사적연금자산에 대한 임시세가 연장되었고 세율도 인상되었다. 반면, 사적연금 기여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고소득자의 경우 삭감되었다. 네덜란드의 경우 연금 기여금에 대한 전액 세액공제의 상한선이 설정되었다. 또한 근로연장 크레딧이 종전에는 모든 고령 근로자에게 부여되었지만 이제는 실업자, 장애인 또는 저소득자로 적용범위가 제한되었다. 이 조치는 새로운 크레딧을 받을 수 없는 집단의 세금을 늘릴 것이다. 뉴질랜드에서는 각 신규 키위세이버(KiwiSaver) 계정에 대한 최초가입 장려 보조금(kick-start)이 2015년 5월에 폐지되었다. 이러한 정부보조의 철폐로 이후 4년 간 매년 1억 2천 5백만 뉴질랜드달러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이는 공적연금지출의 약 1%에 해당). 스웨덴에서는 사적 개인연금에 대한 개인 기여금의 세액공제가 2016년에 전면적으로 철폐될 것이다.

### 재정적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한 다른 조치들

근로 유인책을 강화하고 더 많은 사람이 고령에 일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연금제도의 행정적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자동화와 신기술의 활용으로 연금제도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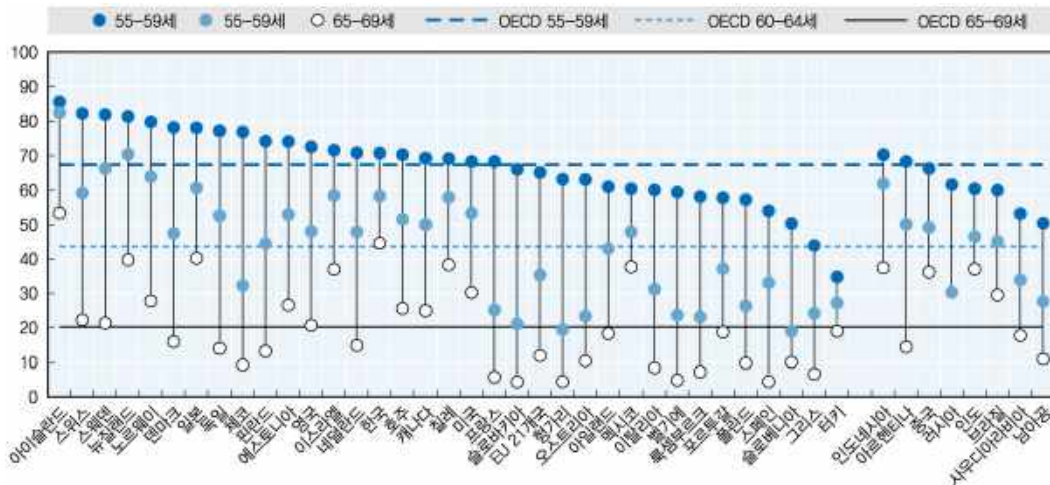
### 연금수급연령

모든 OECD 및 G20 국가에서 고용률은 연금수급연령 훨씬 이전부터 나이가 들에 따라 하락한다.

2014년에 모든 OECD 국가에서 55-59세 인구의 평균 고용률은 67%이지만, 60-64세의 평균 고용률은 44%, 65-69세의 평균 고용률은 20%였다(그림 1.4). 그러므로 대다수 국가에서 개선의 여지는 상당하다. 법정 연금수급연령의 변경은 은퇴계획을 세울 때 개인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도록 기대되는지에 대한 시그널의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규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으로 제정된 대부분의 수급연령 상향은 노인 근로자가 은퇴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도입된다.

많은 OECD 국가들은 기대수명의 증가라는 큰 흐름 하에서 근로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해 연금 규정을 개혁했다. 이는 길어진 노후 기간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연금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수급액의 증가로 이어지지만 급여 증가분은 대개 적어 순 지출절감(net public saving)으로 이어진다. 납부된 기여금과 수령된 연금 급여 사이의 연관성이 약한 연금제도에서는 이러한 추가적 기여분이 제도의 지속가능성만을 개선할 것인데, 반드시 연금 수준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프랑스와 한국 등). 대부분의 연금개혁은 i) 법정 연금수급연령의 상향 조정, ii) 조기수급요건 강화, iii) 연금수급연령 이후 근로에 대한 경제적 유인책 강화 및 조기수급 급여의 감액분 증가, iv) 근로와 연금 지급의 병행 가능성 증가 등을 통해서 생애 마지막 부분에서 근로기간을 연장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림 1.4. 55-59세, 60-64세, 65-69세 인구의 고용률: OECD 및 G20 국가들, 2014년



주: OECD 비회원국인 G20 국가들의 고용률은 입수 가능한 최신 연도의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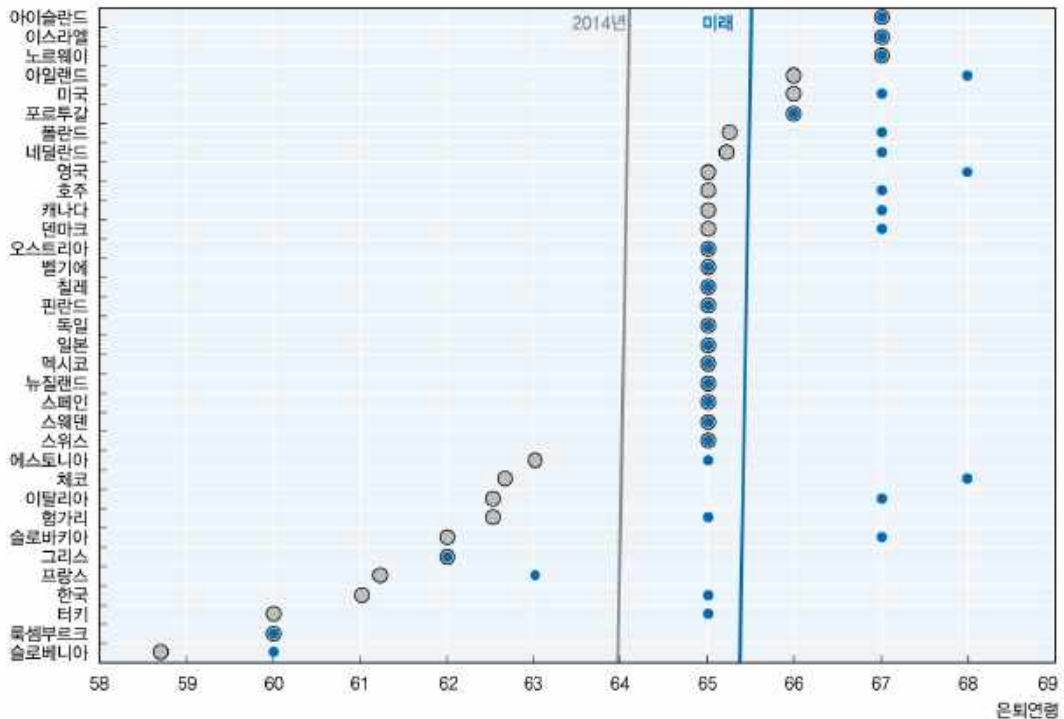
출처: OECD(2015),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5-en](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5-en).  
<http://dx.doi.org/10.1787/888933300245>

가장 최근의 법령에 근거하면 2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OECD 국가 남성의 평균 은퇴연령은 현재 64세에서 2050년대 후반에 65.5세로 증가할 전망이다(그림 1.5). 현재 은퇴연령이 가장 낮은 국가는 슬로베니아로 58.7세에 은퇴가 가능하고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노르웨이에서 은퇴연령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향후에, 2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한다고 가정할 때, 남성의 가장 높은 연금개시 연령은 체코, 아일랜드, 영국에서 68세가 될 전망이다. 가장 낮은 수급연령은 60세가 될 전망인데 슬로베니아와 룩셈부르크가 이에 해당한다. 이 두 국가 외에 2014년에 2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완전경력(full-career)의 남성이 64세가 되기 전에 전액연금(full pension)을 수급할 수 있는 국가는 그리스와 프랑스뿐일 것이다.

그림 1.6은 은퇴연령의 성별 격차 추이를 제공하며 여성이 남성보다 빨리 은퇴할 수 있는 국가 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준다. 현재 13개 OECD 국가들에서, 즉 슬로베니아의 수 개월부터 오스트리아, 칠레, 이스라엘, 폴란드의 5년에 이르기까지, 여성에게 유리한 양(+)의 성별격차를 기록하고 있다. 이 격차는 칠레, 스위스,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사라지고 있는 중이다. 이는 주로 여성의 연금수급연령 상향 조정에 기인한다. 이탈리아에서 민간부문 근로자의 은퇴연령은 2018년까지 남성과 여성 모두 67세로 평준화될 것이다. 이탈리아에서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연금수급연령도 2014년 66.25세에서 2018년에 67세로 상승할 전망이다. 그러나 2014년 기준 남성의 경우 42.5년, 여성의 경우 41.5년의 최소 기여기간을 채웠다면 어떤 연령에도 은퇴할 수 있다. 폴란드에서는 은퇴연령이 남성의 경우 현재 65세에서 2020년에 67세로 증가하지만, 여성은 현재 60세에서 2040년에 67세로 증가할 전망이며, 여성은 62세, 남성은 65세에 부분연금(partial retirement) 수급이 여전히 가능할 것이다. 영국에서는 여성의 연금개시연령이 현재 62세에서 2018년에 남성 수준인 65세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점점 더 많은 OECD 국가가 은퇴연령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때로는 은퇴연령이 지난 10년간 대부분 국가에서 일반적 기준이었던 65세를 넘기기도 한다. 벨기에 정부는 최근 연금수급연령을 2030년까지 67세로 점차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이후에는 기대수명과의 연계를 도입해서 추가적인 연장을 할 것이다. 캐나다에서 기초연금(노령보장) 수급자격을 갖게 되는 정상 은퇴연령은 2023년에서 2029년 사이에 65세에서 67세로 점차 증가할 것이다. 아일랜드의 연금수급연령은 2014년에 65세에서 66세로 올랐고, 2021년까지 67세, 2028년 이후에는 68세로 늘어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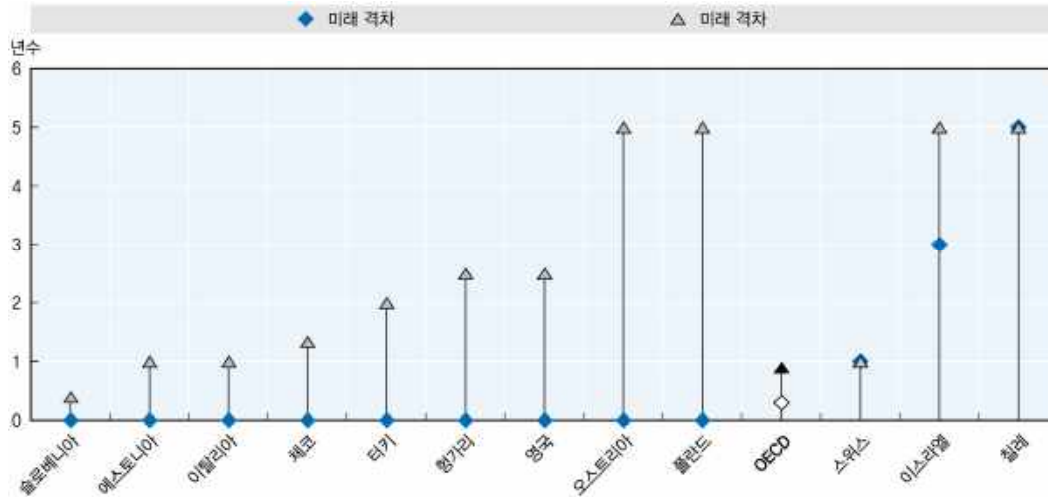
그림 1.5. 2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남성의 현재 및 미래 은퇴연령



출처: 제5장, 표 5.7과 5.9 참조

<http://dx.doi.org/10.1787/888933300251>

그림 1.6. 2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남성과 여성 간 현재 및 미래 은퇴연령 격차



주: 미래 격차는 2014년에 20세로 완전 경력에 진입하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잔존하는 연령 격차를 의미함.  
출처: 제5장, 표 5.7과 그림 5.10 참조

<http://dx.doi.org/10.1787/888933300266>

독일의 1950년생 집단의 경우 은퇴연령이 현재 65세 4개월인데 매년 1개월씩 점차 연장되어 기여 기간이 45년 미만인 개인은 미래에 67세가 될 것이다. 헝가리의 연금수급연령은 62세에서 65세로 상향 중이다. 포르투갈의 은퇴연령은 65세에서 66세로 연장되었고, 기대수명의 변화에 연계될 것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개시연령은 2018년에 66세가 되고 2021년에 67세가 될 전망이다. 2014년 이래 기업퇴직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이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 출발연령이 매우 낮기는 하지만 슬로베니아에서도 은퇴연령이 늘어나고 있는데 최소 40년간 기여액을 납부한 근로자의 경우 은퇴연령이 2014년 58.25세에서 2019년에 60세로 증가할 전망이다. 기여액 납부기간이 40년 미만인 사람들의 경우 은퇴연령이 65세가 될 것이다. 스페인에서는 정상 연금수급개시연령(normal pension age)이 2013년 65세에서 2027년 67세로 연장되고 있지만 전액연금은 38.5년간 기여한 경우 여전히 65세에 수급 가능하다. 영국의 연금개시연령은 2026년에 66세, 2028년에 67세로 증가할 것이다. 또한 사적연금 인출이 가능한 최저연령은 정상 연금수급개시연령보다 10세 빠르게 설정될 것이다. 호주의 연금개시연령(2013년 7월 이래 남성과 여성이 동일)은 2012년에 결정된 대로, 2017년 65세에서 2023년에 67세로 점차 늘어날 것이다. 2035년까지 70세로 추가로 상향 조정하는 안은 현재 논의 중이다. 프랑스의 경우 최소 기여기간이 현재의 41.5년에서 2035년에 43년으로 늘어날 것이다.

### 조기수급연령

많은 OECD 국가들은 또한 연금 조기수급을 제한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조기연금(Korridorpension) 수급자격을 갖기 위한 의무 가입기간이 2013년 38년에서 2017년에 40년으로 연장되고 있다. 또한 최저 조기수급연령은 2014년에 남성의 경우 60세에서 62세로, 여성의 경우 55세에서 57세로 증가했다. 벨기에의 경우 조기수급연령은 2013년 60.5세에서 2016년 62세로 상향 조정될 것이며 이에 필요한 최소 기여기간도 38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부 특별한 경우(경찰관 등)에 대해 조기은퇴 경로를 더 까다롭게 만드는 안이 고려 중이다. 덴마크에서는 조기수급연령이 현재의 60세에서 2023년에 64세로 연장되고 있으며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업무능력이 저조한 근로자들

위한 신규 노인장애급여가 도입 중이다.

핀란드에서는 부분연금의 수급연령이 61세로 늘어나고 있으며 민간부문 근로자(TyEL 제도)에 대한 조기수급은 철폐되었다. 1951년 이후에 태어난 근로자에 대한 조기연금수급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늘어났다. 실업자를 위한 조기연금 수급도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지만, 1958년 이전에 출생한 실업자는 여전히 감액없이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네덜란드에서 육체적으로 힘든 직종 근로자의 조기수급 옵션이 서서히 폐지되고 있다. 포르투갈에서는 조기수급이 2015년 초반까지 일시 중단되었다. 그러나 장기 실직상태의 근로자는 57세부터 수급이 가능하다. 스페인에서는 등록된 실업의 경우 법정 연금수급연령이 현재의 61세에서 2027년에 63세로 변경됨에 따라 조기수급연령이 연장되고 있다. 비자발적 조기은퇴에 대한 최소 기여기간이 31년에서 33년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자발적 조기은퇴의 경우 연금수급연령이 65세가 될 것이며 최소 기여기간은 35년으로 늘어날 것이다.

#### 근로기간 연장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근로기간 연장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많은 국가에서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대개 연금 수급과 근로를 병행하는 것을 보다 폭넓게 허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인센티브가 연금 제도의 재정수지(financial balance)에 미치는 전반적 영향이 항상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닌데, 추가된 기여금이 대개 추가되는 지출에 의해 상쇄되기 때문이다. 다만 호주의 경우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고 유지할 경제적 인센티브가 증가함에 따라 노령연금에 대한 공공지출이 잠재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오스트리아에서는 1955년 및 이후 출생자에 대한 조기연금인출에 대한 연간 페널티가 4.2%에서 5.1%로 증가할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65세 이후로 연금 수급을 연기하는 것에 대한 혜택을 늘려서 이제 근로와 강제적 공적연금제도(Canada Pension Plan)로부터의 연금 수급을 동시에 할 수 있다. 65세 미만 개인의 기여금 납부는 강제적이지만 70세 미만으로 근로 중인 연금 수급자는 현재 추가 기여를 통해서 급여액을 늘릴 수 있다. 노르웨이의 기업퇴직연금은 62세부터 75세까지 탄력적으로 은퇴할 수 있는 새 규정을 도입하고 20-80%의 부분인출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근로연장과 연금인출을 할 수 있게 된다. 스페인의 경우 현재 근로와 연금인출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스위스에서 노인들의 근로 인센티브와 사적연금제도 가입률이 증가할 전망인데 연금기여금 지급에 대한 연령기준(age limit)이 상향되었기 때문이다. 스웨덴에서는 더 오래 그리고 더 많이 일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2014년에 6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공제 증가로 강화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경력을 일찍 시작한 사람에게에는 전액연금(페널티 없음)이 법적수급연령 이전에도 지급 가능할 것이다. 이 조치는 연금 수급액을 증가시키지만 대상층이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도록 장려한다. 프랑스에서 최저 법정수급연령은 여전히 62세이지만 전액연금 급여를 인출할 수 있는 연령은 18세 이전에 노동시장에 진입했고 최소 41.5년간 일했을 경우를 전제로 62세에서 60세로 낮아졌다. 독일의 연금수급연령은 45년간 기여분을 납부한 사람들의 경우 65세에서 63세로 낮아졌다. 이 연령은 65세가 될 때까지 2015년부터 매년 2개월씩 연장 될 것이다.

#### 행정적 효율성

부과식(pay-as-you-go) 공적 확정급여형제도에서 행정적 효율성 개선은 관리비를 줄이고 공공재정을 강화한다. 실제로, 확정기여형제도보다 연금 급여액과 관리비 사이의 연관성이 대개 약한데, 확정

기여형제도의 경우 운용수수료는 누적된 연금 저축액을 직접적으로 줄이기 때문이다. 관리의 통합, 규제 조치의 시행 또는 신기술의 이용을 통해 많은 국가에서 비용은 감소하고 성과는 늘어나고 있다.

그리스의 경우 정부가 후원하는 보충적 연기금들(auxiliary pension funds)이 2011년 이래 통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공무원 연금제도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가 피용자연금(employee pension)으로 통합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기여금 징수에 관한 행정적 효율성이 2014년부터 증가할 전망이다. 예전에 고용주에게 종업원의 기여분을 산정하도록 했던 것과는 달리 사회보장일반금고(General Social Security Treasury)가 직접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 조치는 고용주의 관리부담도 줄여줄 것이다.

폴란드에서는 민간부문에 의해 운용되던 연기금(당시에 공채에 투자된 부분에 해당)의 순자산 중 51.5%가 2014년 2월에 사회보험청(Social Insurance Institution)으로 이전되었는데 이로 인해 다각화가 감소했고 1999년 개혁에 일부 역행했다. 강제가입인 2층 연금에 대한 기여분은 근로자가 연기금에 계속 기여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해도 기본적으로는 공적연금제도로 이관된다. 게다가 민간에서 운용되는 연기금에 남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누적 자산과 공적연금제도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의 누적 자산은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기 10년 전부터 사회보장기금으로 서서히 이전될 것이다. 이 조치들은 단기적으로 공공부채와 정부적자 모두를 감소시킬 것이지만, 공적연금제도의 잠재부채(implicit debt)를 늘리고 아마도 장기적으로 노후소득을 줄일 것이다(OECD, 2014b)

마지막으로 관리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도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스페인은 '재정책임성강화청(Independent Agency for Fiscal Responsibility)'이라는 명칭의 새로운 독립적인 정부 기관을 2013년 11월에 설치하였다. 이 기관은 급여액의 연례적 조정과 지속가능성 계수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피력할 것이다.

#### 1.4. 노후소득 적정성의 강화

재정건전화 프로그램의 일부로써의 급여 수급조건 강화는 노인들의 생활수준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미 낮은 수준인 연금액이 삭감될 경우 특히 고통스러울 것이다. 최근 연금정책의 초점이 연금제도의 재정적 측면을 개선하는데 맞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치들은 노후소득의 적정성 개선을 위해서 취해졌다. 이 섹션은 최근 2년간 연금 급여의 적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 시책들을 설명하므로써, 부록 1.A1에 제시된 개혁들보다 더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다.

적정성 개선을 위한 개혁에는 가입률 또는 연금수준을 높이거나, 혹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높이는 것이 포함된다. 퇴직자를 위한 가처분 소득의 개선은 그들에게 부과된 세금을 낮춤으로써도 이루어질 수 있다. 납부된 기여금과 수령된 급여 간 직접적인 연관성이 강한 제도일수록 노후소득 적정성은 기여율의 인상 또는 기여기간의 연장을 통해 제도에 납부된 기여금이 증가할 때 강화된다. 이는 특히 확정기여형제도에 해당된다.

소위 대체율은 적정성 측정방법의 하나이다(OECD 연금 수급액 지표와 산정 근거가 되는 가정에 관한 포괄적 개요를 보려면 제6장 참조). 순 대체율은 생애평균 순 소득에 대한 순 연금 수급액의 비율이다. 이론적 소득대체율은 미래에 대한 예상치이며, 현재 제정된 연금규정이 정상 연금수급 연령이 될 때까지 개인의 전체 근로기간 동안 적용된다는 가정을 한다. 여기에서 연금수급연령은 2014년에 20세로 완전경력(full career)을 시작했다는 가정하에 급여의 감액이나 페널티 없이 전액연금

급여(full pension benefits)를 최초로 인출할 수 있는 연령으로 정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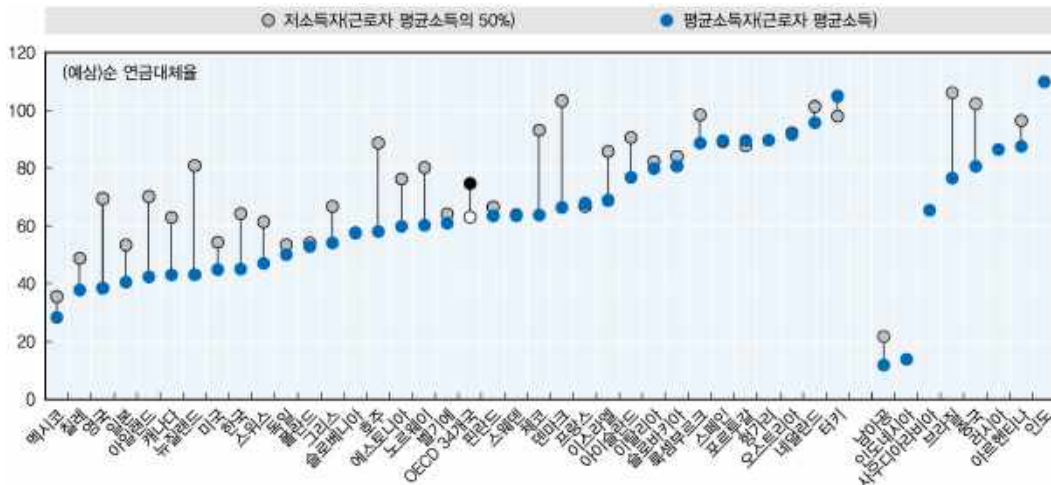
그림 1.7은 저소득 또는 평균소득인 완전경력 근로자에 대한 OECD 및 G20 국가들의 이론적 순 연금대체율을 보여준다. 평균소득자의 OECD 평균 순 대체율은 63%인데, 멕시코의 28%에서 터키의 105%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저소득자의 대체율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설정된 세금-연금 급여제도의 누진성 때문에 평균소득자의 대체율보다 일반적으로 높다. 저소득자의 순 연금대체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터키이다. 멕시코에서 저소득자의 순 대체율은 OECD 평균인 75%보다 훨씬 낮은 약 35%이다.

### 가입률

연금제도의 적정한 가입률을 확보하는 것은 많은 OECD 국가에서 노년기 소득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이다. 모든 OECD 국가는 공적 및 사적연금제도에서 높은 가입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강제적 혹은 준강제적 연금제도를 설립했다. 그러나 멕시코 및 칠레와 같은 대규모 비공식부문이 존재하는 국가들과 일부 G20 국가에서는 강제적 제도조차 가입률이 낮을 수 있다 (OECD/IDB/The World Bank, 2014).

2013년 이후 많은 OECD 국가들은 이전에는 강제적 또는 준강제적 연금제도에 의해 보장받지 못했던 집단의 가입률을 확대하기 위한 개혁에 착수했다. 다른 국가들은 가입률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급여제도를 도입했다. 일본의 경우 2017년 4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격기간을 25년에서 10년으로 줄일 예정인데, 이로 인해 가입률이 확대되고 단기경력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또한 피용자연금보험이 확대되어 2016년 10월부터 더 많은 시간제 근로자를 가입시킬 예정이며, 유족연금은 2014년 4월부터 편부가정으로 확대되었다. 2014년 7월에 새로운 선별적 급여가 한국에 도입되었으며 연금수준이 이전 제도의 두 배로 확대되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그림 1.7. OECD 및 G20 국가들에서의 저소득자와 평균소득자의 미래 순 대체율



주: 순 대체율은 2014년에 2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각 국가에서 근로기간이 연금수급연령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산정됨. 표에 제시된 수치는 평균 근로자 소득(AW)의 100% 및 50%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한 순 대체율임.  
출처: 제6장, 표 6.7과 그림 6.9 참조.

<http://dx.doi.org/10.1787/888933300276>



많은 OECD 국가에서 최근 20년간의 개혁 이후 자발적 사적연금은 공적연금의 중요한 보완제도가 되어 왔는데, 이는 공적연금 대체율이 대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적제도의 적절한 가입률 확보가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끄는 정책목표가 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경제적 유인책을 통해 사적제도의 발전을 장려한다면, 이는 추가적인 공공지출을 야기할 수 있다.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자발적 사적연금으로 공적연금을 보완해 왔다. 현재 예산압박이 이 영역의 운용 범위를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 사이에 일부 국가는 자발적 사적연금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매칭기여, 보조금, 세금공제 또는 감면)를 도입했다. 다른 국가들은 자동가입과 강제적 연금저축 등 비금융적(non-financial) 유인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영국에서는 직장연금제도 자동가입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대기업은 2012년 10월부터, 중간 규모 기업은 2014년 4월부터, 소기업은 2016년 1월부터, 기업연금 제도 또는 국영 피용자퇴직저축신탁제도(NEST)에 근로자를 자동적으로 가입시켜야 한다. 미가입 근로자를 위해 퇴직연금제도(MySaver)를 도입하는 비슷한 개혁이 아일랜드에서 계획되었고 경제 상황이 호전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캐나다에서는 자발적 사적연금제도에 대한 참여와 저축을 권장하기 위해 새 제도가 만들어졌다. 새로운 유형의 퇴직저축제도(PRPP: 기업연합적격연금제도)는 현재 일부 주와 연방법의 지배를 받는 산업부문에서 도입되었지만 향후 기타 주에서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PRPP는 고용주의 자발적 참여와 종업원의 자동가입에 기반한 제도로, 낮은 퇴직연금 가입률 문제를 해결하고 직장이동 시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며 관리수수료를 줄이고 고용주의 투자 위험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일부 국가들은 반대 방향으로 갔는데 종전의 강제적 또는 자발적 계정을 도입하려는 노력을 모두 포기했기 때문이다. 체코의 경우 2013년부터 시행되었던 자발적 개인계정의 2층 제도가 낮은 수급률 때문에 2016년에 폐지될 예정이다. 슬로바키아에서는 강제적 확정기여형제도가 2015년에 자발적 제도가 되었는데 이는 2005년에 도입된 이후 네 번째로 발생했다. 신규 진입자는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연금 기여액의 일부를 이전시키려는 사람은 35세 이전에 자발적 가입이 가능하다.

## 연금 급여

현재 퇴직자의 기존 연금 급여액을 늘리는 것이 계속되는 적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sup>3</sup> 다수의 국가가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 급여를 일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아일랜드는 2015년에 취약가구에 대한 선별적 급여를 인상했고, 룩셈부르크는 2012년 10월부터 기초연금액을 임금인상률에 추가로 약 0.4%를 더 인상했다. 일본은 2017년 4월부터 저소득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제2장은 일반적으로 1층 연금에 초점을 맞춤).

전체 근로기간 중 사람들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경력단절을 경험할 수 있다. 경력단절은 연금 급여 수준과,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기간 연장 인센티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제3장 참조). 경력 단절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 국가는 연금 급여산식에서 저소득 또는 무소득 기간이 산정되는 방식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캐나다에서는 과거 소득이 내림차순으로 매겨지고 가장 소득이 낮은 개월들이 연금 급여 산정에서 제외된다. 제외된 개월의 비중은 2014년에 16%에서 17%로 확대됐다. 프랑스는 출산휴가, 직업훈련, 대학교육, 실업기간에 대해 더 관대한 연금 크레딧을 부여하기로 했다. 일본의 경우 근로자들은 자발적 기여금을 추가 납부함으로써 자신의 기여 기록의 격차를 메울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은 1992년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크레딧(즉, 모성연금) 도입으로

현재와 미래의 연금 급여가 소급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확정기여형제도에서 기여율 증가는 적정성을 개선시키는 또 다른 방법이다. 호주는 강제적 확정 기여형제도의 기여율을 2021년 7월에 9.5%(현재 수준)에서 2025년에 12%로 인상했다. 이스라엘은 2014년에 강제적 최저기여율을 15%에서 17.5%로 인상했다. 노르웨이의 경우 1954년 이후 출생한 인구집단(cohort)을 위해 점진적으로 도입 중인 새로운 명목 확정기여형제도의 기여율이 연금대상소득의 18.1%에 달하는데, 생애소득과 연금 급여 간 연계를 강화하고 근로와 연금 수급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의 경우 피용자퇴직저축신탁제도(NEST)의 최저기여율이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1%에서 3%로 증가할 예정인데,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에게는 이 기여율에 추가로 전체 최저기여 수준인 8%(0.2%-1%의 세제혜택 포함)까지 끌어올릴 의무가 있다. 또한 2016년부터 새로운 공적연금인 기존의 기초연금, 제2국가연금(소득비례 공적연금),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 선별적 급여, OECD, 2013, 제9장 국가별 현황의 영국편 참조)의 저축 크레딧을 대체할 것이고, 그에 따라 전반적으로 급여 수준을 개선할 것이다.

### 과세

세금과 사회보험 기여금 제도는 순 노후소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득세 체계의 누진성과 연금 소득이 임금소득보다 일반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후소득에 대한 유효세율이 근로소득에 대한 그것보다 낮은 경향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세금제도가 연금소득이나 연금 수급자를 우대하는데 이는 연금 적정성을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과세왜곡 문제를 야기한다.

많은 OECD 국가들은 연금 수급자가 납부하는 총 세금과 사회보험 기여금을 줄임으로써 순 노후 소득을 개선하고 있다. 포르투갈이 2013-14년에 도입한 특별연대세(extraordinary solidarity surcharge)는 2015년부터 4,611유로를 초과하는 연금에만 부과될 것이다. 적용세율은 연금액이 7,127유로까지는 15%이고 그 이상은 40%이다. 폴란드는 자발적 개인연금제도를 위한 새로운 세금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스웨덴은 2014년에 노후소득에 대한 세금혜택을 높였다. 영국의 경우 2015년에 연금계정에서 인출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인하되었고 일시불 인출 시 적용되는 비과세 공제금액이 늘어났다. 이 조치들로 연금계정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이외에도 일본에서는 출산휴가 중인 여성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났는데 2014년 4월부터 근로자연금기여가 면제되었기 때문이다.

### 노후소득 적정성을 개선할 다른 방법들

연금 적정성을 개선할 다른 방법들이 존재한다. 확정기여형제도에서 비용 감소와 행정적 효율성 개선은 연금 급여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근시안적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더 나은 정보와 서비스는 개인이 보다 나은 선택을 하도록 만든다. 마지막으로 적립식과 부과식 제도, 확정기여형 제도와 확정기여형제도 간의 다각화는 제도마다 서로 다른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고, 연금소득의 더 나은 위험-수익구조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 행정적 효율성

자발적 연금제도 설계에서, 근로자들의 생애주기 단계별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의 융통성 및 선택권의 확대는 수수료 최소화라는 정책목표와 분명하게 상충관계(trade-offs)에 있다. 수수료가 높아지면 자발적 제도에 참여하려는 근로자의 의욕이 저하되고 강제적 제도의 비용을 높인다. 일반적으로, 과도한 비용 구조는 모든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소득 적정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연금제도 전체의 정당성을 위협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비용, 수수료, 실적에 관한 공지를 통해 투명성과 경쟁을 늘리고자 더 많은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개혁 논의가 최근에 잇따르고 있다.

확정기여형제도의 수수료를 줄이는 것이 많은 규제당국의 핵심 목표가 되었다. 칠레의 경우 6개의 사적연기금 관리자 중 하나인 Planvital은 신규 가입자들의 확정기여형계정을 관리하는 입찰을 따냈는데, 예전에는 연간 수수료가 계좌소유자 소득의 0.77%였지만 0.47%로 줄어들 전망이다. 호주의 새로운 단순 확정기여형제도(MySuper)는 2014년 1월 1일부터 고용주에 의해 선택된 새로운 디폴트 연기금(디폴트 기여금)을 보장할 예정인데, 동일한 성격의 비교하기 쉬운 제품군을 제공할 것이다. 고용주가 선택한 디폴트 기금의 기존 잔액은 2017년 7월 1일까지 MySuper 계정으로 이전될 것이다. 영국의 경우 새로운 피용자퇴직저축신탁제도(NEST)는 규모의 경제를 창출할 것이며 관리비를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은 정보공개와 데이터 수집은 연금제도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호주의 SuperStream 프로젝트는 퇴직연금펀드(superannuation fund)에 대한 기여금과 펀드간 이전(“롤오버”)에 관한 강제적이고 통일된 전자상거래 기준을 설립할 것이다. 시행은 2015-16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프랑스의 경우 2016년 초부터 연금보험의 보장을 받는 모든 근로자는 과거 기여액, 근무이력, 공적·강제적 퇴직연금제도로부터 예상되는 연금 급여액 등 해당 연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 계정을 가질 것이다. 뉴질랜드에서는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가 보조하는 자발적 퇴직저축제도(일명 “Kiwisaver”)의 제공자는 기금 실적, 수수료, 수익, 포트폴리오와 핵심 직원 관련 정보를 분기별로 웹사이트에 올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Kiwisaver 디폴트(default) 제공자들은 계좌소유자에게 재무 교육과 공정한 재정적 자문을 제공할 의무를 갖게 될 것이다. 영국에서는 연금사업자들과 신탁 기반 운용자들은 확정기여형제도 가입자들에게 공정한 조언을 무료로 직접 제공해야 한다. 소규모 확정기여형제도는 근로자가 이직을 하면 새로운 연금제도로 자동 이전된다.

마지막으로 자동가입제와 관리효율화는 미래의 적정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개선시키며 이는 수급률은 높이고 관리비는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경우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최저연금(노령보장 부문)으로의 자동가입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데, 노인에 대한 관리 부담 및 연금 관리비용은 낮추고 수급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 다각화와 보장

일부 국가는 적립식 제도에 대한 투자자 선택권을 확대시키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확정기여형 연금인출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2014년 5월에 입법화되었고 거액의 일시불 인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조치는 연금 수급자의 적립기금에 대한 통제권은 강화시켰지만, 개인의 근시안적 행동과 불완전한 재무 지식으로 인해 노후소득 적정성과 근로 인센티브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 수 있다. 전반적 성과는 개인 스스로가 남은 기대여명 동안의 본인의 니즈를 얼마나 제대로 평가하느냐에 달려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일시불 인출은 퇴직자가 조기에 저축액을 다 소진할 위험을 수반하는데 특히 자산이 적은 사람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다른 국가들은 투자 안전성을 개선하기로 선택했다. 해당 조치들은 연금제도의 거버넌스 및 리스크 관리 개선과 개인의 투자 리스크 감소로 구성된다. 칠레에서는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외환 헤지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했다. 아일랜드에서는 사적연금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변화를 단행했다. 이 변화에는 회사 도산시 새로운 급여의 보장, 2016년부터 위험준비금 증액, 계리적 준비금에 관한 엄격한 보고, 2014년부터 확정급여형연금에 사용된 연령기준 자본액이 포함된다. 이탈리아에서는 새로운 연기금 투자 규정들이 2014년부터 도입되었다. 새 규정들은 더욱 신중한 투자금 운용과 보다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목적으로 한다. 기업퇴직연금제도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법이 또한 2013년에 네덜란드에서 통과되었다. 뉴질랜드의 경우 KiwiSaver 디폴트 제공업체는 주식 및 부동산과 같은 성장(리스크가 더 높은)자산에 15-25%만을 할당하는 보수적인 투자전략을 유지할 것이다. 멕시코 개인계정제도의 경우 주식에 대한 기금 투자의 연령기준 제한을 완화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저위험 투자 옵션에 대한 수익률 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 노르웨이의 경우 새로운 공적 명목계정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제도에 보다 많은 융통성을 허용했고, 그 결과 고용주와 개인은 더욱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 재정적으로 부실한 피용자연기금(EPFs)은 2014년 4월부터 해체 과정을 밟고 있다. 최소지급준비금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피용자연기금은 존속이 가능하지만, 연례 자산조사를 통과해야 하며 신규 피용자연기금의 설립은 불가능하다.

## 1.5. 향후 과제

OECD 국가의 연금제도는 경제위기 여파와 진행 중인 인구 고령화를 고려하면 커다란 사회적·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최근 2년간 많은 국가에서 나타난 정부부채 급증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추가적인 연금개혁의 동기가 되었다. 많은 경우에서 취약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는 새로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경제위기 이후 더 악화되었다.

연금제도는 지속적인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서 조정되어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모든 연령의 사람이 근로기간을 연장시킬 능력과 의지가 얼마나 되는 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예전보다 훨씬 더 고령에서의 소득보장 문제가 점점 중요해질 것인데, 더 많은 국가가 연금 급여에 덜 관대한 연동을 선택하고 더 많은 노인들이 누적자산을 생전에 소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제2장). 일부 국가들은 인구학적·경제적 추세에 근거한 자동조정 메커니즘을 자국의 연금제도에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으로 정치적 위험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혁신의 올바른 설계와 이행은 앞으로의 과제이다.

해고된 고령 근로자는 지나치게 자주 조기수급제도를 이용한다. 고용주와 종업원 모두에게 체득된 이러한 접근법 때문에 고령 근로자에게 고용가능성을 늘릴 수 있는 재훈련 및 신기술 습득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조기수급으로 인해 개인들은 또한 미래 빈곤에 노출되는데, 훨씬 고령일 때의 소득의 필요성을 흔히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조기수급제도는 철폐되어야 하며, 고령 근로자가 직면하는 고용의 어려움은 사람들을 노동시장에 머물도록 보호하고 돕는 방법으로써의 활동을 장려하는 실업보험제도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수급조건이 강화됨으로써 노동시장을 근로기간 연장에 유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령 근로자의 노동력 공급 증가는 높아진 수요에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술 업그레이드와 평생 교육은 고령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계속 머물기 위해 중요해질 것이다.

사적연금제도는 특정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에서 저금리는 연기금과 생명

보험사가 퇴직자 및 연금지축자와 맺은 약속을 이행할 능력을 약화시킨다(OECD, 2015b). 확정기여형제도에서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낮을 경우 개인이 적정한 연금수준을 달성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 가지 중요한 우려사항은 개인들이 충분한 기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신뢰 재구축 역시 어려운 일이다. 관리비와 연금 수급액에 관한 더 나은 정보와 투명성 강화는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거버넌스를 개선할 것이다. 세대간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청년들이 연금제도의 장기적 안정성과 예상연금액을 신뢰해야 한다.

연금개혁 활동은 몇 가지 영역에서 심화되어야 한다. 많은 OECD 국가에서 특수직연금제도(special regimes)는 줄었고 공적부문과 민간부문 제도가 통합되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한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 자영업자들은 근시안적 안목과 비효율적인 정책 때문에 기여금을 충분히 납부하지 않는다. 그들의 연금가입률을 높이는 것은 어려운 과제인데, 일부의 경우 비공식부문을 줄이고 세금징수를 늘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연금제도가 힘든 조건에서 일했던 개인의 상황을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지 확실치 않고, 고된 근로로 인한 조기수급 경로는 과거에 자주 남용되었다. 이 제도는 매우 좁게 정의된 일부 집단에 대해서는 정당화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건강 이상이나 짧은 기대수명에 대해 개인에게 보상하는 비효율적인 정책대응이다. 대신, 정책 입안자들은 유해하거나 고된 근로 조건이 발생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막아야 하며, 고된 근로가 발생할 때는 초점을 수동적 노후연금 문제가 아닌 보건 및 근로환경 문제에 맞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많은 OECD 국가에서 유족연금이 개혁될 필요가 있는데, 이혼 등 생애사건들을 감안한 보험계리적 공정성(actuarial fairness)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 목적은 여성의 경제적 독립 및 근로 유인책 강화를 통해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 노동력의 공급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유족연금의 개혁은 취약성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 도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연금제도는 열악한 건강상태와 열악한 노동시장 경험 사이의 상관관계 때문에 근로생애주기를 통해 이미 악화된 불평등을 실제로 더 증가시킬 수 있다. 확정기여형제도와 확정기여형제도에서 급여액 산정에 이용되는 연금규칙 또는 연금산식은 대개 소득과 상관관계가 있는 사망률 격차를 고려하지 않는다. 사망률 격차는 가난한 연금 수급자일수록 평균적으로 연금 수급기간이 더 짧은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기대수명의 불평등을 무시하는 경우 연금제도의 재분배 효과를 감소시키고 일부 제도는 역진적(regressive)이 되기도 한다.

## 주석

1.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15), Ageing Report; Australia: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5), 2015 Intergenerational Report: Australia in 2055; Standard and Poor's (2013), Global Aging 2013: Rising to the Challenge: Argentina, Brazil, China, Iceland, India, Indonesia, Japan, Korea, Mexico, Saudi Arabia and the United States.
2. Standards and Poor's(2013) Global Aging 2013: Rising to the Challenge 에 따르면 연금에 대한 공적 지출은 한국에서 GDP의 1.7%에서 12.5%로, 터키에서 6.3%에서 17.0%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3. 지수의 조정과 연계된 연금 급여액 증가는 아래에서 다룬다.

## 참고문헌

- European Commission (2015), *The 2015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28 EU Member States (2013-2060)*,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 European Commission (2012), *The 2012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27 EU Member States (2010-2060)*,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 OECD (2015a),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5-en](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5-en).
- OECD (2015b), *OECD Business and Finance Outlook 201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34291-en>.
- OECD (2015c), *Interim Economic Assessment - 18 March 2015: Tailwinds driving a modest acceleration... but storm clouds on the horizon?*,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eco/outlook/Interim-Assessment-Handout-Mar-2015.pdf](http://www.oecd.org/eco/outlook/Interim-Assessment-Handout-Mar-2015.pdf).
- OECD (2014a), *Income Inequality Update - June 2014*,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els/soc/OECD2014-Income-Inequality-Update.pdf](http://www.oecd.org/els/soc/OECD2014-Income-Inequality-Update.pdf).
- OECD (2014b), *OECD Economic Surveys: Poland 2014*,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co\\_surveys-pol-2014-en](http://dx.doi.org/10.1787/eco_surveys-pol-2014-en).
- OECD (2013), *Pensions at a Glance 2013: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pension\\_glance-2013-en](http://dx.doi.org/10.1787/pension_glance-2013-en).
- OECD/IDB/The World Bank (2014), *Pensions at a Glance: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pension\\_glance-2014-en](http://dx.doi.org/10.1787/pension_glance-2014-en).
- Standard and Poor's (2013), *Global Aging 2013: Rising To The Challenge*.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13),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 부록 1.A.1

### 2013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연금개혁

표1.A1.1. 2013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제정되었거나 시행된 연금개혁의 상세내용  
국가 및 주요 목표별

적용범위	다각화와 보장	연금 급여	세금과 확정급여형 기여	연동	근로 인센티브	행정적 효율성	기타
호주		2014년 7월부터 강제적 DC 기여율이 9%에서 9.5%로 인상. 기여율은 2021년 7월까지 9.5%에 머무르다 2025년 7월에 12%에 도달할 것임. 노령연금의 자산조사가 2017년 1월부터 재정립됨. 급여가 보다 선별적이 되었지만 또한 보다 관대해짐 전반적으로 국고지출 절감이 예상됨.		적격 기여금의 일반 총 한도는 2014년 7월부터 3만 호주달러로 조정됨.	새출발임금보조금프로그램이 2014년 7월 1일에 시작되어 노인 고용 인센티브 지급과 고령 근로자 세금 공제 프로그램을 대체함.	2014년에 MySuper 상품은 모든 신규 계정에 대한 디폴트 퇴직연금상품을 대체했고 기존의 디폴트 잔액은 2017년 7월 1일까지 MySuper 계정으로 이전되어야 함. SuperStream 프로젝트는 퇴직기금에 대한 기여와 기금간 이체("롤오버")를 위해 강제적이고 통일적인 전자상거래 표준을 수립할 예정임. 2015-16년 말까지 시행 완료 예정.	
오스트리아				1955년 생부터 조기수급에 대한 페널티가 4.2%에서 5.1%로 인상됨 (최대 15.3%)			

표1.A1.1. 2013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제정되었거나 시행된 연금개혁의 상세내용(계속)  
국가 및 주요 목표별

적용범위	다각화와 보장	연금 급여	세금과 확정급여형 기여	연동	근로 인센티브	행정적 효율성	기타
벨기에							
					정부는 최근 연금수급연령을 2030년까지 67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하고, 이후에는 기대수명과 연계시키며, 조기수급연령을 1년 연장하고, 실업으로 인한 조기수급 조건을 강화하고, 일부 특정 상황(경찰관 등)에서의 낮은 수급연령을 철폐할 계획을 발표함.		정부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연계하는 포인트 제도와 사적 연금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특정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함.
캐나다	참여 기업의 종업원들의 자동가입에 기반한 새로운 자발적 퇴직저축제도(PRPP: 공동출자등록연금제도)가 연방 관할 부문에 도입되었음. 2014년에 브리티시 콜롬비아와 노바 스코샤가 이 그룹에 추가된 반면 온타리오에서는 2015년에 법이 채택됨. PRPP의 퀘벡판은 2013년 12월에 채택됨. 온타리오 퇴직연금제도(ORPP)를 설립할 법이 2015년	2014년부터 급여산정에서 저소득 기여기간의 17%(예전: 16%)를 제외하기 위한 캐나다연금제도(CPP)의 일반적 제외 규정이 확대됨.	퀘벡연금제도(QPP)에 대한 기여율이 2013년 10.2%에서 2014년 10.35%, 2015년 10.5%로 증가.		60세 이상 인구는 현재 CPP급여 수령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음. 은퇴 후 수당(Post-Retirement Benefit)은 근로를 하면서 CPP급여를 수령하는 사람들을 위해 도입됨. 65세 미만 개인에게 기여는 강제적이고 65-70세인 개인에게는 선택적임. 조기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 일을 그만두거나 소득을 줄여야하는 CPP 요건은 제거되었음.		



표1.A1.1. 2013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제정되었거나 시행된 연금개혁의 상세내용(계속)  
국가 및 주요 목표별

적용범위	다각화와 보장	연금 급여	세금과 확정급여형 기여	연동	근로 인센티브	행정적 효율성	기타
4월에 채택되었는데 DB와 일부 DC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온타리오 소재 기업들과 종업원들을 위한 새로운 강제적 연금제도 도입 예정(2017년 개시).							
칠레	2012-14년 부터 자영업자들은 탈퇴 가능 옵션으로 자동가입됨. 2015년부터 모든 자격을 갖춘 자영업 근로자들은 제도에 납부해야 함.	외환 헤지 상한선과 하한선이 설정됨.				2014년 신규 참여자들의 경매 결과 최소관리 수수료가 계좌 소유자 월 소득의 0.477%에서 0.47%로 감소함 또한 장애 및 유족보험 수수료는 1.49%에서 1.15%로 감소함.	
체코	2013년부터 유효했던 자발적 개인계정이 낮은 수급률로 인해 2016년부터 폐쇄 예정.						
덴마크				조기수급 연령이 상향 조정됨 (2014년). 업무 관련 건강문제가 있는 고된 직종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노인장애급여"가 도입 중임(2014년)			

표1.A1.1. 2013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제정되었거나 시행된 연금개혁의 상세내용(계속)  
국가 및 주요 목표별

적용범위	다각화와 보장	연금 급여	세금과 확정급여형 기여	연동	근로 인센티브	행정적 효율성	기타
에스토니아							
핀란드							
			사회적 파트너들은 2011-16년 기간 동안 소득비례제도에 대한 고용주/종업원 결합 기여액을 매년 0.4%씩 늘리기로 합의함	2015년에 예정된 연금연동(소득비례와 KELA)는 1%를 넘지 않고 0.4%로 제한됨.	장애연금 수급자가 연금 수급권을 잃지 않고 2년간 근무할 수 있는 법률이 2016년 말까지 연장될 예정임. 시간제 연금수급연령이 1953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 61세로 상향 조정되었고 연금적립 삭감이 시행될 예정. 민간부문의 1951년 이후 출생 근로자에 대한 조기수급이 철폐됨. KELA(핀란드 정부기관)의 경우 조기수급연령이 63세로 연장되는 중임. 실업연금제도는 2014년에 폐지됨. 1958년 이전에 출생한 장기 실업자는 62세에 완전연금 수령이 여전히 가능.	민간부문 제공자의 투명성 관련 새 규정이 의회에서 승인됨. 이 법은 기업의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원들에게 주식보유량과 사업상 거래를 보고하도록 요구함(2015년 1월).	2014년에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들은 2017년부터 시작되는 연금개혁안에 최저 및 최고 수급연령의 점진적 상향과 소득비례 노령연금의 급여산식 변경을 포함하기로 합의함. 연금개혁안은 2015년 9월 의회에 제출됨.
프랑스	급여 산정에 사용되는 기여기간은 출산, 훈련, 실업, 견습, 학업, 시간제 근로에 대해		3자녀 이상에 대한 10%의 연금 보너스는 과세대상임. 기업과 종업원 모두에 대한	2014년부터 연동시점이 4월이 아닌 10월로 변경, 1,200유로 미만의 연금은 2014년 4월에서	전액연금 수급을 위한 기여기간은 3년마다 1분기씩 늘어나서 2035년에 43년이 됨.	2016년부터 모든 가입자는 과거 기여금, 근무 이력, 공적 및 강제적	

표1.A1.1. 2013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제정되었거나 시행된 연금개혁의 상세내용(계속)  
국가 및 주요 목표별

적용범위	다각화와 보장	연금 급여	세금과 확정급여형 기여	연동	근로 인센티브	행정적 효율성	기타
보다 관대해질 것임							
<p>기여율이 2017년까지 0.3%p 인상, 2014년에 0.15%가 오르고, 2015-17년에 걸쳐 매년 0.05%씩 상승 예정.</p> <p>10월 사이의 기간 동안 동결됨.</p> <p>연금수급연령은 62세로 유지되지만 전체기간 동안 기여했던 사람은 60세부터 페널티 없이 수급 가능. 개별계정은 힘든 직종을 감안해서 설정될 예정인데 직업훈련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짧은 기여기간을 허용함.</p>							
독일		1992년 이전에 출생한 자녀를 둔 부모는 현재 자녀가 2세가 될때까지 연금 크레딧을 받을 것임(2014년 7월)	2015년에 노령, 유족, 장애보험에 대한 고용주와 근로자의 기여율이 각각 9.45%에서 9.35%로 줄어듦.		45년간 기여한 사람의 연금수급연령이 2014년 7월에 65세에서 63세로 낮아짐. 이 연령은 2016년부터 65세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2개월씩 늘어날 것임.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2014년 3월 현재 미가입중인 사람들을 위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로드맵이 이행 중임. 그 시행은	미래 연금 수급자에게 주어진 우선권을 개선하고 파산의 경우 DB제도 자산의 분배에 있어 현재 연금	연금 수급자, 장애인, 가구급여패키지(HBP)를 받는 수발자를 돕기 위한 새로운 적정성 조치들. HBP는	퇴직연금자산의 0.15%인 임시세가 2014년에 도입되어서 2011년에 도입된 0.6%를 대체함..			

표1.A1.1. 2013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제정되었거나 시행된 연금개혁의 상세내용(계속)  
국가 및 주요 목표별

적용범위	다각화와 보장	연금 급여	세금과 확정급여형 기여	연동	근로 인센티브	행정적 효율성	기타
경제회복과 안정에 의해 좌우될 것임	수급자의 권리를 줄이는 새로운 급여우선권이 2013년 12월 25일에 설정됨. DB제도는 2016년부터 추가자산을 보유해야 함. 기금 표준제한선, 즉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기금 상한액이 2014년부터 230만 유로에서 200만 유로로 줄어들고 있음. DB연금액 산정을 위해 사용되는 자본화 인자는 2014년 이후 연령 의존적임.	수도요금 또한 보조할 것임. 2015년에 시작하는 이러한 추가급여의 액수는 수혜자 당 연간 약 100유로.					
이스라엘		강제적 연금저축의 최저 기여율이 2014년에 15%에서 17.5%로 증가함.					
이탈리아	새로운 연기금 투자규정이 2014년에 도입됨. 새 규정의 목적은 더욱 신중한 투자금 운용과 보다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창출하는 것임.			2014-16년에 “생계비” 지표에 근거한 새로운 누진적 연동규정이 도입됨. 일정 기준보다 높은 연금은 연동이 되지 않고 정액만 제공함. 2015년 4월에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Esodati(경제위기 등으로 연금수급연령 이전에 퇴직한 자)들이 개혁 이전 조건으로 은퇴할 수 있도록 다수의 보호조항이 도입되었음.		

표1.A1.1. 2013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제정되었거나 시행된 연금개혁의 상세내용(계속)  
국가 및 주요 목표별

	적용범위	다각화와 보장	연금 급여	세금과 확정급여형 기여	연동	근로 인센티브	행정적 효율성	기타
					연동변경에 대해 위험판결을 내림.			
일본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기여기간이 2017년 4월부터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됨.	피용자연금(EPF)을 종료하기 위한 법안이 2014년 4월에 발효됨. 재정적으로 부실한 EPF는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탈퇴하거나 해체될 것임. 신규 EPF 설립 불가. 최저 지급준비금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EPF는 2019년부터 연례 자산조사를 받음. 재정적으로 건전한 EPF는 또한 다른 유형의 연금제도로 변경할 것을 권장받음.	2017년 4월부터 저소득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복지수당을 제공함. 연금 급여의 임시적 명목동결이 폐지되고 새로운 임금 및 물가연동("거시경제적 연동")이 2015년 4월부터 도입됨.	출산휴가 중인 여성은 2014년 4월부터 연금보험료가 면제됨.	연금 급여의 임시적 명목동결이 2015년까지 폐지됨.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제도가 2015년 10월부터 피용자연금으로 통합됨.	
한국	2014년 7월에 새로운 기초연금이 도입됨.							
룩셈부르크			2012년 10월부터 기초연금은 매년마다 임금상승률+0.44%씩 인상됨.					
멕시코								

표1.A1.1. 2013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제정되었거나 시행된 연금개혁의 상세내용(계속)  
국가 및 주요 목표별

적용범위	다각화와 보장	연금 급여	세금과 확정급여형 기여	연동	근로 인센티브	행정적 효율성	기타
네덜란드			2013년까지는 연금기여금 전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했음(2.25%로 적립). 2014-15년에 연간 2.15%와 1.75%까지의 증가비율까지만 세금이 면제됨.		2014년에 퇴직연금수급연령이 65세에서 67세로 연장됨. 육체적으로 고된 직업에 대한 조기수급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음.		
뉴질랜드	키위세이버(KiwiSaver) 디폴트 제공업체는 성장 자산에 15%~25%를 할당하는 보수적 투자전략을 유지할 것임.		각 신규키위세이버 (KiwiSaver) 계정에 대한 최초가입 (kickstart) 정부 보조금이 2015년 5월에 폐지됨. 보조금 폐지로 인해 정부는 향후 4년간 매해 1억 2500만 뉴질랜드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됨.			키위세이버(KiwiSaver) 제공업체는 실적, 수수료, 수익, 포트폴리오, 주요 직원에 대한 정보를 분기별로 자사 웹사이트에 올려야 함. 디폴트 제공업체는 계정 소유자에게 재무교육과 공평한 재정적 자문을 제공해야 함.	
노르웨이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신규 규정은 고용주에게 연금제도 설계에 있어 보다 많은 유연성을 허용함(2014년).			퇴직연금제도의 새 요건들은 실제 고용여부와 상관없이 62세부터 퇴직연금 급여의 유연한 전액 또는 부분인출을 허용함. 총 퇴직연금		

표1.A1.1. 2013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제정되었거나 시행된 연금개혁의 상세내용(계속)  
국가 및 주요 목표별

적용범위	다각화와 보장	연금 급여	세금과 확정급여형 기여	연동	근로 인센티브	행정적 효율성	기타
					급여의 현재가치는 인출과는 무관함.		
폴란드	민간이 운용하는 DC제도(OFE)에 대한 강제적 기여가 선택적으로 바뀜: 근로자는 OFE에 대해 총 임금의 2.92%를 할당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반면에 기본옵션은 공적 NDC제도에 기여하는 것임	OFE는 폴란드 국채나 재무부가 보증한 채무상품 (debt instruments)에 투자 금지. 2014년에 연기금은 자산의 최소 75%를 주식으로 보유해야 함. 최소기준은 점차 줄어 2017년에 15%가 될 것임.	IKZE(자발적 개인연금제도의 일종)에 대한 새로운 세금 유인책은 만기시 10%의 특별 정액세(즉, 표준 소득세보다 낮음)를 매기는 것임.	일반적으로 연금은 인플레이와 임금 인상분의 20%를 결합한 요소에 의해 연동됨. 이 연동 원칙은 2015년에 적용되었는데 향후 기간에 대한 원칙으로는 설정되지 않음. 그러나 2015년에 개인연금의 증가는 36 PLN 보다 높아야 함.		2014년 2월에 민간이 운용하는 연기금 순자산의 51.5%가 사회보험청으로 이전됨. 또한 OFE에 남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자산은 연금수급연령 10년 전에 공적제도로 점진적으로 이전될 것임. 공적연금제도로 옮기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적합한 자산 역시 같은 근거로 이전될 것임.	
포르투갈			2015년에 CES(특별연대기여)에 대한 연금소득 기준이 변경되어 가장 높은 연금에만 적용됨	연금액을 기대수명 증가와 연계시킨 지속가능성 인자에 대한 결정이 변경됨. 2000년의 기대수명과 은퇴 직전 연도의 기대수명 간의 비율로써 산정될 것임. 지속가능성 인자는 퇴직연금 감액이 아닌 연금수급연령 연장을 위해 사용되며	2014년에 은퇴연령이 65세에서 66세로 증가함. 장기실업자는 57세에 은퇴 가능. 은퇴연령은 기대수명에 연계될 것임.		

표1.A1.1. 2013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제정되었거나 시행된 연금개혁의 상세내용(계속)  
국가 및 주요 목표별

적용범위	다각화와 보장	연금 급여	세금과 확정급여형 기여	연동	근로 인센티브	행정적 효율성	기타
슬로바키아	2015년에 DC제도가 자발적 제도로 바뀌었으며 개인들은 이제 2005년 도입 이래 네 번째로 공적 소득비례제도에 가입할 수 있게 됨.			정상수급연령 이전에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됨.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금 급여는 고정액만큼 증가할 것이고 그 이후 재평가는 소비자물가를 따를 것임.			
슬로베니아							
스페인		2019년부터 매 5년마다 기대 수명 변화에 따라 연금제도의 관련 파라미터들 조정. 지속가능성 인자는 최초 급여가 계산될 때만 적용됨(2014년 12월)		2014년부터 연금 급여는 최대 및 최소 조정을 통해 기여금 대비 비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될 것임.		2014년에 사회보장청(General Social Security Treasury)에서 고용주에게 직접 청구를 할 수 있게됨. 예전에는 고용주가 고용주와 종업원의 기여액을 계산했음.	신규 공공기관인 재정책임성독립청(Independent Authority for Fiscal Responsibility)이 2013년 11월에 설립됨. 이 기관은 제안된 연례 급여 조정과 지속가능성 인자의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것임.
스웨덴			65세 초과 인구를 위한 기초연금 소득공제가 2014년에 늘어남. 사적개인제도에 대한 세금공제가 단계적으로 폐지 중이며 2016년까지 없어짐.		근로소득세액공제(EITC)가 2014년에 개선됨. EITC는 65세 초과 근로자에게 더 높음.		



표1.A1.1. 2013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제정되었거나 시행된 연금개혁의 상세내용(계속)  
국가 및 주요 목표별

적용범위	다각화와 보장	연금 급여	세금과 확정급여형 기여	연동	근로 인센티브	행정적 효율성	기타
스위스							노동시장 은퇴연기에 대해 더 많은 유연성이 부여되는데 가입자가 70세까지 연기금에 기여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기 때문임.
터키							
영국	2016년 1월부터 피용자퇴직저축신탁제도(NEST)가 소기업으로 확대됨.	확정기여형 연금인출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2014년 5월에 제정되었고 거액의 일시불 인출이 가능하게 됨.	2016년부터, 새로운 국가연금(단층연금, STP)이 더 높은 수준으로 기초연금과 최저소득보장(연금 크레딧)을 대체할 것임	2015년에 연금계정 인출 시 부과되는 세금이 낮아졌고 비과세액이 늘어함.	연금수급연령을 2026년까지 66세, 2028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함. 2028년까지 사적연금저축연령을 55세에서 57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함. 사적연금은 정상연금수급연령 10년 전부터 인출이 가능할 것임.	연금수급연령을 2026년까지 66세, 2028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함. 2028년까지 사적연금저축연령을 55세에서 57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함. 사적연금은 정상연금수급연령 10년 전부터 인출이 가능할 것임.	NEST제도는 현재의 DC제도 대비 규모의 경제를 창출할 것임. 연금 사업자와 신탁기반 운용사는 DC 가입자에게 무료로 공정한 대면자문을 제공해야 함. 소규모 DC제도는 근로자 이직 시 새로운 연금제도로 자동 이전됨. 최소 관리기준 도입, 수수료 등에 관한 정부 권한은 지나친 비용을 줄이고 기준을 늘리기 위해 강화됨.
미국							더 많은 사람이 노후를 위해 저축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나의 은퇴계정(myRAs)"이

표1.A1.1. 2013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제정되었거나 시행된 연금개혁의 상세내용(계속)  
국가 및 주요 목표별

적용범위	다각화와 보장	연금 급여	세금과 확정급여형 기여	연동	근로 인센티브	행정적 효율성	기타
2014년 1월에 발표됨. 기여금은 국채에 투자되며 원금 보장됨. 2014년 12월에 재무부가 최종규정을 발표했고 이 제도는 2015년 11월부터 이용할 수 있음.							

주: Admin. = 행정, cohort = 출생연도에 따른 집단(인구집단), CPI = 소비자물가지수, DB = 확정급여형, DC = 확정기여형, GDP = 국내총생산, NDC = 명목계정

## 제2장

# 1층 연금제도의 역할

본 장에서는 OECD 및 G20 국가들의 연금제도에서 1층 급여의 역할을 검토한다. 즉, 기초연금, 최저연금, 자산조사 노령사회부조급여 등 1층 연금제도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먼저 수급자격 규정 등 1층 연금제도의 구조에 대해 상세히 다룬다. 그 다음으로 평균소득 대비 비율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급여 수준을 비교하고 노인 빈곤율과의 관계를 연구한다. 본 장에서는 집세나 보건 등 퇴직자에게 제공되는 다른 형태의 부조에 관해서도 조망한다. 본 장은 고령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1층 연금 수령연령 기준의 조정 및 연동정책이 1층 급여 수준과 공공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이스라엘 통계자료는 해당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하였다. OECD가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른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역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2.1. 서론

가장 취약한 연금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급여는 OECD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다. 이 급여는 실업률이 높을 때나 일반 연금 급여가 줄어들 때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가 점점 더 고령화되어가고 공공재정에 대한 압박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그러한 급여의 역할은 향후 몇 년 사이에 현격하게 커질 것이다. 그러나 그 급여가 제공하는 보호의 수준은 국가별로 상당히 다른데 전반적으로 연금제도가 매우 다르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본 보고서의 표5.2와 제11장의 국가별 현황 참조).

최초의 연금제도는 1889년에 독일에서 민간부문 근로자들을 위해서 도입되었다. 70세가 된 모든 근로자에게 소득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는데 기여기간이 30년 이상이어야 했다. 20세기 초 영국에서 소득이 특정 수준 미만인 경우, 근로자의 경력이나 소득이력에 상관없이 70세를 넘는 모든 이에게 1주일에 1회 지급되는 노후소득제도를 설립했다. 이 제도가 노인빈곤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연금 급여의 최초 사례이다.

1층 노령연금 은 연금제도 내에서 노인을 보호하는 첫 번째 보호제도로 정의된다. 대부분 국가에서 이 보호층은 노후 비용을 낼 수 없고 빈곤에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최저 수준의 기여금을 납부한 근로자를 보상하는 메커니즘을 결합한 것이다. 1층 연금은 다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 기초연금: 이 경우 두 가지 형태로 다시 구분될 수 있다.
  - ❖ 급여수급자가 일정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기여액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 일부 국가에서 거주에 근거한 급여가 다른 연금 급여에 의해 잠재적으로 상쇄될 수 있음
  - ❖ 근로소득과는 무관하게 기여 연수에만 근거해서 지급되는 급여
- 최저연금: 특정 기여형제도에 내재된 최저연금 혹은 모든 제도를 합친 최저연금을 말할 수 있음. 급여 수준은 다른 연금소득을 고려해서 결정함.
- 사회부조: 연금 수급액으로는 소득이 충분치 않은 이들을 위한 자산조사형 급여로, 일반적인 사회 부조 수준에 맞게 설정된 최저소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보충급여(top-up)를 필요로 함.

본 장에서는 거주 또는 기여 이력에 기반한 기초연금이나 최저연금, 일정 수준의 소득보장을 위해 고안된 안전망 급여 등 OECD 각국에서 최빈곤층 연금 수급자를 보호하는 급여를 고찰한다. 다음 섹션에서는 비 소득비례연금(non-earnings-related pensions)의 수급기준을 비교하며 특히 그에 필요한 최소 거주 혹은 기여 연수를 고찰한다. 전체 인구의 평균소득 대비 기초 혹은 최저 연금액은 섹션 2.3에서 다룬다. 그리고 나서 기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사람들을 고찰한다. 섹션 2.4에서 사회 부조 지급액을 평가하고 이용 가능한 기타 급여나 지원수단을 살펴본다. 섹션 2.5에서는 1층 연금 수급자의 법정 급여율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도록 설계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연동정책의 효과를 보여준다. 섹션 2.6에서 결론을 내리고 주요 정책 이슈를 요약한다.

### 주요 분석결과

- 1층 연금은 모든 국가에 존재하지만 구조와 가치는 국가마다 매우 다르다. 거주기반 기초연금의 평균소득 대비 비율은 아이슬란드의 6%부터 뉴질랜드의 40%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안전망 지급액은 중국에서 평균소득의 2%, 터키에서 6%, 브라질에서 50%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터키의 최저연금은 높아서 평균소득의 40%를 넘는다.

- OECD 국가의 절반이 모든 시민에게 거주 또는 기여 년수에 근거해서 기초연금을 제공하는 반면 1/3의 국가는 소득비례제도 내에서 최저연금을 지급한다.
- 최저연금 수급자격을 얻기 위한 최소 기여 년수는 스위스 부분연금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전액 연금을 수급하려면 남성은 44년, 여성 43년간 기여금을 납부해야 함)이며, 체코의 경우는 어떤 연금이든 지급액을 받으려면 35년을 납부해야 할 정도로 다양하다. 최저연금 전액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26년간 납부해야 하며, 20년 납부 후에는 대다수 국가에서 부분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 대부분의 1층 연금은 물가에 연동되며 그럼으로써 임금 대비 연금의 상대적 가치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하락하는데, 생산성 증가가 중단기적으로 실질임금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수급률이 일정하며 이러한 연동규정들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면 연금 수급자의 빈곤율이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 노인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안전망 급여액이 낮은 많은 국가에서 1인당 GDP 수준을 감안한 다해도 안전망 급여액을 늘릴 여지가 상당히 크다. 특히 칠레, 한국, 멕시코, 터키뿐만 아니라 스위스와 미국도 이에 해당한다.
- OECD 국가의 거의 절반이 보건과 돌봄뿐만 아니라 주거비나 난방비를 보장하는 추가적 서비스나 지급액을 노인에게 제공한다. 많은 서비스가 무료 TV 시청권, 무료 또는 할인된 교통비 형태의 현물급여로 제공된다. 이들 서비스의 지급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들 서비스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다수의 수혜자들 역시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러한 지급액 중 적어도 일부에 대한 자산조사를 도입함으로써 미래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현재 연동정책은 수급률이 일정하게 유지될 경우 많은 국가에서 지출 증가를 야기할 것이다. GDP 대비 1층 연금 지출 비율의 안정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그것만으로 규범적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 재정적 자원이 일반적으로 GDP를 따라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유용한 기준선(baseline)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분배구조 최저층에 영향을 미치는 지출 수준이나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 각국의 출발점(starting point)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연령기준이 2060년까지 5년 연장되면 많은 국가에서 현재 연동정책 하에서 GDP 대비 1층 지출 비율이 거의 안정화될 것이다. 예상되는 고령화를 고려한다면, OECD 국가 평균적으로 연령기준이 점차 늘어나서 2060년까지 5년이 연장된다면 지출(GDP 대비 비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1층 연금 급여는 임금상승률-0.8%(즉, OECD 가정에 근거해서는 물가상승률+0.5%)에 연동되어야 할 것이다.
- 자동가입 또는 세제혜택 및 매칭 공동기여(matching contribution) 인센티브와 같은 대안적 메커니즘들이 자산조사적 1층 급여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데, 개인이 자신의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 2.2. 기초 및 최저 노령연금 수급조건

표 2.1은 OECD 국가들의 기초 및 최저연금 구조를 요약하고 있는데 자격조건이 국가마다 다르고 같은 국가 내에서도 연금 급여별로 다르다. 기초연금에 대해 먼저 논의하고 나서 최저연금에 대해 다룬다.

표 2.1. 기초연금과 최저연금의 구조

	기초	최저		기초	최저
<b>OECD 회원국</b>			<b>OECD 회원국(계속)</b>		
호주 <sup>1</sup>	R		뉴질랜드	R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sup>1</sup>	R	
벨기에		x	폴란드		x
캐나다	R		포르투갈		x
칠레	R		슬로바키아		
체코	C	x	슬로베니아		x
덴마크	R		스페인		x
에스토니아	C		스웨덴 <sup>1</sup>	R	
핀란드 <sup>1</sup>	R		스위스		x
프랑스		x	터키		x
독일			영국	C	
그리스	R		미국		
헝가리		x			
아이슬란드	R		<b>기타 주요 국가들</b>		
아일랜드	C		아르헨티나	C	x
이스라엘	R/C		브라질		x
이탈리아		x	중국		x
일본	C		인도		x
한국			인도네시아		
룩셈부르크	C	x	러시아	C	
멕시코		x	사우디아라비아		x
네덜란드	R		남아공	R	

주: R = 거주기반; C = 기여기반

1. 호주는 노령연금, 핀란드는 국민연금, 노르웨이는 보장연금, 스웨덴은 보장연금이 거주기반이므로 기초연금으로 분류함.  
출처: 본 보고서의 제11장 “국가별 현황”

<http://dx.doi.org/10.1787/888933300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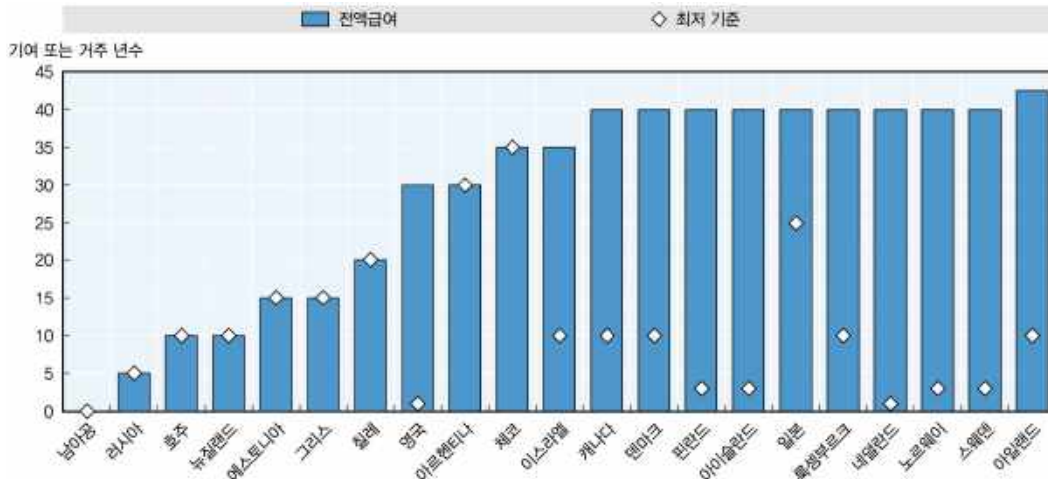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에서 수급자격 기준은 거주 또는 기여에 근거한다. 거주에 근거한 연금은 북유럽 국가들에서 일반적이는데 5개국 모두 전액급여를 받으려면 40년의 거주기간이 필요하며(그림 2.1),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급여액도 낮아진다. 캐나다와 네덜란드에서 전액기초연금을 받으려면 40년이 필요한 반면, 칠레에서는 단지 20년이 필요하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거주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는데 단지 10년간 거주 후 전액급여가 지급된다. 단, 호주의 경우 5년간은 계속 거주해야 하고 뉴질랜드의 경우 50세 이후 5년간 계속 거주해야 한다. 그리스에서 15년간 거주한 사람을 위한 기초연금이 2015년 1월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OECD 비회원국 중 남아공에서는 거주자이기만 하면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기여에 근거한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기여 년수는 국가별로 매우 다르다.

룩셈부르크에서 전액급여는 40년간 기여금 납부 후 가능한 반면, 체코(2019년부터 35년으로 늘어날 전망)와 영국에서는 30년간의 기여가 필요하다. 영국에서 현행 기초연금 자격요건이 2016년까지 유지될 전망이고, 2016년에는 전액급여를 받으려면 35년간의 기여를 요하는 새로운 국가연금(nSP)으로 대체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지급액을 받기 위한 최소 기여 년수를 필요로 한다. 각국의 최소 기여 년수는 영국의 1년(현행 제도에서 1년인데 nSP의 도입으로 10년으로 조정될 예정임)에서 룩셈부르크의 10년까지 다양하다. 최소 기여 년수 미만의 기여를 한 사람은 어떠한 급여도 받지 못할 것이다. 체코에서 기초연금은 30년간 기여금 납부 후 지급되는데, 이 기간이 2019년에 35년으로 연장되며 추가된 년수에 대한 연금증액은 없다. 아일랜드에서 기여금을 납부한 총 주의 수(최저 520주)는 최초의 기여시점부터 연금수급연령까지의 전체 근로기간 동안의 연간 평균으로 산출된다. 이 평균값이 48주 이상이면 완전연금을 수급하게 되며 그 이하이면 상응하는 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다만 최소 24주 이상이어야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완전연금을 수급하려면 퇴직 전까지 520주를 납부해야 가능하다. 비회원국 중 러시아연방의 경우 최소 5년 이상 기여금을 납부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림 2.1. 기초연금 수급에 필요한 기여 또는 거주 년수



주: 영국의 경우 새로운 국가연금에서 전액급여를 받으려면 35년간 기여가 필요하고 최저급여를 받으려면 10년간 기여해야 함. 아일랜드의 경우 20세 노동시장 진입과 66세 은퇴를 반영하면 평균 48주씩 42.5년간의 기여가 필요함.  
 정의: 기초연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거주 년수 또는 기여기간에 근거해서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함.  
 출처: 본 보고서의 제11장 “국가별 현황”

<http://dx.doi.org/10.1787/888933300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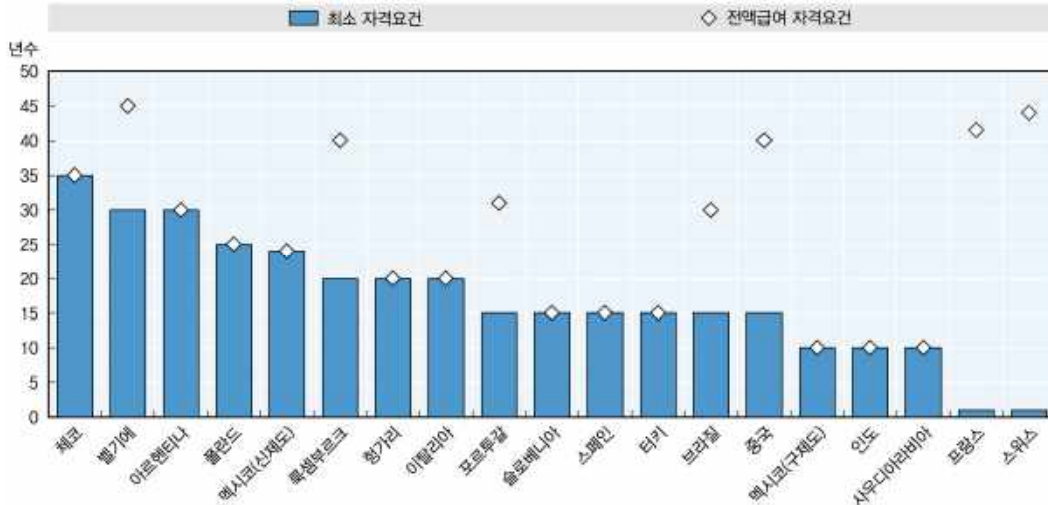
### 최저연금

기여에 기반한 기초연금은 대개 정액급여의 형태를 띠는 반면, 최저연금은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보충제도(top-up)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자격조건을 평가할 때 기타 소득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전액최저연금 수급에 필요한 기여 년수는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의 15년부터 벨기에의 45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그림 2.2). 프랑스에서 기여기반 최저연금의 수급자격을 얻으려면 연령이 최소 61세 2개월(2017년부터 62세)이며 41.5년간 기여했거나, 65세 이상(2022년까지 67세로 증가)이어야 한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30년 이상 기여금을 납부하면 약간 더 높은 최저연금이 지급된다. 멕시코의 신제도 하에서는 1997년 이전에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민간부문 근로자는 최저연금 수급자격을 갖기 위해 1,250주(약 24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은퇴를 관장하는 구제도는 최저연금 수급을 위해서 단지 500주간의 기여금 납부를 요한다.

일반적으로 최근 몇 년간 최저연금 수급규정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체코에서 기여금 납부 연수가 수급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연장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필요한 기여 연수가 40년에서 41.5년으로 최근 상향 조정되었고,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라 2035년까지 43년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여금 납부기간에 관계없이 65세(67세로 늘어날 예정임)에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기여금을 30년 이상 납부한 경우 최저연금액은 약 10% 증가한다.

그림 2.2. 최저연금 수급에 필요한 기여 연수



정의: 최저연금은 특정 제도의 최저연금 또는 모든 제도를 합친 최저연금을 말함. 급여수준에 기타 연금소득을 감안할 수 있음.

출처: 본 보고서의 제11장 “국가별 현황”

<http://dx.doi.org/10.1787/888933300306>

폴란드에서 남성이 최저연금을 받기 위해 기여금을 납부해야 할 연수는 25년으로 일정하다. 이에 반해 여성의 경우 2014년부터 21년에서 점차 연장 중이며 2022년에는 25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남성과 여성의 연금수급연령은 시간이 지나면서 같아져야 한다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거주 또는 기여 연수가 전액급여 수급의 유일한 결정요소는 아니다. 연령 요건도 있으며 국가 간에 약간의 차이도 존재한다. 장기적으로 은퇴연령이 대부분 OECD 국가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최소 67세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은퇴연령이 통일되고 있고/있거나 향후 수십 년 동안 연장되는 등 많은 국가는 현재 과도기에 있다. 표 2.2는 사람들이 기초연금과 최저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은퇴할 수 있는 연령을 보여준다.

### 2.3. 급여 수준

수급요건의 차이 이외에도, 국가별 지급액의 금전적 가치 차이가 상당하다. 게다가 일부 급여는 또한 자산조사에 기초하기 때문에(섹션 2.4), 소득이나 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빠르게 감액된다. 분석의 초점을 먼저 기초연금에 맞추고 그 다음에 최저연금에 맞춘다.



기초연금의 가치는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기초연금의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뉴질랜드로 앞서 언급한 대로 거주요건이 겨우 10년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소득의 40% 이상을 보장한다(그림 2.3). 호주에서도 꽤 높은 소득을 보장한다. 호주의 노령연금제도는 평균소득의 25% 이상을 제공하고 이와 더불어 보건, 집세보조, 약값, 기타 생활비 감면이나 보조 등 포괄적 제도를 제공하는데 급여가 자산조사적(소득과 자산 모두에 대한)이지만 조사가 매우 엄격하지는 않기 때문에 호주 연금 수급자의 약 80%가 적어도 노령연금액의 일부는 받는다. 네덜란드에서 전액 기초연금은 평균소득의 25%를 넘으며 거주 년수에 비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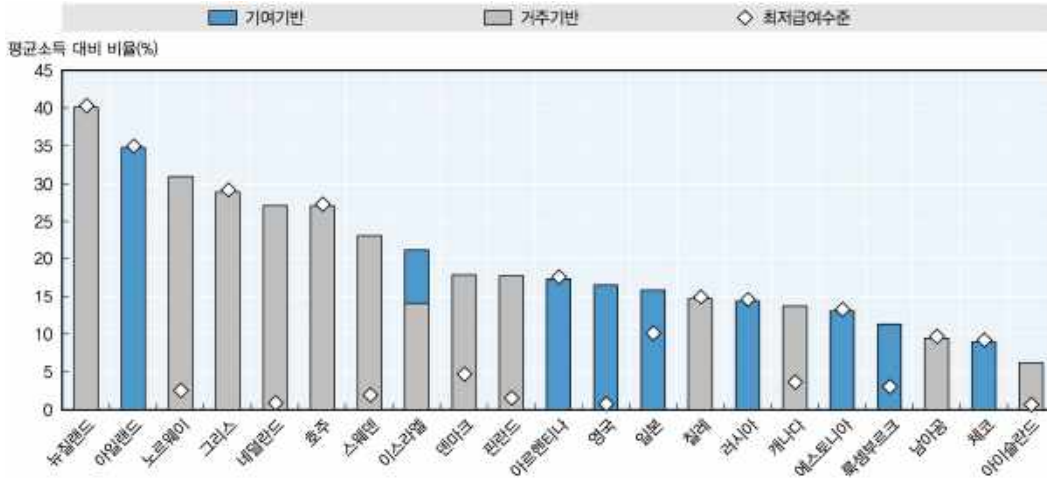
표 2.2. 기초연금 및 최저연금의 수급연령: 2014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b>OECD 회원국</b>			<b>OECD 회원국(계속)</b>		
호주	65.0	65.0	노르웨이	67.0	67.0
오스트리아	65.0	60.0	폴란드	65.0	60.0
벨기에	65.0	65.0	포르투갈	66.0	66.0
캐나다	65.0	65.0	슬로바키아	62.0	62.0
칠레	65.0	60.0	슬로베니아	65.0	65.0
체코	62.7	61.3	스페인	65.2	65.2
덴마크	65.0	65.0	스웨덴	65.0	65.0
에스토니아	63.0	61.0	스위스	65.0	64.0
핀란드	65.0	65.0	터키	60.0	58.0
프랑스	61.2	61.2	영국	65.0	62.0
독일	65.3	65.3	미국	65.0	65.0
그리스	65.0	65.0	<b>OECD 평균</b>	<b>64.7</b>	<b>63.5</b>
헝가리	62.5	62.5			
<b>아이슬란드</b>	67.0	67.0	<b>기타 주요 국가들</b>		
아일랜드	66.0	66.0	아르헨티나	65.0	60.0
이스라엘	67.0	62.0	브라질	65.0	60.0
이탈리아	66.3	62.3	중국	60.0	60.0
일본	65.0	65.0	인도	58.0	58.0
한국	65.0	65.0	인도네시아	55.0	55.0
룩셈부르크	65.0	65.0	러시아	60.0	55.0
멕시코	65.0	65.0	사우디아라비아	60.0	55.0
네덜란드	65.2	65.2	남아공	60.0	60.0
뉴질랜드	65.0	65.0			

출처: 본 보고서의 제11장 “국가별 현황”

<http://dx.doi.org/10.1787/888933300977>

그림 2.3. 평균소득 대비 기초연금의 수준



주: 최저급여액은 최소기간요건이 충족되면 수급이 가능한 금액임(그림 2.1 참조)  
출처: 본 보고서의 제11장 “국가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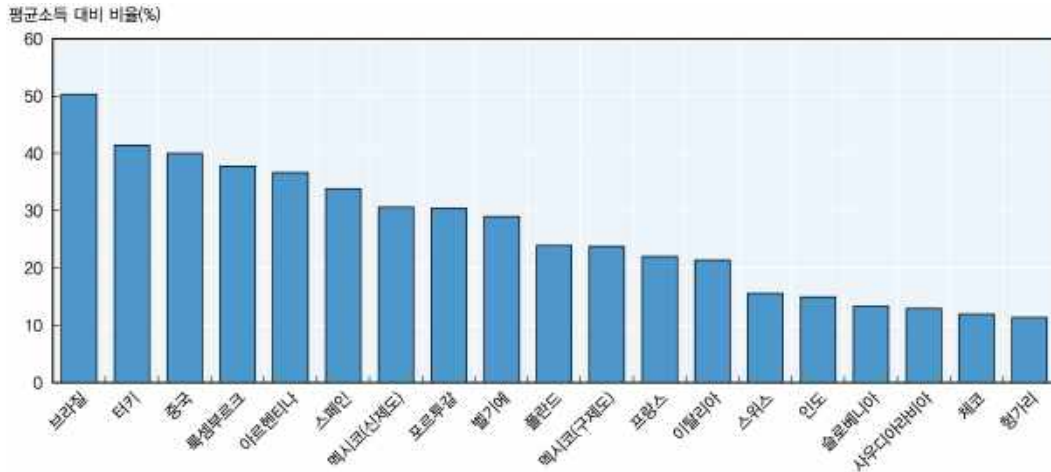
<http://dx.doi.org/10.1787/888933300318>

북유럽 국가들은 다른 소득원을 고려해서 일부 급여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급여를 정액 소득이 아닌 보충지원금으로 간주하며 모든 사람이 전액을 받지는 못한다. 기초급여는 노르웨이에서 평균임금의 31%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공하고, 덴마크와 핀란드에서는 약 18%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공한다. 스웨덴에서는 급여율이 평균소득의 23%로 높은 편이나 핀란드와 노르웨이 처럼 소득비례연금에 의해 상쇄된다(급여가 인출되는 방법이 갖는 영향은 다음 섹션에서 다룸). 캐나다와 칠레도 기초연금을 제공하지만 호주, 뉴질랜드와 북유럽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인 평균 소득의 15%에 근접하며, 소득조사적 요소로 보충된다. 마지막으로 아이슬란드에서 기초연금 수준이 가장 낮는데 평균소득의 겨우 6% 수준이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추가적 안전망 지급액이 존재한다.

기여기반 기초연금을 제공하는 그림 2.3에 나타난 국가들의 경우, 급여의 가치가 다른 국가들의 거주기반 제도의 평균소득 대비 비율보다 대개 낮게 설정된다. 그러나 아일랜드는 예외인데 2014년에 평균소득의 35%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을 제공했다. 전액연금은 일본과 영국에서 평균소득의 15%를 약간 넘었고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남아공, 체코에서는 15% 미만이었다. 앞서 지적한 대로 영국의 비율은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수준을 반영한 것인데, 2016년에 도입 예정인 새로운 국가연금제도에서는 35년을 기여하면 평균소득의 22%를 지급한다.

최저연금제도를 가진 국가들이 제공하는 평균 전액급여액은 평균소득의 25%에 해당하는데 이는 기초연금제도의 20%와 비교되는 수준이다. 최저연금 수준은 체코와 헝가리에서 평균소득의 12%, 터키의 42%, 브라질의 50% 등 다양하다(그림 2.4).

그림 2.4. 평균소득 대비 전액최저연금의 수준



출처: 본 보고서의 제11장 “국가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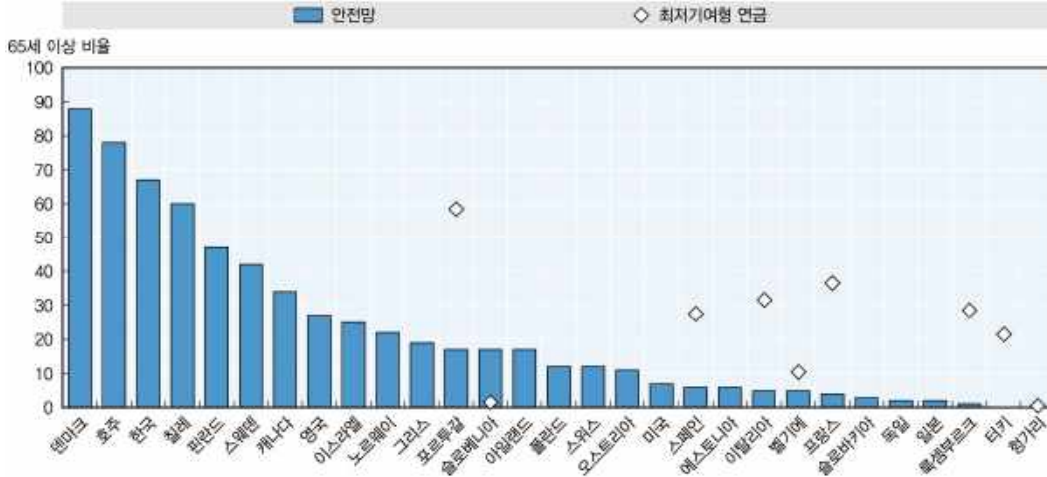
<http://dx.doi.org/10.1787/888933300323>

전액급여의 수준과 수급자격에 필요한 기여 연수 간 관계는 대단히 흥미롭다. 예를 들자면, 룩셈부르크에서는 단지 20년의 기여를 하고 평균소득의 38%에 상당하는 최저연금을 받는 반면, 벨기에에서는 45년의 기여를 해야 평균소득의 29%를 받는다. 그림 2.4에 제시된 전액급여의 비율은 수급자가 전액수급자격을 가질 정도로 오랜 기간 기여했음을 가정한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기여기간에 따른 차등급여(staggered)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포르투갈에서는 31년 이상 기여하면 최저연금이 전액 지급되는데, 21-30년간 기여한 경우 전액 지급액에서 20%가 감액되고, 15-20년간 기여한 경우 27%가 감액되고, 15년 미만 기여한 경우 33%가 감액된다. 많은 국가가 완전 기여조건에 부족분에 비례해서 급여수준을 줄이는데 반해, 벨기에는 저소득자나 경력의 대부분을 시간제로 일한 근로자를 돕기 위한 최저 연간크레딧제도를 갖추고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자격요건은 손대지 않고 있지만, 많은 국가에서 지난 수년 동안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개정을 시행했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대개 명목액의 동결이 수반되는데, 헝가리, 아일랜드, 포르투갈에서 모두 2000년대 후반 이래 급여의 증가가 없었다. 동결과 연동정책의 영향 및 결과는 섹션 2.5에서 다루어진다.

최저연금을 수령하는 인구의 비율은 헝가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1% 미만부터 포르투갈의 약 60%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그림 2.5). 헝가리에서의 낮은 적용률은 최저연금이 평균소득의 11%밖에 되지 않지만 평균소득의 50%인 근로자가 소득비례제에서 10년만 기여하면 이 수준보다 높은 연금을 받는다는 점에 기인한다. 프랑스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거의 37%가 최저연금을 받고 있으며 룩셈부르크에서는 이보다 약간 낮은 29%가 받고 있다. 선별적 안전망 급여의 수급률 격차는 더 크다. 덴마크에서 거의 90%가 선별적 안전망 급여를 받고 있고 호주에서는 80% 정도가 받는다. 이 두 국가에서 선별적 안전망 급여액은 다른 급여에 의해 상계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부분급여만을 받는다. 반면에, OECD 국가의 2/3 이상에서 20% 미만의 수급률을 보이는데, 연금 수급자들이 대개 개인연금이나 기타 출처로부터 수급기준 이상의 소득을 얻기 때문이다.

그림 2.5. 최저연금과 안전망연금의 수급률: 2012년



출처: OECD 국가의 대표들이 제공한 정보

<http://dx.doi.org/10.1787/888933300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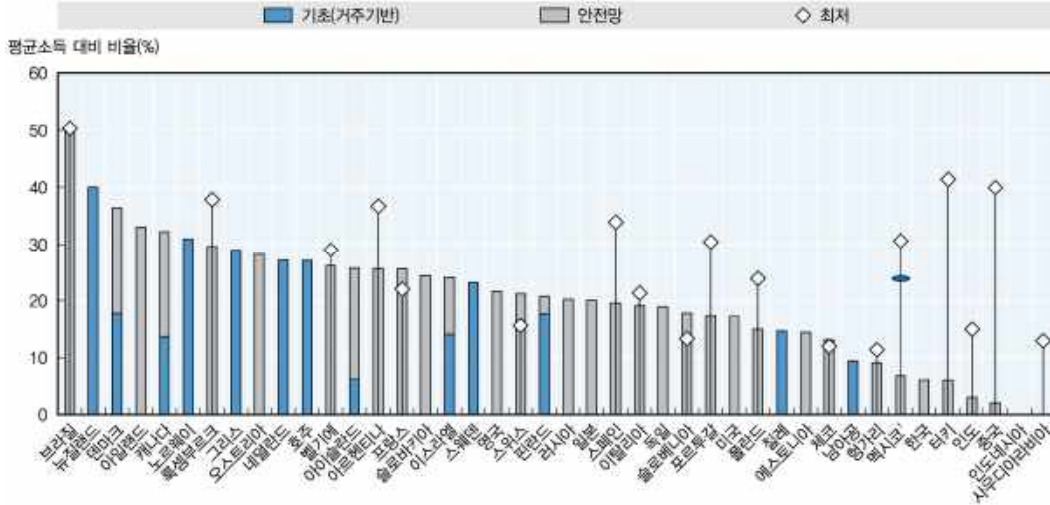
## 2.4. 기여기반 기초연금과 최저연금의 수급자격이 안 될 경우

노인들이 기여기반 연금의 수급자격을 가질 정도로 오랜 기간 기여를 하지 못한 경우 주로 사회 부조의 형태를 띠는 안전망 급여에 의존한다. 이는 사회 내 가장 취약한 구성원을 위한 지원의 최후 보루이다. 사회부조급여의 설계는 OECD 국가별로 매우 다르다. 어떤 제도는 소득이나 자산의 상한 선을 두는 반면 다른 제도는 소득에 근거해서 점차적으로 감액한다. 실제 제공되는 지원의 수준도 차이가 크다. 많은 국가에서 주택 또는 난방이나 돌봄을 위한 부가적 지원을 제공하며 의복이나 교통 등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섹션의 후반부에서 언급된다.

본 장은 안전망 급여를 개인들이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으로 정의하는데, 이때 개인들이 근로기간 동안 기여금에 대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정도 이상으로 연금에 대한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본 장은 또한 개인들이 은퇴한 국가에서 출생 이후 계속 거주해왔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주기반 전액급여를 받을 자격을 갖는다. 이 관점에서, 거주기반 연금은 안전망 제도의 한 형태이며 기초연금이기도 하다.

그림 2.6은 1층 급여의 전체적인 그림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림 2.3과 2.4에 제시된 정보와 안전망 급여의 가치를 결합시켰다. 브라질에서 안전망 급여가 평균소득의 50%에 상당할 정도로 가장 높았으며, 뉴질랜드에서는 40%를 조금 넘는다. 중국과 인도의 안전망 급여는 평균소득의 3% 미만에 불과하여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안전망 급여가 없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최저연금은 존재한다.

그림 2.6. 평균소득 대비 1층 급여의 가치



1. 멕시코에 대한 표시는 국민간부문제도의 급여임을 나타내는데 이 급여가 여전히 많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평균소득의 23.8%에 해당함.  
 모든 국가의 최저연금은 완전경력 근로자를 기준으로 함.  
 출처: 본 보고서의 제11장 “국가별 현황”

<http://dx.doi.org/10.1787/888933300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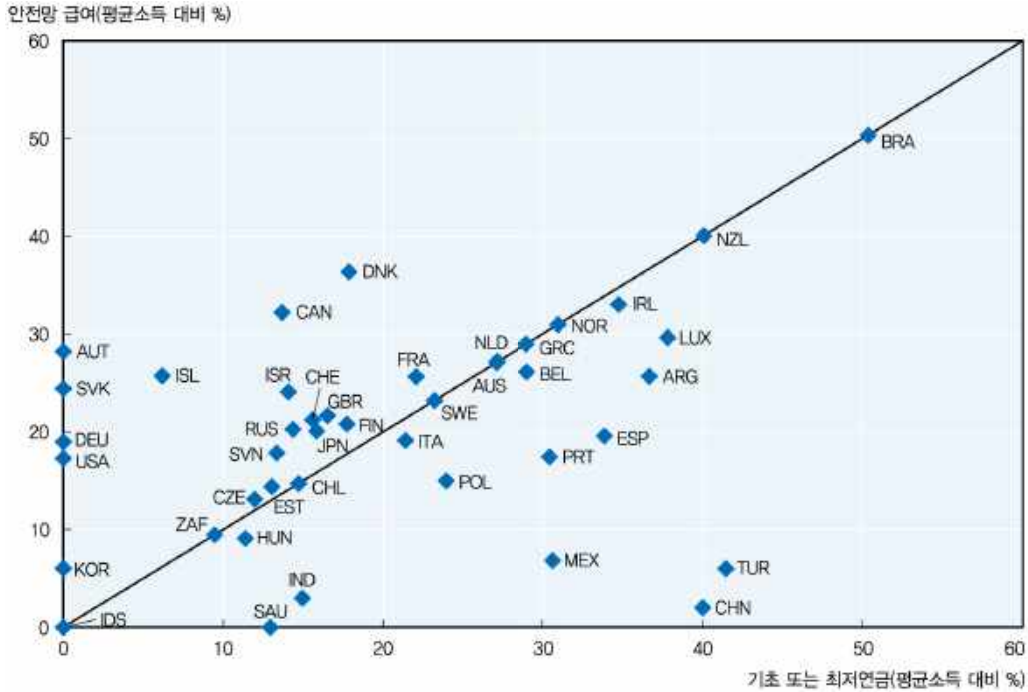
안전망 급여 수준의 차이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1층 연금의 설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뉴질랜드 기초 연금은 거주에만 근거하여 개인의 개별적 기여를 요구하지 않고 세금을 통해 직접 재원을 조달받는 유일한 강제적 제도이다. 호주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노령연금 역시 거주에 기반하며 세금으로 재원이 조달된다. 두 국가 간 주요한 차이, 호주에서는 개인이 강제적인 고용주 부담 사적연금제도(퇴직연금보장제도)에 기여한 경우 노령연금의 안전망 급여는 다른 소득출처에서 오는 소득에 따라 서서히 삭감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개인이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은 전액 노령연금을 받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액 수준의 급여는 캐나다, 칠레, 덴마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 존재하는 거주기반 급여에 대해서 가정된다.

다른 OECD 국가들은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노인인구 중 빈곤한 70%를 대상으로 평균소득의 6%에 상당하는 소득을 제공한다. 마찬가지로 멕시코와 터키의 안전망 급여는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노인을 위해 평균소득 7% 미만의 소득을 제공한다. 중국과 인도의 새 제도는 그 비율이 더 낮아서 중국에서는 2%, 인도에서는 3%에 해당한다. 또 다른 국가들에서 안전망 급여는 중국, 인도, 한국, 멕시코, 터키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기여형 연금을 보충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러나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기본적으로 가정할 때, 안전망 급여는 순전히 사회부조급여로서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는 평균소득의 약 30%에 해당하는 최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소득조사형 보충급여를 갖추고 있는 반면, 에스토니아와 포르투갈의 보충급여는 평균소득의 약 15%만을 제공한다.

사회부조의 급여 수준과 최저 기여 년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를 위한 최저연금 간 비교를 통해서 귀중한 통찰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사회부조와 최저연금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그림 2.7). 예를 들면 터키에서 최저연금 급여는 자산조사형 안전망 급여보다 거의 7배가

높다. 멕시코에서는 5배가 높다. 격차의 크기는 두 국가에서 기여를 통한 자격기준 충족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 완벽한 기여이력을 가정할 때 최저연금액이 안전망 급여액 보다 대략 66%가 더 높다.

그림 2.7. 안전망 급여와 기초/최저연금 간 비교



출처: 본 보고서의 제11장 “국가별 현황”

<http://dx.doi.org/10.1787/888933300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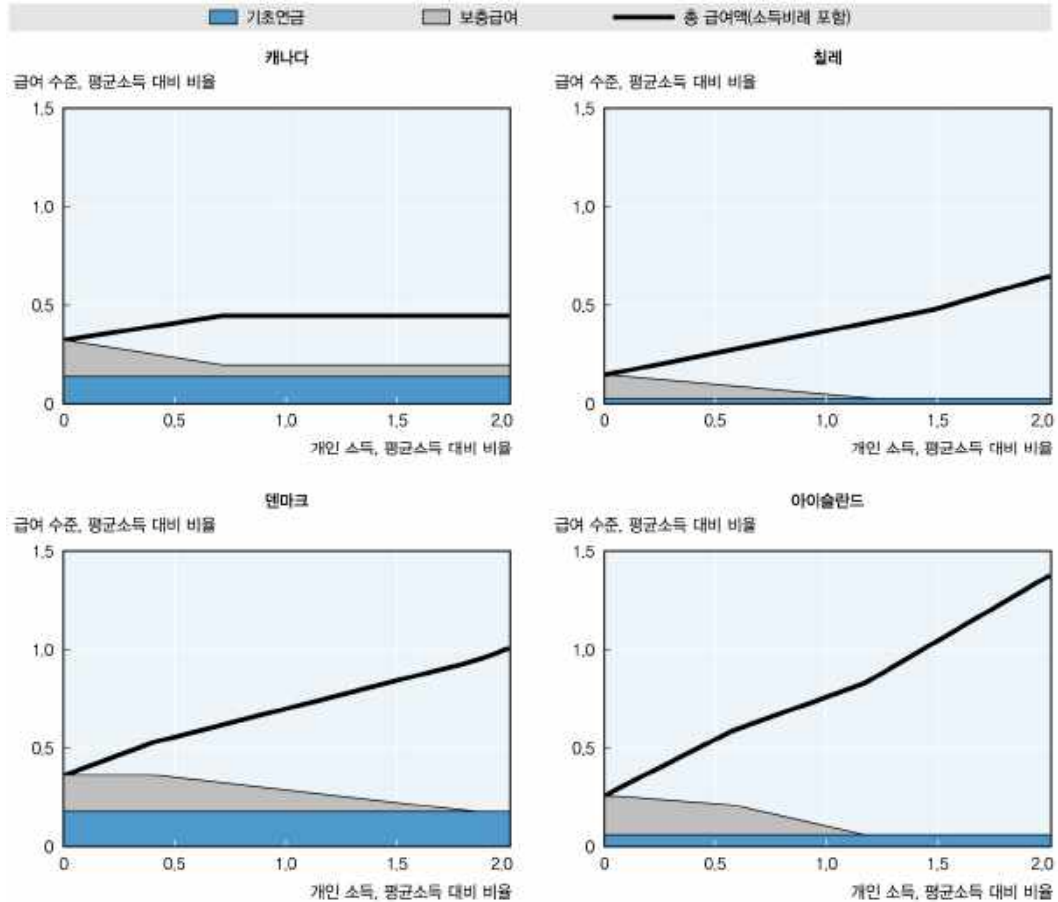
그림 2.7의 좌측에 있는 모든 국가들(오스트리아, 독일, 한국, 슬로바키아, 미국)에 안전망 급여는 존재하지만 기초 및 최저연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에 연금 수급자는 자신의 개인적 기여에 근거해서만 연금을 받는다.

이외에도 선으로부터 가장 위쪽에 위치한 3개국인 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에는 기초연금보다 높은 부가적인 보충연금이 있어서 전반적인 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러한 부가적 급여는 기타 출처로부터의 소득에 대해 상계되므로, 기여금을 납부했던 연금 수급자가 전액의 안전망 급여를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의 소득보조연금(GIS)은 기초연금 이외의 소득에 대해 50%의 비율로 상계된다. 덴마크에서 평균소득의 35%를 넘는 소득(기초연금 포함)에 대한 차감율은 30.9%인 반면에 아이슬란드에서 근로소득, 퇴직연금, 또는 자본소득에 대한 차감율은 기준에 따라 13.35% 또는 38.35%이다. 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칠레에는 개인연금으로 인해 부가적인 자산조사적 급여와 때로는 기초연금액조차 점진적으로 낮추게 하는 “환수(clawback)”요소가 제도 내에 존재한다.

이 4개국에 대해 그림 2.8에서 보여주듯이, 연금제도의 구성요소들 간 상호작용은 소득분포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일부 요소는 변하지 않는데 예컨대 덴마크에서 기초연금은 보편적이어서 불변상태이다. 캐나다와 아이슬란드에서는 기초연금도 다른 소득과 대비되어 설정된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자발적 연금으로부터 추가적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모든 소득 분포에서 전액 수준으로 설정된다.

그림 2.8. 보충제도에서의 환수



주: 2014년에 20세에 근무를 시작하는 완전경력 근로자에 대한 산정으로, 모든 강제적 소득비례제도에 대한 완전 기여를 가정함.

출처: OECD 연금모형

<http://dx.doi.org/10.1787/888933300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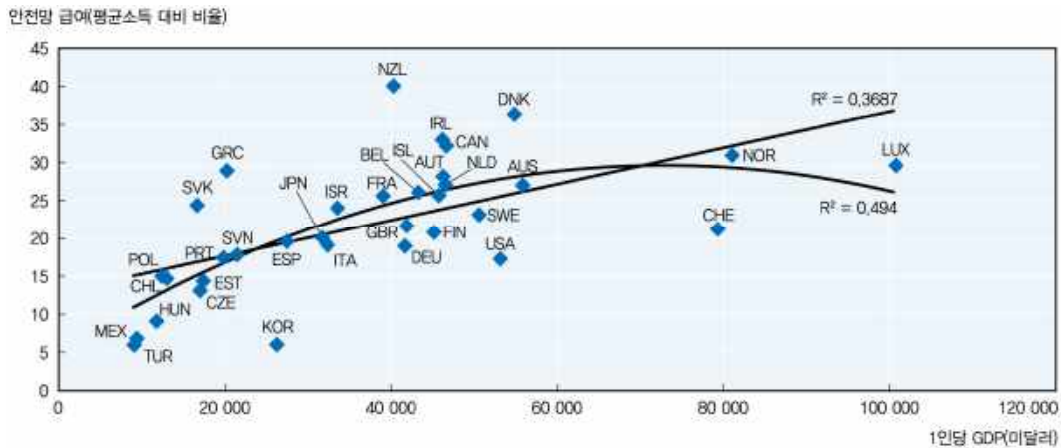
그러나 기초연금 외에 다른 연금의 수준은 과거 소득이 증가할수록 줄어든다. 덴마크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소득비례연금으로 인해 보충급여가 감소한다. 덴마크의 경우 평균소득의 약 40%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평균소득자의 경우, 보충급여는 칠레와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적어서 평균소득의 4%에 해당하지만, 덴마크에서는 평균소득의 10% 이상에 해당하는데 이는 환수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평균소득의 150%를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 칠레에서는 전체 연금이 소득비례연금에서 나오는데 보충급여가 이 소득수준 바로 아래에서 중단되기 때문이다. 아이슬란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충급여가 평균소득의 약 1.2배 수준에서 중단되지만 보편적 연금이 또한 존재한다. 캐나다와 덴마크는 이 소득수준에서 일부 보충연금을 여전히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 덴마크의 경우 평균소득의 180% 까지 존재한다. 캐나다에서 지급되는 급여의 수준은 평균소득의 약 70% 수준에서 불변상태로 유지

되는데 이는 자발적 연금으로부터의 소득이 없으면 환수 규정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수의 OECD 국가에서 안전망 급여가 최저연금과 기초연금보다 약간 높은 소득을 제공하는데 체코와 에스토니아가 그 예이다. 아일랜드에서는 국가연금(기초연금)이 유일한 강제적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비기여형 연금 소득이 완전기여기반 기초연금보다 단지 5%만 낮다. 그러므로 아일랜드에서는 은퇴 이후 소득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만으로는 기여금을 납부할 충분한 유인책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체코와 에스토니아는 추가적인 연금소득 출처를 제공하는 부가적인 강제소득비례제도를 갖추고 있다. 많은 다른 국가(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슬로베니아)에서 안전망 급여의 수준이 기초 혹은 최저연금보다 상당히 높다(그림 2.6). 그러나 체코와 에스토니아처럼 강제적 소득비례제도는 안전망 급여에 대한 의존을 줄여준다. 멕시코와 터키에서 최저연금 수준이 OECD에서 가장 높는데 터키는 평균임금의 41%를 지급한다. 그러나 이 두 국가는 헝가리, 한국과 더불어 안전망 급여 수준이 OECD 최하위인데, 안전망 급여가 한국, 멕시코, 터키에서 평균소득의 약 6%이며 헝가리에서 9%로, 최저 혹은 기초연금을 갖추고 있는 모든 OECD 국가들의 평균은 평균소득의 24%이다.

그림 2.9는 OECD 국가들에서 평균소득 대비 안전망 급여의 가치와 경제발전 사이에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특이점이 비교적 적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4개국, 즉 헝가리, 한국, 멕시코, 터키는 1인당 GDP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안전망 수준을 훨씬 밑돈다. 한국, 멕시코, 터키는 또한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국가에서 급여의 수준을 높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노인 빈곤율이 스위스와 미국에서도 문젯거리인데, 이 두 국가의 안전망 수준은 소득수준이 비슷한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그림 2.9. 1인당 GDP 대비 안전망 급여



출처: 본 보고서의 제11장 “국가별 현황”

<http://dx.doi.org/10.1787/888933300379>

안전망 급여에 의한 지원 외에도 연금 수급자들은 주로 주택비용을 충당하고 다른 필요도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국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예를 들면, 호주에서 연금 수급자들은 보건, 집세, 의료 및 기타 생활비에 대한 수당과 지원을 받는 포괄적 제도에 대한 수급자격을 갖는다(표 2.3). 오스트리아에서도 추가 지급액은 최소한 주택 및 난방 비용을 일부 충당하며 어떤 수급자는



정액수당을 받고 다른 수급자는 조정 가능한 주택급여를 받는다.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에서는 주간 주택비용의 70%까지 보조되는 보충적 주거수당을 제공한다. 스웨덴의 주택급여 역시 독신 연금 수급자 주거비의 93%를 보장하는데 상한액은 평균소득의 15%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보충적인 주택 또는 난방급여를 제공한다.

표 2.3. OECD 국가의 연금 수급자를 위한 보충적 급여

	주택/난방	보건/돌봄	사회부조		주택/난방	보건/돌봄	사회부조
호주	x	x	x	일본	x		
오스트리아	x			한국			x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멕시코			
칠레				네덜란드			
체코	x			뉴질랜드	x		
덴마크	x	x	x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x		x	폴란드			
핀란드	x	x	x	포르투갈			
프랑스	x	x	x	슬로바키아	x		x
독일				슬로베니아			
그리스				스페인	x		
헝가리	x	x	x	스웨덴	x		
아이슬란드	x		x	스위스			
아일랜드	x	x	x	터키			
이스라엘	x			영국	x	x	x
이탈리아				미국			

출처: OECD 국가의 대표들이 제공한 정보

<http://dx.doi.org/10.1787/888933300982>

덴마크에서 노령연금 수급자들은, 특히 유리한 주택급여, 난방급여, 보건수당과 자가 주택에 대한 세금감면 등, 상당히 많은 종류의 보충적 급여에 대한 수급 자격이 있는데 대부분은 소득이나 자산에 따라 상계된다. 연금 수급자들은 가정도우미(home help)와 병원 치료와 같은 많은 종류의 무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 주택급여는 2014년 기준 상한액이 평균소득의 20%이지만 주택비용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게다가 거주 년수가 40년 미만이어서 전액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등 특별히 불리한 연금 수급자의 경우, 필요에 대한 개별 평가에 따라 개인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핀란드에서 가장 중요한 급여는 요양수당과 주택급여이다. 요양수당은 연금 수급자에게 재가요양, 질병, 부상에 따른 니즈와 비용에 따라서 세 가지 요율로 지급되는데 상한액은 평균소득의 대략 10%이다. 주택급여액은 개인소득과 주거비용에 따라 상계되어 변동된다. 최대액수는 평균소득의 대략 20%이다.

보충적 급여의 이러한 예들은 사회부조가 연금 수급자를 위한 소득지원 측면에서는 이제 막 시작 단계임을 보여준다. 현금, 무료 서비스 또는 감액된 수급권 등 여러 형태의 추가적 급여들이 보통 존재한다. 보충적 급여의 전반적인 화폐적 가치를 비교 가능한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보충적 급여가 사회 내 가장 취약한 구성원의 은퇴 후 삶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그러나 많은 급여나 서비스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취약층에게 선별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부조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준다(예: 연금 수급자를 위한 무료 TV 시청권 등).

## 2.5. 급여의 향후 추이

### 연동정책이 미치는 영향

각국의 연동정책은 규칙이 변하지 않는다면 급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지를 결정한다. 연동이란 연금이 예를 들어 임금이나 물가에 따라 매년, 분기별, 또는 매월 조정되는 메커니즘이다. 급여가 임금을 연동된다면 급여는 미래 세대에 대해 상대적인 측면에서 일정성을 유지하는데, 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경제활동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이다. 물가에 연동된다면 퇴직 급여는 실질적으로는 정액이 되며 그럼으로써 퇴직자의 생활수준을 안정되게 한다. 그러나 이는 급여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임금은 생산성 증가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보다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특별히 1층 연금 수급자와 관련이 깊는데 연동정책이 은퇴기간 중 수급자의 구매력 추이 뿐만 아니라 은퇴 시 초기 소득수준도 결정하기 때문이다. 1층 연금이 오랜 기간 동안, 즉 여러 인구 집단에 걸쳐, 물가에 연동된다면, 노령 수급자의 구매력은 같은 연령일 때 더 나이든 인구집단에서부터 더 젊은 인구집단에 이르기까지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제5장에서 상세히 논의하겠지만 OECD 연금모형에서는 물가가 평균적으로 매년 2%씩 오르는 반면, 실질임금은 1.25%씩 오른다고 가정한다. 그 결과 연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매년마다 연금은 임금 대비 1.25%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오랫동안 물가연동을 시행하는 국가에서 연금은 완전경력 근로자들의 소득과 비교할 때 상당히 감소할 것이다. 20세에 완전경력을 시작하는 사람의 경우, 완벽하게 물가와 연동된 급여는 은퇴 시 임금 대비 가치가 현재의 상대적 가치의 약 56%로 떨어질 것이다. 은퇴 후에도 급여의 상대적 가치는 계속 하락할 것이고 그 개인이 85세가 되면 현재의 상대적 가치의 45% 밖에 안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위소득과 연관되어 측정되는 노인빈곤의 위험에 미칠 영향은 확실하다.

1층 연금의 물가연동이 장기적으로 유지된다면, 소득 대비 연금 급여의 가치는 0에 수렴할 것인데, 이는 적어도 대안적 지원수단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비현실적인 시나리오이다. 그러므로 예컨대 물가연동은 비정기적인 의도적 조정(discretionary adjustment)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지만, 조정의 범위나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미래 예측적 분석에서 그것들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기초연금과 최저연금의 연동

거주 또는 기여기반 기초연금을 물가에만 연동시키는 것은 OECD 지역에서 그리 흔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캐나다, 칠레, 핀란드, 그리스, 스웨덴은 거주기반 기초연금을 물가에만 연동시킨다(표 2.4). 다른 국가들은 대안적 접근법을 채택했다. 영국이 한 예로 국가기초연금의 증가는 근로소득의 연간 상승률, 물가의 연간 상승률, 2.5% 중 가장 높은 쪽에 연동된다. 노르웨이의 기초연금 증가율은 임금 연동-0.75%이다. 그러므로 오늘 2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에게 (평균임금 대비 비율로서의) 기초연금은 67세 은퇴할 때 현재 상대적 가치의 약 80%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서 연금은 67세가 될 때까지 임금이 연동되고 그 후에는 물가에 연동되는 반면, 룩셈부르크에서는 급여를 생계비에 연동시키는 표준적 관행 외에도 연금이 임금이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된다.

표 2.4. 제도 유형별 연금 급여의 연동

	기초	최저	안전망
호주	물가 혹은 생활비 중 더 높은 쪽		물가 혹은 생활비 중 더 높은 쪽
오스트리아			의도적 조정
벨기에		물가	물가
캐나다	물가		물가
칠레	물가		물가
체코	임금 33.3%/물가 66.7%	임금 33.3%/물가 66.7%	임금 33.3%/물가 66.7%
덴마크	임금		임금
에스토니아	임금 80%/물가 20%		임금 80%/물가 20%
핀란드	물가		물가
프랑스		물가	물가
독일			임금
그리스	물가		물가
헝가리		물가와 순평균월소득	물가와 순평균월소득
아이슬란드	물가 혹은 생활비 중 더 높은 쪽		물가
아일랜드	임금		임금
이스라엘	물가		물가
이탈리아		물가	물가
일본	67세까지 임금, 그 이후에는 물가		생활비와 임금
한국			물가
룩셈부르크	생활비와 임금을 매년 고려함	생활비와 임금을 매년 고려함	생활비와 임금을 매년 고려함
멕시코		물가	물가
네덜란드	법정 최저임금		법정 최저임금
뉴질랜드	물가와 주기적으로 순평균임금		물가와 주기적으로 순평균임금
노르웨이	임금-0.75%		임금-0.75%

표 2.4. 제도 유형별 연금 급여의 연동 (계속)

	기초	최저	안전망
폴란드		물가	물가
포르투갈		GDP와 주택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	물가
슬로바키아			물가
슬로베니아		임금 60%/물가 40%	
스페인		0.25%와 (소비자물가지수 + 0.5%) 중 하나	기여형 연금 증가분과 최소한 동일
스웨덴	물가		물가
스위스			임금 50%/물가 50%
터키		물가	물가
영국	물가, 임금, 2.5% 중 가장 높은 쪽		물가, 임금, 0.25% 중 가장 높은 쪽
미국			물가

출처: 본 보고서 제11장의 “국가별 현황”과 OECD 대표들이 제공한 추가적 정보

<http://dx.doi.org/10.1787/888933300993>

기초연금과 더불어 최저연금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연동 규칙을 가지고 있다. 체코가 한 예로 최저연금은 임금에 33.3%, 물가에 66.7% 연동된다. 룩셈부르크에서 최저연금은 생계비에 연동되지만, 연간 기여금수입이 연간 연금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실질소득의 증가에 따라 연금을 매년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최저연금을 갖고 있는 국가들 중 절반은 최저연금을 물가에만 연동시킨다.

### 기타 노령안전망 급여의 연동

대다수 국가에서 사회부조급여는 물가에 연동된다(표 2.4). 이것에 예외적인 국가인 체코의 경우 임금에 33.3%, 물가에 66.7%가 연동되며, 에스토니아에서는 임금에 80%, 물가에 20%, 스위스에서는 임금에 50%, 물가에 50%가 연동된다. 노르웨이에서는 임금에 연동되며 매해 0.75%P씩 상계되며, 덴마크는 예외적으로 안전망 급여가 임금에 100% 연동된다. 또한 영국에서 연동에 대한 세 갈래 접근법은 OECD의 장기 가정 하에서 임금과의 연동을 의미한다.

### 빈곤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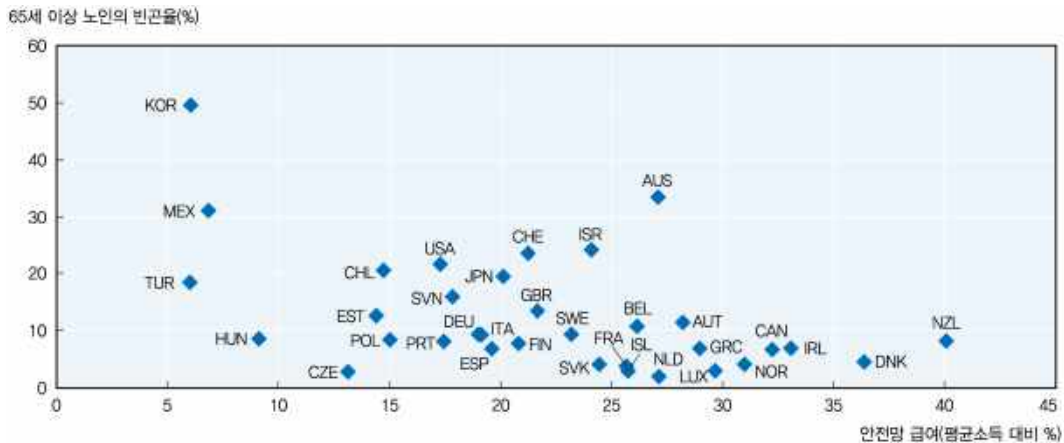
인구집단별 빈곤율은 제8장의 그림 8.4에 제시되어 있다. OECD 평균 빈곤수준은 66-75세에서 11.2%, 75세 이후 연령은 14.7%인데, 인구 전체의 빈곤율인 11.4%와 비교된다. 낮은 안전망 급여와 노인빈곤 간 국가별 상관관계는 명확하지 않다(그림 2.10). 한 가지 확실한 이유는 안전망 급여의 수준이, 여기에서 중위균등화 가구소득의 절반으로 정의된, 상대적 빈곤선과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금제도의 구체적 특징 중 일부는 빈곤에 대한 다소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

- 예를 들어 호주는 안전망 급여(평균소득 대비)가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수준이 매우 높다(하지만 빈곤 기준선 아래임). 호주에서 빈곤 수치가 부풀려졌는데, 이는 연금이 정기적인 연례소득이 아닌 대개 일시금으로 간주되어 빈곤 산정의 근거가 되는 소득통계에 고려

되지 않기 때문이다.

- 체코는 연금 수급자의 빈곤수준이 OECD에서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하지만, 1층 급여는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인구 전체에 대한 빈곤 수치 역시 OECD에서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하며 경제체제 전환기(economic transition period) 이전의 근로자들처럼 비교적 긴 경력을 갖고 있는 경우 저소득자의 연금이 특히 높다.
- 포르투갈과 거의 같은 수준(평균소득 대비)의 안전망 급여를 제공하는 미국은 포르투갈보다 훨씬 높은 빈곤율을 보여준다.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빈곤을 초래하는 소득의 커다란 분배 격차를 일부 반영하는데, 이는 결국 노후소득으로 나타난다. 포르투갈에서 15년 이상 기여한 연금 수급자들은 또한 안전망 급여보다 높은 최저연금에 의해서 추가적인 보호를 받는 반면에 미국에는 최저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 한국은 안전망 급여수준이 가장 낮고 노인 빈곤율은 단연코 가장 높은 눈에 띄는 국가이다. 멕시코는 비슷하지만 덜 극단적인 경우이다.

그림 2.10. 65세 이상 노인의 안전망 급여와 빈곤수준



출처: 본 보고서의 제11장 “국가별 현황”; OECD(2015),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35120-en>.

<http://dx.doi.org/10.1787/888933300388>

만약 기여이력이 안정적일 경우, 물가연동은 미래 퇴직자의 빈곤을 서서히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증가와 많은 국가의 젊은이가 직면한 노동시장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오늘날의 근로자들은 현재의 연금 수급자들과는 다른 경력경로를 밟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지급되는 연금은 근로자들이 현재 기여하고 있는 제도의 규칙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많은 개혁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장기적 빈곤수준의 예측은 매우 어렵지만 1층 연금의 장기적 물가연동은 급여수준에 대한 주기적 재평가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연금 급여의 상대적 가치를 낮출 것이다.

연동규정이 엄격히 시행되는 경우 이미 높아진 노인 빈곤율이 더 높아질 위험이 4개의 OECD 국가에서 가장 심각하다. 앞으로 50년간, 65세 이상 인구는 OECD 지역 전역에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가장 큰 증가는 멕시코(440%)에서 나타나고 터키(360%), 칠레(280%), 한국(240%)이

뒤를 이을 것이다. 4개국 모두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군에 속하며 1층 연금을 물가에 연동시킨 국가들 중 하나이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급여의 상대적 가치 하락이 고령화가 공공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지만, 그 사회적 비용은 대단히 높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명확한 규칙이 연금연동에 관한 입법을 관장하지만 그 규칙이 항상 완벽하게 준수되는 것도, 입법이 항상 시행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임금이 하락함에 따라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는 임금 하락에도 불구하고 2009-10년에 연금의 가치를 동결시켰고 그 이후 임금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동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까지 살펴보면 연금을 물가에 연동시킨 대부분 국가들은 법정 연동율을 준수하고 있었다. 여러 해 동안 물가연동을 시행했던 13개의 국가들\*(표 2.4) 중에서 10개국이 장기적으로 법을 준수했고 벨기에, 폴란드, 스페인은 준수하지 않았다. 캐나다와 미국에서 연금 인상이 물가상승률 지표의 변화와 정확히 일치했고 그 결과 캐나다에서 기초연금이 하락했고 2002년에서 2014년 기간 동안 미국에서 안전망 급여가 상대적 측면으로 약 7% 하락했다.

법정 은퇴연령의 연장 때문에 경력이 더 오래 지속됨에 따라 연금 수급액이 증가하는데 다른 상황이 같다면 안전망 지급액과 기초연금에 대한 의존을 줄일 것이다. 그러나 근무기간 중 충분히 기여를 할 수 없었던 가장 취약한 계층의 경우 45년 후 은퇴 시점에 안전망 급여는 현재 물가연동 규정이 엄격히 적용된다면 충분한 소득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 연동정책 옵션 및 공공재정에 대한 압박

구범적 관점에서 볼 때 유일한 최적의 연동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장기간에 걸쳐 국가들이 적용하는 연동규칙의 스펙트럼에는 물가연동(실질적 동결)부터 임금연동(평균임금 대비 안정적인)까지 포함된다. 물가연동은 절대적 측면에서 퇴직자의 삶의 수준을 보존하며, 1층 연금에 적용될 때 동일한 연령에서 인구집단 간에 수급자들의 삶의 기준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한다. 이는 점차 임금 근로자 소득 대비 연금 수급자의 소득을 낮추게 되는데, 잠재적으로 불평등의 대규모 이동을 유발한다. 반면에 임금연동은 평균적으로 상대적 위치는 유지시킨다. 그러나 지급액을 임금이 연동시키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고령화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감당불가능한 옵션인데 특히 이미 공공재정의 압박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노인부양률(old-age dependency ratio)의 변화는, 특정 급여의 신청자 비중이 노인 인구에서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급여 비용의 추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박스 2.1). 재정적 비용에 대한 영향은 연동이 연금의 초기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1층 연금에서 강화된다.

\* 벨기에, 캐나다, 칠레, 핀란드, 프랑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미국임. 그리스와 한국에서의 급여는 비교적 새로운 제도이며 터키는 최근 물가연동으로 변경함.

박스 2.1. 1층 연금에 대한 공공 지출의 안정화를 위한 연동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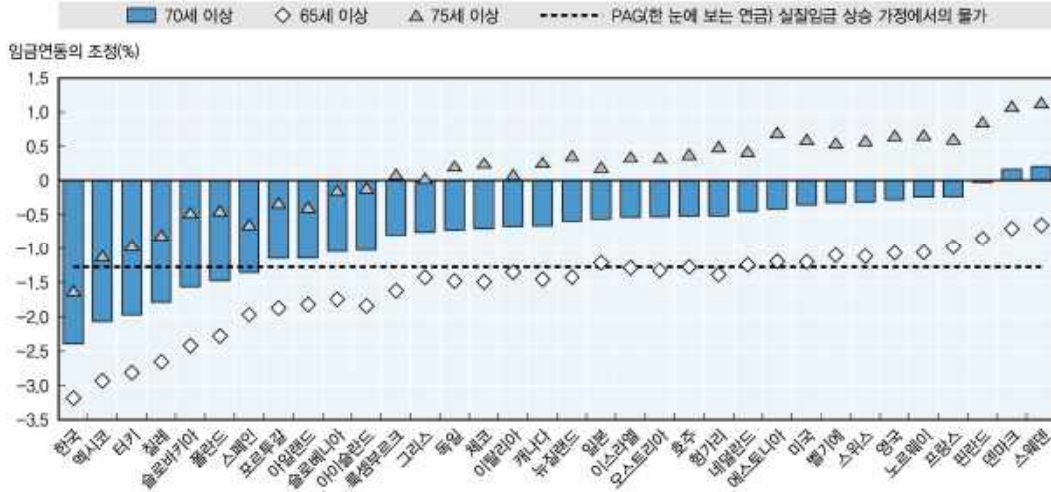
1층 연금에 대한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S = bR/pY$ 를 통해 구해지는데, 여기서  $b$ 는 급여 수준,  $R$ 은 수급자의 수,  $Y$ 는 실질 국민생산,  $p$ 는 GDP 물가지수이다. 수급자는 노인인구  $N$ 의 불변비율  $\theta$ 이며, GDP 대비 노동인구 비율인  $wL/pY$ ( $w$ 는 평균임금,  $L$ 은 총고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alpha$  라고 가정한다(이는 총 생산함수를 콥 더글라스 함수라고 암묵적으로 가정함). 이 경우 지출 비율은  $S = \frac{bR}{pY} = \theta \frac{bN}{pY} = \theta \alpha \frac{b}{w} \frac{N}{L}$ 에 의해서 주어지며, GDP 상수에서 총 급여의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별 급여는 다음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frac{\Delta b}{b} = \frac{\Delta w}{w} = \frac{\Delta N/L}{N/L}$ , 즉 1층 연금은 노인 부양률의 상대적 변화를 차감한 임금에 연동되어야 한다. 이는 개인의 노후기간을 통해서만 적용되는 확정기여형 혹은 확정급여형연금의 연동과는 다르다.

산정을 위해서 노인부양률의 추이는 실제 은퇴연령의 잠재적 연장을 설명하기 위하여 2015년의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2060년에 65세, 70세 혹은 75세 및 그 이상 인구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산정된다.

그러므로 물가연동과 임금연동 사이에 좀더 균형잡힌 접근법은 최소한 삶의 수준(물가 연동)을 유지시키면서도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고령화 상황에서 임금연동 미만, 아래 참조) 방식으로 연동방법의 설계에 인구학적 추세를 고려해 넣는 것이다. 한 가지 시나리오는 인구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GDP 대비 1층 지출 수준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안정된 상태에서 조세나 기여금에 근거한 재정은 GDP를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써 1층 급여의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연동방법은 예상된 인구학적 변화를 감안해서 도출해내었다. 이 시나리오는 어떤 규범적 의미도 갖지 않는데 불평등과 노인빈곤 퇴치와 같은 목표들은 재정적 안정과 상충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시나리오는 일부 국가에서 높은 노인 빈곤율이나 지나치게 관대한 지출을 수반하는 출발점(starting point)은 고려하지 않는다.

박스 2.1에서 설명한 것처럼 1층 지출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은 급여를 노인부양률의 연간 증감률을 차감한 소득에 연동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같은 취지로 노르웨이는 1층 연금을 임금-0.75%에 연동시키는 유사한 규칙을 적용한다. 그림 2.11은 세 가지 시나리오 하에서 예측된 인구학적 변화에 의해서 산정된 임금연동에 대한 필요한 조정을 제시한다. 즉,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의 비율인 노인부양률의 기준연령을 2060년에 65세로 유지시키거나, 70세로 상향 조정하거나, 7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를 상황에 맞게 설명하면, 1950년 인구집단의 기대수명보다 1995년 인구집단의 기대수명(이들은 2015년과 2060년에 각각 65세가 됨)이 약 12세가 높다. 예컨대 만약 연장된 실제 은퇴연령을 통해서 노인 고용률이 증가한다면 임금연동을 통해서 추론된 계수(즉, 노인부양률의 변화)는 절대적 측면에서 낮아지고 1층 연동 규칙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지 않고 임금연동에 근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폴란드의 경우 2015-60년의 노인인구를 계산하는 연령기준을 65세로 유지시키면 노인부양률이 연간 2.3% 증가한다. 그러나 만약 연령기준이 점차 연장되어 2060년에 70세가 되면 노인부양률은 매년 평균 1.5%씩 증가할 것이다.

그림 2.11. 고령화를 감안한 2015-60년의 (GDP 대비) 안정된 지출 달성을 위한 1층 연금의 연동



주: 65세 이상, 70세 이상, 75세 이상은 연령기준(65, 70, 75)을 근거로 하며 20세부터인 생산가능인구 대비 2060년의 노인부양률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됨.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the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 2012 Revision Data.

<http://dx.doi.org/10.1787/888933300398>

2015년에서 2060년 기간 동안의 1층 연금지출(GDP 대비 비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그림 2.11), 급여는 다음과 같이 연동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노인부양률을 계산하기 위하여 기준연령을 65세에 고정시켜 놓고 OECD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임금에서 1.6%p 차감
- 2060년에 70세를 노인인구 기준으로 사용해서 임금에서 0.8%p 차감
- 75세를 기준으로 사용해서 임금이 0.1%p를 가산

사실상, 2060년까지 유효연령 파라미터가 5년 늘어난다 해도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연동은 임금에 훨씬 못 미칠 것이다. 그러나, 이는 OECD 국가 평균적으로 1층 급여를 물가+0.5%p에 연동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기준선 PAG(한 눈에 보는 연금) 전망처럼 실질임금상승률을 연간 1.25%로 가정한다. 달리 말하면, 앞으로 50년간 물가연동을 한다면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직접적인 절약이 발생할 것인데, 그럼으로써 지출 안정화 필요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는 것보다 수급자들의 상대적 위치는 훨씬 더 낮아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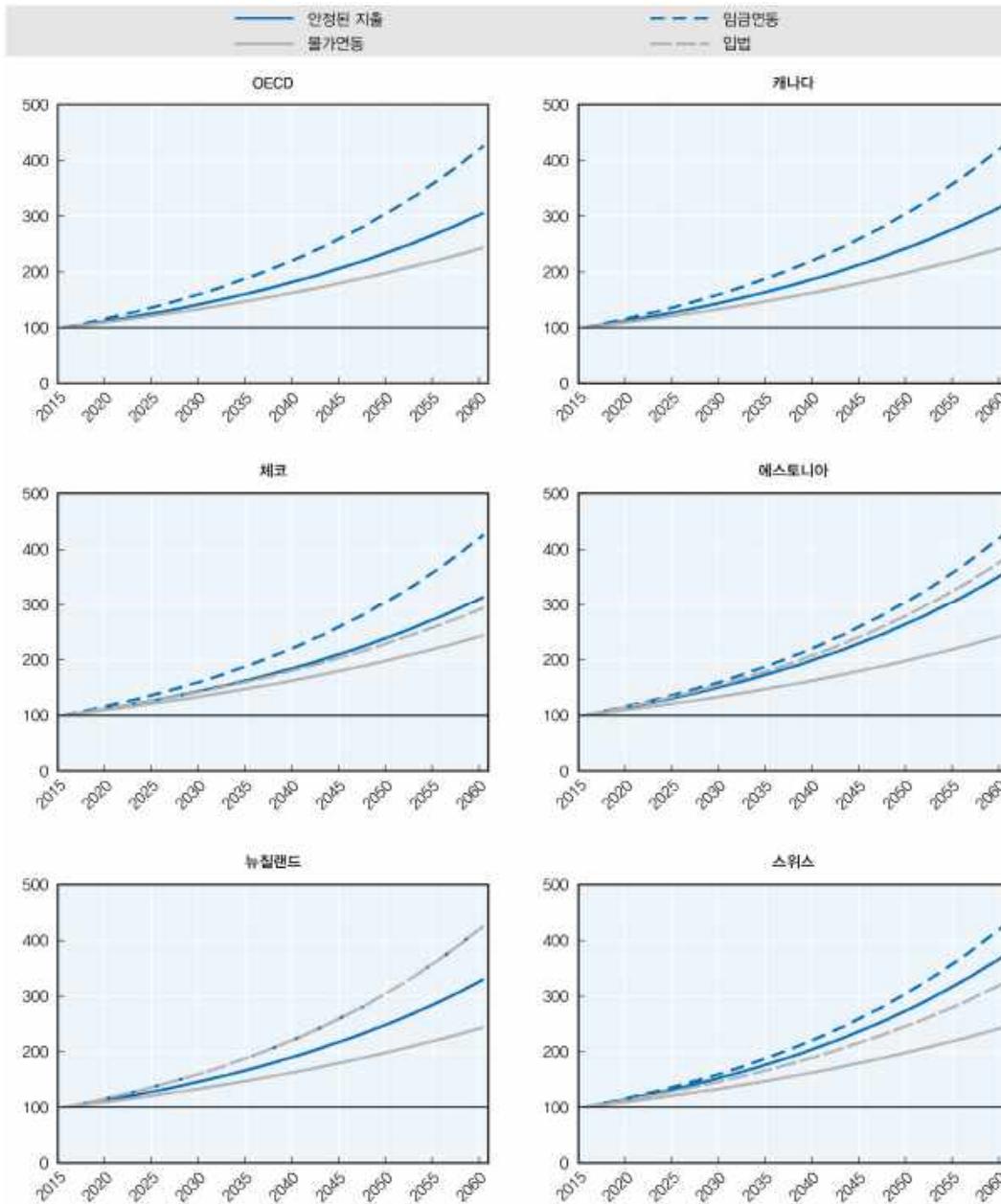
이러한 평균치는 국가별로 나타나는 커다란 격차를 감춘다. 특히, 70세 연령기준에 근거하는 경우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 때문에 칠레, 한국,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키에서의 1층 급여는 안정된 지출을 위하여 임금-1.5~2.4%p로 연동될 필요가 있다. 이는 실질임금상승률에 대한 PAG 가정에 따라 물가 이하의 연동을 의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들 국가에서 연령기준이 2060년까지 5년이 연장된다 해도 미래에 지출은 증가하거나(일부 국가의 현재 지출 수준은 낮음) 수급자의 삶의 기준이 하락할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1층 급여 수준은 은퇴연령이 5년 연장된다는 가정 하에서 임금상승률보다 매년 약 0.2%p 높게 증가할 수 있다.

2060년까지 은퇴연령이 5년 연장된다면, OECD 경제 가정에 근거한 현행 연동정책 하에서 많은 국가들이 1층 연금지출(GDP 대비 비율)의 안정화에 근접하게 된다(그림 2.12는 국가의 하위 단위와 부속 영토를 포함한 내용임). 에스토니아의 경우 OECD 경제 가정 하에서 안정된 지출의 유지는 1층 연금을 명목임금상승률에 약 70%(그리고 물가상승률에 30%) 연동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반면에,



현재 규칙에 따르면 임금에 80%(그리고 물가에 20%) 연동함으로써 지출의 안정화에 근접한다. 마찬가지로 체코는 1층 연금지출의 약 33%는 임금에, 약 67%는 물가에 연동시킴으로써 일정한 지출률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는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스위스에서 임금에 50%, 물가에 50% 연동되었고 이로 인해 약간의 재정여력이 생기는데, 장기적으로 안정된 지출은 약간 더 관대한 연동 산식에 의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12 기준연령이 5년 연장된다는 가정에서 1층 급여에 대한 연동접근법들의 비교



주: 수직축은 명목적 급여의 수준, 2015년 = 100. 수치는 물가연동, 임금연동, 입법, 예측된 인구변화를 감안해서 GDP에서 차지하는 1층연금 지출의 비율을 안정화시키는 상황(박스 2.1) 등 다양한 연동 시나리오 하에서의 급여의 추이를 보여줌.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the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 2012 Revision Data.

<http://dx.doi.org/10.1787/888933300409>

일부 국가들에서 1층 연동에 관한 현재의 법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장기적으로 상당한 절감(GDP 대비 비율로써)을 유발할 수 있는데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스웨덴과 미국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법에 의거하면, 물가에 연동시키지만, GDP 대비 1층 지출의 안정화는 임금-0.75%p에 연동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데, 즉 이는 OECD 가정에 따르면 물가보다 0.5%p 높은 것이다.

반면에 현행 법이 엄격히 적용된다면 칠레,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영국에서 GDP 성장률보다 지출이 더 빨리 증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에서 연동은 물가보다 0.5%p 높아야 하지만, 실제 연동은 평균임금을 참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출 전망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최초의 지출수준도 감안해야 한다. 예를 들면 멕시코에서 사회 및 연금지출의 GDP 대비 현재 비중은 낮다. 그러므로 노령연금제도의 관대함(장기적으로 사라질 것임)과 뿌리 깊은 분절성 때문에 연금제도가 재정적 압박에 놓이게 될 것이지만 노령 안전망 지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한다(OECD, 2015a). 마찬가지로 칠레, 아이슬란드, 한국에서는 현재의 지출이 매우 낮다.

## 2.6. 결론과 정책적 함의

### 주요 결과

본 장에서 근로기간 중 기여나 특정 연령의 거주 년수에 근거한 기초 및 최저연금에 대한 자격 조건과 그 가치에 대해 분석했다. 또한 노인빈곤에 대한 보호막 제공에 있어서 근로기간 동안 충분한 기여를 할 수 없었던 수급연령 이후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회부조급여의 역할을 고찰했다. 그리고 나서 급여연동의 영향에 대해 논의했는데 현행법에 근거해서 급여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모든 국가는 최저소득보장으로써 설계되었든 또는 거주기반(기초)연금을 통해 제공되든지 간에 이런 저런 형태의 노령안전망을 갖추고 있다. OECD 국가들의 절반은 주거기반 또는 기여기반 기초 연금을 보유하고 있다. 급여의 가치는 아이슬란드의 평균소득 6%에서 뉴질랜드의 40%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뉴질랜드는 세금으로 재정이 조달되는 기초연금제도 이외에 강제적 연금은 없다. 기초 연금이 기여에 기반하는 국가들의 경우, 룩셈부르크와 영국(새 제도에서)에서 최초의 급여를 받으려면 10년만 기여하면 되는데, 급여가 추가적 기여 년수에 따라 증가하며, 반면에 체코에서는 급여의 수급 자격을 얻으려면 35년 이상의 기여가 필요하다.

연금제도에 대한 기여기간에 근거한 1층 최저연금이 OECD 국가들의 1/3에서 존재하는데 체코와 룩셈부르크는 기초연금과 최저연금이 모두 있다. 최저연금의 가치는 룩셈부르크와 터키에서 평균 소득의 약 40%이지만 체코, 헝가리, 슬로베니아에서는 15% 미만이다. 슬로베니아와 터키에서는 단지 15년의 기여를 요하는 반면 체코의 자격획득을 위한 기간은 35년이다.

기여형 연금의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보장하는 안전망 급여액이 OECD 평균적으로 평균소득의 22%에 달하지만 터키와 한국의 평균소득 6%부터, 덴마크의 36%, 뉴질랜드의 40%까지 액수에서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다. 기여형 최저연금의 가치는 OECD 10개국에서 안전망 급여보다 실제로 낮았는데, 연금 수급자들은 자산조사형 안전망 급여를 보충급여로 신청할 수 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모든 1층 급여들이 어떻게 연동이 되느냐가 수혜자들의 소득전망에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는 특별히 이제 막 경력을 시작한 근로자의 미래 연금의 상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노후의 빈곤위험에도 영향을 미친다. 물가연동은 사회부조급여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인해 1층 급여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메커니즘인데, 임금이 물가보다 빠르게 상승하므로 연금 급여를 장기간 동안 물가에 연동하면 근로자 대비 연금 수급자의 상대적 소득이 낮아질 것이다. 표준적 OECD 가정에서 물가연동은 1층 연금 대비 임금의 최초 비율을 45년 후에는 56% 낮출 것이다. 칠레, 한국, 멕시코, 터키는 모두 1층 급여를 물가에 연동시켰고, 노인 빈곤율이 높고,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 정책적 함의

각국 정부가 처한 예산압박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을 임금이 아닌 물가에 연동시키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국은 급여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노인빈곤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경제적 혼란기에 청년 근로자의 실업률이 특히 높았던 많은 국가에서(OECD, 2014) 근로자가 전체 경력기간 동안 연금제도에 기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제3장 참조). 결과적으로 1층 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 최저연금의 수급을 위해 필요한 기여 연수가 길다. 예를 들어, 체코에서 35년, 폴란드에서 25년, 멕시코에서 24년의 기여가 요구된다. 이들 국가 중 일부에서 상응하는 급여 감액과 함께 수급자격에 필요한 기간을 줄이거나 기여기간에 따라서 증액되는 차등적(staggered) 최저연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단지 10년, 포르투갈에서는 15년의 기여기간만 필요하다.

일부 국가에서 노인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1층 연금 수준은 다른 국가들보다 낮다. 한국, 멕시코, 터키는 경제발전 수준을 감안해도 OECD 국가 중 1층 연금에 대한 지출이 현재 가장 적고, 칠레의 경우도 정도가 덜하지만 이에 해당된다. 스위스와 미국도 1인당 GDP 수준을 감안하면 급여 수준이 낮고 노인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현재의 연동정책은 수급률이 일정하다면 많은 국가에서 지출 상승을 초래할 것이다. GDP 대 1층 연금지출 비율을 안정화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규범적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니지만 재정 자원이 GDP 추이를 따르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하면 유용한 기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배 최하층에 영향을 미치는 지출 수준이나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 출발점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인구학적 변화와는 무관하게, 1층 지출을 확대 또는 삭감시킬 범위와 필요는 국가별로 매우 다르다. 1층 급여에 대한 수급연령의 연장은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1층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법정 은퇴연령의 비슷한 연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저소득자가 특히 불리할 수 있다. 기여형 1층 연금에 대한 적절한 절충점은 은퇴할 때까지 급여를 임금에 연동시키고 은퇴 후에는 물가에 연동시키는 것이다. 이 방법의 단점은 은퇴한 해에 따라 최저연금의 수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일본이 기여형 기초연금에 이 정책을 사용한다.

연령기준이 2060년까지 5년 연장된다면 많은 국가가 현행 연동정책 하에서 GDP 대비 1층 지출 비율의 안정화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OECD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인구 고령화를 감안할 때, 연령기준이 2060년까지 5년이 연장된다면 지출(GDP 대비)의 안정화를 위해서 1층 급여는 임금 -0.8%에 연동되어야 할 것이다(즉, OECD 가정에 근거하면 물가+0.5%). 반대로, 인구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연령기준이 불변한다면, GDP 대비 지출의 안정화를 위해서 OECD 국가 평균적으로 임금 -1.6%(즉, 물가-0.3%)에 연동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주거기반 또는 기여기반 기초 연금의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국가들은 임금이 연동될 경우 더 큰 재정압박에 직면할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연금 급여가 물가에 연동되고 그럼으로써 시간이 지나면서 임금 대비 하락한다. 현재 연금 수급자의 1/3 이상이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데, 자발적 연금 가입률이 저소득자들 사이에서 낮기 때문에 미래 퇴직자들이 여전히 이 급여에 의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칠레에서는 연금 수급자의 60%가 선별적 급여를 수급하는데,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OECD 경제 가정 하에서 안정된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출 또는 급여가 물가상승률보다 느리게 증가해야 할 것이다.

개인들에게 예컨대 자동가입 또는 세제혜택, 공동기여와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퇴직저축을 권장하는 것은 자산조사적 1층 급여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부분 OECD 국가는 향후 몇 년 사이에 그러한 저축 메커니즘을 고려해야 하는데, 신규 연금 수급자에 대한 충분한 노후 소득 제공 측면에서 현재의 소득비례제도의 성공과 효과 그리고 특히 노인 근로자의 고용 실적에 따라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와 뉴질랜드는 현재 인구가 젊은 편에 속하지만 미래에 고령화 압력에 노출될 것이다. 이 두 국가 모두 다른 강제적 연금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금이 연동된 기초연금이 노후의 주 소득원이 될 전망이다. 뉴질랜드에서 키위세이버(KiwiSaver: 자동가입 확정기여형제도)의 도입으로 미래 연금 수급자의 삶의 수준이 개선될 것이지만, 기초연금이 계속 임금이 연동된다면 재정 비용이 높아질 것이다.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일본은 비슷한 영향을 받겠지만 이들 국가는 강제적 소득비례연금제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안전망 급여의 가치는 현재 아일랜드와 뉴질랜드보다 훨씬 낮다.

노인에 대한 지출은 직접적인 급여지급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TV 시청권, 연료비 지급 또는 대중 교통 요금 감액 등 연령에 따른 다수의 보편적 지급이 보통 존재한다. 이들 서비스에 대한 지급이 대개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서비스 비용을 쉽게 감당할 수 있는 다수의 수급자들도 혜택을 보고 있다. 최소한 이들 지급 중 일부에 자산조사적 성격을 도입한다면 미래 지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OECD (2015a), 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s: Mexico,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15b),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35120-en>.

OECD (2014), OECD Pensions Outlook 2014,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22687-en>.

## 부록 2.A1

### 여러 가지 연동 접근법의 효과에 관한 보충 수치들

그림 2.A1.1 여러가지 연동 접근법이 급여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령기준 5년 연장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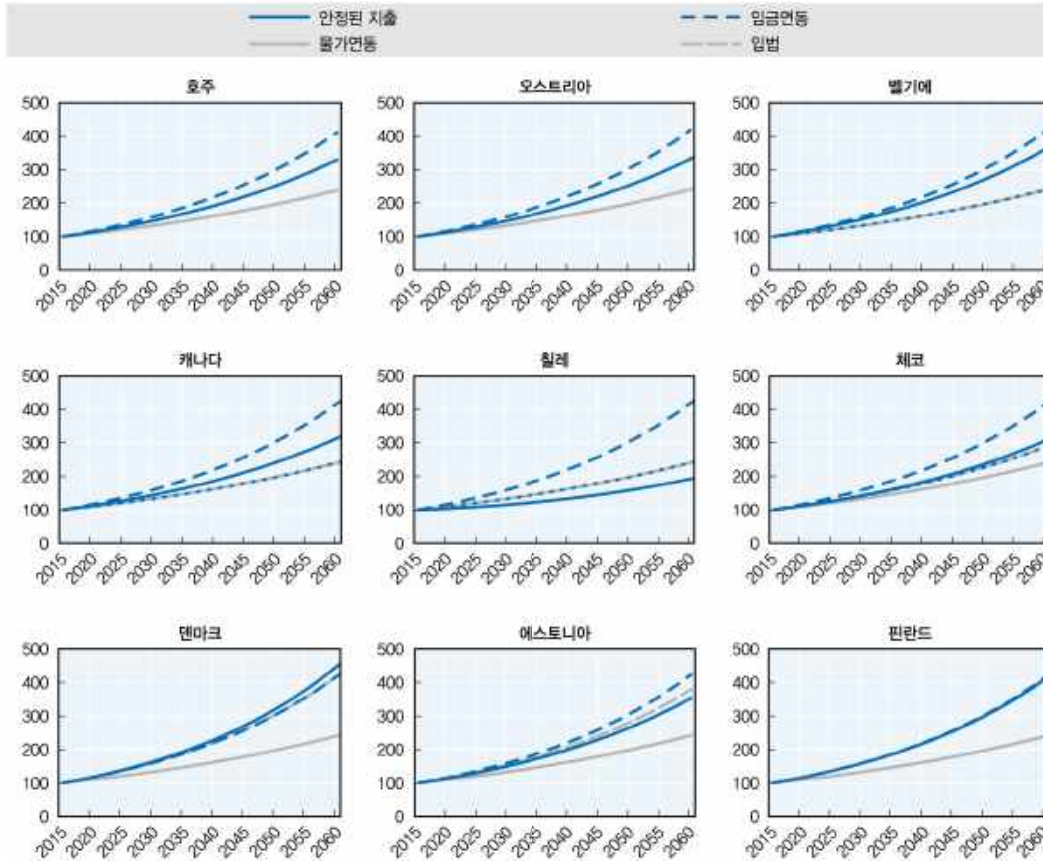


그림 2.A1.1 여러가지 연동 접근법이 급여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령기준 5년 연장 가정(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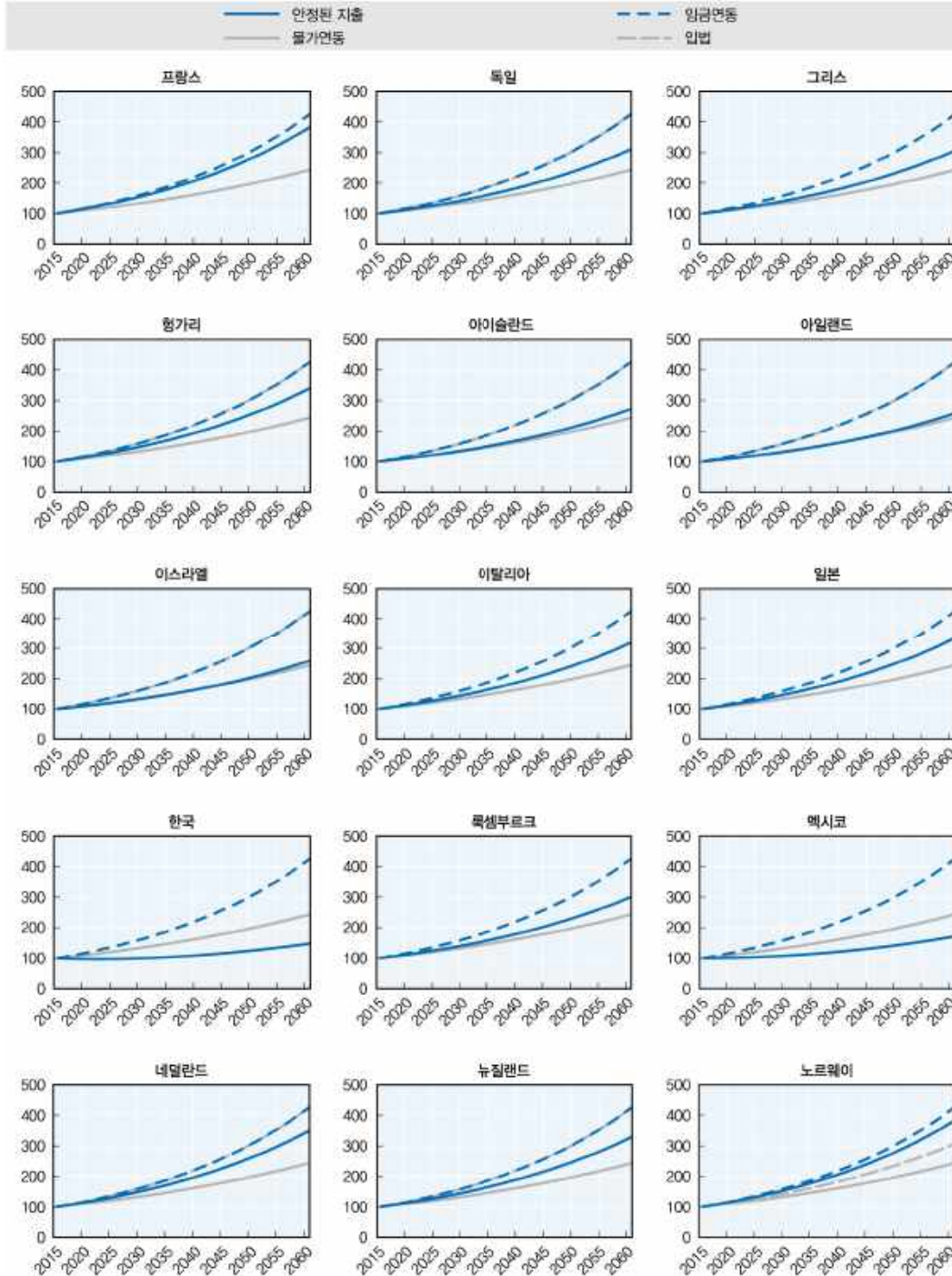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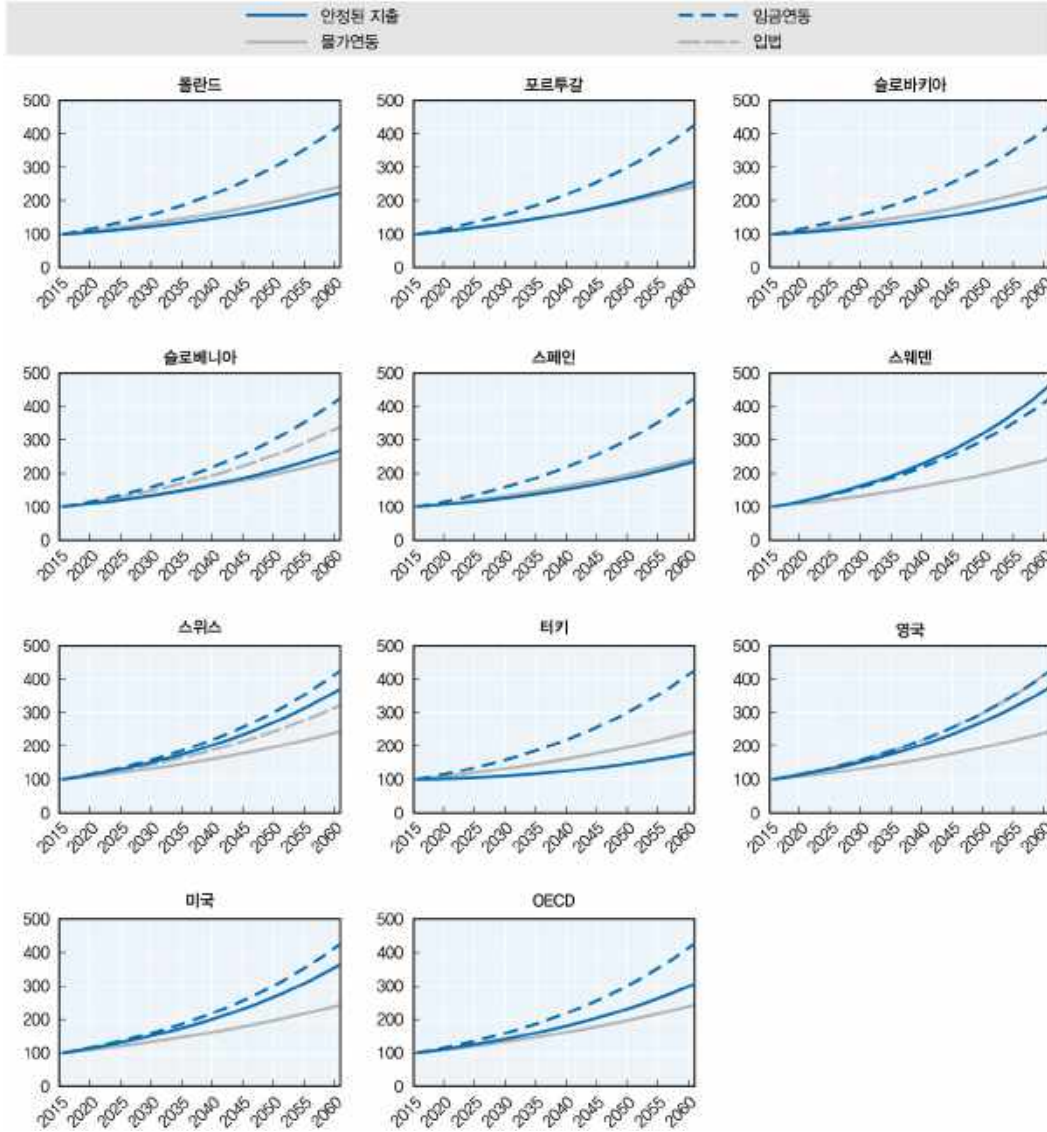


그림 2.A1.1 여러가지 연동 접근법이 급여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령기준 5년 연장 가정(계속)



<http://dx.doi.org/10.1787/888933300281>





## 제3장

# 불완전 직업경력이 연금 수급액에 미치는 영향

본 장에서는 연금제도의 연금 크레딧과 기타 재분배적 메커니즘 등 모든 연금 구성요소를 고려해서, 짧고 단절적인 경력이 강제적 제도의 연금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이 분석에서는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육아 및 실업과 관련된 경력단절에 초점을 맞춘다.

본 분석은 실직 상태에서 노령연금이 매년 평균 1% 약간 넘게 줄어들 때 연금 제도가 고용 지연이나 단절로 인한 노후소득의 잠재적 손실을 상쇄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 어떠한 재분배가 없는 상태에서 연금은 OECD 모형에서 사용된 경제가정에 근거하면 2-2.5% 하락할 것이다. 연금 크레딧과 연금제도의 기타 재분배적 구성요소들이 지체된 혹은 단절된 고용과 관련된 기여 격차를 완전히 상쇄할 수는 없지만 소득비례연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이다. 효과는 국가별로 매우 다르며,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 사용된 연금대상소득, 연금 제도 내 기타 재분배적 도구의 제공에 좌우된다.

결과는 또한 연금제도가 개인의 삶의 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종류의 소득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설계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점점 다양해지는 근로 경로로 인해 개인들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노동시장, 교육, 가족 및 연금정책을 통한 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통계자료는 해당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하였다. OECD가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른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역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3.1. 서론

노후소득은 주로 과거의 산물이다. 노후소득은 직업과 소득이력의 영향을 받으며 수급권 발생시점 뿐만 아니라 은퇴기간 동안의 연금규정에도 영향을 받는다. 사회보호제도의 다양한 특징들 외에도 노후소득의 핵심 결정요인에는 남성과 여성의 유급 노동시장 참여 정도, 소득, 근로기간이 포함된다.

부모 세대와 달리 오늘날 많은 근로자는 일자리 불안 증가와 끊임없는 기술 업데이트 요구에 직면해 있다. 표준적인 고용 관계는 시간제 근로, 기간제 계약, 다양한 형태의 자영업 등 유연성은 더 크지만 보통 더 불안정한 체제로 대체되었다. 특히 워킹맘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체제를 자주 이용한다. OECD 국가의 대부분 가정에서 양쪽 부모가 일할 가능성이 높고 어떤 경우에는 양쪽 모두 소득 손실과 낮은 연금을 초래하는, 육아를 위한 경력중단을 선택할 수 있다. 개인과 가정 모두에 영향을 끼치는 생애주기의 큰 위험 중의 하나인 실업 역시 소득손실의 원인이 된다.

생애 사건이 노후소득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은 여러 요소들의 복합적인 결합에 의해 완화되거나 증폭된다. 예를 들면, 납부 기여금과 수급 연금 간 연결고리를 강화한 최근의 일부 연금개혁들은 또한 노동시장 위협의 많은 부분을 개인들에게 전가시켰다. 많은 국가에서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높고, 고용체계가 탈표준화되고, 안정된 평생 직장이 점점 줄어드는 시기에, 이러한 개혁들은 적어도 실직 상태인 개인들의 연금 수급액을 낮출 수 있다. 소득비례연금제도(제도에 납부한 기여액에 따라 연금액 결정됨)에서 경력단절은 대개 기여의 손실과 노후소득의 하락을 의미한다.

본 장은 연금 크레딧(즉, 연금 기여가 제한적이거나 없는 시기에 연금 수급권을 계속 구축하는 방법)과 기타 연금제도의 재분배적 메커니즘을 고려해서, 짧아지고 분절된 경력이 OECD 연금모형(본 보고서의 제5장 참조)에 근거한 미래 퇴직자의 강제적 공적 및 사적연금 수급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이 분석은 특히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육아 및 실업과 관련된 경력단절에 특히 초점을 맞춘다. 비록 본 장에서 조기은퇴로 인해 짧아진 경력 문제를 논의하지만 짧아진 경력이 미래 연금 수급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본 장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향후의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주요 연구결과에 관한 요약 설명 후 OECD 국가에서 육아, 실업 및 노동시장 진입 지연 시기가 인구집단과 연령집단들 간 어떻게 다른지에 관한 자료를 살펴봄으로써 기여 공백(gap)에 대한 이해를 위한 기본틀을 마련한다. 섹션 3.3은 경력단절과 노동시장 진입 지연의 영향에 관한 이론과 증거를 제시하며, 섹션 3.4는 손실된 기여가 연금 수급권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연금제도상의 조치들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섹션 3.5는 연금 크레딧을 설명하고 섹션 3.6은 단절되고 짧아진 경력이 미래 퇴직자 인구집단의 연금 수급권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치를 제시한다. 섹션 3.7은 현재 연금개혁과 근로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정책들을 감안한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섹션 3.8은 일부 정책적 함의점을 이끌어내고 앞으로의 주요 도전과제들을 요약한다.

#### 주요 연구 결과들

- 거주기반 기초연금과 상대적으로 짧은 기여기간을 근거로 한 기여형 제도는 기여 공백의 효과를 완화한다. 재분배적 성격이 강한 연금제도가 최고 소득기간에 근거한 연금산식 역시 불완전

경력의 경우에 적정한 노후소득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된다. OECD 국가에 적용되는 기준기간(최소한 민간부문의 경우)은 경력의 마지막 기간에 과도한 임금인상 인센티브를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길다.

- 소득비례연금제도에서 연금 크레딧은 근로이력이 단절된 사람의 연금 수급권을 높이지만 일반적으로 기여액 부족을 완전히 상쇄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 효과는 국가별로 매우 다르며 가입기간, 이 기간 동안 사용된 연금대상소득, 연금제도 내에서의 기타 재분배도구의 제공에 좌우된다.
- 실업에 대한 연금 크레딧은 대체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을 반영한다. 육아 기간에 대한 크레딧은 대체로 자녀가 특정 연령이 될 때까지 반영된다. 이들 크레딧의 혜택을 받으려면 연금 제도에 일정한 최소기간을 기여해야 하며 대개 일정한 소득 기준까지만 제공된다. 연금 크레딧의 효과는 크레딧 상한선이나 정액 기여와 같은 도구들 때문에 소득에 따라 다양하게 저소득자와(적어도 육아를 위해) 제한된 기간 동안 고용이 중단된 사람에게 가장 유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 일부 국가에서 경력이 실직이나 육아로 인해 단절된 사람들은 완전고용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은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들은 은퇴를 미뤄야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매우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 평균적으로 실직상태 매 1년마다 1% 약간 넘게 노령연금이 줄어드는데, 연금제도는 고용단절로 인한 노후소득의 잠재 손실을 상쇄하는데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어떠한 재분배도 없다면 연금은 OECD 모형에서 사용된 경제 가정에 근거해서 2-2.5% 하락할 것이다.
- 평균임금 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이 5년간 지연된다면 OECD 국가 평균적으로 완전고용 근로자 대비 6%의 연금 격차가 나타나게 된다. 칠레와 멕시코에서 15%의 연금손실이 나타나는데 이 국가들은 연금제도에 이를 상쇄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넣지 않았다.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이스라엘, 한국,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의 경우에도 10% 이상의 격차가 있다. 이에 반해 프랑스에서는 3%, 룩셈부르크에서는 6% 증가하는데 이 두 국가의 연금 규정에 따르면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된 이후 페널티없는 연금 수급권을 얻으려면 은퇴를 4년 또는 5년 연기해야 한다. 물론 만약 진입 지연이 예컨대 대학교육 등을 통한 인적 자산의 업그레이딩 때문이라면 임금 전망을 개선시킴으로써 연금 수급액을 증가시킬 것이다.
- 평균소득의 여성이 육아 때문에 5년간 경력이 단절된 경우 OECD 국가 평균적으로 완전고용 근로자 대비 연금소득이 4% 줄어들 것이다. 평균임금 격차는 경력이 10년간 단절된 이후에는 11%로 증가할 것이다. 5년 경력단절 시 연금 급여는 평균소득의 절반 소득자의 경우 3%가 하락해 다소 덜 줄어드는 반면 평균소득의 2배 소득자의 경우 5%가 하락해 더 많이 줄어든다. 평균임금 근로자의 경우 연금 급여의 가장 큰 하락이 독일,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멕시코, 포르투갈에서 기록되지만 OECD 국가들의 약 1/3에서는 5년간 경력단절로 인해 연금 급여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평균적으로, 실업은 육아로 인한 경력중단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큰 연금 수급액의 감액을 야기한다.

### 정책 메시지

- 고용 중단에 영향을 적어도 일정 부분 상쇄할 메커니즘이 없는 소득비례연금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은퇴 시 자신의 고용이력 단절에 대해 추가적으로 납부하도록 만든다. 사적 개인연금의

발전과 공적연금제도에서 개인의 급여와 기여액 간 연계를 강화하는 현재의 연금개혁 추세 때문에 노년에 불평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

- 고용 중단과 짧아진 경력은 대개 중요한 정책적 이슈들을 제기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상당한 연금손실의 이유가 되는 비자발적 실직의 영향을 완화하고 육아로 인한 비교적 짧은 경력중단이 연금 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장기 근로 중단기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급여를 제공하면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하게 할 유인책을 제공함으로써 기여액과 인적자원의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값비싼 비용을 치르게 된다. 근로 중단 기간과 급여수급액 간에 올바른 균형을 이루는 것은 정책 입안자가 사람들이 업무에 복귀하고 장기적 단절로 인해 너무 큰 손실을 보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다루어야 할 근본적 문제이다.
- 연금 크레딧은 경력단절의 효과를 상쇄시키고 노인빈곤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이다.
- 대학 교육을 받은 기간에 대해 크레딧을 주었던 OECD 국가들의 대다수는 그 제도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일반적으로 역진적인데 생애소득이 더 높은 사람들을 보상해 주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 근로자의 실업 급증과 불안정한 형태의 고용과 같은 최근 노동시장의 상황은 연금 수급권과 기여액을 긴밀히 연계시키는 연금제도의 일부 한계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 연금제도는 개인의 삶의 경험으로 인해 나타난 노년의 모든 소득 불평등을 상쇄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은 아니다. 불안정한 소득과 단절적 경력을 가진 개인이 직면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노동시장, 교육, 연금정책을 통한 좀 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 3.2. 기여공백의 이해를 위한 토대

#### *성별, 연령집단, 인구집단 간 경력 경로: 전반적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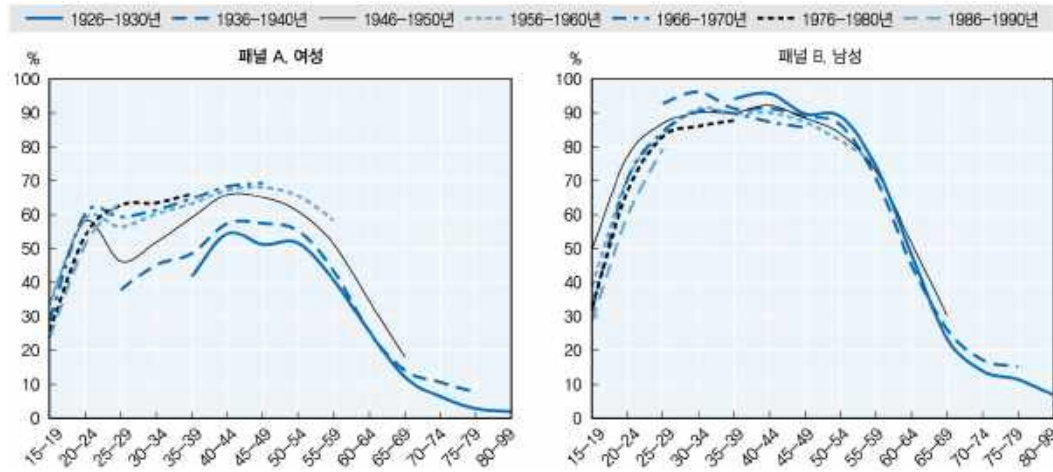
노후소득을 결정하는 요소들 중에서 노동시장 경험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여성의 고용률은 연상의 인구집단에 비해 누진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남성의 경우 정도는 훨씬 작지만 반대의 추세를 보인다(그림 3.1). 남성과 여성 모두 최근 수년간 고용률이 청년층에서 하락하고 장년층에서 상승했다. 그러나 고용의 성별 격차는 대체로 매우 큰 상태이다(구체적 내용을 보려면 아래 내용 참조).

노동시장 진입 연령과 그 이후 인생 이벤트(출산과 육아 등)는 유급 근로기간의 길이를 통해 연금 제도 내에서 노후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해고와 기간제 계약의 종료가 OECD 국가에서 25-49세 사람들(남성의 경우 63%, 여성의 경우 47%)의 노동시장 은퇴의 주된 이유이다(그림 3.2). 돌봄(care)의 경우 이 격차가 특히 큰데 친인척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떠나는 사람은 여성의 경우 1/4이고 남성의 경우 4%에 불과하다.

국가간 격차도 크다. 예를 들면, 기간제 일자리의 계약 종료가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에서 25-49세의 모든 노동 시장 은퇴의 거의 50%에 해당되지만, 덴마크에서는 남성, 영국에서는 여성의 경우 해당 수치가 훨씬 적다. 체코,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에서 남성 은퇴의 40% 이상이 해고와 정리해고 때문이지만,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스위스에서는 해당 수치가 비교적 적다.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위스, 영국

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은퇴의 20-50%, 남성은 매우 적은 경우가 돌봄과 관련있다.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에서 15% 이상의 남성과 여성이 질병과 장애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지만,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는 이 경우가 3% 미만이다.

그림 3.1 출생 인구집단과 연령집단별 고용률, OECD 평균



주: 각 곡선은 다른 연령의 각 출생 인구집단(x축에 표시됨)에 대한 고용률(y축)을 보여줌. 예컨대, 좌측 패널의 가는 선(검정색)은 1946-50년에 출생한 여성이 OECD 국가 평균적으로 20-24세에 60%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나타내는데, 25-29세에는 46%로 떨어지고, 40-44세에는 약 65%로 상승함을 보여줌.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www.oecd-ilibrary.org/employment/data/oecdemployment-and-labour-market-statistics\\_lfs-data-en](http://www.oecd-ilibrary.org/employment/data/oecdemployment-and-labour-market-statistics_lfs-data-en) as in D'Addio, A.C. (2015), "Explaining the Gender Pension Gap in OECD Countries: Socio-economic Determinants and Pension Rules That Matter", unpublished manuscript. <http://dx.doi.org/10.1787/888933300412>

짧고 분절적이며 불안정한 기여이력은 적은 연금 수급액과 보장범위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심각한 장기적 영향을 미친다. 경력중단의 길이와 타이밍은 연금 수준이 납부한 총 기여액뿐만 아니라 그 기여순서에 의해 결정되는 국가에서 급여 손실의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국가들에서는 완전 적립식 확정기여형연금처럼 복리로 인해 먼저 납부한 기여액이 나중에 납입한 기여액보다 더 많은 이자가 발생한다. 게다가, 비자발적 경력중단의 타이밍은 근로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근로자가 경기침체에 일자리를 잃으면 경기 상황이 좋을 때보다 오랫동안 실직 상태일 수 있다. 연금 수급권의 적립은 연령별 실업급여 규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젊은 근로자보다 대개 더 관대한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이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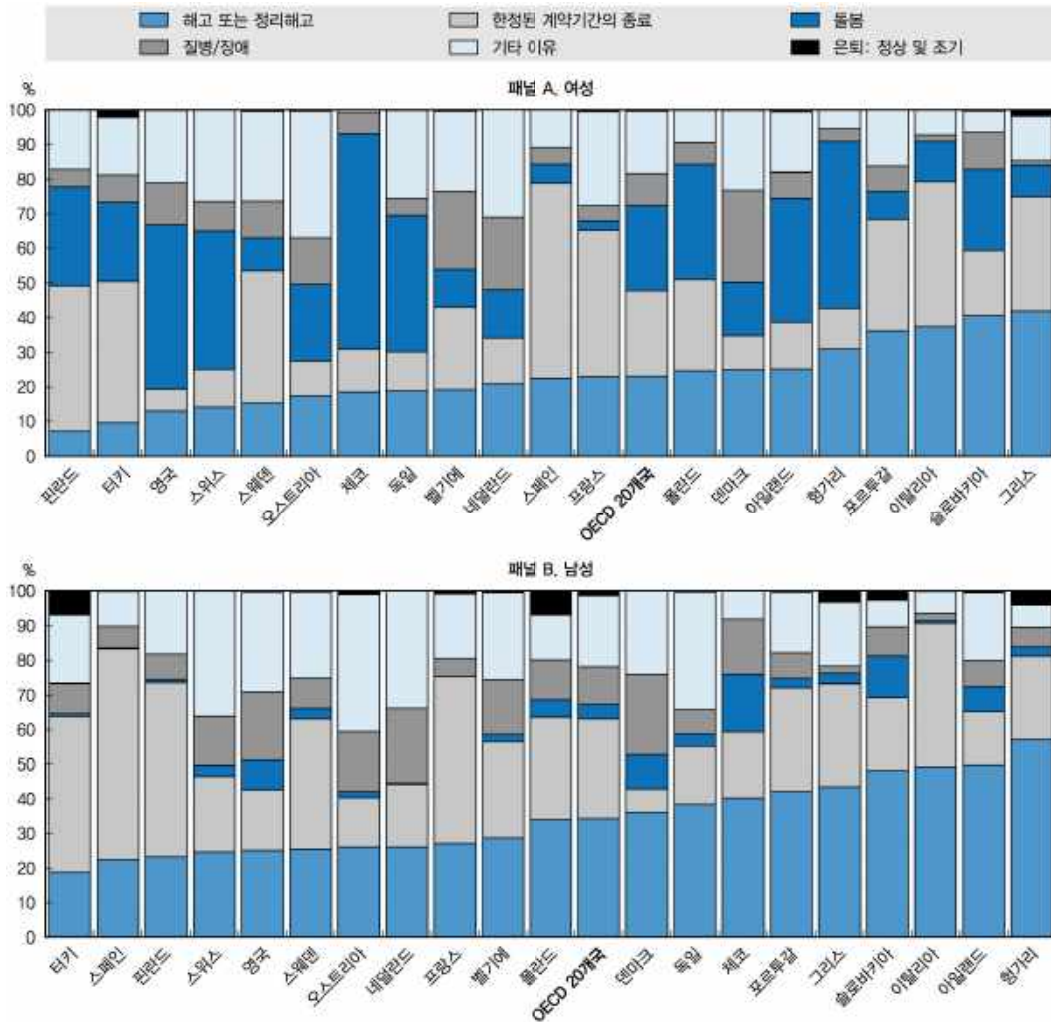
### 노동시장 진입연령

2013년에 OECD 21개국에서 노동시장 진입 평균연령은 남성의 경우 21.9세이며 여성의 경우 23.5세로 추산되었다(그림 3.3). 노동시장 진입연령의 성별격차는 체코,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에서 2년 이상이었던 반면, 핀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격차가 적었다. 성별격차는 국가별로 다양한데, 영국과 이탈리아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노동시장 진입 평균연령에서 4년 이상 차이가 난다.

노동시장 진입연령 격차는 교육제도, 훈련기회, 노동시장 조건들과 관련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학생수가 급증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교육 받는 기간이 길어져서 2004년에서 2012년 사이에 OECD 회원국의 평균 교육기간이 8개월 이상 증가했다(OECD, 2014b). 일자리의 성격이 현재 고도의 기술과 교육기준을 요구하면서, 교육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는데,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일자리를 더 빨리 구하도록 만드는 선별도구의 역할을 교육이 점점 더 많이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림 3.2. 노동시장을 떠나는 이유: 남성과 여성, 25-49세, 2014년



출처: 유럽연합 노동력조사(EU-LFS) 2014에서 발췌된 자료에 근거한 OECD 계산.

<http://dx.doi.org/10.1787/888933300428>

경기침체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이 실업의 압박을 가장 강하게 느낀다. 고용기회는 매우 적고 그 결과 시간제 고용과 비활동(inactivity)이 만연하게 된다(Carcillo et al., 2015). 경제위기의 영향을 극심하게 받은 국가들에서 “고용상태도 아니면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있지 않는 젊은이(NEET)”의 비율이 매우 높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16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이 중 최소 20%가 NEET이며, 터키(35%), 이스라엘(28%), 멕시코(23%), 칠레(22%)에서도 그 비율이 높다. 개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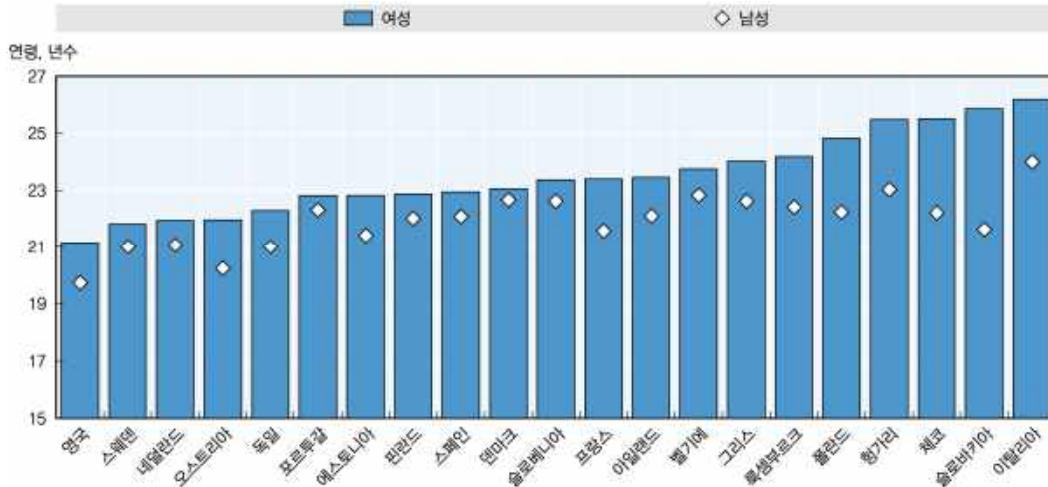
장기적 경력 전망이 직장생활 초기 몇 년 이내에 대체로 결정되기 때문에(OECD, 2015c), NEET 기간은 노령연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실업과 돌봄과 관련된 경력단절

#### 실업

2016년에 많은 OECD 국가에서 전반적인 실업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OECD, 2015b). 청년들이 고용 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반면 장년층 근로자들은 그 영향을 덜 받고 있는데 이는 조기은퇴에 대한 접근성과 유인책을 줄인 최근 연금개혁의 결과에 일부 기인한다. 그러나 장년층 근로자들은 일단 실직하게 되면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대개는 장기 실업자가 된다(OECD, 2014b, c, d; 2015a, b). 2010년에 1년 이상 지속된 실업은 평균적으로 OECD 국가들의 약 1/4에서 관측되었지만(벨기에, 체코,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캐나다, 이스라엘, 일본, 한국, 멕시코에서는 6개월 미만 동안 지속되었다 (OECD, 2014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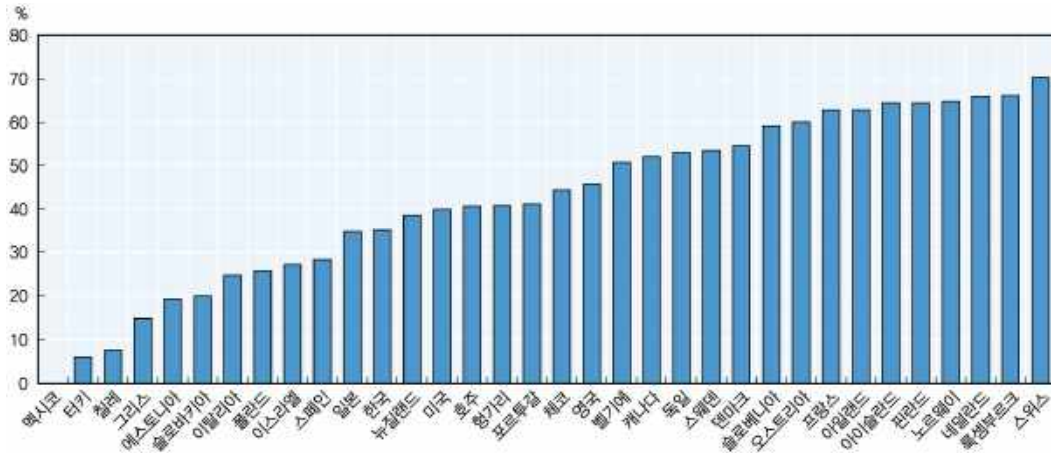
그림 3.3. 선정된 OECD 국가들에서의 노동시장 진입연령: 2013년



출처: Based on estimations by the EPC Working Group on Ageing Population and Sustainability (AWG), European Union. <http://dx.doi.org/10.1787/888933300435>

효과적인 실업보험은 실업이 소득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부분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그림 3.4). 오랜 보장기간과 높은 소득대체율 역시 연금 수급권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근로 유인책을 줄일 수도 있다. 실업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은 국가별로 매우 달라서 일본의 경우 수주 동안에 지나지 않지만 벨기에(실업급여 지급 기한 없음)의 경우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지급된다. 그림 3.4의 총 측정치에 따르면 칠레, 에스토니아, 그리스, 멕시코, 슬로바키아, 터키에서 가장 적은 실업보험을 지급하는 반면 핀란드,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에서 가장 많은 액수를 지급한다.

그림 3.4. 실업보험 지급의 유효성, OECD 국가들



주: 유효 실업보험은 실업보험(UI) 가입률 x 실업보험 수급자의 평균 순 대체율+실업부조(UA) 가입률 x 실업부조 수급자의 평균 순 대체율+실업급여에 의해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만약 이것이 낮을 경우 사회부조(SA) 수급자 대 실업자의 비율]x사회부조 대체율로 정의됨. 실업보험(UI)과 실업부조(UA) 수혜자들 사이의 평균 대체율은 가족급여, 주택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면 사회부조를 고려함.

1. 칠레의 대체율은 2011년 자료임.

출처: OECD (2014), OECD Employment Outlook 2014,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4-en](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4-en).  
<http://dx.doi.org/10.1787/8889333004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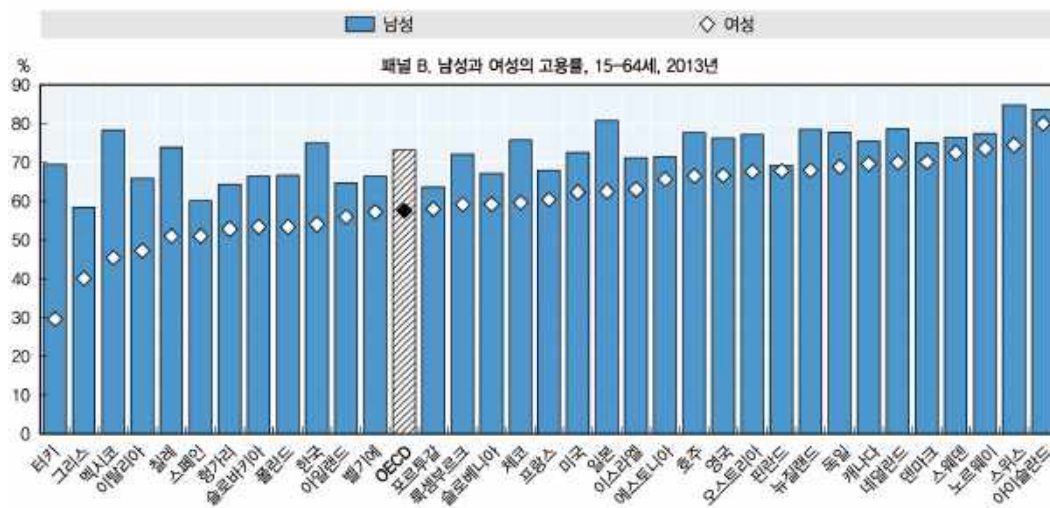
### 여성 경력의 구체적 특징들: 고용과 아동

OECD 평균적으로 1970년 초반 이래 남성과 여성 간 고용격차가 절반 이상 줄었다. 2013년에 15-64세 여성의 거의 58%가 고용상태였던 반면 1960년에는 40%가 고용상태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성의 고용률은 동 기간 동안 10%p 하락했다(그림 3.5, 패널 A).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여성의 고용률은 남성의 고용률보다 여전히 15%p 낮았다(패널 B).

시간제 일자리도 남성보다 여성들 사이에서 훨씬 흔하다. 모든 국가에서 총 고용에서 차지하는 여성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남성 시간제 근로자 비율보다 훨씬 높다. OECD 국가 평균적으로 25세에서 54세 사이 남성의 5%, 여성의 22%가 시간제로 근무한다. 여성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영국이다(그림 3.6). 이와 대조적으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에서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여성 고용의 5%에 불과하고 이 국가들의 남성 시간제 근로자 비중도 3% 미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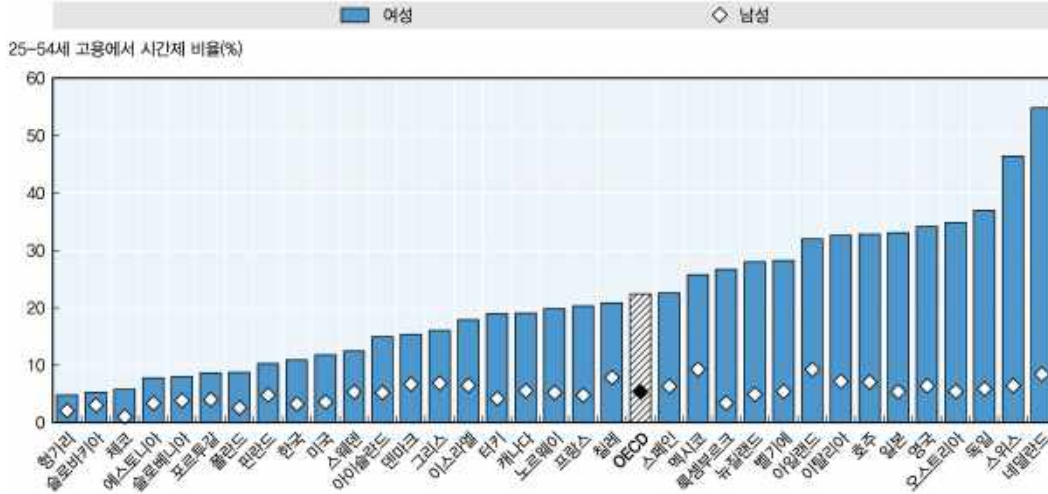


그림 3.5. 여성과 남성의 고용율



출처: 자료는 OECD 고용 및 노동시장 통계, [www.oecd-ilibrary.org/employment/data/oecd-employmentand-labour-market-statistics\\_ifs-data-en](http://www.oecd-ilibrary.org/employment/data/oecd-employmentand-labour-market-statistics_ifs-data-en)에서 발췌함  
<http://dx.doi.org/10.1787/888933300455>

그림 3.6. 시간제 고용 성별 비율, 2013년



주: 시간제 고용은 자신의 주된 업무에서 대개 1주일 동안 30시간 미만을 일하는 사람을 의미함. 이 지표는 전체 고용된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을 보여줌. 또한 시간제 고용 비율이라고 칭함.

출처: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and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www.oecdilibrary.org/employment/data/oecd-employment-and-labour-market-statistics\\_lfs-data-en](http://www.oecdilibrary.org/employment/data/oecd-employment-and-labour-market-statistics_lfs-data-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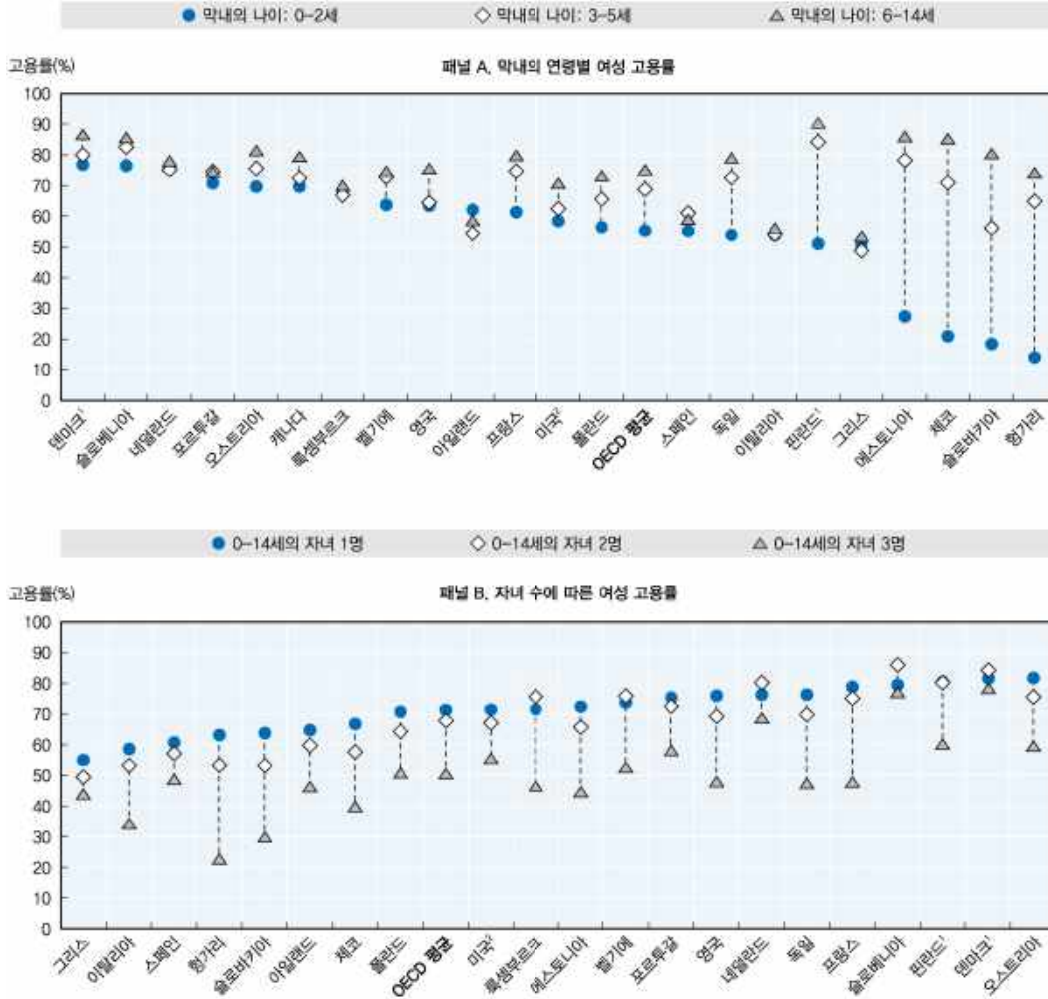
<http://dx.doi.org/10.1787/888933300465>

모든 OECD 국가들에서 여성의 유효 근로기간 역시 남성보다 짧다. 2008-09년에 65세 이상 여성은 SHARELIFE survey<sup>2</sup>의 조사대상 13개 OECD 국가들에서 남성보다 평균 13년 적게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D’Addio, 2009 및 2015). 유럽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18세 여성의 예상 노동기대여명(working life expectancy)이 남성보다 여전히 3년 짧다. 또한, 여성은 대체로 남성보다 소득이 적는데, 전일제 남성 근로자의 중위임금과 전일제 여성 근로자의 중위임금 차이가 2012년 OECD 평균 14%였고 뉴질랜드의 6%에서 한국의 37%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이 격차는 낮은 노령연금으로 이어지는데 2011년 25개의 OECD 국가들에서 여성의 평균 강제연금 급여는 남성보다 28% 적었다(D’Addio, 2015).<sup>3</sup>

여성노동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은 자녀의 존재이다. OECD Family Database에 따르면 가정에 15세 미만의 자녀 최소 한 명과 거주하는 25세에서 54세 사이 여성의 평균 고용률은 같은 연령집단의 무자녀 여성의 전반적인 고용률보다 8%p 낮다(2013년 68% vs 76%임). 일부 OECD 국가들(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에서, 3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도 매우 낮다. 3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OECD 전체 평균 고용률은 55%이며 가장 어린 자녀가 3세에서 5세 사이 일 때 69%로 상승하고 6세에서 14세일 때 75%에 이른다(그림 3.7, 패널 A). 일반적으로 여성의 평균 고용률은 자녀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하락하는데 한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약 71%에서 세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51%로 떨어진다(패널 B). 체코, 헝가리, 이탈리아, 슬로바키아에서 최소 세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매우 낮다.

가족정책은 부모가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돕기 위해 중요하다. 보육서비스가 감당할 수 없이 비용이 높고 품질이 열악하거나 이용이 어려울 때 부모는 비정형적 근무 시간을 선택하고 특히 여성은 자녀를 가정에서 돌보면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된다. 일부 출산휴가 급여의 설계는 실제로 여성의 경력전망과 재정적 보장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우 장기간의 휴가는 고용단절을 촉진할 수 있고 그 결과 근로 및 소득전망을 약화시킨다.

그림 3.7. 막내의 연령 및 자녀 수에 따른 여성 고용률,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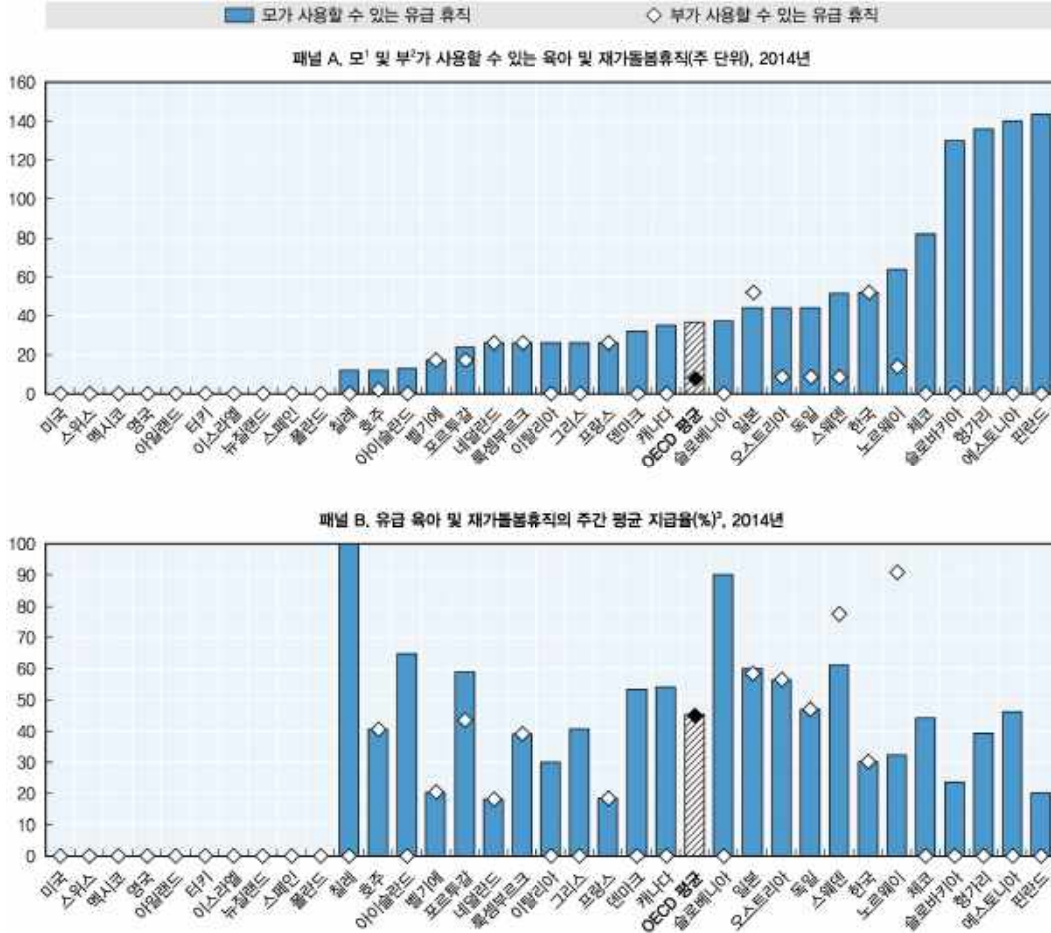


1. 덴마크와 핀란드에 대한 데이터는 2012년 자료임.
  2. 미국에 대한 데이터는 18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에 관한 것이며 패널 A에서 사용된 연령집단은 0-2세, 3-5세, 6-17세임.
- 출처: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http://dx.doi.org/10.1787/888933300479>

1980년대 초 이후 대부분 OECD 국가들은 여러가지 형태의 휴가의 조합을 사용하고 있다. 법정 유급 출산휴가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출산급여는 이전 소득에 비례하며 연금 수급권은 유지된 채 대개 전액 비율로 지급받는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 급여의 크기, 휴직 정책의 법적 시행은 OECD 국가별로 매우 차이가 크다(그림 3.8). 결과적으로 이들 급여와 관련된 연금 크레딧 역시 국가별로 매우 다르다.

그림 3.8. OECD 국가의 육아 및 재가돌봄휴직 기간과 수급권, 2014년



1. 모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 육아 및 재가돌봄휴직은 수 주 동안의 육아휴가와 이후의 자녀양육을 위한 재가돌봄휴직을 말함("육아휴직", "자녀양육휴직" 혹은 프랑스에서 Complement de Libre Choix d'Activite(근로시간 자유선택에 대한 보조금)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림).
2. 부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 육아 및 재가돌봄휴직은 "부에 대한 할당분(quotas)" 또는 부만 사용 가능하고 모에게 양도될 수 없는 육아 및 재가돌봄휴직이며, 가족이 "보너스" 육아휴직 주(weeks)의 자격을 갖기 위해 부가 써야만 하는 공유 가능한(shareable) 휴가의 주의 수를 말함.
3. 지급율은 육아 및 재가돌봄휴직 기간 동안 수급하는 급여에 의해 대체되는 이전 총소득의 비율을 말함. 만약 급여가 여러 휴직 기간에서 나오고 지급율도 다른 경우 각 기간으로부터의 가중평균을 구한다. 수급자는 배우자가 100%의 평균임금을 받고 다른 부양가족이 없는 맞벌이 가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수급자가 첫 자녀를 둔 것으로 가정한다.

출처: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http://dx.doi.org/10.1787/8889333004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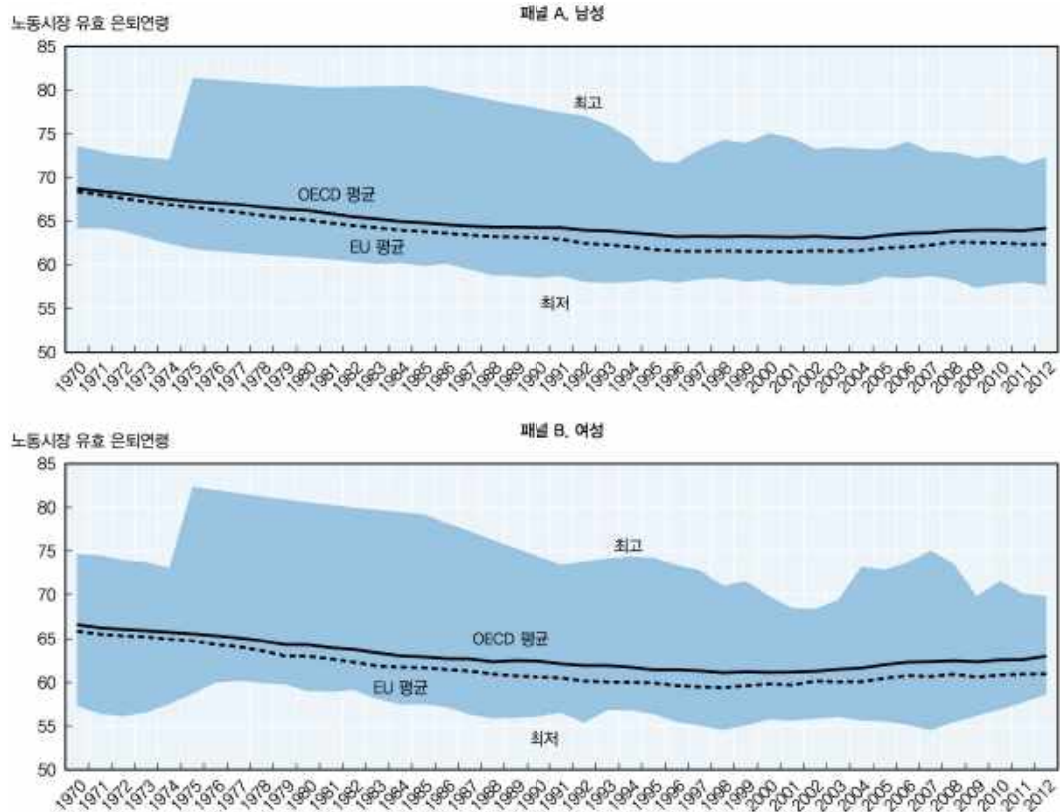
여성의 근로기간이 짧은 한 가지 원인은 자녀와 연로한 친지에 대한 돌봄 때문이다. OECD에서 가족 돌보미(family carers)의 2/3가 여성이다(OECD, 2011; and 2013c; OECD, 2015). 예를 들면 2011년에 18개의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1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48%와 남성의 1% 미만이 육아휴직 중이었다. 장기돌봄휴가를 쓰고 있는 유급 근로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며 또한 대부분의 경우 비공식적인 돌보미인데 평균적으로 17개의 OECD 국가들에서 50세 이상의 모든 비공식 돌봄 제공자의 61%가 여성이다(OECD, 2015d). 이 비율은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높은 71%이며 스웨덴에서 가장 낮은

51%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간병 니즈가 향후 수십 년 사이에 급증할 것이며 이 추세로 인해 수발자의 노후소득을 줄일 수 있는 비공식적 간병의 증가가 나타날 것이다(D'Addio, 2015 참조).

### 노동시장 은퇴연령

은퇴연령 연장과 조기수급 제한을 통해 근로기간 연장을 촉진하려는 정책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나타났고 노동시장 유효 은퇴연령이 2000년대 초반 최저 수준에서 최근에 약간 상승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그림 3.9).<sup>4</sup>

그림 3.9. 평균 노동시장 유효 은퇴연령의 추이, OECD와 EU 평균



출처: OECD 추정치는 국가 노동인구조사, 유럽연합 노동인구조사(EU-LFS)와 일부 국가의 초기 년도에 대한 자료는 국가 인구조사에 근거함.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www.oecd-ilibrary.org/employment/data/oecd-employment-and-labour-market-statistics\\_lfs-data-en](http://www.oecd-ilibrary.org/employment/data/oecd-employment-and-labour-market-statistics_lfs-data-en).

<http://dx.doi.org/10.1787/888933300492>

그러나 노인의 실제 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기은퇴 옵션을 까다롭게 하고, 은퇴연령을 연장하고, 기여기간을 연장하고, 근로기간 연장의 한계수익 증가를 위한 파라미터와 규칙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고령에는 일자리 유지가 고용보다 더 흔한 문제이므로(OECD, 2015a; 2014b, c, d; 2013), 많은 사람에게 직장생활 후반기의 실직은 노동시장 은퇴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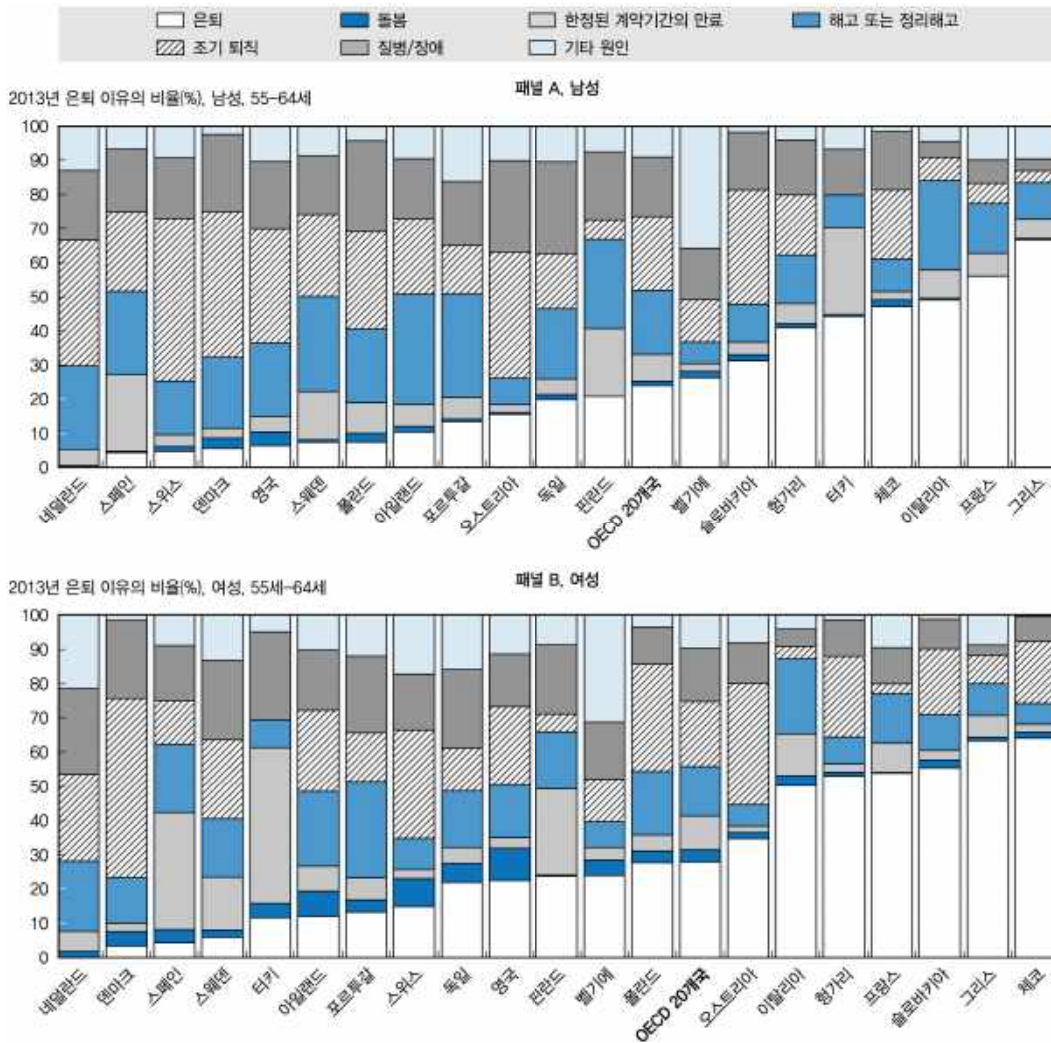
조기은퇴는 OECD 평균 55-64세 연령집단에서 여성 노동시장 은퇴의 약 19%, 남성 노동시장 은퇴의 약 22%를 차지했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위스, 영국에서 2013년에 노동시장을 떠난 남성의 1/3 이상이 조기은퇴를 통해 떠났다. 비 EU 회원국인 기타 OECD

국가들 역시 연금 급여의 조기인출을 허용한다. 호주에서는 현재 55세부터 연금 급여의 조기인출이 가능하다. 멕시코에서 근로자들은 60세부터 매년 예정액의 5%에 해당하는 페널티를 부담하고 인출할 수 있는데 은퇴 희망자가 최소 1,250주(약 24년) 동안 기여금을 납부했고, 계정에 적립된 자본으로 최저보장연금보다 최소 30%가 높은 종신연금을 구입할 수 있으면 조기은퇴가 가능하다.

칠레에서 확정기여형제도에 납입해온 근로자들은 연금을 조기에 인출할 수 있지만, 계정 내 적립 자본의 대체율이 최소한 70%(연금인출 10년 전 소득 대비)이며 최저연금의 80%에 상당한 연금에 자금을 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경우에 한한다.

조기 또는 법정 연령은퇴 외에도 자료에서는 55세에서 64세 사이에 노동시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해고, 정리해고, 질병, 장애와 같은 많은 비자발적 경로를 밟고 있음을 시사한다(그림 3.10). 가족돌봄 의무는 여성의 노동시장 은퇴 원인의 평균 4%만을 차지하지만 독일, 아일랜드, 영국에서는 7% 이상이다.

그림 3.10.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장 은퇴 경로, 55-64세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national labour force surveys, the European Union Labour Force Survey 2014(EU-LFS).

<http://dx.doi.org/10.1787/888933300505>

### 3.3. 분절적 경력이 연금에 미치는 영향: 이론과 실제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고용중단은 다양한 방식으로 노후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 유급 고용의 중단과 짧은 근로기간은 대체로 급여손실과 같은 맥락에서 기여손실을 초래한다.
- 단절된 짧은 경력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본의 손실을 야기한다.<sup>5</sup>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된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소득 및 연금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 평가에 필수적이다. 대학교육, 더 나은 자격 또는 전문경험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는 궁극적으로 더 높은 급여와 연금을 의미한다. 만약 이와 대조적으로 그것이 실업과 비활동 때문이라면 인적자본의 가치는 하락하고 노후소득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로 시작시기와 대학교육은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Holmlund et al.(2006)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대학입학을 2년 지체하면 생애소득의 상당한 감소와 연관되는데 40세의 연 소득의 약 40-50%에 해당한다고 한다.<sup>6</sup> 경력중단 역시 인적자본의 가치를 줄이고 생애소득의 감소를 초래한다(Mincer and Polachek, 1974, 1978; Polachek, 2007; Braga, 2014). 근로자가 나중에 충분히 오래 근무할 능력이 있다면 경력중단과 관련된 소득 및 연금손실을 보충할 수 있다. 그러나 보충 정도는 일반적으로 경력단절 시기와 지속 기간에 의해 결정된다.

여성의 임금이 낮은 것은 육아를 위한 경력단절에 일부 원인이 있다.<sup>7</sup> 경력중단이 오래 지속되고 일찍 시작될수록 임금손실은 커지게 된다.<sup>8</sup> 육아를 위한 경력단절과 마찬가지로 실업은 지속적인 소득손실을 낳는다.<sup>9</sup> 경력 초기의 실업은 그 효과에 대한 증거가 아주 확실치는 않지만 낙인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청년 근로자의 미래 노동시장에서의 전망을 위협한다(낙인효과에 대해 보려면 Arulampalam et al., 2001 참조).

경력단절이 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연구에서 얻은 실증적 결과물은 실업과 돌봄으로 인한 경력중단이 노후소득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함을 시사한다. 예컨대, Geyer and Steiner(2010)는 빈번한 실업과 불안정한 고용이 동독에서 노후소득이 독신수급자의 생계비 수준보다 낮은 사람의 비율이 급증한 원인을 보고했는데, 남성의 경우 약 4%P에서 30%P 이상 증가했고, 여성의 경우 25-50%P 증가했다(Potrafke, 2011). De Freitas et al.(2011)는 관대한 연금 크레딧은 EU 국가 평균적으로 총 5년의 경력중단 효과를 거의 상쇄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마찬가지로 Brugiavini et al.(2012)은 가족 및 연금 정책의 설계가 SHARELIFE 조사(2010/11년이 기준년도임) 대상인 유럽국가들에서 부모가 자녀양육을 위해 경력을 단절한 경우 나타날 상당한 손실을 상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정책적 시사점이 중요하다. 비자발적 경력중단이나 지연된 노동시장 진입으로 인한 기여공백이 생애소득에 미치는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필요하다. 유급 근로의 장기적인 자발적 중단은 훈련이나 추가 교육을 통해 경력 전망을 개선하려는 이유가 아니라면 제한되어야 한다. 연금 크레딧이 기여공백의 영향을 어느 정도 완화할지에 대한 평가가 다음 섹션의 주된 내용이다.

### 3.4. 경력단절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연금제도적 장치들

연금제도 설계를 통해 유급 근로가 중단된 기간이 노후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킬 수도 또는 완화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과거의 기여이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제도들, 예를 들어 거주기반 기초 연금이나 보편적 기초연금제도는 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은 보장범위가 다양하긴 하지만 재분배적인 1층 연금제도를 갖추고 있다(제2장). 그러나 최저 기여 년수를 채우면 전액급여를 준다고 규정한 1층 제도는, 다른 선별적 급여가 그 시점에서 시작되어 안전망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특히 (최저)기여기간이 긴 경우) 경력단절이 길거나 근무기간이 짧은 사람이 그 급여에 대한 자격을 갖추기 어렵게 만드는데, 체코, 아일랜드, 일본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와 반대로, 기여금과 급여를 더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사적 확정기여형(DC)제도, 공적 명목확정 기여형(NDC) 또는 재분배적 급여가 없는 포인트 제도에서는 기여공백이 연금 수급권에 미치는 영향을 제도 내에서 완화하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가 NDC제도로 나아가려는 조치는 최저연금 철폐와 동반되었다. 더 일반적으로는 연금제도가 전체 경력소득으로부터 연금대상소득을 결정하지만, 연금 급여는 짧아지거나 분절된 근로기간에 의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연로한 친척을 돌보기 위해 중년에 유급 근로로부터 떠난 많은 여성들과 경력 후반기에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그 결과가 삭감된 연금일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강제적 공적 소득비례 연금제도는 육아, 실업기간 또는 일부 경우에는 교육기간에 대해서도 특별한 연금 크레딧을 제공한다. 노동시장 리스크에 대한 보호막을 제공하고, 근로자가 자녀 및 기타 노쇠한 친척을 돌볼 수 있도록 허용하며, 노인빈곤을 최소화하고, 그들에게 적정 수입을 제공하는 것이 연금 크레딧이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개혁을 통해 연금 크레딧이 수정되었는데 어떤 국가에서는 그 관대함을 줄였고 다른 국가에서는 늘렸다. 예를 들면 2014년 이래 오스트리아는 연금 크레딧이 한때 보장해주었던 이벤트의 종류를 줄였다. 군복무 또는 사회봉사(최대 30개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당 4년까지)과 일정한 실직기간만이 연금 크레딧의 자격이 된다. 특히 학업과 대학 교육기간에 대한 기여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벨기에는 자녀양육이나 자녀교육 등 “특별한 이유”로 인한 휴직과 “이유 없는” 휴직을 구분하는 장치를 도입했다. 2012년부터 “이유 없는” 휴직의 경우 단지 12개월을 연금 산정을 위한 크레딧으로 인정하는 반면 자녀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부모에 대해서는 최대 36개월의 연금 크레딧 자격을 부여한다. 프랑스의 2011년과 2014년 개혁으로 청년들은 12분기를 초과하지 않는 대학 교육이나 수습기간에 대하여 크레딧의 일부 혹은 전부를 받는 것이 더 용이하게 되었으며 청년 근로자들이 놓친 기여금을 상환하는 비용이 덜 들게 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학 교육기간에 대한 크레딧은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있다. 이 크레딧은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보상해주기 때문에 역진적일 수 있으며 철폐됨으로써 공공비용이 절감된다.



### 3.5. 기여공백을 메우는 연금 크레딧

#### 연금 크레딧의 주요 특징들

크레딧은 상호 배타적인 두 가지 방법으로 연금 수급액을 높인다. 첫째, 크레딧은 보험의 지속 기간을 늘리며 이는 대체로 기여형 연금제도에서 인출 시 더 나은 소득을 산출한다. 둘째, 크레딧은 연금 급여를 직접적으로 늘릴 수 있는데 정량적 효과는 개인의 소득과 실직기간 동안 제도에 납부된 기여금에 달려있다.

연금 격차를 메우는 명시적 크레딧 메커니즘이 대다수 OECD 국가들의 (공적) 소득비례연금제도에 존재하지만(표 3.1) 호주, 이스라엘,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칠레,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한국, 터키, 영국에는 실업에 대한 크레딧은 없지만 육아에 대한 크레딧은 존재한다. 아이슬란드는 이와 반대이다. 실업기간에 대한 명시적 연금 크레딧을 가지고 있는 포르투갈과 슬로베니아는 시간제 고용의 경우에만 육아기간에 대한 크레딧을 제공하는데 이때 전일제 기여기간으로 제공된다. 고용중단은 비기여형 제도(뉴질랜드, 캐나다 또는 네덜란드의 기초연금제도 등)와는 관련이 없고 일부 연금제도의 설계에서 암묵적으로 배제된다. 예를 들면, 미국의 최대 연금 지급율은 35년의 기여만을 요구하므로 그 기간을 달성한 이후의 실직은 공적 노후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캐나다의 경우에 1층 제도(자산조사형 소득보조연금(GIS)과 기초노령연금(OAS))는 빈번한 경력단절 때문에 특정 저소득 집단이 겪는 노후소득 손실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캐나다연금에서는 실업기간과 7세 미만 자녀양육을 위해 저소득 상태로 지냈던 기간은 소득비례 공적연금액 산정을 위해 사용되는 평균 기준임금 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표 3.1. 실직과 육아에 대한 소득비례연금제도에서의 명시적 크레딧

	육아		실업			육아		실업	
	명시적	묵시적	명시적	묵시적		명시적	묵시적	명시적	묵시적
호주	..	✓	..	✓	이스라엘	..		..	
오스트리아	✓		✓		이탈리아	✓		✓	
벨기에	✓		✓		일본	✓		✓	
캐나다	✓		✓		한국	✓		..	✓
스위스	✓	✓	✓	✓	룩셈부르크	✓		✓	
칠레	✓		..		멕시코	..	✓	..	✓
체코	✓		✓		네덜란드	..	✓	..	✓
독일	✓		✓		노르웨이	✓		✓	
덴마크	✓		✓		뉴질랜드	..	✓	..	✓
에스토니아	✓		..	✓	폴란드	✓		✓	
스페인	✓		✓		포르투갈	pt		✓	
핀란드	✓		✓		슬로바키아	✓		✓	
프랑스	✓		✓		슬로베니아	pt		✓	
그리스	✓		✓		스웨덴	✓		✓	
헝가리	✓		✓		터키	✓		..	
아일랜드	✓		..	✓	영국	✓		..	✓
아이슬란드	..	✓	✓		미국	..	✓	..	✓

주: 축약형: ✓=소득비례연금제도에 명시적 연금 크레딧이 존재함, ..= 소득비례연금제도에 명시적 연금 크레딧이 존재하지 않음. “묵시적”이란 고용단절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설계되지는 않았으나 연금규칙 또는 1층의 구성 요소들로 인해 동일한 기능이 묵시적으로 수행됨을 말함. Pt = 크레딧이 시간제 근로자에게만 존재.

출처: 국가의 대표들이 제공한 정보와 제11장 “국가별 현황”에 근거함.

<http://dx.doi.org/10.1787/888933301001>

사적으로 운영되는 개인 또는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연금 크레딧을 거의 두지 않는다. 스웨덴(ITP)과 덴마크(ATP)의 퇴직연금이 예외이다. 에스토니아와 스웨덴의 강제적 확정기여형(DC)제도 역시 육아를 위한 실직기간에 연금 크레딧을 제공한다. 프랑스의 공적 강제퇴직연금제도는 실업과 관련된 경력단절에 대한 크레딧을 제공하고, 최소 세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해 퇴직급여를 10% 증액해준다. 자발적 사적연금제도 가입자는 제도에 자발적 기여금을 납부함으로써 추가 지급기간을 구매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독일에서 2005년에 그러한 규정을 도입했고 독일 정부는 연말에 부모 중 한쪽의 개인 민간 개인연금계좌에 아동양육보조금을 입금한다.

고용단절 상쇄에 대한 크레딧의 효과는 실업기간의 길이, 연금대상소득 기준, 이들 파라미터가 연금 수급권에 산정되는 방식에 좌우된다(육아에 대해서는 부록 3.A1의 표 3.A1.1, 실업에 대해서는 표 3.A1.2 참조).

### 연금 크레딧에 의해 보장되는 기간

자녀양육에 대한 크레딧은 대체로 자녀가 특정 연령이 될 때까지의 경력단절에 대한 보장을 한다. 크레딧은 일반적으로 경력중단이 길어질수록, 자녀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줄어든다. 많은 OECD 국가들은 영유아 자녀(대개 3-4세까지)의 양육에 보낸 기간을 보험기간으로서 크레딧을 제공하고 이를 유급 고용으로 간주한다. 이에 반해 연령이 좀 높아진 자녀(대개 6-16세)의 양육을 위해 연장된 휴직 기간은 조기은퇴와 최저연금의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만 고려된다. 일부 국가들(체코, 그리스, 헝가리, 룩셈부르크)은 자녀양육을 수급자격 평가에 고려하지만 소득기준을 계산할 때는 고려하지 않는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에서만 부모의 근로 중단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연금 크레딧을 (소득 기준선까지) 제공한다. 이 크레딧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명의 피부양 자녀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공적 연금제도(regime general: 일반제도)는 자녀 출생 또는 입양 시 1년치 보험가입 인정기간을 모(2004년 1월부터)와 부(2010년 1월부터)에게 제공한다(MDA: 자녀양육 크레딧). 출생 또는 입양 후 매년 자녀의 생일에 1분기씩 주어지며, 한 자녀당 최대 8분기까지 주어지는데 이는 완전 기여 이력을 기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중요하다. 일부 국가들(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에서 연금 크레딧 역시 자녀 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 후해진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공적 연금제도와 두 가지 중요한 퇴직연금제도(종업원: ARRCO, 경영진: AGIRCC)에서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에게 더 많은 크레딧(MDA에 추가됨)을 부여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국가별 현황을 다룬 장은 모든 크레딧 제공 메커니즘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자녀양육 크레딧의 수혜자는 모 또는 부이며, 대개는 모인 경우가 많은데 크레딧이 육아휴직의 실제 수급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덴마크와 스웨덴 등의 국가들에서 부가 점점 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부를 위한 육아휴직 수급권을 도입했거나 부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지급제도를 재설계한 국가들에 해당된다.<sup>10</sup> 룩셈부르크는 크레딧 혜택을 받기에는 너무 적은 기여를 했던 사람에게 정액 노령수당을 지급하며 대부분의 수혜자는 여성이다. 칠레에서 육아휴직 24주 중 첫 18주는 모에게만 주어지지만 부는 19번째에서 24번째 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각자의 연금 수급권에 계산된다.

일반적인 원칙은 크레딧을 받는 사람은 부모 중 경력이 단절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크레딧이 추가적인 이득을 산출하지 않을 때(전일제 재택 부모가 주된 양육자인 경우) 일부 예외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노르웨이와 같은 국가들은 가정에서 선택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리스에서는 모의 연금 수급권에 별 차이가 없을 때 부가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1992년 및 이후 출생자녀에 대한 크레딧은 고용 또는 실업 상태인 부모에 의해 사용되거나 둘이 나눌 수 있다. 스웨덴은 유연한 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양쪽 부모가 달리 선택하지 않는 한 부모 중 소득이 낮은 사람이 크레딧을 가질 수 있다.

실업자에 관한 한, 크레딧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한정되며 어떤 국가에서는 수급자의 연령에 좌우된다. 일부 국가들에서 실직기간의 부분(tranches)만이 연금 산정에 이용되는 반면 다른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크레딧이 연령이나 가족상태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벨기에에서 소위 브리징(bridging)연금으로 불리는 비자발적 및 경력 말기의 실업급여(end-of-career unemployment benefit)는 퇴직연금에 계산된다. 프랑스에서 무급여 실업은 1년, 특정 범주의 실업자는 5년까지 크레딧을 받는다. 스페인에서 크레딧은 실업자의 가족상태를 고려한다.

경력 말기의 실업에 대한 크레딧은 일반적으로 더 관대한데 크레딧이 사실상 변하지 않는 연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며, 이는 사실상 조기은퇴의 경로를 만든다. 오스트리아는 근로자의 노동 시장 조기은퇴를 가능하게 하는 실업 브리징급여를 제공하지만 이 급여는 2015년 말까지 완전 철폐 될 것이다. 벨기에 역시 은퇴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브리징연금을 59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반면, 스페인은 55세를 넘는 사람들의 실업부조만을 인정하는데 정부는 그들이 은퇴연령에 될 때까지 노령연금에 대한 기여금을 지불한다. 덴마크의 경우 실업보험급여를 60세(2014년에서 2017년 사이에 62세로 상향 예정)와 정상수급개시연령(현재는 65세이지만 67세로 연장 예정) 사이의 사람들에게 특별조기퇴직급여를 제공하는 자발적 조기은퇴제도와 연계시키고 있다. 이 급여의 자격을 얻으려면 개인은 최소 30년간 실업보험기금에 납입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자발적 조기퇴직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핀란드의 경우 국민연금제도와 소득비례연금제도에서 장기 실업을 겪은 후 62세(1958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63세로 상향 조정)부터 조기수급에 대한 계리적 감액 없이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59세 근로자가 실직하면 65세까지 실업급여를 받지만 노령연금을 63세에 받기로 선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은 63세까지만 적립된다. 35년간 국민연금에 납입한 57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실업기여금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퇴직연금 수급자격을 가질 수 있다. 실업급여(보험과 부조 지급)의 가치는 연금 급여를 산정할 때 고려된다. 체코에서 실업보험 기간은 50세가 될 때까지 5개월, 50-55세는 8개월, 55세를 넘으면 11개월이다. 또한 55세 이전의 급여 없는 1년간의 실직과 55세 이후의 급여 없는 3년까지의 실직 역시 연금 크레딧으로 인정된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연금 수급액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실업기간의 80%만 반영한다.

### 연금 크레딧의 연금대상소득 기준

크레딧의 근거가 되는 연금대상소득에 관한 한 국가별 차이가 매우 크다. 육아 관련 휴직의 경우 벨기에, 핀란드, 일본, 룩셈부르크, 스웨덴은 육아휴가 직전의 소득을 사용하지만 슬로바키아와 같은 다른 국가들은 휴직 전 24개월의 평균소득을 사용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크레딧 산출에 정액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에서 크레딧은 2014년에 1개월에 1,650유로의 명목 연금대상 임금에 근거한다. 핀란드는 육아휴직기간이 10-11개월을 초과하고 자녀가 3세가 될 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당 정액 임금인 707유로(2014년 기준)를 근거로 크레딧을 인정한다.

또 다른 국가들(헝가리와 영국 등)은 육아급여 또는 최저임금을 기준소득으로 선택한다. 폴란드 역시 최저임금을 선택했지만 2012년부터 연금대상소득은 이전 12개월 평균임금의 60%로 설정되었다. 프랑스에서 육아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부모(또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특정 기준액 미만이며 특별 가족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음)는 최저임금을 연금대상소득으로 사용하는 강제적 노령보험(Allocation vieillesse parents au foyer)에 가입된다.

기준소득(reference earnings)에 근거한 기여금은 자녀양육에 대한 크레딧을 인정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경력단절기간 동안 명목상 납부된다(즉, 경력단절기간 동안 기여금은 국가가 납부하는데 마치 개인이 일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예산 또는 특정 공적적립기금을 통해서 재정이 조달됨). 오스트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이 이에 해당되는 국가들이다. 노르웨이와 같은 일부 국가들에서 크레딧은 특정 소득기준까지만 인정되는 반면 덴마크와 에스토니아 등 다른 국가들에서는 가입자가 기여금의 일정 부분을 부담한다.

입수 가능한 정보에 한해서 볼 때, 연금 크레딧 재원은 주로 일반 세금을 통해 조달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연방소득세에 의존하는 가족수당평형기금(Family Allowances Equalisation Fund)과 공공예산을 통해 자녀양육 크레딧의 재정이 마련된다. 프랑스에서는 주류세 등 다양한 목적세를 통해 재정이 마련되는 공적기금(Fond de solidarite vieillesse)이 2009년까지 주 자금원이었는데 이후에 적자가 났다. 그 이후부터 가족수당전국공단(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의 전입금으로 연금에 대한 자녀양육 크레딧 비용을 충당한다. 독일연방정부는 자녀양육기간 동안 정액 기여금을 연금보험에 납부해주는데 세금을 재원으로 한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6세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여금을 납부한다. 이 액수는 평가기준(평균 월임금) 60%의 20%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덴마크, 헝가리, 스웨덴 등)에서 강제적 기여금을 수혜자가 최소 일부를 납부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또한 비용이 많이 든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2011년에 GDP의 0.75% 이상을 자녀양육 관련 연금 크레딧에 사용했다(Commission pour l'avenir des retraites, 2013). 스웨덴에서 부모가 자녀양육을 위해 경력을 중단한 기간에 대해 국가가 납부한 연금 기여금은 2012년에 전체 기여금의 약 2.5%를 차지했다. 독일의 경우 한 자녀당 3포인트의 비용은 2012년에 납입된 총 기여금의 거의 6%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2014년에 자녀양육 관련 연금 크레딧 비용이 GDP의 0.3%를, 실업 관련 연금 크레딧 비용이 GDP의 0.4%를 차지했다.

실업의 경우 연금대상소득(pensionable earnings)은 실직 직전 소득이거나 그 소득의 일정 비율이거나 고용 중단기간에 받은 급여액일 수 있다. 그러나 실직자의 나이와 실직기간에 따라 규정이 다르다. 벨기에의 경우 예컨대 59세 미만일 때와 이상일 때 규정이 다르며 실업에 대한 크레딧은 59세가 될 때까지 “연간 최저크레딧”, 즉 2014년 기준 연간 22,189유로에 근거한다. 그 이후에는 기준소득으로 최종임금을 적용한다.

### 3.6. 짧아지고 단절된 경력 시의 연금 수급액 시뮬레이션

#### 육아, 실업 및 노동시장 진입지연에 대한 가정

여기서 시뮬레이션하는 연금 수급액은 2014년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남성과 여성이 고용이 지연되거나 실업 또는 근로기간 중 육아로 인해 경력이 짧아지거나 단절된다고 가정한다.

OECD 완전경력 시뮬레이션 기준(baseline)모형은 20세 노동시장 진입을 가정한다. 진입 지연에 대해

여기서 검토한 시뮬레이션에서는 개인이 5년 늦은 25세에 진입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경력단절의 경우 근로자는 20세에 전일제 근로자 경력을 시작해서 30세에서 40세 사이에 자녀양육을 위해 또는 35세에서 45세 사이에 실직으로 인해 10년간 일을 중단하고, 그 이후에 전일제 근로를 재개하여 정상 은퇴연령까지 일한다는 가정을 한다. 자녀양육의 경우 시뮬레이션은 또한 여성이 30세와 32세 각각 낳은 두 자녀를 둔 것으로 가정한다. 단순화를 위해서 시뮬레이션 결과는 부부가 아닌 개인기준으로 산출한다.

시뮬레이션은 제11장에서 설명되는 파라미터와 규칙을 근거로 한다. 산출된 연금 수급권은 2014년에 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예상연금소득을 반영하는데, 이 법률은 점차 시행될 연금제도에 대한 변화의 근거가 된다. 각국에 대해 살펴보면 민간부문 근로자를 위한 강제적·준강제적 1층 및 2층 제도가 모형화되었는데 이는 모든 강제적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가입률이 높은 퇴직연금제도를 망라한다. 이 모형은 또한 퇴직자가 받을 수 있는 자산조사적 급여를 예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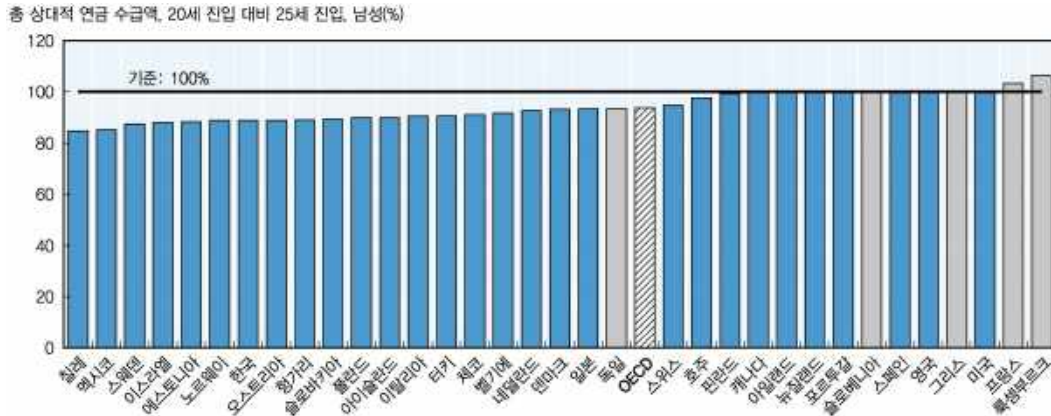
### 지연된 노동시장 진입 시뮬레이션의 결과

연금수급연령이 65세인 국가들의 경우 OECD 모형은 2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함으로써 45년의 경력을 갖게 된다는 가정을 한다. 연금수급연령이 이보다 빠른(늦은) 국가들의 경우, 완전경력 기간은 짧아지는데(길어지는데), 체코, 덴마크,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영국, 미국에서 늦어진 은퇴연령으로 최소 47년의 경력을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실제로 경력은 완전고용 기본가정(baseline assumption)보다 짧은 경향이 있다. 실제로 (그림 3.3에 나와있듯이) 20세 이후에도 유급 고용을 시작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존재하며 많은 근로자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유급 고용이 아닌 상태로 시간을 보낸다. 또한 조기퇴직이 일부 OECD 국가들에서 여전히 흔한 일이다.

연금 급여를 기여 년수와 더 긴밀하게 연계한 국가들에서 지연된 노동시장 진입은 직접적으로 연금 수급액을 낮춘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40년 미만의 기여기간은 퇴직자가 소득비례연금제도에 전액연금을 신청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현재 20세에 경력을 시작한 연령 인구집단은 63세까지 완전경력을 마친 후에 완전요율 연금의 수급자격을 가질 것이다. 반면 25세에 첫 직장을 구한 사람이 페널티 없이 기여기간에 비례한 연금을 신청하려면 67세까지 일해야 하는데 이는 기준모형보다 1년 짧다. 법정 연금개시연령이 65세이고 완전 기여기간이 45년인 벨기에에서 25세에 노동시장 진입하고 정상연령에 은퇴하는 것은 이에 비례해서 낮아진 연금 수급권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약 늦게 진입한 근로자가 자신의 은퇴연령을 연장하면 더 높은 연금 수급자격을 가질 것이다(아래 참조).

그림 3.11은 20세에 근로를 시작한 평균소득 근로자와 25세까지 노동시장 진입을 미뤘던 근로자의 총 연금 수급권을 비교한다. OECD 지역에서 이로 인한 연금 격차는 평균 7%이지만 이 평균 수치는 국가별 차이를 보여주지 못한다. 칠레와 멕시코의 경우 (늦어진 노동시장 진입으로 인한) 연금 수급액은 완전경력 기준 수급액의 85%이다. 85%의 비율은 확정기여형(DC)제도에 내재된 계리적 공정성(actuarial fairness) 규칙의 결과로 은퇴연령은 같고 OECD 모형의 경제가정이 적용된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이에 반해 프랑스의 비율은 103%이고 룩셈부르크의 비율은 106%인데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면 이 두 국가에서 전액연금수급연령이 각각 4년과 5년 미루어진다. 독일, 그리스, 슬로베니아에서도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된 경우 기여기간 규칙을 감안하면 완전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늦은 나이까지 일할 것이 요구된다.

그림 3.11. 25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법정 은퇴연령에 은퇴한 근로자의 기준 대비 연금 수급액: 평균임금 근로자



주: 총 연금 수급액은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25세 또는 20세에 진입하느냐에 따라 평균소득 근로자에 대해 산정됨. 열은 회색으로 표시된 국가들은 지연된 진입으로 은퇴가 늦어지는 국가들임. 최근의 연금개혁에 의해 도입된 변화 때문에 기여 연수가 5년 짧은 미래 퇴직자들은 전액 연금을 받으려면 현재 퇴직자들보다 더 오래 일해야 함. 연금 수급액은 미래를 예측한 수치이며 근로자들이 해당 국가에서 표준 은퇴연령이 될 때까지 2014년의 연금규칙이 전체 경력에 적용된다고 가정함. 장기간에 걸쳐서 점차로 시행될 예정인 제정된 규칙들도 이 모형에 포함됨.

출처: OECD 연금모형 추정치. 본 보고서의 제6장과 제11장 참조.

<http://dx.doi.org/10.1787/888933300511>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이스라엘, 한국,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의 비율은 90% 미만이다.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미국의 연금 수급권은 노동시장 진입 지연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일랜드와 뉴질랜드에서 급여는 정액연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인데, 반면에 근로자들은 영국과 미국에서 35년, 스페인에서 37년, 캐나다에서 39년, 포르투갈에서 40년 이후에 최대 연금액에 도달한다. 초반 근로 연수의 소득이 평균을 내는 기간에 포함될 정도로 높지 않은 한 5년 덜 납부한 기여액이 연금 급여의 수준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연된 노동시장 진입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연금 수급액에 악영향을 미쳐서 근로자가 근로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연금 급여를 낮춘다. 노동시장에 늦게 진입한 근로자에게 노후소득 유지를 위해 열려있는 유일한 다른 옵션은 직장생활 동안 저축을 더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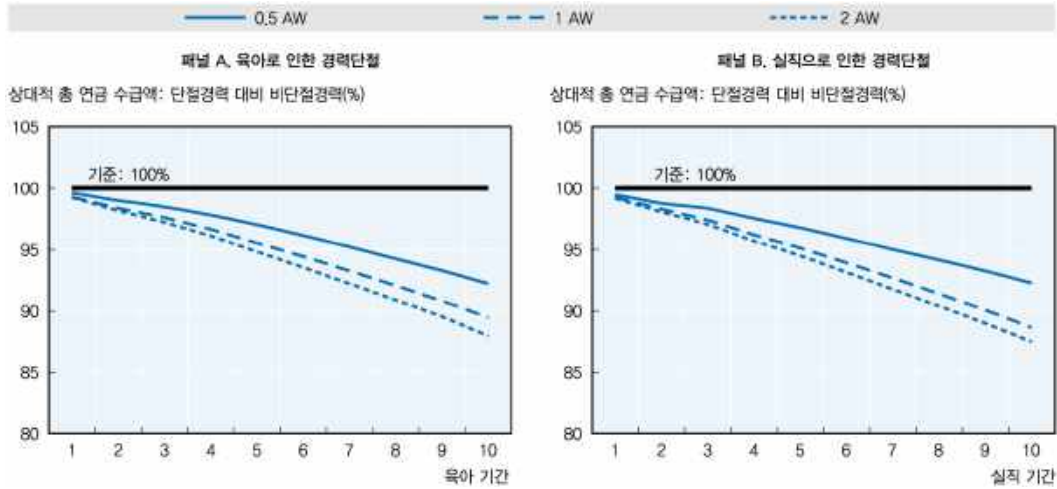
### 경력중단이 연금 수급액에 미치는 영향

경력단절 이력이 있고 크레딧을 인정받은 사람의 연금 수급액과 완전하고 단절 없는 경력을 가진 기준 퇴직자의 연금 수급액은 어떻게 다른가? 경력단절을 경험했던 사람의 연금 수급액에 크레딧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이 섹션에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본다.

#### 전반적 상황

그림 3.12는 여러 가지 소득 수준에서 육아(패널 A) 및 실업(패널 B)으로 인한 경력중단이 미치는 영향을 OECD 평균으로 보여준다. 패널 A는 두 자녀의 양육을 위해 30세에서 40세 사이에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과 두 자녀를 두고 있지만 일을 쉬지 않았던 여성 사이의 총 연금수준의 비율을 보여준다. 패널 B는 35세에서 45세 사이에 실직 상태였던 사람과 근로시장 진입부터 정상 법정 은퇴 연령까지 쉬지 않고 일했던 사람 사이의 총 연금수준의 비율을 보여준다.

그림 3.12. 소득 수준별 육아 및 실직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미래 연금 수급액에 미치는 영향, OECD 평균



주: 기준(baseline)은 표준화된 완전경력을 의미. AW는 OECD에 의해 사용된 평균임금 근로자임. 0.5AW는 평균임금의 절반(“저소득”), 2는 평균임금의 2배(“고소득”)를 의미. 자녀양육의 경우 모형은 2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각각 2세와 4세된 자녀를 둔 여성이 30세와 40세 사이에 10년간 경력을 단절하고 이후 전일제 고용을 재개해 법정 은퇴 연령까지 일한다고 가정. 실업의 경우 모형은 2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35세와 45세 사이 10년간 실직 상태였다가 이후 전일제 고용을 재개해 법정 은퇴연령까지 일한다고 가정. 여기에 나타난 지표들은, 패널 A의 경우 자녀양육을 위해 경력을 중단했던 사람과 두 자녀를 두었지만 쉬지 않고 일했던 사람 사이의 비율이며, 패널 B의 경우는 실직으로 인해 경력이 중단된 사람과 중단 없이 전일제로 계속 일한 사람 사이의 비율임. 연금 수급액은 미래를 예측한 수치이며 근로자들이 해당 국가에서 표준 은퇴연령이 될 때까지 2014년의 연금규칙이 전체 경력에 적용된다고 가정함.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제정된 규칙들도 이 모형에 포함됨.

출처: OECD 연금모형 추정치. 본 보고서의 제6장과 제11장 참조.

<http://dx.doi.org/10.1787/888933300521>

평균임금을 받으며 두 자녀의 양육을 위해 5년간 경력을 중단한 여성의 총 연금은 두 자녀를 두었으며 경력을 중단하지 않았던 여성 대비 OECD 지역 평균 4%가 줄어들 것이다. 이 격차는 10년간의 경력중단 후에는 평균 11%로 늘어난다. 소득이 낮을 경우 연금하락 폭이 다소 적는데 5년 경력중단 후에는 3%, 10년 중단 후에는 8%가 줄어든다. 고소득에서의 하락분은 육아를 위한 중단기간이 길수록 더 커지는데 5년의 경력중단 후에는 5%, 10년 중단 후에는 12%의 차이가 난다.

실업의 경우 소득이 크고 고용중단이 길어짐에 따라 연금 수급액이 더 많이 줄어드는데 육아보다 격차가 약간 더 크다. 평균임금 근로자의 경우 3년간 실직 상태였다가 평균임금을 받으며 일터에 복귀하면 중단 없이 일했던 근로자와의 연금 격차가 평균 3%이다. 5년간 실직 상태인 경우 격차가 5%, 10년간 실직 상태인 경우 격차는 11%가 된다. 저소득자의 경우 연금 수급액의 하락은 OECD 평균 3년간 실직 후 2%, 10년간 실직 후 8%가 된다. 고소득자의 경우 3년간 실직 후 하락폭이 3%이며 10년 간 실직 후에는 13%에 이른다.

통계치는 실직 상태로 지내는 매 1년 마다 OECD 평균적으로 노령연금이 약 1%씩 줄어들음을 시사 하면서 또한 고용단절로 인한 노령연금 손실을 상쇄하는데 있어서 연금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도 보여준다. 실제로 매 1년 기여금 미납 시 수급액 1% 감소는 계리적으로 공정한 조정 보다 훨씬 낮은 수치인데, 재분배가 없는 상태에서 연금미납은 경력중단 당시 근로자의 연령과 OECD 모형에서 사용된 경제 가정에 따라 1년간 기여금 미납 시 약 2-2.5%의 연금하락이 발생한다.

### 자녀와 육아에 대한 국가별 시뮬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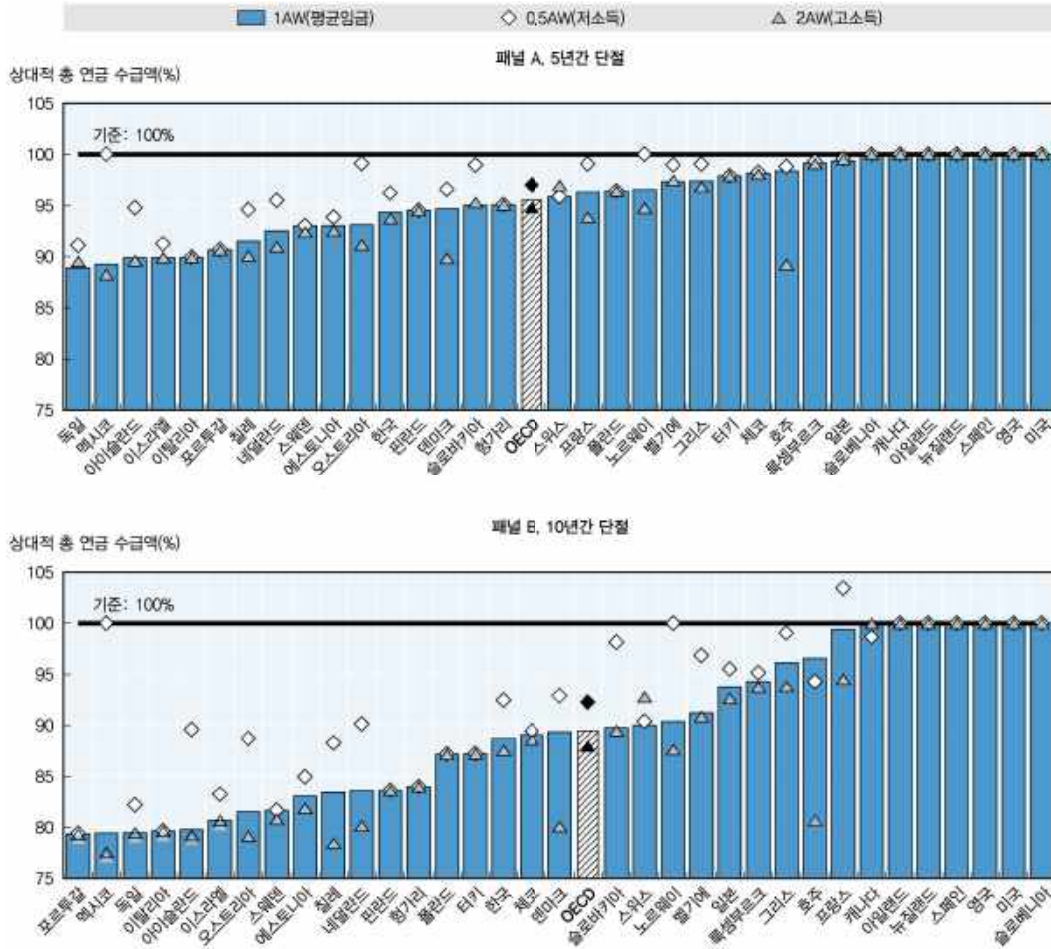
자녀를 두고 있지만 경력을 중단하지 않은 여성과 자녀가 없는 완전경력 여성 사이의 연금 수급액의 비교를 통해서 연금 수급액에 관한 한 몇몇 국가에서 엄마가 되는 것의 장점에 대한 추정치를 산출한다. 반대로, 두 자녀를 둔 여성 중에서, 자녀양육을 위해 경력을 단절시킨 모의 연금 수급액과 완전 경력을 가진 모의 연금 수급액을 비교하여 경력단절 비용의 추정치를 산출한다.

두 자녀를 두고 경력을 단절하지 않은 모의 연금이 증가한 국가는 독일과 이탈리아뿐이다. 독일에서 연금 증가는 1992년 이후 출생 자녀가 3세 될 때까지 기준임금(benchmark wage)이 평균소득과 같다는 근거 하에 매년 주어지는 1연금포인트의 크레딧에 기인한다. 이는 평균임금 1% 미만의 연금 수급액 증가로 이어진다(2013년 개혁 이후에 1992년 이전 출생 자녀에 대해 총 1연금포인트만이 크레딧으로 인정됨). 또한 막내가 10세 미만일 때 일하는 부모는 소득에 따라 매해 0.33에서 1포인트의 보너스를 받는다. 이탈리아의 NDC 제도에서 모가 은퇴할 때 자신의 명목자본(notional capital)을 더 유리한 요율로 연금(pension annuity)으로 전환된다. 한 자녀나 두 자녀를 둔 경우 더 관대한 전환을 때문에 모의 은퇴연령이 1년, 3자녀 이상인 경우 2년 연장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한 자녀나 두 자녀를 둔 모의 연금은 약 3.3%, 세 자녀 이상의 경우 약 6.6%를 증액시키는 효과가 있다.<sup>11</sup>

경력이 단절된 모와 단절없이 일한 모의 총 연금율이 그림 3.13에 소득수준별로, 5년 및 10년 단절된 경우가 제시되고 있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스페인, 영국, 미국에서 연금은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단절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일랜드에서 양육자의 소득이 특정 기준(Homemaker 제도에서 주당 38유로)을 넘지 않는다면, 12세 미만 자녀의 양육을 위해 경력이 중단된 기간은 최대 20년까지 가입된 기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단기간은 연금 수급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평균을 내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스페인에서도 역시 모가 자녀양육을 위해 보낸 3년을 가입기간으로 반영하는데, 전액연금 수급에 37년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크레딧은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상쇄시킨다. 뉴질랜드에서 공적연금은 거주만을 근거로 하므로 고용 단절기간이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림 3.13. 5년 및 10년간 경력이 단절된 모의 총 연금 수급액과 완전경력인 모의 총 연금 수급액 비교: 소득수준별



주: AW는 OECD에 의해 사용된 평균임금 근로자임. 0.5AW는 평균임금의 절반(“저소득”), 2는 평균임금의 2배(“고소득”)를 의미. 모형은 2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각각 2세와 4세된 자녀를 둔 여성이 30세와 40세 사이에 10년간 경력을 단절하고 이후 전일제 고용을 재개해 법정 은퇴연령까지 일한다고 가정. 여기에 나타난 지표들은, 상기 가정의 여성의 연금 수급액과 두 자녀를 두었지만 쉬지 않고 일했던 사람 사이의 비율이며, 패널 B의 경우는 실적으로 인해 경력이 중단된 사람과 중단 없이 전일제로 계속 일한 여성의 연금 수급액 간의 비율임. 연금 수급액은 미래를 예측한 수치이며 근로자들이 해당 국가에서 표준 은퇴연령이 될 때까지 2014년의 연금규칙이 전체 경력에 적용된다고 가정함. 장기 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제정된 규칙들도 이 모형에 포함됨.

출처: OECD 연금모형 추정치. 본 보고서의 제6장과 제11장 참조.

<http://dx.doi.org/10.1787/888933300539>

오스트리아,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멕시코, 포르투갈, 스웨덴, 터키에서 기여공백은 특히 자녀양육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노후소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들 국가 중 일부에서 육아에 대한 크레딧 인정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포르투갈, 멕시코 등).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다른 국가들에서 단절기간이 짧고/거나 저소득자를 더 잘 보호한다. 일부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크레딧을 인정하지 않는 사적 확정기여형(DC)제도가 존재하는데 이는 육아를 위한 경력단절이 기여금과 은퇴소득의 손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에스토니아에서 국가가 최대 3년까지 고용주 기여금을 납부하므로 이보다 경력단절이 길어지면 기여공백이 확대되고 연금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멕시코에서는 특정 자녀양육 크레딧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 격차가 상당히 크다. 그러나 저소득자는 완전경력 근로자라 해도 최저연금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단 최소 24년의 기여가 필요함),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노후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개국, 즉 프랑스, 독일, 그리스,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에서 경력중단은 필요한 기여기간에 관한 규정 때문에 페널티 없는 연금을 받으려면 근로자들이 나중에 은퇴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슬로베니아에서 20세에 유급 근로를 시작하고 10년간 경력이 중단된 근로자는 60세에 기여 연수가 40년 미만이 될 것이므로 페널티 없이 은퇴하려면 65세까지 일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납된 기여금은 육아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미래 노후소득을 더 잠식한다. 예를 들어, 벨기에, 체코,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바키아에서 고용이 경력시작 초기 몇 년 이내에 단절된 경우 연금 수급액의 격차는 적다. 격차가 이후에는 커지지만 이는 국가마다 다른데 다양한 크레딧 인정 규칙이 연금대상소득과 경력단절기간에 적용되기 때문이다(섹션 3.4 참조). 예를 들면 폴란드는 한 자녀당 최대 36개월까지 연금 크레딧을 제공한다. 두 자녀의 경우 수급액에 미치는 영향은 휴직 후 첫 6년 동안은 제대로 완충이 되지만 이후에는 기여공백의 영향이 강해지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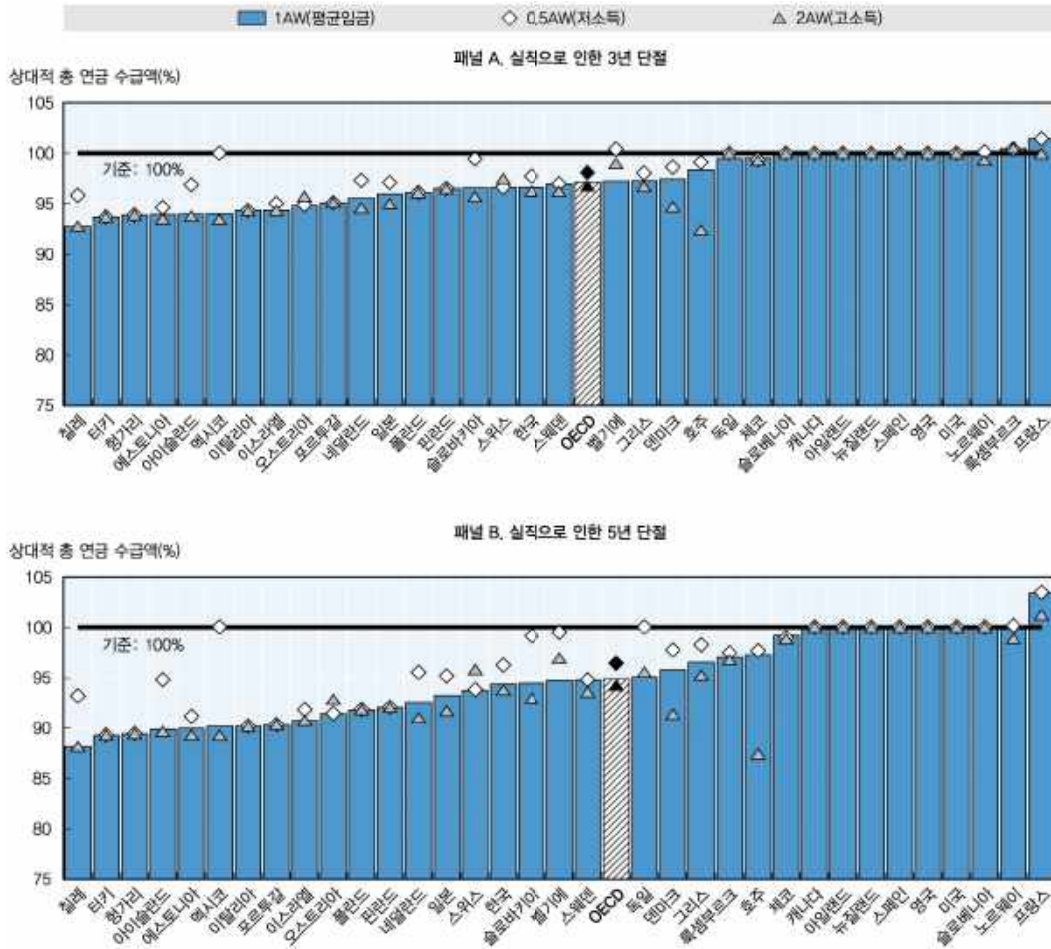
소득도 경력중단이 연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요소이다. 육아휴직 직전 소득이 연금 대상소득이 되는 국가들(벨기에, 핀란드, 일본, 스웨덴 등)에서 경력단절이 연금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척도에 걸쳐서 더 균등하게 퍼진다. 정부가 경력이 중단된 종업원의 기여금을 납부하며 크레딧이 임금보다 낮은 연금대상소득을 근거로 하는 다른 국가들에서 소득이 고소득자의 기여공백을 상쇄시키는 효과는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는 육아에 대한 크레딧을 정액으로 제공하므로 노후소득 수준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소득의 효과는 단절기간이 길수록 줄어든다.

호주, 오스트리아, 칠레,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에서 육아로 인한 5년의 경력단절이 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고소득 여성보다 저소득 여성의 경우 더 잘 완화된다. 캐나다에서 연금 수급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육아로 인한 기여중단 기간을 제외시킴으로써 고소득자가 영향을 덜 받는다. 일부 연구는 연금 수급액 외에도 연금제도의 설계가 고소득층 여성의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지만, 소득과 총 출산율(fertility rate)간 인과 관계가 충분하지 않다.<sup>12</sup> 오히려 경력전망, 보육서비스의 가용성, 예측된 소득손실이 연금보다 자녀 출산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더 설득력 있는 이유가 될 것이다.

### 실업으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국가별 시뮬레이션 결과

여기에서 사용된 지표는 35세에 1-2년 간 실직으로 경력이 단절된 근로자의 소득수준별 장기적 총 연금 수급액이다. 기준은 완전경력수급액이다(그림 3.14). 실직한 근로자가 다시 일자리를 잡을 때 상대적 임금이 예전 직장과 동일하다는 가정, 즉 실직한 평균임금 근로자가 몇 년 후에도 평균임금의 일자리를 다시 얻는다는 가정을 한다. 바꿔 말하면, 소득에 해를 끼치는 영향이 가정에서 제외되므로 경력단절이 근로자의 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로는 여기에서 예측한 수치보다 높다.

그림 3.14. 실직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연금 수급액과 완전경력 근로자의 연금 수급액 비교: 소득수준별



주: AW는 OECD에 의해 사용된 평균임금 근로자의 개념임. 0.5AW는 평균임금의 절반(“저소득”), 2는 평균임금의 2배 (“고소득”)를 의미. 이 모형은 2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35세에서 45세 사이에 10년간 실직을 겪고 이후 법정 은퇴 연령까지 다시 근로한다고 가정. 여기에 나타난 지표는 실직 때문에 경력을 중단한 사람의 연금 수급액과 경력중단 없이 법정 은퇴연령까지 일한 사람의 연금 수급액(그림에서 기준(baseline)에 해당) 사이의 비율임. 연금 수급액은 미래를 예측한 수치이며 근로자들이 해당 국가에서 표준 은퇴연령에 이를 때까지 2014년의 규정이 전체 경력에 적용됨을 가정함.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제정된 규칙들 역시 이 모형에 포함됨. 자료는 평균임금 근로자에 대한 추정치에 따라 순위를 매겼음.

출처: OECD 연금 모형 추정치. 본 보고서의 제6장과 제11장 참조.

<http://dx.doi.org/10.1787/888933300542>

평균임금 근로자의 경우, 완전하며 지속적인 경력을 가진 근로자 대비 연금 격차는 국가별로 크게 다르다. 연금 격차는 단절기간이 길수록 고소득자일수록 일반적으로 더 크다. 칠레, 헝가리, 터키에서 5년 동안 실직으로 경력이 단절된 경우 연금손실은 10% 이상이다. 반면에 일부 국가들에서 연금 규정은 실업기간으로부터의 부족분을 상쇄시킬 수 있다. 이는 예를 들어 캐나다,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 미국에 해당된다. 네덜란드의 거주기반 기초연금(실업으로부터 보호막을 제공할 수 있는 반면, 기업퇴직연금은 실업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해 크게 삭감된다. 뉴질랜드의 경우 실업 기간은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육아로 인한 경력중단은 자발적 사적연금 수급액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시뮬레이션에 고려되지 않았다. 이는 자발적 사적연금제도의 규모가 큰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미국과 같은 다른 국가들에도 적용된다.

장기실업에 대해서 평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에게 더 나은 보호막을 제공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최저임금과 자원조사형 제도가 일부 국가들, 즉 호주, 칠레, 덴마크, 독일, 아이슬란드, 멕시코, 슬로바키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장기실업에 대한 실업 크레딧은 평균소득에 근거한 정액이며 그러므로 저소득자를 평균소득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잘 보호한다. 호주에서는 저소득자의 연금 역시 기초연금과 자산조사적 연금 때문에 실업에 의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한국, 멕시코, 터키 등 연금 크레딧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들 중 칠레와 멕시코는 의무연금제도에서 연금과 소득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손실이 평균소득자와 고소득자에게 더 강하게 나타난다. 5개국(프랑스, 독일, 그리스,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에서 실업 기간은 의무기여 규정 때문에 은퇴를 나중에 하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에서만 이는 더 높은 연금 급여를 발생시키는데(그림 3.14) 더 빨리 은퇴한 완전경력 근로자의 연금이 물가에 연동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절된 경력을 가진 근로자는 늦어진 은퇴연령 때문에 더 짧은 기간 동안 연금 급여를 받을 것인데, 이는 전반적으로 낮아진 연금자산을 야기한다.

### 3.7. 정책적 평가: 경력단절을 보완하기 위한 위한 연금 크레딧과 기타 조치들

최근 다수의 연금개혁은 노후소득의 적정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연금제도가 더 지속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OECD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제도의 관대함을 줄이는 개혁을 시행해왔다. OECD 국가들은 예컨대 연금 급여와 납부된 기여금 사이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관대함을 줄였고, 전통적인 확정급여형제도에서 벗어나서 노동시장과 금융시장 리스크를 개별 가입자에게 전가시켰다. 이를 위해 스웨덴, 이탈리아, 노르웨이, 폴란드, 그리스(보충적 연금 없이)에서 확정급여형(DB)제도를 명목확정기여형(NCD)제도로 대체했고, 다른 국가들은 공적 확정급여형제도의 규모를 줄였으며 멕시코, 칠레, 호주, 노르웨이처럼 대부분 국가가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했다.

근무기간이 길수록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적정성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부들은 조기연금 수급제도를 폐쇄하고, 은퇴연령을 연장하고, 기여기간을 늘리고, 고령 근로자의 구직요건을 강화하고, 고된 직무에 대한 연금제도의 범위를 줄이고, “실제로” 병이 들어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만 지급되도록 장애급여를 제한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다. 제1장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표 1.A1.1은 2013년 9월 이후 근무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해 OECD 국가들이 취한 조치들을 보여준다(OECD, 2014f 참조). 그러나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이라는 두 요소가 노동시장 은퇴의 유효연령과 연관이 있다(OECD, 2006; 2013; 2014b, c, d, e; 2015a).

각국 정부는 또한 더 오래 일하는 것의 한계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연금제도의 파라미터를 변경하여 고령 근로를 권장해왔다. OECD 국가 전체에서 감액없는 연금 급여를 받으며 은퇴하려면 더 오래 일해야 하는데, 이는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변화와 일맥상통한다. 많은 국가들은 또한 연금 급여를 줄이는 방식으로 소득이 측정되는 기간을 연장시키는데, 최고 소득기간 또는 대체로 액수가 높은 최종소득의 평균을 사용하지 않고 생애소득의 평균을 사용한다. 연금대상소득의 변화는 소득이 전체 경력에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겠지만, 장기 경력단절자 또는

주로 여성인 시간제 근로자가 불리할 것이다.

이러한 최근 조치들이 여성과 실업자 등 특정 집단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많은 OECD 국가가 1990년대 이래 연금 크레딧과 기타 재분배적 메커니즘을 개발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연금 크레딧을 덜 관대하게 만드는 재정건전화 조치들과 제안들을 촉발시켰다.

연금정책들이 노동시장 문제점들의 일부를 완화시킬 순 있어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훨씬 더 폭넓은 정책적 시각이 필요하다. 저소득과 경력단절로 인한 연금에 대한 타격을 사후에 완화시키는 재분배 메커니즘과 더불어, 매우 폭넓은 사회정책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불평등을 줄이고 그럼으로써 불평등이 연금 수급액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학업기간이 연장되면 당연히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된다. 그러나 연장된 학업은 교육과 기술을 제공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고용과 임금을 향상시킨다. 가족정책은 부모가 일과 가정생활 간의 균형을 맞추도록 도와줌으로써 부모와 양육자의 노동시장 전망을 밝게 한다.

청년들을 노동시장에 진입시키는 것이 OECD 국가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의무학령에 관한 법령 외에도 경제 조건과 노동시장 관련 조건도 교육수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고용 기회와 학교에서 습득된 기술이 보다 잘 매치되도록 보장하고, 정보의 가용성과 전달을 개선하고, 경력 관련 자문 및 안내를 제공하고,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정책들 모두 청년들이 첫 직장을 구하려고 고군분투할 때,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관련된 기여공백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자녀양육을 위한 경력단절은 가정생활과 직장업무의 균형을 더 쉽게 이룰 수 있도록 고안된 광범위한 정책들(다수의 OECD 보고서(OECD, 2007, 2011, 2012)의 주제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가족 친화적 정책들은 최근 몇 년 사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최우선 순위가 되고 있는데 일을 하면서 자녀를 갖기 원하는 여성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양질의 육아 및 방과후활동을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과 가족 내 양육의무가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만드는 제도들(예를 들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부의 육아휴직)은 부모 특히 모가 유급 근로를 너무 오래 중단하거나 시간제 일자리에만 머무는 것을 방지하는 몇 가지 방법 중 일부이다. 부차적 소득자(second-earner)의 노동공급을 촉진하는 세계규정도 환영할 만한 조치이다.

노동시장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선하고, 사람, 기술, 일자리를 잘 매치시킴으로써 실업기간을 줄이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 그 첫 단계가 청년들을 취업시장에 맞게 준비시키고 근로자들이 최신 정보와 적절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만드는 양질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다. 실제로 시장활성화, 평생교육, 적절한 실업급여보장이 더 나은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이 있다. 직업 이동성(occupational mobility)을 개선하고 구직 및 일자리 수락에 대한 더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정책들이 실업 발생과 기간을 줄이는 노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OECD, 2014f). 세금과 급여 조치들(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저소득자에 대한 한계세율 인하 등) 역시 사람들이 복지급여를 받지 않도록 만들며 그럼으로써 실업기간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 지리적 이동성을 개선시키고, 기업이 정선 및 혁신을 권장하고, 총수요를 늘리는 정책들 역시 실업 퇴치를 돕고 그럼으로써 실업이 소득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줄일 것이다.

### 3.8. 정책적 함의와 향후 과제

생애주기 소득경로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길어진 학교교육, 기술에 근거한 임금 격차의 확대, 더 복잡해진 파트너십의 형태, 출산율 저하, 여성의 고용기회 증가, 평균 기대수명 증가, 실업률 증가, 탄력근무제는 모두 다양한 생애소득 이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근로자들은 점점 더 일과 돌봄, 여가, 학습 등의 활동을 병행하면서 동시에 불안정한 근로경로에 대처해야 한다.

노후소득의 적정성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가 앞서 언급한 모든 문제들에서 유래하는데, 한 가지는 일을 하면서 자녀 또는 연로한 친척을 돌봐야 하는 “샌드위치 압박”이며 또 다른 하나는 실업이다. 결과적으로 짧아지고 단절된 경력은 대개 노후소득 감소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고용단절이 연금 수급액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할 메커니즘이 부재한 상태에서 확정기여형제도로의 이동과 급여와 기여액 사이의 더 긴밀한 연계 등과 같은 연금제도의 현재 추세는 노후소득의 적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노년기 빈곤위험을 높인다.

많은 OECD 국가들은 육아를 위해 혹은 실직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 사람들을 돕는다. 본 장에서 제시된 추정치들은 연금 크레딧과 같은 메커니즘이 경력단절로 인해 노후소득에 미치는 악영향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지 보여준다. 연구 결과는 이 메커니즘이 특히 기타 재분배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저소득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경력단절의 충격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임을 시사한다. 연금 크레딧은 고소득자에게는 다소 효과가 덜한데 특히 고용단절 기간이 긴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 경우는 사적 및 강제적 연금제도에 납부된 기여금과 수령된 연금 간 연관성이 긴밀한 국가들에 특히 해당된다.

연금 크레딧은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될 경우 긴요한 사회활동을 보상해주고 양성불평등을 제한하는 등 적어도 일부 목적을 달성한다. 특히 연금 크레딧은 육아 서비스가 희소해서 모가 유급 고용(전일제 또는 시간제 여부 관계없음)을 다시 시작하는데 장애가 되고, 실업률과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지역에서 소중한 보완책이다. 게다가 사람들이 노령연금 자격을 갖추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연금 크레딧은 노인빈곤을 줄이고 노후소득 적정성을 개선하는데도 기여한다.

그러나 연금 크레딧은 소득재분배와 노인빈곤의 문제에서 상황의 일부만을 개선한다. 캐나다, 칠레,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에서처럼 공적 및 사적연금제도의 일부 환수(clawback)요소들(즉, 1층 급여가 다른 소득원을 이유로 점진적으로 삭감됨) 사이의 개선된 상호작용이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 기초 혹은 선별적 연금제도와 연금제도의 기타 재분배적 요소들이 가장 취약한 계층의 연금을 보호하는데 유용하다(제2장). 그러나 재정 비용과 근로 유인책도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 구축된 메커니즘이 의무 없는 권리만을 제공할 때 그러한 상충관계(trade-offs)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육아 관련 경력중단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정액급여를 제공하면 부차적 소득자(second earner)의 노동시장 참여의욕을 약화시킬 수 있다.

늦어진 은퇴연령과 길어진 기여기간이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의 선호에 근거한 더 길고 더 완전한 근로기간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사회적 보호제도의 설계는 오늘날의 복잡한 현실을 고려해야 하고 전통적 방법에 기반한 해결방안의 이면을 보아야 한다. 해결방안은 일, 돌봄, 여가, 학습에 자신의 시간을 융통성 있게 배분하는데 있어서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시간과 돈의 더 나은 사용을 바탕으로 한 정책들이 필수적인데 실제로 이 정책들이 가사돌봄 책임과 직장업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부의 휴직 사용이 일부 국가에서 개선되었지만 여성이 여전히 주양육자인데 부가 개인 또는 가족 수급권을 갖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경력중단 기간에 대체된 소득의 수준은 융통성과 더불어 남성의 행동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또한 시간제 근무를 선택한 기간이 직장가 가족생활의 통합을 개선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승진 기회를 줄이거나 심지어 하강이동을 초래하기도 하는데 이는 연금 수급액의 적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아젠다는 모든 사람이 유급 고용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장려하고자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생애기여력이 대개 불안정한 취약계층은 노후에 사회부조와 기타 안전망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하게 된다. 그러한 결과는 공적 소득비례제도에서 최근의 연금개혁에 의해 달성된 재정 절감의 일부를 상쇄시킬 것이다. 이는 또한 사적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를 갖춘 국가들에서 추가적인 공공지출을 의미할 것이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연금제도의 일부에서 개선될 것이지만 전체 연금 제도에서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늘 그렇듯이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 정책 입안자들은 기여금이 미납되고 인적자본이 미활용 상태인 기간을 인적자본이 구축되고 유지되는 기간으로 바꾸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이들 영역에서 제대로 설계된 사회정책은 생애 사건과 부수적인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역량을 개선 시키고 사회가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정책은 또한 모든 연령층에서 고용기회를 개선함으로써 실제로 더 길고 더 완전한 근로기간에 기여할 것이다.

연금제도가 여러 가지 경력과 소득경로에 의해서 생성된 충격의 일부를 흡수할 수 있는 경우에도 연금제도는 대개, 아무리 잘 설계되었다해도,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 또는 부모와 자녀없는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을 다루도록 의도된 것은 아니다. 물론 불평등은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족과 기타 사회구조 내에서 노동시장 불평등을 줄이는 조치들은 연금정책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고 전생애주기와 모든 연령집단에 걸쳐서 일관성 있는 많은 사회 및 노동시장 정책의 개입 및 입법과 연관된다. 일관성은 고령 근로자를 위한 실업제도, 조기은퇴 및 노령연금제도, 장애급여제도, 유연한 근무조건 및 평생교육을 촉진하는 정책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

사람들이 점점 더 자유롭게 삶의 이력을 구축해 감에 따라, 자신의 인생 경로에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전과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고용가능성, 사회보험, 재정적 계획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더 제대로 준비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학교, 고용주, 노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정적 능력 및 일과 삶의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유권자들 사이에 사회 정책의 근본적 상충관계(trade-off)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수 있고 그럼으로써 정치토론과 정책입안의 질이 개선될 것이다.

점점 더 복잡해지고 이질화되는 사회에서 현대 연금제도의 한계를 찾아내고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정책 질문은 현재의 연금제도 설계를 삶의 여정에 더 적합하도록 만들기 위해 이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확실한 해답은 없다. 모든 OECD 국가들은 일부 자원을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에게 재분배하는 메커니즘을 가진 연금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짙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재분배가 삶의 여정 중에 적합한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기존 프로그램이 리스크와 궁핍한 때에 적절하게 보장해주는지의 여부이다. 구체적 대응책이 궁극적으로 더 균형 잡히고, 공평한 고령화에 기여할 것이다.

## 주석

1. 예를 들면, 일부 OECD 국가들(벨기에, 독일, 영국 등)에서 고령 근로자들은 적극적인 구직활동 요건에서 여전히 면제되며 새 직장을 얻을 것으로 더 이상 기대되지 않는다. 또한 어떤 국가들에서 경력 초기의 실업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에서 50세 이상 장년 실업자는 50세 미만인 24개월이 아닌 3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는다. 또한 2015년 7월 15일자 법령은 은퇴 연령은 되지 않았지만 전액연금에 필요한 분기의 기여를 한 구직자들을 위하여 동등퇴직수당(AER)을 재구축했다. 오스트리아는, 예를 들어, 25세 미만 근로자에게 52주가 아닌 단지 26주 간의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한다.
2. SHARELIFE는 50세 이상인 사람들의 삶의 이력에 대한 Share 조사의 3차 데이터 수집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려면 [www.share-project.org/sharelife/](http://www.share-project.org/sharelife/) 을 방문하십시오. 조사대상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이다.
3. 평균에 포함되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이다(2010).
4. 조기은퇴제도는 실제로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있거나(덴마크,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이용가능 연령요건을 상향 조정하거나 조기은퇴에 필요한 최소 기여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강화되고 있다(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일부 국가들(그리스와 이탈리아) 역시 보충계리적 원칙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조기은퇴에 대한 페널티를 늘렸다(D'Addio, 2009, 2015; D'Addio and von Nordheim, 2014 참조).
5. 인적자본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교육은 더 높은 생애소득과 같은 추가적인 배당금을 산출하는 투자상품의 일종으로 간주된다(Becker, 1975; 1985; Mincer, 1974; Ben-Porath, 1967). 개인적 관점에서 조기에 인적자본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밝은 전망을 제시한다. 추가적인 인적자본의 취득 역시 실업의 위험과 기간을 줄인다(Nickell, 1979; Mincer 1991; D'Addio 1998, 2000; Kettunen, 1997; Riddell and Song, 2011).
6. Ahituv(2000)는 이스라엘에서 노동시장 진입이 1년 늦어질 때마다 개인의 교육수준에 따라 1.6%에서 4.4%의 생애소득이 줄어든다고 보고했다. Velfaerdskommissionen(2006)은 덴마크에서 노동시장을 1년 일찍 진입하면 생애 가치분 소득이 약 2% 증가한다고 보고했다.
7. 성별 격차가 덴마크에서 17%(Meilland, 2001), 프랑스에서 27% (Meurs and Ponthieux, 2000), 영국에서 14%(Chambaz, 2003), 독일에서 19%(Beblo et al., 2003, 2009; Dupuy et al., 2009)가 존재한다고 보고된다. Light and Ureta(1995)는 성별 임금격차의 12%는 출산 시기의 차이에 의해 설명된다는 점을 발견했다(Albrecht et al., 1999; and Kunze, 2002). Blau and Kahn(1995), Datta Gupta and Smith(2002), Phillips et al.(2001)도 참조하십시오.
8. 출산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출산 후 1년간이 그러하다. 효과의 크기는 자녀 수에 따라 증가한다(Joshi et al., 1996; Gornick et al., 1997; Falzone, 2000; Kaufman and Uhlenberg, 2000; Kenjoh, 2003). Gornick et al.(1997)은 분석된 14개 OECD 국가들 중 절반(즉, 호주,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미국, 영국)에서 자녀 유무와 관련된 고용 페널티를 발견한다. 가장 큰 효과는 영국에서 보고된다. De Henau et al.(2006, 2008), Maron and Meulders(2008)도 참조하십시오.



9. Fallick(1996); Kletzer(1989, 1998); Couch and Placzek(2010) and Cooper(2014)를 참조하십시오. Davis and von Wachter(2011)는 경기 침체에 실직한 근로자들은 약 19%의 소득손실을 경험하는데 이는 비침체에 실직한 근로자들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Greenstone and Looney(2011)는 실직 이후 2년간 평균소득이 실직 전보다 48% 하락했음을 시사한다.
10. 아이슬란드의 경우 2001년에 부에게 부여된 3개월의 유급 육아휴직 수급권이 도입된 이후 부에 의해 사용된 휴직 비율이 5% 미만에서 약 1/3로 증가했다(Eydal and Gislason, 2014). 마찬가지로, 독일에서 2007년에 육아휴직지급제도의 개혁 이후 육아휴직수당을 신청한 부의 비율이 2006년 약 3.5%에서 2013년 32% 이상으로 10배 증가했다(Destatis, 2015).
11. 프랑스에서 한 자녀당 최대 8분기까지 출생 또는 입양 이후 매년 생일에 1분기의 크레딧기간이 부여된다. 구체적으로 16세 미만의 각 자녀에 대해 최대 2년간 크레딧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분기의 수는 완전기여이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중요하다.
12. 문헌은 자녀를 갖는 것의 저해요인이 연금제도가 정액제가 아닌 소득비례제일 때 더 크다는 점을 발견했다. 연금제도별로 어떻게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보려면 Nishimura and Zhang(1992, 1995); Cigno(1993); Cigno et al.(2003); Rosati(1996); Cigno and Rosati(1996); Billari and Galasso(2009, 2014)를 참조하십시오.

### 참고문헌

- Ahituv, A. (2000), "Employment and Earnings Structure, Evidence from Israel", *Discussion Paper*, No. 0008, The Maurice Falk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in Israel.
- Albrecht, J.W. et al. (1999), "Career Interruptions and Subsequent Earnings: A Reexamination Using Swedish Data",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34, No. 2, pp. 294-311.
- Arulampalam, W., P. Gregg and M. Gregory (2001), "Unemployment Scarring", *The Economic Journal*, Vol. 111, No. 475, pp. F577-F584.
- Beblo, M., S. Bender and E. Wolf (2009), "Establishment-level Wage Effects of Entering Motherhood", *Oxford Economic Papers*, No. 61, pp. i11-i34.
- Becker, G.S. (1985), "Human Capital, Effort, and the Sexual Division of Labor",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3, No. 1, pp. S34-S58.
- Becker, G.S. (1975),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Second Edition, NBER Book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c., No. beck75-1, June.
- Ben-Porath, Y. (1967), "The Production of Human Capital and the Life Cycle of Earning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5, pp. 352-365.
- Billari, F.C. and V. Galasso (2014), "Fertility Decisions and Pension Reforms. Evidence from Natural Experiments in Italy", *IdEP Economic Papers*, No. 1403, USI Università della Svizzera Italiana.
- Billari, F.C. and V. Galasso (2009), "What Explains Fertility? Evidence from Italian Pension Reforms", *CESifo Working Paper Series*, No. 2646, May, <http://ssrn.com/abstract=1406946>.
- Blau, F. and L.M. Kahn (1995), "The Gender Earnings Gap: Some International Evidence", in Freeman and Katz(eds.), *Differences and Changes in Wage Structur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omparative Labor Market Seri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raga, B. (2014), “Three Essays in Labor and Education Economics”, PhD Thesis, University of Michigan.
- Brugiavini, A., G. Pasini and E. Trevisan (2012), “Maternity Leave Arrangements: The Impacts on Women’s Careers and Pensions”, Paper presented at the Royal Economic Society’s 2012 annual conference.
- Carcillo, S. et al. (2015), “NEET Youth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s: Challenges and Polic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64,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js6363503f6-en>.
- Chambaz, C. (2003), “L’accueil des jeunes enfants au Royaume-Uni”, *Études et résultats*, No. 234, pp. 1-8.
- Cigno, A. (1993), “Intergenerational Transfers without Altruism: Family, Market and Stat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 pp. 505-518.
- Cigno, A. and F.C. Rosati (1996), “Jointly Determined Saving and Fertility Behaviour: Theory, and Estimates for Germany, Italy, UK and USA”,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40, pp. 1561-1589.
- Cigno, A., L. Casolaro and F.C. Rosati (2003), “The Impact of Social Security on Saving and Fertility in Germany”, *FinanzArchiv*, Vol. 59, pp. 189-211.
- Commission pour l’Avenir des retraites (2013), “Nos retraites demain : équilibre financier et justice”, Rapport au Premier ministre (Rapport Moreau).
- Cooper, D. (2014), “The Effect of Unemployment Duration on Future Earnings and Other Outcomes”, *Working Paper*, No. 13-08, Federal Reserve Bank of Boston.
- Couch, K.A. and D.W. Placzek (2010), “Earnings Losses of Displaced Workers Revisited”,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00, No. 1, pp. 572-589.
- D’Addio, A.C. (2015), “Explaining the Gender Pension Gap in OECD Countries: Socio-economic Determinants and Pension Rules That Matter”, unpublished manuscript.
- D’Addio, A.C. (2009), “Pension Entitlements of Women with Children”, Chapter 12 in R. Holtzmann, E. Plamer and D. Robalino (eds.), *Nonfinancial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Schemes in a Changing Pension World*, Vol. 2, pp. 75-111.
- D’Addio, A.C. (2000), “Mobility of Young people on the French Labour Market,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and Empirical Analyses”, CIACO, ed. Louvain-la-Neuve, Belgium.
- D’Addio, A.C. (1998), “Unemployment Durations of French Young People: the Impact of Individual, Family and Other Factors on the Hazard Rate”, *CORE Discussion Paper*, No. 9851, Université Catholique de Louvain.
- D’Addio, A.C. and F. von Nordheim (2014), “Towards an Integrated Agenda to Deliver Effective Higher Retirement Ages: An Issue Note from the Pension Perspective Background Note for the Joint OECD-EU Workshop on ‘Delivering longer working lives and higher retirement ages’”, Brussels, 12 and 13 November 2014.
- Datta Gupta, N. and N. Smith (2002), “Children and Career Interruptions: The Family Gap in Denmark”, *Economica*, Vol. 69, pp. 609-629.
- Davis, S.J. and T. von Wachter (2011) “Recessions and the Cost of Job Loss”, *NBER Working Paper*, No. 17638, December 2011.
- De Henau, J., D. Meulders and S. O’Dorchai (2006), “Maybe Baby! The Comparative Effectiveness of Public Policies to Fight Motherhood-Induced Employment Penalties and Decreasing Fertility in the Former EU-15”, *Working Paper*, No. 06-02.RS, DULBEA, Brussels.
- De Henau, J., D. Meulders and S. O’Dorchai (2008), “Parent’s Care and Career: Comparing Parental Leave Policies”, in D. Del Boca and C. Wetzels (eds.), *Social Policies, Labour Markets and Motherhood. A Comparative Analysis of European Countr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pp. 63-106.
- Dupuy, A., D. Fouarge and B. Buligescu (2009), “Development of Econometric Methods to Evaluate the Gender

- Pay Gap Using Structure of Earnings Survey Data”, *Eurostat Methodologies and Working Papers*.
- El Mekkaoui de Freitas, N. et al. (2011), “Career Interruptions: How They Impact Pension Rights?”,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Vol. 36, No. 3.
- Fagnani, J. (1995), “L’allocation parentale d’éducation : Effets pervers et ambiguïtés d’une prestation”, *Droit social*, Vol. 3, pp. 287-295.
- Fallick, B.C. (1996), “A Review of the Recent Empirical Literature on Displaced Worker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ILR Review, Cornell University, ILR School, Vol. 50, No. 1, pp. 5-16, October.
- Falzone, J.S. (2000), “Labor Market Decisions of Married Women: With Emphasis on Part-time Employment”, *International Advances in Economic Research*, Vol. 6, No. 4, pp. 662-671.
- Farber, H.S. (2004), “Job Loss in the United States, 1981-2001”, *Research in Labor Economics*, Vol. 23, pp. 69-117.
- Geyer, J. and V. Steiner (2010), “Public Pensions, Changing Employment Patterns, and the Impact of Pension Reforms Across Birth Cohorts – A Microsimulation Analysis for Germany”, *School of Business and Economics Discussion Paper*, No. 2010/8, Free University Berlin.
- Gornick, J., M.K. Meyers and K.E. Ross (1997), “Supporting the Employment of Mothers: Policy Variation Across Fourteen Welfare Stat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Vol. 7, No. 1, pp. 45-70.
- Greenstone, M. and A. Looney (2011), “Have Earnings Actually Declined?”, *Brookings on Job Numbers*, 4 March 2011.
- Holmlund, B., Q. Liu and O. Nordstrom Skans (2006), “Mind the Gap? Estimating the Effects of Postponing Higher Education”, *CESifo Working Paper Series*, No. 1792, <http://ssrn.com/abstract=932496>.
- Joshi, H., S. Macran and D. Shirley (1996), “Employment After Childbearing and Women’s Subsequent Labour Force Participation: Evidence from the British 1958 Birth Cohort”,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Vol. 9, No. 3, pp. 325-348.
- Kaufman, G. and P. Uhlenberg (2000), “The Influence of Parenthood on the Work Effort of Married Men and Women”, *Social Forces*, Vol. 78, No. 3, pp. 931-947.
- Kenjoh, E. (2003), “Women’s Employment Around Birth of the First Child in Britain, Germany, the Netherlands, Sweden and Japan”, *Working Papers of the Institute for Social and Economics Research/Paper*, No. 2003-16, University of Essex, Colchester.
- Kettunen, J. (1997), “Education and Unemployment Duration”,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Vol. 16, No. 2, pp. 163-170.
- Kletzer, L.G. (1998), “Job Displacemen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2, No. 1, pp. 115-136.
- Kletzer, L.G. (1989), “Returns to Seniority after Permanent Job Los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9, pp. 536-543.
- Kunze, A. (2002), “The Timing of Working Career and Depreciation of Human Capital”, *IZA Discussion Paper*, No. 509, Bonn, May.
- Light, A. and M. Ureta (1995), “Early-Career Work Experience and Gender Wage Differentials”,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13, No. 1, pp. 121-154.
- Maron, L. and D. Meulders (2008), “Les effets de la parenté sur l’emploi”, *Document de travail DULBEA*, No. 08-21.RS, Université Libre de Bruxelles.
- Meilland, C. (2001), “Danemark – L’égalité hommes-femmes sur le marché du travail mis à mal par les congés parentaux”, *Chronique Internationale de l’IRES*, No. 71, pp. 1-8.
- Meurs, D. and S. Ponthieux (2000), “Une mesure de la discrimination dans l’écart de salaire entre hommes et femmes”, *Économie et statistique*, No. 337-338.

- Mincer, J. (1974), *Schooling, Experience and Earnings*, Columbia University, NewYork.
- Mincer, J. and S. Polachek (1978), “Women’s Earnings Reexamined”,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13, No. 1, pp. 118-134.
- Mincer, J. and S. Polachek, (1974), “Family Investment in Human Capital: Earnings of Wom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2, No. 2, pp. S76-S108.
- Nickell, S. (1979), “Education and Lifetime Patterns of Unemploy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7, No. 5, pp. 117-131.
- Nishimura, K. and J. Zhang (1995), “Sustainable Plans of Social Security with Endogenous Fertility”, *Oxford Economic Papers*, Vol. 47, pp. 182-194.
- Nishimura, K. and J. Zhang (1992), “Pay-As-You-Go Public Pensions with Endogenous Fertilit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48, pp. 239-258.
- OECD (2015a),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Poland 201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27279-en>.
- OECD (2015b), *OECD Economic Outlook*, Vol. 2015, No. 1, [http://dx.doi.org/10.1787/eco\\_outlook-v2015-1-en](http://dx.doi.org/10.1787/eco_outlook-v2015-1-en).
- OECD (2015c),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5-en](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5-en).
- OECD (2015d), *Health at a Glance 2015: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health\\_glance-2015-en](http://dx.doi.org/10.1787/health_glance-2015-en).
- OECD (2014a), *Education at a Glance 2014: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ag-2014-en>.
- OECD (2014b),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Netherlands 2014: Working Better with Age*,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8155-en>.
- OECD (2014c),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France 2014: Working Better with Age*,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7523-en>.
- OECD (2014d), *Vieillessement et politiques de l’emploi : Suisse 2014 : Mieux travailler avec l’âge*,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22823-fr>.
- OECD (2014e), *OECD Employment Outlook 2014*,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4-en](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4-en).
- OECD (2014f), *OECD Pensions Outlook 2014*,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22687-en>.
- OECD (2013),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Norway 2013: Working Better with Age*,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1484-en>.
- OECD (2007), *Babies and Bosses –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A Synthesis of Findings for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32477-en>.
-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www.oecd-ilibrary.org/employment/data/oecd-employment-and-labourmarket-statistics\\_lfs-data-en](http://www.oecd-ilibrary.org/employment/data/oecd-employment-and-labourmarket-statistics_lfs-data-en).
- Phipps, S., P. Burton and L. Lethbridge (2001), “In and Out of Labour Market: Long-term Income Consequences of Child-Related Interruptions to Women’s Paid Work”,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Vol. 34, No. 2, pp. 411-429.
- Polachek, S.W. (2007), “Earnings Over the Lifecycle: The Mincer Earnings Function and Its Applications”, *IZA Discussion Paper*, No. 3181, Bonn.
- Potrafke, N. (2011), “Unemployment, Human Capital Depreciation and Pension Benefits: An Empirical Evaluation of German Data”, *Working Paper Series*, No. 2011-05, University of Konstanz.

Riddell, W.C. and X. Song (2011), “Education, Job Search and Re-employment Outcomes among the Unemployed”, *IZA Discussion Papers*, No. 6134, Bonn.

Velfærdskommissionen (2006), “Fremtidens velfærd – vores valg”, Report from the Danish Welfare Commission, [www.fm.dk/404?item=%2fr%2fmedia%2fpublikationer%2fimported%2fvelfaerdskommissionen%2f2006%2ffremtidensvelfaerd-vores-vg-analyserapport-januar-2006&user=extranet%5cAnonymous&site=fmdk](http://www.fm.dk/404?item=%2fr%2fmedia%2fpublikationer%2fimported%2fvelfaerdskommissionen%2f2006%2ffremtidensvelfaerd-vores-vg-analyserapport-januar-2006&user=extranet%5cAnonymous&site=fmdk).

## 부록 3.A.1

### 육아 및 실업 관련 연금 크레딧의 주요 규정

표 3.A1.1. 육아 관련 연금크레딧의 주요 규정

	보장기간	연금대상소득	추가 보너스/수당
호주	1층에서만 보장됨		
오스트리아	4년이며 다둥이 출산에 대해 최대 5년임. 이 기간 중 둘째 자녀가 태어나면 새로 4년 또는 5년이 시작됨.	연금대상소득(PE)은 정액으로 2014년에 1,649.84유로임.	
벨기에	전체 경력에서 최대 36개월	연금대상소득은 경력중단 이전의 소득임	
캐나다	자녀당 최대 7년까지 평균을 산정하는 기간에서 제외됨	휴직기간은 연금대상소득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평균기간에서 제외되는데, 이것이 유리하다는 가정하에서임.	
칠레	24주의 육아휴직은 가입기간으로 간주됨	10% 기여금(즉, 연금대상소득)의 근거는 경력중단 이전 3개월 평균 임금임	출산한 여성은 65세에 바우처를 받는데 액수는 출산 시 최저 임금 18개월분의 10%에 출산 시부터 은퇴할 때까지 DC계정 잔액의 평균 순수익률을 합친 금액임
체코	4년이 가입기간으로 간주되며 자녀 수가 많다고 증가하지 않음	휴직기간은 연금대상소득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평균기간에서 배제됨.	
덴마크	퇴직보충연금(ATP): 출산/부성휴가 외에 32주의 육아휴가는 가입기간으로 간주됨	ATP 기여금의 2배가 납부됨: 1/3은 수급자가, 2/3는 정부/지방자치 정부가 납부.	
에스토니아	3년	국가가 1층 연금제도에서 최저임금(2014년 355유로)의 20%에 대한 고용주 기여금을 납부함. DC제도에 대해 납부된 기여금은 전국 평균임금의 4%임(2014년 921유로).	

표 3.A1.1. 육아 관련 연금크레딧의 주요 규정(계속)

	보장기간	연금대상소득	추가 보너스/수당
핀란드	260일 간의 육아휴직/주당 6일(즉, 10-11개월); 이 기간 이후에는 자녀가 3세 될 때까지임.	양육자가 임금을 받는 휴직기간 중 초기 3개월(이 기간은 파트너들 사이의 협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동안 연금대상소득은 [(임금×0.17)+임금]임. 초기 3개월 이후부터 유급 육아휴직이 끝날 때까지 연금대상소득(출산 전 소득, 즉 출산수당의 근거가 되는 임금×1.17)임. 이 두 액수가 연금에 대해 1.5% 적용됨. 이 기간 이후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연금대상소득은 2014년 기준 인정액 월 706.87유로에 근거해 산정됨. 이 기간 동안 기여금은 국가가 납부함.	
프랑스	각 자녀에 대해: 출산휴가에 대해 모에게 4분기; 교육에 대해 모 또는 부에게 4분기(MDA). 이전에 누적되지 않는 대체휴직으로 육아휴직의 보장기간이 자녀가 최대 3세가 될 때까지 늘어남(MDA 육아휴직). 이 기간은 보장기간을 연장시킴. 또한 제한적 직업활동을 하며 가족수당을 받는 저소득자들은 가사전업 부모연금을 받음(AVPF). 2세와 4세인 두 자녀를 둔 경우 보장기간은 최대 5년임(막내인 셋째가 출생할 때까지 자녀당 3년). MDA와 AVPF는 일반적 보장제도에서 보장기간만을 늘림.	가입기간을 늘리는 크레딧에 대한 연금대상소득(MDA)은 소득이 높은 25년의 평균소득이므로 연금소득에 영향을 미침. AVPF는 기여금의 20%가 납부되는 최저임금이기 때문임.	3자녀 이상을 둔 부모는 각 연금제도에서 10%의 보너스를 받음.
독일	1) 1992년 이후 출생 자녀의 부모는 4세 미만 자녀 1명당 1포인트를 받음. 2) 자녀가 10세가 될 때까지 계속 근무한 부모 3)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상관없이 10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부모.	1) 평균소득에 근거하여 매해 1연금포인트를 받음. 2) 임금이 근거한 정상 포인트 액수 이외에도 평균소득에 근거하여 0.33포인트를 추가로 받지만 총 적립은 1포인트를 초과하지 못함. 3) 매해 0.33을 받음. “2”와 “3”에서 0.33포인트는 평균임금에 근거함.	
그리스	첫 번째 자녀: 1년/300일, 둘째 자녀: 2년, 자녀들에 대해 최대 5년. 이 기간이 가입기간을 늘림.	평균생애소득	

표 3.A1.1. 육아 관련 연금크레딧의 주요 규정(계속)

	보장기간	연금대상소득	추가 보너스/수당
헝가리	임신수당을 받은 후, 양육자는 다 음의 급여 수급 가능: 1) 부모의 보장기간이 지속되는 한, 자녀가 2세가 될 때까지 육아수 당이 최대 84주 동안 제공됨. 쌍둥이의 경우 수급자격기간이 1년 연장됨. 2) 재택육아수당은 자녀가 최대 3 세가 될 때까지 제공됨(장애자녀 의 경우 10세 미만까지). 쌍둥이 의 경우 수당은 자녀가 의무학 령에 도달할 때까지 지급됨. 3) 가족이 최소 3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3세에서 8세 사이 자녀를 위한 양육보조금은 막내가 8세가 될 때까지 지급됨.	1) “육아수당” 기간 동안 연금대상 소득은 예전의 1일 총 평균소득 (2014년 142,000포인트)의 70%임. 2) 재택양육보조금 수령기간 중의 연금대상소득은 28,500포인트임. 3) 아동양육지원금 수령기간 중 연금 대상소득은 최저 노령연금임. 인정된 육아기간(“2”와 “3”포인트) 은 수급자에게 유리한 경우 생애 연금대상소득으로 크레딧을 받음. 헝가리는 인정된 육아기간을 수급 자격 및 가입 년수의 평가에 고려 하지만 소득기준을 산정할 때는 고려하지 않음.	수급자는 자신이 받는 급여의 10%를 강제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함.
아이슬란드	1층에서만 보장됨.		
아일랜드	12세 미만 자녀의 양육, 최대 20년 까지 반영되지 않음(Homemaker 제도)	국가연금(기여형)에 대해, homemaker 제도는 연간 평균 기여기간에서 제외 시키는 것을 허용함(1년에 48주)	
이스라엘	1층에서만 보장됨		
이탈리아	다른 전환계수는 1자녀 또는 2자녀에 대해 1년의 크레딧, 3자녀 이상에 대해 2년의 크레딧이 주어짐을 의미함	모는 더 관대한 전환계수를 받음: 자녀 2명까지는 유효연령+1에 해당하는 계수임, 반면에 3자녀 이상인 경우 유효연령+2년에 적용되는 전환계수임.	
일본	자녀 1명당 3년, 막내가 3세가 될 때까지.	연금대상소득은 경력중단 이전 소득임. 자녀당 3년을 초과한 기간이며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일 때 실직 (표 3.A1.2 참조)에 적용되는 규정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됨.	
한국	12-50개월의 육아휴직이 주어짐(2 명의 자녀에 대해 최대 50개월)	자발적 기여금이 납부되는 때만.	
룩셈부르크	1) 전일제 육아휴직 6개월, 시간제 육아휴직 12개월. 2) 육아기간: 4세 미만의 각 자녀에 대해 2년의 크레딧이 주어짐, 최대 4년. 3) 8세 미만 자녀양육은 비기여기간임	1) 연금대상소득은 1,778유로. 2) 육아기간 동안에 연금대상소득은 (PE)은 경력단절 이전 소득임. 3) 연금대상소득(PE) 없음.	육아기간에 대한 수급 자격이 없는 양육자 에게 지급되는 월간 수당. 2014년에 자녀 당 109유로임.
멕시코	1층에서만 보장됨		
네덜란드	1층에서만 보장됨		
뉴질랜드	1층에서만 보장됨		
노르웨이	최대 6세까지	연금대상소득은 기본액의 4.5배임.	



표 3.A1.1. 육아 관련 연금크레딧의 주요 규정(계속)

	보장기간	연금대상소득	추가 보너스/수당
폴란드	1) 26주(urlop rodzicielski), 2) 자녀당 최대 3년	1) 최초 연도에 평균임금의 80%. 2) 경력중단 기간에 따라 평균임금의 75%에서 60%.	
포르투갈	1층/육아에 대해 시간제 근로자에게 보장됨.		시간제는 전일제로 간주됨.
슬로바키아	6년	경력단절 전 2년간 평균임금의 60%.	
슬로베니아	자녀양육을 위해 시간제로 근무하는 사람들만 보장함.		
스페인	3년	경력단절 전 6개월간 평균임금	시간제는 전일제로 간주됨.
스웨덴	A. 5세 미만 자녀 B. 육아급여 480일	A. 이 경우 3가지 대안이 존재함: 1) 만약 자녀양육기간 소득이 0보다 크고 이전 소득보다 작은 경우 PE는 이전 소득임. 2) 출산 이전에 근로를 하지 않거나 매우 소득이 낮은 사람의 경우: PE는 BA의 1배임, B. BA의 10배까지 이전 소득의 80%, 마지막 190일은 1일 180크로나, 국가가 NDC제도와 프리미엄연금에 대한 기여금을 납부함. ITP의 경우 고용주가 일반적으로 첫 13개월에 대해 납부함.	
스위스	16세의 자녀까지, 퇴직연금에서는 크레딧 없음.	PE는 양육하는 부모가 은퇴한 년도의 최저연금의 3배임.	
터키	최대 2년	수급자는 기여금을 납부해야함.	
영국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PE는 기초국가연금(SP)와 제2국가연금(S2P)에 대해 계산되는 자녀급여.	
미국	경력이 35년이라면 연금 규정에 의해 상쇄됨.		

주: BA=기본액, ER=소득비례연금제도, PE=연금대상소득

출처: OECD 국가의 대표들이 제공하고 본 보고서 제11장의 “국가별 현황”에서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됨

표 3.A1.2. 실업 관련 연금 크레딧의 주요 규정

	보장기간	연금대상소득
호주	1층 연금제도에서만: 소득비례연금제도(ER)에 관한 자료 없음.	자발적 기여금인 경우
오스트리아	자격을 가진 사람은 (최소) 20주의 실업급여를 받고 그 이후 54주 동안 실업부조를 받음(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실제로 무한정)	1954년 이후 출생한 모든 가입자에 대해, 연금에 대한 평가기준은 실업급여 1일 수급액의 70%임(실업부조의 경우 70%의 92%임).
벨기에	(비자발적) 실업기간 전체	연금대상소득은 실업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급여임. 실직자의 연령에 따라 규정이 다름. 일반적으로 59세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가 손실급여의 a%(상한선 이내)에서 1일 정액으로 하락한 뚜렷한 3단계가 존재함.
캐나다	연금 급여를 결정하기 위해 실직 등 다양한 이유로 소득비례제도에서 평균소득을 산정할 때 기여기간의 최대 17%까지 배제될 수 있음.	
칠레	자료 없음.	자발적 기여금의 경우에만.
체코	실업보험 수급기간은 연령에 따라 다름: 50세까지 5개월, 50-55세는 8개월, 55세 초과 11개월. 55세 전 급여를 받지 않은 실업기간에 대해 최대 1년까지 크레딧으로 인정됨. 일반적 규칙으로서 전체 경력에서 총 실업기간의 80%만을 고려함. 예를 들어 경력에서 5년간 실업상태인 경우 4년만을 계산함.	이 기간은 연금대상소득을 결정하는 평균기간에서 배제됨.
덴마크	퇴직ATP연금에서: 실업보험 또는 실업부조에 의해 보장되는 기간	실업보험 기간 동안: ATP 기여금 효율의 2배가 정부/지방자치정부에 의해 지불됨. 실업부조 기간 동안: 기여금의 1/3은 수급자, 2/3는 정부/지방자치정부에 의해 납부됨
에스토니아	1층만, 소득비례연금제도(ER)에 관한 자료 없음.	
핀란드	63세 전에 급여가 지급되는 실업기간(보장급여가 500일 또는 23개월 동안 지급됨, 1개월당 평균 21.5일). 만약 500일이 적립되기 전 실직자가 59세(1955년 또는 이후 출생자의 경우 60세)가 된 경우, 소득비례실업급여가 65세까지 지급될 수 있음. 500일 이후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63세부터 노령연금을 청구할 자격이 주어짐. 소득연계실업급여 기간 이후에 정액 혹은 소득조사형(다양한 조건 하에서) 실업부조가 청구될 수 있으나 이러한 급여 하의 기간은 연금 수급권에 대한 크레딧을 받지 못함.	연금대상소득은 실업급여의 근거가 되는 소득의 75%임.
프랑스	완료된 매 50일마다 연금에 대해 1분기의 기여금, 1년에 최대 4분기, 총 2년간. 이러한 기간들은 소득이 높은 25년에 근거한 평균 기준임금의 산정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므로 연금산정에 포함 안됨. 또한 보장되지 않은 실업에 대한 4분기의 급여.	실업급여에 의해 보장되는 기간에 대해: 연금대상소득(PE)은 최종 임금인 “1일 기준임금”임 (연간 기준). 연금포인트는 이 임금을 근거로 퇴직연금제도에서도 적립됨.

표 3.A1.2. 실업 관련 연금 크레딧의 주요 규정(계속)

	보장기간	연금대상소득
독일	1) 실업급여 I: 6-24개월, 2) 실업급여 II.	1) 실업급여는 예전 총 소득의 80%임(기여금이 제도에 의해 납부됨). 2) 자산조사형 급여(연금에 대한 기여금이 없음)
그리스	300일 미만	실업급여
헝가리	최대 90일 간의 구직급여(이전 보험의 매 10일당 1일이 지급됨)	연금 기여금은 수급자가 납부함. 연금대상소득(PE)은 실업급여 혹은 가장 유리할 때의 소득.
아이슬란드	실업보험 기간	연금대상소득(PE)은 실업급여이며 기여금은 제도가 납부함.
아일랜드	자료없음	
이스라엘	자료없음	연금대상소득(ER): 자발적 기여금인 경우에만.
이탈리아	1) 기업의 사업상 어려움(distress)으로 구조 조정: 12-24개월. 2) 비자발적 실업: 50세 미만인 경우 8개월, 50-55세는 12개월, 55세를 넘으면 14개월임.	1) PE는 마지막 임금의 80%에 해당되지만 상한선이 존재함. 2014년에 1년 임금이 25,176.48유로까지인 근로자에 대해 최대 순 급여액은 1개월에 913.14유로였고 이보다 높은 임금의 근로자의 경우 최대 순 급여액은 1개월에 1,097.51유로였음. 2) A. 만약 평균임금이 1,192.98유로 미만이면 PE는 해고 전 최근 2년간의 월 평균임금의 75%임. B. 2014년에 1,192.98유로의 75% 및 월평균임금과 상한선인 1,165.58유로 간의 차액의 25%. 수당은 6개월 후 15%가 줄어들고 12개월 후 추가로 15%가 줄어들.
일본		소득에 따라 기여 스케줄이 다름: 57만엔 미만의 경우 기여금 면제를 받지만 기초연금의 절반의 수급 자격이 있음, 78만엔 미만의 경우 기여금의 1/4을 납부하며 기초 연금의 5/8의 수급 자격이 있음, 118만엔 미만의 경우 기여금의 절반을 납부하며 기초 연금의 3/4의 수급 자격이 있음, 158만엔 미만의 경우 기여금의 3/4을 납부하며 기초 연금의 7/8의 수급 자격이 있음.
한국	1층 연금, 소득비례연금제도(ER)에 관한 자료 없음.	자발적 기여만.
룩셈부르크	실업 보장기간은 연금에서 근로기간으로 간주됨.	실업급여가 연금대상소득(PE)임. 기여금은 수급자가 1/3, 국가가 2/3를 납부함.
멕시코	1층에서만 보장됨	자발적 기여만.
네덜란드	1층에서만 보장됨	자발적 기여만.
뉴질랜드	1층에서만 보장됨	
노르웨이	실업 보장기간은 연금에서 근로기간으로 간주됨	연금대상소득: 기본액(BA)의 7.1배.

3. 불완전 직업경력이 연금 수급액에 미치는 영향

표 3.A1.2. 실업 관련 연금 크레딧의 주요 규정(계속)

	보장기간	연금대상소득
폴란드	실업급여(UB) 수급기간(지역의 노동시장 조건과 이전의 실직기간, 가족상태에 따라 다양함).	연금대상소득(PE)은 정부가 기여금을 납부하는 실업급여임.
포르투갈	실업급여(UB) 수급기간	PE는 실업기간이 시작된 2번째 달 이전의 6개월 간의 임금임.
슬로바키아	자료 없음	실직자가 자발적 기여금을 내는 경우만
슬로베니아	실업급여(UB) 수급기간(기간은 연령과 이전 근로 이력에 따라 다름).	PE는 실업급여(UB)이며 기여금은 국가가 납부함.
스페인	실업급여(UB) 수급기간: 실업부조는 55세 이상 사람들에게만 계산됨.	PE는 경력단절 이전 6개월 동안의 평균임금. 개인이 기여금을 납부해야 함.
스웨덴	실업보험 또는 실업부조 수급기간	국가가 고용주로서 기여금을 납부함. PE는 다음과 같음: 1) 첫 200일은 이전 소득의 80%임. 2) 201-300일은 이전 소득의 70%임(자녀가 있으면 이 기간은 150일 연장됨). 고려된 연금대상소득(PE)은 320코로나에서 680코로나 사이임.
스위스	공적연금의 경우: 90-640일, 퇴직연금의 경우: 자료 없음.	실업제도는 당시의 PE인 이전 소득의 80%를 지급함. 소득이 매우 낮은 사람을 위해 지방자치 정부가 보통 최저연금 기여금을 납부함. 다른 경우에 개인이 공적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함.
터키	소득비례연금제도(ER): 자료 없음.	기여금은 강제적이지만 연금에 대해 산정되지 않음.
영국	실업보험 또는 실업부조 급여를 받는 실업기간은 기초 국가연금에 대해서만 고용기간으로 간주됨.	국가보험의 기여금은 연금에 대한 크레딧이 있는 사람들이 받는 급여에 대해 납부됨
미국	경력이 35년이면 연금 규정에 의해 상쇄됨.	

주: BA=기본액, ER=소득비례연금제도, PE=연금대상소득

출처: OECD 국가의 대표들이 제공하고 본 보고서 제11장의 “국가별 현황”에서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됨

## 제4장

# 모형 파라미터에 대한 소득대체율 민감도

본 장에서는 각 경제 파라미터의 변화가 이론적 대체율 추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한다. 본 분석에서는 또한 새로운 기본 경제적 가정과 본 보고서의 이전 판에서 사용된 기본 경제적 가정을 비교한 후 마지막으로 새로운 결과물과 경제발전 수준에 근거한 국가별 가정을 비교해 본다.

이스라엘 통계자료는 해당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하였다. OECD가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른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역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4.1. 서론

어떤 연금모형의 기저를 형성하는 경제적 가정은 미래 대체율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본 보고서에서 사용된 경제적 파라미터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제5장에서 제공된다. 인구통계 외에도 경제적 파라미터는 할인율, 연금자산의 수익률, 물가상승률, 실질임금상승률과 실질 GDP성장률과 주로 관계가 있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주요 분석결과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한 후 2013년 판과 비교하여 본 보고서의 파라미터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섹션 4.2에서 고찰한다. 섹션 4.3부터 4.6까지 각각의 파라미터 즉, 물가상승률, 실질임금상승률, 실질GDP성장률, 수익률, 할인율 변화의 영향을 차례대로 분석한다. 섹션 4.7에서는 기대수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사망률의 두 가지 대안적 추정치를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섹션 4.8에서는 한 눈에 보는 OECD 연금 시리즈에서 사용된 OECD 전체 파라미터와 비교한 국가별 경제적 파라미터에 근거한 예측치를 제공한다.

각 파라미터의 영향을 따로 떼어서 분석하는데는 확실히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임금상승률과 금융수익률의 장기적 추세는 대개 실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만약 실질임금 상승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경제전망의 개선에 의한 것이라면 자본의 한계생산성과 균형수익률 역시 상승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무위험이자율을 줄이는 경제적 추세는 금융수익률도 줄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분석은 변수 간 상대적 변화의 영향을 측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주요 연구 결과들

- 한 눈에 보는 연금 2015년 판에서 사용된 새로운 경제적 가정들이 미치는 평균적 영향은 적다. 완전경력 평균임금 근로자(full-career average-wage workers)의 대체율은 OECD 평균 1.5%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6개국에서 증가, 9개국에서 하락, 나머지 9개국에서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변화의 범위는 칠레에서 3.4%p 하락하고 벨기에에서는 8%p 상승하는 등 다양하다.
- 확정기여형제도에서의 대체율이 확정급여형 또는 정액제도에서보다 경제적 파라미터의 가치 변화에 더 민감하다.
- 수익률의 변화가 대체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데 해당된 9개국에서 평균 7%p를 약간 넘는 증가가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이스라엘에서 발견되는데 15%p가 증가하고 칠레와 덴마크 양국에서는 10%p가 증가한다. 이들 3개국은 확정기여형(DC)제도에 가장 높은 기여율을 보이는 국가들인데, 이는 또한 확정기여형제도가 전체 연금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함을 시사한다.
- 수익률의 경우처럼 할인율 변화가 동일한 9개국에서 대체율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 국가에서 실질할인율 1%p 변화는 평균적으로 3%p의 영향을 미친다. 이스라엘이 가장 커다란 확정기여형제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민감도(6%p)를 보이며, 이에 반해 노르웨이에서 민감도가 1%p 미만인데 확정기여형제도가 전체 연금에서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기 때문이다(이스라엘에서 확정기여형제도의 기여율이 17.5%인데 비해 노르웨이에서는 2%에 불과함).
- 대다수의 국가는 실질임금상승률 가정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에 예외적인 국가들은 자국의 모든 파라미터 가치들(정액급여 포함)을 실질임금상승률에 연계시킨 국가들로, 모든 것이 비례해서 증가하므로 대체율이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질임금상승률 가정의 변화는

그 직접적 영향 외에도 OECD 연금모형 내 실질GDP성장률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5개의 OECD 국가에서 대체율에 영향을 미친다.

- 연간 실질임금상승률을 기준선의 1.25%에서 0.5%로 낮추면 OECD 평균 대체율은 4%p 증가하는 반면, 실질임금상승률을 2%로 높이면 대체율이 평균 3%p 감소한다. 가장 큰 변화는 이스라엘과 호주에서 나타나는데, 실질임금상승률의 증가/하락이 자산적립(분자)보다 분모(임금)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하지만 호주에서 손실은 1층 구성요소(노령연금)에 의해 대부분 보충되었다. 확정기여형제도가 없는 국가들의 경우 대략 9%p로 터키의 변화가 가장 큰데 이는 처음부터 기준선 대체율이 높기 때문이다.
- 물가상승률 추세의 변화는 3개국에만 영향을 미치고 대체율에 대한 영향은 매우 작다.
- 국가들의 기준선 공통 가정에서 경제발전 수준(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 1인당 GDP로 측정)에 근거한 국가별 가정으로 옮겨 보면 대체율에서 제한된 차이가 나타난다. 대다수의 국가들이 기준선 값의 2%p 이내에서 대체율을 가질 것이며 7개국만이 절대적 기준에서 그것보다 큰 변화를 가질 것이다.

#### 4.2. 한 눈에 보는 연금 2013판 이후에 나타난 파라미터 변화의 영향

한 눈에 보는 연금 이전 판들의 모든 결과들은 시리즈에 걸친 경제적 파라미터들의 일관성 있는 세트에 기반한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OECD 국가들에 영향을 끼친 중요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일부 핵심 파라미터 가치의 수정이 필요하다. 장기적 추세는 미래에 실질임금상승률, 물가인상률, 금융수익률이 하락할 것임을 시사한다(표 4.1). 게다가 한 눈에 보는 연금의 이전 판들은 연금사업자들이 특히 사망률 리스크 감당에 대한 수수료와 보상을 고려하지 않은 보험계리적 산식에 근거한 적립자산으로부터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가정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연금액수가 보험계리적 무수수료(no-fee) 계산에 못 미친다는 증거가 있다(Brown et al., 1999와 St. John, 2004 참조; 10-30%의 웨지를 시사함). 한 눈에 보는 연금 2015판의 가정에는 실제 지급되는 연금과 무수수료(no-fee) 계산에 의한 연금 사이의 85%의 전환계수(conversion factor)가 포함된다.

표 4.1. 한 눈에 보는 연금 2013과 2015에서 사용된 경제적 파라미터

	한 눈에 보는 연금(PAG) 2013	한 눈에 보는 연금(PAG) 2015
물가상승률	2.50%	2.00%
실질임금상승률	2.00%	2.00%
실질할인율	2.00%	1.25%
실질수익률	3.50%	3.00%
연금전환계수	100%	85%

주: 한 눈에 보는 연금 2015에서 GDP 성장률이 이탈리아와 폴란드에서 0.75%, 터키에서 1.55%임.

출처: OECD (2013), Pensions at a Glance 2013: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pension\\_glance-2013-en](http://dx.doi.org/10.1787/pension_glance-2013-en); Chapter 5 of this publication

<http://dx.doi.org/10.1787/888933301037>

새로운 경제적 가정 하에서 여러 소득수준에서의 미래 총 대체율에 관한 모든 결과가 본 보고서의 제6장, 표 6.1에 제시된다. 그림 4.1은 이들 기준선 추정치들을 표 4.1에 요약된 한 눈에 보는 연금 2013에 근거한 추정치들과 비교한다.

그림 4.1. 새로운 경제적 가정과 예전의 경제적 가정 하에서의 남성 평균소득자에 대한 미래 총 대체율



출처: OECD 연금모형을 이용한 저자의 계산

<http://dx.doi.org/10.1787/888933300551>

그림 4.1을 보면 소수의 국가에서 경제적 파라미터의 변화 이후 추정된 대체율에 감소가 나타났지만 더 많은 국가들에서 실제로 증가했음이 분명하다. 이 현상이 각 특정 경제적 파라미터의 변화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기인하는지는 다음 섹션에서 다루진다.

### 4.3. 물가상승률 변화가 대체율에 미치는 영향

물가상승률 파라미터를 변화시키고 다른 파라미터들을 불변상태로 유지함으로써 분석을 시작한다. 헝가리, 스페인, 미국 등 3개국만이 연간 물가상승률을 1%P 증가 또는 감소시킬 때 미래 대체율에 어떠한 변화를 보인다.\* 이 3개국에서의 변화는 동일한 요인에 기인하는데, 기준임금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은퇴 직전의 소득을 물가상승률에 상관없이 명목상 일정하게 둔다. 미국에서 이전 소득은 국가차원의 평균소득 증가에 맞춰 수급자가 60세 되는 해까지 재평가된다. 급여액수가 산정될 때(62세입)까지 이후 2년에 대한 소득의 조정은 없다. 마찬가지로 스페인에서는 은퇴연령이 되기 2년 전에 이전 소득의 가치재평가가 중단된다. 이 두 경우에서 효과는 대체율을 2-3%P 낮추고 물가상승률은 각 1%씩을 추가로 높이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연금 수급액의 6% 감소에 달하고 스페인에서 2%의 감소에 달하는데, 스페인의 대체율이 미국의 두배 이상이기 때문이다. 헝가리의 경우 소득 재평가의 부재가 마지막 년도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물가상승률이 1%에서 2%로 이동하면 대체율 하락은 약 1%P에 지나지 않는다.

\*은퇴 직전 소득은 오스트리아에서도 1년간 물가에 연동된다. 그러나 연금계산은 소득에 따라 재평가된 최고의 40년을 사용하며, 불변 소득 상황의 가정 하에서 마지막 연도에 대한 물가연동은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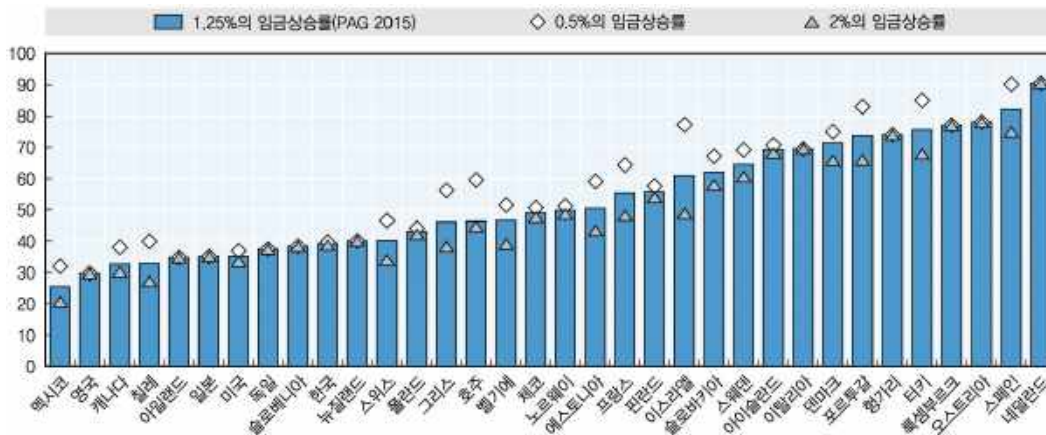


#### 4.4. 실질임금 변화가 대체율에 미치는 영향

임금상승률 가정을 증가시키면 미래 연금액이 증가한다. 그러나 높아진 임금상승률 가정은 일반적으로 대체율을 낮추는데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제도 모두에서 연금 수급액이 임금(대체율의 분모)보다 빠르게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들에서 모형화된 의무연금제도는 소득비례 확정급여형제도다. 3개국 모두에서 연금 급여는 외생적 연간 적립률  $x$ 에 기반하여 계산되며 급여는  $N \cdot x \cdot w$ 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N$ 은 기여 년수고  $w$ 는 기준임금이다. 그러므로 대체율을  $N \cdot x$ 에 의해 단순히 주어지는데 이는 과거 임금의 추이에 좌우되지 않는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에서 거주 혹은 기여이력에 근거한 기초정액급여가 있지만 모든 경우에 급여는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같이 증가하므로 미래 대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제로 영국에서 triple lock(물가상승률, 명목임금상승률, 2.5%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사용) 연금증액을 하는데 이는 OECD 연금모형의 장기적 가정에 따른 임금상승률에 해당하며 명목임금상승률이 평균적으로 매해 2.5%를 초과한다고 가정하면 대체율은 불변임을 시사한다. 전체적으로 10개의 OECD 국가가 0.5%에서 2% 사이의 연간 실질임금상승률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오스트리아,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영국) (그림 4.2).

그림 4.2. 임금상승률별 평균소득자의 총 대체율



출처: OECD 연금모형

<http://dx.doi.org/10.1787/888933300563>

실질임금상승률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국가들 중에서 다른 파라미터들을 일정하게 둔다면, 제도의 설계 때문에 영향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림 4.2에 나타나듯이 호주, 이스라엘, 멕시코, 칠레에서 영향이 가장 큰데 연금의 주된 구성요소가 확정기여형제도이다. 이 제도에서 수익률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임금상승률의 증가는 대체율의 분자(적립자산)보다 분모(임금)에 더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대체율은 하락한다. 이와 반대로, 대체율은 임금상승률이 낮아지면 증가한다. 강제적 확정기여형제도 역시 덴마크,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슬로바키아와 스웨덴에 존재한다. 전체 연금제도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이들 국가들에서 변화에 기여한다.

또한 물가에 연동된 연금 구성요소의 가치는 실질임금상승률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할 것이다. 예를

들면, 캐나다와 아이슬란드에서의 기초연금 은 모두 물가에 연동되는데, 이는 임금 대비 급여의 가치는 실질임금이 더 빠르게 성장할 때 줄어들기 때문에 미래 퇴직자들의 대체율에 확실히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벨기에와 프랑스 등 다수의 국가들은 물가에 따라 과거 소득을 상향 조정하므로 위의 기초연금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것이 모두 같다면 대체율은 높아진 실질임금상승률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4개국, 즉 덴마크, 이탈리아, 폴란드, 터키에서 연금 급여는 실질GDP성장률에 좌우된다. 본래 실질GDP는 노동생산성에 노동투입을 곱한 것이다. 그러므로 OECD 연금모형은 실질GDP성장률이 실질 임금상승률에 생산가능인구의 증감을 합친 것과 같다고 가정한다. 이는, 국가들의 공통적 임금증가율의 경우, 국가별 GDP 성장률의 차이가 인구학적 요인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한다. 다른 많은 국가들처럼 이탈리아와 폴란드에서 20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 수는 향후 50년 사이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해 이 두 국가에서 연간 GDP 성장률은 연간 임금인상률보다 0.5%p 낮아질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덴마크와 터키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GDP 성장률이 임금인상률보다 덴마크에서 매년 0.2%p 높고 터키에서 0.3%p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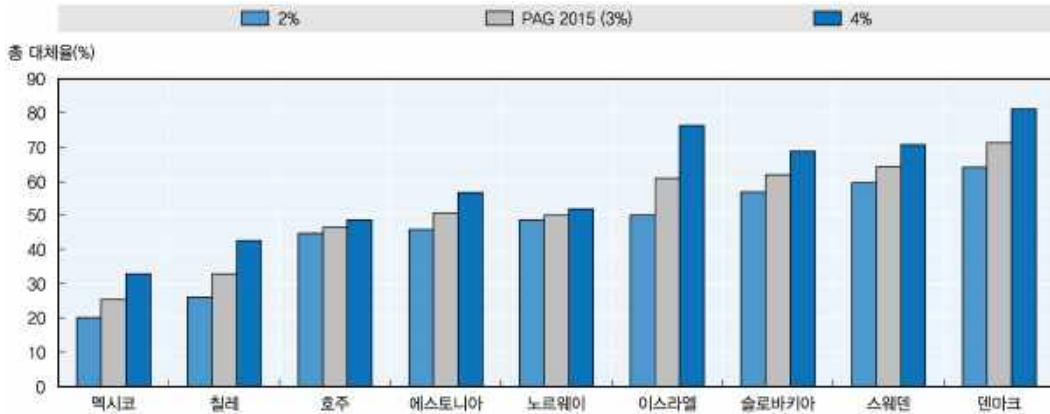
그림 4.2에서 고려된 이러한 실질GDP성장률 효과는 이 4개국 중 3개국에서 대체율에 영향을 미친다. 예외인 국가는 이탈리아로서, 해당 요인은 임금상승률과 GDP 성장률 간 격차인데 이는 단지 인구학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며 동일한 사망률 표에 근거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0.5%p에 해당한다. 덴마크에서 기초 및 선별적연금은 실질GDP성장률-0.3%p에 연계된다. 이는 변화하는 임금상승률 가정을 제한하는데, 대체율의 분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덴마크에서 연간 임금상승률이 1.25%에서 0.5%로 하락할 때 대체율은 모든 소득수준에서 약 7%p 증가하고, 임금상승률이 기준선으로부터 2로 상승하면 대체율은 6%p 하락한다. 터키에서 소득비례 연금은 GDP 변화의 30%에 연계되며, 임금상승률이 0.75%p 감소할 때 대체율은 9%p 증가하고, 임금상승률이 0.75%p 증가할 때 대체율은 8%p 하락한다. 마지막으로 폴란드에서 개인계정제도는 GDP에 연동되지만 전체 연금제도에서 작은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대체율은 위와 동일한 시나리오 하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1%p만 변화한다.

#### 4.5. 수익률 변화가 미래 대체율에 미치는 영향

수익률 혹은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수익률과 임금상승률 사이의 차이는 확정기여형제도에서 대체율의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완전경력근로자에 대해 많은 국가에서 가정하는 최소 45년간의 기여를 통해 이 기간 동안 축적된 자본의 수준은 수익률이 조금만 변해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 한 눈에 보는 연금 2015에 대한 기본값은 실제적 측면에서 연간 평균 3%이고 그림 4.3에 보여진 변수의 경우 2%와 4%이다.

9개의 OECD 국가만이 강제적 확정기여형제도를 갖추고 있고 그러므로 수익률 가정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제6장(그림 6.3 참조)에서 볼 수 있듯이 거대한 규모의 자발적 확정기여형제도를 갖추고 있는 국가가 많지만 여기서는 강제적 제도만을 살펴본다. 이들 9개국에서 확정기여형제도에 대한 기여율이 낮게는 노르웨이의 2%에서 높게는 이스라엘의 15%까지 다양한데(제5장, 표 5.6), 이는 수익률 가정에 대한 대체율의 민감도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이다(그림 4.3). 이스라엘에서, 예컨대, 총 대체율은 수익률이 2%일 때 11%p 더 낮고, 수익률이 4%일 때 15%p 더 높는데, 여기서 기본값은 3%이다. 이에 반해, 노르웨이의 경우 대체율은 수익률이 2%일 때 1.3%p가 더 낮고 수익률이 4%일 때 1.9%p가 더 높다.

그림 4.3. 수익률별 평균소득자의 총 대체율



출처: OECD 연금모형

<http://dx.doi.org/10.1787/888933300570>

그림 4.4. 3%의 수익률과 가변적 전환율을 통한 평균소득자의 총 대체율



출처: OECD 연금모형

<http://dx.doi.org/10.1787/888933300581>

많은 국가에서 확정기여형제도가 전체 연금의 유일한 구성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의 설계도 중요하다. 호주에서, 예를 들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장은 자산조사형 노령연금에 의해서 상쇄된다. 그러므로 수익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연금화(annuitisation)되기 전의 퇴직연금의 자본 가치는 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결과적으로 연간 지급액이 줄어들면 그 손실은 노령연금에서 보충되고 연간 지급액이 증가하면 노령연금이 줄어든다. 그러므로 기여율이 9.5%로 높고 2025년까지 12%로 증가하지만, 호주에서 수익률별 대체율은 노령연금 때문에 별로 변화가 없는데 이는 이스라엘과 비교된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연금 산정시 사용되는 확정기여형 자산에 적용되는 전환계수(conversion factor)로 기본은 85%이다. 이 계수는 수수료와 비용을 감안하고 특별히 연금화 시기의 사망률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위험 감수(risk-taking)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실행된다. 이 주제에 대한 연구결과, 이 계수는 최저 70%(St. John, 2004)에서 최고 90%(Brown et al., 1999) 사이임이 나타났다. 비교해서 보면 대략적으로 전환계수는 기준선인 85%에서 10%p 증가 또는 감소해왔다.

대체율의 전환계수에 대한 민감도는 그림 4.4에서 보여진다. 전반적으로 영향을 크지 않다. 예를 들면 호주와 노르웨이에서 전환계수에 따른 변화는 거의 없지만 두 개의 다른 요소가 작동 중이다. 첫째, 노르웨이에서 기여수준이 2%로 낮으며 확정기여형제도는 전체 연금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둘째, 호주에서, 위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이유로 인해, 노령연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장을 상쇄해주는 것이 전환계수의 감소 효과를 줄여준다. 예전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그림 4.3에서 나타난 가장 큰 절대적 증감율은 이스라엘의 +/-6%p이지만, %상 가장 큰 변화는 +/-12%를 나타낸 칠레와 멕시코에서 발견된다.

#### 4.6. 할인율 변화가 대체율에 미치는 영향

할인율은 확정기여형제도에서 연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확정기여형 제도에서 할인율의 변화는 누적 자산의 일정 수준에 대한 연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할인율이 낮아지면, 미래 흐름은 다른 모든 것들이 동일하다면 더 높은 순현재가치를 갖는다. 그러므로 특정 수준의 누적 자산은 더 낮은 연금 급여의 재정을 댈수 있으며 대체율은 낮아질 것이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반대의 상황이 나타난다.

그림 4.5는 실질 할인율이 1%, 2%(한 눈에 보는 연금 2015에서의 기준선 가정), 3%일 때 미래연금 대체율의 값을 비교한다. 이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은 9개의 OECD 국가들은 강제적 확정기여형(DC)제도를 갖춘 국가들이다. 변화의 영향은 강제적 기여율 등에 의해 측정된 확정기여형제도의 절대적 규모, 대체율 계산에 고려된 연금제도 내 확정기여형제도의 상대적 중요성, 은퇴연령 등 기타 파라미터들에 의해 좌우된다. 가장 큰 절대적 변화는 할인율이 1%p 변할 때마다 대체율이 +/-6%p로 나타나는 이스라엘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기준선 대체율이 고려되면 칠레와 멕시코가 약 +/-11%의 가장 큰(상대적) 변화를 기록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9%와 호주의 +/-8%보다 크다. 덴마크,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에서 더 작은 변화가 발견되는데 확정기여형 구성요소가 전체 연금제도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림 4.5. 할인율별 평균소득자의 총 대체율



출처: OECD 연금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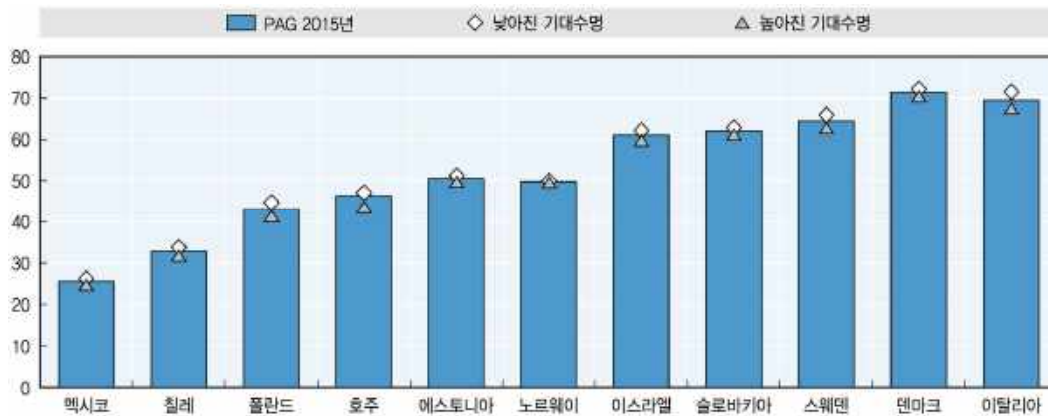
<http://dx.doi.org/10.1787/888933300593>

#### 4.7. 사망률이 미치는 영향

확정기여형제도에서 대체율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마지막 구성요소는 연금을 누적 자산에 연계시키는 연금계수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망률이다. 그러나 변화하는 사망률은 또한 확정급여형제도 내에서도 연금자산, 즉 노후소득의 생애 흐름의 총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데 대체율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해도 미래 지급기간이 변하기 때문이다. 이 분석을 위해서, 입수된 사망률 데이터를 전반적인 영향을 확실히 평가하기 위해서 10% 높이거나 낮추었다. 이는 모든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65세에 기대여명을 약 1년 증가 및 감소시킨 효과를 갖는다.

섹션 4.5와 4.6에서 논의된 9개국 외에도 대체율은 명목계정은 있지만 확정기여형제도는 없는 이탈리아와 폴란드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또한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명목계정과 확정기여형제도를 모두 갖추고 있는데 이 두 제도가 사망률에 대한 민감도를 확정기여형제도에서만 기록된 것 이상으로 증가시킨다. 늘어난 기대수명은 대체율을 낮추는데 지급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영향은 사실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데, 사망률의 변화가 동일하기 때문에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명목 확정기여형(NDC)제도를 갖춘 국가들은 기여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더 큰 민감도를 보여준다(그림 4.6).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는 소득의 33%가 명목확정기여형제도에 납부된다.

그림 4.6. 사망률별 평균소득자의 총 대체율



출처: OECD 연금모형

<http://dx.doi.org/10.1787/888933300604>

#### 4.8. 국가별 경제 가정

위에 나타난 모든 분석은 모든 OECD 국가들에 대해 공통된 경제적 가정들을 취했다. 이 섹션은 1인당 GDP에 의해 측정된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서 물가상승률, 실질임금상승률, 실질이자율이 모든 국가가 다를 것으로 추정하는 국가별 가정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국가별 값은 박스 4.1에 제시된 추정치들을 근거로 하고 전체 국가별 결과치는 표 4.2에 제시된다. 추정치들을 통해 1인당 GDP에 의해 측정된 경제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물가상승률, 더 높은 실질임금상승률, 더 높은 실질이자율과 연관이 되며,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 간 비선형성(non-linearity)이 발견되었다.

## 박스 4.1. 국가별 경제적 파라미터들의 산정

각 핵심 파라미터에 대해, 몇 가지 모형을 산정했고 최소 평균제곱근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가 나오는 모형을 선택했다.

**물가상승률 회귀분석:** 종속변수는 2000년에서 2013년까지의 물가상승률이다. 연간 물가상승률은 outlier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20%를 상한선으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가 전반적으로 확실한 outlier로 드러나서 회귀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첫 번째 회귀에는 상수항(constant term)과 1995년 구매력평가지수(PPP)로 표시된 1인당 GDP와 1995년 OECD 평균 GDP 사이의 차이(로그)가 포함된다. 1인당 GDP의 음의 관계(negative relation)는 가장 발전된 국가들이 아닌 덜 발전된 국가들에 나타날 수 있으므로, 1995년에 1인당 GDP가 평균 수준 미만이었다던 국가들에 대해서만 이전의 차이를 포함시킴으로써 비선형성(non-linearity)을 두 번째 회귀에 도입했다. 세 번째 회귀에서, 두 번째 회귀로부터의 상수항을 한 눈에 보는 연금의 가정인 2%에 맞추기 위해 제한했다. 네 번째 회귀에서, regressor가 두 번째 회귀와 동일했지만 기준(threshold)이 1인당 GDP 평균에 설정되지 않고 다를 수 있음을 허용했고, 최소 평균제곱근오차(RMSE)로 이끌었던 기준(threshold)이 선택되었다. 다섯 번째 회귀에서, 상수항만이 포함되었고, 마지막 모형에서 이전 상수항은 한 눈에 보는 연금의 가정인 2%에 맞도록 설정되었다. 첫 번째와 다섯 번째 회귀는 보통최소제곱(ordinary least squares; OLS)에 의해 산정된 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회귀는 비선형최소제곱(Nonlinear least squares; NLS)에 의해 산정되었다.

최소 평균제곱근오차(=1.00) 측면에서 최선의 모형은 파라미터 추정치(괄호 안의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도 함께)가 아래와 같이 나타난 두 번째 모형에서 달성되었다. 실질 1인당 GDP에서 10%의 평균(평균과 동일한 기준까지) 이상 증가는 물가상승률이 중기적으로 0.23%p 하락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text{물가상승률} = 2.187 - 2.285 * \min\{(\text{로그 GDP pc} - \text{로그 평균 GDP pc}), 0\} \\ [0.213] [0.501]$$

**실질임금상승률 회귀분석:** 종속변수는 1989년부터 2013년까지의 실질임금상승률이다. 에스토니아가 확실한 outlier로 드러나서 회귀실행에서 제외되었다. 역시 한 눈에 보는 연금의 가정인 1.25%와 동일한 모형이 사용되었다. 최소 평균제곱근오차(=0.73) 측면에서의 최선의 모형은 두 번째와 네 번째 회귀 모형에서 달성되었다. 두 번째 접근법이 선택되었고 파라미터 추정치(괄호 안의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도 함께)가 다음과 같다. 실질 1인당 GDP에서 10%의 평균(평균과 동일한 기준까지) 이상 증가는 실질임금상승률이 중기적으로 0.19%p 하락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text{임금상승률} = 0.762 - 1.860 * \min\{(\text{로그 GDP pc} - \text{로그 평균 GDP pc}), 0\} \\ [0.152] [0.413]$$

**실질GDP성장률:** 국가별 실질GDP성장률은 섹션 4.4에서 설명했듯이 실질임금상승률과 인구학적 요소로부터 얻는다.

**실질할인률 회귀분석:** 종속변수는 2000년에서 2013년까지의 10년 정부채권의 연 수익률이다. 연간 실질금리는 10%를 상한선으로 했다. 한 눈에 보는 연금의 2% 가정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동일한 모형들의 추정치들을 산정했다. 최소 평균제곱근오차(=0.84)는 첫 번째 모형에서 달성되었다. 이는 경제적 발전과의 음의 관계(negative relation)를 강조하지만 최선의 적합성이 비 선형성에 의해 구해질 수 있다는 가정을 거부한다. 추정된 파라미터들(괄호 안의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도 함께)이 아래에 보여진다. 실질 1인당 GDP에서 10%의 평균 이상 증가는 실질금리가 0.10 %p의 중기적으로 하락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text{실질금리} = 2.195 - 0.989 * (\text{로그 GDP pc} - \text{로그 평균 GDP pc}) \\ [0.123] [0.481]$$

각국에 대한 예상치들은 2014년 해당 파라미터 추정치들과 1인당 GDP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산정되었다. 모든 국가들의 예상치들(표 4.2)이 재산정(rescale)되어 전체 OECD 평균은 한 눈에 보는 연금 2015 가정과 일치한다.

**실질수익률:** 국가별 금융자산 수익률에 관한 포괄적이며 입수 가능한 장기 데이터가 부재하다. 국가별 수익률은 모든 국가에서 실질할인률을 1% 초과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표 4.2. 국가별 경제적 파라미터

	물가상승률	실질임금상승률	할인율	수익률
호주	1,62	0,94	1,78	2,78
오스트리아	1,62	0,94	1,79	2,79
벨기에	1,62	0,94	1,85	2,85
캐나다	1,62	0,94	1,82	2,82
칠레	2,90	1,98	2,49	3,49
체코	2,24	1,44	2,21	3,21
덴마크	1,62	0,94	1,81	2,81
에스토니아	2,48	1,64	2,31	3,31
핀란드	1,62	0,94	1,92	2,92
프랑스	1,68	0,99	1,97	2,97
독일	1,62	0,94	1,82	2,82
그리스	2,54	1,69	2,34	3,34
헝가리	2,66	1,79	2,39	3,39
아이슬란드	1,62	0,94	1,81	2,81
아일랜드	1,62	0,94	1,72	2,72
이스라엘	1,98	1,24	2,10	3,10
이탈리아	1,86	1,14	2,05	3,05
일본	1,76	1,06	2,00	3,00
한국	1,91	1,18	2,07	3,07
룩셈부르크	1,62	0,94	1,08	2,08
멕시코	3,50	2,47	2,75	3,75
네덜란드	1,62	0,94	1,76	2,76
뉴질랜드	1,72	1,02	1,98	2,98
노르웨이	1,62	0,94	1,41	2,41
폴란드	2,67	1,80	2,40	3,40
포르투갈	2,35	1,54	2,26	3,26
슬로바키아	2,43	1,60	2,29	3,29
슬로베니아	2,23	1,43	2,20	3,20
스페인	1,95	1,21	2,08	3,08
스웨덴	1,62	0,94	1,79	2,79
스위스	1,62	0,94	1,55	2,55
터키	3,23	2,26	2,64	3,64
영국	1,62	0,94	1,93	2,93
미국	1,62	0,94	1,61	2,61
<b>평균</b>	<b>2,00</b>	<b>1,25</b>	<b>2,00</b>	<b>3,00</b>
최저	1,62	0,94	1,08	2,08
최대	3,50	2,47	2,75	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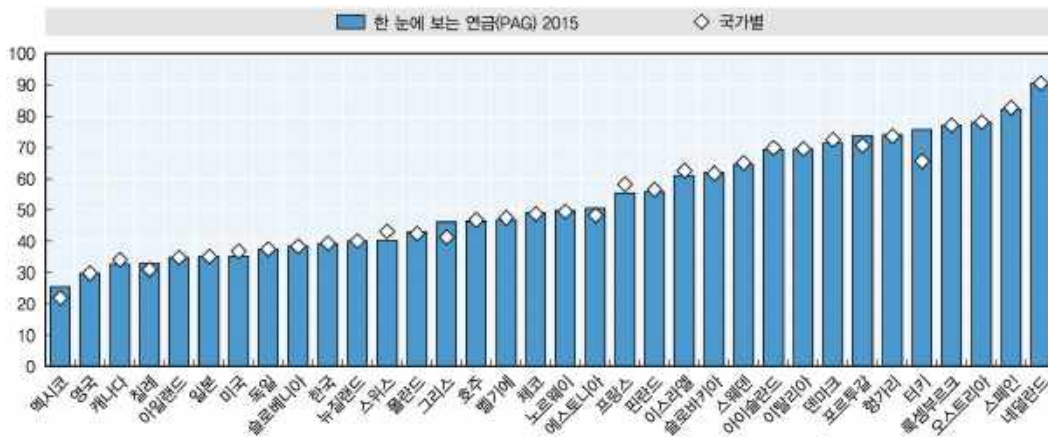
출처: OECD 계산.

<http://dx.doi.org/10.1787/888933301044>

총 대체율에 관한 결과치는 한 눈에 보는 연금 2015 기준선과 비교해서 그림 4.7에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한 눈에 보는 연금 2015과 표 4.2에 나타난 국가별 가정에 근거한 대체율의 변화는 거의 없다. 일부 국가에서 다른 가정들이 대체율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에서 연금이 실제로 정액이므로 경제적 파라미터의 변화가 대체율을 변화시키지 않았는데 급여가 임금인상에 맞춰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예측 급여액이 사실상 과거 임금 대비 불변상태임을 의미한다. 오스트리아, 독일,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슬로베니아에 대한 결과 역시 두 가지 시나리오 하에서 변하지 않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연금제도의 적용 가능한 구성요소들이 임금에 연동되기 때문이다.

그림 4.7. 한 눈에 보는 연금 2015와 국가별 가정 하에서의 남성 평균소득자에 대한 미래 총 대체율의 결과



출처: OECD 연금 모형을 사용한 저자의 계산

<http://dx.doi.org/10.1787/888933300618>

국가별 가정으로 넘어가면서 얻어진 가장 커다란 증가는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나타났고 약 3%p가 증가한다. 이 변화는 실질임금상승에 대한 낮은 가정(그리고 섹션 4.4에서 논의된 대로 이 파라미터에 대한 민감성)에서 주로 유래한다. 반면에 터키(10%p), 그리스(5%p), 멕시코(4%p)에서 대체율의 가장 큰 하락이 나타난다. 이는 터키에서 임금상승률이 공통의 기준선인 1.25%가 아닌 이보다 훨씬 높은 2.26%이며, 그리스에서 1.69%에 달하기 때문이다. 멕시코에서 수익률과 임금상승률 사이의 차이는 한 눈에 보는 연금 2015의 1.75%가 아닌 1.28%에 불과하므로 은퇴 시 자본의 가치는 소득 대비 훨씬 낮다.

**참고문헌**

Brown, J.R., O.S. Mitchell and J.M. Poterba (1999), “The Role of Real Annuities and Indexed Bonds in an Individual Accounts Retirement Program”, *NBER Working Paper*, No. 7005, Cambridge, United States.  
 St. John, S. (2004), “The Annuities Market in New Zealand”, University of Auckland Business School, Retirement Policy and Research Centre.



## 제5장

# 연금제도의 설계

본 섹션의 5개 지표는 OECD 국가 및 기타 주요 국가들의 국가연금제도의 설계를 상세히 살펴보고 있다. 첫 번째 지표는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종류의 연금 프로그램들을 분류해서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42개국의 연금제도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다.

다음 4개의 지표는 연금제도의 파라미터와 규칙을 보여준다. “기초, 선별적, 최저 연금”을 포괄하는 두 번째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되며, 이들 급여의 가치와 보장 범위를 보여준다. 세 번째 지표는 “소득비례연금” 제도를 살펴본다. 이 지표는 제도에서 급여액이 산정되는 방식 및 연금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를 보여준다. 네 번째 지표는 2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2014년에 은퇴하는 개인을 위한 연금제도별 “현재 은퇴연령”을 제시한다. 마지막 지표는 2014년에 20세의 나이에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미래에 퇴직하는 개인에 대한 “미래 은퇴연령”을 살펴본다.

이스라엘 통계자료는 해당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하였다. OECD가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른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역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주요 결과

연금제도는 다양하며 대개 수많은 프로그램이 관련되어 있다. 연금제도와 서로 다른 퇴직연금 제도를 분류하는 것은 그래서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 사용된 연금 분류법은 두 가지 의무가입인 “층(tier)”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즉 적정성 부분과 소득비례 부분이다. 자발적 제도는 개인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간에 세 번째 층을 이룬다.

그림에 나타난 프레임워크는 제도를 구성하는 각 부분의 역할과 목적에 근거한다. 1층은 연금 수급자들이 절대적인 최저 생활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들로 구성된다. 두 번째 층인 소득비례제도는 근로자 시절과 비교해서 노후에도 일정한 생활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러한 층들 안에서 제도는 공급자별(공적제도와 사적제도)로 분류되고 급여액이 결정되는 방식에 따라 또 한번 분류된다. 한 눈에 보는 연금은 의무연금 제도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일부 자발적, 사적제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국가별 제도의 구조를 표에서 보여준다. 노인빈곤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즉, 1층 제도)은 공적부문에서 제공하며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기초연금**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수급자가 일정한 거주 기준을 충족시켰을 때 보 험료의 기여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지급 되는 급여가 있다. 일부 국가에서 거주기반 급여는 다른 연금소득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 두 번째,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기여금 납부 년수 만을 근거로 지급되는 급여가 있다. 약 18개의 OECD 회원국이 기초연금제도 혹은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저연금**은 특정 기여형제도의 최저연금 또는 모든 제도를 합한 최저연금을 말한다. 13개 OECD 국가들에서 운영된다. 수급액의 가치는 연금소득만을 고려하며, 자산조사형 제도와 달리 저축 등으로 인한 소득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벨기에와 프랑스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소득 비례 2층 제도의 최저연금 크레딧 역시 재분재

효과를 가지며 소득이 매우 낮은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근로자가 실제보다 높은 소득 수준에서 연금 크레딧을 적립한 것처럼 크레딧이 산정되기 때문이다.

**사회부조제도**는 저소득 수급자에게 높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고 부유한 수급자의 급여 액은 줄어든도록 설계되었다. 이 제도에서 급여액의 가치는 기타 소득원으로부터의 소득에 의해 좌우되거나 소득과 자산 모두에 의해 좌 우된다. 모든 국가가 이런 유형의 일반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고 있다. 표의 칼럼에 표시 된 7개의 OECD 국가에서 완전경력 저소득(평균 소득의 30%) 근로자는 자원조사형 급여를 받을 수 있다

OECD 국가 중에는 아일랜드와 뉴질랜드만 의무가입인 2층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다른 32개 국가에는 네 종류의 제도가 있다.

**확정급여형(DB)제도**는 18개 OECD 국가에서 공적부문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사적(퇴 직)연금제도는 3개 국가(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위스)에서 강제 또는 준강제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연금은 기여 년수와 개인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네 개의 OECD 국가에는 **포인트 제도**가 있다. 프랑스의 퇴직연금제도(공적부문에서 운영)와 에스토니아, 독일, 슬로바키아의 공적제도가 그 것이다. 근로자들은 매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 포인트를 적립한다. 은퇴 시 연금포인트의 합계에 연금포인트 가치를 곱하여 정기적인 연금 급여로 전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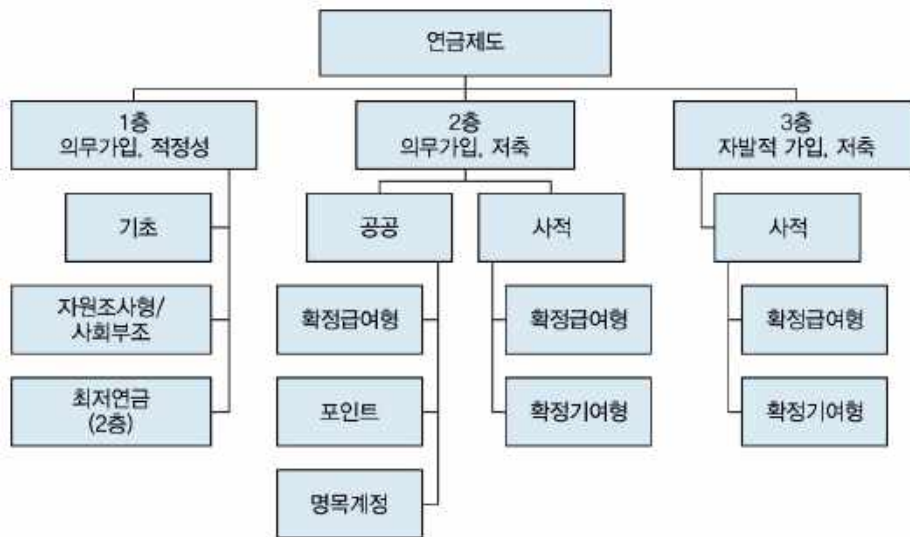
**확정기여형(DC)제도**는 9개 OECD 회원국에서 강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의 경우 기

여금을 납부하면 개인 계좌로 들어간다. 기여금과 투자수익을 적립하여 은퇴 시 퇴직연금으로 전환되게 된다. 덴마크와 스웨덴에는 소규모 강제연금 외에 준강제적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가 있다.

4개의 OECD 국가(이탈리아, 노르웨이, 폴란드, 스웨덴)에는 명목계정제도가 있다. 이 제도에서는 개인 계정에 기여금을 기록하고 잔액에 수익률을

적용한다. 계정은 “명목”상의 것으로 잔액은 관리기관의 장부에만 존재한다. 은퇴 시 누적된 명목상 자본은 기대수명을 바탕으로 한 산식을 사용해 연금 급여액으로 전환된다. 이 제도는 확정기여형(DC)제도를 모방하여 설계된 것이므로 명목 확정기여형제도(NDC)라고 불리기도 한다.

5.1. 분류: 연금제도의 유형



5.2. 연금제도의 구조

기초	최저	사회 부조	공적	사적	기초	최저	사회 부조	공적	사적
			유형	유형				유형	유형
<b>OECD 회원국</b>					<b>OECD 회원국(계속)</b>				
호주	✓			DC	뉴질랜드	✓			
오스트리아			DB		노르웨이	✓		NDC	DC
벨기에		✓ ✓	DB		폴란드		✓	NDC	
캐나다	✓	✓	DB		포르투갈		✓	DB	
칠레	✓	✓		DC	슬로바키아			포인트	DC
체코	✓ ✓		DB		슬로베니아		✓	DB	
덴마크	✓	✓		DC	스페인		✓	DB	
에스토니아	✓		포인트	DC	스웨덴	✓		NDC	DC
핀란드	✓	✓	DB		스위스		✓	DB	DB
프랑스		✓	DB+포인트		터키		✓	DB	
독일			포인트		영국	✓		DB	
그리스	✓		DB		미국			DB	
헝가리		✓	DB						
아이슬란드	✓	✓		DB	<b>기타 주요 국가들</b>				
아일랜드	✓				아르헨티나	✓ ✓		DB	
이스라엘	✓			DC	브라질		✓	DB	
이탈리아		✓	NDC		중국		✓	NDC/DC	
일본	✓		DB		인도		✓	DB + DC	
한국		✓	DB		인도네시아			DC	
룩셈부르크	✓ ✓		DB		러시아	✓		NDC	DC
멕시코		✓		DC	사우디아라비아		✓	DB	
네덜란드	✓			DB	남아공	✓			

주: DB = 확정급여형, DC = 확정기여형, NDC = 명목계정. 아이슬란드와 스위스에서는 정부가 강제퇴직연금에 대해 기여율, 최저 수익률, 그리고 누적액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연금율을 설정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는 암묵적인 확정급여형(DB)제도이다.

출처: 보고서 제11장 “국가별 현황” 참조

<http://dx.doi.org/10.1787/888933301050>

### 주요 결과

사회부조와 함께 기초 및 최저연금은 노후소득의 적정성을 보장하며, 위의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에서 설명된 OECD 연금제도 분류의 1층을 구성한다.

기초연금은 18개의 OECD 국가에서 운영되며 급여액은 근로자 평균소득의 20.1%이다. 26개의 OECD 국가는 근로자 평균소득의 18.9%에 상당하는 사회부조를 지급한다. 또한 13개의 OECD 국가들 대부분은 기초 또는 사회부조액 이상의 최저연금 급여를 지급한다. 완전경력 근로자의 경우 평균 최저연금은 평균 근로자 소득의 24.8%에 해당한다.

10명의 노인 중 약 3명이 평균적으로 기초연금, 최저연금 혹은 사회부조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는다.

OECD 국가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노인들의 최저 생활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급여를 제공한다. 표의 왼쪽 부분은 여러 다른 유형의 제도에서 제공되는 급여의 가치를 보여 주며 제2장에서 추가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제공한다. 가치는 절대적 기준 - 국가별 통화단위 - 으로 제시됨으로써 본 보고서의 제11장 “국가별 현황”에 나타나는 상세 정보와 직접적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했다. 그와 동시에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상대적 기준 - 근로자 평균소득 중 비율 - 으로도 제시되고 있다(제8장의 “평균 근로자 소득” 지표 참조).

제시된 급여액 가치는 개인을 기준으로 한다. 어떤 경우에는 - 대개 기여형 제도의 최저연금의 경우 - 부부 두 사람이 각각 개인급여를 수급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 특히 선별적 제도의 경우 - 부부는 평가의 한 단위로 묶여 개인이 받는 수급액의 두 배보다 적은 금액을 수급한다.

많은 국가에 다수의 프로그램이 존재하기 때문에 급여액 가치의 분석은 복잡한 작업이다. 어떤 경우에는 이들 제도상의 급여가 부가적이다. 또 다른 경우에는 이들 간에 일정한 대체관계가 있다. 기초 또는 최저연금의 급여액 가치를 그림 5.4에 요약해놓았다. 파란색 막대는 기초연금의 전반적 가치를 보여준다. 이는 절대 최저액인 거주 혹은 기여형 기초연금의 최저안전망 소득으로 볼 수 있다. 회색 막대는 기여형 제도의 최저연금을 보여준다. 그래프에 나타나는 수급액은 20세부터 표준 공적연금수급연령까지 매년

기여금을 납부한 근로자에 대한 최대값이다. 이 값은 저소득 완전경력 근로자의 최저소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국 제도 내에 기초연금과 최저연금이 없는 OECD 국가는 5개국(오스트리아, 독일, 한국, 슬로바키아, 미국)뿐이다. 그 외 29개국 중에서 네덜란드와 뉴질랜드 등 기초연금이 거주조사형인 경우를 포함해서 18개국에서 기초연금이 제공된다. 기타 국가들 중 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에서 수급액은 기초연금과 자산조사급여가 혼합된 것이다(상세한 내용은 제2장 참조).

13개국에서 최저연금이 제공되는데 체코와 룩셈부르크만 기초연금과 최저연금을 모두 갖추고 있다. 최저연금의 수준은 헝가리의 평균소득의 11%로부터 터키의 평균소득의 41%까지 다양하며 13개국 평균은 25%이다.

### 적용범위

1층 급여를 수급하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표의 뒤 두 개 칼럼과 그림 5.5에 제시된다. 자료는 비 기여형 안전망급여(소득조사가 없는 순수한 거주기반 기초연금(뉴질랜드 등)은 포함되지 않음)와 기여형 최저연금에 대해서만 나타나 있다. 이들 급여의 중요성은 큰 차이가 있다. 덴마크에서 노인 인구의 88%가 안전망으로부터 최소한 부분급여를 수급하고 호주에서는 78%가 기초연금을 받는다. 반면 독일, 일본, 슬로바키아에서 안전망급여를 수급하는 연금 수급자의 비율이 3% 미만이다.

최저연금을 수급하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포르투갈에서 대략 60%, 핀란드에서 47%이다. 수급자 비율이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페인에서 대략 30%이지만 헝가리에서는 65세 이상자의 1% 미만이다.

5.3. 기초연금, 선별적연금, 최저연금, 2014년

	상대적 급여액 (근로자 평균소득 대비 비율)			절대적 급여액 (연당 국가통화 단위)			수급자, 2012년 (65세 이상 수급자 비율)			상대적 급여액 (근로자 평균소득 대비 비율)			절대적 급여액 (연당 국가통화 단위)			수급자, 2012년 (65세 이상 수급자 비율)	
	기 초 연 금	최 저 연 금	공 공 부 조	기 초 연 금	최 저 연 금	공 공 부 조	안 전 망 연 금	최 저 연 금		기 초 연 금	최 저 연 금	공 공 부 조	기 초 연 금	최 저 연 금	공 공 부 조	안 전 망 연 금	최 저 연 금
호주	27.1	×	×	21,569	×	×	78	×	일본	15.8	×	20.1	772,800	×	981,160	2	×
오스트리아	×	×	28.2	×	×	12,008	11	×	한국	×	×	6.0	×	×	2,400,000	67	×
벨기에	×	29.0	26.1	×	13,480	12,140	5	11	룩셈부르크	11.3	37.8	29.6	6,168	20,628	16,176	1	29
캐나다	13.7	×	18.5	6,765	×	9,173	34	×	멕시코	×	30.6	6.8	×	31,212	6,960	..	..
칠레	14.7	×	×	1,031,568	×	×	60	×	네덜란드	27.1	×	×	13,243	×	×	×	×
체코	9.0	12.0	13.1	28,080	37,320	40,920	..	..	뉴질랜드	40.1	×	×	21,932	×	×	×	×
덴마크	17.8	×	18.5	70,896	×	73,644	88	×	노르웨이	31.0	×	×	167,963	×	×	22	×
에스토니아	13.0	×	14.4	1,619	×	1,788	6	×	폴란드	×	23.9	15.0	×	10,133	6,348	12	..
핀란드	17.7	×	20.8	7,607	×	8,921	47	×	포르투갈	×	30.4	17.4	×	5,307	3,039	17	59
프랑스	×	22.0	25.6	×	8,248	9,600	4	37	슬로바키아	×	×	24.4	×	×	2,527	3	×
독일	×	×	19.0	×	×	8,724	2	×	슬로베니아	×	13.3	17.8	×	2,380	3,183	17	2
그리스	29.0	×	×	5,842	×	×	19	×	스페인	×	33.9	19.6	×	8,861	5,123	6	28
헝가리	×	11.4	9.1	×	342,000	273,600	..	1	스웨덴	23.2	×	×	94,572	×	×	42	×
아이슬란드	6.2	×	19.5	423,348	×	1,340,000	..	×	스위스	×	15.6	21.2	×	14,100	19,210	12	..
아일랜드	34.7	×	33.0	11,976	×	11,388	17	×	터키	×	41.4	6.0	×	11,758	1,699	-	22 -
이스라엘	14.1	×	24.1	18,368	×	31,444	25	×	영국	16.5	×	×	5,881	×	×	27	×
이탈리아	×	21.4	19.1	×	6,511	5,825	5	32	미국	×	×	17.3	×	×	8,652	7	×

주: .. = 자료 없음; × = 해당없음

<http://dx.doi.org/10.1787/888933301062>

5.4. 기초 및 최저연금 가치



급여가치  
[근로자 평균소득(AW) 대비 비율(%)]  
<http://dx.doi.org/10.1787/888933300621>

5.5. 안전망연금과 최저연금의 수급자



선별적연금 및 최저연금 수급자  
[65세 이상 인구 중 비율(%)]  
<http://dx.doi.org/10.1787/888933300630>

### 주요 결과

OECD의 연금제도 분류 중 2층은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된다. 이들 제도의 주요 파라미터와 규칙이 수급액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여기에는 이미 법제화된 연금개혁의 장기적 효과가 포함된다.

소득비례제도는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확정 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포인트, 명목계정(NDC)이 그것이다. 지급률은 적용기간 중 매년 어떤 비율로 급여액이 적립되는지를 보여준다. 지급률은 연금제도에서 “보장하는” 소득의 비율로 나타난다.

포인트 제도의 경우 유효 지급률은 연금포인트 가치 대비 연금포인트 비용의 비율로 산정된다. 명목계정제도에서는 유효 지급률이 비슷한 방식으로 산정되는데, 기여율, 명목 금리, 연금 계수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비례제도를 갖추고 있는 국가 중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국가에서 지급률은 소득 수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하다. 그 외 지역에서는 적용기간 중 매년 수급하는 급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개인 소득이나 연령, 기여 년수에 따라 달라진다.

지급률이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여덟 가지 경우 중 체코, 포르투갈, 스위스, 미국의 공적 제도는 “누진적” 제도이다. 저소득자에게는 높은 대체율의 급여액을 지급한다. 프랑스와 스웨덴의 퇴직연금은 공적제도의 재분배성을 상쇄하기 위해 설계되어서 공적연금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급여에 대해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대체율을 제공한다. 핀란드와 스위스 퇴직연금(occupational plans)의 지급률은 연령에 따라 높아진다.

룩셈부르크와 스페인 제도의 지급률은 근로 년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룩셈부르크는 기여 기간이 길수록 올라가고 스페인은 반대인데 가입기간의 첫 몇 년간 지급률이 가장 높고 그 이후부터는 낮아진다.

급여를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소득 측정지표도

국가마다 다르다. 약 22개 OECD 회원국에서는 급여를 산정하는데 생애 전체소득을 사용하며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경력 대부분(34년-35년)을 사용한다. 스페인은 퇴직 전 25년을 사용하는 반면, 프랑스의 공적연금은 최고 소득인 25년의 소득을 사용하고 슬로베니아의 모든 급여는 최고 소득인 24년의 소득을 사용한다.

소득 측정지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 재평가인데 이를 통해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연금을 수급하는 시점 간에 생활 수준 차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과거 소득을 조정한다(때로는 은퇴전연동(pre-retirement indexation)이라 불림). 포인트 시스템에서 연금포인트 가치 그리고 포인트 시스템 및 명목계정제도에서 명목 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각각 확정 급여형(DB)제도의 재평가에서도 필연적으로 따르는 작업이다. 가장 일반적인 관행은 평균 소득의 증가와 함께 과거 소득을 재평가하는 것이다.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에서는 소득을 물가상승률만 감안하여 재평가한다. 또한 벨기에 공적연금과 프랑스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생애 평균소득을 급여산식에 반영하는 반면, 프랑스와 스페인의 확정급여형제도는 전 생애 중 25년의 평균소득을 급여산식에 반영한다. 에스토니아, 핀란드, 포르투갈은 초기 년도의 소득을 물가와 임금상승률을 합쳐서 재평가하며 터키는 물가상승률과 GDP 성장율을 혼합한다.

확정기여형(DC)제도의 주요 파라미터는 개인 계정에 지급되어야 하는 소득의 비율이다. 덴마크와 스웨덴의 준강제적 확정기여형(DC) 퇴직 연금제도를 포함해 여기에 나타난 10개국에 대한 평균 기여율은 7.9%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여(contribution liability)와 연금 급여액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소득에



상한을 설정한다. 19개국에서 공적연금의 평균 상한선은 근로자 평균소득의 184%이며 4개국은 공적연금에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다. 상한선은 강제적 사적연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더 높다.

연동(indexation)은 연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가 연동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5개 국가에서는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

률을 혼합하여 급여를 인상하고 있다. 그 외 2개 국가에서는 물가와 GDP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개 국가에서는 세트 차감(set deduction)과 함께 임금에 연동하여 인상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누진적 연동을 실시하여 낮은 수준의 연금은 더 많이 인상하고 있다.

### 5.6. 소득비례연금의 미래 파라미터와 규칙

	소득비례제도(DB, 포인트, NDC)					DC제도 기여율(%)	연금대상소득 상한선 (근로자 평균소득 대비 비율)	
	유형	지급률	소득산정	재평가	연동		공적	사적
호주	없음					9.5-12		241
오스트리아	DB	1.78	26-40	w <sup>1</sup>	d		149	
벨기에	DB	1.33	L	p	p		114	
캐나다	DB	0.64	L(83%b)	w	p [c]		108	
칠레	없음					10.0		305
체코	DB	1.5-1.02	L	w	33w/67p		없음	
덴마크	없음					12 <sup>2</sup>		
에스토니아	포인트	1.0	L	50w/50p	80w/20p	6.0	없음	없음
핀란드	DB	1.5-4.5	L	80w/20p	20w/80p		없음	
프랑스	DB/포인트	1.06	b25/L	p/p	p/p		100/284 <sup>3</sup>	
독일	포인트	1.00	L	w [c]	w [c]		151	
그리스	DB	0.8-1.5	L	p	50p/50GDP		379 <sup>4</sup>	
헝가리	DB	1.64	L	w	p			
아이슬란드	DB	1.47	L	fr	p			없음
아일랜드	없음							
이스라엘	없음					15.0		416
이탈리아	NDC	1.46	L	GDP	p <sup>5</sup>		328	
일본	DB	0.55	L	w	w/p <sup>6</sup>		192	
한국	DB	0.87	L	w	p		123	
룩셈부르크	DB	1.92 [y]	L	w	p/w		174	
멕시코	없음					6.5		587
네덜란드	DB	1.85	L	w [c]	w [c]			없음
뉴질랜드	없음							

## 5.6. 소득비례연금의 미래 파라미터와 규칙(계속)

	소득비례제도(DB, 포인트, NDC)					DC제도	연금대상소득 상한선 (근로자 평균소득 대비 비율)	
	유형	지급률	소득산정	재평가	연동		기여율(%)	공적
노르웨이	NDC	0.94	L	w	w-0.75	2,0	104	
폴란드	NDC	0.91	L	w <sup>7</sup>	p <sup>7</sup>	2,92	265	
포르투갈	DB	2,3-2 [w]	L	25w/75p	p/GDP <sup>8</sup>		없음	
슬로바키아	포인트	1,25	L	w	50w/50p	6,0	206	
슬로베니아	DB	0.96	B24	w (d)	w		205	
스페인	DB	1,82 [y]	f25	p	p		165	
스웨덴	NDC	0,95 [w]	L	w	w-1,6 [c]	2,5 + 4,5 <sup>9</sup>	105	113/없음 <sup>8</sup>
스위스	DB	[w/a]	L	fr	50w/50p		93	93
터키	DB	1,68[w]	L	p+30%GDP	p		311	
영국	DB					8		
미국	DB	0,75[w]	b35	w <sup>10</sup>	p		233	

주: 파라미터는 2014년에 대한 것이나 미래에 발효되는 모든 법제화된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급여액 산정 시 대상이 되는 기간을 확대하고 있다. 비어있는 칸은 파라미터가 관련이 없음을 의미한다. [a] = 연령에 따라 다름; b = 최고 년수; [c] =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따른 재평가/연동; d = 재량적 연동; DB = 확정급여형; DC = 확정기여형; f = 최종 년수; fr = 고정 재평가율; GDP = 국내총생산 성장률; L = 생애 평균; NDC = 명목 계정; p = 물가 연동/재평가; w = 평균소득 연동/재평가; [w] = 소득에 따라 다름; [y] = 근무 년수에 따라 다름.

1. 오스트리아: 소득산정의 평균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재평가가 소득으로 이동할 것으로 가정.
2. 덴마크: 준강제적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전형적인 기여율.
3. 프랑스: 첫 번째 상한선은 공적연금제도의 상한선, 두 번째는 여기에 모형화된 강제적 퇴직연금의 상한선(ARRCO).
4. 그리스: 최대연금에서 산정한 유효 상한선.
5. 이탈리아: 연동은 연금액이 낮은 경우 물가에 100%, 높은 연금액에 대해서는 물가의 90% 또는 75% 수준으로 이루어짐.
6. 일본: 67세까지 임금에 연동되고 68세 이후에는 물가에 연계됨.
7. 폴란드: 실질 임금상승률에 따라 재평가되나 최저 물가상승률은 고려함.
8. 포르투갈: 연금액이 낮으면 물가 연동 비율이 높아짐. GDP 성장률이 높으면 연동은 좀더 관대하게 이루어짐.
9. 스웨덴: 기여율은 개인연금의 2.5%부터 공적연금의 상한선까지 분포. 준강제적 퇴직연금의 기여율은 저소득 4.5%, 고소득 30%이며 상한선 없음(민간부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10. 미국: 60세에 소득 재평가, 60-62세는 조정 없음. 62세-67세는 물가 수준 재평가.

<http://dx.doi.org/10.1787/888933301070>

### 주요 결과

은퇴와 연금 수급요건에 대한 규칙은 매우 복잡한데 서로 상충되는 정부 목표를 반영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서로 다른 제도의 연금 수급을 위한 다른 기준들이 모두 반영되기 때문이다. 20세에 노동 시장에 진입했다는 가정 하에 모든 제도에서 2014년에 은퇴하는 개인의 경우 OECD 평균 남성의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64세, 여성은 63.1세였다.

표는 2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개인에 대한 연금제도별 정상 노령연금 및 조기연금 수급에 관한 규칙을 보여준다. 현재 은퇴연령에 관해 살펴보면, 노동시장에 진입한 연령이 같다는 가정하에, 여기 제시된 현재 은퇴연령과 다음 섹션과 OECD 연금모형에 제시된 미래 은퇴 연령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비교할 수 있다. 2014년에 OECD 평균 정상 노령연금수급연령은 모든 제도와 국가에 걸쳐서 남성의 경우 64.0세, 여성의 경우 63.1세였다. 그러나 이 평균치들을 주의해서 해석해야 하는데 어떤 제도나 국가 내 개인들이 이 연령에 대해 실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다.

### 정상 연금수급연령

가장 낮은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여성의 경우 터키에서 58세였고 남성의 경우 슬로베니아에서 58.7세였다(그림 5.8). 정상 연금수급연령이 아이슬란드, 이스라엘(남성의 경우만), 노르웨이에서 67세로 가장 높았다.

34개국 중 11개국에서 연금수급연령이 남성과 여성 간에 여전히 다르다. 이들 국가에서 남성의 연금수급연령은 평균 63.6세였고 여성은 평균 60.9세였다. 그러나 칠레, 이스라엘, 스위스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연금 수급 규칙에서 이러한 성별 격차는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34개국 중 21개국에서는 전체 연금패키지의 구성요소별로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며 그러므로 따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들 21개국에서 정상 은퇴연령이 언제인지에 대한 답을 하기 쉽지 않은데 이는 연금제도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 조기연금수급연령

퇴직연금과 사적연금에서도 60세 이전에 조기 연금의 수급이 종종 가능하다. 그러나 덴마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터키, 영국 등 일부 국가들은 의무연금제도에서 조기수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조기수급이 특정 제도에만 한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호주, 칠레, 아이슬란드는 강제적 사적연금에만 조기 수급을 허용하고 캐나다, 스웨덴은 기초연금이나 선별적연금에는 조기수급을 허용하지 않지만 소득비례제도에서는 조기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확정급여형(DB) 및 포인트 제도에서 조정은 단순히 연금제도의 파라미터이다. 조기 연금 수급 시 해당하는 각 연도에 대해 x%만큼 영구 삭감된다.

확정기여형제도에서 연간 연금 급여의 액수는 다양하며 연금화 제수(annuity divisor)의 크기를 통한 급여 수급연령에 의해 좌우된다. 연금화 제수는 기대되는 잔여수명(remaining life expectancy)과 할인율의 함수로서 계산된다. 이러한 유형의 제도들에서는 조기연금수급연령만 존재한다. 아일랜드의 예를 들면 퇴직연금은 50세부터 조기에 수급할 수 있지만, 기초연금은 66세 이전에 수급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스웨덴에서는 61세부터 명목확정기여형(NDC)(확정기여형-DC) 연금을 유연하게 수급할 수 있지만, 최저보충(top-up)연금은 65세부터 수급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성별뿐만 아니라 소득수준, 수급자격조건, 연금제도의 유형별로 다를 뿐 아니라, 또한 연금수급연령은 이들 제도들이 개인의 노후소득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5.7. 연금제도별 2014년 조기 및 정상 연금수급연령

		제도	조기 수급연령	정상 수급연령			제도	조기 수급연령	정상 수급연령
호주		T	..	65	이탈리아	남성	NDC	..	62,5
		DC	55	..		여성	NDC	..	62
오스트리아	남성	DB(ER)	64,25	65	일본	기초/DB		60	65
	여성	DB(ER)	59,25	60		한국	DB	56	61
벨기에		DB(ER)	60		룩셈부르크	DB	57	60	
		Min.	..	65	멕시코	T	..	65	
캐나다		기초/T + DB	60(DB만)	65		DC	연령무관/60세	65	
		DB(ER)	60	..	네덜란드	기초	..	65,2	
칠레		기초/T	..	65		DB(Occ)		65	
	남성	DC	연령무관	65	뉴질랜드	기초	..	65	
여성	DC	연령무관	60			DC	융통성 있음		
체코	남성	DB	60	62,67	노르웨이	Min.	67	67	
	여성	DB	60	61,33			NDC/DB	62	67
덴마크		기초/T	..	65	폴란드	남성	NDC/min.	..	65,25
		DC(ATP)	..	65		여성	NDC/min.	..	60,25
		DC(Occ)		65	포르투갈	DB	65	66	
에스토니아	남성	포인트	60	63		Min.	..	66	
	여성	포인트	60	62	슬로바키아	남성	DB	최저생계비 수준	62
	DC	62	..	여성		DB	최저생계비 수준	62-57,5 <sup>1</sup>	
핀란드		Min.	63	65	슬로베니아	남성	DB	..	58,7
		DB	63	65		여성	DB	..	58,3
프랑스		DB	61,2	61,2	스페인	DB	61	65	
		포인트	60,0	61,2	스웨덴	GARP	..	65	
독일		포인트	63	65		NDC/DC	61	..	
그리스		DB	62	62	스위스	남성	DB	63	65
헝가리	남성	DB	..	62,5		여성	DB	62	64
	여성	DB	40년 납입 후	62,5	터키	남성	DB	..	60
아이슬란드		기초/T	..	67		여성	DB	..	58
		DB(Occ)	65	67	영국	남성	기초(SP)	..	65
아일랜드		기초/T	..	66		여성	기초(SP)	..	62,5
		DC(Occ)	50	..		T(PC)	..	65	
이스라엘	남성	기초/T	..	67		DC	55	..	
	여성	기초/T	..	62	미국	DB	62	66	
					T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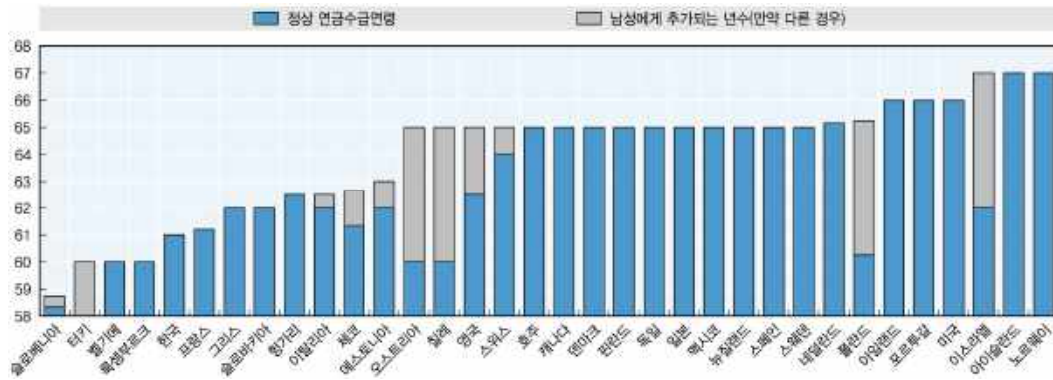
주: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노동시장 진입을 20세로 가정하여 계산됨. DB = 확정급여형; DC = 확정기여형; ... = 연금의 조기수급 혹은 수급연기가 가능하지 않음; Occ = 퇴직연금; T = 선별적 연금. 남성과 여성의 연금수급연령이 다른 경우 남성/여성을 표시함. - = 확정기여형(DC)제도에서, 노령연금의 급여 수준은 조기수급 및 수급연기에 대해 자동으로 조정됨.

1. 슬로바키아: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연금수급연령이 낮아짐.

출처: 본 보고서의 제11장 “국가별 현황” 참조.

<http://dx.doi.org/10.1787/888933301087>

5.8. 2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개인에 대한 2014년 기준 연금수급연령



<http://dx.doi.org/10.1787/888933300645>

### 주요 결과

미래에는 정상 및 조기연금수급연령이 늦춰지고 있다. 여기에 제시된 변화들과 2014년에 2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한다고 가정할 때, 정상 은퇴연령은 OECD 국가 평균 남성의 경우 64.0세에서 65.5세로, 여성의 경우 63.1세에서 65.4세로 향후 늦춰질 전망이다.

표는 노동시장에 20세에 진입하는 개인에 대한 연금 급여제도별 정상 및 조기연금 수급에 대한 미래의 장기적 규칙을 보여준다. 모든 제도와 국가들을 통틀어 2014년에 정상 연금수급연령이 남성의 경우 64.0세, 여성의 경우 63.1세였는데, 2054년까지 남성의 경우 65.5세로, 여성의 경우 65.4세로 연장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가 내에서 개인들이 이러한 연금수급연령에 수급하는지 혹은 실제로 이 연령에서 은퇴를 할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평균치들을 주의해서 해석해야 한다. 다만, 현재 모형으로 예측된 평균 수급연령에서 부분적으로 함의를 얻을 수 있다.

### 정상 연금수급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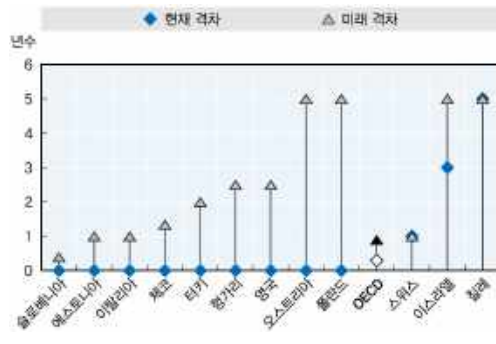
34개의 OECD 국가 중 18개국에서 20세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에 대한 정상 은퇴연령이 늦춰질 것이다. 정상 연금수급연령이 늦춰지고 있는 국가들에서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평균적으로 현재보다 거의 3년이 연장될 것이다. 연금수급연령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체코로 현재 62.7세에서 2054년 이후 68세가 될 전망이다. 정상 연금수급연령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또 다른 다른 두 국가는 이탈리아와 슬로바키아로, 이탈리아에서 62.5세에서 67세로, 슬로바키아에서 62세에서 67세로 증가할 것이다. 정상 연금수급연령 역시 65세 이상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2014년에 34개국 중 8개국에서 정상 연금수급연령이 65세 이상이였다. 2054년까지 이들 국가의 숫자는 34개국 중 15개국이 될 것이다.

2054년에 정상 연금수급연령이 가장 낮은 국가는 룩셈부르크와 슬로베니아로 60세가 될 것이다. 슬로베니아에서 현재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58.7세이다. 그리스와 프랑스의 정상 연금수급

연령은 각각 62세와 63세로 향후 이들은 정상 연금수급연령이 낮은 국가가 될 전망이다.

2014년에 연금수급연령의 성별격차가 34개국 중 2개국에서 존재했다. 이 두 국가에서 평균 연금수급연령이 남성은 63.4세이고 여성은 61.0세였다. 그러나 2054년 이후에는 연금수급연령의 성별격차가 칠레, 이스라엘, 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점차 사라질 것이다.

20세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남성과 여성의 현재 및 미래의 연금수급연령 격차



출처: "최근 연금개혁"을 다룬 제1장 참조.

<http://dx.doi.org/10.1787/888933300266>

### 조기연금수급연령

조기연금 수급은 다수의 OECD 국가에서 여전히 가능할 것이고 일부 국가에서는 60세 이전에 가능할 것이다. 흔히 이러한 옵션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혹은 사적연금에서 가능하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 확정기여형 연금계정은 정상 연금수급연령 10년 전에 수급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제도에서 급여는 보험계리적으로 자동 조정된다. 확정급여형제도에서 조기연금 수급자에 대한 연금액은 삭감되는데, 이는 연금 수급

후 기간이 길어짐을 반영하는 것이다. 조기연금 수급에 대한 페널티 증가는 연금 수급 지연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확대하려는 개혁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확정형급여형(DB)제도에 대한 조정을 보려면 표 5.9참조).

5.9. 2014년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개인에 대한 연금제도별 장기적 조기 및 정상 연금수급연령

	제도	조기 수급연령	감액(%)	정상 수급연령	인상 (%)		제도	조기 수급연령	감액 (%)	정상 수급연령	인상 (%)
호주	T	..		<b>67</b>		이탈리아	NDC	62		<b>67</b>	
	DC	55		..		일본	기초/DB	60	6.0	<b>65</b>	8.4
오스트리아	DB(ER)	62	5.1	<b>65</b>	4.2	한국	DB	60		<b>65</b>	7.2
벨기에	DB(ER)	62		<b>65</b>		룩셈부르크	DB	60		<b>60</b>	..
	Min	..		<b>65</b>		멕시코	T	..		<b>65</b>	-
캐나다	기초/ T+DB	60(DB만)		<b>67</b>	7.2		DC	연령무관/60	-	65	..
				(기초/T)	(기초/T)	네덜란드	기초	..		<b>67</b>	
	DB(ER)	60	7.2	65	8.4		DB(Occ)			65	
칠레	기초/T	..		65		뉴질랜드	기초	..		<b>65</b>	
	남성 DC	연령무관		<b>65</b>			DC	융통성 있음			
	여성 DC	연령무관		<b>60</b>		노르웨이	Min.	67		<b>67</b>	
체코	DB	65	3.6-5.6	<b>68</b>	6.0		NDC/DB	62		..	
덴마크	기초/T	..		<b>67</b>	5.8		DC(Occ)	62		..	
	DC(ATP)	..		67		폴란드	NDC/최저	..		<b>67</b>	
	DC(Occ)	62	4.8	65		포르투갈	DB	55	6.0	<b>66</b>	
에스토니아	포인트	62		<b>65</b>	10.8		min.	..		66	
	DC	63	4.8	..		슬로바키아	DB	65	6.5	<b>67</b>	6.0
핀란드	Min.	63		<b>65</b>	7.2 <sup>1</sup>		DC	62		67	
	DB	62	5.0	65	4.8	슬로베니아	DB	..		<b>60</b>	4-12
프랑스	DB	62	4.0-7.0	<b>63</b>	5.0	스페인	DB	61		<b>65</b>	
	포인트	63	3.6	63		스웨덴	GARP	..		<b>65</b>	
독일	포인트	62		<b>65</b>	6.0		NDC/DC	61		..	
그리스	DB	..		<b>62</b>			DC(Occ)	55		65	
헝가리	DB	..		<b>65</b>	6.0	스위스	남성 DB	63	6.8	<b>65</b>	5.2-6.3
아이슬란드	기초/T	65	7.0	<b>67</b>			여성 DB	62	6.35-7.1	<b>64</b>	4.5-5
	DB(Occ)	..		67	6.0	터키	DB	..		<b>65</b>	
아일랜드	기초/T	50		<b>68</b>	..	영국	기초	..		<b>68</b>	10.4
	DB(Occ)	..		..			DC(Occ)	58		..	
이스라엘	남성 기초/T	..		<b>67</b>	5.0	미국	DB	62	5.0/6.7	<b>67</b>	8.0
	여성 기초/T	..		<b>64</b>							
	DC			67							

주: DB = 확정급여형; DC = 확정기여형; .. = 연금 조기수급 혹은 수급지연에 대한 자료 없음; Occ = 퇴직; T = 선별적 연금. 남성과 여성의 연금수급연령이 다른 경우 남성/여성으로 표시함. - = 확정기여형(DC)제도에서, 노령연금의 급여 수준은 조기수급 및 수급연기에 대해 자동으로 조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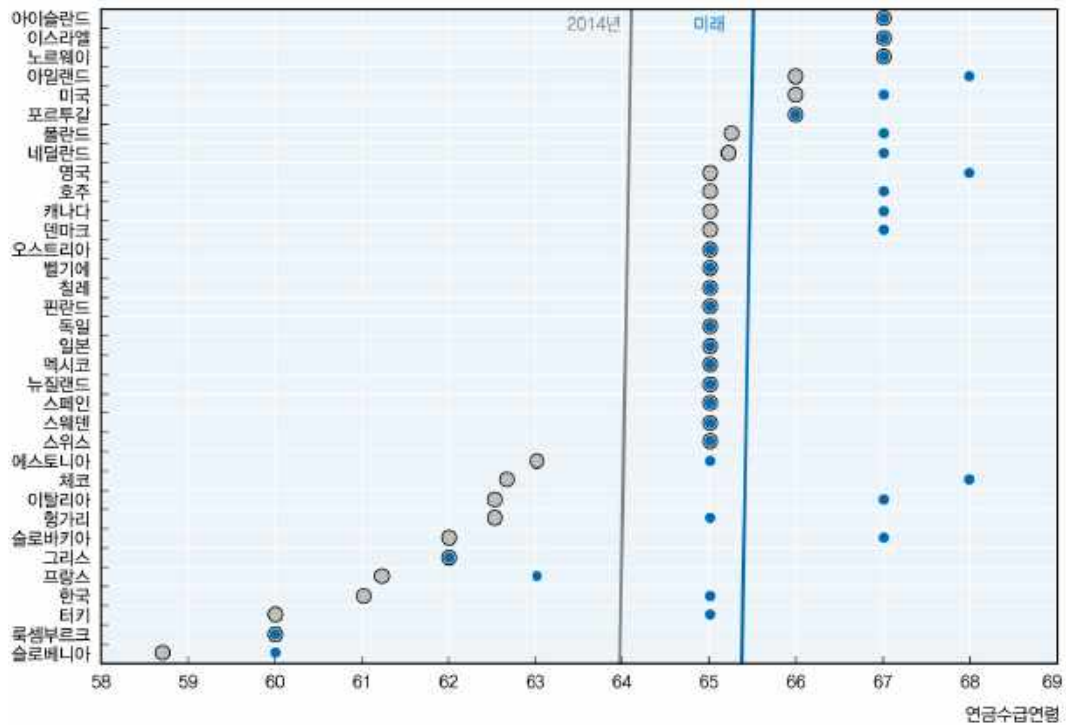
자료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반올림. 모형화에 사용된 기본 연금수급연령은 볼드체로 표시됨

1. 핀란드: 증액이 68세 이후에만 이루어짐

출처: 본 보고서의 제11장 “국가별 현황” 참조

<http://dx.doi.org/10.1787/888933301092>

5.10. 2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남성의 현재 및 미래 연금수급연령



<http://dx.doi.org/10.1787/888933300251>



## 제6장

### 연금 수급액

연금 수급액은 OECD 연금모형을 이용해 산정된다. 이론적 계산은 2014년에 적용된 국가별 파라미터 및 규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2014년에 20세의 나이로 노동 시장에 진입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미 법제화되었고 현재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연금개혁의 효과를 모두 포함한다. 지표를 제시하기 전에 방법론과 가정을 먼저 소개하도록 한다.

지표는 의무연금제도에서의 총 대체율, 즉 개인소득 대비 연금의 비율로부터 시작한다. 두 번째로는 가입률이 높은 공적제도와 자발적 사적연금제도의 대체율을 보여준다. 그리고 연금 및 연금 수급자에 대한 세제혜택 분석이 이어진다. 네 번째 및 다섯 번째 지표는 세금과 기여분을 감안한 순(net) 기준의 대체율이다. 그 다음에 연금자산의 지표, 즉 노령연금 흐름의 생애 할인율 가치를 보여준다. 이 지표는 또한 연금수급연령, 급여연동, 기대수명을 고려에 넣는다. 연금자산 지표는 총 및 순 가치 기준으로 제시된다. 이 순연금자산은 노령연금의 세후기준이다.

이스라엘 통계자료는 해당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하였다. OECD가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른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역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개요

제6장에서 다루게 될 연금 지급액의 지표는 연금모형에 기반한 OECD 인구집단을 사용하고 있다. 방법론과 가정은 모든 국가의 분석에 공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연금제도의 설계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현재의 파라미터와 규칙을 기준으로 미래 지급액을 비교할 수 있다.

여기 제시된 연금 지급액은 현재 OECD 국가에서 법제화되어 있는 규정들의 내용이다. 2015년 6월 이전에 법제화된 개혁들은 충분한 정보가 입수된 경우 포함시켰다. 이미 법제화되었고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변화는 시행되는 연도부터 계속 모형에 포함된다.

모든 연금제도 파라미터의 가치는 2014년 및 이후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산정값은 현재 20세의 나이에 제도에 가입하여 완전경력(마친 후 은퇴하는 근로자의 연금 급여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치는 개인을 기준으로 한 값이다. 연동 및 재평가에 대한 모든 규칙은 기준 시나리오에서 법제화된 것을 따른다.

### 경력기간

완전경력(마친 후 은퇴하는 근로자의 연금 급여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치는 개인을 기준으로 한 값이다. 연동 및 재평가에 대한 모든 규칙은 기준 시나리오에서 법제화된 것을 따른다.

완전경력(마친 후 은퇴하는 근로자의 연금 급여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치는 개인을 기준으로 한 값이다. 연동 및 재평가에 대한 모든 규칙은 기준 시나리오에서 법제화된 것을 따른다.

완전경력(마친 후 은퇴하는 근로자의 연금 급여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치는 개인을 기준으로 한 값이다. 연동 및 재평가에 대한 모든 규칙은 기준 시나리오에서 법제화된 것을 따른다.

완전경력(마친 후 은퇴하는 근로자의 연금 급여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치는 개인을 기준으로 한 값이다. 연동 및 재평가에 대한 모든 규칙은 기준 시나리오에서 법제화된 것을 따른다.

사람들은 실업, 학업, 자녀양육, 거동이 불편하거나 연로한 친지 수발 등의 이유로 유급 근로를 일시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이러한 기간에 대한 연금액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경력단절이 미치는 영향은 제3장의 “불완전 직업경력이 연금 지급액에 미치는 영향”에서 제시된다.

실업이나 육아 기간에 대한 규칙은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본 보고서의 뒷 부분인 “국가별 현황”에서 설명하고 있다.

### 적용범위

여기에 제시된 연금모형은 민간부문 근로자를 위한 모든 강제연금제도를 포함하고 있는데 공적제도(즉, 국민계정제도(SNA)에서 정의한 대로 정부나 사회보장기관의 지급액과 관련된)인지 사적제도인지는 구분하지 않았다. 국가별로 민간부문 근로자를 위한 주된 공적제도를 모형화했다. 공무원, 공공부문 근로자, 전문가 집단을 위한 제도는 제외했다.

거의 보편적인 가입률을 보이는 제도 역시 포함시켰는데 근로자의 85% 이상이 가입된 경우에 국한했다. 이러한 제도를 본 보고서에서는 “준강제적”이라고 부른다. 이는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자발적 퇴직연금의 가입률이 높은 OECD 국가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자발적 퇴직연금제도는 노후소득 제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이러한 자발적 연금제도 지급액의 대체율도 함께 표시했다.

퇴직자들이 지급할 수 있는 자원조사(resource-tested)급여도 모형화했다. 이는 자산과 소득 둘 다 고려되는 자산조사(means-tested)연금일 수도 있고, 순수하게 소득조사 혹은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것일 수도 있다. 산정방식에서는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모든 사람이 이들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자산(assets)도 고려하는 광범위한 자산조사(means tests)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득조사는 의무적이다. 여기에서는 노후 소득 전체가 강제연금제도(또는 자발적 제도로 모형화된 국가에서는 강제적 제도 + 자발적 제도)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가정했다.

일정 범위 내 다른 소득 수준을 가진 근로자, 즉 근로자 평균소득의 0.5배부터 2배까지의 근로자들의 연금 수급액을 비교했다. 이 범위는 최빈곤층 근로자와 최부유층 근로자 모두의 미래 수급액 분석을 가능케 한다.

### 경제적 변수

비교는 분석대상이 된 모든 OECD 국가와 기타 주요 국가들에 대한 일련의 경제적 가정에 근거해 이루어진다. 실제로 연금 수준은 경제성장, 금융자산의 수익률, 실질임금상승률, 할인율, 물가상승률의 영향을 받으며 이 변수들은 국가별로 다르다. 그러나 동일한 일련의 경제적 가정을 한 것은 서로 다른 연금제도의 결과가 서로 다른 경제적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방식을 통해 국가별 연금 수준 차이는 연금제도와 정책의 차이만을 반영하게 된다. 기준 가정은 다음과 같다.

물가상승률은 연 2%로 가정했다. 실질소득은 평균적으로 연 1.25%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물가상승률에 대한 가정을 감안하면, 이는 3.275%의 명목임금상승률을 의미한다). 개인 소득은 국가 차원의 평균에 맞춰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는 개인이 근로기간 중 매년 평균소득 중 동일 비율만큼 벌어들임으로써 소득 분포에서 동일 지점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적립식 확정기여형연금의 실질수익률은 연 3%로 가정한다. 관리비, 수수료 구조, 연금 상품 구매비용으로 인해 연금 계산 시 누적 확정기여형 자산에 85%의 확정기여형 전환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계리적 산정을 위한) 실질할인율은 연 2%로 가정한다.

기준 모형화는 2014년부터 2080년까지 매해에 대해서 유엔 인구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국가별 사망률 추정치를 사용했다.

이러한 기준 가정의 변화는 당연히 연금 수급액 결과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들 경제적 변수들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제4장 “모형 파라

미터에 대한 소득대체율 민감도”에서 다루었다.

산정 시 가정하고 있는 것은 확정기여형(DC) 제도의 급여액이 이상적인 예상치에 근거해서 계리적으로 공정한 가격으로 물가연동 종신연금의 형태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환 계수를 감안한 사망률 추정치를 가지고 산정된다.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연금액을 인출한다면 은퇴 시점의 자본 총액은 동일할 것이다. 달라지는 것은 급여액이 분산되는 방식뿐이다. 마찬가지로 명목계정 제도에서의 명목 연금율은 (대부분의 경우) 개별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동 규정과 할인 가정을 이용한 사망률 자료로부터 산정된다.

### 법제화된 정책과 불변적 정책

어떤 제도에서 연금체계의 안전망은 평균임금과는 다른 어떤 일반적 지수와 연계될 수 있다(대개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CPI) 또는 CPI와 평균임금의 결합임). 그러므로 소득분포(현재 임금수준에서)와의 불일치가 장기적 시물레이션 기간에 나타날 수 있다(예컨대 40년). 이 경우에 안전망의 완전한 임금연동을 가정한 대안적 시나리오가 나왔다. 대안적 시나리오는 국가별 상황을 다른 장에서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시된다. 여기서 목적은 장기적으로 연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과는 미래에 어떤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지 예측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현재 입법의 예측적 비교 및 불변적 정책 시나리오로 간주되어야 한다.

###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

연금 수급액 산정에 사용되는, 연금 수급자가 납부하는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에 관한 정보는 웹사이트: <http://oe.cd/pag> “국가별 현황”에서 찾을 수 있다.

모형에서는 세금제도와 사회보장기여제도가 미래에도 변함없을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 불변적인 정책 가정은 세금혜택이나 기여한도와

같은 “가치” 파라미터가 매년 근로자 평균소득에 맞춰 조정되는 반면 개인소득세 스케줄과 사회보장기여율 같은 “비율” 파라미터에는 변화가 없음을 암묵적으로 의미한다.

2014년 일반 조항 및 근로자의 세제혜택은 OECD의 *Taxing Wages*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다.

어떤 지급액을 세금으로 간주하는가 등 그 보고서에서 사용한 관행을 여기에서도 따르고 있다.

### 참고문헌

OECD (2015), *Taxing Wages 201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tax\\_wages-2015-en](http://dx.doi.org/10.1787/tax_wages-2015-en).

### 주요 결과

미래 총 연금대체율은 근로 당시의 소득 대비 은퇴 후 강제 공적 및 사적연금제도에서 지급한 연금 급여의 수준을 보여준다. 평균소득 근로자(AW)의 경우 총 대체율은 국가별로 차이가 크기는 하지만 34개 OECD 회원국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평균 53%이다. 총 대체율이 낮은 국가는 멕시코와 영국으로 오늘 근로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미래 대체율은 약 20-25%가 된다. 네덜란드는 대체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90%를 약간 넘는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여기서는 근로자 평균소득의 절반을 버는 근로자로 정의됨)에게 평균소득자보다 높은 대체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노후빈곤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평균소득 근로자의 대체율은 53%인 반면 저소득 근로자의 대체율은 평균 약 65%가 될 것이다. 그러나 9개 국가의 대체율은 평균소득 근로자와 저소득 근로자의 대체율이 동일한데, 해당 국가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터키이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대체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로 107%이며, 노령연금이 근로시의 소득보다 높다. 반면에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대체율이 낮은 국가인 멕시코의 대체율은 35%이다. 아일랜드와 같은 일부 국가들은 평균소득자에게는 비교적 적은 급여를 지급하지만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평균에 가까운 급여액을 제공한다. 34개 OECD 회원국에서 일반적으로 평균소득의 1.5배를 버는 소득자(여기에서 “고소득자”로 칭함)의 총 대체율은 48%로, 평균소득자의 53%보다 다소 낮았다. 고소득자들의 대체율이 네덜란드에서 89%인 반면, 영국에서 고소득자들의 대체율은 대략 15%이다.

여성의 총 연금대체율은 호주, 칠레, 이스라엘, 멕시코, 슬로베니아, 스위스 등 6개국에서 다르게 나타났다(남성보다 여성의 연금수급연령이 낮고, 연금 계산에 남녀구분이 있는 사망률 자료를 사용하거나, 연금적립률이 성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임). 성별 격차는 호주와 칠레, 이스라엘에서 특히 컸는데 여성의 대체율은 남성의 88%에서

95% 사이였다. 슬로베니아에서 여성의 대체율이 남성의 105%인데 여성의 지급률이 남성에 비하여 더 높기 때문이다. 이 격차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비OECD 국가의 경우 대체율의 차이가 상당히 큰데, 평균소득자의 대체율이 남아공은 약 11%인 반면 인도는 97%이다.

총 연금대체율은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는데 OECD 국가 평균 은퇴연령에서 수급 시 53%인데 80세에는 46%가 된다. 이러한 차이는 연금 지급액에 대한 연동 때문인데 많은 국가가 임금에 연동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에서 은퇴연령에서 80세 사이에 가장 커다란 하락을 보인다. 연금 급여에 대해 임금 연동을 하는 국가에서는 80세에도 대체율이 동일하다.

### 정의와 측정

노령연금 대체율은 연금제도가 제공하는 급여가 은퇴 전 주된 소득원이었던 근로소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체하는가를 측정한다. 총 대체율은 총 연금 수급액을 총 은퇴전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종종 대체율은 연금 대 최종소득 비율(은퇴 직전)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연금 수급액은 개인의 생애평균소득(국가 차원의 소득 증가율에 맞춰 재평가됨)에 대한 비율로 나타난다. 기본 가정에 따라 근로자들은 경력 전체에 걸쳐 평균 근로자 소득과 동일 비율의 소득을 올린다. 만일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소득 분포도의 위쪽으로 이동한다면 은퇴 직전의 소득은 평균소득보다 높을 것이고 개인의 최종 소득에 대해 산정된 대체율은 낮아질 것이다.

## 6.1. 소득별 총 연금대체율

개인소득, 남성에 대한 평균의 배수 (여성 자료가 별도로 있는 경우 표시)				개인소득, 남성에 대한 평균의 배수 (여성 자료가 별도로 있는 경우 표시)					
연금수급 연령	0,5	1,0	1,5	연금수급 연령	0,5	1,0	1,5		
<b>OECD 회원국</b>				<b>OECD 회원국(계속)</b>					
호주	67	79,3(75,7)	44,5(40,9)	32,9(29,3)	노르웨이	67	62,8	49,8	38,9
오스트리아	65	78,1	78,1	77,6	폴란드	67	43,1	43,1	43,1
벨기에	65	47,6	46,6	35,3	포르투갈	66	75,1	73,8	72,5
캐나다	67	50,1	36,7	25,1	슬로바키아	67	70,4	62,1	59,3
칠레	65	39,4(36,7)	32,8(28,8)	32,9(28,9)	슬로베니아	60	44,4(46,8)	38,4(40,4)	36,0(37,9)
체코	68	78,9	49,0	39,1	스페인	65	82,1	82,1	82,1
덴마크	67	107,4	67,8	55,1	스웨덴	65	56,0	56,0	65,2
에스토니아	65	62,1	50,5	46,6	스위스	65(64)	55,7(55,1)	40,2(39,9)	26,8(26,6)
핀란드	65	55,8	55,8	55,8	터키	65	75,7	75,7	75,7
프랑스	63	56,8	55,4	48,2	영국	68	43,3	21,6	14,4
독일	65	37,5	37,5	37,5	미국	67	44,4	35,2	29,1
그리스	62	79,4	66,7	62,3	<b>OECD 34개국</b>	65,5(65,4)	64,5(64,2)	52,9(52,5)	47,8(47,4)
헝가리	65	58,7	58,7	58,7	<b>기타 주요 국가들</b>				
아이슬란드	67	82,6	69,2	68,1	아르헨티나	65(60)	81,8(88,2)	71,6(71,5)	68,3(65,9)
아일랜드	68	69,5	34,7	23,2	브라질	55(50)	97,5	69,5(52,9)	69,5(52,9)
이스라엘	67(64)	82,7(74,7)	61,0(54,1)	40,7(36,0)	중국	60(55)	94,0(86,5)	74,0(69)	67,4(63,2)
이탈리아	67	69,5	69,5	69,5	인도	58	96,5(91,3)	96,5(91,3)	96,5(91,3)
일본	65	48,8	35,1	30,5	인도네시아	55	13,0(11,8)	13,0(11,8)	13,0(11,8)
한국	65	58,5	39,3	29,3	러시아	60(55)	75,2(64,1)	75,2(64,1)	75,2(64,1)
룩셈부르크	60	89,5	76,8	72,5	사우디아라비아	45	59,6	59,6	59,6
멕시코	65	35,0	25,5(23,6)	24,2(22,4)	남아공	60	20,9	10,5	7,0
네덜란드	67	94,0	90,5	89,3	EU 28개국	65,2(65)	69,9(69,7)	59,0(58,8)	54,4(54,2)
뉴질랜드	65	80,1	40,1	26,7					

출처: OECD 연금 모형

<http://dx.doi.org/10.1787/888933301102>



### 주요 결과

사적연금이 노후소득 제공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상당하며 더욱 커지고 있다. 공적제도만 놓고 봤을 때 평균소득자에 대한 OECD 평균 대체율은 41%인 반면, 강제적 사적연금을 포함시키면 53%가 된다. 자발적 사적연금까지 감안하면 OECD 평균은 58%로 증가한다. 자발적 사적연금이 널리 퍼져 있는 7개의 OECD 국가들의 경우 평균소득자의 평균대체율은 59%인데 강제적 제도만을 고려한 경우는 36%이다.

표 6.4는 강제적 공적제도, 강제적 사적제도, 자발적 연금제도 사이의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수급액 계산이 강제적 공적연금만을 포함시키는 OECD 15개국의 경우에 평균 근로자 소득에 대한 평균 대체율은 60%이다. 공적제도와 강제적 사적제도가 있는 OECD 12개국에서 평균 대체율은 54%이다. OECD 34개국 전체적으로 공적제도, 강제적 사적제도, 자발적 사적연금을 포함시킨 평균임금 근로자의 평균 대체율은 58%이다.

호주,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은 고도의 선별적인 공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서 중간 및 고소득자들에 대한 공적 대체율은 강제적 사적연금으로 종종 보충된다. 칠레, 멕시코, 슬로바키아와 스웨덴에서는 공적제도의 일부를 개혁으로 강제적 사적연금으로 대체했다.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비교적 낮고 사적연금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주요 기타 국가들 중에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가 강제적 공적연금제도를 갖추고 있다. 남아공은 자발적 사적제도를 갖고 있으며 공적연금은 자산조사적 요소로 인해 평균소득자 이상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의 제도는 전적으로 강제적 사적제도이며 공적 요소는 없다.

### 강제적 사적연금

강제적 사적연금은 12개국에 존재한다. 거의 보편적 가입률에 가까운 사적연금은 “준강제적”이라 불린다(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위스에서 사적연금은 확정급여형(DB)이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확정기

여형(DC)이다. 강제적 사적제도 대체율은 12개국 중 6개국에서 22%에서 33%까지로 나타났다. 그런데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네덜란드에서는 이 범위보다 훨씬 높았고 스위스에서는 낮았고 노르웨이에서는 훨씬 낮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공적제도의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을 위해 설계된 사적연금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네덜란드와 스웨덴에서는 사적연금의 대체율이 소득에 따라 높아지고 노르웨이에서도 이것이 어느 정도 적용된다.

### 자발적 사적연금

자발적 사적연금이 만연한 국가는 다음의 7개국이다(제10장의 “사적연금의 가입률” 지표 참조). 자발적 사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경력 기간 내내 해당 제도에 가입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자발적 사적연금은 자발적 퇴직연금과 자발적 개인연금을 둘 다 포함한다. 7개국 모두 확정기여형(DC)제도가 모형화되어 있다.

자발적 사적연금을 벨기에, 캐나다, 독일,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에 대해서 고려하면, 이 7개국의 평균소득자에 대한 평균 대체율은 59%인데, 강제적 제도만을 감안할 경우는 36% 밖에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확정기여형(DC)제도는 소득에 따라 일정한 대체율을 지급한다. (소득별 실제 기여율 자료는 대부분의 국가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득 범위에 걸쳐 평균 또는 일반적인 비율을 가정한다.) 개인은 자신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완전히 참여한 것으로 가정된다. 벨기에와 독일은 예외인데 벨기에는 세금 인센티브의 대상이 되는 연금대상소득의 상한선 때문이며 독일은 평균 근로자 소득의 150%인 소득 상한선 때문이다.



## 6.4. 강제적 공적제도, 강제적 사적제도 및 자발적 사적제도의 총 연금대체율

	강제적 공적			강제적 사적 (DB와 DC)			총 강제적			자발적 DC			총 자발적		
	0,5	1,0	1,5	0,5	1,0	1,5	0,5	1,0	1,5	0,5	1,0	1,5	0,5	1,0	1,5
<b>OECD 회원국</b>															
호주	48,4	13,5	1,9	30,9	30,9	30,9	79,3	44,5	32,9				79,3	44,5	32,9
오스트리아	78,1	78,1	77,6				78,1	78,1	77,6				78,1	78,1	77,6
벨기에	47,6	46,6	35,3				47,6	46,6	35,3	13,3	13,3	10,1	60,9	59,9	45,5
캐나다	44,3	36,7	25,1				44,3	36,7	25,1	29,3	29,3	29,3	73,5	66,0	54,4
칠레	6,8	0,0	0,0	32,7	32,8	32,9	39,4	32,8	32,9				39,4	32,8	32,9
체코	78,9	49,0	39,1				78,9	49,0	39,1				78,9	49,0	39,1
덴마크	56,2	21,5	10,3	51,3	46,3	44,7	107,4	67,8	55,1				107,4	67,8	55,1
에스토니아	40,1	28,5	24,6	22,0	22,0	22,0	62,1	50,5	46,6				62,1	50,5	46,6
핀란드	55,8	55,8	55,8				55,8	55,8	55,8				55,8	55,8	55,8
프랑스	56,8	55,4	48,2				56,8	55,4	48,2				56,8	55,4	48,2
독일	37,5	37,5	37,5				37,5	37,5	37,5	12,5	12,5	12,5	50,0	50,0	50,0
그리스	79,4	66,7	62,3				79,4	66,7	62,3				79,4	66,7	62,3
헝가리	58,7	58,7	58,7				58,7	58,7	58,7				58,7	58,7	58,7
아이슬란드	16,8	3,4	2,3	65,8	65,8	65,8	82,6	69,2	68,1				82,6	69,2	68,1
아일랜드	69,5	34,7	23,2				69,5	34,7	23,2	30,3	30,3	30,3	99,8	65,1	53,5
이스라엘	23,5	11,8	7,8	59,2	49,3	32,8	82,7	61,0	40,7				82,7	61,0	40,7
이탈리아	69,5	69,5	69,5				69,5	69,5	69,5				69,5	69,5	69,5
일본	48,8	35,1	30,5				48,8	35,1	30,5				48,8	35,1	30,5
한국	58,5	39,3	29,3				58,5	39,3	29,3				58,5	39,3	29,3
룩셈부르크	89,5	76,8	72,5				89,5	76,8	72,5				89,5	76,8	72,5
멕시코	13,5	3,9	2,6	21,6	21,6	21,6	35,0	25,5	24,2				35,0	25,5	24,2
네덜란드	54,2	27,1	18,1	39,8	63,4	71,2	94,0	90,5	89,3				94,0	90,5	89,3
뉴질랜드	80,1	40,1	26,7				80,1	40,1	26,7	12,4	12,4	12,4	92,5	52,5	39,1
노르웨이	58,0	44,0	32,7	4,8	5,9	6,2	62,8	49,8	38,9				62,8	49,8	38,9
폴란드	43,1	43,1	43,1				43,1	43,1	43,1				43,1	43,1	43,1
포르투갈	75,1	73,8	72,5				75,1	73,8	72,5				75,1	73,8	72,5
슬로바키아	47,3	38,9	36,2	23,1	23,1	23,1	70,4	62,1	59,3				70,4	62,1	59,3
슬로베니아	44,4	38,4	36,0				44,4	38,4	36,0				44,4	38,4	36,0
스페인	82,1	82,1	82,1				82,1	82,1	82,1				82,1	82,1	82,1
스웨덴	37,0	37,0	27,4	19,0	19,0	37,8	56,0	56,0	65,2				56,0	56,0	65,2
스위스	35,6	23,3	15,6	20,1	16,9	11,2	55,7	40,2	26,8				55,7	40,2	26,8
터키	75,7	75,7	75,7				75,7	75,7	75,7				75,7	75,7	75,7
영국	43,3	21,6	14,4				43,3	21,6	14,4	29,8	29,8	29,8	73,1	51,4	44,2
미국	44,4	35,2	29,1				44,4	35,2	29,1	32,6	32,6	32,6	77,0	67,8	61,7
<b>OECD 34개국</b>	<b>52,9</b>	<b>41,3</b>	<b>36,0</b>				<b>64,5</b>	<b>52,9</b>	<b>47,8</b>				<b>69,1</b>	<b>57,6</b>	<b>52,4</b>
<b>기타 주요 국가들</b>															
아르헨티나	81,8	71,6	68,3				81,8	71,6	68,3				81,8	71,6	68,3
브라질	97,5	69,5	69,5				97,5	69,5	69,5				97,5	69,5	69,5
중국	94,0	74,0	67,4				94,0	74,0	67,4				94,0	74,0	67,4
인도	96,5	96,5	96,5				96,5	96,5	96,5				96,5	96,5	96,5
인도네시아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러시아	33,7	33,7	33,7	41,5	41,5	41,5	75,2	75,2	75,2				75,2	75,2	75,2
사우디아라비아	59,6	59,6	59,6				59,6	59,6	59,6				59,6	59,6	59,6
남아공	20,9	0,0	0,0				20,9	0,0	0,0	48,7	48,7	48,7	69,6	48,7	48,7
EU 28개국	60,8	49,3	43,7				69,9	59,0	54,4				73,0	62,1	57,4

주: DC = 확정기여형; DB = 확정급여형

출처: OECD 연금 모형

<http://dx.doi.org/10.1787/888933301119>

### 주요 결과

개인세 제도는 노후 지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연금 수급자들은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개인 소득세는 누진적이며 연금 수급액은 대개 은퇴 전 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연금소득의 평균세율은 근로소득세율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득세 제도에서는 노인에게 추가 수당이나 크레딧을 제공함으로써 연금소득이나 연금소득자에게 세금우대 혜택을 준다.

절반을 약간 넘는 OECD 회원국(34개국 중 19개국)이 개인 소득세에서 노인에게 추가적인 기초감면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세액공제(tax allowance)나 세제혜택(tax credit)의 형태를 띤다. 많은 경우 - 예를 들어 캐나다와 영국 - 이러한 추가 감면은 소득이 높은 노인들에게는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상당수의 국가들이 특별한 노후소득원에 대한 세금감면을 제공한다. 공적연금에 대한 소득세 전액 또는 일부 감면은 14개 OECD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연금 수급자의 총 소득에 따라 공적연금(사회보장) 소득의 15%에서 50% 사이는 과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호주의 경우 연금 기여금으로부터 나온 급여와 과세된 투자수익은 60세 이상 인구에게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는 강제적 확정 기여형제도와 이러한 제도에 대한 자발적 기여금에 적용된다.

반대로 덴마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과 같은 일부 국가들에서는 연금보다 근로소득에 대해 적게 과세한다.

전반적으로 26개 OECD 회원국에서는 개인 소득세 제도에 따라 노인 또는 연금소득에 대해 일정한 특혜를 준다. 8개 국가에서만 연금과 연금 수급자에 대해 생산가능인구와 동일한 세금 처리를 한다.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사회보장기여금을 부과하는데 호주와 뉴질랜드만 예외이다. 이 2개국과 추가로 17개 국가에서는 연금 수급자에게 사회보장기여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퇴직자에게 사회보장기여금을 부과

는 15개국의 기여율은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기여율보다 항상 낮다. 대체로 노인들은 연금이나 실업에 대한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연금 수급자는 의료 또는 장기요양에 대한 기여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광범위한 급여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대(solidarity)”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 실증적 결과

수치는 근로자와 연금 수급자가 세금과 기여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로자부터 보면 평균소득자 수준에서 세금을 납부한 금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별 순위를 나타냈다. 그리고 이를 평균소득자의 은퇴 후 대체율과 비교했다(“총 연금대체율” 지표에서 보여준 것처럼). 7개 OECD 국가와 기타 주요 국가 6개국에서 이러한 연금 수급자는 은퇴 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 외 슬로바키아나 터키와 같은 국가에서도 연금 수급자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데 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에서는 연금소득이 노인에게 제공되는 기초소득세 감면보다 적기 때문이다. 평균소득자의 총 대체율에 해당되는 연금 수급자들은 OECD 전체 평균적으로 세금과 기여금으로 소득의 12%를 납부한다.

수치는 또한 서로 다른 세금 및 기여금 처리가 소득과 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평균소득 근로자가 납부하는 세금과 기여금 액수는 OECD 국가에서 평

균 27%였으며 기타 주요 국가는 11% 였다.

마지막 비교는 연금 수급자가 동일한 소득을 올린다면, 즉 연금이 평균소득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면 그 연금 수급자는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OECD 국가에서 평균 18%였는데 동일 소득 수준의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보다 9%p 정도 낮다.

평균소득과 동일한 소득을 받은 연금 수급자의 18%와 평균소득자의 총 대체율과 동일한

소득에 대해 세금과 기여금으로 납부된 12% 사이의 차이를 보면 소득세제의 누진성이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Keenay, G. and E.R. Whitehouse (2003), “The Role of the Personal Tax System in Old-age Support: A Survey of 15 Countries”, Fiscal Studies, Vol. 24, No. 1, pp.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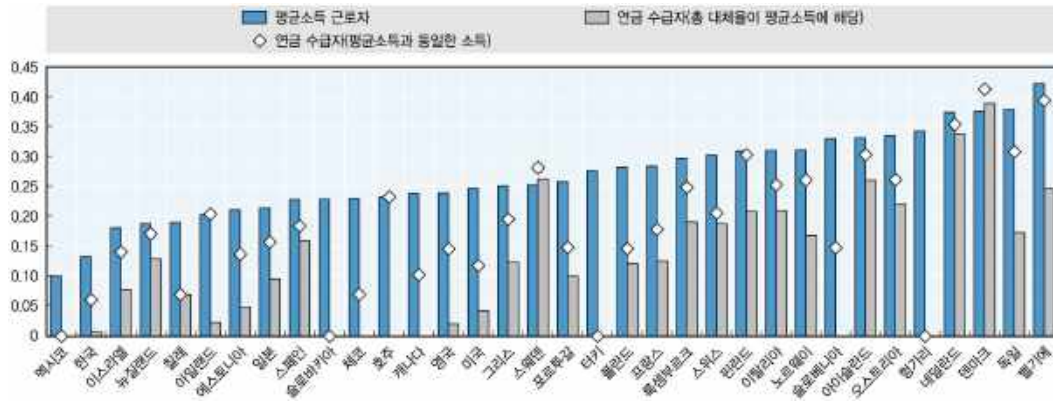
**6.5.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제도에서의 연금과 연금 수급자의 처리**

추가 세금 공제/혜택	연금소득에 대한 전액 혹은 일부 면제		사회보장 기여금	추가 세금 공제/혜택	연금소득에 대한 전액 혹은 일부 면제		사회보장 기여금
	공적제도	사적제도	연금		공적제도	사적제도	연금
<b>OECD 회원국</b>				<b>OECD 회원국(계속)</b>			
호주 ✓	✓	✓	없음	뉴질랜드			없음
오스트리아			낮음	노르웨이 ✓	✓		낮음
벨기에	✓		낮음	폴란드			낮음
캐나다 ✓	✓	✓	없음	포르투갈 ✓	✓		없음
칠레 ✓			없음	슬로바키아		✓	없음
체코 ✓	✓		없음	슬로베니아 ✓	✓		낮음
덴마크			없음	스페인		✓	없음
에스토니아 ✓			없음	스웨덴 ✓	✓		없음
핀란드	✓		낮음	스위스			낮음
프랑스			낮음	터키		✓	없음
독일	✓	✓	낮음	영국 ✓	✓		없음
그리스			낮음	미국 ✓	✓		없음
헝가리	✓	✓	없음				
아이슬란드			없음	<b>기타 주요 국가들</b>			
아일랜드 ✓			낮음	아르헨티나		✓	낮음
이스라엘 ✓			낮음	브라질		✓	없음
이탈리아 ✓		✓	없음	중국			없음
일본 ✓	✓	✓	낮음	인도 ✓	✓		없음
한국 ✓	✓		없음	인도네시아			없음
룩셈부르크 ✓			낮음	러시아			낮음
멕시코 ✓			없음	사우디아라비아			낮음
네덜란드 ✓			낮음	남아공 ✓	✓		없음

출처: 온라인 “국가별 현황”: [oecd.org/els/social/pensions/PAG](http://oecd.org/els/social/pensions/PAG).

<http://dx.doi.org/10.1787/888933301125>

6.6. 연금 수급자와 근로자가 납부하는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출처: OECD 연금모형; OECD 세계 및 혜택 모형

<http://dx.doi.org/10.1787/888933300691>

### 주요 결과

평균소득자의 경우 OECD의 의무연금제도의 순 대체율은 평균 63%로 평균 총 대체율보다 10%p 높다. 이는 사람들이 은퇴 후 연금에 대해 납부하는 것보다 근로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유효세율과 기여금이 더 높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순 대체율은 국가별로 차이가 큰데, 평균소득자의 경우 30% 미만인 멕시코와 영국으로부터 105%인 터키까지 다양하다. 저소득자(평균소득의 절반)의 경우 OECD의 평균 순 대체율은 74%이다. 고소득자(평균 소득의 150%)의 경우, 평균 순 대체율은 저소득자보다 낮은 59%이다. 소득에 따른 대체율 차이는 최저연금, 연금대상소득의 한도, 세금제도의 누진성, 연금소득을 우대하는 다양한 세제조치 등 연금 제도의 누진적 특징을 반영한다.

앞쪽의 “연금 및 연금 수급자의 세금처리” 지표는 개인세와 사회보장기여제도가 노후소득 지원에 있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보여주었다. 연금 수급자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내지 않고 소득세상 특별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조세지출, 소득세의 누진성, 100% 미만의 총 대체율은 연금 수급자의 소득세율이 근로자보다 낮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순 대체율은 대체로 총 대체율보다 높아진다.

평균소득자의 경우 국가별 순 연금대체율은 의무제도의 경우 평균 63%이다. 게다가, 국가별 연금대체율의 양상은 총 연금대체율과 비교해 순 연금대체율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벨기에와 독일의 연금제도는 총 대체율보다 순 대체율이 훨씬 더 높다. 그 이유는 첫째, 사회보장기여제도상 연금소득을 우대해주기 때문이다. 둘째, 순 대체율과 총 대체율이 OECD 평균과 비교해 낮은 편이고 소득세의 누진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근로 시보다 은퇴 후에 소득세를 훨씬 적게 납부한다. 독일에서는 연금소득에 대한 매우 관대한 세금처리가 점차 사라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그러하다. 슬로베니아의 경우 총 대체율과 순 대체율 간의 차이는 연금산식의 결과인데, 연금 급여액은 순 기준으로 직접 산정된다.

저소득자의 경우 세금과 기여금이 순 대체율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 척도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근로자들보다 적은 편이다. 그 이유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평균 근로자 대비 세금과 기여금을 적게 납부하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이들의 노후소득은 개인소득세 표준 감면수준(수당, 크레딧 등) 미만이다. 그러므로 개인소득세상 연금이나 연금 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추가적인 혜택을 완전하게 누릴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저소득자의 총 대체율과 순 대체율 간의 차이는 평균 10%p이다. 벨기에, 독일,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터키는 총 기준보다 순 기준의 저소득자 대체율이 훨씬 높다. 평균의 150%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의 순 대체율은 터키에서 가장 높았다. 고소득자의 대체율이 가장 낮은 곳은 캐나다, 아일랜드,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 영국으로 평균의 150%를 버는 근로자는 근로 시 순 소득의 1/3 미만의 연금을 받게 된다. 스웨덴에서 고임금소득자는 기업퇴직연금제도의 배분적 설계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대체율이 더 높다. 순 대체율은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다른 요율로 다르게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비OECD 국가에서는 소득 범위에 걸쳐 국가 내 순 대체율에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국가 간의 차이는 상당해서 평균소득자의 경우 남아공의 12%부터 인도의 110%까지 다양하다. 총 대체율과 마찬가지로 평균소득자에 대한 EU 28개국 평균 순 대체율은 71%로 OECD 34개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

### 정의와 측정

순 대체율은 개인의 순 연금 수급액을 순 은퇴전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며 근로자와 연금 수급자가 납부하는 개인소득세와 사회보

장기여금을 감안한다. 그렇지 않으면 순 대체율의 정의와 측정값은 총 대체율과 동일해진다 (이전 지표 참조). 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국가

세금제도 규정의 상세한 내용은 온라인 국가별 현황 [www.oecd.org/pensions/pensionsataglance.htm](http://www.oecd.org/pensions/pensionsataglance.htm)에서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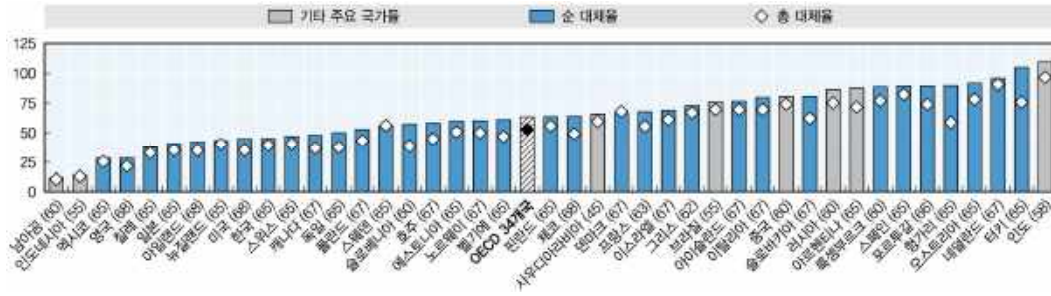
6.7. 소득별 순 연금대체율

	개인 소득, 남성의 평균 배수 (여성 자료가 따로 있는 경우 표시)				개인 소득, 남성의 평균 배수 (여성 자료가 따로 있는 경우 표시)				
	연금수급 연령	0.5	1.0	1.5	연금수급 연령	0.5	1.0	1.5	
<b>OECD 회원국</b>	<b>OECD 회원국(계속)</b>								
호주	67	88.6 (84.6)	58.0 (53.4)	45.9 (40.9)	노르웨이	67	80.1	60.2	48.6
오스트리아	65	92.1	91.6	88.9	폴란드	67	54.0	52.8	52.4
벨기에	65	64.2	60.9	49.1	포르투갈	66	87.7	89.5	88.4
캐나다	67	58.5	47.9	34.1	슬로바키아	67	84.0	80.6	79.4
칠레	65	48.7 (45.3)	37.7 (33.1)	38.0 (33.4)	슬로베니아	60	57.6 (60.6)	57.4 (60.4)	55.1 (57.6)
체코	68	93.1	63.8	51.9	스페인	65	89.1	89.5	89.3
덴마크	67	103.2	66.4	57.2	스웨덴	65	56.7	55.8	70.1
에스토니아	65	76.1	59.8	53.5	스위스	65 (64)	61.4 (60.7)	46.9 (46.5)	31.5 (31.2)
핀란드	65	66.6	63.5	65.0	터키	65	98.0	104.8	109.9
프랑스	63	66.9	67.7	62.0	영국	68	51.7	28.5	20.3
독일	65	53.4	50.0	49.0	미국	67	54.3	44.8	38.9
그리스	62	82.9	72.9	73.3	<b>OECD 34개국</b>	<b>65.5 (65.4)</b>	<b>74.1 (73.7)</b>	<b>63.2 (62.7)</b>	<b>58.5 (58.0)</b>
헝가리	65	89.6	89.6	89.6					
아이슬란드	67	90.5	76.7	76.3	<b>기타 주요 국가들</b>				
아일랜드	68	70.1	42.2	32.5	아르헨티나	65 (60)	96.4 (104)	87.5 (87.3)	80.8 (78.4)
이스라엘	67 (64)	85.7 (77.4)	68.8 (61.9)	50.3 (45.2)	브라질	55 (50)	105.9	76.4 (58.1)	76.4 (58.1)
이탈리아	67	82.2	79.7	81.6	중국	60 (55)	102.2 (94)	80.5 (75)	73.6 (69)
일본	65	53.3	40.4	35.5	인도	58	109.7 (103.8)	109.7 (103.8)	109.7 (103.8)
한국	65	64.3	45.0	34.4	인도네시아	55	13.8 (12.5)	13.8 (12.5)	13.9 (12.6)
룩셈부르크	60	98.4	88.6	83.7	러시아	60 (55)	86.4 (73.7)	86.4 (73.7)	86.4 (73.7)
멕시코	65	35.5	28.4 (26.2)	28.1 (26)	사우디아라비아	45	65.4	65.4	65.4
네덜란드	67	101.3	95.7	94.1	남아공	60	21.7	11.8	8.3
뉴질랜드	65	80.8	43.0	30.4	EU 28개국	65.2 (65)	80.7 (80.4)	70.9 (70.7)	66.4 (66.2)

출처: OECD 연금모형

<http://dx.doi.org/10.1787/888933301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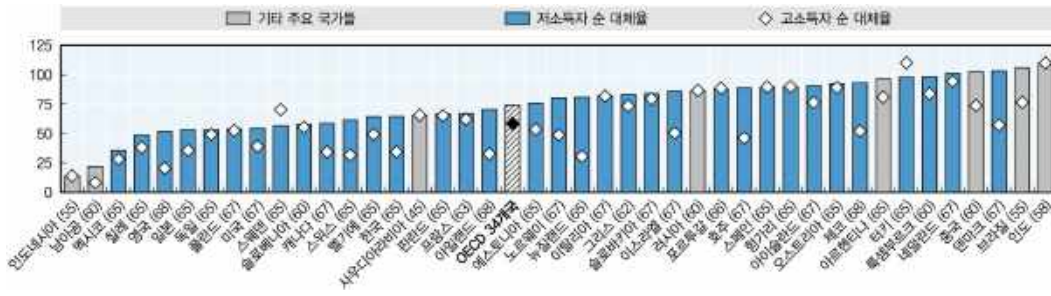
6.8. 순 연금대체율: 평균소득자



출처: OECD 연금 모형

<http://dx.doi.org/10.1787/888933300704>

6.9. 순 연금대체율: 저소득자 및 고소득자



출처: OECD 연금 모형

<http://dx.doi.org/10.1787/888933300710>

### 주요 결과

총 강제적 및 자발적 연금제도가 노후소득 제공에 있어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순 대체율을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OECD 국가에서 공적 및 강제적 사적제도를 통한 평균소득자의 순 대체율은 평균 63%이다. 자발적 사적연금을 포함시키면 평균소득자의 평균 순 대체율은 68%이다. 자발적 사적연금을 계산에 넣는다면 자발적 사적연금이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7개 OECD 국가의 평균 순 대체율은 71%이며, 반면에 평균 총 대체율은 59%이다.

개인세 제도는 노후소득보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연금 수급자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소득세는 누진적이고 연금 수급액은 은퇴 전 소득보다 대개 낮기 때문에 연금소득에 대한 평균 세율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보다 일반적으로 낮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득세 제도에서는 노인에게 추가 공제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연금소득이나 연금 소득자에게 세금우대 혜택을 준다. 그래서 순 대체율은 대개 총 대체율보다 높다.

공적제도에 국한하여 계산된 15개 OECD 회원국의 경우 평균소득자에 대한 대체율은 평균 73%이다. 공적제도와 강제적 사적제도에 대한 자료가 있는 12개 OECD 회원국의 경우 평균 대체율은 61%이다. 자발적 연금이 모형화된 7개국에서 평균 대체율은 71%이다.

34개 회원국 전체에서 공적제도, 강제적 사적제도, 자발적 사적연금을 포함한 평균 대체율은 68%이다. 전반적인 순 대체율은 총 대체율보다 평균 10%p 높다.

기타 주요 국가들의 경우에는 국가별, 소득 수준별로 차이가 크다.

#### 강제적 사적연금

첫 번째 12개 국가 집단에서는 강제적 사적연금 또는 거의 보편적 가입률로 인해 “준강제적”이라고 불리는 사적연금을 갖추고 있다(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위스에서 사적연금은 확정급여형(DB)이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확정기여형(DC)이다. 평균소득자에 대한 강제적 사적

제도의 순 대체율은 12개국 중 6개국에서 22%에서 38%까지로 나타났다. 그런데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네덜란드에서는 이 범위보다 훨씬 높았고 스위스에서 낮았고 노르웨이에서는 훨씬 낮았다.

공적제도의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적용하고자 설계된 사적연금을 갖고 있는 일부 국가들의 조합과 구축된 세금제도 사이에서는 소득 수준 전 범위에 걸쳐 동일한 대체율을 보이는 국가는 없다. 이로 인해 호주와 칠레,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에서는 사적연금의 대체율이 소득과 함께 증가한다. 이는 또한 스웨덴에서 평균소득의 150% 근로자에 대한 강제적 사적제도의 대체율이 평균소득 근로자의 두 배 이상인 이유를 설명한다.

#### 자발적 사적연금

자발적 사적연금이 널리 이용되는 7개국의 대체율이 나타나 있다(제10장 “사적연금의 가입률” 지표 참조). 자발적 사적연금에 가입해 있는 근로자 비율이 적정한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지만, 원하는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근로자들은 경력기간 내내 자발적 사적연금제도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모형화된 규정은 제11장 “국가별 현황”에 포함되어 있다. 9개국 모두 확정기여형(DC)제도가 모형화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확정기여형(DC)제도는 소득에 따라 일정한 대체율을 지급한다. (소득별 실제 기여율 자료는 대부분의 국가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득 범위에 걸쳐 평균 또는 일반적인



비율을 가정한다.) 그러나 과세 규정의 차이는 순 대체율이 소득범위에 걸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증가함을 의미한다. 벨기에는 세금 인센티브의 대상이 되는 연금대

상소득 한도 때문에 예외이다. 독일도 이 범주에 속하지만 한도가 단지 평균소득의 151%를 초과한 소득이다.

6.10. 강제적 공적제도, 강제적 사적제도, 자발적 사적제도의 순 연금대체율  
개인소득 대비 비율

	총 강제적 공적 및 사적			순 강제적 공적 및 사적			자발적 연금이 포함된 전체 순 대체율			자발적 연금이 포함된 전체 순 대체율		
	0.5	1.0	1.5	0.5	1.0	1.5	0.5	1.0	1.5	0.5	1.0	1.5
<b>OECD 회원국</b>												
호주	79.3	44.5	32.9	88.6	58.0	45.9	79.3	44.5	32.9	88.6	58.0	45.9
오스트리아	78.1	78.1	77.6	92.1	91.6	88.9	78.1	78.1	77.6	92.1	91.6	88.9
벨기에	47.6	46.6	35.3	64.2	60.9	49.1	60.9	59.9	45.5	80.6	72.1	58.6
캐나다	50.1	36.7	25.1	58.5	47.9	34.1	73.5	66.0	54.4	86.0	86.1	73.8
칠레	39.4	32.8	32.9	48.7	37.7	38.0	39.4	32.8	32.9	48.7	37.7	38.0
체코	78.9	49.0	39.1	93.1	63.8	51.9	78.9	49.0	39.1	93.1	63.8	51.9
덴마크	107.4	67.8	55.1	103.2	66.4	57.2	107.4	67.8	55.1	103.2	66.4	57.2
에스토니아	62.1	50.5	46.6	76.1	59.8	53.5	62.1	50.5	46.6	76.1	59.8	53.5
핀란드	55.8	55.8	55.8	66.6	63.5	65.0	55.8	55.8	55.8	66.6	63.5	65.0
프랑스	56.8	55.4	48.2	66.9	67.7	62.0	56.8	55.4	48.2	66.9	67.7	62.0
독일	37.5	37.5	37.5	53.4	50.0	49.0	50.0	50.0	50.0	65.6	64.7	63.7
그리스	79.4	66.7	62.3	82.9	72.9	73.3	79.4	66.7	62.3	82.9	72.9	73.3
헝가리	58.7	58.7	58.7	89.6	89.6	89.6	58.7	58.7	58.7	89.6	89.6	89.6
아이슬란드	82.6	69.2	68.1	90.5	76.7	76.3	82.6	69.2	68.1	90.5	76.7	76.3
아일랜드	69.5	34.7	23.2	70.1	42.2	32.5	99.8	65.1	53.5	100.7	72.1	63.8
이스라엘	82.7	61.0	40.7	85.7	68.8	50.3	82.7	61.0	40.7	85.7	68.8	50.3
이탈리아	69.5	69.5	69.5	82.2	79.7	81.6	69.5	69.5	69.5	82.2	79.7	81.6
일본	48.8	35.1	30.5	53.3	40.4	35.5	48.8	35.1	30.5	53.3	40.4	35.5
한국	58.5	39.3	29.3	64.3	45.0	34.4	58.6	39.3	29.3	64.3	45.0	34.4
룩셈부르크	89.5	76.8	72.5	98.4	88.6	83.7	89.5	76.8	72.5	98.4	88.6	83.7
멕시코	35.0	25.5	24.2	35.5	28.4	28.1	35.0	25.5	24.2	35.5	28.4	28.1
네덜란드	94.0	90.5	89.3	101.3	95.7	94.1	94.0	90.5	89.3	101.3	95.7	94.1
뉴질랜드	80.1	40.1	26.7	80.8	43.0	30.4	92.5	52.5	39.1	94.8	56.8	44.6
노르웨이	62.8	49.8	38.9	80.1	60.2	48.6	62.8	49.8	38.9	80.1	60.2	48.6
폴란드	43.1	43.1	43.1	54.0	52.8	52.4	43.1	43.1	43.1	54.0	52.8	52.4
포르투갈	75.1	73.8	72.5	87.7	89.5	88.4	75.1	73.8	72.5	87.7	89.5	88.4
슬로바키아	70.4	62.1	59.3	84.0	80.6	79.4	70.4	62.1	59.3	84.0	80.6	79.4
슬로베니아	44.4	38.4	36.0	57.6	57.4	55.1	44.4	38.4	36.0	57.6	57.4	55.1
스페인	82.1	82.1	82.1	89.1	89.5	89.3	82.1	82.1	82.1	89.1	89.5	89.3
스웨덴	56.0	56.0	65.2	56.7	55.8	70.1	56.0	56.0	65.2	56.7	55.8	70.1
스위스	55.7	40.2	26.8	61.4	46.9	31.5	55.7	40.2	26.8	61.4	46.9	31.5
터키	75.7	75.7	75.7	98.0	104.8	109.9	75.7	75.7	75.7	98.0	104.8	109.9
영국	43.3	21.6	14.4	51.7	28.5	20.3	73.1	51.4	44.2	82.4	61.2	54.8
미국	44.4	35.2	29.1	54.3	44.8	38.9	77.0	67.8	61.7	90.5	81.9	78.3
<b>OECD 34개국</b>	<b>64.5</b>	<b>52.9</b>	<b>47.8</b>	<b>74.1</b>	<b>63.2</b>	<b>58.5</b>	<b>69.1</b>	<b>57.6</b>	<b>52.4</b>	<b>79.1</b>	<b>68.4</b>	<b>63.9</b>
<b>기타 주요 국가들</b>												
아르헨티나	81.8	71.6	68.3	96.4	87.5	80.8	81.8	71.6	68.3	96.4	87.5	80.8
브라질	97.5	69.5	69.5	105.9	76.4	76.4	97.5	69.5	69.5	105.9	76.4	76.4
중국	94.0	74.0	67.4	102.2	80.5	73.6	94.0	74.0	67.4	102.2	80.5	73.6
인도	96.5	96.5	96.5	109.7	109.7	109.7	96.5	96.5	96.5	109.7	109.7	109.7
인도네시아	13.0	13.0	13.0	13.8	13.8	13.8	13.0	13.0	13.0	13.8	13.8	13.8
러시아	75.2	75.2	75.2	86.4	86.4	86.4	75.2	75.2	75.2	86.4	86.4	86.4
사우디아라비아	59.6	59.6	59.6	65.4	65.4	65.4	59.6	59.6	59.6	65.4	65.4	65.4
남아공	20.9	10.5	7.0	21.7	11.8	8.3	69.6	48.7	48.7	100.6	54.8	56.1
EU 28개국	69.9	59.0	54.4	80.7	70.9	66.4	73.0	62.1	57.4	83.0	73.4	68.5

출처: OECD 연금모형

<http://dx.doi.org/10.1787/888933301143>

### 주요 결과

개인 소득에 비례하는 연금자산은 은퇴 시점에 의무연금제도의 모든 노후소득을 생애 흐름에 따라 할인된 총 가치로 측정한다. OECD 국가의 평균소득자의 경우 남성의 연금자산은 평균적으로 연소득의 9.6배, 여성은 10.9배이다. 개인의 연소득과 대비된 총 연금자산은 여성의 경우 더 높는데 기대수명이 더 길기 때문이다.

연금대체율은 개인소득 대비 예상 연금액을 시사하는 지표가 되지만 종합적인 측정지표는 아니다. 은퇴 시점에 개인 소득 대비 급여 수준을 보여줄 뿐이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려면 기대여명, 은퇴연령, 연금 급여의 연동(indexation)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들 요소는 모두 함께 연금 급여가 얼마동안 지급되는지,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결정한다. 연금 급여의 미래흐름의 총량을 측정할 수 있는 연금자산은 이들 요소를 고려한 지표이다. 이것은 개인 소득 대비 강제적 연금제도에서 약속한 것과 동일한 액수를 제공하는 연금 상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목돈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확정급여형제도에서는 대체율과 예측되는 연금인출기간 사이의 상관관계가 대개 없거나 약하다. 결과적으로 연금자산은 은퇴연령을 일정하게 놓을 경우 평균수명의 연장 때문에 증가한다. 확정기여형제도에서는 급여의 크기와 예측되는 급여인출기간 사이에 좀 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이들 제도에서 연금자산의 측정치는 누적자산과 동일하므로 수명 연장과는 상관이 없는데 수명 연장이 급여액을 자동적으로 삭감하기 때문이다. 개인 소득 수준에서 총 연금자산은 룩셈부르크에서 가장 높는데 남성은 근로자 평균소득의 17.8배, 여성은 20.4배이다. 네덜란드에서 약간 낮아서 남성은 근로자 평균소득의 17.2배, 여성은 19.6배이다. 영국에서 연금자산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남성과 여성 모두 (연간) 개인 소득(근로자 평균소득)의 약 4배인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대체율 때문이다.

개인별 대체율이 높다는 것은 개인 소득에 비례하는 연금자산이 평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의 경우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득수준에 걸친 기대여명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도 더 높다. 개인 소득이 평균소득의 절반인 남성의 연금자산은 평균적으로 자기 소득의 11.7배이며 평균소득자의 경우는 9.6배 수준이다. 마찬가지로 저소득 여성의 연금자산은 자기 소득의 13.3배인 반면 평균소득의 여성은 10.9배이다. 저소득자의 연금자산이 가장 높은 국가들(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에서, 그 가치는 남성의 경우 개인 소득의 18배에서 21배 사이이며 여성의 경우 개인 소득의 20배에서 24배 사이이다.

### 기대수명의 영향

헝가리, 슬로바키아, 터키처럼 은퇴 후 기간이 짧고 연금 급여가 확정형 급여인 국가들에서 개인의 연금자산이 더 작다. 스위스와 일부 북유럽 국가(확정급여형(DB)제도) 등과 같이 기대여명이 높은 국가들은 정반대이다. 마찬가지로 여성의 기대여명이 남성보다 길기 때문에 남녀 공통의 사망률 표를 사용하거나 확정급여형 제도를 가진 모든 국가들에서 여성의 연금자산이 더 높다. 이는 단순히 동일 수준의 연금이 더 긴 노후기간 동안 지급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의 연금수급연령이 여전히 남성보다 낮고 이로 인해 연금수급기간은 더 길어지게 된다. 연금자산은 연금수급연령의 영향도 받는다. 룩셈부르크에서처럼 확정급여형제도에서 연금수급연령이 낮으면 특정 급여 수준에서 연금자산이 늘어난다.

### 연동(indexation)의 효과

연금자산은 연동(indexation)규정의 영향도 받는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현재 지급되는 연금은 물가(price)에 연동하고 있지만 예외도 있는데, 예를 들어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영국은 확정급여형 또는 포인트제도를 평균소득에 연계하고 있다. 소득이 물가보다 빨리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연금자산은 특정 수준의 대체율에서 관대한 연동방식으로 인해 더 높다. 비OECD 회원국 사이에서도 차이가 나타

나는데 남아공의 경우 남성 평균소득자는 개인 소득의 1.4배에 불과하며 여성은 1.8배인 반면, 브라질에서는 남성은 17.3배이며 인도에서 여성은 16.9배이다.

### 정의와 측정

연금자산의 산정에는 2%의 통일된 실질할인율을 사용한다. 비교는 예상 연금 지급액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산정 시 은퇴 년도의 연령별 및 성별 국가의 사망률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연금자산은 총 연간 개인소득의 배수로 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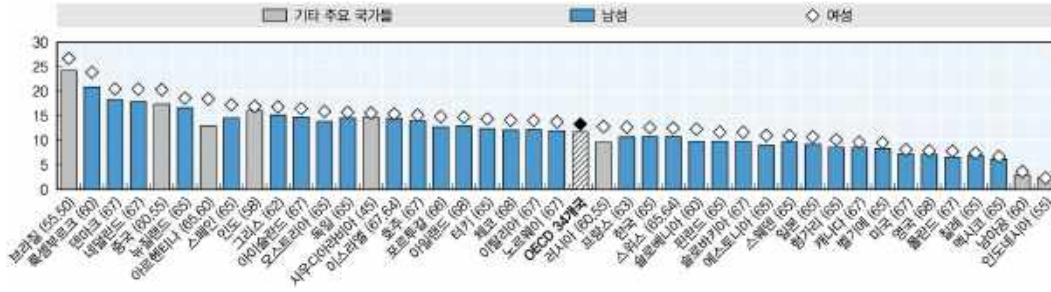
6.11. 소득별 총 연금자산

	개인 소득, 평균의 배수							개인 소득, 평균의 배수					
	남자			여자				남자			여자		
	0.5	1.0	1.5	0.5	1.0	1.5		0.5	1.0	1.5	0.5	1.0	1.5
<b>OECD 회원국</b>							<b>OECD 회원국(계속)</b>						
호주	14.0	7.8	5.8	15.1	8.2	5.8	노르웨이	11.9	9.4	7.3	13.8	10.8	8.4
오스트리아	13.8	13.8	13.7	15.8	15.8	15.7	폴란드	6.5	6.5	6.5	7.7	7.7	7.7
벨기에	8.3	8.1	6.1	9.5	9.3	7.1	포르투갈	12.7	11.8	11.6	14.8	13.6	13.4
캐나다	8.5	6.2	4.3	9.6	7.0	4.8	슬로바키아	9.8	8.6	8.2	11.6	10.2	9.8
칠레	6.9	5.8	5.8	7.4	5.8	5.8	슬로베니아	9.8	8.5	7.9	12.2	10.6	9.9
체코	12.1	7.5	6.0	14.0	8.7	6.9	스페인	14.6	14.6	14.6	17.2	17.2	17.2
덴마크	18.3	11.3	9.1	20.4	12.6	10.1	스웨덴	9.7	9.7	11.4	10.9	10.9	12.9
에스토니아	8.9	7.2	6.7	11.0	8.9	8.3	스위스	10.7	7.7	5.1	12.5	9.0	6.0
핀란드	9.8	9.8	9.8	11.7	11.7	11.7	터키	12.3	12.3	12.3	14.3	14.3	14.3
프랑스	10.7	10.4	9.1	12.6	12.3	10.7	영국	7.1	3.6	2.4	7.8	3.9	2.6
독일	14.5	14.5	14.5	15.7	15.7	15.7	미국	7.2	5.7	4.7	8.0	6.4	5.3
그리스	15.1	12.7	11.9	16.8	14.1	13.2	<b>OECD 34개국</b>	<b>11.7</b>	<b>9.6</b>	<b>8.6</b>	<b>13.3</b>	<b>10.9</b>	<b>9.9</b>
헝가리	8.5	8.5	8.5	10.1	10.1	10.1	<b>기타 주요 국가들</b>						
아이슬란드	14.8	12.1	11.9	16.4	13.4	13.2	아르헨티나	12.9	11.3	10.7	18.4	14.9	13.7
아일랜드	12.9	6.5	4.3	14.7	7.3	4.9	브라질	24.2	17.3	17.3	26.7	14.5	14.5
이스라엘	14.5	10.7	7.1	15.3	11.1	7.4	중국	17.3	13.7	12.4	20.3	16.2	14.8
이탈리아	12.2	12.2	12.2	14.0	14.0	14.0	인도	16.0	16.0	16.0	16.9	16.9	16.9
일본	9.1	6.6	5.7	10.7	7.7	6.7	인도네시아	2.3	2.3	2.3	2.3	2.3	2.3
한국	10.7	7.2	5.3	12.6	8.4	6.3	러시아	9.6	9.6	9.6	12.8	12.8	12.8
룩셈부르크	20.8	17.8	16.8	23.8	20.4	19.3	사우디아라비아	14.8	14.8	14.8	15.6	15.6	15.6
멕시코	6.1	4.5	4.2	6.6	4.5	4.2	남아공	2.9	1.4	1.0	3.6	1.8	1.2
네덜란드	17.8	17.2	16.9	20.4	19.6	19.4	EU 28개국	12.3	10.4	9.5	14.1	11.9	11.0
뉴질랜드	16.6	8.3	5.5	18.5	9.3	6.2							

출처: OECD 연금모형

<http://dx.doi.org/10.1787/888933301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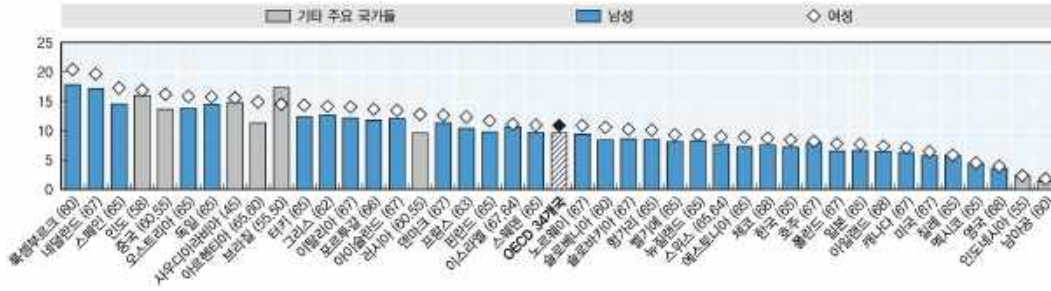
6.12. 저소득자의 성별 총 연금자산



출처: OECD 연금모형

<http://dx.doi.org/10.1787/888933300721>

6.13. 평균소득자의 성별 총 연금자산



출처: OECD 연금모형

<http://dx.doi.org/10.1787/888933300739>

### 주요 결과

순 연금자산은 총 연금자산처럼 의무 연금제도에서 전체 연금 급여의 현재 가치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 역시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과 기여금을 감안한다. 연금자산에 대한 두 수치 모두 개인 총 소득의 배수로 표현된다.

평균소득자의 경우 OECD 국가의 순 연금자산은 남성은 평균 총 개인소득의 8.2배, 여성은 9.4배이다. 본 수치가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주된 이유는 기대수명의 성별 격차 때문이다.

순 연금자산이 개인 총 소득의 배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총 연금자산보다 적거나(은퇴 후 기간 중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같다(연금 수급자가 과세되지 않거나 연금소득이 세금 기준선 아래인 경우). 이것은 두 가지 수치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예를 들어 슬로바키아와 터키에서는 연금자산이 순 기준과 총 기준 모두 동일한데 이유는 연금이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금자산의 수준은 국가 순위 측면에서 총 기준보다는 순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크게 바뀐다. 예를 들어 덴마크는 총 연금자산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높는데 순 자산 기준은 OECD 평균보다 낮다. 덴마크의 순 연금자산 대 총 연금자산은 61%이다. 다른 4개의 북유럽 국가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에서도 마찬가지로인데 이들 국가에서는 퇴직자가 상당한 조세부담을 지게 된다. 부분적으로는 이것은 의무 제도의 총 대체율이 높은 수준임을 반영한다. 하지만 국가 전반의 과세수준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결과, 국가 간 비교를 해보면 순 연금자산 수준의 차이가 총 연금자산의 차이보다 훨씬 작다.

#### 개인소득의 영향

OECD 14개국에서 저소득자는 납세 부담이 없거나 1% 미만의 세금 및 기여금을 납부한다. 11개 국가에서 평균소득자에 대해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없거나 매우 낮다.

고소득자의 경우 대다수 국가에서 순 연금자산이 연소득의 4배에서 9배의 범위에 있으므로 결과에 커다란 차이가 없다. 이에 예외되는 국가는 룩셈부르크인데 남성의 경우 순 연금자산이 연소득의 12.4배, 여성의 경우 14.2배이다. 영국의 수치가 가장 낮는데 남성의 경우 2.4배, 여성의 경우 2.6배이다.

비 OECD 국가를 보면 순 연금자산과 총 연금자산은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에서 동일했다. 총 연금자산의 산정과 마찬가지로 이들 국가간에는 차이가 컸는데 남아공은 평균소득자의 경우 순 연금자산이 남성은 연소득의 1.4배, 여성은 1.8배이며, 브라질의 남성이 가장 높은 17.3배, 인도의 여성이 16.9배이다.

이러한 산정은 연금제도의 급여부분만을 살펴본 것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납부한 세금과 기여금이 근로 시기 대비 은퇴 후 생활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앞의 “순 연금대체율” 지표에서 이미 논의했다.

#### 정의와 측정

순 연금자산은 연금 급여액 흐름의 현재가치이며 퇴직자가 연금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고려한다. 이 값은 개별 국가의 연간 총 개인소득의 배수로 측정하고 표현한다. 비교 기준으로 총 소득을 사용하는 이유는 은퇴 후 납부하는 세금 및 기여금의 영향을 근로 시 납부하는 세금 및 기여금과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 위해서이다. 이 정의는 연금에 소득세와 기여금이 과세되지 않을 경우 총 연금자산과 순 연금자산이 동일함을 의미한다.

연금 수급자가 납부하는 세금과 기여금은 개인이 소득별로 받을 수 있는 의무연금 수급액의 조건에 따라 산정된다. 산정은 모든 표준 세금 공제(tax allowances)와 세제혜택, 그리고 연금소득이나 연금수급연령의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감면을 고려해서 이루어진다.

국가 세금제도가 연금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규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온라인 국가별 현황 <http://oe.cd/pag>을 참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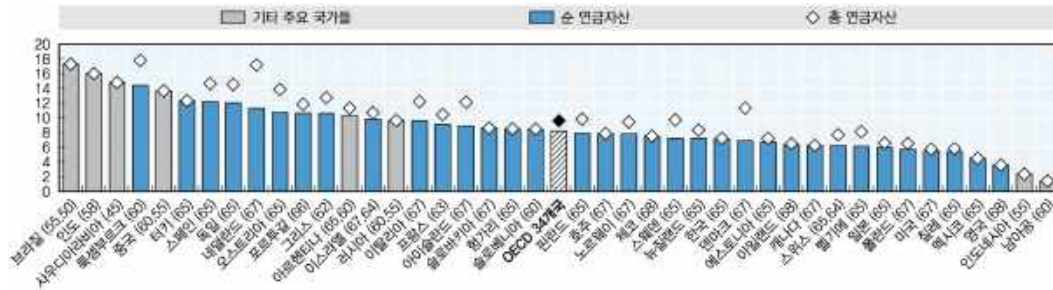
6.14. 소득별 순 연금자산

	개인 연간 총 소득의 배수							개인 연간 총 소득의 배수					
	남자			여자				남자			여자		
	0.5	1.0	1.5	0.5	1.0	1.5		0.5	1.0	1.5	0.5	1.0	1.5
<b>OECD 회원국</b>							<b>OECD 회원국(계속)</b>						
호주	14.0	7.8	5.8	15.1	8.2	5.8	노르웨이	11.6	7.8	5.8	13.3	9.0	6.7
오스트리아	12.6	10.7	9.8	14.4	12.3	11.3	폴란드	6.0	5.7	5.6	7.1	6.8	6.7
벨기에	8.1	6.1	4.4	9.4	7.0	5.1	포르투갈	12.4	10.6	9.7	14.5	12.3	11.2
캐나다	8.5	6.2	4.3	9.6	7.0	4.8	슬로바키아	9.8	8.6	8.2	11.6	10.2	9.8
칠레	6.9	5.4	5.4	7.4	5.4	5.4	슬로베니아	9.8	8.5	7.7	12.2	10.6	9.6
체코	12.1	7.5	5.9	14.0	8.7	6.8	스페인	13.6	12.2	11.5	16.1	14.5	13.7
덴마크	11.4	6.9	5.4	12.8	7.7	6.0	스웨덴	7.8	7.2	8.2	8.8	8.1	9.2
에스토니아	8.9	6.7	6.0	11.0	8.3	7.4	스위스	8.5	6.2	4.2	9.8	7.3	4.8
핀란드	9.7	7.9	7.4	11.5	9.4	8.8	터키	12.3	12.3	12.3	14.3	14.3	14.3
프랑스	9.9	9.1	7.8	11.7	10.8	9.2	영국	7.1	3.6	2.4	7.8	3.9	2.6
독일	14.5	12.0	11.1	15.7	13.0	12.0	미국	7.1	5.5	4.4	7.9	6.1	5.0
그리스	13.6	10.6	9.6	15.1	11.8	10.7	<b>OECD 34개국</b>	<b>10.8</b>	<b>8.2</b>	<b>7.1</b>	<b>12.3</b>	<b>9.4</b>	<b>8.1</b>
헝가리	8.5	8.5	8.5	10.1	10.1	10.1	<b>기타 주요 국가들</b>						
아이슬란드	12.3	8.9	8.2	13.7	9.9	9.1	아르헨티나	12.5	10.3	9.3	17.8	13.6	11.9
아일랜드	12.6	6.3	4.2	14.3	7.2	4.8	브라질	24.2	17.3	17.3	27.7	22.6	22.6
이스라엘	14.0	9.8	6.6	14.9	10.4	6.9	중국	17.3	13.7	12.3	20.3	16.2	14.8
이탈리아	11.0	9.6	9.0	12.7	11.1	10.3	인도	16.0	16.0	16.0	16.9	16.9	16.9
일본	8.1	5.9	5.0	9.4	6.9	5.8	인도네시아	2.3	2.3	2.3	2.3	2.3	2.3
한국	10.7	7.1	5.3	12.5	8.4	6.2	러시아	9.6	9.6	9.6	12.8	12.8	12.8
룩셈부르크	18.9	14.4	12.4	21.7	16.5	14.2	사우디아라비아	14.8	14.8	14.8	15.6	15.6	15.6
멕시코	6.1	4.5	4.2	6.6	4.5	4.2	남아공	2.9	1.4	1.0	3.6	1.8	1.2
네덜란드	13.6	11.3	10.1	15.6	12.9	11.6	EU 28개국	11.4	8.9	7.8	13.0	10.3	9.0
뉴질랜드	14.4	7.2	4.8	16.1	8.1	5.4							

출처: OECD 연금모형

<http://dx.doi.org/10.1787/888933301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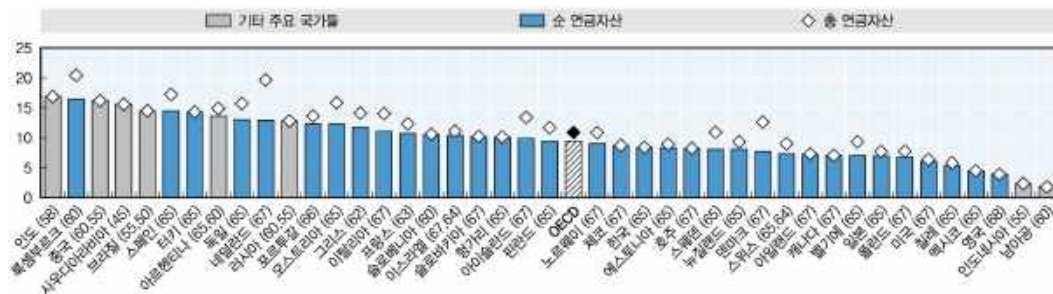
6.15 총 연금자산 대 순 연금자산, 남성, 평균소득자



출처: OECD 연금모형

<http://dx.doi.org/10.1787/888933300752>

6.16 총 연금자산 대 순 연금자산, 여성, 평균소득자



출처: OECD 연금모형

<http://dx.doi.org/10.1787/888933300752>





## 제7장

# 인구 및 경제적 측면

인구 고령화는 연금정책의 변화와 개혁의 주된 동인이었다. 고령화는 2가지 인구학적 변화의 결과이다.

첫 번째 지표는 지난 50년 동안의 출생아 수와 추이를 살펴본다. 인구 고령화의 두 번째 원인은 기대여명의 증가이다. 출생시 기대여명과 65세 때 기대여명의 변화가 두 번째 지표로 제시된다. 기대여명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논의해본다. 세 번째 지표는 인구통계학적 부양률(dependency ratio)로 측정된 고령화의 정도를 살펴본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수 대비 65세 이상 인구 수를 말한다. 네 번째 지표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률을 살펴본다. 다섯 번째 지표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을 떠나는 연령, 즉 “노동시장 실질은퇴연령”에 대한 수치를 제시한다. “은퇴 이후 예상되는 연수”를 측정한 마지막 지표는 기대여명과 노동시장 실질은퇴연령을 결합한 것이다.

이스라엘 통계자료는 해당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하였다. OECD가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른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역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주요 결과

2013년에 34개 OECD 회원국 중 32개국에서 합계 출산율은 약 2.1의 대체수준 - 즉, 총 인구 수를 현상 유지하는데 필요한 아동 수 - 을 밑돌았다. 이에 예외되는 국가는 합계 출산율이 3.0인 이스라엘과 2.2인 멕시코이다. OECD 회원국 중 2/3에서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출산율이 약간 상승했다. 출산율은 연금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출산율이 기대여명과 함께 인구 고령화의 결정요인이기 때문이다.

2013년 OECD 국가에서 출산율은 평균 1.67로 인구 대체를 보장하는 수준을 훨씬 밑돌고 있다. 출생아가 줄어드는 추세는 1960년대부터 계속 되어 왔다. 출산율 하락은 개인의 생활방식 및 가족구성의 변화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불안정, 적절한 주택 확보의 어려움, 경제적으로 벽찬 양육비 등 일상 생활의 제약에 의한 것이다.

여성이 낳고 싶어하는 아이의 숫자와 실제로 낳는 숫자 간의 (벌어지고 있는) 격차는 이러한 제약사항의 영향을 일부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영향은 동거와 출산규범에 관한 여성의 요구수준의 변화에 의한 것인데, 특히 일본과 한국 등 결혼과 출산 간 상관관계가 강한 국가들이 그렇다. 이 상관관계는 그리스, 이탈리아, 폴란드, 스위스 등 몇몇 유럽 국가에서도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미혼 남성과 여성의 출산패턴 역시 변했다. 예를 들면 프랑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 현재 출생아의 절반 이상이 혼외자이다. OECD 국가에서 평균 혼외 출생 비율은 전체의 1/3 정도이다.

최근의 출산율 상승은 매우 느리긴 하지만 계속될 것으로 가정되며 유엔인구전망보고서 (United Nations Population Prospects)에 따르면 2060년까지 OECD 평균이 1.9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율은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첫째, 인구 감소는 각 세대별 가입연령 여성 수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둘째, 노인을 위한 연금과 의료 서비스의 자원 마련을

위해 생산가능인구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커진다. 마지막으로, 노동인구 역시 고령화되므로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 생산성이 줄고 경제성장이 저하될 수 있다.

기타 주요 국가들 중에는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이 모두 현재 대체 수준인 2.1을 훨씬 넘는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추세는 OECD 국가를 따라가고 있다.

### 정의와 측정

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해있고, 매 연령에서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현재의 연령별 출산율과 일치한다면 이 여성이 출산하게 될 자녀 수를 의미한다. 합계 출산율은 일반적으로 5년 단위로 정의된 연령별 출산율을 합하여 산정한다. 이 수가 없고 사망률에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 합계 출산율이 여성 1명당 자녀 2.1명(즉, 대체 수준)이면 인구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 참고문헌

D'Addio, A.C. and M. Mira d'Ercole (2005),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The Role of Polic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7,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880242325663>.

OECD (2014), *Society at a Glance 2014: OECD Social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soc\\_glance-2014-en](http://dx.doi.org/10.1787/soc_glance-2014-en).

## 7.1. 합계 출산율, 1960년부터 2060년까지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3	2020	2060
<b>OECD 회원국</b>									
호주	3.45	2.86	1.89	1.90	1.76	1.95	1.88	1.87	1.86
오스트리아	2.69	2.29	1.65	1.46	1.36	1.44	1.44	1.57	1.79
벨기에	2.54	2.25	1.68	1.62	1.64	1.84	1.76	1.89	1.95
캐나다	3.90	2.33	1.68	1.71	1.49	1.63	1.61	1.74	1.86
칠레	..	3.95	2.72	2.59	2.05	1.89	1.80	1.77	1.82
체코	2.11	1.91	2.10	1.89	1.14	1.49	1.46	1.71	1.91
덴마크	2.54	1.95	1.55	1.67	1.77	1.87	1.67	1.91	1.95
에스토니아	..	..	2.02	2.05	1.36	1.72	1.52	1.71	1.88
핀란드	2.71	1.83	1.63	1.79	1.73	1.87	1.75	1.87	1.90
프랑스	2.74	2.48	1.95	1.78	1.87	2.02	1.98	1.98	1.99
독일	2.37	2.03	1.56	1.45	1.38	1.39	1.41	1.50	1.69
그리스	2.23	2.40	2.23	1.40	1.27	1.47	1.30	1.61	1.80
헝가리	2.02	1.97	1.92	1.84	1.33	1.26	1.34	1.53	1.77
아이슬란드	4.27	2.81	2.48	2.31	2.08	2.20	1.93	2.00	1.87
아일랜드	3.76	3.87	3.23	2.12	1.90	2.06	1.96	1.99	1.97
이스라엘	..	..	3.14	3.02	2.95	3.03	3.03	2.69	2.08
이탈리아	2.41	2.43	1.68	1.36	1.26	1.41	1.39	1.61	1.83
일본	2.00	2.13	1.75	1.54	1.36	1.39	1.43	1.54	1.78
한국	6.00	4.53	2.82	1.57	1.47	1.23	1.19	1.46	1.75
룩셈부르크	2.28	1.98	1.50	1.62	1.78	1.63	1.55	1.74	1.85
멕시코	6.78	6.72	4.71	3.36	2.65	2.28	2.22	1.94	1.76
네덜란드	3.12	2.57	1.60	1.62	1.72	1.80	1.68	1.81	1.88
뉴질랜드	4.24	3.17	2.03	2.18	1.98	2.17	2.01	1.94	1.83
노르웨이	2.91	2.50	1.72	1.93	1.85	1.95	1.78	1.93	1.94
폴란드	2.98	2.20	2.28	1.99	1.37	1.38	1.26	1.53	1.77
포르투갈	3.10	2.83	2.18	1.56	1.56	1.39	1.21	1.38	1.71
슬로바키아	3.07	2.40	2.31	2.09	1.29	1.40	1.34	1.52	1.77
슬로베니아	2.18	2.21	2.11	1.46	1.26	1.57	1.55	1.60	1.80
스페인	2.86	2.90	2.22	1.36	1.23	1.37	1.27	1.63	1.83
스웨덴	2.20	1.94	1.68	2.14	1.55	1.98	1.89	1.95	1.99
스위스	2.44	2.10	1.55	1.59	1.50	1.54	1.52	1.62	1.80
터키	6.40	5.00	4.63	3.07	2.27	2.06	2.07	1.89	1.77
영국	2.72	2.43	1.90	1.83	1.64	1.92	1.83	1.89	1.90
미국	3.65	2.48	1.84	2.08	2.06	1.93	1.86	1.98	1.99
<b>OECD 34개국</b>	<b>3.18</b>	<b>2.73</b>	<b>2.17</b>	<b>1.91</b>	<b>1.67</b>	<b>1.75</b>	<b>1.67</b>	<b>1.77</b>	<b>1.85</b>
<b>기타 주요 국가들</b>									
아르헨티나	3.11	3.07	3.33	2.99	2.48	2.21	2.18	2.06	1.86
브라질	6.21	5.02	4.07	2.81	2.36	1.84	1.81	1.71	1.75
중국	5.76	5.47	2.71	2.51	1.51	1.65	1.66	1.72	1.84
인도	5.87	5.49	4.68	3.88	3.15	2.56	2.51	2.25	1.85
인도네시아	5.67	5.47	4.43	3.12	2.48	2.43	2.37	2.12	1.84
러시아	2.42	2.01	1.90	1.89	1.20	1.57	1.69	1.66	1.85
사우디아라비아	7.22	7.28	7.21	5.84	3.99	2.83	2.70	2.24	1.73
남아공	6.17	5.59	4.79	3.66	2.87	2.50	2.70	2.18	1.82
EU 28개국	2.75	2.43	2.01	1.78	1.48	1.59	1.56	1.68	1.84

출처: OECD (2014), *Society at a Glance 2014: OECD Social Indicators*;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 2012 Revision (forecasts)*.

<http://dx.doi.org/10.1787/888933301171>

### 주요 결과

기대수명의 획기적인 증가는 지난 한 세기의 가장 위대한 성과 중 하나였다. 수명은 계속해서 길어지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출생 시 기대여명은 남성은 77.2세, 여성은 82.7세였다. 여성들 중에서는 일본(86.9세)의 수명이 가장 길었고,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가 그 뒤를 이었다. 남성은 아이슬란드(80.2세)의 출생 시 기대여명이 가장 길었고, 호주, 스위스, 일본, 이스라엘이 그 뒤를 따랐다.

고령자의 기대수명은 연금제도의 재정 측면에서 특히 중요하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OECD 회원국에서 평균적으로 65세 여성이 추가로 20.8년을 더 사는 것으로 예상되었고 2060년에서 2065년 사이에 25.8년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 연령의 남성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7.4년을 더 살고, 2060년에서 2065년 사이에 4.5년이 늘어나 21.9년을 더 살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인구 기대수명의 성별 격차는 상대적 기준으로는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되겠지만 절대적 기준으로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OECD 국가 평균 3.4년에서 3.9년으로).

고령인구의 기대수명은 OECD 국가간 차이가 크다. 일본 여성들은 2060년에서 2065년 사이에 65세가 되고 나서 29.7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슬로바키아 여성들은 65세 이후 21.9년을 더 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 한국(29.5년)의 수치가 가장 높다. 프랑스는 세 번째로 높은 기대여명을 보이며 65세에 28.3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의 경우는 여성보다는 국가별 편차가 작았다. 일본(24.1년)은 2060년에서 2065년 사이에 65세 기대여명이 가장 길었고, 이를 한국(23.8년)이 그 뒤를 따른다. 이에 반해 에스토니아의 남성은 65세에 17.5년으로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65세 기대여명의 성별 격차는 2060년에서 2065년 사이에,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여성이 3년에서 5년 더 사는 것으로 나타난다. 프랑스, 일본, 한국에서는 성별 격차가 거의 6년에 달하는 등 매우 크다. 반면 멕시코와 영국에서 가장 작은 성별 격차(2년에 근접)가 관찰된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해서 많은 OECD 국가에서는 연금수급연령을 이미 연장했거나 연장할 계획이다(제1장 “연금개혁” 참조). 그 외 다른 국가에서는 수명이 길어지면서 연금 수준도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요소를 연금제도에 도입했다.

전반적인 기대수명 증가는 생활수준의 향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쉽게 받게 된 것도 원인이다.

비OECD 주요 국가들을 살펴보면 기대수명이 일반적으로 OECD 회원국들보다 낮았다. 출생시 기대수명은 남아공에서 남성의 경우 55세, 여성의 경우 59세로 단연코 가장 낮았다. 여성의 경우 아르헨티나의 80세, 남성의 경우 중국의 74세로 출생시 기대수명이 가장 높았다. 65세 기대여명은 인도 여성의 경우 14.5년, 남아공 남성의 경우 10.9세로 가장 낮았다.

### 정의와 측정

기대수명은 특정 연령의 사람들이 특정 연도에 특정 국가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사망률을 경험할 경우 생존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평균 년수로 정의된다. 이 경우는 2010년에서 2015년, 2060년에서 2065년을 기준으로 삼았다. 수명을 결정하는 요인이 느리게 변하므로 기대수명은 장기간에 걸쳐 분석하는 것이 가장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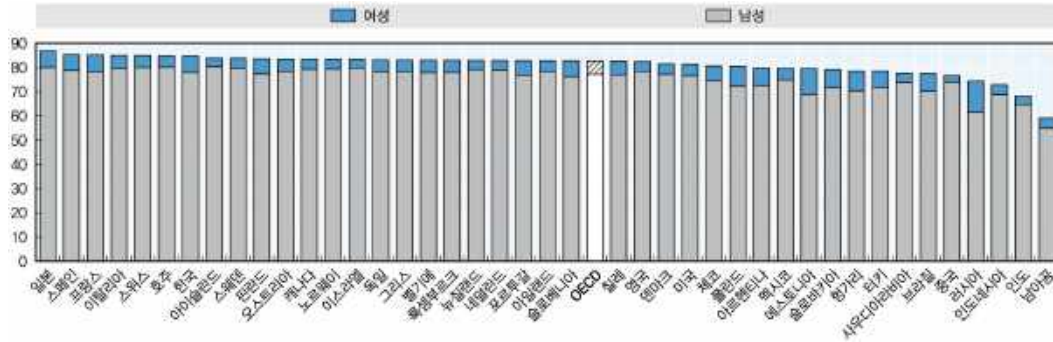
### 참고문헌

Whitehouse, E.R. (2007), “Life-Expectancy Risk and Pensions: Who Bears the Burden?”,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No.60,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060025254440>.

Whitehouse, E.R. and A. Zaidi (2008), “Socio-Economic Differences in Mortality: Implications for Pension Policy”,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No. 71,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2317474160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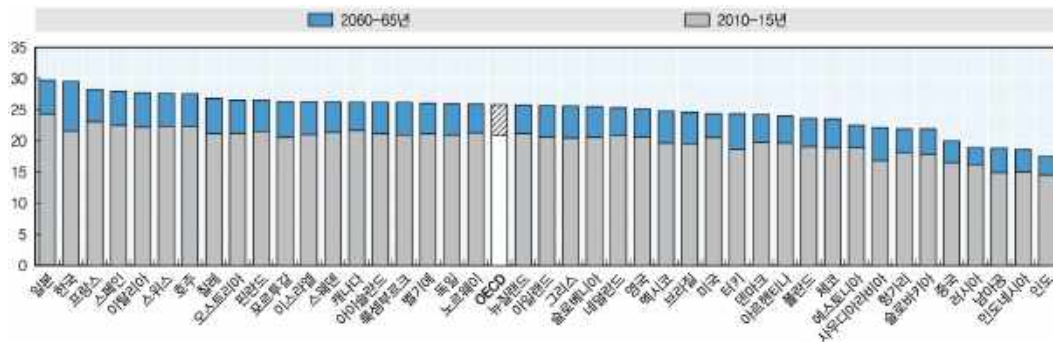
7.2. 기대수명, 년수, 남성과 여성, 2010-15년 출생자



출처: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 2012 Revision.

<http://dx.doi.org/10.1787/8889333007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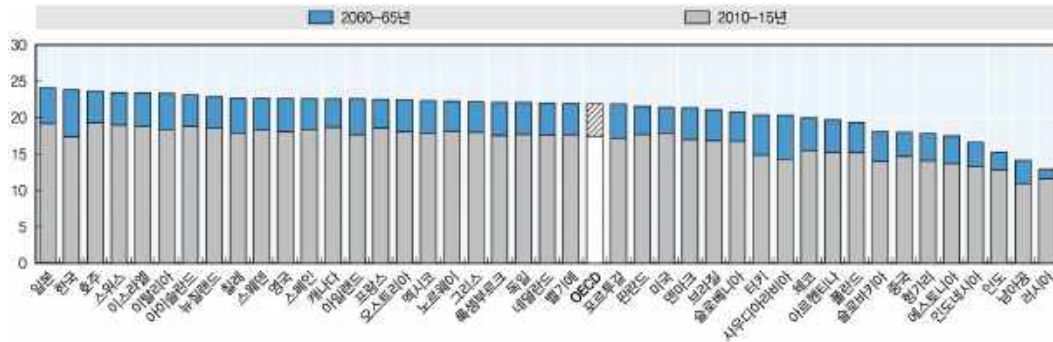
7.3. 65세 예상 기대여명, 여성에 대한 년수, 2010-15년과 2060-65년



출처: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 2012 Revision.

<http://dx.doi.org/10.1787/888933300779>

7.4. 65세 예상 기대여명, 남성에 대한 년수, 2010-15년과 2060-65년



출처: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 2012 Revision.

<http://dx.doi.org/10.1787/888933300780>

### 주요 결과

인구통계학적 노인부양비(old-age dependency ratio)는 연령기준을 불변으로 놓을 때 2075년에 현재의 2배가 된다. 인구 고령화는 최근 몇 년간 시행된 일련의 개혁의 주된 이유이다. 현재 OECD 국가 평균적으로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노인 28명이 있다. 인구통계학적 노인부양비(dependency ratio)는 1950년 14에서 2015년에 28로 늘었다. 인구통계학적 노인부양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서 2025년에 35, 2050년에 51, 2075년에 55가 될 것이다.

2015년에 인구학적으로 가장 늙은 OECD 국가는 일본으로 인구통계학적 부양비는 47이었다(100명의 생산가능인구가 47명의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함을 의미). 독일의 부양비는 35, 이탈리아의 부양비도 37로 높았다. 2075년에 부양비는 한국이 80, 일본이 77, 포르투갈이 76, 독일이 66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멕시코와 터키는 가장 젊은 국가들로 부양비가 각각 12와 13을 나타내며 칠레가 뒤를 이어 17을 기록했다. 2075년에 이들 3개국의 부양비는 OECD 평균을 초과하여 칠레에서 63, 멕시코에서 59, 터키에서 55에 이를 전망이다.

6개의 OECD의 영어권 국가 중 4개국, 즉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미국에서 21에서 26 사이의 상대적으로 낮은 부양비를 보였다. 이는 부분적으로 근로자의 유입 덕분이며 아일랜드와 미국의 출산율은 현재 대체율에 조금 못미친다. 현재 젊은 인구를 보유한 국가들은 슬로바키아와 폴란드로 각각 21과 24의 부양률을 기록했다. 이 두 국가가 향후에 빠르게 노령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부양비는 2075년에는 OECD 평균에 매우 근접할 것이다.

부양비의 변화는 사망률, 출산률, 이민에 달려있다. OECD 회원국들은 기대수명의 지속적인 증가를 경험했고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 추세가 계속될 것을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 인구와 연금 수급자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 외에 출산율도 크게 감소했는데 이로 인해 결국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근로자 수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1980년경에 OECD 평균 출산율이 대체수준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한 세대의 인구 수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래에 출산율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상당히 불확실하다.

OECD 전체적으로 부양비의 증가는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인구통계학적으로 젊은 국가들이 좀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어서 OECD 국가 간에 상당한 수렴이 예상된다.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한국이다. 한국의 부양비는 1950년에 6에서 2075년에 80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한국은 현재 OECD에서 네 번째로 젊은 국가에서 2075년에는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U 28개국의 양상은 대체로 OECD 평균을 따르게 된다. 유럽 국가들은 이미 OECD 평균보다 더 고령화 되어 있다. 2015년 EU 28개국의 부양비는 29인데 OECD의 부양비는 28이었다. 2075년까지 EU의 부양비는 55가 될 전망이다.

다른 비OECD 주요 국가들은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은 부양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수가 향후 수십 년간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맞게 된다. 예를 들어 브라질과 중국의 부양비는 현재 각각 13과 14에서 2075년에는 각각 60과 51로 증가할 전망이다. 예측 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남아공만이 유일하게 OECD의 현재 평균보다 인구학적으로 더 젊은 국가가 될 전망인데 부양비는 28이고, 인도는 33을 기록하여 그 뒤를 따를 것이다.

### 정의와 측정

여기에서 사용된 인구통계학적 노인부양비는 20세에서 64세인 노동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노인의 수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사용된 노인부양비는 최신 “중위 가정(medium-variant)”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한다. 이 자료는 유엔 세계인구전망보고서 2012년 개정판(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 2012 Revision)에서 발췌했다.

## 7.5. 인구통계학적 노인부양비: 과거 및 예측 값, 1950-2075년

	1950	1975	2000	2015	2025	2050	2075
<b>OECD 회원국</b>							
호주	14.0	16.0	20.7	25.1	31.5	40.8	47.3
오스트리아	17.1	27.3	25.3	30.3	36.5	52.8	53.8
벨기에	18.1	25.2	28.4	31.7	39.0	50.5	51.6
캐나다	14.0	15.3	20.4	25.9	35.7	46.4	49.9
칠레	8.6	11.5	12.9	17.2	24.7	44.9	62.8
체코	13.6	22.5	22.0	28.1	35.2	50.9	47.9
덴마크	15.6	23.7	24.2	32.2	37.1	42.7	47.6
에스토니아	19.3	21.2	25.6	30.4	35.8	47.1	47.3
핀란드	11.9	18.0	24.7	35.4	44.6	48.9	53.1
프랑스	19.5	24.6	27.5	32.8	39.7	49.0	53.4
독일	16.0	26.3	26.2	35.3	43.7	65.1	66.3
그리스	12.5	21.8	27.5	33.5	40.2	65.3	59.7
헝가리	13.2	21.4	24.6	28.2	34.7	47.8	48.9
아이슬란드	14.1	18.1	20.1	22.5	30.2	44.7	55.6
아일랜드	20.9	22.0	19.2	21.2	27.3	47.8	49.7
이스라엘	7.1	15.2	18.9	20.3	25.4	33.5	42.4
이탈리아	14.3	21.7	29.4	36.5	42.6	68.3	63.3
일본	10.0	13.0	27.6	47.2	55.4	78.4	77.2
한국	6.3	7.5	11.5	19.6	31.1	71.5	80.1
룩셈부르크	15.8	22.6	22.9	23.3	27.4	43.0	55.3
멕시코	7.9	9.5	9.7	12.1	16.2	35.3	58.7
네덜란드	14.0	19.5	21.9	30.5	39.5	52.5	55.9
뉴질랜드	16.3	16.8	20.2	25.0	32.2	42.3	51.9
노르웨이	16.0	24.9	25.8	27.9	33.1	42.1	47.4
폴란드	9.4	16.9	20.6	23.8	35.8	55.4	57.7
포르투갈	13.0	19.7	26.7	31.7	38.5	69.8	75.6
슬로바키아	11.9	18.4	18.8	20.6	30.1	51.5	52.9
슬로베니아	12.5	19.0	22.4	28.3	39.3	60.3	56.5
스페인	12.8	19.2	27.3	29.6	36.3	73.2	65.4
스웨덴	16.8	26.2	29.5	34.8	39.0	42.7	46.5
스위스	15.8	21.5	24.9	29.5	34.0	44.3	51.7
터키	6.5	10.1	11.3	13.1	17.6	37.4	55.2
영국	17.9	25.4	26.8	30.8	35.5	46.4	51.0
미국	14.3	19.1	20.9	24.7	33.1	39.5	45.0
<b>OECD(비가중)</b>	<b>13.7</b>	<b>19.4</b>	<b>22.5</b>	<b>27.6</b>	<b>34.6</b>	<b>51.0</b>	<b>55.4</b>
<b>OECD(가중)</b>	<b>13.9</b>	<b>18.7</b>	<b>21.9</b>	<b>27.3</b>	<b>34.1</b>	<b>48.5</b>	<b>54.5</b>
<b>기타 주요 국가들</b>							
아르헨티나	7.5	14.1	18.6	19.7	22.3	34.3	47.5
브라질	6.5	8.9	10.1	13.3	18.3	39.6	60.2
중국	8.7	9.7	11.6	14.2	21.3	42.5	50.6
인도	6.4	7.6	8.5	9.6	12.2	20.8	33.3
인도네시아	8.6	8.0	8.6	9.4	12.8	26.9	39.4
러시아	8.7	15.4	20.3	20.1	27.7	36.0	34.5
사우디아라비아	7.5	7.7	7.2	4.9	8.5	30.2	50.3
남아공	7.5	7.3	6.5	10.2	12.5	17.4	28.2
EU 28개국(비가중)	14.8	21.1	24.3	29.3	36.3	52.9	55.2
EU 28개국(가중)	15.2	22.5	25.9	31.3	38.4	56.5	57.2

주: 인구통계학적 노인부양비는 20세에서 64세 사이의 노동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노인의 수로 정의된다.  
출처: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 2012 Revision.

<http://dx.doi.org/10.1787/888933301184>

### 주요 결과

고용률은 모든 OECD 국가에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하락한다. 2014년에 55-59세 인구의 OECD 평균 고용률은 67%였으나, 60-64세 인구는 44%, 65-69세 인구는 20%였다. 14개의 OECD 국가에서 고용률이 모든 연령집단에서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13개의 OECD 국가에서는 모든 연령집단에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55-64세 인구의 고용률은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지난 10년 동안 개선되어서 2004년 48%에서 2014년 56%로 상승했다.

OECD에서 55-69세 인구의 고용률은 국가간 격차가 크다. 2014년에 아이슬란드는 55-59세 인구의 고용률이 86%로 가장 높았고 60-64세 인구의 고용률은 82%를 넘었다. 65-69세 인구의 고용률은 53%를 약간 넘었다. 이에 반해 슬로베니아, 그리스, 터키에서 가장 낮은 고용률이 발견되었는데, 이들 국가에서 55-59세 인구의 고용률은 기껏해야 50%였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에서 고용률은 55-59세 인구의 경우 OECD 평균(67%)보다 훨씬 높은 대략 75-80%를 기록했다. 그러나 고용률은 인구가 고령화되면 급격히 하락하여 65-69세 인구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낮다. 프랑스에서 고용률은 55-59세 인구의 경우 OECD 평균에 가깝지만 60세 이상의 경우 급격히 하락하여 평균보다 훨씬 낮다. 이와 대조적으로 멕시코에서는 55-59세의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낮지만 60-64세 연령층과 65-69세 연령층의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등 다수의 유럽국가에서 관측 대상인 모든 연령집단의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낮았다.

55-64세 인구의 고용률은 지난 10년간 대부분 OECD 국가에서 개선되었다. 평균적으로 8%p 증가해서, 2004년 48%에서 2014년 56%로 상승했다. 가장 큰 폭의 상승이 독일에서 발생하여 2004년에 상대적으로 낮은 42%에서 2014년에

66%로 증가했다. 주로 경제위기 때문에 그리스와 포르투갈에서 55-64세의 고용률이 2014년에 하락해서 2004년보다 낮아졌다.

### 정의와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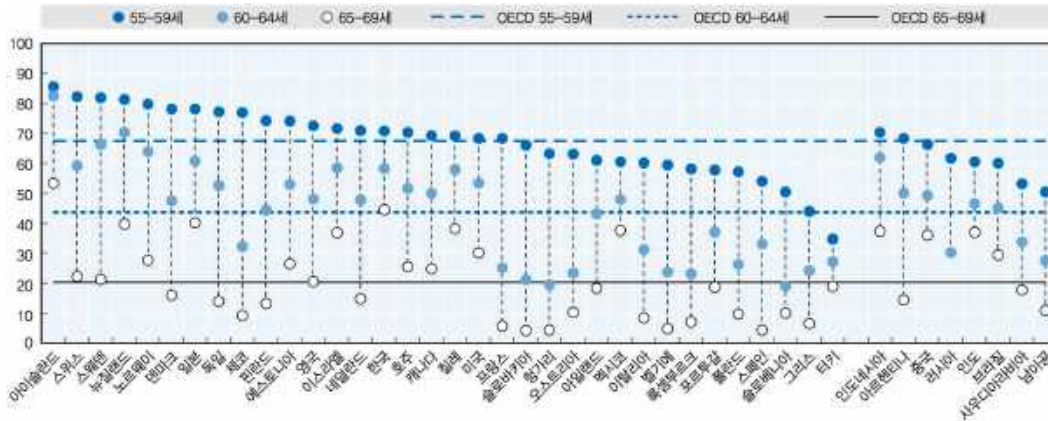
민간 고용 상태인 사람들의 고용은 명시된 짧은 기간(1주 또는 1일) 동안 특정 연령 이상의 고용된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는데 다음의 범주에 속한다: i) 유급 고용; ii) 고용주와 자영업; iii) 무급가족종사자(근로 중인 무급가족종사자는 기준기간 중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자영업으로 간주되어야 함). 운영상 목적으로 약간의 일이라는 개념은 최소 한 시간의 업무로 해석한다. 총 고용은 민간 고용과 군병력 인원을 합친 것으로 정의된다.

### 참고문헌

- OECD Reviews on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Working Better with Age*, reports on Denmark, France, the Netherlands, Norway, Poland and Switzerland, [www.oecd.org/els/employment/olderworkers](http://www.oecd.org/els/employment/olderworkers).
- OECD (2015),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5-en](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5-en).
- Sonnet, A., H. Olsen and T. Manfredi (2014), "Towards More Inclusive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The Lessons from France, The Netherlands, Norway and Switzerland", *De Economist*, Vol. 162, December.



7.6. 2014년 55-59세, 60-64세, 65-69세 근로자의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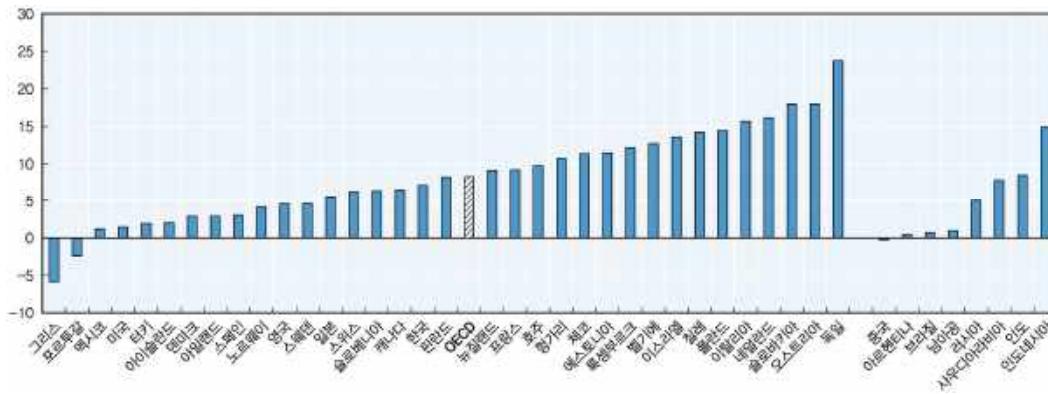


출처: OECD (2015),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http://dx.doi.org/10.1787/888933300791>

7.7. 2004년에서 2014년 사이의 고령 근로자의 고용률 변화

55-64세 고령 근로자의 고용률 %P 증감률, 2004-14년



출처: OECD (2015),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http://dx.doi.org/10.1787/888933300800>

### 주요 결과

2014년 OECD 국가의 평균 노동시장 실질 은퇴연령은 남성의 경우 64.6세, 여성의 경우 63.1세였다. OECD 국가 평균 노동시장 실질 은퇴연령은 남성의 경우 공식 은퇴연령보다 6개월 높았고 여성의 경우는 공식 은퇴연령과 같았다. 가장 낮은 실질 은퇴연령은 남성의 경우 프랑스의 59.4세였고 여성의 경우 슬로바키아의 58.2세였다. 가장 높은 실질 은퇴연령은 한국에서 발견되었는데 남성은 72.9세, 여성은 70.6세로 각각 나타났다.

OECD 평균 남성의 노동시장 공식은퇴연령이 실질은퇴연령보다 0.6세 낮았고 여성의 경우는 같았다. 그러나 국가 간 차이가 컸다. 폴란드 남성의 경우 실질 은퇴연령이 공식 은퇴연령보다 3년 낮았고 덴마크 여성의 경우 4년 낮았다. 이와 반대로 한국에서 노동시장 실질 은퇴연령이 공식 은퇴연령보다 상당히 높았는데 남성은 12년, 여성은 10년이 높았다.

2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의 공식 은퇴연령은 2014년 남성의 경우 64.0세, 여성의 경우 63.1세였다. 대다수 OECD 국가에서 노동시장 실질 은퇴연령이 공식 은퇴연령보다 낮았다. 34개국 중 16개국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의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OECD 국가 간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실질 은퇴연령이 남성과 여성 모두 핀란드에서 약 3년 낮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15개국에서 실질 은퇴연령이 공식 은퇴연령보다 상당히 높았다. 한국에서 차이가 가장 컸는데 남성은 12년, 여성은 거의 10년이 높았다.

11개 OECD 국가에서 공식 은퇴연령의 성별 격차가 존재한다. 실질 은퇴연령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별로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칠레에서 여성은 평균 약 67세까지 일하지만 공식 은퇴연령은 겨우 60세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여성은 2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한다고 가정할 때 61세에 은퇴하지만 공식 은퇴연령은 62세이다. 이들 국가 중 대부분에서 여성의 은퇴연령이 미래에 남성과 같아질 것인데 여성의 은퇴연령이 계속 낮게 유지될 국가는 칠레, 이스라엘, 스위스뿐일 전망이다.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에서만 여성의 노동시장 실질 은퇴연령이 남성보다 높다. 핀란드와 프랑스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0.5년 늦게 노동시장을 은퇴하는 반면, 스페인에서는 거의 11개월 늦게 은퇴한다. 다른 모든 OECD 국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늦게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데 가장 큰 격차(3.9년)는 멕시코에서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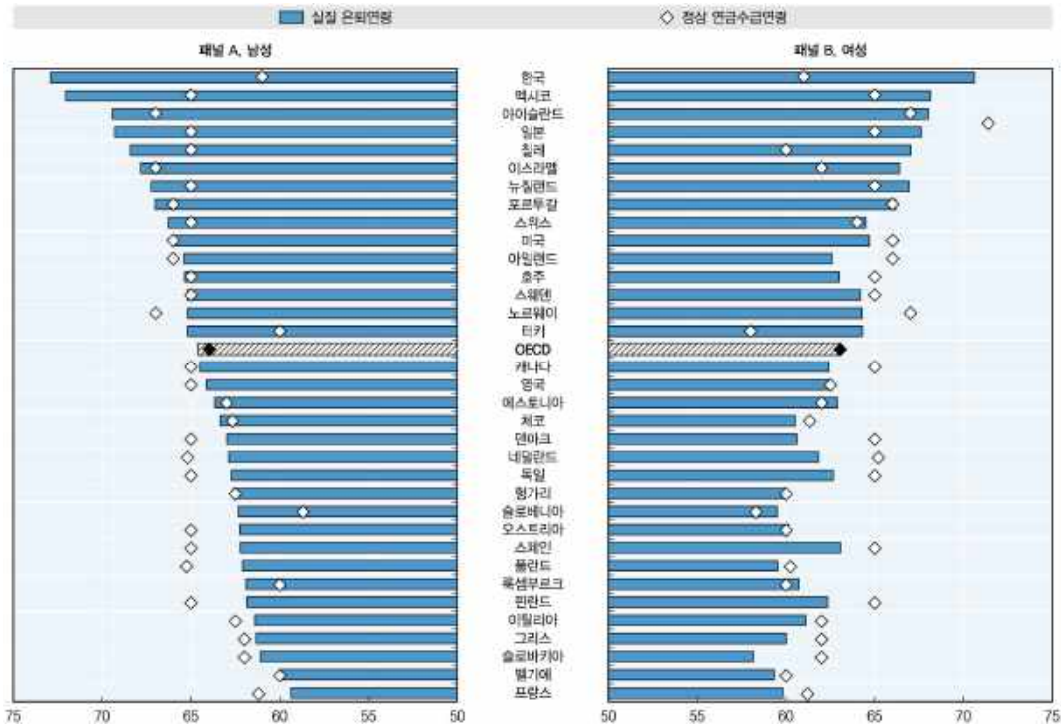
2000년 초반까지 실질 은퇴연령이 하락 추세를 보였다. 1970년에 실질 은퇴연령은 남성의 경우 68.4세, 여성의 경우 66.4세였다. 이에 반해 2000년 노동시장 실질 은퇴연령이 남성의 경우 평균 63.2세, 여성의 경우 61.1세였는데, 국가간 차이가 매우 커서 남성의 최저연령은 헝가리의 58.3세였고 최고연령은 멕시코의 75.0세였다. 여성의 경우 평균 노동시장 실질 은퇴연령은 헝가리의 55.8세부터 멕시코의 69.8세까지 다양했다. 2014년에 평균이 다시 증가해서 남성의 경우 64.6세, 여성의 경우 63.1세를 기록했다.

### 정의와 측정

평균 실질 은퇴연령은 40세 이상 근로자의 노동시장 은퇴 평균연령으로 정의된다. 인구의 연령구조에서 구성효과를 추출하기 위해서 노동력 수준이 아닌 노동참여의 증감율을 사용하여 노동시장 은퇴를 추정했다. 이 증감률은 각 (합성)인구집단을 5년 단위 연령집단으로 나누어 산출했다.

공식 은퇴연령은 여기서 2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했다고 가정하여 2014년 현재 정상 연금 수급연령으로 정의된다. 이 연령은 제5장의 “현재 연금수급연령” 지표와 일치한다.

7.8. 2014년 노동시장 평균 실질 은퇴연령과 연금수급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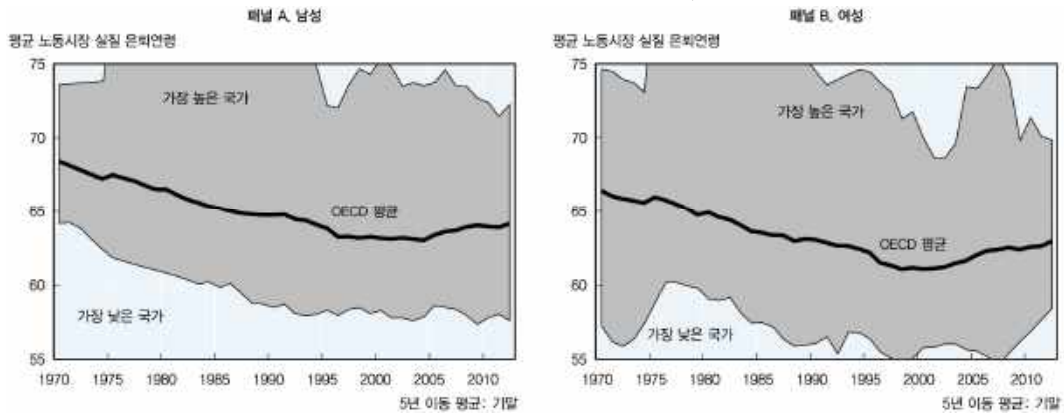


주: 실질 은퇴연령은 2009-14년의 5년에 대해 나타남. 연금수급연령은 20세 노동시장에 진입했다고 가정하여 2014년에 은퇴하는 사람에 대해 보여줌.

출처: 국가 노동력 조사와 유럽연합노동력 조사(EU-LFS) 결과에 근거한 OECD 추정치

<http://dx.doi.org/10.1787/888933300814>

7.9. OECD 국가의 평균 노동시장 은퇴연령, 1970-2014년



출처: 국가 노동력 조사와 유럽연합노동력조사(EU-LFS) 결과에 근거한 OECD 추정치, 일부 국가의 초기 자료는 국가 인구통계조사

<http://dx.doi.org/10.1787/888933300827>

### 주요 결과

은퇴 후 기대년수 지표는 평균적인 노동시장 은퇴시점 이후에 예상되는 성별 기대여명을 측정한다. 2014년에 OECD 평균 은퇴 후 기대년수는 남성의 경우 17.6년, 여성의 경우 22.3년이었다. 프랑스는 은퇴 후 기대년수가 가장 길었는데 남성의 경우 23.0년, 여성의 경우 27.2년이었다. 한국은 은퇴 후 기대년수가 가장 짧았는데 남성의 경우 11.4년, 여성의 경우 16.6년이었다. OECD 평균 은퇴 후 기대년수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장되고 있다. 1970년에 OECD 국가에서 남성은 은퇴 후 평균 11년을 더 살았고 여성은 15년을 더 살았다. 2014년에 이 수치는 각각 18년과 22년으로 증가했다.

은퇴 후 기대년수는 노동시장 은퇴시점 이후에 예상되는 평균 기대여명을 나타낸다. 남성이 대개 여성보다 더 짧게 살 것으로 기대되는데, OECD 여성 평균보다 4.7년을 적게 산다(그림 7.10).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에서 여성은 25년 이상을 더 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그림 7.10 패널 A). 마찬가지로,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남성은 은퇴 후 20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그림 7.10 패널 B). 여성이 평균 노동시장 은퇴연령 이후 살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기간은 칠레, 아이슬란드,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포르투갈, 터키에서 20년 미만이었으며, 남성의 경우는 한국, 멕시코, 터키에서 15년 미만이었다.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에서 은퇴 후 기대년수의 성별격차가 7년 이상이었다. 노후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성은 노후 빈곤에 노출되는데, 일부 국가에서 물가연동이 OECD 국가의 성별 임금격차 및 기대수명 연장이 연금 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시키기 때문이다.

신흥경제국에서 여성의 은퇴 후 기대년수는 중국의 20년부터 남아공의 16년까지 다양하다. 남성의 경우 브라질은 13년이고 남아공은 9.6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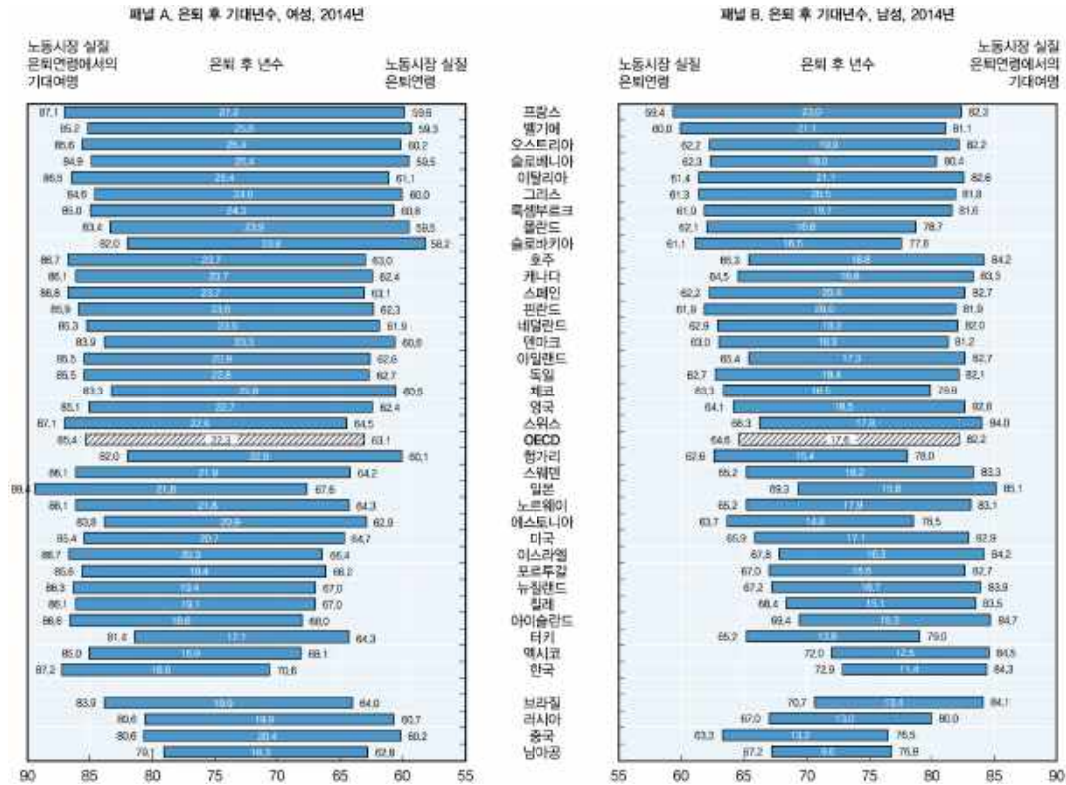
노동시장 은퇴시점에 측정된 평균 노후기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났다. 남성은 1970년에 OECD 국가에서 은퇴 후에 평균 11년을 살았는데 2014년에는 은퇴 후에 평균 18년을 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그림 7.11, 패널 B). 여성은 1970년에 은퇴 후에 평균 15년을 살았으나 2014년에는 22년을 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그림 7.11, 패널 A). 은퇴 후 기대년수가 1970-2014년에 증가한 것은 노동시장 실질 은퇴연령의 하락과 수명증가 때문이다.

은퇴 후 기대년수는 노동시장 실질 은퇴연령이 서서히 하락함에 따라 1970-1990년 후반에 점차 늘어났다. 노동시장 실질 은퇴연령은 몇 년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2004년부터 느리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실질 은퇴연령 이후의 수명은 특히 여성의 경우 이 기간에 크게 증가했고 남성의 경우도 지난 20년간 증가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러한 증가는 은퇴연령의 증가와 거의 같았고 은퇴 후 기대년수는 안정화되었다.

### 정의와 측정

은퇴 후 기대년수는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장 실질 은퇴연령에서 측정되는 기대여명이다. 기대여명 추정치는 유엔 세계인구전망보고서 2012년 개정판(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 2012 Revision)을 근거로 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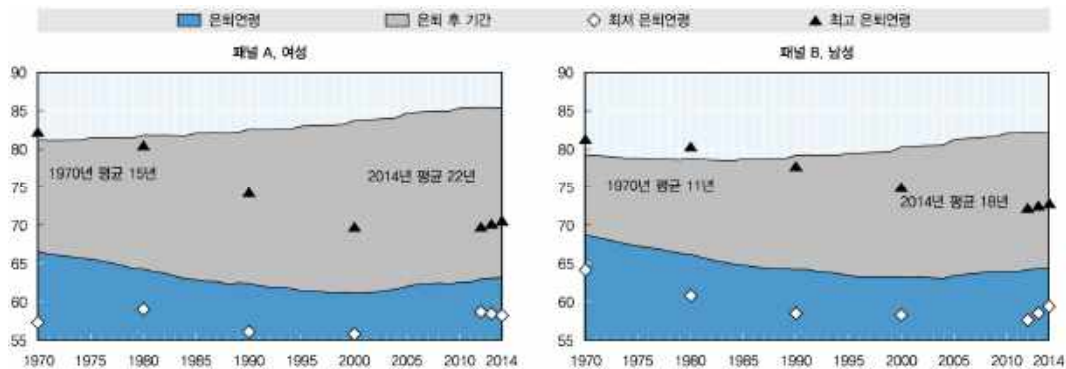
7.10. 2014년 연령별 은퇴 후 기대년수



주: 실질 은퇴연령은 2007-2012년의 5년에 대해 나타남; 이스라엘의 자료는 2011년 자료임. 연금수급연령은 2014년 자료임.  
출처: 국가 노동력 조사와 유럽연합노동력조사(EU-LFS) 결과에 근거한 OECD 추정치

<http://dx.doi.org/10.1787/888933300832>

7.11. 모든 OECD 국가의 은퇴 후 평균 기대년수, 1970-2014년



출처: 국가 노동력 조사와 유럽연합노동력조사(EU-LFS) 결과에 근거한 OECD 추정치, 일부 국가의 초기 자료는 국가 인구통계조사

<http://dx.doi.org/10.1787/888933300848>



## 제8장

# 노후소득과 노인빈곤

세 가지 지표를 통해 최근 수년간 노인인구의 경제적 상황을 살펴본다. 첫 번째 지표는 노인의 소득을 전체 인구의 소득과 비교해서 살펴본다. 또한 공적급여, 근로 소득, 사적연금, 기타 저축 등 노인의 소득원에 대한 자료를 제시한다.

두 번째 지표는 노인빈곤을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국가 중위소득 절반 미만의 소득으로 사는 노인인구의 비율을 살펴본다. 또한 노인 빈곤율을 인구 전체의 빈곤율과 비교한다.

마지막 지표는 모든 연금 모형의 기본이 되는 “평균 근로자 소득”을 제시한다. 이들 자료는 본 보고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파라미터에 대한 많은 수치들과 연금 수급액 추정치는 평균 근로자 소득 대비 비율로써 보고된다.

이스라엘 통계자료는 해당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하였다. OECD가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른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역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주요 결과

노인들의 소득은 가구규모의 차이를 고려한다 해도 평균적으로 전체 인구의 소득보다 낮다. 2012-13년에 65세 이상 노인들의 소득은 전체 인구 소득의 87%였다. 66-75세 노인들의 소득이 전체 인구 소득의 92%였던 반면 75세 이상 노인들의 소득은 전체 인구 소득의 80%였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공적이전(public transfer)은 노인 소득의 상당부분을 제공한다.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은 자료 입수가 가능한 지역에서 2012년 전체 인구 평균소득의 87%였다(표 8.1). 노인 소득이 프랑스와 룩셈부르크에서 가장 높아서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이 전체 인구 소득의 각각 100%와 106%였다. 노인 소득이 그리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멕시코, 포르투갈, 스페인에서도 비교적 높아서 국가 평균의 95%를 넘었다. 반면 호주와 한국에서 노인 소득은 전체 인구 소득의 각각 67%와 60%에 불과했다.

66-75세 인구는 75세 이상 인구에 비해 평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각각 전체 인구 소득의 92%와 80% 수준이다. 고령 퇴직자의 소득이 낮은 것은 실질소득 상승과 같은 인구집단효과(cohort effects)에 의해 일부 설명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음 세대의 퇴직자 인구집단의 소득이 높아지게 된다. 이로 인해 각 세대의 연금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급되는 연금 급여의 연동 원칙은 장기간에 걸쳐 노인들의 소득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는 근로기간 동안 남성보다 임금이 낮고 기대수명이 길며 최고령 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성 고령자에게 특히 영향을 미친다.

### 소득원

노인들이 의존하는 4가지 주요 소득원 중 공적이전소득(소득비례연금, 자산조사형 급여 등)과 기업퇴직이전소득(occupational transfer)이 가장 중요하다(그림 8.2). 이들 소득은 평균적으로 노인 소득의 56%와 13%를 각각 차지한다. 65세 이상 인구가 공적이전소득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국가는 헝가리와 벨기에로 각각 소득의 89%와 85%가 공적이전소득에서 나온다. 공적이전소득은 멕시코에서 전체 소득의 6%로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 기업퇴직이전소득은 13개의 OECD 국가에서 특히 중요하다. 프랑스와 핀란

드에서 각각 70%와 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근로는 OECD 평균적으로 노인 소득의 21%, 자본은 약 10%를 차지한다. 멕시코에서 근로가 특히 중요하며 노인 소득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근로는 뉴질랜드, 터키, 미국, 이스라엘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노인 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수치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이스라엘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정상 연금수급연령이 65세를 넘는다. 그 외 다른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기여 이력의 격차를 매우거나 노후에 더 나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한다. 또한 가구소득을 측정할 때 노인들은 동거하는 젊은 가구 구성원의 소득에 의존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많은 노인들이 여러 세대로 구성된 가구(multi-generational households)에 살고 있으므로 근로는 노인들에게 더욱 중요한 소득원일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에서는 대부분 사적연금인 자본소득(capital)이 노인 소득의 40%를 차지한다. 호주, 덴마크, 프랑스, 미국에서는 자본소득이 노인 소득의 약 20%를 차지한다.

### 정의와 측정

노인 인구의 소득은 고용, 자영업, 자본, 공적이전으로부터 온 소득이다. 제시된 자료는 가처분 소득(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것)에 대한 것이다. 소득은 가구 기준으로 측정되며 가구 규모의 차이를 감안하여 제곱근 균등화지수로 균등화한다. 정의와 자료 출처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OECD, 2015)을 참조한다. 한 눈에 보는 연금 2013의 “노후소득 및 빈곤”에서 좀 더 상세한 분석을 제공한다.



참고문헌

OECD (2015),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35120-en>.

OECD (2013), *Pensions at a Glance 2013: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pension\\_glance-2013-en](http://dx.doi.org/10.1787/pension_glance-2013-en).

8.1. 노인의 소득, 2012년(또는 입수 가능한 최근 년도)

	전체 인구 소득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전체 인구 소득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65세 이상 인구 전체	66-75세	75세 초과		65세 이상 인구 전체	66-75세	75세 초과		
호주	67.1	70.8	61.9	2012	한국	60.1	62.0	56.4	2013
오스트리아	89.8	93.2	84.6	2012	룩셈부르크	106.0	103.2	110.8	2012
벨기에	77.2	80.5	73.4	2012	멕시코	96.2	102.6	85.5	2012
캐나다	91.6	94.0	88.4	2011	네덜란드	87.3	99.2	78.3	2013
체코	81.1	84.0	76.5	2012	뉴질랜드	83.3	93.5	68.2	2012
덴마크	77.1	82.4	69.1	2012	노르웨이	89.4	99.6	75.2	2012
에스토니아	68.9	72.9	63.6	2012	폴란드	90.3	89.7	91.0	2012
핀란드	83.6	93.2	70.6	2012	포르투갈	96.3	102.2	89.8	2012
프랑스	100.4	107.3	93.3	2013	슬로바키아	83.9	84.9	81.9	2012
독일	86.9	90.5	80.0	2012	슬로베니아	86.3	90.5	80.6	2012
그리스	97.5	103.5	90.2	2012	스페인	95.9	100.8	90.9	2012
헝가리	84.1	92.9	82.3	2012	스웨덴	85.7	97.6	67.9	2012
아이슬란드	92.7	96.9	86.8	2012	스위스	75.6	80.8	67.7	2012
아일랜드	87.9	96.6	74.8	2012	터키	89.5	94.4	81.6	2012
이스라엘	96.5	106.4	83.0	2012	영국	82.3	88.7	74.3	2012
이탈리아	95.6	101.2	89.6	2013	미국	92.1	102.9	76.8	2013
					OECD 32개국	86.8	92.5	79.5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http://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http://dx.doi.org/10.1787/888933301190>

8.2. 노인의 소득원, 2012년 또는 입수 가능한 최근 년도



주: 근로를 통한 소득(income)에는 근로소득(고용소득)과 자영업소득이 포함됨. 자본소득에는 비연금성(non-pension) 저축의 수익률로 인한 소득과 사적연금이 포함됨. 칠레, 일본, 한국, 영국의 자료는 미포함.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http://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http://dx.doi.org/10.1787/888933300853>

### 주요 결과

평균적으로 OECD 국가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 12.6%는 균등화된 중위 가구소득의 절반 미만으로 정의되는 상대적 소득빈곤 상태이다. 그러나 국가별 차이가 크다. 노인 빈곤율은 평균 11.3%인 전체 인구의 빈곤율보다 높다. 그러나 이 결과는 소수의 국가에 의해 주도된다. OECD 34개국 중 19개국에서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전체 인구의 소득 빈곤율보다 낮다.

입수 가능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한국(50%), 호주(34%), 멕시코(27%)에서 매우 높았다. 이에 반해 네덜란드와 체코에서는 노인 빈곤율이 각각 2%와 3%로 가장 낮았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영국에서 빈곤율은 OECD 평균인 12.4%에 가깝게 나타났다.

### 노인 연령집단별 빈곤

“젊은 노인(66세-75세)”의 빈곤율은 “고령 노인(75세 이상)”보다 일반적으로 낮은 편인데 “젊은 노인”의 평균 빈곤율은 10.9%, “고령 노인”은 14.7%이다. 이 두 빈곤율의 차이는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스위스, 미국에서 두 자릿수이다.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실질소득이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해왔기 때문에 늦게 은퇴한 연령집단일수록 초기 급여액이 더 높다는 점이다. 또한 노인 인구는 여성이 압도적이다. 그러나 2개국, 즉 룩셈부르크와 폴란드에서는 75세 이상 고령 노인들의 빈곤율이 젊은 노인들보다 약간 낮다.

노인 빈곤율의 다양한 원인들 중 하나는 노후 안전망급여의 설정수준이다(제5장 “기초연금, 선별적 연금, 최저연금” 지표 참조).

### 빈곤과 성별

자료의 분류가 가능한 모든 국가에서 노인 여성의 빈곤 위험이 노인 남성보다 높다. 남성의 평균 빈곤율은 8.4%이며 여성의 빈곤율은 12.4%이다.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에서 빈곤의 성별 격차가 가장 작음(0.1%p 미만) 것으로 관

측된다. 격차는 프랑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에서도 약 1%p로 작다.

빈곤의 성별 격차가 가장 큰 국가는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미국으로 여성의 빈곤율이 남성보다 8-12%p 높다. 독일, 헝가리, 폴란드, 스위스에서도 6-7%p로 큰 격차가 존재한다.

### 빈곤과 연령

34개국 중 15개국에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보다 빈곤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표 8.5).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사이에 가장 큰 격차가 발견된 국가는 호주, 한국, 스위스로 노인 인구의 빈곤율이 전체 인구보다 14-35%p 높다. 한국에서 이러한 이유는 연금제도가 완전하게 성숙하지는 않았기 때문인 반면, 호주와 스위스에서는 많은 연금 수급자들이 자신의 누적된 연금을 연금 급여가 아닌 일시불로 받기 때문이다. 노인 빈곤율이 전체 인구의 빈곤율보다 높은 15개 OECD 국가의 노인 빈곤율은 평균 20%이다. 다른 19개국에서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보다 빈곤할 가능성이 낮다. 이들 국가 중 가장 두드러진 국가는 캐나다, 그리스, 스페인으로 노인 빈곤율이 전체 인구의 빈곤율보다 5-8%p 낮다. 이러한 국가들에서 노인 빈곤율은 7%인 반면 전체 인구의 빈곤율은 10%이다.

### 정의와 측정

국가간 비교에서 OECD는 빈곤을 “상대적”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빈곤의 척도는 특정 시점에 특정 국가의 중위 가구소득에 좌우된다. 여기에서는 빈곤 기준선이 중위 균등화가구 가처분 소득의 50%에 설정되어 있다. 정의 및 자료 출처에 관한 더 상세한 내용은 OECD(2015)를

참조한다.

OECD (2015),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35120-en>.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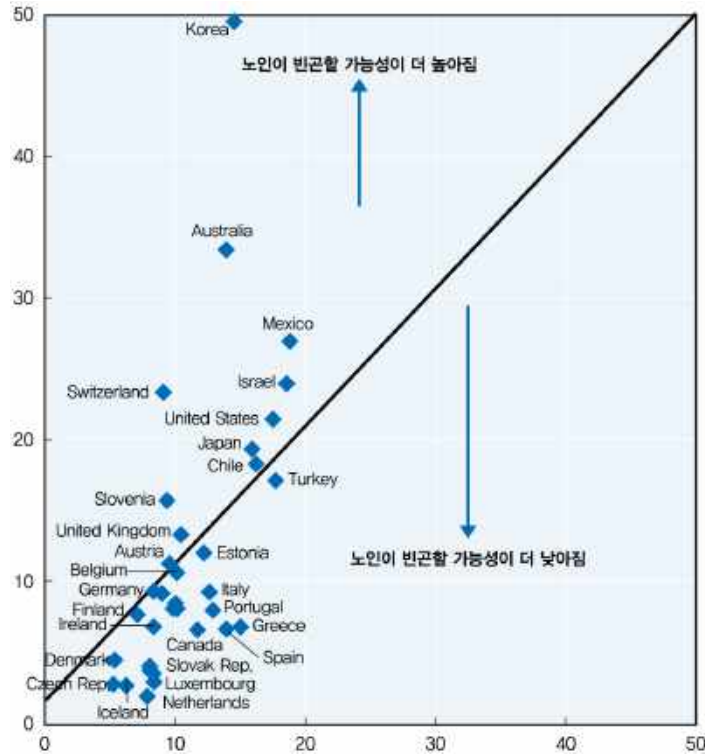
#### 8.3. 연령별 및 성별 소득 빈곤율

	2012년 또는 자료가 입수 가능한 최신 연도						2012년 또는 자료가 입수 가능한 최신 연도						
	노인 인구(65세 이상)						노인 인구(65세 이상)						
	연령별		성별			전체 인구	연령별		성별			전체 인구	
	65세 이상 전체	66-75세	76세 이상	남자	여자		65세 이상 전체	66-75세	76세 이상	남자	여자		
호주	33.5	30.5	37.8	31.0	35.7	14.0	한국	49.6	46.1			14.6	
오스트리아	11.4	11.2	11.6	9.0	13.2	9.6	룩셈부르크	3.0	3.2	2.7	3.0	3.1	8.4
벨기에	10.7	10.2	11.4	9.7	11.5	10.2	멕시코	27.0	25.3	30.0	26.0	27.9	18.9
캐나다	6.7	6.6	6.9	4.9	8.2	11.8	네덜란드	2.0	1.8	2.3	1.7	2.3	7.9
칠레	18.4	17.7	19.3			16.3	뉴질랜드	8.2	8.0	8.5	5.5	10.5	9.9
체코	2.8	2.7	3.0	1.5	3.8	5.3	노르웨이	4.1	2.2	6.9	1.8	6.0	8.1
덴마크	4.6	2.7	7.4	3.1	5.8	5.4	폴란드	8.2	10.4	5.6	4.4	10.5	10.2
에스토니아	12.1	12.3	11.8	6.9	14.6	12.3	포르투갈	8.1	6.4	10.0	6.8	9.0	13.0
핀란드	7.8	4.1	12.7	5.1	9.7	7.1	슬로바키아	3.6	3.2	4.3	0.7	5.3	8.4
프랑스	3.8	2.7	5.0	3.0	4.4	8.1	슬로베니아	15.8	11.7	21.3	8.7	20.7	9.4
독일	9.4	8.1	10.8	6.3	12.3	8.4	스페인	6.7	6.4	7.1	5.7	7.6	14.0
그리스	6.9	5.9	8.1	5.6	8.0	15.1	스웨덴	9.3	6.6	13.5	6.6	11.6	9.0
헝가리	8.6	7.8	9.9	5.0	10.6	10.1	스위스	23.4	18.8	30.5	19.8	26.4	9.1
아이슬란드	2.8	2.8	2.8	2.5	3.0	6.3	터키	17.2	15.9	19.3	15.9	18.3	17.8
아일랜드	6.9	6.5	7.5	6.9	7.0	8.4	영국	13.4	10.9	16.6	10.9	15.5	10.5
이스라엘	24.1	19.7	30.0	21.2	26.4	18.6	미국	21.5	17.5	27.2	16.5	25.6	17.6
이탈리아	9.4	9.5	9.2	6.4	11.5	12.7	<b>OECD</b>	<b>12.4</b>	<b>10.9</b>	<b>14.7</b>	<b>8.4</b>	<b>12.4</b>	<b>11.3</b>
일본	19.4	16.6	22.8			16.0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http://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칠레, 핀란드, 헝가리, 이스라엘, 네덜란드, 미국은 2013년 자료, 한국은 2009년 자료, 터키는 2011년 자료임.

<http://dx.doi.org/10.1787/888933301209>

8.4. 연령별 소득 빈곤율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http://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http://dx.doi.org/10.1787/888933300866>

### 주요 결과

“평균 근로자 소득(AW)”은 중요한 지표로 모든 연금 모형화 결과가 이 지표의 배수로 제시된다. 평균적으로 OECD 국가에서 평균근로자 소득은 2014년에 40,007달러였다.

표 8.5는 2014년 OECD 평균 근로자 소득 (AW) 지표에 따른 평균 근로자 소득의 수준을 보여준다. 소득은 모든 종류의 공제(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포함) 전 총 임금으로 정의되며 종업원에게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및 기타 현금성 보충소득이 포함된다.

평균 근로자 소득은 각국의 통화 및 미달러로 나타나 있다(시장환율과 구매력평가지수 기준). 구매력평가지수 환율은 달러의 구매력이 국가별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조정한다. 즉, 국가별로 한 바구니의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차이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에서는 구매력평가지수를 이해하기 쉽게 만든 “빅맥” 지수를 정기적으로 내놓는데 빅맥 햄버거가 전 세계 곳곳에서 얼마인지를 보여줌으로써 각국 통화의 차이를 보여준다([www.economist.com/content/big-mac-index?fsrc=PS/cemea/ggl/gen/big-mac-index](http://www.economist.com/content/big-mac-index?fsrc=PS/cemea/ggl/gen/big-mac-index) 참조).

OECD 국가의 평균 근로자 소득은 2014년 시장 환율로 평균 40,007달러였다. 구매력평가 지수로는 평균 40,548달러였다. 구매력평가지수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 더 높다는 것은 많은 OECD 국가의 달러 환율이 일정한 상품과 서비스 비용을 균등화하는 비율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타 주요 국가들의 평균소득은 평균근로자 소득이나 다른 일관된 기준에 근거하지 않으며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련의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료는 국가별 출처로부터 수집되었으므로 평균 개인소득, 평균 대상임금 및 자료가 가용한 특정 근로자 집단의 평균임금 간에 차이가 있다.

### 정의와 측정

“평균 근로자 소득(AW)” 시리즈는 한 눈에 보는 연금 두 번째 판(OECD, 2007)부터 채택되었다. 이 개념은 이전에 사용하던 “평균 제조업 근로자(APW)” 기준보다 광범위한데 AW가 더 많은 경제 부문을 포괄하며 제조업 및 비제조업 근로자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새로 도입된 AW 지표는 OECD 보고서인 *Taxing Wages*에서 도입되었으며 급여 및 임금(Benefits and Wages)에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 눈에 보는 연금 세 번째 판(OECD, 2009) 역시 결과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8개국에 대해 소득의 신규 지표에 따른 대체율 비교를 포함하고 있다.

### 참고문헌

D’Addio, A.C. and H. Immervoll (2010), “Earnings of Men and Women Working in the Private Sector: Enriched Data for Pensions and Tax-Benefit Modelling”,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No. 108,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km7smt2r7d2-en>.

8.5. 평균 근로자 소득(AW), 2014년  
시장 가격 및 구매력평가지수 환율 기준의 국가별 통화 및 미달러

	OECD 평균 소득지표			미달러 환율	
	국가별 통화	미달러, 시장환율	미달러, 구매력평가지수	시장 환율	구매력평가지수
<b>OECD 회원국</b>					
호주	79,689	65,195	51,746	1.22	1.54
오스트리아	42,573	51,557	50,986	0.83	0.84
벨기에	46,464	56,269	55,447	0.83	0.84
캐나다	49,481	42,689	39,270	1.16	1.26
칠레	7018,884	11,588	18,919	605.69	371.00
체코	312,084	13,637	23,465	22.89	13.30
덴마크	397,484	64,654	52,369	6.15	7.59
에스토니아	12,436	15,060	22,050	0.83	0.56
핀란드	42,910	51,965	45,697	0.83	0.94
프랑스	37,427	45,325	45,148	0.83	0.83
독일	45,952	55,649	58,389	0.83	0.79
그리스	20,168	24,424	32,217	0.83	0.63
헝가리	3,009,284	11,526	22,798	261.10	132.00
아이슬란드	6,856,100	53,779	48,972	127.49	140.00
아일랜드	34,466	41,739	40,982	0.83	0.84
이스라엘	130,605	33,466	32,570	3.90	4.01
이탈리아	30,463	36,891	40,188	0.83	0.76
일본	4,881,994	40,765	46,495	119.76	105.00
한국	39,800,000	36,457	46,441	1,091.70	857.00
룩셈부르크	54,560	66,074	60,623	0.83	0.90
멕시코	101,904	6,912	12,706	14.74	8.02
네덜란드	48,856	59,165	59,219	0.83	0.83
뉴질랜드	54,733	42,718	37,233	1.28	1.47
노르웨이	542,386	72,602	57,395	7.47	9.45
폴란드	42,360	11,978	23,148	3.54	1.83
포르투갈	17,436	21,115	29,653	0.83	0.59
슬로바키아	10,342	12,525	20,561	0.83	0.50
슬로베니아	17,851	21,618	29,555	0.83	0.60
스페인	26,162	31,683	38,701	0.83	0.68
스웨덴	407,974	52,272	45,584	7.80	8.95
스위스	90,522	91,179	66,074	0.99	1.37
터키	28,370	12,164	23,642	2.33	1.20
영국	35,633	55,539	50,329	0.64	0.71
미국	50,075	50,075	50,075	1.00	1.00
<b>OECD 34개국</b>		<b>40,007</b>	<b>40,548</b>		
<b>기타 주요 국가들</b>					
아르헨티나	135,492	16,006		8.47	
브라질	19,312	7,267	11,564	2.66	1.67
중국	56,339	9,077	15,393	6.21	3.66
인도	80,338	1,271	4,539	63.19	17.70
인도네시아	17,200,000	1,385	4,363	12,422	3,942.00
러시아	391,920	6,691	20,519	58.57	19.10
사우디아라비아	183,989	49,020		3.75	
남아공	144,627	12,525	27,084	11.55	5.34

주: AW = 평균 근로자 소득; PPP = 구매력평가지수. 평균소득은 100단위로 반올림했으며 환율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함. 시장 환율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임.

<http://dx.doi.org/10.1787/888933301218>

## 제9장

# 연금제도의 재정

본 장에 나타난 지표를 통해 연금제도의 재정을 살펴본다. 첫 번째 지표는 근로자가 자신의 연금 수급액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의무연금 기여금”에 대한 개요를 제시한다.

두 번째 지표는 “공공지출 중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본다. 이는 국내총생산 중 얼마가 국가의 공적연금에 할당되는지와 정부예산에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전체적인 비중을 보여준다. 세 번째 지표는 사적연금지출에 초점을 맞추고 강제적, 준강제적, 자발적 사적연금제도에 대한 총 급여지출을 살펴본다.

마지막 지표는 연금지출의 장기적인 예측치와 특히 2013-15년부터 2050년까지 연금에 대한 공공지출의 추이를 보여준다.

이스라엘 통계자료는 해당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하였다. OECD가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른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역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주요 결과

민간 부문의 평균소득 근로자에 대한 종업원과 고용주의 의무 사회보험 기여율과 강제적 사적 연금 기여율은 13개 OECD 국가에서 평균 24%이다. 그 외 자료가 적용 가능한 21개 OECD 국가들의 고용주와 종업원의 의무가입 연금제도 기여율은 2014년에 평균 18%였다.

한 눈에 보는 연금에서 제시한 측정지표 대부분은 연금제도의 급여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다루는 지표들은 기여 부분을 살펴보고 2014년에 평균 근로자가 자신의 연금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세금으로 재정이 조달되는 연금 급여는 여기에서 다루지 않는다.

한 국가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연금 제도들은 다른 소득원들을 통해서 재정이 조달되므로 연금의 기여 영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는 어려울 수 있다. 본 절의 목적은 자료가 입수 가능한 경우 여기에 모형화된 연금제도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여기에 포함된 기여는 연금모형을 반영한 연금기여만을 말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종업원과 고용주가 납부한 총 기여금이나 임금비용에 적용되는 총 사회보험이나 세금과는 다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발간물 OECD Taxing Wages를 참고하기 바란다.

위쪽 표는 연금에 대한 기여가 공적제도와 사적제도에서 강제적인 19개국에 관한 내용이다. 이 집단에 속한 국가들은 납입 기여율이 연금체계에서 더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연금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집단의 평균 기여율은 2014년에 18%였다. 가장 높은 총 기여율은 이탈리아에서 기록된 33%였다.

아래쪽 표는 민간부문 근로자에 적용되는 의무 사적연금 및 의무 사회보험 기여율을 살펴본다. 이 집단에 속한 국가들에서 종업원과 고용주가 납부하는 연금 급여에 대한 연금기여금을 유족 급여, 장애급여, 실업 등 사회보험의 다른 부분과 분리하기가 어렵다. 또한 개인들은 자신이 속하게 될 제도를 선택할 수 없고 그러므로 모든 부분에 완전히 기여해야 한다. 이 집단의 국가들의 평균 기여율은 2014년에 평균 근로자(AW)에 대해 24%였다. 가장 높은 의무 사적연금 및 사회보험 기여율은 헝가리의 47%였고, 가장 낮은 기여율은 미국의 12%였다.

연금 기여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대개 평균보다 높은 연금 급여를 제공하거나(아이슬란드와 네덜란드 등) 프랑스나 이탈리아처럼 낮아진 은퇴연령을 통해 은퇴 후 기간이 길어진다. 의무 연금의 기여율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인 고용률은 낮아지고 비공식 부문이 증가할 수 있다.

뉴질랜드는 6%로 가장 낮은 의무 기여율을 보였다. 의무 기여 수준이 낮은 다른 국가들로는 호주, 캐나다, 한국이 있고 각각 9.5%, 9.9%, 9%의 총 의무 기여율을 기록했다.

### 참고문헌

OECD (2015), Taxing Wages 201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tax\\_wages-2015-en](http://dx.doi.org/10.1787/tax_wages-2015-en)



## 9.1. 2014년 평균근로자에 대한 의무연금 기여율

	공적		사적		총
	종업원	고용주	종업원	고용주	
호주		9,5			9,5
벨기에	7,5	8,86			16,4
캐나다	4,95	4,95			9,9
칠레			11,2	1,15	12,3
덴마크	0,54	0,82		12	13,4
핀란드	7,05	17,75			24,8
프랑스	6,8	8,45	3,0	3,0	21,25
독일	9,5	9,5			18,9
아이슬란드		7,79	4	8	19,8
이스라엘	3,75	3,75	5,5	12,0	25,0
이탈리아	9,19	23,81			33,0
일본	8,737	8,737			17,5
한국	4,5	4,5			9,0
룩셈부르크	8,0	8,0			16,0
멕시코			1,125	5,15	6,275
네덜란드	4,9		16		20,9
뉴질랜드			3	3	6
폴란드	9,76	9,76			19,5
스웨덴	7,0	11,4		4,5	22,9
스위스	4,2	4,2	7,7	10,4	26,6
터키	9,0	11,0			20,0

주: 어떤 경우에는 수입(revenues)이 여러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기여율과 동일한 비율로 배분된다는 가정하에 연금 기여금 수입(revenues)을 산정. 총 기여는 고용상태가 아닌 사람들(주로 자영업)의 납부액을 포함. 덴마크에서 보충연금(ATP) 기여금은 평균임금(AW)인 397,484 크로네(DKK)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표현됨.

출처: OECD (various years), TaxingWages; OECD (2013), Revenue Statistic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United States (various years),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World; OECD pension and tax models.

<http://dx.doi.org/10.1787/888933301228>

## 9.2. 2014년 평균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기여율 및 의무 사적연금 기여율

	공적		사적		총
	종업원	고용주	종업원	고용주	
오스트리아	10,25	12,55			22,8
체코	6,5	21,5			28,0
에스토니아		16,0	2,0	4,0	20,0
그리스	6,67	13,3			20,0
헝가리	18,5	28,5			47,0
아일랜드	4	10,75			14,75
노르웨이	8,2	14,1			22,3
포르투갈	6,4	13,8			20,2
슬로바키아	7,0	20,0			27,0
슬로베니아	15,5	8,85			24,4
스페인	4,7	23,6			28,3
영국	9,05	11,9			20,95
미국	6,2	6,2			12,4

주: 어떤 경우에는 수입(revenues)이 여러 사회보장프로그램에 기여율과 동일한 비율로 배분된다는 가정하에 연금 기여금 수입(revenues)을 산정. 총 기여는 고용상태가 아닌 사람들(주로 자영업)의 납부액을 포함.

출처: OECD (various years), TaxingWages; OECD (2013), Revenue Statistic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United States (various years),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World; OECD pension and tax models.

<http://dx.doi.org/10.1787/888933301233>

### 주요 결과

OECD 국가에서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에 대한 공공지출은 1990년에서 2011년 사이에 GDP의 6.2%에서 7.9%로, 국내생산 증가율보다 28% 빨리 증가했다. 공적연금은 대개 사회지출의 가장 큰 단일 항목으로 평균적으로 총 정부지출의 18%를 차지한다.

2011년 기준 이탈리아가 OECD 국가 중 국민소득 대비 연금지출이 가장 높았으며 GDP의 15.8%를 기록했다. 총 공적연금지출 비율이 높은 국가들은 그 외에도 유럽 대륙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오스트리아, 프랑스, 그리스, 포르투갈이 GDP의 약 13%에서 14%, 독일, 폴란드, 슬로베니아가 약 11%를 차지했다. 공적연금은 일반적으로 이들 국가에서 총 공공지출의 23%에서 30%를 차지했다.

아이슬란드와 멕시코는 GDP의 각각 2.1%와 1.8%를 공적연금에 지출했다. 한국도 GDP의 2.2%만을 사용했다. 아이슬란드와 멕시코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젊다. 한국의 연금제도는 아직 성숙되지 않았는데 소득비례제도가 1988년에야 구축되었고 새로운 선별적 기초연금은 2014년에 도입되었다. 멕시코에서 지출이 낮은 것은 상대적으로 연금 가입률이 낮기(중업원의 약 35%) 때문이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연금의 상당부분이 강제적 기업퇴직연금에 의해 제공된다(다음 지표인 “연금 급여지출: 공적 및 사적 제도” 참조). 그래서 노후소득 제공에 있어 공적 부분의 역할이 작다. 또한 은퇴연령이 67세로 높다.

지출은 또한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 인구학적으로 유리한 상황의 국가에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예외적인 국가가 있는데 터키는 OECD 국가 중 인구학적 측면에서 두 번째로 젊은 국가이지만 GDP의 7.5%를 공적연금에 지출한다. 이는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미국보다 높은 수준인데 이들 국가에서는 터키에 비해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높다.

#### 추세

1990-2011년 기간 동안 6개국, 즉 캐나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 비율이 상당히 안정적이었다.

또 다른 2개국 즉, 네덜란드와 뉴질랜드에서

공적연금지출이 국민소득보다 눈에 띄게 느리게 증가했다. 네덜란드에서 이러한 변화는 선별적 공적연금(targeted public pension)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기업퇴직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뉴질랜드에서는 약 30%가 감소했는데 이는 1992-94년 기초연금 가치 동결과 연금 수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할 정책의 결과이다. 대개 공적연금지출의 삭감은 사적 및 기업퇴직연금지출의 증가와 함께 나타난다.

6개의 OECD 국가에서는 공적연금지출의 변화(1990-2011)가 국민소득 대비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난다. 한국, 멕시코, (정도는 덜하지만) 터키에서는 공적연금 도입이 1990년대 전후로 늦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폴란드와 포르투갈은 OECD 평균을 밑돌다가 평균을 훨씬 초과하게 되었다. 일본의 변화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것이다.

#### 총 지출과 순 지출

표의 끝에서 두 번째 칼럼은 순 기준(급여에 대한 세금과 기여금 제외)의 공적지출을 보여주고 있다. 순 지출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북유럽 국가들에서 총 지출보다 훨씬 낮은데 이는 연금 급여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 때문이다. 슬로바키아와 같이 연금이 과세대상이 아닌 국가 혹은 공적 급여가 세제 혜택을 포함하는 국가(호주, 체코, 아일랜드, 영국)에서는 총 지출과 순 지출이 비슷하다.

#### 비현금성 급여

표의 마지막 칼럼은 비현금성 급여를 포함해 노인에 대한 총 공적지출의 합계를 보여준다. 3개국에서는 급여가 GDP의 2%를 초과한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 주택급여가 가장 중요하다. 이 급여는 “비현금성 급여”로 정의되는데 개인별로 특정 지출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이다. 호주, 핀란드, 일본, 네덜란드도 비현금성 급여에 대해 높은 지출을 기록한다.

## 9.3. 노령 및 유족급여에 대한 공적지출

	노령 및 유족 현금성 급여에 대한 공적지출									비현금성 포함 합계 (GPD 대비 비율)
	수준(GPD 대비 비율)					증감(%)	수준 (총 정부지출 대비 비율)		순 기준 수준 (GPD 대비 비율)	
	1990	1995	2000	2005	2011		1990-2011	1990		
호주	3.1	3.6	3.8	3.3	3.5	14.0	8.5	9.7	3.4	5.2
오스트리아	11.4	12.3	12.2	12.4	13.2	16.3	22.1	26.1	11.5	13.9
벨기에	9.1	9.3	8.9	9.0	10.2	11.7	17.4	19.0	9.0	10.4
캐나다	4.2	4.6	4.2	4.0	4.3	2.7	8.7	10.5	4.1	4.3
칠레		6.7	7.3	3.7	3.2				3.2	3.3
체코	5.8	6.1	7.2	7.0	8.9	53.8		20.5	8.9	9.1
덴마크	5.1	6.2	5.3	5.4	6.2	21.4	9.2	10.8	4.6	8.5
에스토니아			6.0	5.3	6.9			18.3	6.8	7.0
핀란드	7.3	8.8	7.6	8.4	10.3	41.0	15.1	18.7	8.5	11.4
프랑스	10.6	12.0	11.8	12.4	13.8	29.5	21.4	24.6	12.7	14.2
독일	9.5	10.5	11.2	11.5	10.6	11.6		23.4	10.2	10.6
그리스	9.9	9.7	10.8	11.8	14.5	46.3		28.0	14.5	14.7
헝가리			7.6	8.5	10.0			19.9	10.0	10.5
아이슬란드	2.2	2.4	2.2	2.0	2.1	-3.9		4.5	1.8	2.6
아일랜드	4.8	4.3	3.1	3.4	5.3	8.5	11.5	11.2	5.0	5.8
이스라엘		4.5	4.7	4.9	4.8			11.4	4.7	4.9
이탈리아	11.7	13.2	13.7	14.0	15.8	35.3	22.2	31.9	13.8	16.0
일본	4.8	6.1	7.3	8.5	10.2	112.1		24.4	9.7	11.9
한국	0.7	1.2	1.4	1.5	2.2	205.7	3.7	7.4	2.2	2.4
룩셈부르크	8.2	8.8	7.5	7.2	7.7	-5.3	21.6	18.1	7.0	7.7
멕시코	0.4	0.7	0.8	1.2	1.8	308.5		7.9	1.8	1.8
네덜란드	6.7	5.8	5.0	5.0	5.5	-18.8	12.2	10.9	5.0	6.4
뉴질랜드	7.3	5.6	4.9	4.2	4.9	-33.6	14.0	11.1	4.2	4.9
노르웨이	5.6	5.5	4.8	4.8	5.4	-3.7		12.4	4.4	7.4
폴란드	5.1	9.4	10.5	11.4	10.8	110.3		24.9	9.8	10.9
포르투갈	4.9	7.2	7.9	10.3	13.0	166.7		26.4	12.2	13.1
슬로바키아		6.3	6.3	6.2	7.0			17.9	7.0	7.3
슬로베니아			10.5	9.9	11.4			22.8	11.4	11.6
스페인	7.9	9.0	8.6	8.1	10.5	32.4		22.9	10.1	11.2
스웨덴	7.6	8.2	7.2	7.6	7.4	-2.6		14.3	5.7	9.8
스위스	5.5	6.5	6.5	6.6	6.6	19.3	18.5	19.5	6.6	6.9
터키	2.4	2.7	4.9	5.9	7.5	219.4		20.2	7.5	7.6
영국	4.8	5.3	5.3	5.5	5.6	17.0	11.6	11.7	5.4	6.1
미국	5.8	6.0	5.6	5.7	6.7	15.3	15.8	16.1	6.3	6.7
OECD	6.2	6.7	6.8	7.0	7.9	27.8		17.5	7.3	8.4

주: 자료, 출처, 방법론에 관해 좀 더 상세한 사항은 Adema, W. and M. Ladaique (2009), "How Expensive is the Welfare State? Gross and Net Indicators in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92,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220615515052> 참조.

출처: OECD Social Expenditures Database (SOCX), [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http://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OECD Main Economic Indicators Database, <http://stats.oecd.org/mei/>.

<http://dx.doi.org/10.1787/888933301240>

### 주요 결과

사적연금제도로부터의 연금액은 자료가 나와 있는 26개 OECD 국가에서 2011년 평균 GDP의 1.6%였다. 이는 연금 급여에 대한 평균 공적지출의 1/5에 해당한다. 사적연금 지급액은 평균적으로 1990년에서 2011년 사이 GDP보다 38% 빠르게 증가했는데 이는 연금에 대한 공공지출보다 빠르다.

사적연금은 34개 OECD 회원국 중 절반 미만의 국가에서 의무이거나 노사관계 협약을 통해 거의 보편적인 가입률(“준 강제적”)을 달성했다. 다른 국가에서는 자발적 사적연금 - 개인연금 또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기업연금(퇴직연금) - 의 가입률이 높다.

사적연금액의 흐름이 가장 큰 곳은 네덜란드다. 2011년에 GDP의 5.8%였다. 공적지출에 추가된 총 급여액은 GDP의 11.2%이다. 스위스는 사적연금 급여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많이 지출하는 국가로 GDP의 5.0%를 차지한다. 스위스의 기업 퇴직연금제도(occupational plan)는 강제적 제도인데, 단 사적연금 급여 자료에는 법정 최저 수준을 초과하는 급여가 포함된다.

다음으로 사적연금액 흐름이 높은 5개국은 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영국, 미국인데 GDP의 3.3%에서 4.7%를 사적연금 지급에 사용한다. 덴마크와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 이들 세 국가에서 사적연금은 자발적 제도이지만,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률은 높다. 일본(사적연금이 자발적 제도임)은 사적연금에 대한 지출이 높아서 GDP의 2.7%이다. 아이슬란드는 총 연금지출에서 사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64%로 가장 높다.

호주, 에스토니아,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등 많은 국가가 1990년대에 강제적 사적 연금을 도입했다. 어떤 경우에는 - 특히 중부와 동부 유럽 - 주로 젊은 근로자들이 이러한 제도에 가입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아직 연금 수급을 시작하지 않았다. 호주와 스웨덴에서 기록된 지급액의 상당수는 사적연금이 강제적 제도가 되기 전에 이미 마련되어 있던 (각각) 사적, 준강제적 제도와 관련되어 있다. 이 모든 경우에, 모든 퇴직자들이 강제적 사적연금제도 상 완전경력률 채우려면 수십 년이 지나야 한다.

### 추세

사적연금 지급액이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들은 비교 기준을 비교적 낮은 GDP의 0.5% 미만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스위스와 같은 예외도 있다. 스위스에서 퇴직 연금은 1985년에 강제화되었는데 이로 인해 가입률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이후 세대의 퇴직자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사적연금의 적용을 받는 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사적연금 수급액이 빠르게 늘어났다.

### 세제 혜택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사적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저축에 대해 유리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개인의 기여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세의 의무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공제되는 경우가 많고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도 전부 혹은 일부가 면세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국가는 연금 지급액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준다(제6장 “연금 및 연금 수급자에 대한 과세” 지표 참조).

많은 OECD 회원국에서 이러한 재정적 인센티브의 비용은 1960년대에 개발된 “세금지출” 개념으로 측정된다. 기준세제 대비 세제혜택의 가치를 계량화하려는 노력이다. 이것은 정부가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보조금(직접 지출)으로 제공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퇴직저축에 대한 세금지출 자료는 21개 OECD 회원국에 대해 나와 있다. 이들 국가 중 절반 이상이 GDP의 0.2% 미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4개국, 즉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만이 GDP의 1% 이상의 세금지출을 보고하고 있다.

세금지출을 볼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선택된 기준세제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간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명칭은 세금지출이지만

직접지출과는 다르므로 공적 세금지출에 이 수치를 부가해서는 안 된다.

Database (SOCX)",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No. 92,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220615515052>.

OECD (2010), *Tax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76907-en>.

**참고문헌**

Adema, W. and M. Ladaique (2009), "How Expensive is the Welfare State? Gross and Net Indicators in the OECD Social Expenditure

**9.4. 연금 급여액 지출: 공적제도와 사적제도**

제도유형	사적연금 제도의 급여지출						증감율(%)	공적 및 사적급여 지출(GDP 대비 비율)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GDP 대비 비율)		
	수준(GDP 대비 비율)					1990-2011				2011	2011
	1990	1995	2000	2005	2011						
호주	v		1.8	2.9	1.9	2.1		5.6	1.9		
오스트리아	v	0.4	0.4	0.5	0.5	0.7	56.6	13.9	0.0		
벨기에	v	1.0	1.7	1.4	1.5	1.2	15.7	11.4	0.2		
캐나다	v	2.5	3.4	3.9	4.2	3.3	29.3	7.6	1.5		
칠레	m		0.9	1.1	1.2	1.4		4.6			
체코	m	a	a	0.2	0.2	0.5		9.4	0.0		
	v	a	0.0	0.0	0.0	0.1					
덴마크	q/m	1.5	1.8	2.0	2.3	4.7	202.2	10.9			
에스토니아								6.9			
핀란드	v	0.1	0.4	0.3	0.2	0.3	173.6	10.5	0.1		
프랑스	m	0.2	0.1	0.2	0.2	0.2	-18.7	14.1	0.0		
	v	0.1	0.1	0.1	0.1	0.2	233.0				
독일	v	0.7	0.7	0.8	0.8	0.8	18.1	11.4	0.9		
그리스	v	0.4	0.4	0.5	0.5	0.4	0.5	14.9			
헝가리								10.0			
아이슬란드	v	1.4	1.8	2.3	2.8	3.7	167.1	5.9	0.0		
아일랜드	v	0.9	1.0	0.8	0.9	0.8	-4.3	6.1	1.1		
이스라엘								4.8			
이탈리아	m	a	a	a	a	a	a	16.2	0.0		
	v	0.1	0.3	0.3	0.3	0.4	159.0				
일본	m	0.2	0.3	0.5	0.4	0.6		13.0	0.0		
	v	a	a	2.9	2.2	2.7					
한국	v	m	0.0	0.0	0.0	0.1		2.3			
룩셈부르크	v	a	a	a	0.6	0.6		8.3	0.0		
멕시코								1.8	0.3		
네덜란드	m	a	0.0	0.0	0.0	0.0		11.2			
	q	3.9	4.7	4.8	5.2	5.8	48.5				
뉴질랜드								4.9			
노르웨이	v	0.6	0.6	0.6	0.6	0.6	15.9	6.1	0.5		
폴란드								10.8	0.0		
포르투갈	v	0.3	0.3	0.4	0.6	0.6	95.0	13.6	0.1		
슬로바키아	v	a	0.1	0.2	0.4	0.3		7.3	0.1		
슬로베니아								11.4			
스페인								10.5	0.2		

9.4. 연금 급여액 지출: 공적제도와 사적제도 (계속)

	제도유형	사적연금 제도의 급여지출					증감율(%)	공적 및 사적급여 지출(GDP 대비 비율)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GDP 대비 비율)
		수준(GDP 대비 비율)							
		1990	1995	2000	2005	2011			
스웨덴	q/m	1.2	1.9	1.8	2.1	2.6	112.5	9.9	
스위스	m	2.3	3.3	4.2	4.7	5.0	113.3	11.5	
	v	0.0	0.0	0.0	0.0	0.0			
터키								7.5	
영국	v/m	4.2	5.1	6.0	4.7	4.6	7.4	10.2	1.5
미국	v	2.6	3.0	3.6	3.6	4.5	72.5	11.2	0.8
<b>OECD</b>		<b>1.2</b>	<b>1.3</b>	<b>1.5</b>	<b>1.4</b>	<b>1.6</b>	<b>37.9</b>	<b>9.3</b>	<b>0.4</b>

주: a = 범례, M = 강제적 사적제도, q = 준강제적, v = 자발적

Source: OECD Social Expenditures Database (SOCX), [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http://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OECD Main Economic Indicators Database, <http://stats.oecd.org/mei/>.

자료, 출처, 방법론에 관한 세부사항은 Adema and Ladaique (2009) 참조.

<http://dx.doi.org/10.1787/888933301250>

### 주요 결과

연금에 대한 공적지출은 앞서 두 지표에서 보여주듯이 지난 수십 년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증가해왔다. 장기적 전망을 보면 연금지출이 자료가 나와 있는 회원국 중 20개국에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13개국에서 감소할 것이다. 평균적으로 연금지출은 2010-15년에 GDP의 약 9.0%에서 2050년에 GDP의 10.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지출 증가의 주요 이유는 인구학적 변화이다. 다음 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전망치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2015 *고령화 보고서* - 28개 EU 회원국과 노르웨이를 대상으로 작성 - 또는 국가별 추계 결과 혹은 Standard and Poor's의 *세계 고령화 2013 보고서*로부터 발췌한 것이다. 자료는 주로 수치가 입수 가능한 국가들에 대한 2060년까지의 전망이다. 그러나 10개의 OECD 국가와 기타 주요 국가들에 대한 추정 범위가 2050년이므로 표에서 2050년까지에 대한 비교가 주로 이루어진다. 호주의 경우 최종 전망치가 2055년까지 제공된다.

장기추계는 연금정책을 기획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연금이 개혁되는 시기와 시행된 개혁이 공적연금지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시기 간에 대개 시간적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국가별 연금제도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반영하여 추계에서 다루는 프로그램들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자료에서 공무원 연금제도를 포함하지 않는 국가가 많은 반면 일부는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추계에서는 연금 수급자를 위한 자산조사급여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자료의 적용범위는 OECD 사회지출 데이터 베이스(SOCX)와도 차이가 있는데, 앞의 두 지표에서 과거 지출추이 자료는 바로 이 SOCX에서 발췌하였다. 2010-15년 수치는 SOCX 데이터 베이스와 여기서 사용된 출처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대상 급여의 범위와 사용된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치를 보면 전반적인 추세를 알 수 있다. 연금지출은 OECD 평균 현재 GDP의 9%에서 2050년에 1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28개국에서 전체 기간 동안 GDP의 약 11-12%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기간 동안의 인구학적 변화를 고려하면 이는 상당한 성과이다. 제7장의 “노인부양비” 지표는 현재부터 2050년까지 20-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수를 나타내는 노인부양비가 80%까지 상승할 것임을 보여준다. 연동 감소, 재평가, 급여산식, 연금 수급개시연령 연장을 통한 미래 퇴직자에 대한 급여 삭감은 연금에 대한 공적지출의 성장세를 축소시킬 것이다.

연금에 대한 공적지출은 2050년까지 22개 OECD 국가에서 증가할 전망이다. 2개국, 즉 터키와 한국에서 연금에 대한 공적지출은 2050년까지 GDP의 10%p 이상 늘어남으로써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 증가는 연금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비교 기준점이 낮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급격한 증가는 고령화 과정과 연금제도의 상대적 미성숙 상태를 반영한다. 벨기에의 공공지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현재 OECD 평균을 넘는 GDP의 12%에서 2050년에는 GDP의 15%로 증가할 전망이다. 슬로베니아에서는 공적지출이 2010-15년에 GDP의 12%에서 2050년에 GDP의 16%로 증가할 전망이다.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모든 주요 국가들에서 연금에 대한 장기 공적지출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브라질에서는 공적지출이 현재 GDP의 9%에서 2050년에 GDP의 17%로 증가할 것이다.

### 참고문헌

- European Commission (2015), The 2015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28 EU Member States (2013-2060),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 Standard and Poor's (2013), Global Aging 2013: Rising To The Challenge.

## 9.5. 연금에 대한 공적지출 전망, 2013-60년

	201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b>OECD 회원국</b>										
호주	2.9		2.5		2.5		2.6		2.7	
오스트리아	13.9	13.9	14.1	14.4	14.7	14.7	14.7	14.6	14.6	14.4
벨기에	11.8	12.7	13.8	14.7	15.2	15.2	15.1	15.0	15.1	15.1
캐나다	4.9							6.3		
칠레	5.5							3.8		
체코	9.0	9.0	9.1	9.0	8.8	9.0	9.3	9.6	9.8	9.7
덴마크	10.3	8.7	8.4	8.3	8.2	8.0	7.7	7.5	7.3	7.2
에스토니아	7.6	7.6	7.3	7.1	7.0	6.9	6.8	6.7	6.6	6.3
핀란드	12.9	14.2	14.9	15.0	14.4	13.6	13.0	12.8	12.8	12.9
프랑스	14.9	14.6	14.9	14.7	14.2	13.8	13.3	12.8	12.3	12.1
독일	10.0	10.3	10.9	11.6	12.1	12.2	12.3	12.5	12.6	12.7
그리스	16.2	15.5	15.0	14.4	14.1	14.1	14.1	14.4	14.2	14.3
헝가리	11.5	9.8	9.3	8.9	9.1	9.6	10.4	10.7	11.0	11.4
아이슬란드	3.3							3.5		
아일랜드	7.4	8.0	8.7	9.1	9.6	10.0	10.2	10.0	9.3	8.4
이스라엘										
이탈리아	15.7	15.3	15.5	15.7	15.8	15.8	15.5	14.8	14.2	13.8
일본	11.2	10.5	9.9							
한국	1.7							12.5		
룩셈부르크	9.4	10.6	11.2	11.9	12.4	12.7	12.7	12.5	12.4	13.4
멕시코	1.5							1.3		
네덜란드	6.9	7.1	7.4	7.7	8.1	8.3	8.3	8.1	7.9	7.8
뉴질랜드	5.5							7.3		
노르웨이	9.9	10.7	11.1	11.3	11.4	11.4	11.4	11.6	11.9	12.4
폴란드	11.3	10.6	10.5	10.4	10.1	10.0	10.1	10.4	10.7	10.7
포르투갈	13.8	14.6	14.9	15.0	15.0	14.8	14.6	14.4	13.8	13.1
슬로바키아	8.1	8.0	7.9	7.6	7.7	8.1	8.6	9.1	9.7	10.2
슬로베니아	11.8	11.1	11.4	12.3	13.3	14.3	15.1	15.6	15.6	15.3
스페인	11.8	11.8	11.4	11.2	11.5	11.9	12.5	12.3	11.4	11.0
스웨덴	8.9	8.3	8.1	7.9	7.8	7.5	7.3	7.2	7.4	7.5
스위스	9.6							10.7		
터키	6.3							17.0		
영국	7.7	7.4	7.8	7.9	8.2	8.4	8.1	8.1	8.3	8.4
미국	4.9							6.1		
<b>OECD 34개국</b>	<b>9.0</b>							<b>10.1</b>		<b>11.3</b>
<b>기타 주요 국가들</b>										
아르헨티나	7.4							11.9		
브라질	9.1							16.8		
중국	3.4							9.2		
인도	1.0							0.7		
인도네시아	0.7							1.6		
러시아	8.1							14.9		
사우디아라비아	2.2							8.1		
남아공	1.9							3.5		
EU 28개국	11.3	11.2	11.4	11.6	11.7	11.7	11.6	11.4	11.3	11.2

주: OECD28은 2010-15년부터 2050년까지 완전한 자료가 나와 있는 OECD 국가들을 의미함. EU28은 회원국들의 단순 평균(EU 집행위원회에서 발간한 가중평균 아님)임. 공무원 및 기타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연금제도는 대개 EU 회원국들의 경우는 산정값에 포함됨. European Commission, The 2015 Ageing Report 참조.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15), *The 2015 Ageing Report*; Australia: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5), *2015 Intergenerational Report: Australia in 2055*; Working Group on Public Pensions, Social Security Council (201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Japan; Standard and Poor's (2013), *Global Aging 2013: Rising To The Challenge: Argentina, Brazil, Canada, China, Iceland, India, Indonesia, Korea, Mexico, Saudi Arabia and the United States*.

<http://dx.doi.org/10.1787/888933301263>



## 제10장

# 사적연금과 공적연금 적립금

사적연금과 공적연금 적립금의 지표 범위는 ‘한 눈에 보는 연금 2013’ (제5판)의 형식을 따른다.

이 7개 지표 중 첫 번째 지표는 사적연금에 가입된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다. 여기에서는 강제적, 준강제적, 자발적 제도를 구분하고 퇴직연금제도를 직장별 제도와 업계 차원의 제도로 구분하며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개인연금으로 나눈다.

그리고 사적연금의 제도적 구조를 그 다음에 살펴본다. 이는 연금을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상품의 유형을 보여주는데 연기금, 장부상 적립금(book reserves), 보험 계약을 구분한다. 이 지표는 또한 연금의 유형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DC), 혼합 또는 하이브리드형으로 나눠서 살펴본다.

세 번째 지표는 2013년의 사적연금자산과 공적연금자산을 보여준다. 이들 자산이 투자된 방식은 네 번째 지표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나서 2012년과 2013년의 사적연금 및 공적연금 적립금의 투자성과에 대한 분석이 나온다.

여섯 번째 지표는 사적연금제도의 운영비, 그리고 선정된 확정기여형제도에서 연금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살펴본다.

마지막 지표는 확정급여형(DB) 적립 비율에 초점을 맞추는데 2012년과 2013년 비율이 제시된다.

이스라엘 통계자료는 해당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하였다. OECD가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른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역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주요 결과

연금개혁으로 인해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이 줄어들면서 최근 수년간 사적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13년 기준 17개 OECD 국가에서 사적연금은 강제적 또는 준강제적 제도이다(즉,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들의 준보편적 가입을 달성). 8개의 OECD 국가에서는 자발적 사적연금(퇴직 및 개인)에 생산가능인구의 40% 이상이 가입해 있다.

2013년에 34개 OECD 회원국 중 17개국이 강제적 또는 준강제적 사적연금제도를 두어 생산가능인구의 높은 가입률을 달성하고 있다.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에서는 퇴직 연금이 강제적이며 생산가능인구의 거의 70% 또는 그 이상이 이에 가입해 있다. 고용주는 제도를 반드시 운영해야 하며 기여율은 정부에서 정한다. 아이슬란드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입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생산가능인구의 87.9%에 달한다. 다른 퇴직연금제도는 준강제적 연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고용주는 업체차원 또는 국가차원의 단체협약을 통해서 종업원들이 가입해야 하는 제도를 만든다. 모든 업종에서 이러한 협약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제도는 강제적 제도로 분류되지 않는다.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의 퇴직연금제도가 좋은 예이다. 이들 국가에서의 가입률이 의무제도를 가진 국가의 가입률에 가까우며 대상이 되는 생산가능인구의 60% 이상이 가입해 있다.

남미와 중부 및 동부 유럽에서는 강제적 개인 계정제도가 널리 이용되며 부분적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대체해왔다. 이러한 제도는 칠레, 에스토니아, 멕시코, 슬로바키아, 그리고 연금의 개인계정에 대한 기여가 2014년에 자발적이 된 폴란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 외에 이러한 강제적 개인연금제도를 갖춘 OECD 국가로는 덴마크, 이스라엘, 스웨덴이 있다. 덴마크와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스웨덴에서는 거의 보편적 가입에 가까운 반면 다른 국가들은 그렇지 않아서 고령 근로자들은 새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현재

40-60% 정도의 가입률은 새로운 근로자들이 개인 연금에 가입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국가 중 일부는 비공식 고용의 빈도가 높아 가입률 수준을 제한하는 요소가 된다.

자발적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률은 국가마다 다르다. 이들 제도가 자발적 제도라고 불리는 것은 고용주들이, 일부 국가에서는 종업원들과 공동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자유롭게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연금제도는 개인이 가입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을 경우 자발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자발적 연금제도의 가입률(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이 벨기에, 체코, 독일, 아이슬란드, 뉴질랜드에서는 50% 이상이며, 미국에서는 50%에 근접한다. 한편 그리스와 포르투갈과 같은 국가에서는 자발적 연금제도의 가입률이 매우 낮다(5% 미만). 이들 국가의 경우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이 높기 때문에 사적연금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자발적 연금의 가입률은 강제적 사적연금제도를 갖추고 있는 멕시코(1.7%)에서도 낮다.

3개국, 즉 이탈리아, 뉴질랜드, 영국은 자동가입 사적연금(탈퇴 조항 포함)을 국가차원에서 도입했다. 결과는 국가마다 다르다. 뉴질랜드는 “키위세이버(KiwiSaver, 2007년 도입)”제도에 대해 73%의 가입률을 달성했다. 이탈리아에서는 2007년 이래 민간부문 근로자의 퇴직금(TFR: *Trattamento di Fine Rapporto*)은 본인이 TFR 제도에 남겠다고 명확하게 선택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퇴직연금제도로 납부된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에서 생산가능인구 중 자발적 연금제도에 대한 가입률은 16%에 불과하다. 영국의 경우 보여진 자료는

여전히 개혁 이전의 상황을 반영하지만 퇴직연금 제도의 근로자 가입률에 대한 2013년 잠정치는 2006년 이래 최초의 증가를 보여준다. 자동가입은 또한 캐나다와 미국에서 규정에 의해 권장된다.

### 정의와 측정

사적연금 가입률에 대한 몇 가지 측정지표들이 공존한다. 개인이 사적연금제도에 자산을 갖고 있거나, 사적연금에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기여금이 납부되고 있는 경우 사적연금제도에 가입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제안된 관점에서 사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되려면 개인은 제도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적립된 급여액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실업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기여금이 1년간 납부되지 않고 있는 개인의 경우라도 연금에 자산이 있거나 적립된 급여액을 가지고 있다면 제도의 가입자로 간주된다. 두 가지 가입률 측정지표 간에 차이가 큰 경우는 비공식 부문의 규모가 큰 국가에서 발생한다.

동일인이 퇴직연금에도 가입해 있으면서 동시에 자발적 개인연금에도 가입할 수 있으므로 행정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가입자 수를 중복해서 계산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총 자발적 연금제도 가입률은 퇴직연금 자료와 개인연금 자료를 합해서 계산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생산가능인구의 41.6%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해 있으며 22.0%는 개인연금을 갖고 있는데 전체적인 자발적 연금 가입률은 47.1%이다. 이는 퇴직연금가입자의 40%가 개인연금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10.1. 제도의 유형별 사적연금제도의 가입률, 2013년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 비율

	강제적/준강제적	자발적		합계
		퇴직연금	개인연금	
호주	68.5	×	19.9	19.9
오스트리아	×	15.1	18.0	..
벨기에	×	57.3	..	..
캐나다	×	25.7	24.7	..
칠레	78.9	..	..	..
체코	×	×	66.2	66.2
덴마크	ATP:83.3 QMO:62.3	×	22.4	22.4
에스토니아	74.3	×	5.1	5.1
핀란드	84.1	9.2	20.9	29.1
프랑스	×	20.2	5.3	..
독일	×	56.4	35.2	71.3
그리스	×	0.2	..	..
헝가리	×	..	18.5	..
아이슬란드	87.9	×	52.2	52.2
아일랜드	×	31.0	12.0	41.3
이스라엘	94.2	×	×	×
이탈리아	×	7.4	8.9	15.7
일본	..	..	..	..
한국	13.9	×	23.4	23.4
룩셈부르크	×	5.2	..	..
멕시코	57.8	1.7	×	1.7
네덜란드	88.0	×	28.3	28.3
뉴질랜드	×	7.2	72.9	..
노르웨이	68.6	..	22.3	..

## 10.1. 제도의 유형별 사적연금제도의 가입률, 2013년 (계속)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 비율

	강제적/준강제적	자발적		합계
		퇴직연금	개인연금	
폴란드	60,3	1,4	..	..
포르투갈	×	3,2	4,0	..
슬로바키아	55,3	×	..	..
슬로베니아	×	..	..	36,3
스페인	×	3,3	15,7	18,6
스웨덴	PPS:~100 QMO:~90	×	36,0	36,0
스위스	72,6	×	..	..
터키	1,4	0,5	6,9	..
영국	×	30,0	11,1	43,3
미국	×	41,6	22,0	47,1

주: QMO = 준강제적 퇴직연금, PPS = 프리미엄 연금제도, ... = 자료 없음, X = 해당 없음.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의 가입률은 전체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에 대한 것이며 독일은 사회보험 기여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의 가입률이며 아일랜드와 스웨덴은 전체 고용에 대한 가입률임.

출처: Estimates from OECD Global Pension Statistics and OECD calculations using survey data.

<http://dx.doi.org/10.1787/888933301275>

### 주요 결과

사적연금제도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재정을 확보한다. 2013년에 자료가 나와 있는 OECD 국가에서는 평균적으로 사적연금자산의 75%를 연기금이 보유하고 있으며, 20%는 생명보험사와 연금보험사들이 운영하는 연금보험계약이 보유하고 있으며, 4%는 은행 또는 투자운용사가 제공하는 은퇴상품이 보유하고 있으며, 1%는 장부상 적립금(book reserves)이었다.

연기금 내에서는, 일부 국가에서 확정급여형(DB)제도가 여전히 연기금자산의 지배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확정기여형(DC)제도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확정급여형(DB)제도의 비중이 여전히 큰 이유는 많은 국가에서 퇴직(직장)연금에 대해 확정급여형(DB)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압도적으로 연기금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고 있지만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한국, 노르웨이, 스웨덴 등 연금보험계약의 역할이 더 큰 국가들이나, 장부상 적립금 - 고용주의 대차대조표를 뒷받침(sponsor)하는 적립금 - 이 퇴직연금제도의 주된 재정확보 수단이 되는 국가인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제외된다. 개인연금제도는 연금보험계약이나 은행과 자산운용사들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일반적인 추세의 주된 예외는 칠레, 에스토니아, 멕시코, 슬로바키아 등의 국가에 구축되어 있는 강제적 개인연금제도이다. 이들 제도는 자산 누적 단계(은퇴 전)에 연기금을 통해서만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 은퇴 시 누적된 자산은 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고(또는 어떤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연금 전환) 연금보험상품으로 분류된다.

2013년에, 자료가 나와 있는 국가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OECD 사적연금 시장의 75%를 연기금이, 20%를 생명보험사 및 연금보험사가 운영하는 연금보험 계약이, 4%를 은행이나 투자운용사에서 제공하는 퇴직상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1%는 장부상 적립금이었다.

연금 급여액 산정 방식과 내재적 리스크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연금제도는 성격상 크

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확정기여형(DC)제도에서는 가입자들이 리스크를 지는 반면 전통적인 확정급여형(DB)제도에서는 고용주가 리스크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일부 국가의 고용주들은 혼합형 확정급여형(DB)제도를 도입했는데 형태는 서로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용주와 종업원 간에 일정 수준의 리스크 분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캐나다 및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들의 경우, 특정 유형의 혼합형 확정급여형(DB)제도에서 급여수준(전체 또는 부분적으로)은 기금의 자금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현금잔액제도(cash balance plan) (또 다른 유형의 혼합형 확정급여형(DB)제도)는 고정 기여율과 보장 수익률(고용주가 보증하므로 확정급여형(DB)으로 분류)을 기준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이러한 제도는 벨기에(법적으로 고용주가 최저 수익률 보증을 제공해야 함), 독일, 일본, 미국에서 연금제도의 일부를 구성한다. 혼합형 제도는 확정급여형(DB) 요소와 확정기여형(DC) 요소를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두 요소는 한 제도의 일부로 취급된다. 예를 들어 은퇴 전의 특정 연령까지는 확정기여형(DC) 산식에 따라 급여를 산출하며 이후에는 확정급여형(DB) 산식을 적용하는 식이다. 또한 덴마크와 스웨덴처럼 보장된 급여액이나 수익률을 제공하며 리스크는 가입자들이 공동으로 지는 확정기여형(DC)제도도 있다. 이들은 확정기여형(DC)으로 분류되는데 재원이 부족할 경우 고용주에게 상환 청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제도는 확정급여형(DB)제도와 유사하게 미래 급여액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OECD 국가의 퇴직연금제도는 전통적으로

확정급여형(DB)이었다. 그러나 최근 수년 사이 많은 국가에서 퇴직연금제도의 스폰서들이 확정기여형(DC)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신규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확정급여형(DB)제도를 폐쇄하고 확정기여형(DC)제도에 가입하도록 장려(하며 어떤 경우에는 기존 종업원에 대한 급여액 적립도 동결)하는 고용주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확정급여형(DB)제도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많은 국가에서 퇴직연금제도로써 예전에 선호된 제도였기 때문이다. 2013년, 전통적 확정급여형(DB) 자산은 캐나다,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이스라엘, 한국,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위스, 터키, 미국 등 공적부문의 연기금이 확정급여형(DB)을 고수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연기금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에, 칠레, 체코, 에스토니아,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에서는 모든 연기금이 확정기여형(DC)으로 분류된다. 그 외 OECD 국가들에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

형(DC) 비중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 정의와 측정

OECD는 사적연금 분류를 위한 일련의 지침을 수립했고(OECD, 2005 참조) 분석에서 이 분석틀을 사용하고 있다. 자료는 연기금에 대해 나와 있다. 한편 모든 국가가 연금보험계약이나 은행 또는 투자운용사가 제공하는 퇴직저축상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보고하고 있지는 않다. 제도 스폰서가 자신의 대차대조표에 기록하는(자산의 법적 분리 없이) 연금 제공(pension provision)을 의미하는 장부상 적립금(book reserves) 정보도 몇몇 국가에 대해서만 나와 있다. 그러므로 제도 유형별 구분은 연기금에 대해서만 제시되어 있다.

### 참고문헌

OECD (2005), Private Pensions: OECD Classification and Glossary,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dataoecd/0/49/38356329.pdf](http://www.oecd.org/dataoecd/0/49/38356329.pdf).

10.2. 선정된 OECD 국가에서 재원확보 수단별 사적연금자산, 2013년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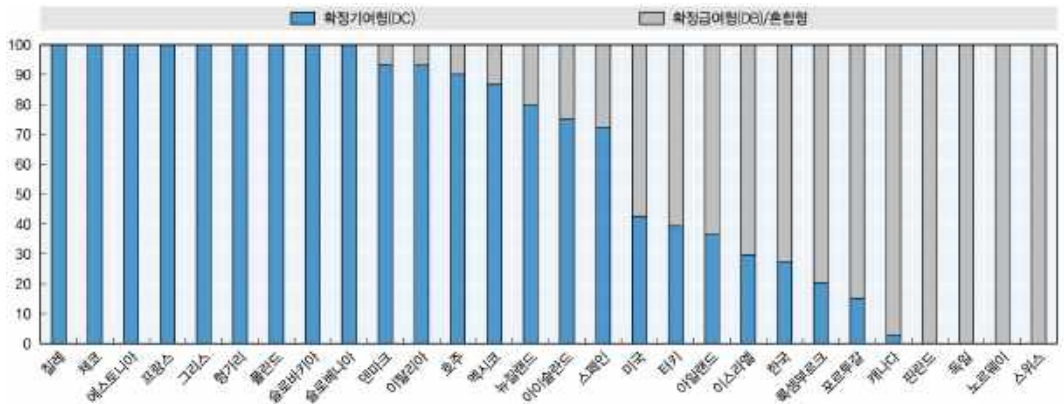


출처: OECD Global Pension Statistics.

<http://dx.doi.org/10.1787/888933300878>

10.3. 선정된 OECD 국가의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혼합형 연기금 자산의 상대적 비율, 2013년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출처: OECD Global Pension Statistics.

<http://dx.doi.org/10.1787/888933300886>

### 주요 결과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미래의 연금 지급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상당한 자산이 축적되어 있다. 2013년에 OECD 연기금 자산의 가중평균은 2013년 GDP의 83% 수준이었다. 16개의 OECD 국가들은 국가연금 지급을 위해 공적연금 적립금도 구축해두었다. 이들 국가의 경우 총 공적연금 적립금은 평균적으로 GDP의 거의 20%였다.

2013년 OECD 연기금 자산은 24조 8천억 달러에 달했다. 미국의 경우 13조 9천억 달러로 OECD 전체의 56.2%를 차지하면서 OECD 회원국 중 최대의 연기금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 외에 대규모 연기금 제도를 보유한 OECD 국가들은 2조 8천억 달러로 2013년 OECD 연기금 시장의 11.3%를 차지한 영국, 1조 4천억 달러로 5.8%를 차지한 호주, 1조 3천억 달러로 5.4%를 차지한 네덜란드, 1조 3천억 달러로 5.4%를 차지한 네덜란드, 1조 3천억 달러로 5.4%를 차지한 일본, 1조 3천억 달러로 5.1%를 차지한 캐나다 등이었다.

2013년에는 4개국만이 GDP 대비 자산비율(asset-to-GDP ratio)이 100%를 넘어섰는데 네덜란드(148.7%), 아이슬란드(141.2%), 스위스(113.4%), 호주(102.2%)였다. 이들 국가 외에 영국(99.6%)과 미국(83.2%)의 OECD의 가중평균 GDP 대비 자산비율이 82.8%를 초과했다. 이들 국가에서는 적립된 연금이 오랫동안 존재해왔으며 영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강제적 또는 준강제적 사적연금제도를 갖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는 GDP 대비 연기금 자산의 비중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34개 회원국 중 13개국만이 20%를 넘는 GDP 대비 자산비율을 보였다. 다른 국가들은 최근 수년 사이 강제적 적립식 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이들 중 칠레가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OECD 평균에 크게 떨어지지 않는 자산을 적립했다(62.3%). 에스토니아와 멕시코 등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강제적 사적 연금을 도입한 국가에서는 성장전망 역시 매우 밝다. 자산은 도입 이후 빠르게 성장하여 에스

토니아와 멕시코에서 각각 GDP의 9%와 15%에 도달했다. 이들 수치는 향후 수년, 수십 년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인데 이유는 새로운 퇴직연금 제도의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기존 가입자도 계속 납부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적연금제도의 경우 대개 부과방식(pay-as-you-go)으로 재정이 충당되는데 일부 사전적립(prefunding)도 발생한다. 공적연금적립기금(PPRF)이 일부 공적연금제도의 향후 재원 마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구 고령화가 정부예산에 가하는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이다. 2013년 말까지 PPRF의 총 금액은 자료가 나와 있는 16개 회원국에서 5조 3천억 달러 수준이었다. 가장 대규모의 적립금은 2조 8천억 달러로 미 사회보장신탁기금(US social security trust fund)이 보유하고 있는데 총 OECD 자산의 52.4%를 차지한다. 단, 이 자산은 미 재무부에서 사회보장신탁에 발행한 비거래용 차용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정부연금투자기금(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이 두 번째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이며 OECD 전체의 23.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국가들 중에서는 한국, 캐나다, 스웨덴이 대규모의 적립금을 축적하고 있으며 각각 OECD 전체의 7.7%, 5.8%, 3.1%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경제 대비 총 자산 측면에서는 평균적으로 공적연금적립기금(PPRF) 자산이 2013년 OECD 지역에서 GDP의 19.7%를 차지했다. 비율이 가장 큰 곳은 한국의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Fund)으로 GDP의 29.9%였다. 그 외에 비율이 상당했던 국가는 28.0%의 스웨덴과 26.8%의 일본이었다. 호주, 벨기에, 칠레, 뉴질랜드, 폴



란드의 PPRF는 비교적 최근에 구축되었으며 (2002년에서 2006년) 이는 지금까지 적립된 자산의 수준이 낮은 이유를 설명해준다. 이러한 자산 pool의 확대는 향후 수년간 계속될 것이지만, 프랑스와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보장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저축의 일부를 이미 인출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연금적립기금(French Pension Reserve Fund)과 아일랜드 국가연금적립기금(Irish National Pension Reserve Fund)은 더 이상 PPRF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 현재 이 두 국가의 연금적립 기금 의무(권한)가 부과식(pay-as-you-go) 연금 제도의 재원마련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 정의와 측정

연기금은 연금 급여액에 대한 재원 마련만을 위해서 연기금에 납입된 기여금을 가지고 매수한 독립적인 법인체를 구성하는 자산의 pool이다. 제도/기금 가입자들은 연기금 자산에 대해 법적 권리나 수급권(beneficial right) 또는 기타 계약상의 청구권을 가진다.

PPRF는 공적연금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나 사회보장기관이 만든 적립금이며 그렇지 않으면 부과방식으로 재정이 충당된다. 이러한 적립 기금의 자산은, 광범위하게 볼 경우, 정부에 부속된다.

10.4. OECD 국가와 기타 주요 국가의 연기금 및 공적연금적립기금(PPRF) 자산, 2013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액수(미화 백만 달러)

	연기금		공적연금적립기금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백만 달러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백만 달러
<b>OECD 회원국</b>				
호주	102.2	1,440,898	6.1	85,597
오스트리아	5.7	25,173	×	×
벨기에	5.0	27,213	5.1	27,531
캐나다	70.8	1,260,157	17.2	307,370
칠레	62.3	162,988	2.8	7,335
체코	7.3	14,951	×	×
덴마크	42.1	146,700	×	×
에스토니아	9.5	2,443	×	×
핀란드	48.7	135,651	27.0	75,211
프랑스	0.4	11,860	2.5	71,575
독일	6.1	236,932	×	×
그리스	0.1	136	×	×
헝가리	4.0	5,506	×	×
아이슬란드	141.2	22,986	×	×
아일랜드	52.3	126,188	×	×
이스라엘	50.5	152,679	×	×
이탈리아	6.0	132,168	×	×
일본	29.2	1,331,231	26.8	1,223,863
한국	6.0	81,555	29.9	404,543
룩셈부르크	2.1	1,323	×	×
멕시코	14.7	181,255	0.1	1,716
네덜란드	148.7	1,335,092	×	×
뉴질랜드	18.8	33,831	10.4	20,629
노르웨이	8.1	40,908	5.7	28,862
폴란드	18.2	100,563	1.1	5,856
포르투갈	8.9	20,904	6.9	16,134
슬로바키아	9.8	9,926	×	×
슬로베니아	3.9	1,954	×	×
스페인	8.8	127,478	5.1	74,118
스웨덴	9.1	53,767	28.0	164,650
스위스	113.4	807,893	×	×
터키	4.8	35,543	×	×
영국	99.6	2,810,564	×	×
미국	83.2	13,946,142	16.5	2,764,431
<b>OECD 34개국</b>	<b>82.8</b>	<b>24,824,555</b>	<b>19.7</b>	<b>5,279,423</b>
<b>기타 주요 국가들</b>				
아르헨티나	0.0	0	9.9	50,680
브라질	13.3	273,965	×	×
EU 28개국	94.3	5,351,027	..	..
중국	1.0	98,896	..	..
인도	0.4	6,819	6.1	116,229
인도네시아	1.8	15,058	1.7	12,303
러시아	5.7	117,180	×	×
사우디아라비아	..	..	..	..
남아공	94.8	306,107	×	×

주: OECD 34와 EU 28은 자료가 나와 있는 지역의 국가에 대해 GDP의 비율이나 총 기금의 자산액수의 가중치 평균을 나타냄.  
.. = 자료 없음, × = 해당 없음

출처: OECD Global Pension Statistics and Annual Survey of Public Pension Reserve Funds.

<http://dx.doi.org/10.1787/888933301280>

### 주요 결과

2013년 말, 전통적인 자산군(주로 채권과 주식)이 여전히 연기금과 공적연금적립기금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일반적인 투자 유형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주식과 채권의 비율은 국가마다 차이가 크지만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2013년 자료가 나와 있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채권과 주식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자산군으로, 15개 OECD 국가에서 2013년 말 현재 전체 연기금 포트폴리오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벨기에의 경우 전체 연기금 자산의 42.0%가 채권에 투자되었으며 39.0%가 주식에 투자되어, 벨기에 연기금의 총 평균 가중치 81.0%가 주식과 채권에 투자되어 있다. 멕시코의 경우 2013년 전체 연기금 포트폴리오 대비 채권과 주식의 비율은 99.0%였으며, 폴란드 93.2%, 노르웨이 92.7%, 스웨덴 90.6%, 룩셈부르크 90.2%, 헝가리 89.3%, 칠레 88.9%, 체코 86.9%, 터키 83.0%, 오스트리아 82.5%, 에스토니아 82.5%, 덴마크 81.8%, 네덜란드 80.4%, 이스라엘 80.0%였다. 반면 한국(9.0%)과 영국(53.8%) 등 소수의 국가들의 경우 이 비율이 50% 미만이거나 이에 근접했다.

연기금 포트폴리오에서 주식과 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2013년말 기준,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일반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OECD 국가에서는 주식이 더 선호되기도 했다. 호주의 경우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채권을 48.9% 대 8.6%로 압도했으며, 핀란드는 38.2% 대 31.1%, 미국은 49.4% 대 20.9%였다.

“채권” 중에서도 회사채가 아닌 국공채가 대다수 국가들 연기금의 직접(뮤추얼 펀드를 통한 투자 제외) 채권보유분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예를 들어 헝가리에서는 전체 직접 채권보유분의 92.4%를 국공채가 차지했으며, 아이슬란드 89.8%, 이스라엘 86.5%, 체코 85.6%, 터키 85.5%였지만, 룩셈부르크는 39.4%, 노르웨이는 26.3%, 한국은 9.9%에 불과했다.

일부 OECD 국가에서는 현금과 예금 역시 연기금 포트폴리오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2013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현금과 예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슬로바키아 23.1%, 그리스 24.6%, 한국 56.5%였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대출과 부동산(토지와 건물), 무배당 보험계약, 사적투자펀드(그림에서 “기타”로 표시)는 연기금 자산 중 비교적 적은 액수를 차지했으나 일부 예외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호주, 캐나다, 핀란드, 포르투갈, 스위스에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투자)이 연기금 포트폴리오 중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전체 자산의 5-20% 범위). 비공식적 증거자료를 보면 확정급여형(DB) 적립금 격차를 줄이고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압력 때문에 대체투자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심해져 연기금들이 리스크를 헛지하고 기초시장에 대한 직접투자의 대안으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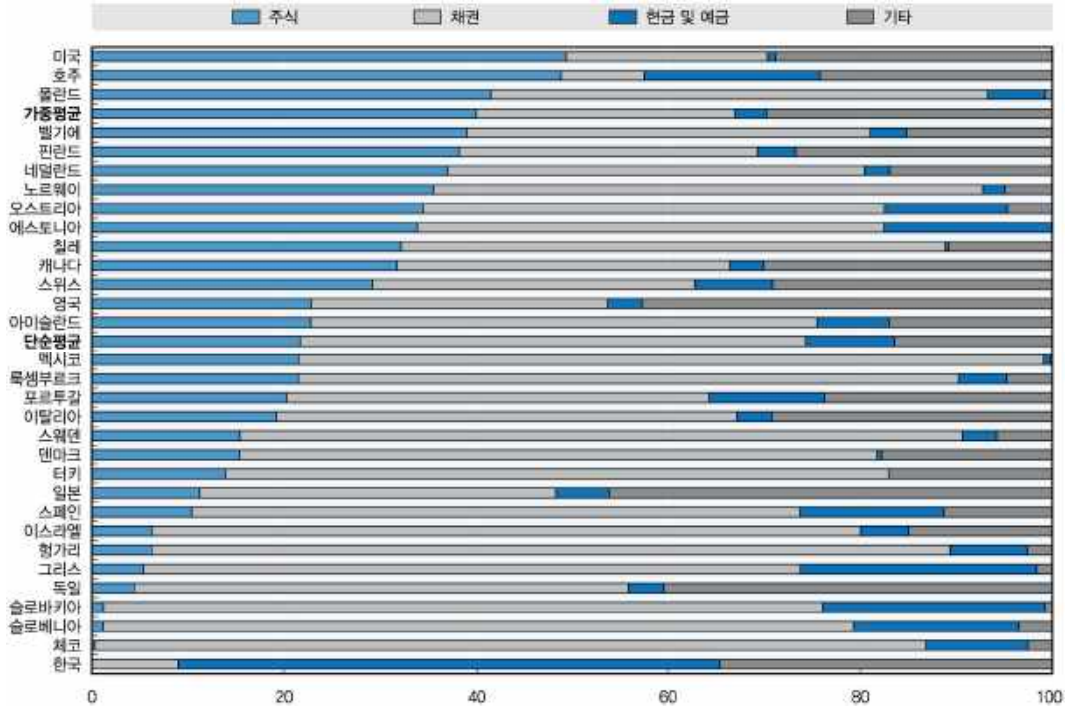
채권과 주식은 또한 2013년 말 현재 공적연금적립기금(PPRF) 포트폴리오 내에서 지배적인 자산군이다. 일부 적립기금은 주식에 크게 치우쳐 있는데 이는 이들의 장기적 투자전망과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재량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2013년, 노르웨이의 정부 연기금은 자산의 59.7%를 주식에, 36.5%를 채권에 투자했으며 스웨덴의 AP 펀드는 약 50%를 주식에, 30%를 채권에 투자했다(AP1, AP2, AP3, AP4 펀드). 퀘벡 연기금은 주식에 44.9%, 채권에 20.7% 투자했다. 주요 캐나다 적립기금인 CPPIB(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의 적립금은 주식(32.1%)과 채권(33.0%)에 거의 비슷한 비율로 투자하고 있다. 한편 칠레, 일본, 포르투갈, 폴

란드의 적립기금은 2013년에, 주식보다 채권에 훨씬 더 많이 투자했다.

극단적인 경우는 벨기에, 스페인, 미국의 PPRF인데 법적으로 정부 채권에 전적으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다.

일부 PPRF는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등 비전통적 자산군과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예를들어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기금은 멕시코(2013년 총 자산의 54.3%)와 호주(22.3%)에 있는 기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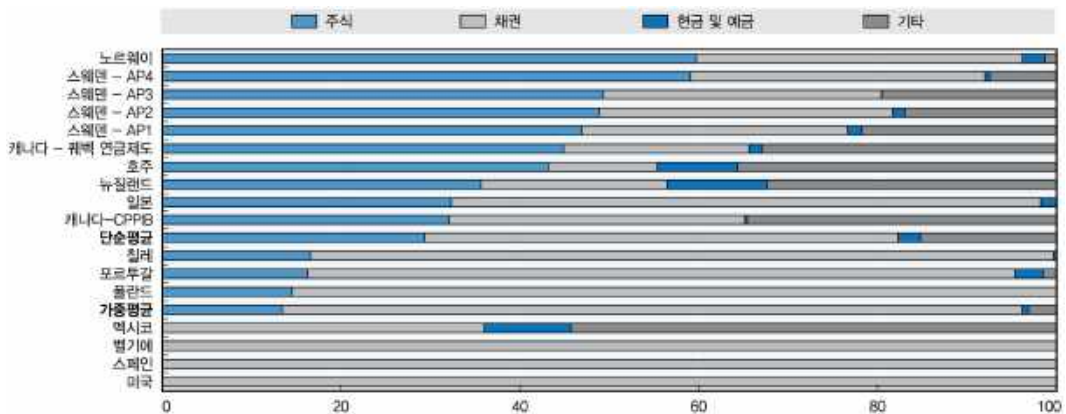
10.5. 선정된 OECD 국가의 선택된 투자 카테고리에 대한 연기금의 자산 배분 현황, 2013년  
총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출처: OECD Global Pension Statistics.

<http://dx.doi.org/10.1787/888933300893>

10.6. 선정된 OECD 국가의 선택된 투자 카테고리에 대한 공적연금적립기금의 자산 배분 현황, 2013년  
총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출처: OECD Annual Survey of Public Pension Reserve Funds.

<http://dx.doi.org/10.1787/888933300900>

### 주요 결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금융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2012년과 2013년에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연기금은 플러스 수익률을 경험했다. 2013년에 연기금은 OECD 가중평균 9.7%인 높은 실질 투자수익률을 기록했다. 공적연금적립기금(PPRF)도 마찬가지로 2012년과 2013년에 모두 높은 수익을 거두었다.

2011년에 암담한 실적을 기록한 이후, 주식시장의 양호한 실적과 채권을 통한 수익 덕분에 연기금은 2012년과 2013년에 다시 플러스 수익을 달성했다.

2012년에 OECD 연기금은 평균적으로 5.7%의 실질 수익률을 기록했다. 2012년에 연기금 실적이 가장 좋은 OECD 회원국은 멕시코(9.7%), 터키(9.6%), 네덜란드(9.5%), 벨기에(9.3%)였다. 보고된 OECD 국가들 중 어느 국가도 2012년에 마이너스 실질 수익률을 기록한 국가는 없었다.

2013년, 순투자수익률은 시장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OECD 지역의 가중치 평균 기준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 국가의 경우 연기금의 연간 실질 투자수익률은 9.7%였으며 실적이 가장 좋은 국가(미국)의 11.5%부터 가장 저조한 국가(터키)의 -7.6%까지 분포해 있다. 미국 다음으로 2013년 수익률이 높았던 국가는 호주(10.3%), 캐나다(9.8%), 뉴질랜드(9.5%), 일본(8.9%)이었다. 한편, 2013년에 3개국 즉, 멕시코(-1.5%), 덴마크(-4.6%), 터키(-7.6%)만이 마이너스 투자수익률을 기록했다. 실질 순투자수익률은 연기금의 명목 실적과 물가상승률의 합이므로 낮은 수익률의 원인은 낮은 수익일 수도 있고 물가상승률일 수도 있다. 덴마크의 경우 2013년에 연기금의 실질 수익이 마이너스였는데 이는 헤지상품의 마이너스 기여 때문이었다.

2012년과 2013년에 하나의 공적연금적립기

금(PPRF)을 제외한 모든 PPRF가 플러스 실적을 거두어서 실질 기준 각각 5.1%와 7.0%의 순투자수익률(연말 기준 운용 자산별 가중치 적용)을 기록했다. 2012년에 칠레의 연금적립기금만이 마이너스 수익률(-4.8%)을 기록했다. 2012년 실적이 가장 좋았던 국가들은 포르투갈(21.0%), 뉴질랜드(18.1%), 스웨덴(AP2의 13.4%)이었다.

2013년은 실질 기준으로 PPRF가 평균적으로 강력한 수익률을 거둔 해였다. 자료가 나와 있는 기금들 중 20개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실질 투자수익률은 멕시코의 0.6%에서 뉴질랜드의 24.1%까지 분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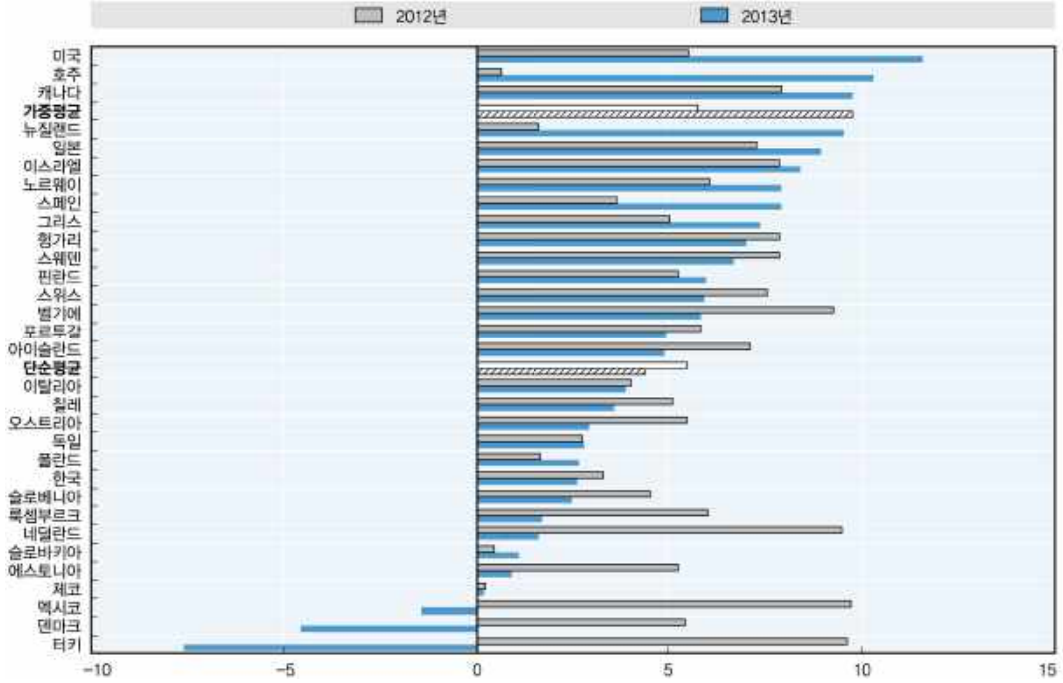
### 정의와 측정

실질(물가상승률 감안 후) 수익률은 투자관리비용 차감 후 현지 통화로 산정된다.

연기금의 평균 명목 순투자수익률은 오스트리아(2012년), 이스라엘, 한국, 스웨덴, 터키(2013년) 등 명목상 수익률을 각국의 산정방식을 사용해 제공한 국가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 대해 공통 산식을 이용한 산정값이다. 공통 산식은 연말 기준 순투자수익과 연중 자산의 평균 수준 간의 비율에 해당된다.

PPRF의 경우 명목 수익률은 각자 사용하고 있는 산식과 방법론을 이용해 기금에서 직접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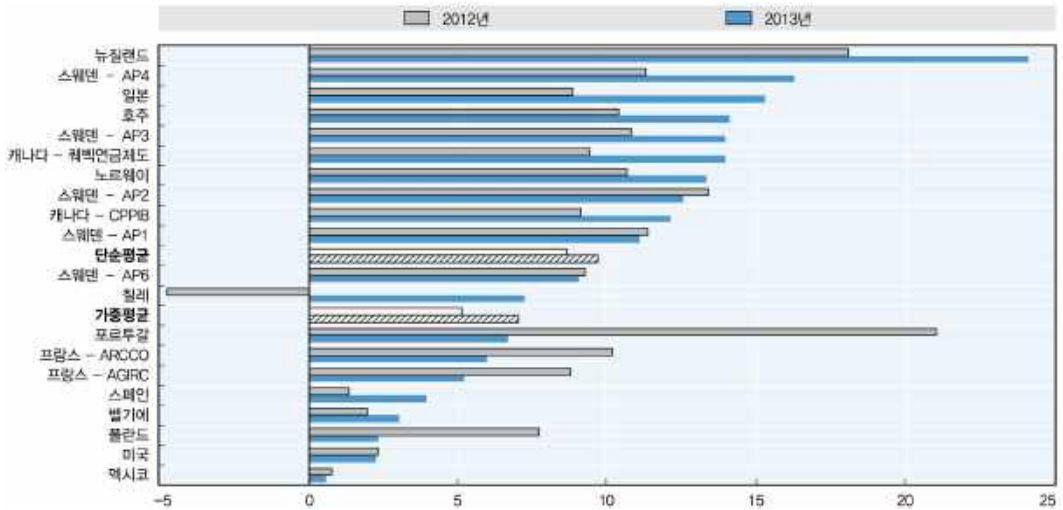
10.7. 선정된 OECD 국가 연기금의 실질 순 투자수익률, 2012년-2013년



출처: OECD Global Pension Statistics.

<http://dx.doi.org/10.1787/888933300910>

10.8. 선정된 OECD 국가 PPRF의 실질 순 투자수익률, 2012년-2013년



출처: OECD Annual Survey of Public Pension Reserve Funds.

<http://dx.doi.org/10.1787/888933300921>

### 주요 결과

사적연금제도의 효율성은 관리되는 자산 대비 총 운영 비용으로 측정되는데, 국가별로 차이가 크며 연간 관리 자산의 0.1%부터 1.5%까지 분포한다.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역시 그 구조와 수준이 국가별로 크게 다르다.

사적연금제도의 효율성은 관리되는 자산 대비 총 운영비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사적연금제도의 총 운영비는 연금 기여금을 퇴직급여로 전환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모든 운영 및 투자 관리비용을 포함한다.

그림은 2013년 OECD 회원국들이 보고한 연기금 운영비용이다. 일반적으로 확정기여형(DC)제도를 가진 국가와 소규모 기금의 수가 많은 국가들이 소수의 확정기여형(DB), 혼합형, 또는 집합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를 둔 국가들보다 운영비용이 높다. 체코의 경우 운영비가 관리 중인 자산의 1.5%이며 에스토니아는 1.4%, 스페인과 슬로베니아는 1.2%, 헝가리는 1.0%, 슬로바키아와 호주는 0.8%, 멕시코와 터키는 0.7%이다. 반면 노르웨이(0.3%)과 아이슬란드(0.2%), 영국(0.2%), 포르투갈(0.2%), 독일(0.2%), 네덜란드(0.1%)와 덴마크(0.1%), 핀란드(0.1%)에서는 총 자산의 0.3% 미만에 불과하다.

확정기여형(DC) 사적연금제도에서는 공급사들이 운영비를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로 충당한다. 국가별 수수료 구조는 상당히 복잡하다. 이번 분석에서는 몇몇 확정기여형(DC)제도의 수수료만을 고려한다. 같은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예: 남미, 중유럽, 동유럽)이 유사한 수수료 구조를 갖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지역이 멀어지면 차이도 커질 수 있다.

기여금에 대한 변동 수수료는 임금 대비 비율이나 기여금 대비 비율로 표현할 수 있다. 칠레, 이스라엘,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키가 이런 경우다. 칠레는 수수료가 임금 대비 비율로 표현되었다. 기여금에 대한 수수료는 에스토니아, 멕시코, 스페인에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멕시코는 2008년 3월 기준 Afores가 유일하게 자산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그 이전에는 자산과 기여금 둘 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기금에 대한 변동 수수료는 기금의 가치에 대해서 부과할 수도 있고 수익률에 대해 부과할 수도 있다. 이러한 수수료 체계로 인해 연기금이 더 높은 투자수익률을 얻고자 더 노력할 수도 있다. 자산에 대한 수수료는 칠레를 제외하고 표에 나타난 모든 국가에서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산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며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는 자산과 수익률 둘 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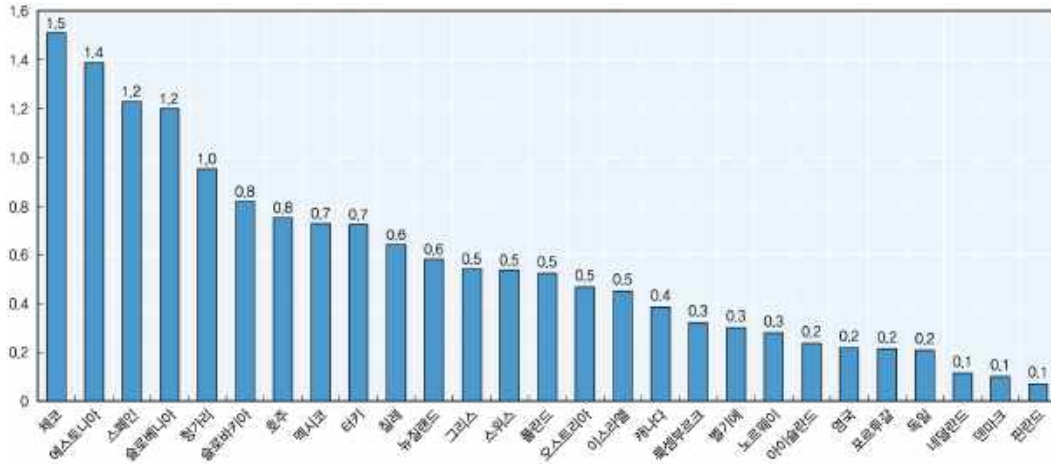
### 정의와 측정

운영비는 잠재적 가입자에 대한 상품 마케팅, 기여금 징수, 투자 펀드 매니저에게 기여금 송부, 계정기록 보관, 가입자에게 보고, 자산의 투자, 계정잔액을 연금으로 전환하고 연금을 지급 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일부 비용은 완전하게 보고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칠레에서는 국제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연기금은 기금에서 관리비용을 직접 차감한다. 이러한 비용은 각 연기금 관리자가 연금 감독기관에 별도로 보고한다. 그러나 이는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운영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수수료는 고정형이거나 변동형이다. 고정형 수수료는 임금이나 기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변동 수수료는 유입되는 기여금 또는 관리 중인 자산의 액수나 관리 중인 자산에 대한 투자 수익률에 대한 비율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표에서는 변동형 수수료만 보고하고 있다.

10.9. 일부 OECD 국가의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낸 연금의 운영비용, 2013년  
총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출처: OECD Global Pension Statistics.

<http://dx.doi.org/10.1787/888933300930>

10.10. 연금 또는 운영자/관리자가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총 수수료, 일부 OECD 국가들, 2013년  
총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기여액에 대한 수수료	자산에 대한 수수료	수익률/실적에 대한 수수료	기타(탈퇴, 가입, 전환 수수료 등)	합계
칠레	0.6	-	-	-	0.6
체코	..	0.6	0.3	..	..
에스토니아	-	1.3	-	0.0	1.4
헝가리	..	0.5	-	..	..
이스라엘	0.1	0.1	..	..	..
멕시코	-	1.0	-	-	1.0
폴란드	0.1	0.4	0.0	-	0.5
슬로바키아	0.1	0.6	0.2	0.1	0.9
슬로베니아	..	0.9	-	2.2	..
스페인	-	1.0	-	-	1.0
터키	0.1	0.6	-	0.2	0.9

주: .. = 자료 없음, - = 없음

출처: OECD Global Pension Statistics.

<http://dx.doi.org/10.1787/888933301293>



### 주요 결과

2013년 말 현재 확정기여형(DB) 연금제도의 평균 기금 적립률은 국가별로 차이가 컸다. OECD에 자료를 보고한 국가들을 보면 기금 적립수준은 2012년 대비 2013년에 개선되었는데 독일은 예외적으로 연기금의 추가 적립 비중이 약간 하락했다. 적립 수준은 각국의 (규제적) 평가 방법론을 사용해 산정하므로 국가간의 비교가 불가능하다.

OECD 연금자산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확정기여형(DB)이거나 수익률이나 급여액을 보장하는 기타 제도로 구성된다. 기금 적립률은 2013년 말 현재 몇몇 OECD 국가에서 서로 매우 다른 상황을 겪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벨기에,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의 연기금은 적립이 과도하여 평균 기금 적립률이 110% 이상이였다. 반면 캐나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미국은 2013년 말 기금 적립률이 낮았다. 아이슬란드의 경우 공공부문 근로자의 연기금은 46%에 불과했다. 세계 금융위기가 발발한 이후 아이슬란드 정부는 이들 제도에 추가적인 기여를 하지 못했다.

핀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에서는 기금 적립률이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안정세를 유지했다. 벨기에, 네덜란드, 미국에서는 연기금에서 적립 포지션을 개선했는데 벨기에에서 평균 기금 적립률을 6%p(129%에서 135%로), 네덜란드에서 8%p(102%에서 110%로), 미국에서 7%p(65%에서 72%로)를 올렸다. 독일에서 반대의 상황이 나타나 연기금의 추가적립 비중이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에 4%p만큼 약간 하락했다(119%에서 115%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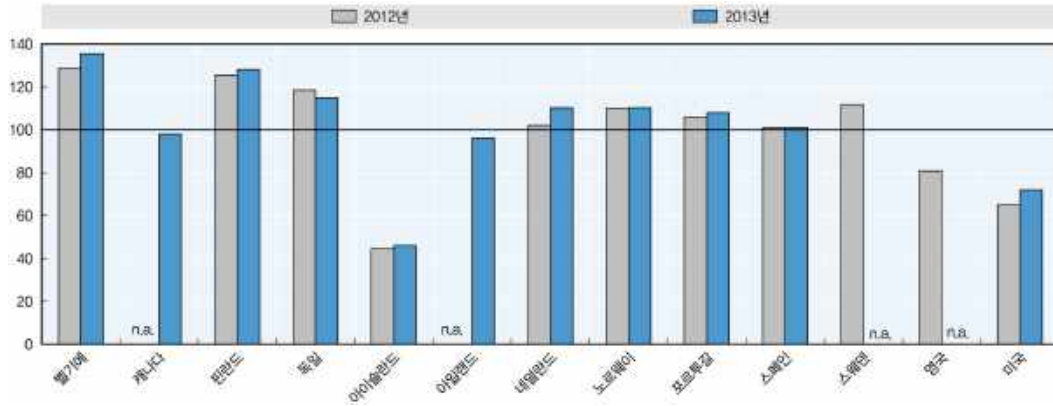
기금 적립률은 국가별(규제적) 평가 방법론을 이용해 산정하기 때문에 국가간 비교가 불가능하다. 방법론의 차이는 일부 국가에서는 상당히

크다. 예를 들어 독일과 스페인은 고정 할인율을 사용하고 네덜란드와 스웨덴에서는 시장 할인율을 사용한다. 할인율은 기금 적립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할인율이 1% 하락하면 연기금의 지급 의무는 대략 20% 상승하게 된다. 2012년 이래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할인율 설정에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연기금들은 만기가 긴 경우에 대해 성장과 인플레이에 대한 장기적 가정을 바탕으로 UFR(Ultimate forward rate)을 할인율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스웨덴에서는 감독당국이 할인율의 하한선을 설정한다.

### 정의와 측정

기금 적립률, 즉 부채 대 연금자산의 비율은 국가별 방법론을 사용해 추정한다. 방법론은 사용되는 산식, 할인율(예: 시장 할인율, 고정 할인율), 미래 임금이 반영되는 방식(예: 부채는 현재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거나, 가입자가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일자 기준 예상 임금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의 측면에서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는 각 연기금에 대한 기금 적립률을 산정하고 평균(산술 평균이나 가중평균)을 산정하는 반면 일부는 연기금 업계 전체에 대해 합계 기금 적립률만을 산정한다.

10.11. 선정된 OECD 국가의 확정기여형(DB) 연금의 평균 기금 적립률, 2012-13년



주: n.a. = 자료 없음

출처: OECD Global Pension Statistics.

<http://dx.doi.org/10.1787/888933300942>

## 제11장

# 한 눈에 보는 연금 2015: 국가별 현황

제11장에서는 연금제도의 “국가별 현황”을 제시한다. 국가별 현황에서는 국민 연금제도의 구조를 요약하고 인구학적 측면, 공적연금지출과 평균 근로자 소득에 대한 주요 지표를 제공한다. 그리고 2014년 연금제도의 파라미터 및 규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연금 수급액 산식과 급여를 설명한다. 각 국가 현황의 마지막 부분에 각 국가별 결과를 제공한다.

이스라엘 통계자료는 해당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하였다. OECD가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른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역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국가별 현황 가이드

“국가별 현황”은 공통된 분석의 틀을 사용한다. 첫째, 연금체계를 간략히 요약하고 핵심 지표를 표로 보여준다. 이 기본표는 평균 근로자 소득, 공적연금지출, 기대수명, 부양률(근로자 100명당 연금 수급자 수)로 이루어져 있다. 해당 국가의 데이터와 OECD 전체 평균이 모두 제시된다.

둘째, 각국의 연금체계를 구성하는 연금제도의 규정과 파라미터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다음과 같이 구조화하여 이루어진다.

- 수급요건: 연금 수급가능(또는 “은퇴”)연령과 연금을 수급하는데 필요한 기여금 납부 기간
- 급여 산정: 공적연금, 소득비례연금과 강제적 사적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자산조사형 연금, 최저연금 등 연금제도를 구성하는 각 제도의 규정
- 자발적 사적연금: 일반적인 자발적 연금제도 하에서의 대체율이 제6장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총 대체율” 지표에 모형화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 이들 제도의 파라미터를 제시했다.
- 경력의 차이 1: 근로자가 조기은퇴 혹은 표준은퇴연령 이후까지 계속해서 근로할 수 있는 규정과 조건 및 이것이 연금 수급액에 미치는 영향
- 경력의 차이 2: 육아나 실업 등의 이유로 유급 근로를 중단한 사람들의 연금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연금 수급자에 대한 개인소득세법과 사회보장기여제도 상의 취급방법에 대해서는 지면상의 제약으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별 현황의 온라인 판([www.oecd.org/pensions/oecd-pensions-at-a-glance-19991363.htm](http://www.oecd.org/pensions/oecd-pensions-at-a-glance-19991363.htm))에는 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근로자가 납부하는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OECD(2015), *Taxing Wages*를 참조하면 된다.

모든 연금 파라미터의 값과 최저임금 등 기타 관련 수치는 각국의 통화 및 평균소득 대비 비율로 표시된다(제8장 “평균 근로자 소득” 참조).

각 국가현황에서, 표는 강제적 연금제도에 대한 상대적 연금가치, 대체율, 연금자산을 몇 가지 소득 수준별로 제시하고 있다(여러 지표의 정의와 측정은 제6장 참조). 이들 자료는 총 기준과 순 기준으로 제시된다(순 기준은 근로 시 및 연금 수급 시 납부한 세금과 기여금을 고려한 값). 또한 완벽한 임금 연동을 기반으로 제시되며 달리 제공될 경우 법에 의해 규정된 연동에 근거한다.

그림은 한 국가의 여러 다른 연금제도들이 총 상대적 연금가치에 기여하는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첫 번째 행의 그림들). 이들 제도를 설명하는 데에는 가능한 한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했다. 설명된 특정 국가의 제도는 국가별 현황(country profile)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의 표준 약어가 그림의 범례에 사용되었다:

- 사회부조(SA: Social Assistance)
- 선별적 제도(Targeted): 고령인구를 위한 별도의 자산조사에 기반한 제도
- 최저연금제도(Minimum): 소득비례연금제도 내의 최저연금
- 기초연금제도(Basic): 가입 또는 거주기간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금

- 소득비례연금제도(Earning-related): 전통적 확정급여형제도는 물론 명목계좌 및 포인트 제도를 포함한 일체의 소득연계 공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 연금(DC: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의 의무적 사적연금제도
- 기업퇴직연금(Occupational): 사업장 또는 산업별 제도(네덜란드), 직종별 제도(스웨덴) 혹은 공적으로 제공되는(핀란드, 프랑스) 강제적 혹은 준강제적 연금제도

그림의 두 번째 행은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상대적 연금가치와 소득대체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며 총 가치와 순 가치 기준으로 제시된다.

차트에서는 국가별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표준척도를 사용하였다. 소득대체율의 척도는 125%, 상대적 연금가치의 척도는 평균소득의 2.5배까지 표시한다. 차트는 국가 전체 평균소득(AW)의 50-200% 사이에 있는 소득계층의 연금 수급액을 보여주고 있다.

##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 2014년 연금제도

연금체계는 크게 두 가지, 즉 기초연금과 부가적 사회보험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70세 이상 국민들에게는 사회부조뿐만 아니라 부가적 고령자 특례노령연금이 제공된다.

### 핵심 지표: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페소(ARS)	135,492	338,672
	미달러(USD)	16,006	40,007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		7.9
기대여명	출생 시	76.2	80.0
	65세 시점	17.6	19.3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대비 %	11.2	16.2

<http://dx.doi.org/10.1787/888933301723>

## 수급요건

기초연금: 근로기간 30년 이상이고 65세(남성) 및 60세(여성) 도달 시 지급된다. 납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가입자는 수급개시연령 이후 2년을 부족한 보험료 납부기간 1년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가연금(사회보험): 근로기간 30년 이상이고 65세(남성) 또는 60세(여성) 도달

고령자 특례노령연금(사회보험): 근로기간이 10년 이상이고 70세에 도달한 자로서, 피용근로 또는 자영업 종로 직전 8년 중 최소 5년 이상 기여금을 납부한 자. 자영업자는 최소 5년간 가입했어야 한다.

비기여형 노령연금(사회부조): 70세 이상으로 아르헨티나에서 거주하며 형편이 어려운 자.

## 급여 산정

### 기초연금

월 연금 1,805.53페소(2015년 3월 현재)

### 부가연금(사회보험)

월 연금은 평생 근무기간(lifetime service)의 매 1년에 대해 마지막 10년간 가입자의 평균 조정 월 소득(자영업자는 전 기간에 대한 가중평균 조정금액)의 1.5%.

### 고령자 특례노령연금

월 연금액은 기초노령연금의 70% + 부가연금.

합산된 최저 월 노령연금액(모든 기여형 연금의 합)은 3,821.73페소(2015년 3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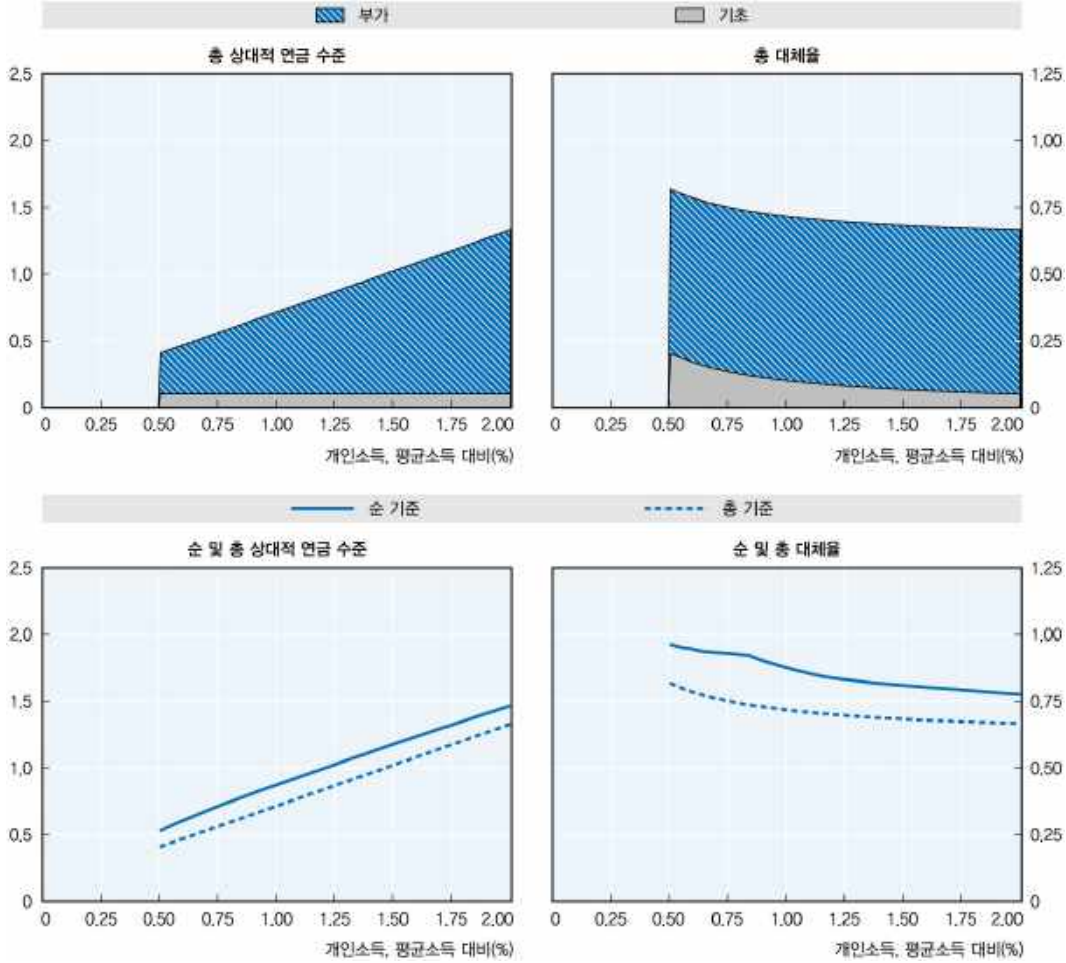
최대 월 노령연금액(기초연금+사회보험연금의 합)은 27,998.79페소(2015년 3월 현재)

연금 수급자들은 매달 연금을 받으며 13번째 지급액은 정기적 월 지급액의 절반 금액을 6월과 12월에 지급받는다. 급여액은 국가 세수, 임금지수 그리고 국가사회보장청(National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세입 변화에 근거하여 3월과 9월에 자동 조정된다.

### 비기여형 노령연금(사회부조)

월 연금액은 1,601.04페소(2013년 9월 기준 최저연금의 70%).

연금 모형화 결과: 2059년의 아르헨티나, 수급연령은 65세(남성)



기준 시나리오: 입법 시나리오(안전망 제도의 임금 연동)

남성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40.9 44.1	56.3 57.8	71.6 71.5	102.4 98.8	133.2 126.1	194.7 180.8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52.8 56.9	71.3 73	87.5 87.3	117.9 114.4	146.7 140.3	200.0 188.1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81.8 88.2	75 77	71.6 71.5	68.3 65.9	66.6 63.1	64.9 60.3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96.4 104	92.8 95	87.5 87.3	80.8 78.4	77.6 74.2	72.6 68.2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2.9 18.4	11.8 16	11.3 14.9	10.7 13.7	10.5 13.1	10.2 12.5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2.5 17.8	11.2 15.2	10.3 13.6	9.3 11.9	8.7 11.0	7.9 9.8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http://dx.doi.org/10.1787/888933301302>

## 호주

### 호주: 2014년 연금제도

호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3개 제도, 즉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자산조사형 기초노령연금, 고용주 부담의 강제가입 형태의 보증형 기업퇴직연금, 자발적 연금 기여금 및 기타 개인저축(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금저축은 세제혜택을 통해 장려된다.

### 핵심 지표: 호주

		호주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호주달러(AUD)	79,689	48,901
	미달러(USD)	65,195	40,007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	3.5	7.9
	기대여명	출생 시	82.4
	65세 시점	20.8	19.3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대비 %	15.0	16.2

<http://dx.doi.org/10.1787/888933301736>

## 수급요건

기초노령연금은 남성과 여성 모두 65세부터 지급 가능하다. 연금수급연령은 2017년부터 2년마다 6개월씩 연장되어 2023년에는 67세가 된다. 1960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해 기업퇴직연금을 인출할 수 있는 최저연령은 현재 55세이지만,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에 대한 최저연령은 점차 상향 조정되어 1964년 6월 30일 이후 출생자들의 최저연령은 60세이다.

## 급여 산정

### 확정기여형연금

보증형 기업퇴직연금제도는 1992년에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종업원의 기업퇴직기금(사적연금 제도)에 대한 고용주의 강제적 기여로 이루어진다. 기업퇴직기금은 고용주가 운영할 수도 있고 산업별 협회와 금융회사나 개인이 직접 운영할 수도 있다. 강제적 기여율은 200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는 근로자 통상임금의 9%였다. 2013년 7월 1일에 기여율이 9.25%로 인상되었고, 2014년 7월 1일에 다시 올라서 9.5%가 되었다. 정부는 보증형 기업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기여율이 2021년 6월 30일까지는 9.5%로 유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그 비율은 2025년 7월 1일에 12%가 될 때까지 매년 0.5%p씩 상향될 것이다.

고용주들은 소득이 월 450호주달러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나 선택에 의해 납부할 수 있다(이 최저액은 과거에 증가하지 않았다). 또한 보증형 기업퇴직연금제도에 의해서 보장되는 소득 상한선이 존재한다. 고용주들은 이 기준선 이상은 기여할 필요가 없다. 2013-14년도도의 분기별 상한액은 48,040호주달러였다(연간 192,160호주달러).

퇴직연금에 자발적 추가기여금(after-tax (non-concessional) contributions)을 납부하는 중저소득자에 대해 2013-14년에 최대 500호주달러까지, 기여금의 50%를 정부가 매칭지원해 주고 있다. 2013-14년에 소득이 33,516호주달러 미만인 자는 완전 추가납부 대상자이다. 33,516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의 매 1달러당 추가 납부금이 3.333센트씩 줄어들며, 48,516호주달러까지 이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국가가 매칭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적격 납입자에 대한 납부금이 20호주달러 미만이라면 그 액수는 20호주달러로 증가한다.



기업퇴직연금제도의 인출 단계에 산정이 복잡해 진다. 일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종업원들은 확정기여형(DC)제도에 가입해 있다. 가입자들은 누적된 금액을 일시불로 인출할 수도 있고 일정 소득으로 인출할 수도 있다. 현재 대부분 가입자는 자신의 급여액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일시불로 받기를 원한다.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위해 보증형 기업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은 물가연동 연금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 기초연금(선별적 안전망)

노령연금(Age Pension)은 전체 근로기간 중 충분한 돈을 저축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안전망을 제공하고 그 외 사람들에게는 노후 저축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소득조사와 자산조사를 사용하여 노령연금 수급자를 선정한다. 노령연금 외에도 노인들은 의료, 집세보조, 약품 및 기타 생활비에 대한 감액 및 보조금을 포함한 포괄적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3월 독신자에 대한 연금 보조금 및 에너지 보조금의 최고액은 2주일에 843호주달러이며, 연간 총 21,570호주달러이다.

노령연금의 가치는 격년마다 조정된다. 노령연금의 가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혹은 PBLCI(연금 수급자 및 수혜자 생활비 지수) 중 인상폭이 더 큰 지수에 따라 증가된다. 필요한 경우 추가 인상을 통해서 부부의 합산액이 세전 남성근로자 전체의 평균 주당소득의 41.8%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한다. 보조금을 제외한 1인이 받는 기초연금의 최고액은 부부 합산액의 66.33%이다.

노령연금은 다른 소득원으로부터 나온 연간 소득이 “공제한도(income free area)”로 알려진 기준선을 초과하면 감액된다. 이 범위는 1년에 한번 7월에 조정된다. 2013-14년에 2주 기준 공제한도는 독신 연금 수급자의 경우 156호주달러, 부부의 경우에는 138호주달러였다(부부합산액은 276호주달러임).

노령연금에는 연금수급연령의 사람들이 근로를 계속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고안된 소득조사 면제제도인 “근로보너스”가 있다. 이 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소득조사에 따른 소득으로 평가되지 않고 2주에 250호주달러까지 벌 수 있도록 허용한다. 2주에 250호주달러 미만을 버는 연금 수급자는 미래 고용소득을 보완하기 위해서 6,500호주달러까지 2주의 면제된 미사용액수를 적립할 수 있다. “근로보너스”와 “공제한도(income free area)”의 결합을 통해 기타소득이 없는 독신 연금 수급자는 자신의 연금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매해 약 10,450호주달러까지 벌 수 있다.

자산조사도 적용된다. 전체 연금 수급자의 거의 41%가 자산조사(means test)에 의해 연금이 삭감되어 노령연금의 일부만 받는다. 이 집단 중 59%는 소득조사(income test)로 인해, 41%는 재산조사(assets test)로 인해 연금의 삭감된다. 연금 수급자의 약 59%가 노령연금을 최대액수까지 받는다.

2013-14년에 주택소유자에 대한 연금자산조사한도(pension asset test thresholds)는 독신 연금 수급자의 경우 196,750호주달러, 부부 합산 279,000호주달러이다. 주택 미소유자에 대한 기준은 독신 연금 수급자의 경우 339,250호주달러, 부부 합산 421,500호주달러이다. 이 액수를 초과한 재산에 대해서는 독신 및 부부 연금 수급자에 대해 모두 2주에 1,000호주달러당 1.50호주달러가 삭감된다. 거주 주택(family home)은 재산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집세보조금(Rent Assistance)은 집세가 특정 금액을 넘는 사적 임차인에게 제공된다. 이는 연금 지급액의 일부로 지급되며, 연금 지급액과 함께 소득 및 재산조사에 의해 삭감된다. 집세보조금의 가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성장률에 따라 격년마다 조정되고 2주에 한번 지급된다. 2014년 3월 기준,

독신자에 대한 집세보조금의 최대액수는 2주에 126호주달러였다. 이는 연간 최대 3,245호주달러에 해당된다.

집세보조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집세의 기준도 격년마다 조정된다. 2014년 3월 집세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집세는 2주에 최저 112호주달러였다. 이 기준을 초과한 집세는 최대액수에 이를 때까지 1달러당 75센트가 지급된다.

집세보조금은 정부임대주택청(government housing authority)으로부터 집을 빌린 사람들이나 호주 정부가 기금을 낸 양로원이나 숙박시설 거주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기업퇴직연금 급여는 55세부터 인출이 가능하다. 기업퇴직연금 급여의 인출이 가능한 최저연령은 1960년 7월 1일 및 그 이후 출생자에 대하여 상향 조정되었다(아래 표 참조). 수급연령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는 사람들의 경우, 법적 보전연령(preservation age)부터 수급할 수 있으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형태(일괄지불 불가: non-commutable income stream)로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은 수급연령 전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출생일	법적 보전연령(preservation age)
1960년 7월 1일 이전	55
1960년 7월 1일-1961년 6월 30일	56
1961년 7월 1일-1962년 6월 30일	57
1962년 7월 1일-1963년 6월 30일	58
1963년 7월 1일-1964년 6월 30일	59
1964년 6월 30일 이후	60

### 수급연기

퇴직연금 신청을 65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고용주는 나이에 상관없이 자격요건을 갖춘 종업원을 위해 보증형 기업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노령연금에는 연금수급 연령의 사람들이 계속 일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고안된 “근로보너스” 소득조사 면제제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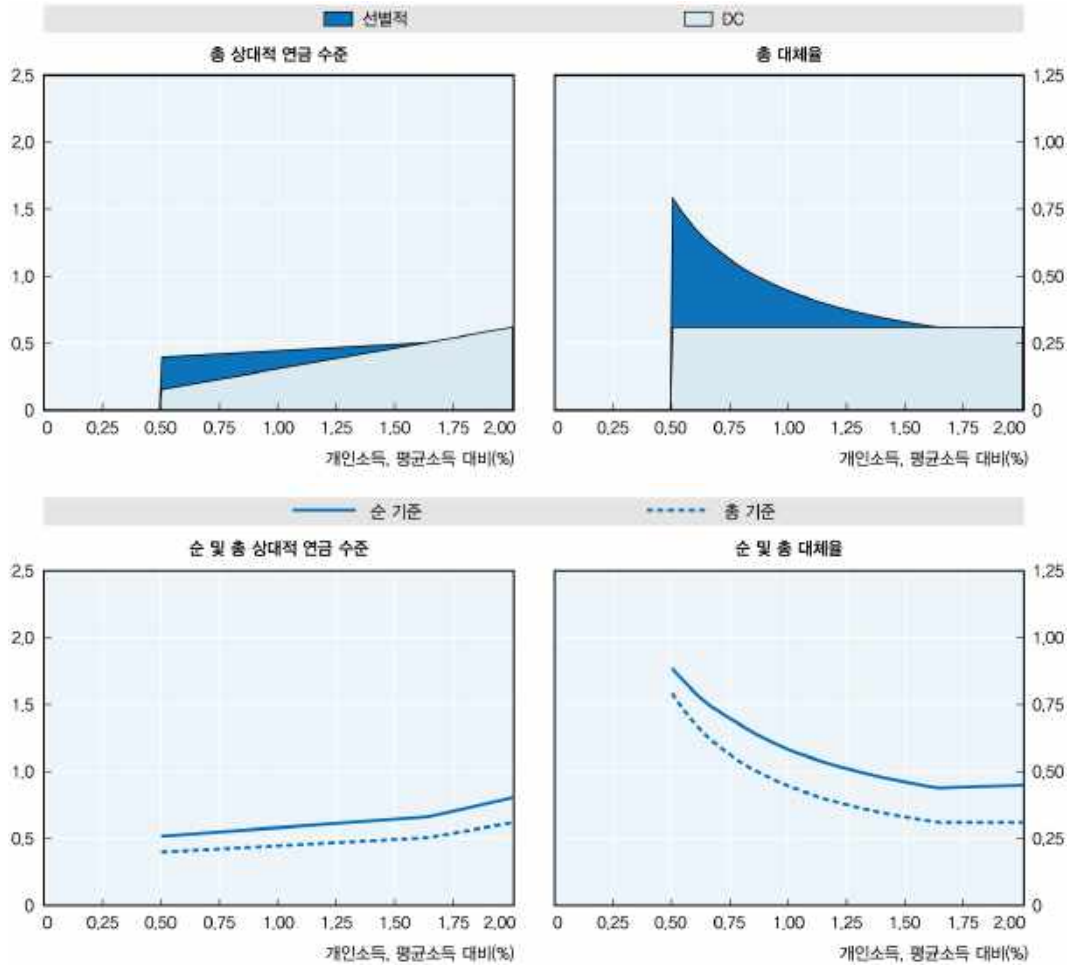
### 육아

보증형 기업퇴직연금제도에는 근로 중단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장치가 없다. 유급 근로를 중단한 기간 동안 자발적인 기여금 납부는 가능하다.

### 실업

보증형 기업퇴직연금제도에는 실직기간에 대한 크레딧이 없다. 유급 근로를 중단한 기간 동안 자발적인 기여금 납부는 가능하다.

연금 모형화 결과: 2061년 호주, 수급연령 67세



기준 시나리오: 입법 시나리오(안전망 제도의 임금 연동)

남성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총 상대적 연금 수준	39.6	42.1	44.5	49.3	61.9	74.6
(평균 총 소득 %)	37.9	39.4	40.9	43.9	54.7	65.9
순 상대적 연금 수준	51.8	54.9	58	64.3	80.7	97.3
(순 평균소득 %)	49.4	51.4	53.4	57.3	71.4	86.1
총 대체율	79.3	56.1	44.5	32.9	30.9	24.9
(개인 총 소득 %)	75.7	52.5	40.9	29.3	27.3	22.0
순 대체율	88.6	69.6	58	45.9	44.8	38.5
(개인 순 소득 %)	84.6	65.1	53.4	40.9	39.6	34.0
총 연금자산	14.0	9.9	7.8	5.8	5.5	4.4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5.1	10.5	8.2	5.8	5.5	4.4
순 연금자산	14.0	9.9	7.8	5.8	5.5	4.4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5.1	10.5	8.2	5.8	5.5	4.4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연금 모형화 결과: 2061년 호주, 수급연령 67세(계속)**

대안적 시나리오: 완전 임금 시나리오(안전망 제도의 임금 연동)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41.5	43.9	46.3	51.2	61.9	74.6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54.2	57.3	60.5	66.8	80.7	97.3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83.0	58.6	46.3	34.1	30.9	24.9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92.8	72.7	60.5	47.7	44.8	38.5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4.7	10.3	8.2	6.0	5.5	4.4
순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4.7	10.3	8.2	6.0	5.5	4.4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http://dx.doi.org/10.1787/888933301310>

##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 2014년 연금제도

연금체계는 확정급여형 공적연금제도와 저소득 연금 수급자를 위한 소득조사형 보충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 핵심 지표: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유로화(EUR)	42,573	33,036
	미달러(USD)	51,557	40,007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	13.2	7.9
기대여명	출생 시	81.0	80.0
	65세 시점	19.8	19.3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대비 %	18.7	16.2

<http://dx.doi.org/10.1787/888933301748>

## 수급요건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현재 남성은 65세, 여성은 60세이다. 여성의 수급연령은 2024-33년에 걸쳐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될 것이다.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 최근 30년 동안 180개월(15년) 이상 또는 생애 전체기간 중 300개월(25년) 이상의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가입만 한 기간과는 다름)이 180개월이 되어야 한다. 가입된 개월 수는 기여금을 납부한 개월 수(고용을 통한 기여나 자발적 기여를 포함)와 제한된 액수의 기여금만 납부된 보완기간(부분가입기간으로 불리는 크레딧 인정기간)을 합산하여 산정된다. 2005년 연금개혁에서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유급 고용으로 인한 최소 기여년수 요건은 15년에서 7년으로 완화되었다. 나머지 최소 가입년수 8년은 육아기간 등으로 채울 수 있다.

## 급여 산정

### 소득비례연금

가입 1년당 지급률은 현재 1.78%이다. 소득 측정지표는 최고소득 26년간 재평가된 평균소득이다. 평균을 내는 대상 기간이 연장되고 있으며 2028년에 40년이 된다. 과거소득은 은퇴 전 2년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 소득인상률에 따라 재평가된다. 기여금 납부대상이 되는 소득의 상한은 2014년 기준 연 63,420유로이며 지급 연금의 연례 조정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맞춰 이루어진다. 2014년에 연금은 1.6% 인상되었다. 이는 소비자물가지수보다 0.8% 낮다.

### 선별적 제도

소득비례급여액이 적은 퇴직자들은 1인 가구의 경우 매월 857.73유로의 자산조사적 보충연금(Ausgleichszulage)을 받을 수 있다(부부에 대해서는 1,286.03유로). 이 급여는 매년 14회 지급되며 안전망 소득의 조정은 재량에 따라 이루어진다.

### 자산조사형 최저보장제도(bedarfsorientierte Mindestsicherung)

이는 2011년에 개혁되었던 예전의 사회부조제도(Sozialhilfe)의 현대화된 버전이다. 자산조사형 최저보장제도의 목적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개인과 그들의 부양가족구성원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부조제도는 노령인구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제도는 아니다. 그러나 노인인구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자원(연금 등)이 없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 자산조사형 최저소득제도는 대체로 거주에 근거한 비기여형 제도이다. 유럽경제지역(EEA) 시민, 특정 거주허가서를 받은 제3국 국민(특히 EU 영주권)과 난민 인정자 등 여러 인구집단이 오스트리아 시민으로 받아들여진다. 주(Länder)에서 자산조사형 최저소득제도를 관할한다.

월 지급한도는 독신 개인의 경우 814유로이다(커플의 경우 1,221유로). 자산조사형 최저보장급여를 신청하려면 개인의 모든 자원이 2014년 기준 4,069.95유로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이나 아파트의 소유는 가능하지만 당국은 일정 기간 이후 그 소유권을 자산조사에 반영한다.

### 추가 급여

최저보장제도에 의해 충족되지 않은 어떤 추가적 필요(적절한 주거 및 난방을 위한 경비 등)는 추가적 보충급여에 의해 충당될 수 있다.

이들 급여는 매우 여러 가지이며 정액보조금과 적절한 실제 주거비 보장 등 다양하다. 추가 급여는 주(Länder)에서 제공하는데, 보장된 최저소득에 대한 보충으로써 또는 독립된 급여으로써 주택수당(Wohnbeihilfe)이 지급된다. 질병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산조사형 최저급여를 받는 개인은 법정 질병 보험을 보유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등록된다.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조기수급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다:

1. 장기가입자 조기노령연금(Vorzeitige Alterspension bei langer Versicherungsdauer): 이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최소 38.5년의 보험가입기간 또는 최소 36년의 기여 년수가 필요하다. 이 연금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2014년 7월 기준 수급개시연령은 남성의 경우 64세 3개월이며 여성은 59세 3개월인데, 2017년에는 남성 65세, 여성 60세로 연장된다.
2. 장기가입자 완전노령연금(Langzeitversichertenpension - Hacklerregelung): 현재 여성 40년, 남성 45년 이상의 기여 년수를 요한다(2014년부터 수급이 어려워짐). 현재의 수급개시연령은 남성 60세, 여성 55세이나 2014년부터는 남성 62세, 여성 57세에서 단계적으로 62세로 상향 조정된다(연간 공제: 4.2%).
3. 중노동 종사자 연금(Schwerarbeitspension): 기여 년수가 45년 이상이어야 하고 또한 최근 20년 이내에 10년 이상 노동강도가 강한 직종에서 종사했어야 한다.
4. 중노동 종사자 장기가입 노령연금(Langzeitversicherungspension mit Schwerarbeit): 45년 이상 가입하고, 남성 60세, 여성 55세 도달(연간 공제: 1.8%). 1953년 12월 31일에서 1959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남성 및 1958년 12월 31일에서 1964년 12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여성만 수급 가능하다.
5. 브릿지연금(Korridorpension): 남성과 여성 모두 62세이며 가입기간 38.5년 이상인 경우(연간 공제: 5.1%)
6. 장애연금: “연금보다 재활과 예방이 우선”이라는 철학에 근거하여 장애연금제도를 개혁. 1964년 이후 출생자들에게는 2014년부터 임시 장애연금 대신 의료 또는 직업재활을 제공한다.

### 수급연기

65세에서 68세 사이에 연금 수급을 개시하면 연금은 연 4.2%씩 증가하며 68세 이후에는 증가하지 않는다. 연금 수급을 연기하는 근로자들은 기여금을 계속 납부하므로 수급액이 늘어나게 된다.

근로와 연금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소득한도가 있다. 65세 미만의 연금 수급자가 386.80유로(2014년) 이상을 벌면 연금은 전액 취소된다. 65세 이후에는 근로소득에 제한 없이 연금 수급이 허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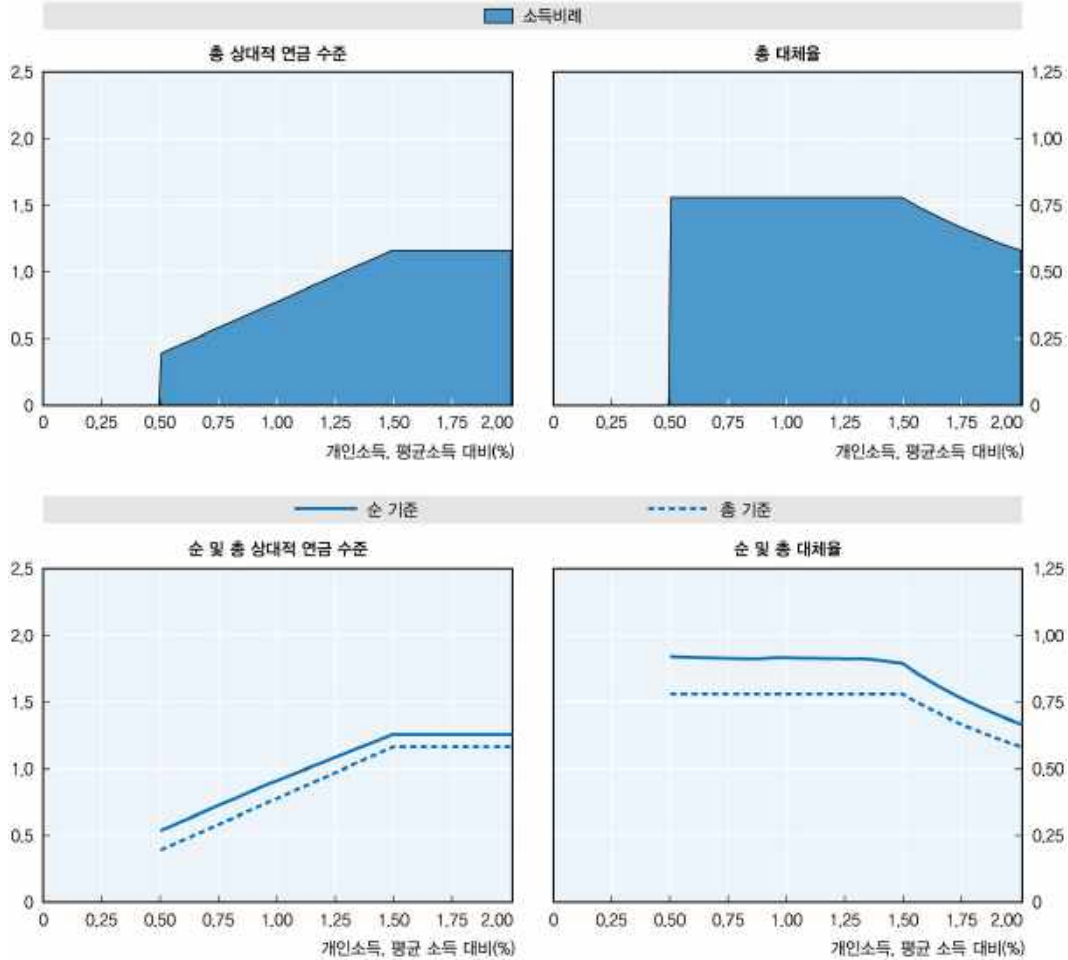
### 육아

육아를 위해 유급 근로를 중단한 기간은 두 가지 방식으로 고려된다. 월 1,649.84유로(2014년) 이상의 연금 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자녀 한 명당 최대 4년까지 크레딧이 적립된다. 그러나 연금 수급요건 충족을 위한 가입기간 산정 시 자녀 한 명당 2년씩 인정된다(1955년 이후 출생자는 4년 - 위 “수급 요건” 부분 참조.)

### 실업

실업보험급여와 실업수당(산정 기준의 70%)을 받은 기간은 기여기간으로 간주한다.

연금 모형화 결과: 2059년의 오스트리아, 수급연령 65세



기준 시나리오: 입법 시나리오(안정망 제도의 현행 정책 연동)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39.0	58.6	78.1	116.3	116.3	116.3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53.8	72.8	91.6	125.8	125.8	125.8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78.1	78.1	78.1	77.6	58.2	38.8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92.1	91.4	91.6	88.9	66.7	45.8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3.8	13.8	13.8	13.7	10.3	6.9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2.6	11.4	10.7	9.8	7.4	4.9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http://dx.doi.org/10.1787/888933301326>



## 벨기에

### 벨기에: 2014년 연금제도

연금제도는 두 가지 제도, 즉 최저연금을 보장하는 소득비례공적연금과 자산조사에 기초한 사회안전망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 핵심 지표: 벨기에

		벨기에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유로화(EUR)	46,464	33,036
	미달러(USD)	56,269	40,007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	10.2	7.9
기대여명	출생 시	80.4	80.0
	65세 시점	19.5	19.3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대비 %	18.6	16.2

<http://dx.doi.org/10.1787/888933301757>

## 수급요건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남성과 여성 모두 65세이다. 완전연금을 받으려면 45년의 기여 년수가 필요하다.

## 급여 산정

### 소득비례연금

연금산정을 위한 기준율은 독신의 경우 60%, 피부양배우자가 있는 수급자의 경우 75%이다(부부 모두에게 60% 개별 연금권의 합이 유리하지 않을 경우에도 적용됨). 그러므로 연간 추정 지급률은 연금 수급자 1인에 대해 60%/45년 = 1.33% 정도이다. 연금산정을 위한 소득은 생애평균소득이 사용된다(급여산정모형의 간소화 가정 상). 과거소득은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재평가되며 동시에 생활수준의 향상을 반영하기 위해 또 다른 재평가지수가 적용된다(매년 다른 계수 적용). 하지만 우리의 급여산정모형에서는 이러한 과거소득의 재평가 방식은 적용되지 않았다.

위의 수급요건이 충족되면 연금 전액이 지급된다. 기여 년수가 짧아도 연금은 제공되지만 기여 년수를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된다.

산정할 때는 연 연금대상소득 한도가 적용된다. 이 한도는 2014년에 52,972.54유로였다.

지급연금은 CPI(일부 상품을 제외한 소위 “건강생활지수”)에 맞춰 상향 조정된다. 재량적 실질 상향 조정(“웰빙 조정(adaptations to well-being)”)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금액 인상은 최근 최저연금이나 장기가입연금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이후 관련법에서는 정부가 사회적 파트너의 권고를 바탕으로 2년에 한번씩 연금 상향 조정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부가급여(“휴가” 및 “보충”수당)도 있으며 이는 1년에 한번 지급된다. 액수는 월 연금액과 동일하며 한도는 독신자의 경우 668.65유로이고 피부양 배우자가 있는 수급자는 835.81유로(2014년 5월 지급액 기준)이다.

## 최저연금

### 최저 연 크레딧

경력기간 내내 소득이 낮거나 시간제로 근로한 연금 수급자의 경우 해당 연금 수급액을 높이기 위해 소득을 실제보다 일정수준 높게 인정하는 크레딧제도를 두고 있다. 연 소득 22,466.73유로 미만(2013년 9월 1일에 적용된 액수)은 이 소득수준으로 적용된다. 최저소득 크레딧을 얻으려면, 전일제 고용의 1/3에 해당하는 15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필요하다(이렇게 되면 45년의 기여이력을 가진 전일제 근로자 개인의 실질최저연금이 경력기간 중 매 1년 당 이 수준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최저 연 크레딧의 적용 시 “가족연금” 지급률을 적용받은 연금의 경우 최대 17,866.12유로, “독신자연금” 지급율을 적용받은 연금의 경우 최대 14,292.89유로를 초과할 수 없다. 만일 연금을 산정한 결과 이러한 연금이 나온다면 “최저 연 크레딧” 적용은 연금이 이 한도를 초과할 때까지는 모든 적격 경력 년수에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 최저 소득비례연금

최저 소득비례연금도 있는데 기여기간 조건(45년)을 충족한 연금 수급자에 대해 독신자의 경우 13,480.03유로였으며 피부양배우자가 있는 경우 16,844.72유로였다. 완전경력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가 전체 기여 년수의 최소 2/3를 채웠다면 위의 최저연금에 비례하여 급여액이 산정된다. 기여액이 낮은 경우 급여액은 급여산식의 적용을 통해 산정하게 된다(최저연금에 맞춰 급여를 “상향 조정”하지 않는다).

최저연금은 특정 소비상품을 제외한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조정된다. 연금은 누적 물가상승률이 최근 조정 이후 특정 기준(2%)을 넘을 때마다 2%씩 인상된다.

연금 수급자는 여기에서 설명한 최저연금과 산정된 연금 중 높은 액수의 연금을 받게 된다(경력기간 조건을 충족한 이들의 경우 궁극적으로 “최저 연 크레딧” 적용).

## 연금 보너스

2007년 1월 1일부터 2014년 이전까지 연금의 경우, 62세 이후부터 최대 법적 연금수급연령까지의 근로 또는 44년의 기여기간을 초과한 경우 “세대 협약(generation pact)”에 따라 근로기간 1일 당 2,297.4유로(2013년 1월 1일 기준)의 보너스(물가에 연동)를 받게 되며 한도는 근로기간 중 만근한 1년 당 716.78유로이다. 정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를 개혁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근로자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일했는지에 따라 연금 보너스가 누적적으로 적용되도록 했다(6년을 더 근로한 경우 1일 당 최저 1.5유로에서 최대 2.5유로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연금 보너스”는 이미 권리를 취득한 자를 제외하고 제도 내 신규 진입자에 대해 철폐되었다.

정상 연금수급연령 이후의 근로는 전액연금을 확보하기 위해 경력기간의 공백을 메우거나 연금 액수를 높이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는데 연금액 산정 시 최근 45년의 기간만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 안전망 소득: 선별적 연금

직업상 경력이 없어 연금 수급권이 없거나 수급가능 연금액이 매우 낮은 노인들의 경우 자산조사형 안전망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소위 GRAPA(기초노령연금)는 사회부조제도의 일부로 사회보장급여

(모형화된 민간부문 근로자에 대한 법정연금 등)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노인들을 위한 자산조사적 안전망 소득은 개인 수급자의 경우 매달 1,011.70유로이며 타인과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 674.46유로이다. 이번에도 특정 상품을 제외한 물가에 연동된다. 자산조사 시 통상의 연금소득은 수령액의 90%만 가용자원으로 고려된다.

수급가능연령은 65세이며 조기 수급이 불가능하다.

### 자발적 사적연금

산업부문별 보완적 연금제도는 2층 연금제도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2003년에 도입되었다. 기여율은 (부문별) 단체 노동협약을 통해 정해지며 경제 부문별로 다를 수 있다(모형에 사용된 기여율은 4.25%이다).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2014년 1월 1일부터 조기수급은 기여기간이 39년인 경우 61세부터 가능하다. 이 조건은 점차 상향 조정되어 2016년 1월 1일에는 기여기간 40년에 조기수급연령이 62세가 될 전망이다(아래 표 참조). 장기 경력자(40년 이상)들에 대한 조기수급은 “정상” 조기수급연령 이전에도 여전히 가능하다. 피용자 연금제도에서는 조기수급 시 계리적 감액이 없다. 그러나 경력기간의 단절로 인해 (기여기간이 45년 미만인 경우) 전액연금을 수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 조기수급과 근로를 병행할 기회를 제한하는 소득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정상수급연령 이후에 적용되는 소득조사보다 더 엄격하다.

시작일	조기수급연령	경력기간	예외
2013년 1월 1일	60.5	38	60세, 40년 경력
2014년 1월 1일	61	39	60세, 40년 경력
2015년 1월 1일	61.5	40	60세, 41년 경력
2016년 1월 1일	62	40	60세, 42년 경력 또는 61세, 41년 경력

조기수급연령이 추가로 상향 조정되어 2019년 1월 1일에는 63세, 42년 경력이 될 것이라고 새 정부의 합의가 발표되었다.

### 수급연기

정상연금수급연령 이후로 연금 수급을 연기할 수 있다. 정상수급연령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로하는 사람들의 경우 수급연기를 통해 단절된 경력기간을 매워 완전연금액을 받거나 연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급여액 산정에 사용되는 기간이 최종 45년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상수급연령 이후에) 한도 내에서 연금과 소득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 소득이 22,509유로(독신자) 또는 27,379유로(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미만인 경우 연금은 감액되지 않는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연금액은 소득 초과분만큼 감액된다. 만일 실질소득이 한도를 25% 초과하면 연금액은 전액 취소된다(소득이 한도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2013년부터 추가적인 개정조치가 적용되어 최소 42년의 경력을 가진 65세 이상의 퇴직자에 대해서는 한도가 완전히 사라져서 연금과 소득의 결합에 제한이 없게 된다. 새 정부는 65세 이상의 소득과 연금의 결합에 대한 모든 제한을 추가로 철폐할 것을 발표했다.

법적(정상) 수급개시연령 이전에는 연금과 소득의 합산액 한도는 각각 7,793유로 또는 11,689유로이며, 25% 소득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 육아

육아의 경우 최대 총 3년이 유급 고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근로자가 소위 “양육크레딧(Tijdskrediet)”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이다. 양육크레딧은 민간부문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권리이다. 양육크레딧이 시작되기 이전 최소 12개월 중 3/4 이상을 일했다면 노동활동을 중단하거나 노동시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단, 양육크레딧(tijdskrediet) 적용 전 15개월 중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면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기간은 급여산정 시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이때 인정소득은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직전의 소득이 적용된다.

### 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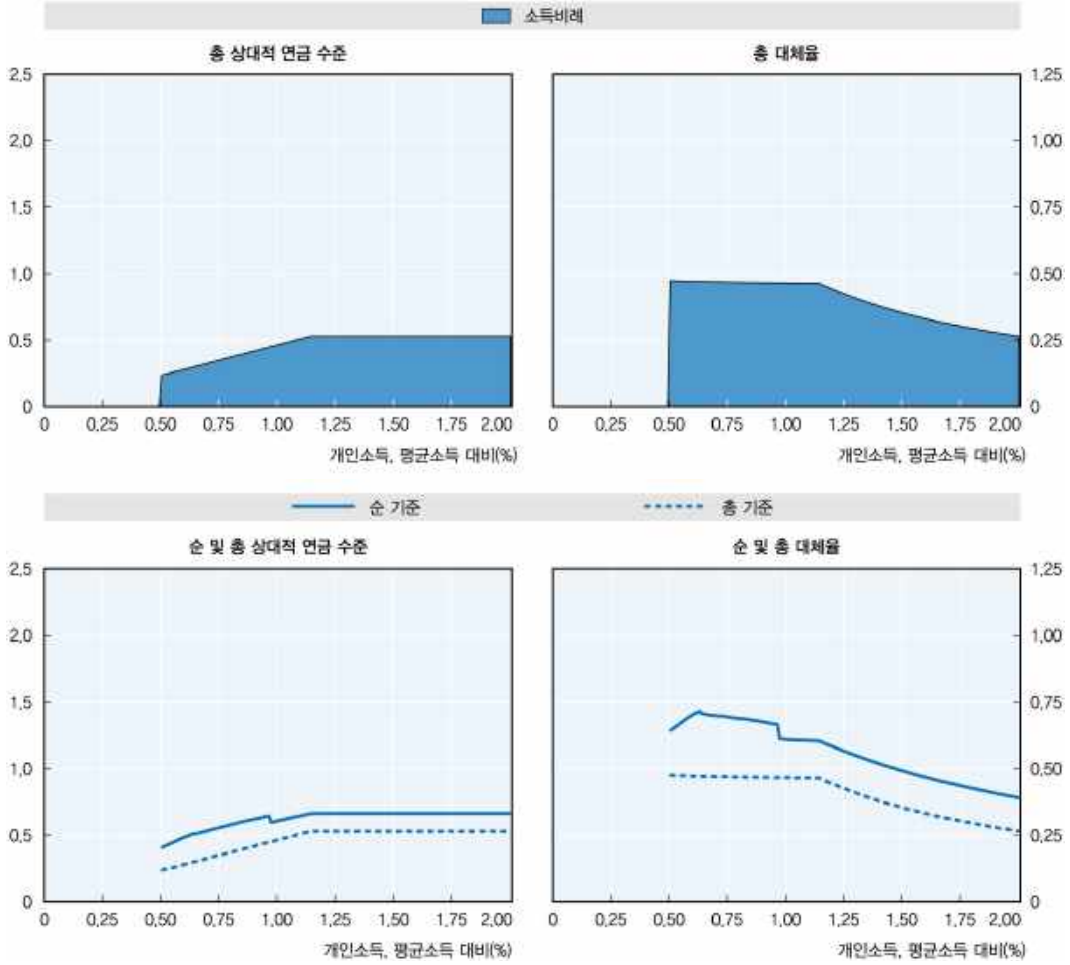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연금제도상 크레딧을 인정받는다. 급여액 산식에서 실업 년수가 분자로 들어가고, 2012년까지는 실업 직전 소득이 전체 실업기간에 대한 산정 기준으로 사용된다.

2012년 11월 1일 이후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게 된 사람들의 경우, 실업기간에 대한 크레딧 인정 방식이 55세 미만 실업자에 대해 변경되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소위 “3기”(실업급여가 1일에 대한 정액으로 산정되고 더 이상 손실임금에 대한 비율에 근거하지 않는 시점 - 실직 후 최대 48개월 이후)부터 실업기간의 인정은 손실임금이 아닌 “최저 연간크레딧”에 근거하여 산정된다. 2012년 11월 1일 현재 실업 “3기”에 들어선 55세 이상 실업자의 경우 추가적 크레딧 인정은 손실임금에 근거한다. 50세 생일 이후 실직하게 된 사람들의 경우, 55세 이후의 “제3기”에 대한 크레딧 인정은 손실임금에 근거하여 역시 이루어진다.

2012년 이래 “고용주 보충실업급여제도” 내에 있는 실업자의 경우 59세 이후 실업기간의 크레딧 인정은 손실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59세 이전 기간은 “최저 연간크레딧”에 근거해서 인정된다(2012년 11월 28일 이전에 제도 내에 이미 있던 사람은 제외 - 손실임금에 근거한 인정).

크레딧 인정 년수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크레딧 인정 후 총 경력기간이 4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연금 모형화 결과: 2059년 벨기에, 수급연령 65세



기준 시나리오: 입법 시나리오(안전망 제도의 물가 연동)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23.8	35.2	46.6	53.0	53.0	53.0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40.7	55.8	60.9	66.4	66.4	66.4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47.6	46.9	46.6	35.3	26.5	17.7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64.2	69.4	60.9	49.1	39.0	27.7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8.3	8.2	8.1	6.1	4.6	3.1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9.5	9.4	9.3	7.1	5.3	3.5
순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8.1	7.4	6.1	4.4	3.3	2.2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9.4	8.5	7	5.1	3.8	2.5

가정: 실질소득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연금 모형화 결과: 2059년 벨기에, 수급연령 65세(계속)**

대안적 시나리오: 안전망 제도의 완전 임금 연동						
남성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29.1	35.8	47.2	53.6	53.6	53.6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49.9	56.4	61.5	67.0	67.0	67.0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58.3	47.8	47.2	35.8	26.8	17.9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78.6	70.1	61.5	49.5	39.3	27.9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0.1	8.3	8.2	6.2	4.7	3.1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1.5	8.6	7.1	5.1	3.8	2.6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http://dx.doi.org/10.1787/888933301339>

## 브라질

### 브라질: 2014년 연금제도

RGPS(Regime Geral de Previdência Social)는 민간부문 근로자들이 가입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고용주와 종업원이 분담하는 기여금(payroll tax)을 통해 재원이 마련되며 판매세를 통한 세수와 연방정부 전입금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한다. 이 제도는 의무가입의 부과방식 단일층(single-pillar) 제도로 국가사회보장국(National Social Security Institute)에서 운영한다.

### 핵심 지표: 브라질

		브라질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브라질 헤알(BRL)	19,312	106,417
	미달러(USD)	7,267	40,007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	7.4	7.9
기대여명	출생 시	73.8	80.0
	65세 시점	18.3	19.3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대비 %	8.0	16.2

<http://dx.doi.org/10.1787/888933301766>

## 수급요건

민간부문 근로자들은 기여 년수 혹은 연령을 근거로 하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전액 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기여 년수를 기준으로 한 은퇴는, 남성의 경우 35년, 여성의 경우 30년간 기여를 했다면, 어느 연령에서도 연금수급이 가능하다. 이 옵션이 민간부문 근로자의 가장 흔한 은퇴경로이다. 연령을 근거로 한 은퇴는 기여 년수가 최소 15년 이상이라면 남성 65세, 여성 60세부터 가능하다.

기여액은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른데, 1,317.07헤알까지 월 소득의 8%, 1,317.08헤알에서 2,195.12헤알까지는 월 소득의 9%, 2,195.13헤알에서 4,390.24헤알까지는 월 소득의 11%를 낸다.

## 급여 산정

### 소득비례연금

급여는 1년에 13회 지급되며, 급여액은 매년 조정된다.

최저 수준을 초과하는 연금은 소비자물가지수(CPI)의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 기여 년수를 근거로 한 수급액

급여액은 최고 월 소득의 80%의 평균값에 “Factor Previdenciario”를 곱한 값이다. “Factor Previdenciario”는 보험 가입자의 기여율, 기여기간, 연령, 기대여명에 근거한 계리적 계수(actuarial coefficient)이다. 기여 년수에 근거하여 은퇴하는 남성의 경우, 최저 기여 년수 35년을 고려하면 이 곱셈을 통해서 64세 이전에 은퇴 시 급여액이 삭감되고 이후에는 증가한다. “Factor Previdenciario”는 기여 년수가 15년, 20년, 25년인 육체적으로 고된 근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 = \frac{T_c \times a}{E_s} \times \left[ 1 + \frac{(I_d + T_c \times a)}{100} \right]$$

$f$  = “Fator Previdenciario”

$T_c$  = 근로자 기여기간

$a$  = 기여율 31%

$E_s$  = 근로자의 은퇴 시 기대여명

$L_d$  = 근로자의 은퇴 당시 연령

### 연령을 근거로 한 수급액

급여액은 최고 월 소득의 80%의 평균에 70%를 곱하고 12개월 기여 시 마다 1%p를 더하며 100%가 상한선이다. 이 결과치는 이 계수가 1.0보다 높은 경우에만 “Fator Previdenciario”를 곱한다. 급여액 산정을 위한 최저 및 최대 월 소득은 기여 년수를 근거로 한 노후소득과 동일하다.

### 최저연금

급여액 산정에 사용되는 최저 월 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과 동일하다(724헤알). 급여액 산정에 사용되는 최고 월 소득은 4,390.24 헤알이다. 최저 월 기여액에 대한 최저연금은 법정 월 최저임금과 동일하다. 최저연금을 받는 민간부문 연금 수급자의 2/3에 대한 연간 조정액이 최저임금의 연간 조정액과 동일한데 이는 지난 10년간 소비자 물가보다 훨씬 빨리 상승하고 있다.

### 고령인구를 위한 사회부조 프로그램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조건에 근거한 퇴직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이들을 위해 연금과 유사한 부조 프로그램도 두고 있다. BPC-LOAS는 고령인구(남성과 여성 모두 65세 이상)나 1인당 가구소득이 최저임금의 1/4(하한선) 미만인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지원금을 받으며 조건은 2년에 한번씩 개정된다. 수급자가 정부로부터 다른 비기여성 급여를 받을 수는 없지만, 다른 가구 구성원이 받는 사회부조는 감안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가구 구성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 급여는 감안된다. 관리(Logistics)는 INSS(의학인증 및 자산조사)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급여에 대한 책임은 사회개발부와 기근대책기구(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Fight Against Hunger: MDS)에 있다.

60세 이상 남성과 55세 이상 여성으로 시골지역에서 최소 180개월 이상 근로한 사람들을 위한 지방연금(Previdencia Rural)이라는 급여도 있다. 급여액은 최저임금과 같다.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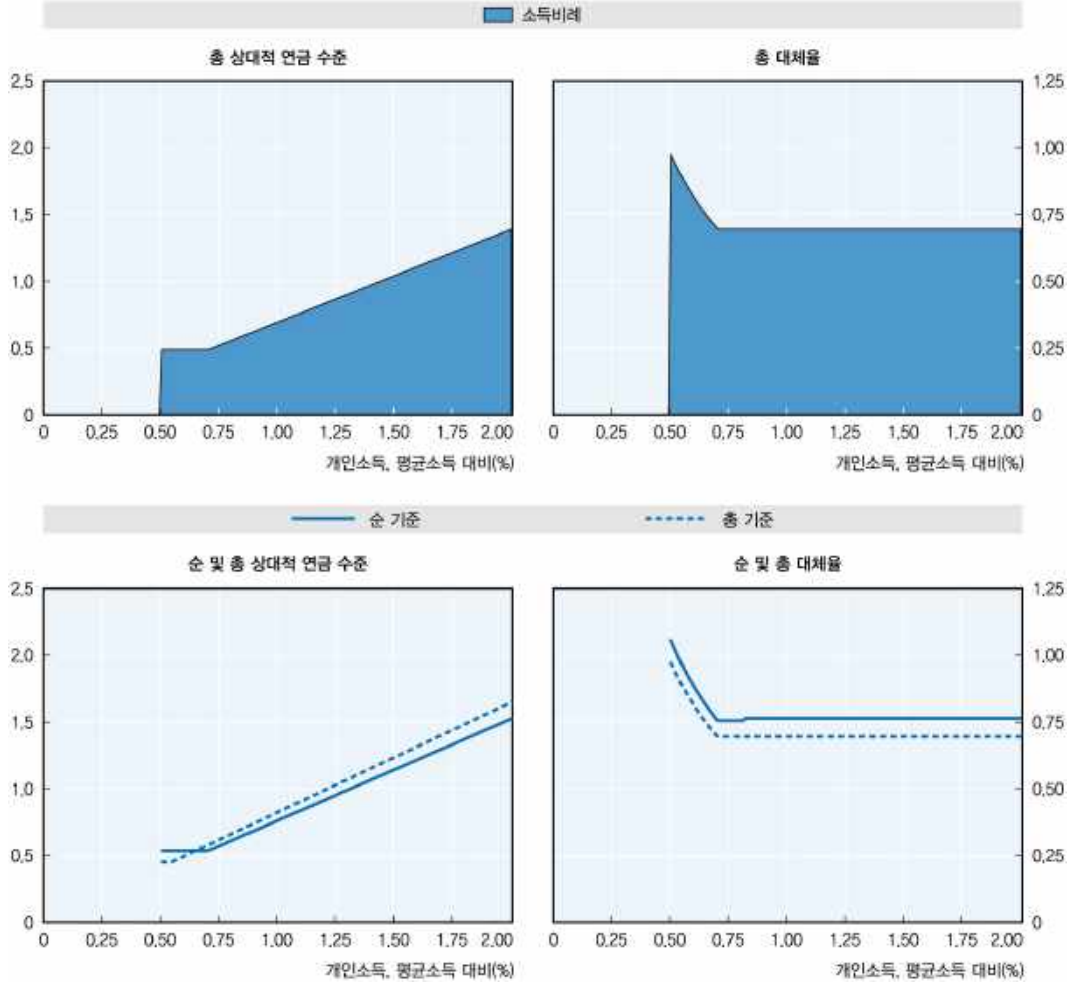
조기수급은 기여 년수가 최소 30년인 53세 남성 또는 기여 년수가 최소 25년인 48세 여성에게 허용된다. 연금공제가 이 경우 “Fator Previdenciario”를 통해서 적용된다. 이 규칙은 1998년 이전에 기여하고 있던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된다. 조기수급액의 가치는 그 적분 값(integral value)에 비례하며 최소 5년간의 추가기간 동안 기여를 해야 한다. 이 규칙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 수급연기

연금은 근로와 병행해서 수급할 수 있으므로, 연금 수급을 연기하는데 대한 인센티브는 없다.



연금 모형화 결과: 2049년(2044년) 브라질, 수급연령 55세 남성(여성의 경우 50세)



기준 시나리오: 입법 시나리오(최저연금의 임금 연동)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48.7	52.1	69.5	104.2	139.0	189.6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53.6	57.3	76.4	114.6	152.7	208.3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97.5	69.5	69.5	69.5	69.5	63.2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105.9	75.5	76.4	76.4	76.4	69.3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24.2	17.3	17.3	17.3	17.3	15.7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26.7	17.8	14.5	14.5	14.5	13.2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4년임.

<http://dx.doi.org/10.1787/88893301347>

## 캐나다

### 캐나다: 2014년 연금체계

연금체계는 정액급여를 제공하는 기초 연금과 이를 보완하는 소득조사형 보충 급여, 공적 소득비례연금, 자발적 사적 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핵심 지표: 캐나다

		캐나다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캐나다달러(CAD)	49,481	46,373
	미달러(USD)	42,689	40,007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	4.3	7.9
기대여명	출생 시	81.4	80.0
	65세 시점	20.3	19.3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대비 %	16.0	16.2

<http://dx.doi.org/10.1787/888933301770>

## 수급요건

기초노령연금(OAS)은 거주에 근거한다. 18세 이후부터 최대 40년간 캐나다 거주 시 최대액을 받으며, 1년에 대해 최대 연금의 2.5%를 받는다. 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10년의 거주이력이 필요하다. 현재는 65세부터 지급 가능하다.

2023년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과 최저소득보장급여(GIS)의 수급가능연령이 65세에서 점진적으로 67세로 상향 조정되며 2029년 1월부터 전면 시행이 예상된다.

소득비례제도인 캐나다연금제도(CPP)의 경우 정상 수급개시연령은 65세이지만 60세부터 조기수급 청구도 가능하며 70세까지 연기연금 청구가 가능하다.

## 급여 산정

### 기초연금

OAS 연금의 2014년 완전연금액 수준은 6,676.59캐나다달러였다. 기초연금의 가치는 물가에 연동한다.

이 연금은 조세제도에 의한 소득조사의 대상이 된다(“환수”). 2014년의 경우 71,592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연간 소득에 대해 15%의 비율로 기초연금이 감액된다. 환수 기준액은 물가에 연동된다.

### 선별적 연금

최저소득보장급여(GIS)가 기초노령연금(OAS)에 추가적으로 지급된다. 두 급여의 합산액은 2014년 독신 수급자의 경우 최대 15,729.69캐나다달러였다.

GIS는 기초연금 외 소득에 대해서는 감액을 50%가 적용되지만 근로소득 하한금액인 3,500캐나다달러에 대해서는 면제된다. GIS는 가격에 연동된다.

### 소득비례연금

소득비례연금은 캐나다연금제도(CPP) 및 퀘벡연금제도(QPP)에서 제공한다. CPP와 QPP는 대체로 비슷한 급여액을 지급한다. 이 제도는 연금산정대상이 되는 소득상한(YMPE)까지의 생애 평균소득(단, 총 가입기간에서 소득이 낮은 기간의 17%를 제외)의 25%를 목표 소득대체율로 잡고 있다. 퇴직

전 소득은 전체 근로자 소득에 따라 재평가된다. 급여를 전액 수급하려면 약 39년의 기여 연수가 필요하며 근로 이력이 짧아지면 비례해서 급여액이 감액된다. 2014년 소득비례퇴직연금의 최대액은 월 12,780캐나다달러였다.

연간 3,500캐나다달러 미만 소득자는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기여 상한선, 즉 YMPE는 2014년에 52,500캐나다달러였다. 기여 하한은 명목기준으로 동결되어 있지만 상한선은 평균소득의 증가에 연동된다. 소득비례연금 급여액은 물가에 연동된다.

### 자발적 사적연금

확정기여형(DC)으로 가정하는 부가적인 자발적 연금이 있다. 기여율은 8.5%로 가정한다.

## 경력차이

### 조기수급

조기수급은 공적 소득비례제도의 경우 60세부터 가능하며 감액되는 급여액은 5년에 걸쳐 점차 늘어난다. 감액률은 2011년에 1년당 6%였으며 점차 증가하여 2016년에 7.6%가 된다. 조기수급은 다른 두 개의 공적제도(기초연금과 자산조사적 연금)에서는 불가능하다.

### 수급연기

개인은 65세 이후에 최대 5년까지 기초노령연금(OAS) 수급을 연기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연기된 수급액은 매해 7.2%씩 늘어나며 70세에 최대 36%까지 증가할 수 있다. 소득조사적 연금은 수급을 연기할 수 없다.

소득비례연금은 수급을 연기할 수 있으며 65세부터 최대 5년까지 매년 급여액이 증가한다. 2014년에는 1년당 8.4%가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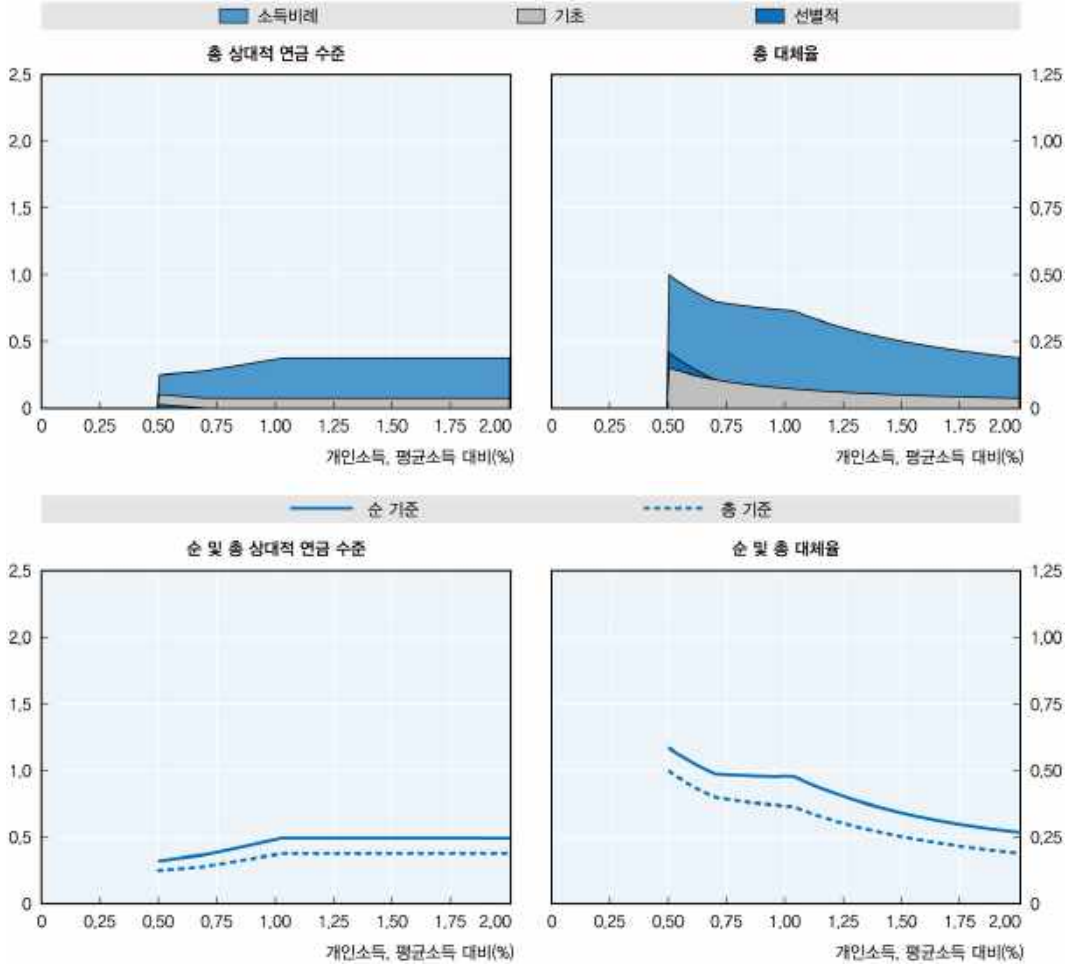
### 육아

7세 미만 자녀를 돌본 육아기간은 생애평균소득 산정을 위한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며 소득비례연금 제도 상의 기여 연수에서도 빠지게 된다.

### 실업

최대 17%까지의 기여 연수가 소득비례제도의 평균소득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실업, 질병, 학업기간 등의 기간을 보상하기 위함이다. 실업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크레딧은 없다.

연금 모형화 결과: 2061년 캐나다, 수급연령 67세



기준 시나리오: 입법 시나리오(선별적 제도의 물가 연동)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25.0	29.4	36.7	37.7	37.7	37.7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32.7	38.4	47.9	49.2	49.2	49.2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50.1	39.2	36.7	25.1	18.8	12.6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58.5	48.5	47.9	34.1	26.7	19.2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8.5	6.7	6.2	4.3	3.2	2.1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9.6	7.5	7.0	4.8	3.6	2.4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연금 모형화 결과: 2061년 캐나다, 수급연령 67세(계속)**

대안적 시나리오: 선별적 제도의 완전 임금 연동						
남성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39.1	42.7	46.4	46.9	46.9	46.9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51.0	55.8	60.4	60.9	60.9	60.9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78.2	57.0	46.4	31.2	23.4	15.6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91.4	70.4	60.4	42.2	33.1	23.7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3.3	9.7	7.9	5.3	4.0	2.7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3.3	9.7	7.9	5.3	4.0	2.6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http://dx.doi.org/10.1787/888933301359>

## 칠레

### 칠레: 2014년 연금체계

연금체계는 3층 제도, 즉 재분배성 연금(1층), 강제적 개인계정연금(2층), 자발적 연금(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1년에 도입된 개인계정제도는 확정기여형(DC)이다.

### 핵심 지표: 칠레

		칠레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칠레페소(CLP, 백만)	7.02	24.2
	미달러(USD)	11,588	40,007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	3.2	7.9
기대여명	출생 시	79.8	80.0
	65세 시점	19.6	19.3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대비 %	10.6	16.2

<http://dx.doi.org/10.1787/888933301786>

## 수급요건

### 확정기여형(DC) 연금

정상 수급연령은 남성의 경우 65세, 여성의 경우 60세이다. 연금 급여는 이 연령 이후 어떤 시점 이견 수급이 가능하다. 개인은 연금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근로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

### 기초 및 보충연금제도

기초연대연금(PBS)은 다른 연금이 없는 개인에 대한 급여이다. PBS는 65세부터 지급가능하며 소득 하위 60% 노인에게 지급된다. 연금수령은 칠레에 최소 20년 이상 거주하고 수급신청 전 5년 중 최소 4년간 거주한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연금액수가 적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대연금(APS)이란 이름의 보충복지연금이 있다. 이는 확정기여형(DC)연금이 특정 액수, 즉 최대 복지연금(PMAS) 기준선 미만일 때 지급된다. 이 급여에 대한 수급요건은 PBS의 수급요건과 동일하다.

## 급여 산정

### 확정기여형(DC) 연금

개인계정제도의 기여율은 소득의 10%이다. 기여율 외에도 관리비용이 따로 부과된다. 기여액에는 한도가 있으며 2014년 12월에 72.3“UF”(인플레이가 반영된 실질 단위)로 설정되었는데, 이는 월 1,780,539칠레페소였다(2014년 12월 최저임금의 7.9배임). 한도는 실질 소득증가에 연동된다.

은퇴 시, 누적된 자본은 즉시종신연금(immediate life annuity)을 구입하거나 거치종신연금(deferred life annuity)과 함께 일시금을 받거나 혹은 프로그램화된 인출을 실시하거나 프로그램화된 인출과 함께 즉시종신연금을 구입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장례비용 충당을 위해 개인연금계정으로부터 15UF의 일시금 인출이 가능하다. 의도적으로, 성별에 따른 연금지급율(annuity rate)을 사용하고 보험계리적으로 공정한 연금액을 지급한다는 전제하에 대체율이 산정된다.

### 기초연금

기초연대연금(PBS)은 2014년 12월에 85,964칠레페소였다. 기초연대연금(PBS)은 물가에 연동된다. 2008년 개혁을 통해서 또한 이전의 최저연금을 대체하는 연대연금(APS)이라는 명칭의 연금소득조

사형 보충급여가 도입되었다. 이 새로운 보충연금의 목표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은퇴 후 생활수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충급여는 기초연대연금(PBS)값에서 최대복지연금(PMAS)값에 대한 PBS의 비율을 뺀 후 확정기여형(DC) 연금값을 곱한 것이다. 2014년 12월 기준 PMAS 가치는 279,427칠레페소였다. 기준이 되는 PBS 대 PMAS 비는 30.7%이다.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조기수급은 확정기여형(DC)제도의 경우 계정에 축적된 자본이 일정기준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연령에서건 허용된다. 첫 번째 조건은 급여액이 PMAS의 8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은 연금 인출 전 10년간의 소득 및 임금 대비 대체율이 최소 70%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상 수급개시연령은 특정 직종의 육체적으로 고된 근로조건에 대해 5년당 1년 또는 2년씩 줄어든다. 최대 10년까지 줄어들 수 있다.

### 수급연기

정상 수급개시 연령 이후로 연금 수급을 연기할 수 있다.

### 육아

최대 24주간 소득대체급여를 받는 근로여성(워킹맘)을 위한 육아휴직이 있다. 이 24주 중 처음 18주는 모에게만 주어진다. 19번째 주에서 24번째 주 동안 모가 급여를 아버지에게 양도할 기회가 있다. 대체급여는 출산 전 최근 3개월 임금의 평균에 기초하여 산정되는데, 상한선이 연금 기여금과 동일하다. 급여는 자녀 수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이 기간 동안 연금제도에 대한 의무 10% 기여금은 육아휴직급여에서 지불된다. 이 급여는 수급가능연령을 낮추지는 않지만 연금을 늘리는데 이는 저축액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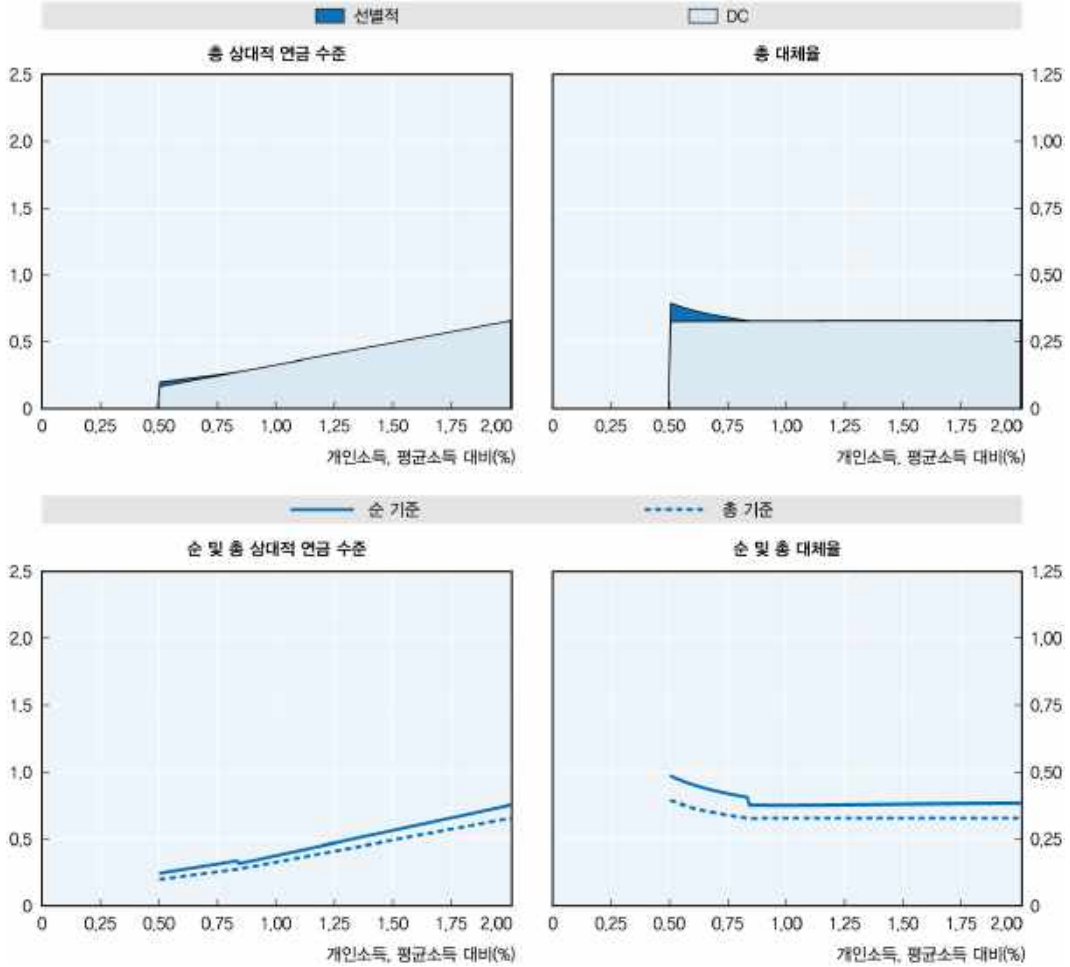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1세 미만 자녀가 중병에 걸렸을 때 어머니는 의사가 아기를 돌보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의료휴직을 가질 자격이 주어진다. 의료휴직은 어머니(어머니가 아버지로 결정한 경우는 아버지)가 임금을 수령하고 자녀를 위한 병가에 대한 강제적 기여금을 통해 연금을 늘릴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여성은 자녀 한 명당 1개의 연금 바우처를 받는다. 이 급여는 65세에 신청 가능하다. 바우처는 출산시점의 최저임금 18개월분의 10%에 출산 시부터 연금 수급 시까지의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의 평균 순 수익률을 더한 값이다. 평균금리는 사적연금의 “펀드 C”에 대해 산정되는데, 이는 위험 및 수익의 상충관계의 중간값이다. 이것은 여성이 연금 수급신청을 할 때 연금으로 전환된다.

### 실업

연금 크레딧은 없다.

연금 모형화 결과: 2059년 칠레, 수급연령 65세



기준 시나리오: 입법 시나리오(선별적 제도의 물가 연동)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19,7	25,4	32,8	49,3	65,8	98,8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24,3	31,4	37,7	56,6	75,6	113,4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39,4	33,9	32,8	32,9	32,9	32,9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48,7	41,8	37,7	38,0	38,4	37,9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6,9	6,0	5,8	5,8	5,8	5,8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7,4	6,2	5,4	5,4	5,4	5,4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4년임.



**연금 모형화 결과: 2059년 칠레, 수급연령 65세(계속)**

대안적 시나리오: 입법 시나리오(선별적 제도의 완전 임금 연동)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25.9 24.5	31.6 29.6	37.3 34.6	49.2 44.6	65.7 57.7	98.7 86.7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32.0 30.3	39.0 36.5	46.1 42.7	56.5 55.1	75.4 66.3	113.3 99.5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51.8 49.1	42.2 39.4	37.3 34.6	32.8 29.7	32.8 28.9	32.9 28.9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64.0 60.6	52.1 48.7	46.1 42.7	37.9 37.0	38.3 33.6	37.8 33.2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9.1 9.8	7.4 7.9	6.6 6.9	5.8 6.0	5.8 5.8	5.8 5.8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9.1 9.8	7.4 7.9	6.6 6.9	5.4 6.0	5.4 5.4	5.4 5.4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4년임.

<http://dx.doi.org/10.1787/888933301360>

## 중국

### 중국: 2014년 연금체계

중국의 연금제도는 기초연금과 강제적 근로자 기여를 전제로 하는 확정기여형 연금의 2층 구조이다. 후자의 제도는 1998년에 도입된 이후 2006년에 대폭 개정되었다. 가입 대상은 도시 근로자이며 파라미터 중 많은 수가 성(province) 단위(국가 단위가 아님)의 평균소득에 좌우된다.

### 핵심 지표: 중국

		중국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위안화(CNY)	56,339	248,313
	미달러(USD)	7,267	40,007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		7.9
기대여명	출생 시	75.2	80.0
	65세 시점	15.6	19.3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대비 %	9.5	16.2

<http://dx.doi.org/10.1787/888933301799>

## 수급요건

정상 수급개시연령은 남성의 경우 60세, 노동직 여성은 50세이며 사무직 여성은 55세이다.

## 급여 산정

###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기여 연수가 최소 15년 이상이어야 수급 가능하며, 연금 지급률은 가입기간 1년에 대해 재평가된 개인의 임금과 성(province) 단위 평균소득의 평균값의 1%이다. 연금 지급액은 임금과 물가의 결합에 연동되는데 최근에는 약 10%이다. 모형에서는 연금액이 매년 임금에 50% 연동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 확정기여형(DC) 연금(적립식 또는 명목계정)

2층 제도는 개인계정으로 구성된다. 북동부에 위치한 성(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외에도 8개 성이 적립식 개인계정제도를 갖고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계정은 대체로 명목계정이며 명목상 금리가 적용된다.

근로자는 개인계정제도에 임금의 8%를 납부한다. 펀드 또는 명목계정에 누적된 잔액은 연금 수급 시점에 연금 지급액으로 전환되며 개인의 은퇴연령과 국가 평균 기대수명에 따라 정부가 결정한 연금화 계수로 잔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모든 성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공히 적용되는 (월 급여액에 대한) 연금화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령	40	45	50	55	60	65	70
계수	233	216	195	170	139	101	56

## 경력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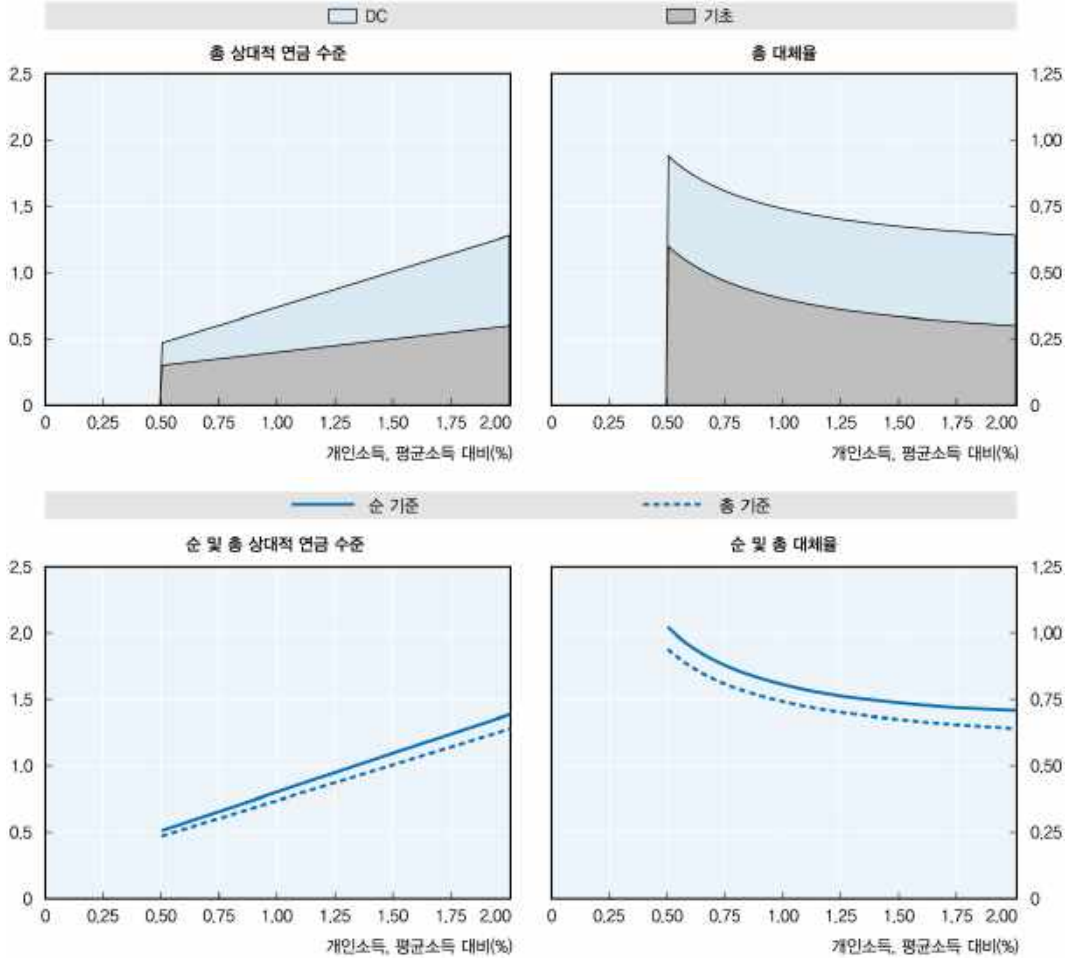
### 조기수급

특정 산업이나 직위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남성 55세, 여성 50세에 수급이 가능하다.

### 수급연기

정상 연금수급연령 이후로 연금 수급을 연기할 수 있지만 연금 급여액은 재평가되지 않는다.

연금 모형화 결과: 2054년 중국, 수급연령 60세(남성)



기준 시나리오: 입법 시나리오남성

남성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47.0	60.5	74.0	101.0	128.0	182.1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51.1	65.8	80.5	109.8	138.8	194.4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94.0	80.7	74.0	67.4	64.0	60.7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102.2	87.7	80.5	73.6	70.7	68.2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7.3	14.9	13.7	12.4	11.8	11.0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20.3	17.5	16.2	14.8	14.1	13.3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계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4년임.

<http://dx.doi.org/10.1787/888933301373>

## 체코

### 핵심 지표: 체코

**체코: 2014년 연금체계**  
 체코의 연금체계는 공적연금제도와 의무 가입(단, 최초 가입 후 탈퇴 불가)의 적립식 사적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공적연금은 기초급여와 누진적 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소득비례급여를 가지고 있다.

		체코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코루나(CZK)	312,084	915,586
	미달러(USD)	13,637	40,007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	8.9	7.9
기대여명	출생 시	77.6	80.0
	65세 시점	17.3	19.3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대비 %	17.6	16.2

<http://dx.doi.org/10.1787/888933301805>

## 수급요건

표준 연금수급연령은 현재 남성의 경우 62세 8개월이고 여성의 경우 61세 4개월이다. 표준 연금 수급연령은 출생집단별로 2개월씩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상한선이 없다. 여성의 수급가능연령은 4개월씩 연장되고 있으며, 2019년부터 6개월씩 연장되어 남성의 수급가능연령과 같아질 것이다. 이는 1975년 출생자의 경우 66세 8개월이 될 전망이다. 연금 수급을 위해 최소 25년의 가입기간이 필요했으나 점차 늘어나서 35년이 될 예정이다(중도에 기여기간 공백이 없으면 30년임). 그러나 가입기간이 15년(점차 연장되어 20년 또는 기여기간 공백이 없는 경우 15년)인 사람들은 출생연도가 동일한 남성의 수급개시연령보다 5년 후부터 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 급여 산정

### 기초연금

기초연금 액수는 법정 평균임금의 9%이다. 2014년 기준 연간 급여액은 28,080코루나이다.

### 소득비례연금

소득비례연금은 재직 1년당 소득의 1.5%를 지급한다. 소득 측정지표는 현재 1986년부터 시작해 모든 연도에 걸쳐 평균을 내고 있지만 점차 생애평균에 도달하게 된다. 과거소득은 국가차원의 평균 소득 증가율에 연계된다.

누진적 급여산식이 사용되는데, 이 산식에 따라 소득기준선이 적용되어 평균 경력소득을 산정기준값으로 감액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첫 기준선은 평균임금의 44%이며 두 번째는 400%이다[5년의 과도기간 때문에, 2014년의 수치는 미래(과도기간 이후) 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값과 다르다. 그러나 임금과 물가는 2014년 것을 사용했다]. 2014년 첫 번째 감액 기준선은 11,415코루나이며 두 번째는 103,768코루나이다. 첫 번째 기준선까지의 소득은 100% 대체되며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선 사이는 26%가 대체된다. 두 번째 기준선을 초과하는 소득은 고려되지 않는다.

종합한 총 평균 연금 급여액(정액 및 소득비례요소)이 물가상승률의 100%(2013-14년 물가상승률의 1/3에 불과)에 실질 임금상승의 1/3을 더한 만큼 상승하는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소득비례연금 요소에 대한 법정 연계요건이 있을 예정이다.

## 최저연금

신규 제공된 최저 월 공적연금 급여액의 총 가치는 3,110코루나이며 최저 소득비례연금 770코루나와 기초연금 2,340코루나로 구성되어 있다.

## 사회부조

최저생계비는 단일 기준으로 설정되며, 기본적인 생계와 기타 개인적 필요충족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개인(그리고 독거 연금 수급자)의 최저생계비는 월 3,410코루나였다. 주택의 사회적 보호 문제는 주택보조금을 제공하는 국가사회복지제도의 프레임워크와 주택에 대한 추가세금(surcharge)에 의한 물질적 부조제도 안에서 해결된다.

## 자발적 사적연금

2013년 1월 현재 모든 가입자는 사적으로 관리되는 적립식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적립식 제도への 참여는 취소할 수 없다. 강제적 완전적립식 제도는 총 소득의 5% 상당의 기여금으로 재정을 충당한다. 동시에 소득비례적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개인의 기여율은 3%p 낮아졌다(28%에서 25%로). 그 결과 가입자의 총 기여율은 총 소득의 30%로 증가했다.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기여율 감소는 공적연금의 소득비례요소의 지급율에 영향을 미친다. 지급율은 개인의 적립식 제도 기여기간에 대해 매년 1.2%(1.5% 아님)씩 감소한다.

기여금은 민간 연금회사에 의해 운영되는 개인계정에 축적되며 가입자가 연금에 대한 저축 할당의 조합으로 선택한 개인적 투자전략에 따라 투자된다. 각 연금회사에서는 수익-위험 프로파일이 서로 다른 4개의 연금펀드를 제공한다.

공적연금제도로부터 연금이 제공되면 가입자는 이 적립식 제도로부터 저축액 인출을 시작할 수 있다. 인출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평생연금, 추가 3년간의 유족연금이 있는 평생연금, 20년 기한 연금이 그것이다.

추가적인 자발적 연금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확정기여형(DC)으로 가정했다. 기여율은 2.8%로 가정했다.

자발적 사적연금제도는 기본 사례에 모형화되어 있지 않다.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가입기간 25년이면 표준 수급개시연령보다 3년(5년으로 증가, 그러나 60세 미만은 불가) 일찍 수급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일반 자격요건에 따라 35년까지 증가하고 있다. 총 지급계수(즉, 기여 연수를 지급률로 곱한 것)는 조기수급의 첫 360일간 90일마다 0.9%씩 영구 감액(연 3.6%)되며 361일째부터 720일까지는 90일당 1.2%씩(연 4.8%), 이후에는 90일마다 1.5%(연 6%)씩 감액된다. 완전경력 근로자의 경우 조기수급을 하게 되면 연금수준(대체율이 아님)이  $3.6/64.5(1.5\% \times 43년) = 5.6\%$ 만큼 감액됨을 의미한다.

### 수급연기

정상 수급개시연령 이후로 연금 신청을 연기할 수도 있다. 총 지급계수는 연기한 기간에 대해 90일마다 1.5%씩 증가(연 6%)한다. 수급연기에 대해 추가적인 연금 발생은 없다.

또한 근로를 계속하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2010년부터 허용된 연금(총 지급계수)은 전액 연금을 받으면서 근무하는 때 360일마다 0.4%씩 증액) 또한 노령연금의 절반을 수급할 수 있다. 절반의 노령연금과 근로의 조합은 매 180일의 근로기간마다 1.5%씩 총 지급계수를 증가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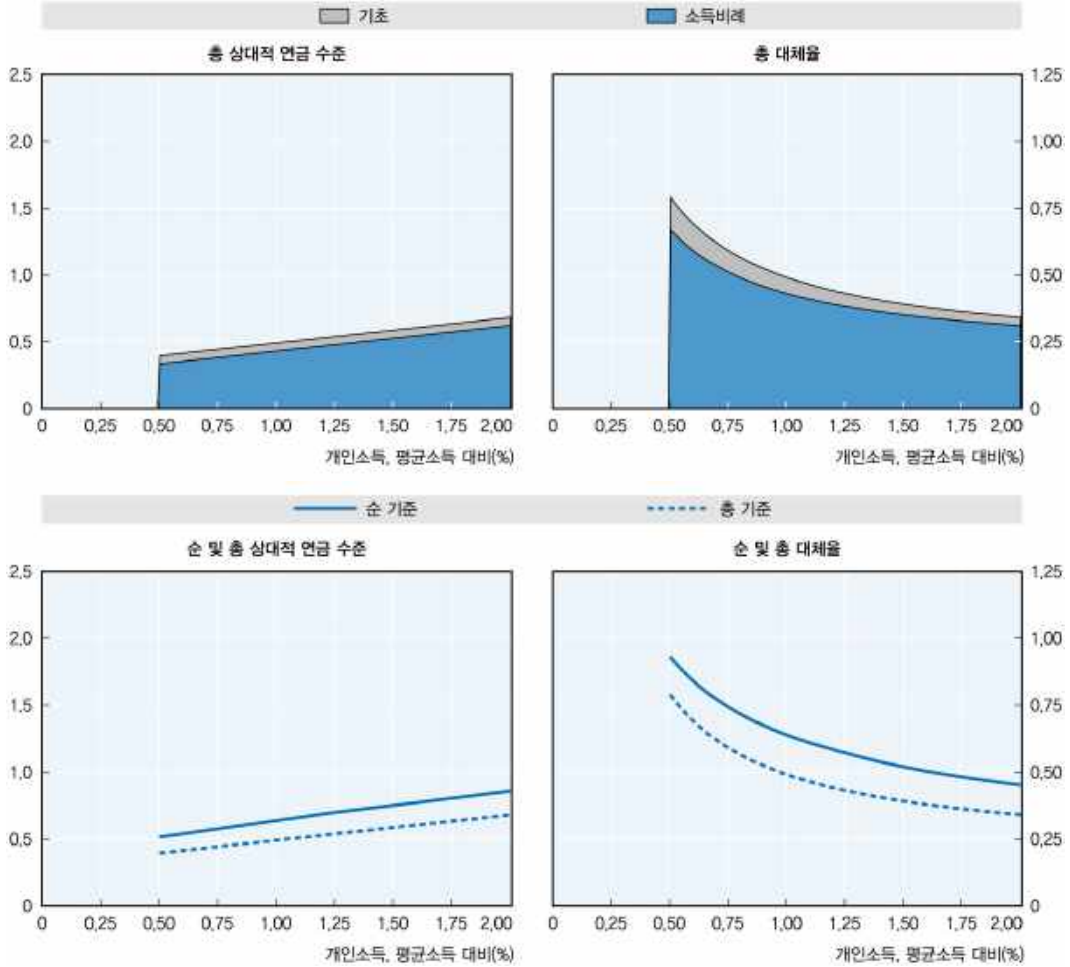
### 육아

4세 이하 자녀(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 그 이상의 연령)의 양육을 위해 근로를 중단하는 경우 크레딧이 발생한다. 이 기간은 연금 목적으로 소득을 산정할 때는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육아기간으로 인해 평가 기준이 감액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접근방식이 모든 비기여 기간에 대해 사용된다.)

### 실업

소득비례적 실업보험 수급기간은 연금제도에 반영된다. 실업보험 수급기간은 나이에 따라 다른데 50세까지는 5개월, 50-55세는 8개월, 55세를 넘으면 11개월이다. 뿐만 아니라 최대 3년간 실업보험 수급 없이 실업상태로 지내는 경우 역시 반영된다(단, 55세 미만의 경우 수급 없이 실업상태로 보낸 1년간만 반영됨). 연금산정에 사용되는 실업기간은 최대 80%까지만 인정되는데, 이는 경력기간 중 5년간 실업상태였다면 연금 목적으로는 실업기간을 4년으로 간주함을 의미한다. 실업기간이 평균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결정적인 (기준) 기간에 속한다면, 이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되며 보험료가 납부된 소득만 사용된다.

연금 모형화 결과: 2062년 체코, 수급연령 68세



기준 시나리오: 입법 시나리오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39.5	44.2	49.0	58.6	68.1	87.2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51.3	57.6	63.8	75.1	85.7	106.8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78.9	59.0	49.0	39.1	34.1	29.1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93.1	74.2	63.8	51.9	45.2	38.3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2.1	9.0	7.5	6.0	5.2	4.4
순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4.0	10.5	8.7	6.9	6.1	5.2
순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2.1	9.0	7.5	5.9	5.0	4.2
순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4.0	10.5	8.7	6.8	5.9	4.9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계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연금 모형화 결과: 2062년 체코, 수급연령 68세(계속)**

대안적 시나리오: 선별적 제도의 완전 임금 연동						
남성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42.4	47.2	52.0	61.5	71.1	90.2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55.2	61.4	67.6	78.4	89.0	110.1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84.9	62.9	52.0	41.0	35.5	30.1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100.0	79.2	67.6	54.1	46.9	39.4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3.0	9.6	7.9	6.3	5.4	4.6
순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6.9	12.5	10.3	8.2	7.1	6.0
순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3.0	9.6	7.9	6.1	5.2	4.3
순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6.9	12.5	10.3	8.0	6.8	5.6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계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http://dx.doi.org/10.1787/888933301386>

## 덴마크

### 덴마크: 2014년 연금체계

공적 기초연금제도가 존재한다. 자산 조사적 보충연금 급여액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연금 수급자들에게 지급된다. 또한 일시불 기여금(ATP)을 바탕으로 한 강제적 기업연금제도도 있다. 또한 단체협상 또는 비슷한 협상에 의해 마련된 강제적 퇴직 연금제도도 있는데 고용된 노동인구의 약 90%가 가입되어 있다.

### 핵심 지표: 덴마크

		덴마크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크로네(DKK)	397,484	245,962
	미달러(USD)	64,654	40,007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	6.2	7.9
기대여명	출생 시	79.3	80.0
	65세 시점	18.5	19.3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대비 %	18.6	16.2

<http://dx.doi.org/10.1787/888933301819>

## 수급요건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현재 65세이지만 2019-22년에 67세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전액 공적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40년의 거주기간이 필요하다. 기간이 짧아지면 비례적으로 수급액도 줄어든다.

노동시장 보충연금(ATP)과 강제적 기업연금에 대한 연금권리는 “낸 만큼 받는다” 원칙에 근거해서 누적된다. 근로경력이 길수록, 고용률이 높을수록, 기여이력이 길수록, 기여수준이 높을수록 연금 수급액은 많아진다.

## 급여 산정

### 기초연금

완전 기초연금액은 월 5,908크로네 또는 연 70,896크로네로 평균소득의 약 17% 정도에 해당된다. 기초소득조사가 있는데 이는 근로소득이 301,200크로네(평균소득의 약 3/4)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들음을 의미한다. 급여액은 이 수준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30% 비율로 감액된다.

### 선별적 연금

보충급여제도의 완전액은 독신자의 경우 월 6,137크로네, 즉 연간 73,644크로네이며, 부부나 동거하는 연금 수급자들은 연간 35,592크로네이다. 실제 액수는 기초연금을 제외한 모든 개인적 소득원을 조사하여 결정된다(ATP 및 퇴직연금 포함). 이 소득조사 보충연금은 독신 연금 수급자의 경우 소득이 66,500크로네를 초과하면 그 초과소득의 30.9%만큼 삭감된다. 기초연금도 받는 배우자/파트너와 함께하는 연금 수급자의 경우 연금보충액은 커플의 총 가용소득이 133,400크로네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의 16%만큼 삭감된다. 만약 배우자/파트너가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면 연금보충액은 커플 총 소득이 133,400크로네를 초과하면 그 초과소득의 32%가 삭감된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들은 또한 16,200크로네에 달하는 추가적인 보충연금 급여액을 받을 수 있다. 보충연금 급여는 과세 대상이며 연 1회 지급된다. 자산조사적 급여이며 유동자산이 별로 없는 극빈층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유동 자산의 가치가 80,300크로네를 넘으면 안됨).

공적 노령연금(기초연금, 소득조사 보충연금 그리고 선별적 보충연금)은 평균소득에 맞춰 매년

조정된다. 조정은 이전 2년간의 임금 인상 지수를 기준으로 한다. 명목 소득 증가율이 2%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최대 0.3%가 사회지출 유보금으로 배정된다. 그러므로 연금 및 기타 사회급여의 연계는 임금인상에서 유보금에 대한 할당분을 뺀 금액을 바탕으로 한다.

연 근로 소득 60,000크로네까지는 (소득조사) 보충수당과 선별적 보충연금을 산정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선별적 제도 외에도 공적 노령연금 수급자는 대부분 객관적 기준(집세, 비용, 가구소득, 가구자산 등)에 기초한 많은 보충수당(주거보조금, 난방보조금, 보건수당, 자가주택 거주시 감세 등)을 수급할 수 있다. 또한 특히 빈곤한 연금 수급자, 예를 들어 완전연금을 받지 못하는 연금 수급자(40년 미만 거주자)는 필요에 대한 구체적인 개별평가 후 개인 보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연금 수급자 등은 가사도움 서비스 및 병원치료 등 많은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주택보조금은 2014년 기준(연간 주택비용 + 6,300크로네)의 75%와 149,300크로네를 넘는 가구소득의 22.5% 사이의 차액으로 산정된다. 1인당 비용 산정 시 65평방미터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비용이 포함된다. 추가 가구 구성원 1명당 20평방미터씩 더해져 산정된다. 산정에 포함된 최대 주택비용은 2014년 기준 83,700크로네이다. 수급자는 가구소득의 11%, 최소 15,800크로네를 지불해야 한다.

### 최저 사회부조급여

수급자격 규정 때문에 공적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노령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기혼 노령연금 수급자가 받는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사회부조가 제공된다. 이 사람들은 노령연금 수급자만큼 유리한 주택보조금은 아니지만 주택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들에 대한 주택보조금은 2014년 기준 연간 주택비용의 60%와 140,500크로네를 넘는 가구소득의 18% 사이의 차액으로 산정된다. 1인당 비용 산정 시 65평방미터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비용이 포함된다. 추가 가구 구성원 1명당 20평방미터씩 더해져 산정된다. 산정에 포함된 최대 주택비용은 2014년 기준 78,800크로네이다. 주택보조금은 주택비용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수급자는 최소 23,700크로네를 지불해야 한다.

### ATP - 보충연금에 기반한 강제저축

ATP(덴마크 노동시장 보충연금)는 확정기여형(DC)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법정 완전적립식 단체보험이다. ATP는 65세부터 종신연금을 제공하며 가입자 사망 시 피부양자에 대해 유족급여를 일시불로 지급한다. ATP는 모든 임금 소득자와 거의 모든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ATP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ATP는 거의 모든 국민이 가입해 있어 보편연금에 가깝다.

엄밀히 말해서 ATP의 노령연금은 보장형 거치연금(deferred annuity)이다. 기여액은 정액 형태이며 - 소득의 일정비율이 아님 -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전일제 근로자는 2014년에 3,240크로네를 납부한다. 기여금의 2/3는 고용주가, 1/3은 근로자가 납부한다.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기여 스케줄(고용주와 근로자 기여의 합)은 다음 표에 나타나 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업보험급여 및 병가보험급여 수급기간, 노동시장에서 나와 있는 동안의 기업연금 기여액의 손실을 보충해 주기 위하여 이 기간 동안의 기여금은 두 배로 인상되어 ATP연금제도에 납부한다.

월 근로시간	<39	39-77	78-116)	116
2009년부터 기여금, 크로네/월	0	90	180	270

기여금은 사회적 파트너가 단체협약으로 결정하면 조정된다. 지난 20년간 기여금은 대략 평균 소득에 맞춰서 점차 인상되었다. 마지막 조정은 2009년에 이루어져서 기여금이 약 10% 증액되었다. 5%의 추가 인상이 2016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모형에서는 기여금이 평균소득에 맞춰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ATP에 대한 연금 수급권은 “낸 만큼 받는” 원칙에 따라 발생한다. 원칙적으로 각 세대는 해당 세대의 수급권에 대한 자금을 대는 구조이므로 ATP는 세대간 이전이 되지 않는다. 수급권은 법정 수급연령부터 지급받는 보장된 명목 평생수급권이다. 납부된 기여금의 80%는 시작 단계에 시장에서 헤지 가능한 장기금리에 맞는 할인율을 바탕으로 개인의 신규 ATP 수급권을 구매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발생(accruals)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해마다 다르다. 나머지 20%의 기여금은 투자 완충장치 및 연동과 예상치 않은 수명연장에 대한 자금조달원으로서 ATP의 자유지급준비금으로 이전된다.

ATP제도는 재정적 상황이 허락하는 한 지급 연금과 연금 수급권을 똑같이 인상시키며 이것은 보너스 수당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인상은 수급권과 마찬가지로 보장된다.

모형에서는 물가 인상률에 대한 완전 연동을 가정하고 있다.

###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는 단체협약을 통해 사회적 파트너 간에 합의된 완전적립식 확정기여형(DC)제도이다. 고용된 근로자의 약 90%가 이 제도에 가입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인구 중 약 85-90%가 액수에 차이는 있지만 수급권을 적립할 것이다. 가입률이 1980년대 중반 약 35%에서 현재 약 90%로 상승했는데 피용근로자를 보장하는 새 제도가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단체로 합의된 완전적립식 확정기여형제도에 모든 공공부문 근로자가 가입된 반면, 민간부문 근로자는 약 75%가 가입되었다. 자영업자는 이 제도에 가입되지 않는다. 단체협약에 의해 기여율이 결정되는데 동일 단체협약 하에 있는 모든 근로자는 유사한 기여금을 부담한다. 기여율은 12-18% 범위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득 및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높은 기여율이 적용된다. 기초연금이 정액이고 고소득 근로자가 저소득 근로자보다 노동시장 진입 시점이 늦다는 점 때문에 합리적인 대체율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기여율이 요구된다.

2009년 이래 덴마크의 저임금 근로자 대다수에 대한 기여율이 12%로 인상되었다. 모형화에 사용된 기여율은 12%이다.

대체로 퇴직연금제도는 여러 가지 사회적 리스크를 보장하고 장애 및 유족급여, 노령연금, 중증질환 급여 등 다양한 급여를 제공한다. 노령급여가 완전적립식 보험급여이지만 다른 급여는 현재의 기여금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보험급여이다. 대체로 퇴직연금제도는 기타 사회적 리스크 보장에 현재 기여금의 20-25%를 사용한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 보험제도이다. 수급권은 “낸 만큼 받는 원칙”에 따라 발생된다. 원칙적으로 각 세대는 자신의 수급권에 대한 재정을 대며 보험 보장에 귀속되는 것 외에는 세대 내 또는

세대간 이전은 없다.

급여는 대개 종신연금으로 지급된다. 제도는 급여액 지급의 선납 등을 위해서 지급단계를 설계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입자에게 허용한다. 일부 제도는 기여금의 일부를 일괄저축상품에 할당하는 옵션을 제공한다.

최근 기여금이나 새 제도에 대한 보증 시 가정된 최대 허용이자율은 1.5%이다. 그러나 제도는 영리를 근거로 운영되며 연금액은 자산 수익률과 기금의 사망률 경험치에 따라 증가한다. 2009년 이후 연금 산정을 위해 남녀공통의 사망률표를 사용해야 하며 또한 2010년 이후 보험사들은 미래 수명연장을 고려한 금융감독청(FSA)이 발표한 사망률 기본표를 따라야 한다.

덴마크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급자격부여(vesting) 문제나 이동성 문제는 없다.

## 경력 차이

실직, 출산휴가, 시간제고용 및 기타 경력 차이의 요소들이 사적연금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총 연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전체 연금제도의 구성은 그러한 영향을 상당히 완화시킨다. 첫째, 공적연금부분이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매우 큰데 이는 경력 차이의 영향이 전체 연금의 일부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둘째, 기초연금에 대한 부분적인 소득조사는 악영향을 더 줄일 것이다.

경력 차이가 연금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다른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 수급연기

공적 노령연금 수급은 최대 10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 1년간 연기하면 연금 인출 시의 평균 기대여명 대비 연기 기간의 비율만큼 증액된다. 예를 들어 인구 예측자료상 68세의 기대여명이 17.1년이라면 67세부터 1년간 연기할 경우 증액은  $1/17.1=5.8\%$ 만큼 이루어진다.

## 육아

출산휴가와 부성/모성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기여금액의 두 배가 ATP에 납부된다. 수급자는 기여금의 1/3을 납부하며 2/3는 정부/지방정부에서 납부한다. 출산/부성/모성 육아휴직급여는 다 합해서 최대 52주간 지급될 수 있다. 출산 4주 전과 출산 후 첫 14주는 모가 사용한다. 부는 출산 후 첫 14주 중에 2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부성휴가). 마지막 32주는 부와 모가 나눠서 혹은 함께 사용할 수 있다(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이후 육아를 위해 근로를 중단한 경우에는 대개 ATP 기여를 하는 다른 제도로 옮겨가게 된다. 자녀가 아프거나 장애가 있지 않은 한 젊은 부모가 휴가기간 만료 후에 직장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며,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ATP에 기여하면서 일종의 공적급여를 인출할 수 있게 된다.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육아로 인해 유급 근로를 중단한 기간에 대해 크레딧이나 기여가 없다.

## 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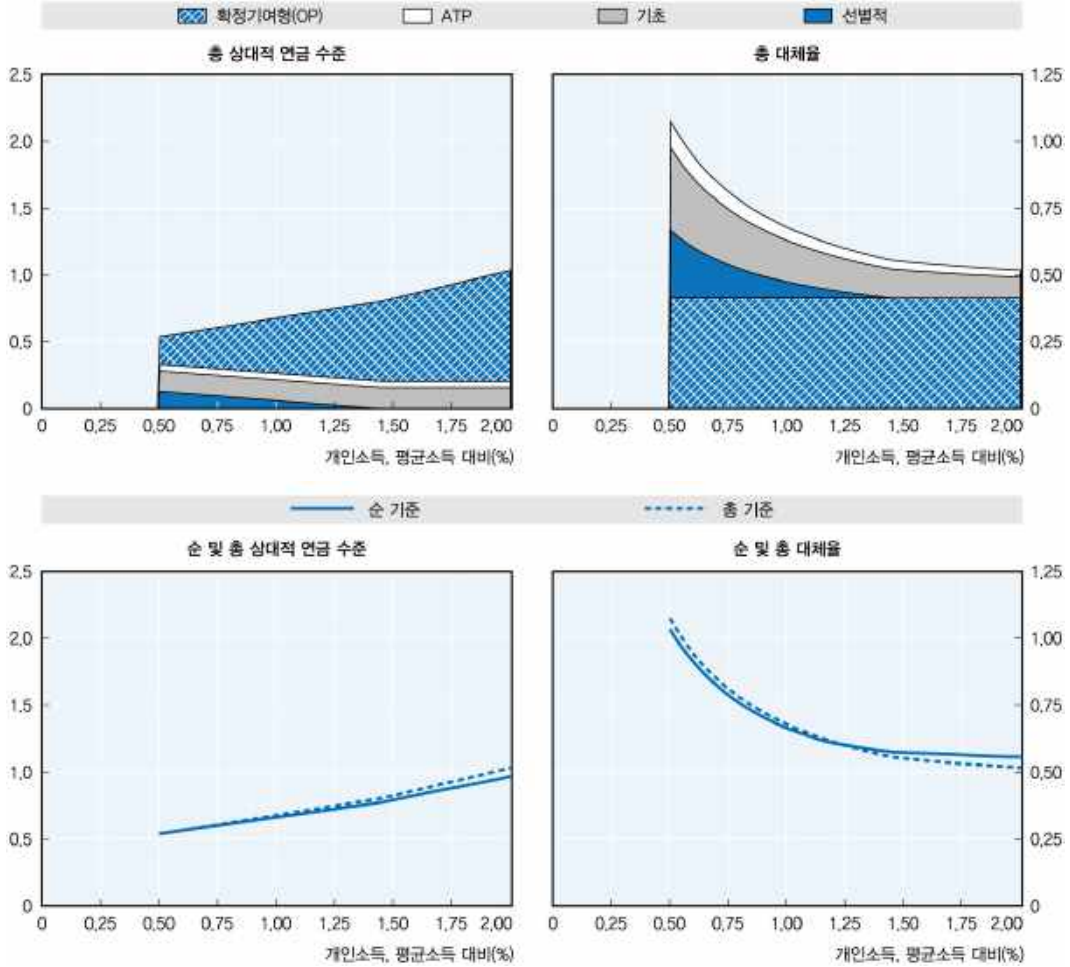
실업기간 중에는 실업보험(또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방정부)이 고용주의 납부 의무를 대신하며 ATP 기여금은 실업보험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2배로 납부된다(사회부조 수급 시에는 정상

요일). 실업보험급여 기간이 종료된 개인이 실업/사회부조 수급 상태인 경우 정부가 2/3를 부담한다.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실업기간에 대한 기여나 크레딧은 없다.

실업보험과 연계된 자발적 조기은퇴 프로그램도 있는데 60세부터(2014년에서 2017년 사이 62세로 점차 연장) 정상은퇴연령 사이에 급여액을 지급한다. 수급요건은 최소 30년간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해 있어야 하며 이 기간 중 자발적 조기수급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자발적 조기수급제도로 옮겨가는 과도기간 중 실업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급여액은 실업급여액과 동일한데 실업급여의 최대율인 91%를 한도로 하며 전일제 근로자는 2014년 기준 주당 3,710크로네, 시간제 근로자는 2,470크로네에 해당한다. 사회연금과 자발적 조기퇴직급여를 동시에 수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후 2년 이상 자발적 조기퇴직급여 수급을 연기하고 계속해서 근로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최대율(2014년 기준 전일제 근로자는 주당 4,075크로네, 시간제 근로자는 주당 2,715크로네)에 상당하는 높은 수준의 자발적 조기퇴직급여 수급률을 적용 받게 된다. 자발적 조기퇴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개인이 3년간 전일제 근로를 하는 경우 일회성 비과세 일시불 금액이 연간 최대 실업급여액의 72%까지 지급된다.

연금 모형화 결과: 2061년의 덴마크, 수급연령 67세



기준 시나리오: 입법 시나리오(기초 및 선별적 제도의 임금 - 0.3% 연동)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53,7	60,8	67,8	82,6	103,3	144,7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54,0	60,2	66,4	79,3	96,9	123,9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107,4	81,0	67,8	55,1	51,6	48,2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103,2	78,7	66,4	57,2	55,6	50,4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8,3	13,6	11,3	9,1	8,5	7,9
순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1,4	8,4	6,9	5,4	4,9	4,2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연금 기여율 가정은 12%임.

**연금 모형화 결과: 2061년의 덴마크, 수급연령 67세(계속)**

대안적 시나리오: 기초 및 선별적 제도의 임금 연동						
남성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59.2	66.2	73.2	87.3	105.6	147.0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58.8	64.9	71.1	83.5	99	125.4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118.3	88.3	73.2	58.2	52.8	49.0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112.3	84.9	71.1	60.2	56.8	51.0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20.2	14.9	12.3	9.6	8.7	8.0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2.5	9.1	7.4	5.7	5.1	4.2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인.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연금 기여율 가정은 12%임.

<http://dx.doi.org/10.1787/888933301393>



## 에스토니아

### 에스토니아: 2014년 연금체계

소득비례 공적연금과 강제가입 적립식 연금을 결합시킨 연금체계를 두고 있다. 또한 정액의 기초연금 및 사회안전망 연금도 두고 있다.

### 핵심 지표: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유로(EUR)	12,436	33,036
	미달러(USD)	15,060	40,007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	6.9	7.9
기대여명	출생 시	74.3	80.0
	65세 시점	16.8	19.3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대비 %	18.4	16.2

<http://dx.doi.org/10.1787/888933301827>

## 수급요건

연금수급연령은 남성의 경우 현재 63세이며 여성은 2016년에 63세로 올라간다. 이후에는 연금수급 연령이 점차 연장되어 남녀 모두 2026년에는 65세에 도달하게 된다. 연금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 최소 15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 급여 산정

### 기초연금

정액 기초금액은 2014년 4월 현재 월 134.91유로, 2013년에는 126.82유로였으며 소득비례연금과 함께만 지급이 가능하다.

### 소득비례연금

연금 급여액은 납부된 평균 기여금 대비 해당 개인 명의로 납부된 기여금 금액으로 산정된다. 이것은 해당 개인의 연간 연금지급계수(coefficient)이다. 은퇴 시 이러한 계수의 누적값에 가입 1년당 지급되는 연금액을 곱하여 수급연금액을 산정한다. 가입 1년당 지급되는 연금액은 2013년 7월 기준 4.72유로였으며 2014년 4월에는 4.96유로였다.

기여금이나 급여 목적의 소득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급되는 연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 20%, 기여금 세수변동률 80%를 반영하여 매년 4월에 조정된다. 이것은 기초연금, 소득비례연금의 1년당 지급액, 선별적 제도의 급여액 조정 시에도 적용된다.

### 선별적 연금

공적연금은 최저 퇴직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2014년 4월 기준 148.98유로였다.

최저연금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지급된다: 63세가 되었으나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자격 기간을 획득하지 못했고 에스토니아 영주권자나 임시거주자이거나 혹은 연금을 신청하기 직전 최소 5년간 임시거주자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

만약 소득이 특정 수준 미만이라면 사회부조급여도 신청할 수 있다. 급여액은 가구 구성원 수, 가구 소득, 주거비 등에 달려있다. 이 급여는 지방정부에 의해 제공된다.

### 확정기여형(DC) 연금

적립식 옵션을 선택한 가입자는 소득의 추가 2%를 본인의 연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2011년에는 기여금의 절반, 2009년 6월부터 2011년까지는 아무것도 납부하지 않다가 2012년부터는 전액기여가 재개되었다. 그리고 전체 사회보장기여금의 4%가 이 기금으로 전용된다.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들(즉, 1983년 이후 출생자들은)은 적립식 옵션을 선택해야 한다. 2011년부터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들만이 2층(second pillar)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66만 명 이상이 개인계정을 선택했다.

2009-11년의 2층 기여에 대한 일시적인 중단 때문에 약 28만 명의 사람들이 2014-17년에 2층(신청은 자발적이었음)에 더 높은 기여액을 낼 것이다. 국가가 내는 기여분은 4%에서 6%로 증가할 것이다. 또한 약 10만 6천 명이 개별 기여액을 2%에서 3%로 늘리는 것을 선택했다.

## 경력차이

### 조기수급

공적연금에 가입자가 은퇴했고 기여기간 15년 조건을 충족한 경우 기준연령(장기적으로 62세부터)으로부터 최대 3년 이전에 수급할 수 있다. 연금은 조기수급 매 1년당 4.8%씩 감액된다.

### 수급연기

공적연금은 정상 수급연령 이후로 수급을 연기할 수도 있다. 연금 수급을 연기하면 매년 10.8%씩 증액된다. 연기 기간 중에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기여금을 납부하며 수급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근로와 연금 수급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기여금도 납부하며 연금은 매년 재산정된다.

### 육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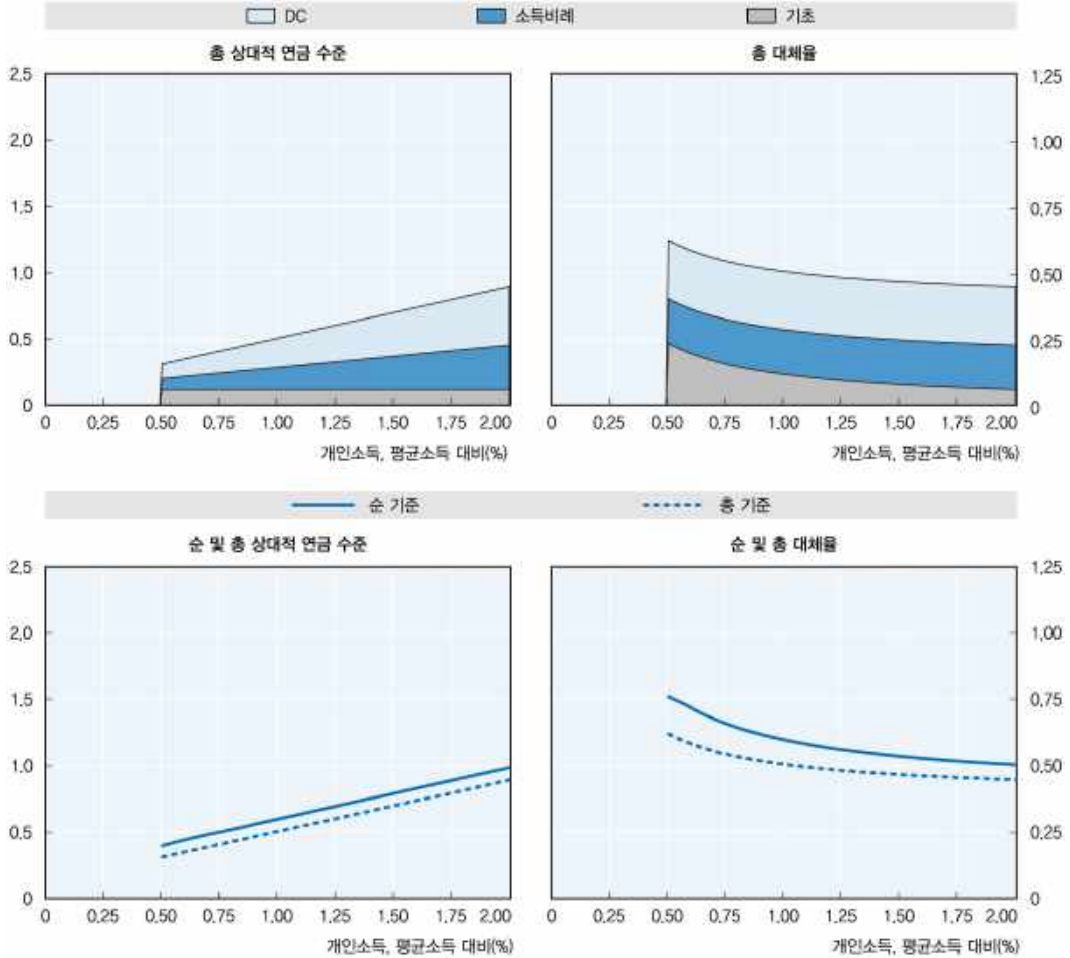
국가가 자녀 1명당 최대 3년간 양육수당 수급자를 위해 기여금을 대납해 준다. 금액은 최저임금의 20%이다(2014년 355유로).

2013년부터 이 제도가 개선되었다. 2013년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3년간 소득 비례연금제도에 전국 평균임금의 4%에 해당하는 월 기여금을 한 쪽 부모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2013년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 1명당 최대 3년간 연금대상 근속년수를 획득하게 된다. 이 규정은 정확한 출생일에 따라 적용되는데 일부 부모는 이전 규정에 따라 자녀 1명당 추가 연금대상 근속년수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 실업

실업기간에 대한 크레딧은 없다.

연금 모형화 결과: 2059년 에스토니아, 수급연령은 65세



기준 시나리오: 입법 시나리오(선별적 제도들의 혼합 연동)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31.1	40.8	50.5	69.9	89.3	128.2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39.4	50.0	59.8	79.2	98.7	137.7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62.1	54.4	50.5	46.6	44.7	42.7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76.1	65.9	59.8	53.5	50.3	47.1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8.9	7.8	7.2	6.7	6.4	6.1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8.9	7.5	6.7	6.0	5.6	5.2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연금 모형화 결과: 2059년 에스토니아, 수급연령은 65세(계속)**

대안적 시나리오: 선별적 제도들의 완전 임금 연동						
남성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32,5	42,2	51,9	71,4	90,8	129,7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41,2	51,7	61,4	80,9	100,4	139,4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65,0	56,3	51,9	47,6	45,4	43,3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79,4	68,1	61,4	54,6	51,2	47,7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9,3	8,1	7,4	6,8	6,5	6,2
순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1,5	10,0	9,2	8,4	8,0	7,7
총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9,3	7,8	6,9	6,1	5,7	5,2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1,5	9,6	8,6	7,5	7,0	6,5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http://dx.doi.org/10.1787/888933301400>

## 핀란드

### 핀란드: 2014년 연금체계

연금체계는 연금소득 조사를 실시하는 선별적 기초연금(국민연금+보충연금)과 대상자별로 다양한 규정을 적용하는 소득 비례 직역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 부문 근로자를 위한 제도 중 일부는 부분적으로 사전 적립식이며 공공부문제도는 부과식으로 재원이 마련된다(미래 연금부담금 상승을 분산시키기 위해 보충기금을 두고 있다). 사전 적립은 급여액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17년부터 큰 폭의 연금개혁을 시행하기로 2014년에 합의되었다.

### 핵심 지표: 핀란드

		핀란드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유로(EUR)	42,910	33,036
	미달러(USD)	51,965	40,007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	10.3	7.9
기대여명	출생 시	80.5	80.0
	65세 시점	19.8	19.3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대비 %	20.4	16.2

<http://dx.doi.org/10.1787/888933301830>

## 수급요건

국민연금은 거주기간 조사(기여의무 없음)를 통해 지급하며, 소득비례연금에서 나오는 연금소득에 따라 감액된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65세부터 지급된다. 노령연금 전액을 받으려면 성인으로서 핀란드에 40년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거주기간이 줄어들면 비례적으로 금액도 조정된다. 63세에서 65세 사이에 노령연금을 조기 수급할 수도 있다. 1952년 이전 출생자에 대해 조기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 가장 이른 연령은 62세이다.

소득비례연금의 경우 연금 수급권을 얻기 위한 최저 소득수준은 있지만 대기기간이나 금액한도는 없다. 연금은 18세 이후부터 68세까지 가입자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적립된다. 노령연금은 63세부터 지급 가능하다. 1952년 이전 출생자들의 경우 62세에 노령연금의 조기 수급이 가능하다.

## 급여 산정

### 소득비례연금

여러 소득비례제도 중 민간부문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TyEL)를 여기에서 다룬다. 이 제도에 핀란드 근로자의 50% 이상이 가입해 있다. 다른 소득비례연금제도의 규정은 TyEL과 매우 비슷하다.

2005년부터 지급률은 18-52세에 연금대상소득의 1.5%이며 53-62세에 1.9%, 63-67세에 4.5%이다.

연금대상소득은 2005년부터 전체 경력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연금 지급률이 연령에 따라 다르므로(상기 참조) 고령 근로자들의 소득은 전체 연금에서 더 큰 가중치를 갖는다. 연금대상 소득이 산정되면 근로자의 연금 기여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소득에서 차감된다. 2014년, 근로자의 연금 기여는 53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5.55%였고 53세 이상은 7.05%였다. 단, 대체율은 이러한 연금대상 소득 지표가 아니라 재평가된 생애전체 평균소득에 대비해 산출했다(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위해서).

퇴직 전 과거소득은 국가차원의 소득과 물가의 조합에 맞춰 재평가된다. 임금 상승은 80%의 가중치를, 물가상승률은 20%의 가중치를 가진다. 은퇴 후 소득비례연금은 소득 상승률 20%와 물가상승률

80% 산식을 이용해 상향 조정된다.

2010년 이후에 신규로 발생하는 소득비례연금의 수준은 2009년 이후 기대수명의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이는 기대수명계수라 불리는 메커니즘에 의해 행해지는데 이는 명목확정기여제도와 비슷한 방법으로 새로운 연금의 계리적 현재가치를 안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계수의 산정을 위해 지난 5년간의 남녀공용 사망률 통계치를 사용하고 2%의 연간 할인율을 가정한다. 핀란드 통계청 사망률 예측치에 따르면 2059년에는 63세의 기대여명이 2009년의 20.9년에서 27.8년으로 증가한다. 기대여명계수는 2060년에는 급여액을 개혁 전 규정에 따른 가치의 79.2%로 감액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여명계수는 각 인구집단에 대해 62세에 산정된다.

기여금이나 연금대상소득에 대한 상한선이나 하한선은 없다. 그러나 연금보험에 대해 최저 소득 한도는 있다. 이 한도 미만의 소득에 대한 자발적 기여는 가능하다.

핀란드연금센터에서는 제도를 조율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소득비례연금제도의 가입자였던 사람들도 연금센터를 통해 합산된 연금을 받게 된다.

### 기초연금(국민연금)

2014년 독신 연금 수급자에 대한 완전기초연금 월 급여액은 633.91유로였다. 국민연금은 다른 연금소득과 소액공제(small disregard)간 차액의 50%만큼 감액되는데 공제액은 2014년에 1개월당 55.95유로였다. 일단 핀란드와 다른 국가로부터의 다른 연금소득이 월 1,310.30유로 또는 1,166.96유로를 초과하면 국민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 선별적 연금(보증연금)

2011년부터 보증연금도 존재한다. 이 급여는 연금 수급자들에게 월 743.38유로의 최저연금 수준을 보장해주지만 국민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합산액이 언급된 수준 미만이어야 한다. 63세 이후에 발생한 소득비례(고용)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액 산정 시 무시된다.

소득조사와 지불 가능한 연금의 파라미터인 국민연금 및 보증연금은 물가에 맞춰 매년 조정된다.

## 경력의 차이

근로소득이 없는 시기에도 연금 수급권이 부여된다. 만약 급여액이 이전 임금을 근거로 한다면 이전 임금은 특정 비율까지 연금지급을 위해 사용된다(이 비율은 급여에 따라 다름). 재택보육수당과 학업기간에 대해서는 일정한 임금기준이 사용된다.

### 조기수급

조기국가노령연금은 가입자의 63번째 생일 다음 달 초부터 수급이 가능하다(1952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62번째 생일). 금액은 정상수급연령인 65세 이전에 연금이 지급되는 기간 중 매달 0.4%씩 영구 감액(정상노령연금과 비교해)된다. 연금은 수급자가 65세가 되어도 정규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소득비례연금의 경우 조기수급은 1952년 이전 출생자에 한해 62세부터 가능하며 63세까지 한 달에 0.6%씩 급여액이 삭감된다. 63세 이후에는 연금 삭감이 없다. 그러나 이 연령 이후에는 소득비례 급여의 발생이 더 빨라진다(상기 참조).

## 수급연기

공적연금은 65세 이후로 수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금은 한 달에 0.6%씩 증액된다.

68세 이후 수급이 연기되는 소득비례연금에 대한 증액은 월 0.4%(연 4.8%)로 낮춰졌다. 63세에서 68세 사이에는 조정이 없으며 이유는 이 시기에 연금 발생에 가속도가 붙기 때문이다.

연금 수급과 근로를 겸할 수도 있다. 노령연금 수급 이후의 소득은 추가적 연금을 발생시키며 지급률은 68세까지 연 1.5%이다.

## 육아

2005년부터 출산휴가, 부성휴가, 육아휴직기간 중 연금은 임금의 1.17배를 기준으로 발생되며 이는 가족급여의 기준이 된다. 최대 유급 육아휴가 기간은 11개월이다.

육아수당을 수급하는 무급 육아휴직기간(부 또는 모)에 대해서는 휴직자가 평균소득의 약 1/5에 해당하는, 2014년 기준 월 706.87유로를 받는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연금이 발생한다. 이 조건은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동일하다.

육아휴직 중인 사람들은 연금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유급 육아휴직 시 발생한 연금은 소득비례연금제도에서 지급한다. 무급 육아휴가기간에 대한 연금은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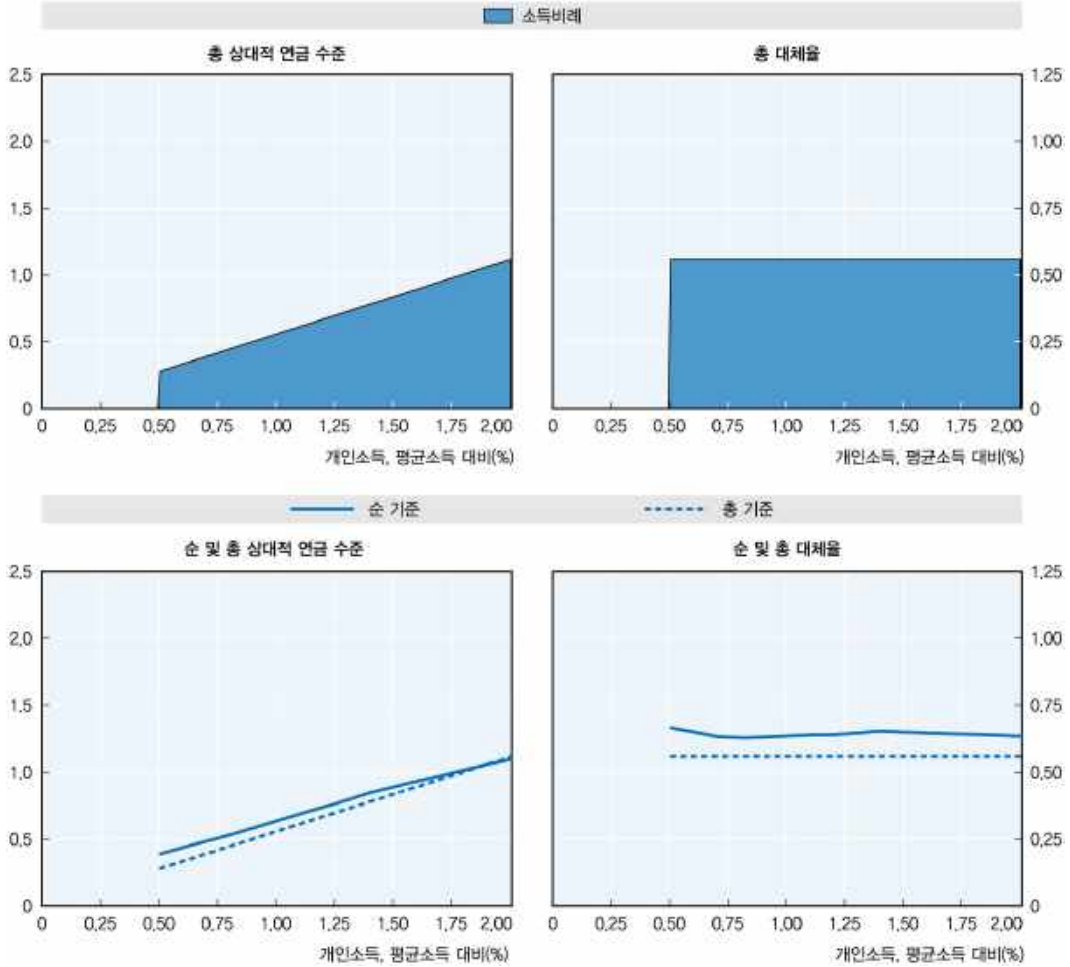
무급 육아(학업)기간에 기초한 연금 부분은 국가기초연금의 소득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 실업

2005년 개혁 이후 소득비례실업급여는 급여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비율(75%)에 준하여 연금 수급권을 발생시킨다. 다만 63세 이전에 수급하는 실업급여만 연금크레딧을 발생시킨다.

실업보험급여는 500일간 지급된다(약 23개월간, 월 평균 21.5일). 500일이 끝나기 전에 59세가 되는 경우(1955년 또는 그 이후 출생자는 60세) 소득비례실업급여가 65세까지 지급될 수 있다. 500일 이후에 수당을 수급하는 사람들은 63세부터 노령연금 수급을 선택할 자격이 생기며(1958년 이전 출생자는 62세에 가능하고 이런 경우 조기수급에 대한 감액은 없음) 소득비례실업급여는 중단된다. 소득비례실업급여 기간 이후에는 정액 또는 소득조사적(다양한 조건에서) 실업부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들 급여를 수급하는 기간은 연금 수급권에 반영되지 않는다.

연금 모형화 결과: 2059년 핀란드, 수급연령 65세



기준 시나리오: 입법 시나리오(안전망 제도의 물가연동)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27.9	41.8	55.8	83.7	111.6	167.4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38.8	50.7	63.5	88.9	109.9	155.2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55.8	55.8	55.8	55.8	55.8	55.8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66.6	63.1	63.5	65.0	63.5	65.9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9.8	9.8	9.8	9.8	9.8	9.8
순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9.7	8.4	7.9	7.4	6.8	6.5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연금 모형화 결과: 2059년 핀란드, 수급연령 65세(계속)**

대안적 시나리오: 선별적 제도의 완전 임금연동						
남성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35.2	42.1	55.8	83.7	111.6	167.4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77.2	63.4	63.5	65.0	63.5	65.9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70.3	56.2	55.8	55.8	55.8	55.8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77.2	63.4	63.5	65.0	63.5	65.9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2.3	9.9	9.8	9.8	9.8	9.8
순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1.2	8.5	7.9	7.4	6.8	6.5
	13.3	10.1	9.4	8.8	8.1	7.7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http://dx.doi.org/10.1787/888933301411>

## 프랑스

### 프랑스: 2014년 연금체계

민간부문에 적용되는 연금체계는 확정 급여형 공적연금과 포인트제도에 기반한 강제가입의 기업퇴직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확정급여형제도는 또한 기여기간에 따라 차등화되는 최저기여연금을 두고 있다. 또한 노인을 위한 선별적 최저소득 보장제도가 있다(APSA).

### 핵심 지표: 프랑스

		프랑스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유로(EUR)	37,427	33,036
	미달러(USD)	45,325	40,007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	13.8	7.9
기대여명	출생 시	81.7	80.0
	65세 시점	21.0	19.3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대비 %	18.7	16.2

<http://dx.doi.org/10.1787/888933301843>

## 수급요건

완전 공적연금을 수급하려면 최저 기여기록(2014년 기준 1953년 출생자에 대해 41.25년)이 있고 최저 법정연금수급연령(61세 2개월)에 도달해야 한다. 2014년 개혁에 따르면 최저 기여기간은 2014년 165분기에서 2035년 172분기로 점차 상향 조정될 것이다.

2010년 개혁에 따르면 최저 연금수급연령이 2017년까지 60세에서 62세로 점진적으로 연장되는데 출생년도에 따라 다르며 전액연금수급연령은 2016년에서 2022년 사이에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된다.

최저 기여연금(minimum contributif)은 퇴직자가 전액연금의 법적 요건을 충족할 때 연금 수준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모형에서는 20세의 나이에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172분기의 기여를 하고 은퇴연령은 63세라고 가정했다.

## 급여 산정

### 소득비례

추진 공적연금인 일반제도(regime general)는 완전경력기간(위에서 설명했듯이 연장되는 중)을 충족하면 50%의 지급율을 보장한다. 완전경력기간에서 모자라는 각 분기에 대해, 연금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감액된다.

- 연금금액은 빠진 기여기간에 비례하여 감액된다.
- 또한 연금액수는 만약 개인이 전액연금수급연령이 되기 전(그러나 여전히 최저 연금수급연령 이후)에 은퇴하기로 결정한다면, 빠진 분기당 1.25%씩 추가 감액된다(연간 5% 감소); 이 비율("decote")은 1953년 및 이후에 출생한 사람에게 해당되며 한도는 25%까지이다.

연금산정에 기준소득은 생애기간 중 소득이 가장 높았던 25년간 소득의 평균을 적용하며, 과거 소득은 물가인상률에 따라 재평가된다.

연금 급여 산정 시 포함되는 소득지표의 년수에 대한 기준과 물가에 따른 재평가 정책 때문에 프랑스 공적제도의 대체율은 근로자의 전체 경력기간 중 소득의 시간 프로파일에 민감하다. 연금대상

소득에는 상한선이 있는데 2014년에는 37,548유로였다. 지급되는 급여는 물가에 연동된다.

### 최저 기여연금("minimum contributif")

“일반연금제도(regime general)” 등에는 비선별적 최저연금제도를 두고 있다. 즉, 다른 기초 또는 보충연금제도로부터 수급하는 연금액은 최저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급여를 받으려면 기여기간 41.25년이 되거나(1953년 출생자) 나이가 66세 2개월이 되어야 한다(2022년부터 67세로 상향 조정할 계획). 최저연금은 기여기간이 짧은 경우 기간에 비례해서 조정된다. 2014년에 연 급여액은 7,547.96유로였다. 이 금액은 연금 수급자가 최소 120분기 동안 기여금을 납부하면 8,247.85유로로 상승한다. 최저연금의 가치는 물가에 연동된다.

### 강제적 퇴직연금

ARRCO제도는 민간부문과 농업부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가입 퇴직연금제도이다 (“전문직/관리직 종사자 cadres와 비전문직/관리직 종사자 non-cadres”). 그리고 AGIRC프로그램에서도 “전문직/관리직 종사자”에게는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데, 다음은 “비종사자(non-cadres)”에 적용되는 규정들이다.

급여는 일반연금제도(regime general)의 상한선 미만에 대해 납부한 6.2%의 기여금과 이 상한선의 1.3배 사이에서 납부한 16.2%의 기여금으로부터 발생한다. 그러므로 ARRCO의 상한선은 일반제도의 3배인 112,644유로이다(전문직/관리직 종사자에 대한 AGIRC제도 상한선은 일반제도의 8배).

매년 적립한 포인트의 수는 연금포인트 비용으로 나눈 기여 가치이다. 은퇴 시, 적립된 포인트는 연금포인트 가치를 곱해서 연금 급여액으로 환산된다. 연금포인트 가치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2513유로였다. 연금포인트 비용은 2014년의 경우 15.2589유로였다.

연금포인트의 비용과 가치의 조정이 사회적 파트너 간에 합의되었다. 2013년 이래 합의된 내용은 연금포인트의 비용을 평균소득에 맞춰 인상하고 가치는 물가-1%P에 맞춰 인상하는 것이다. 모형에서는 포인트의 비용과 가치를 이렇게 다르게 상향 조정(-1%P는 제외함)하는 조치가 계속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 두 개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정책은 지급연금의 경로(여기에서는 “연동”으로 표현)와 연금을 발생시킨 시점과 수급하는 시점 간의 연금 수급액 가치 변화(소득비례제도의 “재평가” 프로세스와 유사) 둘 다에 영향을 미친다.

### 선별적 최저연금(Allocation de solidarite aux personnes agees, APSA)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에 대해 자산조사적 최저 소득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데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4월 1일까지 독신자의 경우 연 9,447.21유로(부부는 14,667.32유로) (2014년 4월 1일부터 2014년 10월 1일까지는 각각 9,503.89유로와 14,775.32유로, 2014년 10월 1일 이후 9,600유로와 14,904유로)였다. 이 급여는 물가에 맞춰 조정된다. 완전경력 근로자들은 강제적 퇴직연금이 일반연금 급여를 보충해주기 때문에 노령부조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드물다.

노인들은 주거수당(“aides au logement”)을 받을 수 있다. 자격기준은 소득수준, 주거비, 부양가족 수, 거주 장소에 따라 다르다.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조기수급 즉 최저 법적연금수급연령 이전의 연금 수급은 20세 이전에 근로경력을 시작했고 완전 기여기간을 채운 사람의 경우 주된 공적연금제도에서 60세부터 허용된다.

퇴직연금제도에서도 조기수급이 가능한데 수급연령 또는 기여 년수 또는 둘 다에 따라 감액된다. 기여기간이 부족한 경우 연금은 아래 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연금수급연령 또는 빠진 년수 중 유리한 쪽에 맞춰 조정된다. 예를 들어 완전연금 은퇴연령보다 5년 앞서 수급하는 경우 연금은 전체 금액의 78%로 줄어든다. 그러나 기여기간이 1년 부족한 경우라면 96%까지만 감액된다.

완전 연금수급연령(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까지의 거리	5	4	3	2	1
완전 기여기록에서 빠진 년수	5	4	3	2	1
계수	0.78	0.83	0.88	0.92	0.96

### 수급연기

최저 법정수급연령 이후에도 근로하면서 전액연금의 기여조건(1953년 출생자의 경우 2014년 기준 41년 3개월의 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새로운 공적제도에서는 연금액이 매 추가되는 분기마다 1.25%씩(1년에 5%) 증가한다. 수급이 연기된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ARRCO 포인트를 축적하게 된다.

전액연금을 받는 경우 근로와 연금 수급을 한도 없이 병행할 수 있다. 전액연금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정한 한도가 있다.

### 육아

2010년 이후 출생했거나 입양된 자녀에 대해 확정급여형제도에서는 자녀 1명당 4분기의 크레딧이 모에게 주어지는데, 모가 이 기간 중 계속해서 근로를 하는지 여부는 관계없다. 또한, 생물학적 부모 중 한 명에게 4년 동안 크레딧이 주어진다(교육기간 1년당 1분기). 자녀가 16세가 되기 전 최소 9년간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한 경우, 확정급여형제도에서는 부모 모두에게 최종 연금액을 10% 인상해준다.

육아로 인해 근로를 중단하거나 시간제로 근로한 기간 역시 공적제도와 퇴직연금제도에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AVPPF: Assurance Vieillesse des Parents au Foyer). 크레딧은 부모가 최저임금을 버는 것으로 가정해서 주어진다. 첫 두 자녀에 대해서는 최대 3년이 적용되며 이후의 자녀에 대해서는 크레딧을 받는 기간이 길어진다(가족급여 수급 및 소득조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이 크레딧은 공적제도에서 자녀 한 명당 2년씩 누적된다.

### 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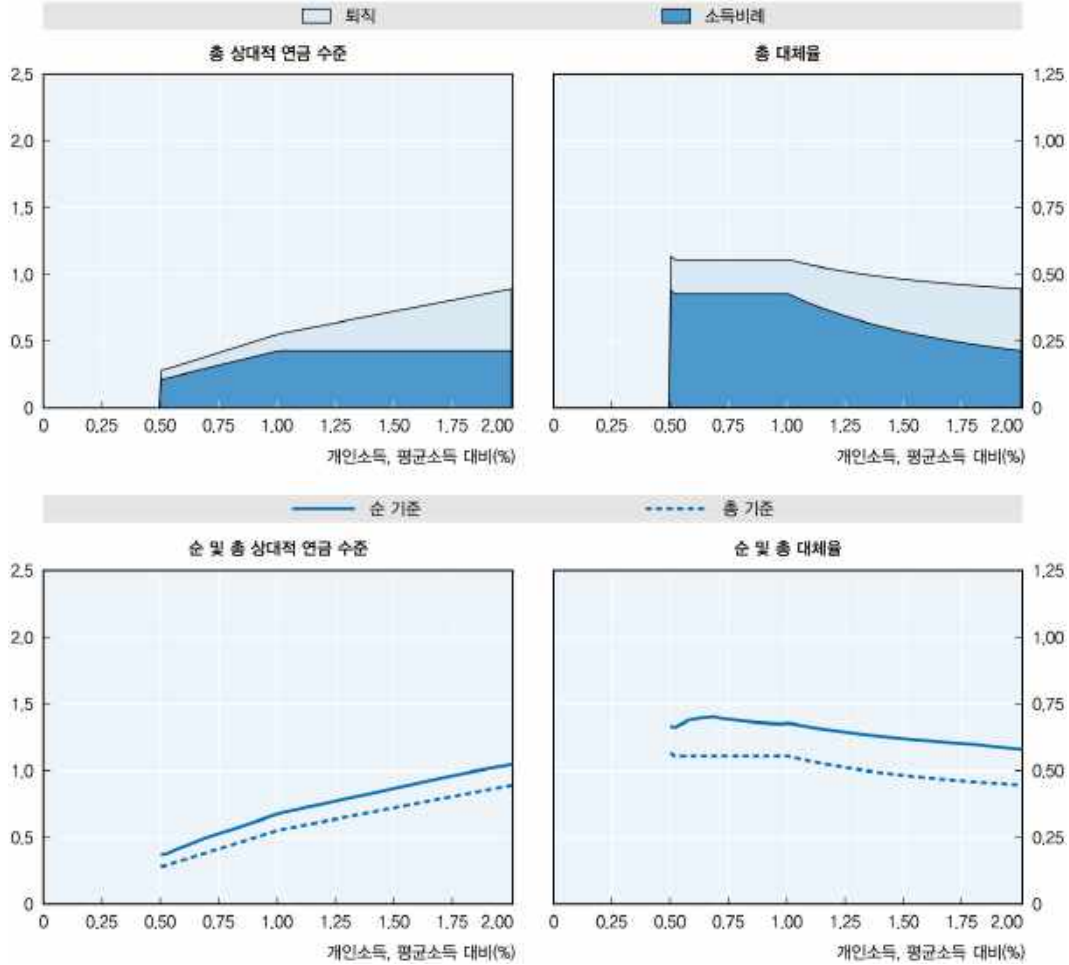
비자발적 실업기간은 공적연금에 대해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55세 미만의 경우 1년(55세 이상은 5년)이 한도이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50일을 기여

기간 1분기로 산정하며 연 최대 4분기까지 인정된다. 이 기간은 25년간의 최고 소득기간을 바탕으로 하는 평균기준임금 산정에는 들어가지 않으므로 연금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또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최초 실업기간에 대해 최대 1년까지 크레딧이 있다(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실업기간에 대해서는 1.5년). 이후의 비자발적 실업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실업기간 이후인 경우에만 최대 1년까지 크레딧을 준다.

강제적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실업기간 시작 이전에 강제적 퇴직연금제도 중 한 곳에 기여금을 납부했다면 실업기간 중에 연금포인트가 쌓이게 된다. 이 포인트는 “일 기준임금”에 맞춰 산정되며 일 기준임금은 마지막 임금(연봉)을 365로 나눈 금액이다.

연금 모형화 결과: 2057년 프랑스, 수급연령 63세



기준 시나리오: 선별적 제도의 물가연동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28.4	41.5	55.4	72.4	89.3	123.1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36.9	53.0	67.7	87.0	104.8	136.5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56.8	55.4	55.4	48.2	44.6	41.0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66.9	69.2	67.7	62.0	58.0	53.2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0.7	10.4	10.4	9.1	8.4	7.7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9.9	9.5	9.1	7.8	7.0	6.1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http://dx.doi.org/10.1787/888933301427>

## 독일

### 독일: 2014년 연금체계

법정 공적연금체계는 단일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득비례 부과방식제도이다. 연금 산정은 연금포인트를 기반으로 한다. 모든 소득원으로부터 나오는 노후소득이 충분치 않다면 자산조사에 기초한 사회 부조급여를 받을 수 있다.

### 핵심 지표: 독일

		독일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유로(EUR)	45,952	33,036
	미달러(USD)	55,649	40,007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	10.6	7.9
기대여명	출생 시	80.7	80.0
	65세 시점	19.4	19.3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대비 %	21.4	16.2

<http://dx.doi.org/10.1787/888933301854>

## 수급요건

현재 일반 노령연금은 최소 기여 년수가 5년 이상이면 65세 2개월부터 수급할 수 있다. 기여 년수가 5년 미만이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 2012년부터 20년에 걸쳐 법정 수급개시연령은 67세로 점차 상향 조정된다. 1964년 및 그 이후 출생한 사람들은 법정 수급개시연령이 67세가 될 것이다. 2014년 7월 기준 45년 이상 특별히 긴 기간 동안 가입한 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63세부터 지급된다. 2016년부터 이 연령은 2028년에 65세가 될 때까지 점차 증가할 것이다.

## 급여 산정

### 소득비례

가입자가 평균소득 수준으로 1년간 기여하면 1연금포인트가 확보된다. 평균소득은 국민소득계정상의 평균소득(2014년 34,857유로)과 거의 비슷하다. 기여의 근거소득이 그보다 높거나 낮으면 얻게 되는 연금포인트도 1보다 크거나 작아진다. 기여금은 2014년 기준으로 연 소득 최대 71,400유로까지만 부과된다.

은퇴 시에는 매년 취득된 연금포인트가 합쳐진다. 그리고 연금포인트의 합계를 “연금포인트 가치”로 곱하는데 이 가치는 2014년에 337.68유로였다. 연금포인트 가치는 신규 퇴직자 및 기존 연금 수급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연금포인트 가치는 기본적으로 총 임금상승에 비례해서 매년 조정된다. 뿐만 아니라 “기여 인자(contribution factor)”는 법정 연금제도와 보조급을 받는 (자발적) 사적연금제도에 대한 기여율 변화를 반영한다. 기여율이 증가하면 연금포인트 가치의 조정이 줄어들게 된다. 표준화된 연금 수급자 수 대비 표준화된 기여자 수 변화를 측정하는 “지속가능성 인자(sustainability factor)”는 연금포인트 가치를 법정 연금제도의 부양률 변화에 연계시키게 된다. 이 부양률은 기여자 대비 수급자 비율이다. 연계산식에서 이 두 가지 요소는 조정의 규모를 변화시켜 장기적으로 1인당 총 임금 대비 연금포인트 가치 증가율을 14% 낮추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여율은 현재 18.9%에서 향후 2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연금포인트 가치뿐만 아니라 연금포인트 산정을 위한 관련 평균소득은 구 동독지역(new Lander)에서는 약간 다른 값이 적용된다. 이 차이는 임금과 연계되면서 장기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가정했다.

## 사회부조

만일 모든 소득원으로부터 나오는 개인 노후소득이 충분치 않다면 사회부조제도로부터 추가적인 자산조사형 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다. 이 급여는 개인의 기본적 니즈 충족이 목적이다. 자산조사형 급여는 개인의 니즈와 해당 가구소득(연금 급여를 포함)간의 차액이다. 이러한 니즈의 평균은 자산조사형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2012년 기준 1인당 8,724유로로 설정되었다.

## 자발적 사적연금

은행, 보험사 또는 투자펀드에서 제공하는 부가적인 자발적 사적연금(소위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도 존재한다. 리스터연금은 세금 혜택이 있으며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다. 모형에서는 기여율을 4%로 가정하고 있다.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조기수급은 가입기간 35년 이상인 경우 63세부터 가능하다. 그러나 연금 급여액은 영구 차감에 의해 감액되는데 법정 은퇴연령이 증가하면서 차감폭도 커진다. 67세 이전에 수급을 개시하는 경우 급여는 연금 수급자가 법정 연금수급연령이 도달하기 전까지 매년 3.6%씩 영구 감액된다. 그리고 63세에 수급을 개시하는 경우는 67세에 개시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연금 수급액이 훨씬 낮아지는데 근로 연수가 4년 짧고 추가 연금포인트를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노령연금도 있다. 장애 정도가 적어도 50% 이상으로 평가되고 35년 이상 기여이력이 있는 사람은 60세 8개월에 연금 수급개시가 가능하며 최대 감액률은 10.8%이다. 이 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은 60세에서 62세로 점차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개인이 45년의 가입기간을 완료했다면 감액 없이 63세에 연금 수급을 개시할 수 있다(고용기간, 10세가 될 때까지 자녀의 양육 또는 육아기간, 혹은 단기실업(UBI)기간 등은 모두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됨). 61-62세 사이의 실직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연금의 수급연령은 2029년까지 65세로 연장될 전망이다.

### 수급연기

연금수급연령을 연기하면 법정 연금수급연령 이후 한 달에 0.5%씩 연금 지급액이 늘어난다.

### 육아

1992년 또는 그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한쪽 부모가 3년간 연 1포인트씩 연금포인트를 취득한다(평균소득에 근거한 기여기간과 동일하게 취급). 1992년 이전 출생한 자녀의 경우 2포인트를 취득한다. 이러한 혜택은 부모가 근로종사 여부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으며 부모 양쪽이 나눠가질 수 있다. 또한 1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양육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다. 양육기간은 연금 수급요건에 필요한 기간(Berücksichtigungszeit)에 포함되며 연금 수급액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녀가 10세 미만 혹은 최소한 두 자녀가 10세 미만일 때 근로하는 부모는 연 최대 0.33포인트의 보너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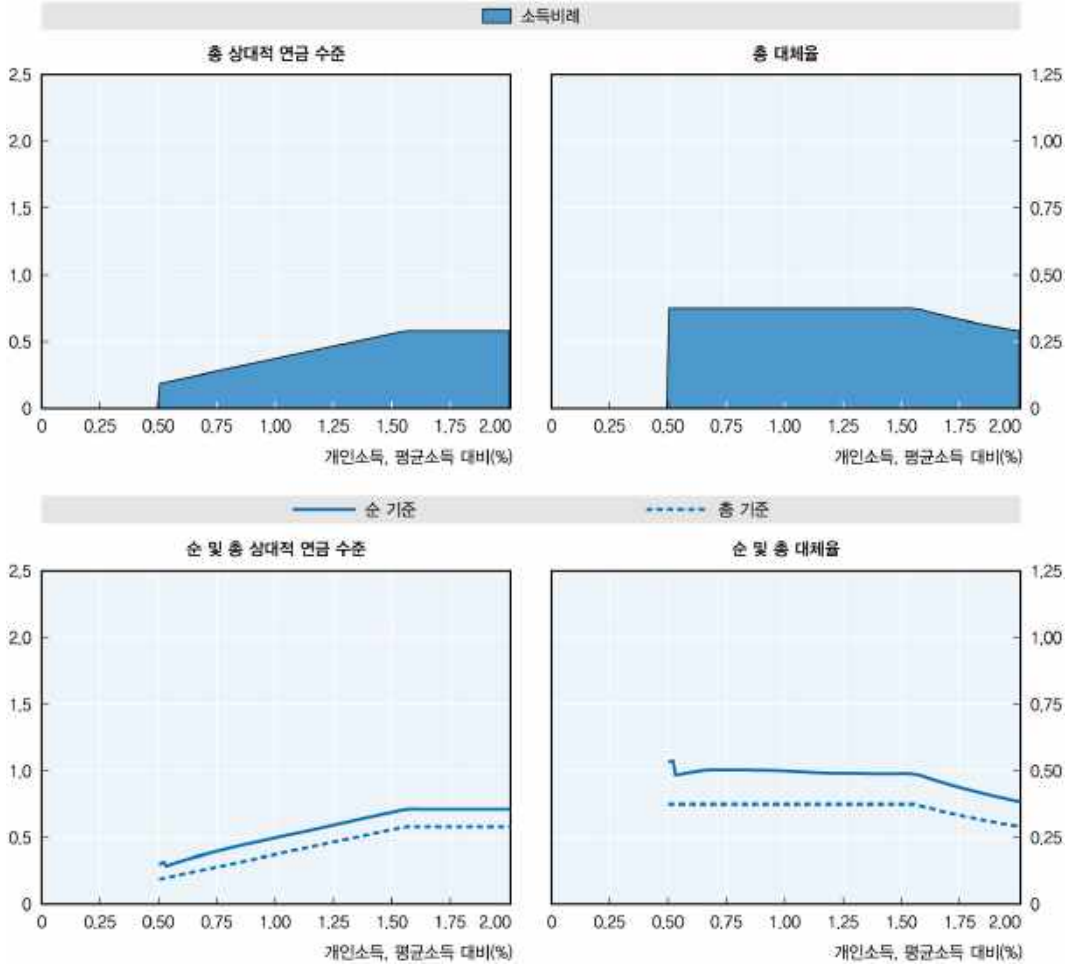


하지만 총액이 연간 1연금포인트를 초과할 수는 없다. 공적연금제도에서 이러한 양육 관련 혜택은 세금을 통해 재원이 충당된다.

### **실업**

실업보험은 실업자들을 대신해 연금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한다. 1단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UB1, Arbeitslosengeld I) 중에는 실업직전 총 소득의 80%를 기준으로 기여금이 납부된다. 1단계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연령 및 기여 년수에 따라 6개월에서 24개월 사이가 된다. 그 이후에는, 자산조사적이며 더 낮은 비율이 지급되는 두 번째 유형의 실업급여(UB2, Arbeitslosengeld II)로 넘어가게 된다. 이 기간 중에는 실업보험이 연금제도에 어떤 재정적 기여도 하지 않는다.

연금 모형화 결과: 2059년 독일, 수급연령 65세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기준 시나리오(선별적 제도의 임금연동)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18.7	28.1	37.5	56.2	58.3	58.3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30.3	39.3	50.0	69.4	71.4	71.4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37.5	37.5	37.5	37.5	29.1	19.4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53.4	50.4	50.0	49.0	38.3	25.9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4.5	14.5	14.5	14.5	11.3	7.5
순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4.5	12.7	12.0	11.1	8.6	5.7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http://dx.doi.org/10.1787/888933301431>

## 그리스

### 그리스: 2014년 연금체계

그리스 연금체계는 소득비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핵심 지표: 그리스

		그리스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유로(EUR)	20,168	33,036
	미달러(USD)	24,424	40,007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	14.5	7.9
기대여명	출생 시	80.7	80.0
	65세 시점	19.3	19.3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대비 %	20.2	16.2

<http://dx.doi.org/10.1787/888933301867>

## 수급요건

2013년 1월 1일부터 수급개시연령은 4,500일의 기여이력(15년에 해당)이 있는 남성과 여성의 경우 공히 67세이다. 12,000 근로일(40년)의 기여이력이 있는 근로자들은 62세에 전액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고되거나 비위생적인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 부양자녀나 장애자녀를 둔 여성들의 경우에는 혜택이 있다. 최저 노령연금은 15년의 기여 연수가 필요하다.

## 급여 산정

### 소득비례연금: 기본제도

소득비례연금의 지급률(2015년 1월 1일부터)은 연 0.80%(보험가입기간 300일부터 4,500일까지)에서 연 최대 1.5%(11,701일부터 15,000일까지 가입기간의 임금에 대해)까지 증가한다.

1993년 1월 1일부터 모든 가입자에 대해 노령연금 급여액 상한제가 적용된다. 상한액은 2011년 기준 2,773.40유로였다.

2014년 1월 1일부터 연금의 절반은 GDP의 연 증감률에, 나머지 절반은 CPI 증감률에 연동되며 CPI의 연 증감률이 조정의 상한선이 된다.

### 기초연금

2015년 1월 1일부터 수급자가 67세 이상이고 최소 15년간 그리스에 영구 거주했으며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으면 사회보장기구(Social Security Organisations)가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1개월분 기초연금 급여액은 미혼자 및 배우자가 일하는 기혼자는 486.84유로, 배우자가 일하지 않는 기혼자는 523.37유로이다.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고 자녀 수가 1-3명인 기혼자의 급여는 더 높다(각각 547.76유로, 571.99유로, 596.31유로). 독신자로 자녀가 1명일 때 511.23유로, 2명일 때 535.46유로, 3명일 때 559.78유로이다.

1년에 12회 지급되며 모든 급여는 소비자 물가에 연동된다.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조기수급은 가능하나 페널티(월 1/200씩 감액)가 따른다. 다만, 경력기간이 매우 길거나(62세에 기여 기간 40년), 고되고 건강에 해로운 직종에 종사한 경우는 예외가 인정되며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노령연금 전액을 수급할 수 있다.

년수	자격연령	조건
15	67	감액 없음
15	62	감액 있음(1/200)
40	62	감액 없음

### 수급연기

수급연기는 가능하며 공공부문 근로자를 제외하고 강제수급은 없다.

### 육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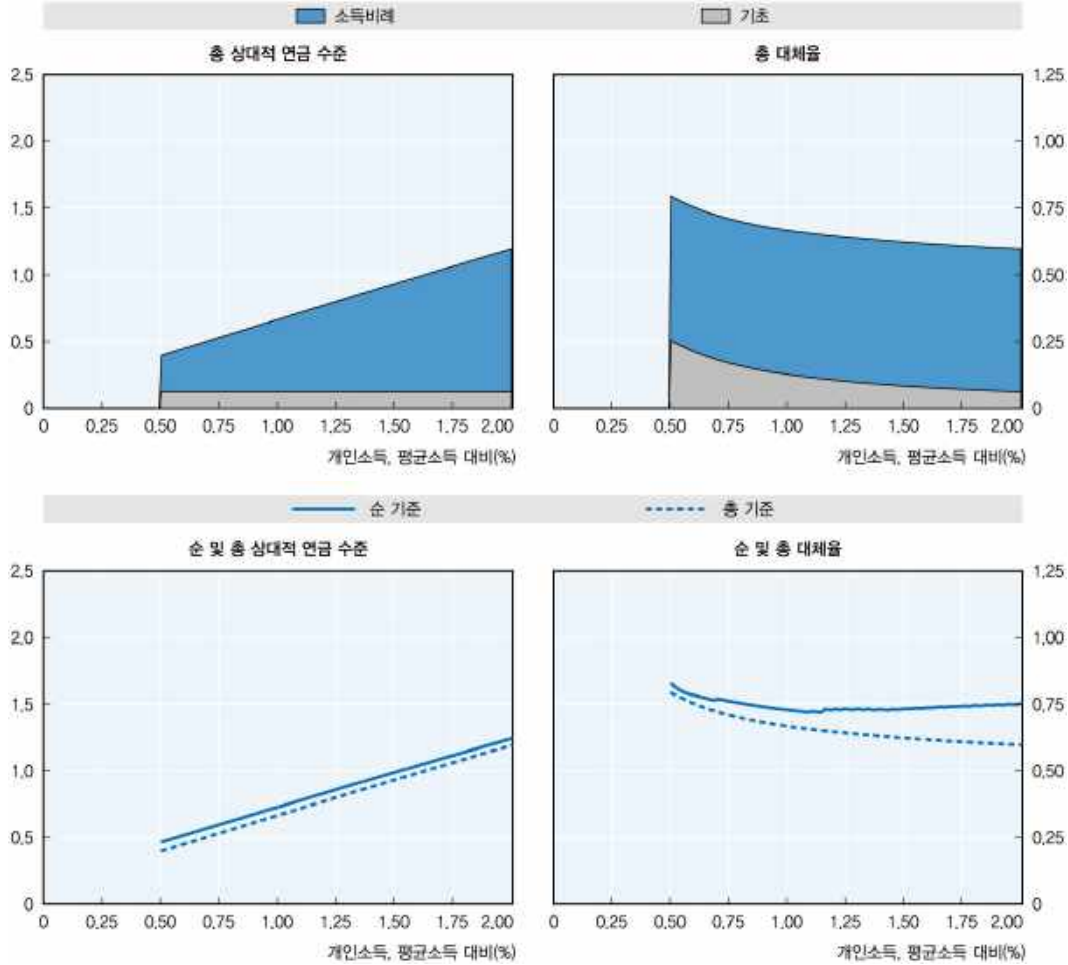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 수급요건에 따라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여성의 경우, 첫 번째 자녀에 대해 1년(가입기간 300일), 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2년(가입기간 600일), 최대 세 자녀까지 연금 수급요건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 단,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자녀들이어야 한다.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수급요건에 따라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이들의 경우, 자녀양육에 대해 부모 중 어느 쪽이건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데 크레딧 기간을 사용할 수 있다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1년 또는 300일, 두 번째 및 그 이후 자녀는 2년이며 모두 합해 최대 5년까지). 2014년부터 크레딧 기간의 최대한도는 7년이다. 연금자격을 갖추기 위해 고려될 수 있는 전체 크레딧 인정기간은 2014년부터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실업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엄격한 요건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가입자들의 경우, 실업기간(자발적 실업이건 비자발적 실업이건)은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산정 시 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평생 1년 또는 30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13년 기준 최대 크레딧 기간 6년이 적용된다. 연금 수급자격요건에 고려되는 전체 크레딧 인정 기간은 2014년부터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연금 모형화 결과: 그리스 2056년, 수급연령 62세



기초 시나리오: 입법 시나리오(안전망 제도의 물가 연동)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39.7	53.2	66.7	93.4	119.4	137.6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46.5	59.7	72.9	99	124.5	142.3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79.4	71.0	66.7	62.3	59.7	45.9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82.9	76.2	72.9	73.3	75.2	62.3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5.1	13.5	12.7	11.9	11.4	8.7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3.6	11.6	10.6	9.6	9.1	6.9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연금 모형화 결과: 그리스 2056년, 수급연령 62세(계속)**

대안적 시나리오: 선별적 제도의 완전 임금 연동						
남성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48.4	61.9	75.4	101.8	127.6	145.8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55.4	68.6	81.8	107.6	132.9	150.7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96.8	82.6	75.4	67.9	63.8	48.6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98.7	87.5	81.8	79.7	80.3	65.9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8.4	15.7	14.4	12.9	12.2	9.3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6.1	13.3	11.9	10.5	9.7	7.3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http://dx.doi.org/10.1787/888933301448>

## 헝가리

### 헝가리: 2014년 연금체계

헝가리 연금체계는 최저연금을 결합시킨 소득비례연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 비례연금은 강제적이며, 일원화되어 있고 확정급여형(DB) 부과방식 제도이다.

### 핵심 지표: 헝가리

		헝가리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포린트(HUF, 백만)	3,01	10,4
	미달러(USD)	11,526	40,007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	10,0	7,9
기대여명	출생 시	74,5	80,0
	65세 시점	16,4	19,3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대비 %	17,6	16,2

<http://dx.doi.org/10.1787/888933301875>

## 수급요건

표준 연금수급연령은 현재 62세 6개월이며 점차 연장 중이며(모든 연령 인구집단에 대해 6개월씩 연장됨) 2022년에 65세가 될 것이다. 또한 소득비례연금과 최저연금을 받으려면 모두 최소 20년의 근무기간이 필요하다. 15년 근무한 경우 최저연금에 대한 수혜자격은 없고 부분연금만 수급할 수 있다.

2012년에 강제적 사회보험 연금제도가 개혁되었다. 조기노령연금은 사회급여(“연금수급연령 전 급여”)로 변경되었다. 연금 급여는 표준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후에만 지급이 가능하다.

## 급여 산정

### 소득비례연금

소득비례 공적연금은 강제적 확정급여형제도다. 소득비례연금은 가입 첫 10년 평균소득의 33%로 산정된다. 가입 11년에서 25년까지 1년당 2%, 26년에서 36년까지 1년당 1%, 37년에서 40년까지 1년에 1.5%, 그 이후에는 2%씩 추가된다.

소득기준은 순 임금(총 소득에서 기여금과 세금을 제함)이다. 과거 소득은 은퇴 직전 연도의 국가 전체 평균소득에 맞춰서 재평가된다. 2012년부터 연금 급여는 소비자물가지수의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 최저연금

최저연금액은 월 28,500포린트이다. 정부는 증가분에 대한 결정을 한다. 액수는 2009년 이래 변경되지 않았다.

### 자산조사 안전망

표준 연금수급연령이 되었지만 사회보장연금 수급 자격이 없고 기타 충분한 소득원이 없는 사람들은 자산조사 노령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수당은 세금으로 재원이 조달되며 사회부조제도의 일환이다.

### 강제적 사적연금의 해체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강제적 적립식 확정기여형(DC)제도에 대한 모든 기여금 납부가 중단되었고 모든 기여금은 공적연금제도로 전용되었다. 확정기여형(DC)제도의 가입자들은 2011년 1월 31일까지 잔류할지 부과방식의 공적연금제도로 되돌아갈지를 결정해야 했다. 사적연금 가입자들은 자발적으로 사적기금에 개인계정회비(기여금은 아님)를 낼 수 있다. 2층은 완전히 해체되었다.

해체 전에는 혼합형 제도의 가입자가 약 310만 명(전체 근로자의 70% 이상)이었다(2010년 말 기준). 해체 후에는 10만 2천 명의 가입자만이 확정기여형(DC)제도에 잔류하기로 결정했다. 2011년 12월 31일부터 모든 사회보장기여금(고용주와 근로자의 기여분)이 연금보험기금(Pension Insurance Fund)으로 가고 있다. 사적연금 가입자들은 자신의 개인계정에 자발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전에 탈퇴를 선택했던 가입자들 역시 공적 소득비례연금으로 복귀할 수 있다(2012년 3월 31일까지). 대략 2만 3천명의 사적연금 가입자들은 복귀 가능성이 열리자 사회보장제도로 되돌아왔다. 현재 61,498명(2014년 4분기 기준)이 연금에 가입해있다. 확정기여형(DC) 사적연금제도에 누적된 금액은 은퇴 시에 연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금은 적어도 공적연금과 동일한 연금 지급액 연동을 제공해야 한다. 연금률 산정은 남녀공통의 사망률 표를 사용한다.

## 경력차이

### 조기수급

2011년 1월 1일부터 적격기간 40년인 여성을 위한 새로운 조기수급옵션이 도입되었다. 이 옵션은 연령에 관계없이 적격기간이 최소 40년이고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여성들을 위한 것이다. 적격기간에는 소득활동기간이나 산모수당, 육아수당, 재가 아동양육수당, 양육지원금, 개호급여 등의 수급기간이 포함된다. 최소 32년의 소득활동기간이 필요하다(개호급여의 경우 30년). 최소 적격기간은 5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서는 자녀 한 명당 1년씩 줄어든다(최대 7년까지 가능함).

### 수급연기

소득비례연금의 수급을 연기할 수 있다. 연금은 추가적 근무기간 1개월당 0.5%씩 증액된다. 최종 연금액은 연금 가입자가 근속기간이 충분한 상태에서 법정 은퇴연령이 된 경우 은퇴전 월 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할 수 있다.

### 육아

1998년부터 연금 기여금은 산모수당, 육아안심급여, 양육수당 및 육아지원금 등과 같은 급여에 기초하여 납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들 급여액이 가입자에게 유리한 경우 연금기준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산모수당(terheségi gyermekagyi segely)은 임신기간 중이거나 출산 후 여성에게 24주(168일)간 지급된다. 급여는 전년도 일 평균소득의 70% 수준이다. 육아안심급여(gyermekgondozási díj)는 산모수당이 만료된 이후 부모 중 한쪽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모의 보험기간만큼 제공되지만 자녀가 두 살이 될 때까지(최대 84주) 수급이 가능하다. 급여액은 전년도 일 평균소득의



70%로 최저임금의 두 배까지이다(2014년 142,100포린트).

2014년 기준 10%에 달하는 개인부담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다. 양육수당(gyermekgondozasi segely)은 부모 중 자녀가 세 살이 될 때까지(최대 36개월) 또는 쌍둥이의 경우 초등학교에 입학한 년도 말까지, 중증장애나 불치병에 걸린 자녀를 둔 경우 열 살이 될 때(최대 120개월)까지 해당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월 금액은 가족 내 자녀 수에 관계없이 2008년 1월부터 28,500포린트로 최저 노령연금액과 동일하다. 다둥이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곱해진다(쌍둥이의 경우 2배, 세 쌍둥이의 경우 3배 등). 2014년 1월 1일 이후 또 다른 자녀가 태어나서 부모가 급여에 대한 자격을 다시 획득하거나, 자녀가 둘 다 2014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나면 양육수당은 최대 두 자녀에 대해 지급될 수 있다. 동일 임신에서 태어난 자녀(쌍둥이 등)는 다음 자녀가 태어날 때 한 자녀에 대한 수당 수급자격을 창출한다. 이 경우 양육수당이 다음 자녀에 대해서도 지급될 수 있다.

자녀의 첫 돌 이후에는 조부모가 급여액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부담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며 2014년에는 10%였다. 육아지원금(gyermeknevelési támogatás)은 부모 중 자녀를 돌보는 사람에게 나오는 수당으로 막내의 세 번째 생일과 여덟 번째 생일 사이 기간에 세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수급한다(최대 60개월). 월 금액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최저 노령연금액과 동일하다.

근로를 중단한 기간은 해당 가구의 구성과 자녀 수 및 연령에 따라 달라지지만 중단기간의 합에는 상한선이 없으며 급여액은 부가되지 않는다.

2014년 육아수당을 제외한 연금 기여금은 다음 기관에서 납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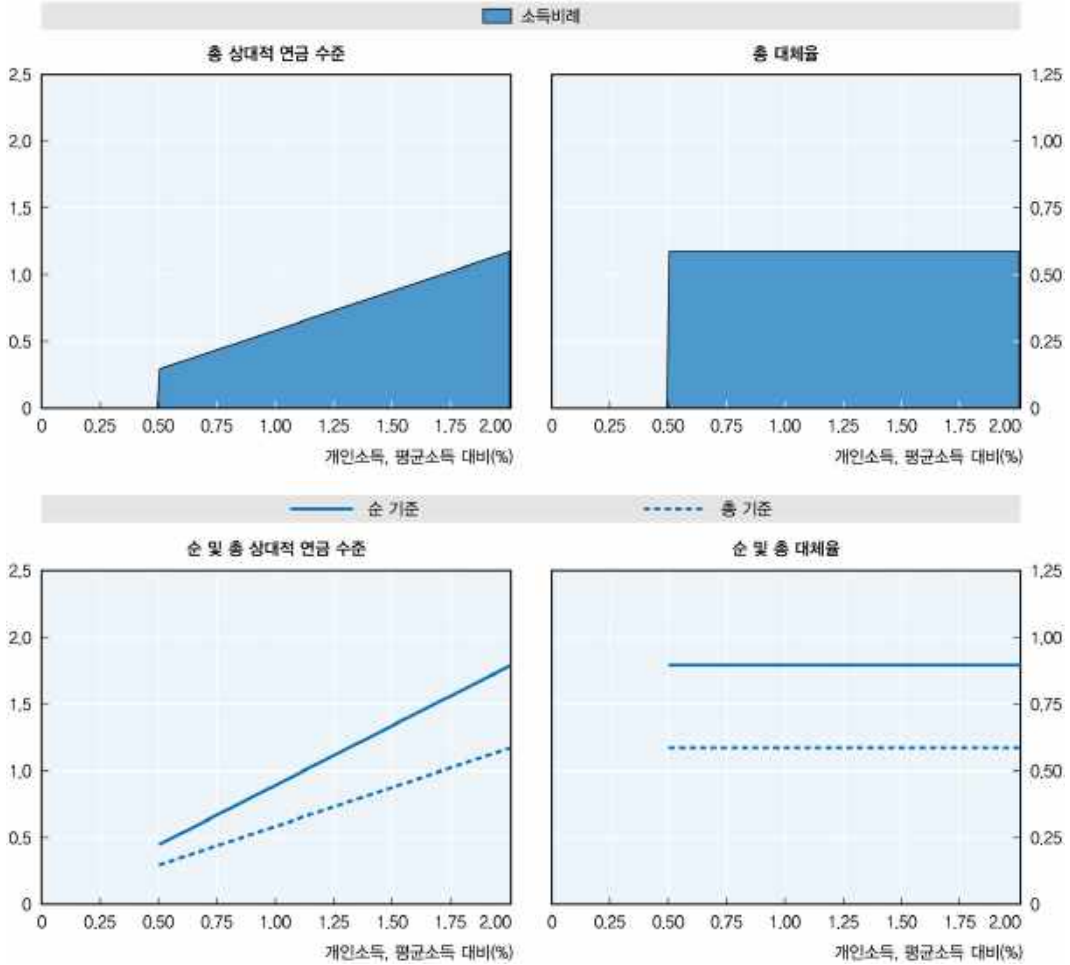
	개인	고용주	정부
산모수당	-	-	-
육아안심급여	×	-	
육아수당	×	-	
육아지원금	×	-	

## 실업

실업자는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실업기간은 연금가입기간에 산입된다. 실업기간에 대한 소득지표는 (i) 실업급여액 또는 (ii) 이전 및 이후 근로소득의 평균 중 유리한 것으로 한다.

고령실업자들은 45일간 구직수당을 받았고 구직급여수급권을 소진했거나, 구직급여가 고용으로 인해 종료되었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다시 갖지 못하면서 5년 이내에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할 예정이며 최소 20년간 연금제도에 기여했다면, 연금수급연령 이전에 구직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 모형화 결과: 헝가리 2059년, 수급연령 65세



기준 시나리오: 입법 시나리오(선별적 제도의 물가 연동)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29.3	44.0	58.7	88.0	117.4	176.0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44.8	67.2	89.6	134.4	179.2	268.7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58.7	58.7	58.7	58.7	58.7	58.7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89.6	89.6	89.6	89.6	89.6	89.6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8.5	8.5	8.5	8.5	8.5	8.5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0.1	10.1	10.1	10.1	10.1	10.1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http://dx.doi.org/10.1787/888933301454>

## 아이슬란드

### 아이슬란드: 2014년 연금체계

소득조사에 기초하는 기초연금(국민연금)과 강제가입의 퇴직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핵심 지표: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코로나(ISK, 백만)	6.86	5.1
	미달러(USD)	53,779	40,007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	2.1	7.9
기대여명	출생 시	82.0	80.0
	65세 시점	20.0	19.3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대비 %	13.4	16.2

<http://dx.doi.org/10.1787/888933301880>

## 수급요건

정상 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7세이다. 전액 기초연금은 40년간 거주해야 수급할 수 있다. 거주기간이 짧으면 연금액도 비례적으로 감액되며 16세에서 67세 사이에 최소한 3년은 거주해야 한다. 민간부문 퇴직연금 가입자들도 연금수급연령은 67세이나 해상에서 25년 이상 일한 어부의 경우는 60세이다. 사회보장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최저연금을 보장하며 연기금에 납부해놓은 금액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연금 급여는 근로소득과 동일한 방법으로 소득세의 적용을 받는다.

## 급여 산정

### 기초연금

완전 기초연금액 가치는 연 423,348코로나로 평균 근로자소득의 6%에 해당한다. 다른 소득원이 있으면 기초연금은 감액되며 특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완전 환수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 보충연금이나 사회부조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근로소득 혹은 자본소득)이 258만 코로나 또는 평균소득의 38%를 초과하면 감액이 시작되고 427만 코로나 또는 평균소득의 62%를 초과하면 지급액이 없다. 기초연금은 물가 혹은 임금에 연동될 수 있다. 지난 2년간 기초연금은 물가에 연동되었다.

### 선별적 연금

두 번째 요소는 보충연금이다. 이 급여의 최대 가치는 독신자의 경우 연 134만 코로나로 평균 소득의 약 20% 정도이다. 이 급여는 근로소득이 연 132만 코로나(평균소득의 약 20%), 기업연금이 259,200코로나, 자본소득이 98,640코로나를 초과하면 감액된다. 보충연금에서 소득조사에 따른 감액율은 258만 코로나까지는 13.35%, 이를 초과하는 액수는 38.35%이다.

사회부조특별법에 따라 특별한 상황이거나 수급자가 사회부조 없이는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외에 다양한 사회부조급여가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신자에 대한 가구보충수당 등 추가적인 보충 및 지원을 위한 특별보충수당이 있다.

## 강제적 퇴직연금

모든 근로자들은 기업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임금의 특정 비율을 연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고용주는 종업원을 위해 이들 기금에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16세에서 70세까지의 국민들에게 강제적용된다. 퇴직연금제도의 최저 기여율은 소득의 12%이다. 근로자는 총 임금의 4%를 납부하고 고용주가 8%를 납부한다. 공공부문과 그 외 특정 부문에서는 고용주의 기여분이 더 크다. 법에서는 기여 연수 40년의 경우 대체율 56%를 목표로 하도록 하고 있어 재직 년당 지급률이 1.4%가 된다. 연금산정에 기준이 되는 소득은 생애평균소득이다. 연금대상소득에는 한도가 없다. 과거 소득은 인플레이션에 3.5% 금리를 더하여 재평가된다. 모형화에서 과거 소득은 소득성장률에 의거하여 재평가된다고 전제한다. 연금지급은 67세에 시작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수급개시를 65세로 앞당길 수도 있고 70세로 연기할 수도 있다.

## 경력의 차이

### 조기수급

강제적 퇴직연금제도상 조기퇴직규정은 기금마다 다르며 기금 가입자의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민간부문에서는 정상 수급개시연령이 67세이며 65세부터 조기수급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조기 수급하는 경우 연 7%씩 연금이 감액된다. 기초연금이나 선별적 연금은 조기수급이 불가능하다.

### 수급연기

기초연금과 보충연금을 최대 72세까지 연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급여는 매월 0.5%씩 인상된다. 최대 30%까지의 인상이 가능하다. 강제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연금 수급을 최대 70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연기 시 급여액은 연 8%정도씩 인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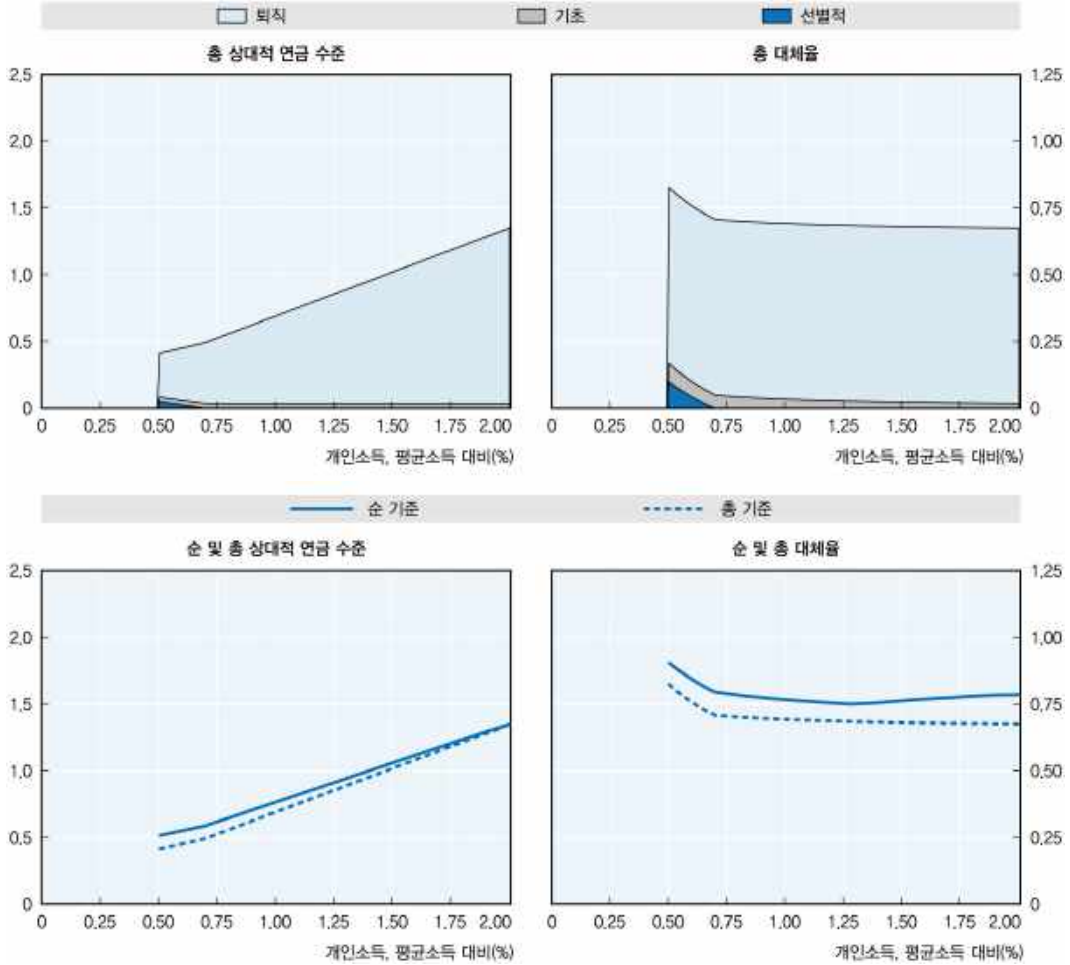
### 육아

국가사회부조제도는 장기 질병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를 돌봐야 하는 부모에 대한 급여도 포함하고 있다. 세 종류의 급여가 있는데 노동시장에서 근로하는 부모에 대한 급여, 학업 중인 저소득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급여와 기초급여, 근로도 학업도 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급여가 그것이다.

### 실업

최소 10%의 기여가 부과되는 기여기준(contribution base)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실업보험급여도 포함되지만 그 외 모든 급여는 제외된다.

연금 모형화 결과: 아이슬란드 2061년, 수급연령 67세



기준 시나리오: 입법 시나리오(선별적 제도의 물가 연동)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41.3	52.8	69.2	102.1	135.0	200.8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51.6	61.9	76.7	106.1	135.1	188.2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82.6	70.4	69.2	68.1	67.5	66.9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90.5	78.9	76.7	76.3	78.5	79.1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4.8	12.3	12.1	11.9	11.7	11.6
순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2.3	9.6	8.9	8.2	7.8	7.3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연금 모형화 결과: 아이슬란드 2061년, 수급연령 67세(계속)**

대안적 시나리오: 입법 시나리오: 선별적 제도의 완전 임금 연동						
남성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56.8	68.1	78.3	104.9	137.8	203.6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65.5	75.6	84.7	108.6	137.3	190.4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113.6	90.8	78.3	69.9	68.9	67.9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115	96.4	84.7	78	79.8	80.0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20.9	16.4	13.9	12.2	12	11.8
순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6.1	12.1	10	8.4	8	7.4
	17.9	13.5	11.1	9.4	8.9	8.2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http://dx.doi.org/10.1787/888933301460>

## 인도

### 인도: 2014년 연금체계

근로자들은 EPFO(근로자퇴직기금운영 기구)에서 운영하는 소득비례 근로자연금과 확정기여형(DC) 근로자퇴직기금, 사용자가 운영하는 근로자퇴직기금에 가입되어 있다.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중앙정부 공무원들은 신연금제도(NPS)에 기반한 확정기여형(DC)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 핵심 지표: 인도

		인도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루피(INR)	80,338	2,528,029
	미달러(USD)	1,271	40,007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		7.9
기대여명	출생 시	66.3	80.0
	65세 시점	13.7	19.3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대비 %	5.5	16.2

<http://dx.doi.org/10.1787/888933301890>

## 수급요건

근로자연금제도(Employees' Pension Scheme)의 소득비례연금 급여에 대한 정상 수급개시연령은 기여 년수가 10년 이상인 경우 58세이다. 소득비례 근로자퇴직기금(Employees Provident Fund)의 정상 수급개시연령은 55세이다.

201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약 12%(약 5천 8백만 명)가 다양한 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다. 가입된 개인들은 조직화된 부문에 속하며 정부, 공기업, 공적 및 사적부문 기업에 의해 고용된 상태로 모두 EPFO(근로자퇴직기금운영기구)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장된다. 20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들은 EPFO에 의해 보장된다. 나머지 88%의 근로자는 주로 비조직화된 부문(자영업, 일당 근로자, 농부 등)에 속하며 일부는 조직화된 부문에 고용되어 있지만 EPFO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지는 않다. 이 부문에 속한 근로자에 대해서 공공퇴직기금(PPF)과 우체국저축(Postal Savings Schemes)이 전통적으로 주된 장기저축 도구였지만 해당 인구 중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에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 급여 산정

### 근로자적립기금제도(EPF, Employees Provident Fund Scheme)

1개월에 기본급이 15,000루피 이하인 종업원은 월 급여의 12%를 기금에 납부하고 고용주는 3.67%를 납부한다. 이렇게 해서 한번에 15.67%가 누적된다.

1개월 기본급이 15,000루피 이상인 종업원은 월 급여의 12%를 납부하고 고용주가 동일한 액수를 기여한다. 이렇게 해서 한번에 24%가 누적된다.

2014년 9월 이전에는 기본급이 당시 급여상한선(1개월에 6,500루피) 이상인 종업원은 고용주 기여율이 3.67%로 낮았는데 나머지 8.33%는 연금제도로 전용되었기 때문이다.

연금형태의 급여는 제공되지 않으며, 55세 도달하고 퇴직 시 누적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른 국가와의 대체율을 비교하기 위해 급여는 남녀사망률을 기준으로 산정된 물가연동 연금형태(price-indexed annuity)로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 근로자연금제도(EPS, Employees' Pension Scheme)

2014년 9월부터 월 기본급이 15,000루피 이상인 신규 가입자는 더 이상 EPS에 기여할 옵션을 갖지 못한다. 여태까지 이전의 6,500루피를 임금 상한선으로 기여해왔던 기존 가입자들은 15,000루피로 증액된 임금 상한선을 기준으로 계속 기여할 옵션을 갖지만, 상한선을 초과한 액수에 대해선 1.16%의 정부보조금도 내야 한다.

15,000루피의 새 기본급 상한선 내에 속하는 기존 및 신규 가입자들을 위해 고용주는 기본급의 8.33%에 해당하는 금액을 EPS기금에 기여하며 중앙정부가 임금의 1.16%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EPS에 기여한다. 이 누적액은 퇴직 시 또는 조기퇴직 시 다양한 연금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된다. EPS 제도에서 가입자가 받는 연금의 종류는 퇴직 연령과 유자격 근무 년수에 따라 다르다.

$$\text{월 연금액} = (\text{연금대상 급여} \times \text{연금대상 근무 년수})/70$$

2014년 9월부터 연금대상 임금은 마지막 6개월(예전에는 이전 12개월이었음) 기여기간의 평균 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될 것이다.

가능한 최대 대체율은 대략 50%이다.

2014년 9월부터 1개월당 1,000루피의 최저연금이 EPS제도에서 지급되고 있다.

### 선별적 사회안전망

인구 전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존재하지 않는다.

## 경력의 차이

### 조기수급

EPS는 기여 년수 10년인 경우 50세부터 수급할 수 있고 조기수급의 경우 급여액은 연 3%씩 감액된다. 가입자가 근무년수 10년을 채우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급여를 인출할 수 있다. 인출가능 금액은 퇴사일 기준 월 급여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비율은 근무년수에 따라 달라진다. 근무년수 10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기간이 중단된 경우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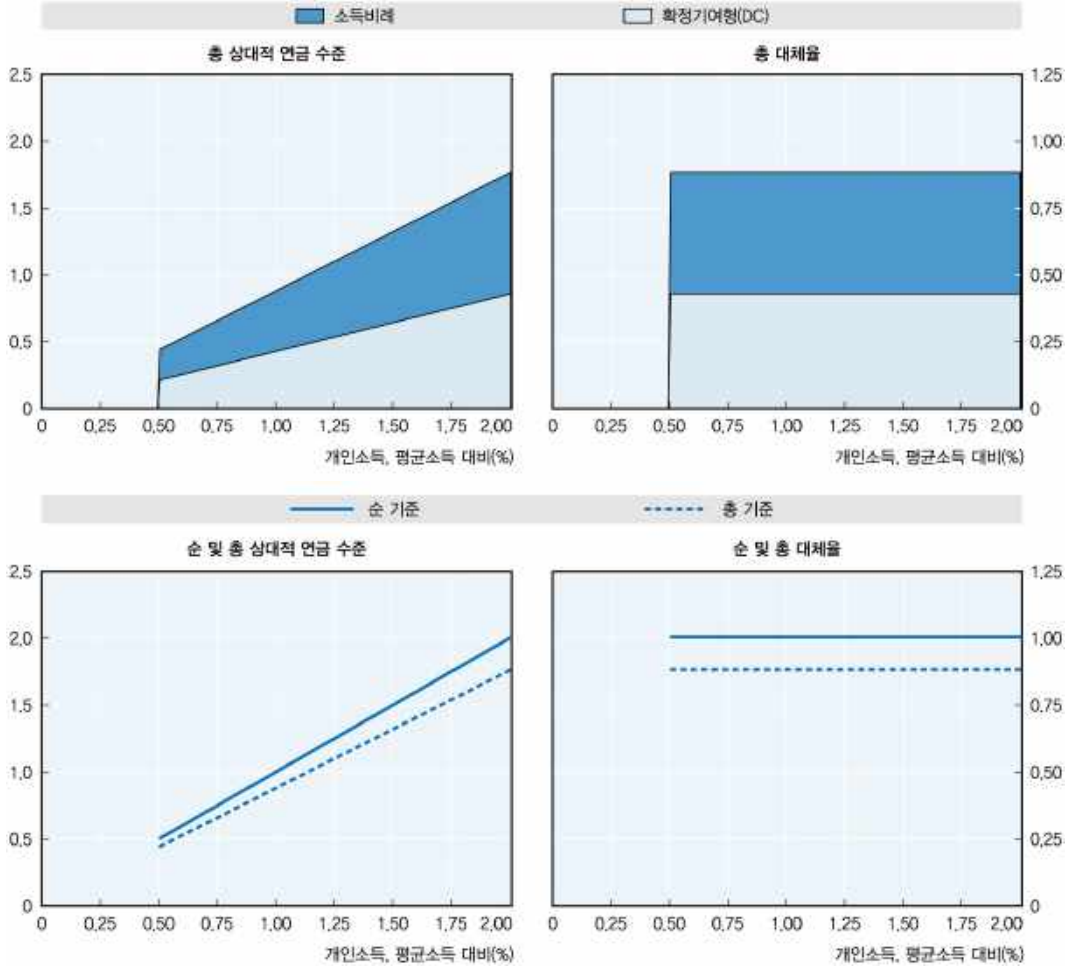
EPF의 경우, 누적액의 조기수급을 허용하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결혼, 주택자금, 생명보험 가입, 가입자 및 가족의 질병치료 등의 사유가 있으면 부분수급이 허용되며 은퇴 1년 전 등의 사유로도 수급이 허용된다. 허용되는 다양한 부분인출 외에 가입자는 현 직장을 퇴사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조기퇴직을 결정한 경우 계좌를 폐쇄하고 전액을 수급할 수 있다. 5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은 없다.

### 수급연기

정상 연금수급연령 이후로 연금 수급을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금 모형화 결과: 인도 2052년, 수급연령 58세



기준 시나리오: 입법 시나리오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48.3	72.4	96.5	144.8	193.0	255.0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54.8	82.3	109.7	164.5	219.4	289.8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96.5	96.5	96.5	96.5	96.5	85.0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109.7	109.7	109.7	109.7	109.7	96.6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6.0	16.0	16.0	16.0	16.0	14.2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6.9	16.9	16.9	16.9	16.9	14.8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4년임

<http://dx.doi.org/10.1787/888933301475>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2014년 연금체계**  
 민간부문 근로자들은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핵심 지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루피아(IDR, 백만)	17.20	496.96
	미달러(USD)	1,385	40,007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		7.9
기대여명	출생 시	70.7	80.0
	65세 시점	14.2	19.3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대비 %	5.4	16.2

<http://dx.doi.org/10.1787/888933301901>

### 수급요건

정상 수급개시연령은 55세이다. 은퇴는 필수조건이 아니고 기여 년수가 15년 이상이고 55세에 도달한 근로자는 정기적인 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기여 년수가 15년 미만인 자는 일시불을 받을 수 있다.

### 급여 산정

#### 확정기여형(DC) 연금

민간부문 근로자들은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1993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에는 근로자 사회보장프로그램들(PT Jamsostek) 중 하나였으며, 이 경우 Jaminan Hari Tua(JHT) 이거나 OAS(노령보장: Old Age Security)를 의미한다. 총 기여율은 임금의 5.7%이다. JHT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적 프로그램이며 퇴직자는 부분적으로 일시불로 인출하고 부분적으로 사망 시까지 정기 연금을 받다가 일시불로 받도록 선택할 수 있다. 근로자는 소득의 2%를 기여하며 고용주는 3.7%를 납부한다. 연금 잔액이 3백만 루피아가 넘으면 연금은 일시불로 지급되거나 최대 5년까지 매달 지급될 수 있다. 다른 국가들과의 대체율 비교를 위해 급여는 성별 사망률표에 근거한 물가연동 연금형태로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새로운 국가사회보장제도(NSSS)는 2015년 7월 1일에 시행되고, PT Jamsostek은 BPJS Ketenagakerjaan 혹은 BPJS 종업원(Employee)라는 이름의 공식관리기구가 될 예정이다. 새로운 사회보장연금은 확정급여형(DB)제도로 현행 확정기여형(DC)제도를 보완하게 된다. 새로운 확정급여형 제도의 제안된 총 기여율은 8%이다. 급여 산정방식은 아직 미정이므로 이 급여는 모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NSSS프로그램과 임금기준 기여율

프로그램	공유 기여율(%)			비고
	고용주	종업원	합계	
1. 의료	3.0	2.0	5.0	안
2. 산재	0.25-0.75	-	0.25-0.75	
3. 연기금	3.7	2.0	5.7	Jamsostek
<b>4. 연금플랜</b>	<b>5.0</b>	<b>3.0</b>	<b>8.0</b>	<b>안</b>
5. 사망급여	0.3	-	0.3	Jamsostek
합계	12.25-12.75	7.0	19.25-19.75	

출처: National Social Security Council (2012)

## 경력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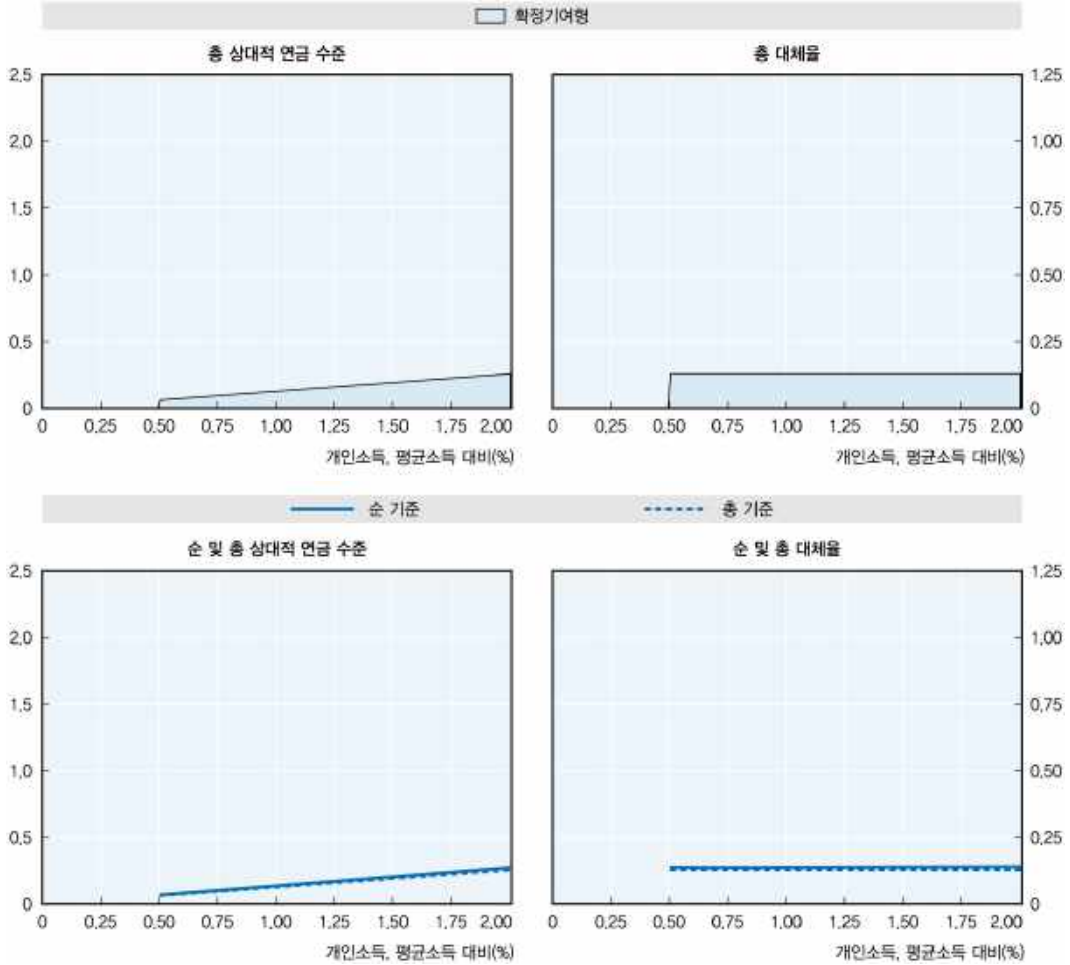
### 조기수급

기여 년수 최소 5년이면 어떤 연령에서건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 수급연기

정상 수급개시연령 이후로 수급을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금 모형화 결과: 인도네시아 2049년, 수급연령 55세



기준 시나리오: 입법 시나리오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6.5	9.7	13	19.5	25.9	38.9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6.9	10.3	13.8	20.6	27.5	41.3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13	13	13	13	13	13.0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13.8	13.8	13.8	13.9	14	14.2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2.3	2.3	2.3	2.3	2.3	2.3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2.3	2.3	2.3	2.3	2.3	2.3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4년임.

<http://dx.doi.org/10.1787/888933301489>

## 아일랜드

### 아일랜드: 2014년 연금체계

공적연금제도는 기여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이들에게 정액급여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이다. 또한 저소득 노인에게 안정망을 제공하는 자산조사적 연금도 있다. 자발적 퇴직연금제도는 가입률이 높으며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가입해 있다.

### 핵심 지표: 아일랜드

		아일랜드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유로(EUR)	34,466	33,036
	미달러(USD)	41,739	40,007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	5.3	7.9
기대여명	출생 시	80.6	80.0
	65세 시점	19.2	19.3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대비 %	12.6	16.2

<http://dx.doi.org/10.1787/888933301913>

## 수급요건

공적연금(기여형)은 66세부터 수급이 가능하다. 공적연금의 수급을 신청하는 연령이 2014년부터 66세로 표준화됨에 따라 과도기형 공적연금은 2014년 1월부터 폐지되었다. 공적연금 수급개시연령은 2021년 67세, 2028년 68세로 상향 조정 중이다.

공적연금(기여형)에서 전액 수급하려면 근로기간 전체에 걸쳐 연 평균 48주 이상의 기여 또는 크레딧이 필요하다. 기여이력이 그보다 적을 경우 연금액이 감액된다. 이 부분연금은 연 10주의 최소 평균 기여기간을 필요로 한다. 또한 최소 총 납부(크레딧과 반대개념) 기여기간 520주도 필요하다(10년의 완전가입에 해당).

자산조사적 공적연금(비기여형)은 66세부터 지급 가능하다.

## 급여 산정

### 기초연금

공적연금(기여형) 급여는 주당 230.30유로이고 수급자가 80세 이상인 경우 10유로가 추가로 매주 지급된다. 만약 수급자가 66세 이상, 독신이거나 혼자 살 경우 주당 7.70유로를 추가로 지급한다.

### 선별적 연금

2014년 자산조사적 공적연금(비기여형) 급여는 독신인 경우 주당 최대 219유로를 지급한다. 이때 66세 미만의 피부양 성인이 있는 경우 144.70유로를 추가로 지급한다. 피부양자가 66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 피부양자가 이 연금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경우 추가지급액은 주당 최대 219유로이다. 소득 자산조사(means test) 시 주당 30유로의 소액 소득공제와 200유로의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이 그 이상을 초과하면 급여는 소득의 100% 수준에서 감액된다. 자산조사(assets test)도 있는데 2만 유로 이상의 자본은 표준산식을 이용해 소득으로 전환된다.

### 자발적 사적연금

추가적인 자발적 연금제도가 있는데, 이는 확정기여형(DC)인 것으로 가정했다. 기여율은 10%로 가정했다.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기여형 및 비기여형 공적연금 모두 66세부터만 신청이 가능하며 정상 수급개시연령 이전에 수급할 수 없다.

### 수급연기

과도기형 공적연금과 달리, 기여형 공적연금은 수급자가 은퇴할 필요가 없고 근로소득조사(earnings test)의 대상이 아니다. 2014년에 과도기형 공적연금이 폐지됨으로써 수급연령 이후의 근로에 대한 커다란 저해요소(disincentive)가 제거되었다. 연금 수급 연기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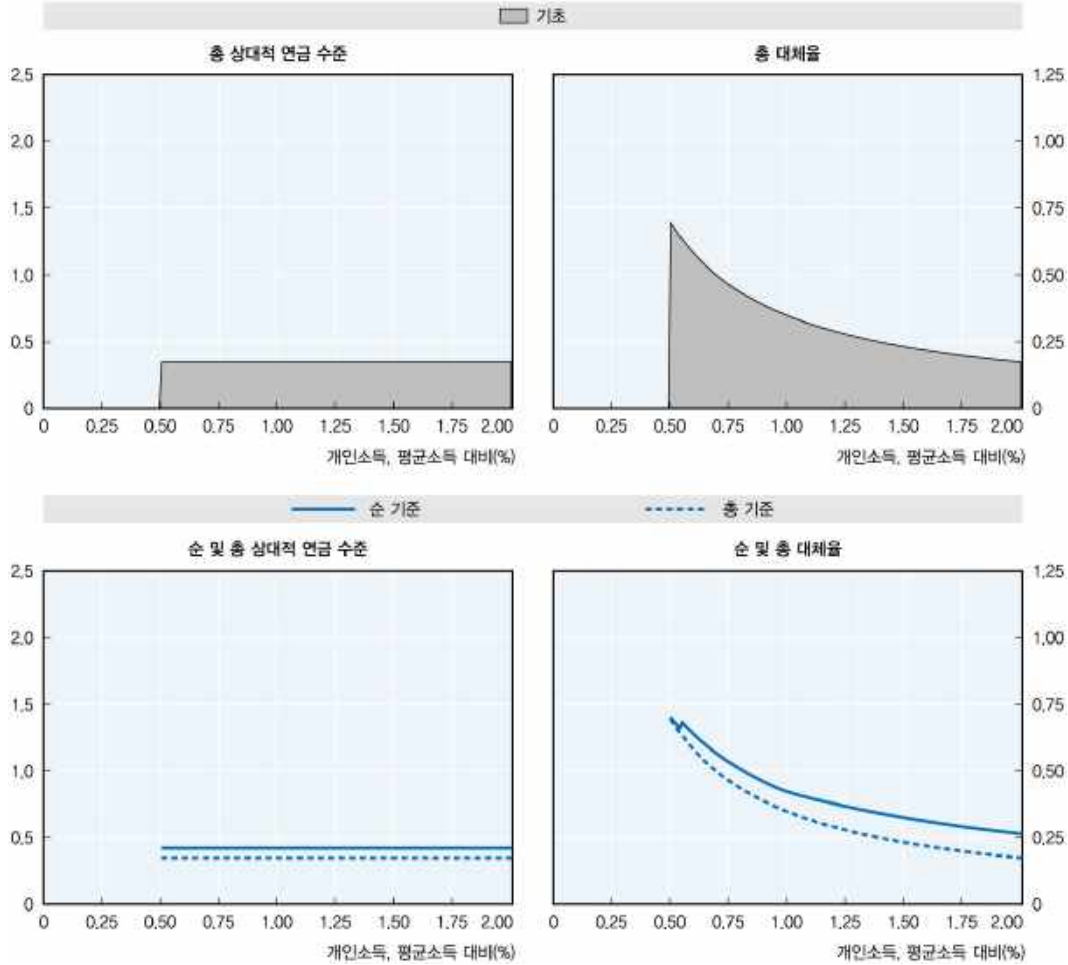
### 육아

전체 근로기간 중 최소 520주의 기여금이 납부되었다면 궁극적인 공적연금 수급액은 육아/돌봄 목적으로 유급 근로를 중단한 기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연금 수급액 결정에 사용되는 평균 기여액 산정 시 자녀와/또는 장애를 가진 성인(1994년 이래)을 돌본 기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 실업

전체 근로기간 중 최소 520주의 기여금이 납부되었다면 궁극적인 공적연금 수급액은 실업기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 그 기간에 대한 크레딧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연금 모형화 결과: 아일랜드 2062년, 수급연령 68세



기본 시나리오: 입법 시나리오(기초연금 급여의 임금 연동)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34.7	34.7	34.7	34.7	34.7	34.7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42.2	42.2	42.2	42.2	42.2	42.2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69.5	46.3	34.8	23.2	17.4	11.6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70.1	53.3	42.2	32.5	26.4	19.2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2.9	8.6	6.5	4.3	3.2	2.2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4.7	9.8	7.3	4.9	3.7	2.4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2.6	8.4	6.3	4.2	3.2	2.1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4.3	9.6	7.2	4.8	3.6	2.4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http://dx.doi.org/10.1787/888933301497>

## 이스라엘

### 이스라엘: 2014년 연금체계

공적연금은 보편적 연금보험과 자산 조사에 기초하는 소득지원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 이전까지 자발적 기여가 일반적이었으나 2008년 1월 1일에 확정 기여형(DC) 연기금에 대한 강제적 기여가 도입되었다.

핵심 지표: 이스라엘

		이스라엘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세켈(ILS)	130,605	156,133
	미달러(USD)	33,466	40,007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	4.8	7.9
기대여명	출생 시	81.7	80.0
	65세 시점	20.0	19.3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대비 %	10.9	16.2

<http://dx.doi.org/10.1787/888933301927>

### 수급요건

거주민은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면 국민보험기구로부터 노령연금을 수급할 자격이 있다. 남성의 은퇴가능연령은 2010년에 67세에 도달했던 반면 여성은 현재 62세이며 2017년까지 법에 따라 64세로 연장될 것이다. 남성의 경우 70세까지, 여성의 경우 2009년 현재 67세까지 연금을 수급하려면 근로 소득액이 한도 미만이어야 하는데 여성의 연령도 70세로 연장될 것이다.

### 급여 산정

#### 기초연금

개인은 전국 평균소득의 60%를 기준으로 그 미만인 경우 소득의 0.22%를, 이상인 경우는 3.85%를 기여하는데 평균임금의 60%는 2014년 1월 기준 9,089세켈이었다.

기여 목적의 최저소득은 4,300세켈로 최저임금과 같았다. 이 금액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최저임금을 버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여금을 납부한다.

기여 목적의 최대소득은 2014년 1월 1일 기준 전국 평균소득의 5배였다. 기초연금 급여는 물가에 연동된다.

기초연금은 독신 연금수급자의 경우 연 18,368세켈인데 이는 노령 기준액의 17.7%에 해당하며 부부의 경우 연 27,612세켈이다. 노령연금 월간 기준액은 2014년 8,648세켈이다. 80세 이상 노인에게 대한 기초연금은 독신인 경우 19,404세켈이고 부부인 경우 28,644세켈이다.

보험 가입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연 2%의 가산금이 있으며, 한도는 기초연금의 50%이다.

#### 안전망

소득보충은 연금을 포함한 소득이 최저 생계유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된다. 급여액은 개인의 연령, 결혼여부와 가구 크기에 좌우된다. 지급률은 노령연금 기준액의 30.3%에서 63.4% 사이이며 결혼 여부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이 금액은 7% 인상되었다. 소득 지원은 확정기여형(DC)연금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이 있으면 그의 60%가 감액된다.

이스라엘의 통계 데이터는 이스라엘의 해당 정부기관 책임 하에 동 기관이 제공하였다. OECD는 국제법에 따라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 지역 유대인 정착촌의 상황에 대한 편견없이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또한 노인은 필요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난방보조를 받을 수 있다. 노령보험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거주민은 특별급여를 받는다.

### 확정기여형연금

2008년 1월부터 모든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평균임금까지 강제적 기여가 적용되었다. 처음에는 총 기여율이 2.5%정도에 그쳤으나 2013년까지 15%로 인상되었다(5%는 근로자, 10%는 고용주가 부담). 2014년에 기여율이 좀 더 증가하여 17.5%가 되었다. 고용주 기여금의 절반은 퇴직보험(severance insurance)에 들어가는데, 이 금액이 사용되면 연금이 줄어든다.

## 경력차이

### 조기수급

정상 수급연령 이전에 연금을 수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수급연기

수급연기 시 연금은 연 5%씩 인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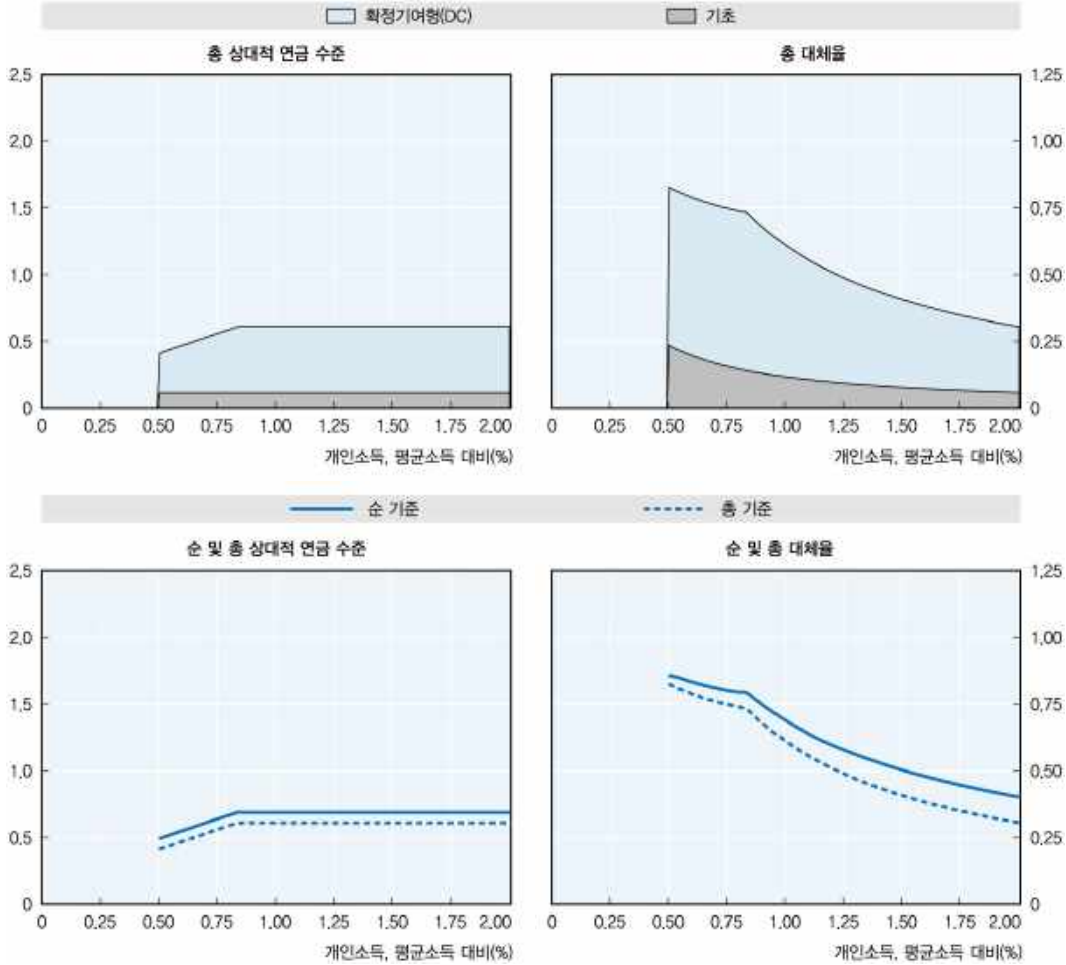
### 육아

출산 전 일했던 여성은 14주의 출산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 유급기간은 노령연금에 대한 자격기간 산정 시 고려된다. 육아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크레딧은 없다.

### 실업

실업자는 노령연금(1층 연금)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노령 연금은 고정된 액수이고 임금과 함수관계에 있지 않다. 동일한 자격기간이 축적된 사람은 동일한 급여를 받을 것이다(고용 지위와 관련 없음).

연금 모형화 결과: 이스라엘 2061년(2058년), 수급연령 67세(64세)



기본 시나리오: 입법 시나리오(선별적 제도의 물가 연동)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41.4	56.1	61.0	61.0	61.0	61.0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49.0	64.0	68.8	68.8	68.8	68.8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82.7	74.9	61.0	40.7	30.5	20.3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85.7	80.2	68.8	50.3	40.2	28.9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4.5	13.1	10.7	7.1	5.3	3.6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4.0	12.2	9.8	6.6	4.9	3.3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연금 모형화 결과: 이스라엘 2061년(2058년), 수급연령 67세(64세)(계속)**

대안적 시나리오: 입법 시나리오(선별적 제도의 완전한 임금 연동)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50.7	65.5	70.4	70.4	70.4	70.4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58.6	73.2	78.1	78.1	78.1	78.1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101.4	87.3	70.4	46.9	35.2	23.5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102.4	91.8	78.1	57.0	45.6	32.7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7.7	15.3	12.3	8.2	6.1	4.1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6.7	14.0	11.2	7.4	5.6	3.7
	18.2	14.9	11.9	7.9	5.9	4.0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http://dx.doi.org/10.1787/888933301500>

## 이탈리아

### 이탈리아: 2014년 연금체계

연금제도는 명목계정에 기반하고 있다. 기여금은 GDP 성장에 연계하여 수익률을 얻는다. 은퇴 시 누적된 명목자본이 은퇴 시점의 평균 기대여명을 고려하여 연금으로 전환된다.

### 핵심 지표: 이탈리아

		이탈리아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유로(EUR)	30,463	33,036
	미달러(USD)	36,891	40,007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	15.8	7.9
기대여명	출생 시	82.3	80.0
	65세 시점	20.4	19.3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대비 %	21.7	16.2

<http://dx.doi.org/10.1787/888933301934>

## 수급요건

신제도 상의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남성과 여성 모두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연금수급연령이 65세의 기대여명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증가하는데 2019년까지는 매 3년마다, 2021년부터는 매 2년마다 상향 조정된다(다음 판에서 2016년에 4개월이 추가될 것임). 2019년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연금수급연령이 67세가 될 것이다. 2014년 기준 20년간 기여액 납부 시 민간부문에 고용된 여성의 연금수급연령은 63세 9개월이었고 이는 점차 연장되어 2018년에는 66세 7개월이 될 전망이다. 이 연금수급연령은 2014년에 공공부문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66세 3개월이었다. 만약 기여가 1992년 12월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단지 15년의 기여만 필요하다. 2011년 연금개혁에서는 연금 수급시기를 62세부터 70세 사이에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노령연금은 기여 연수가 최소 20년이고 신청된 연금액이 명목 GDP 성장의 5년 평균에 연동되는, 2012년 노령사회수당의 1.5배 이상이어야 수급할 수 있다.

## 급여 산정

### 소득비례제도

명목계정제도는 기여율이 33%이며 그 중 1/3은 근로자가, 2/3는 고용주가 부담한다. 은퇴 시 연금급여는 연금전환계수를 명목 GDP 성장률(5년 이동평균)로 재평가된 누적 평생 기여액에 적용시킴으로써 산정된다. 전환계수는 주로 사망확률, 배우자를 남길 확률, 유족급여 지급년수에 근거한 함수이다.

연금전환계수는 3년마다 재검토된다. 연금전환계수는 62-70세에 대해 사용된다. 가장 최근의 계수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는 계수로 다음과 같다.

연령	계수	값(%)
57	23,236	4,304
58	22,647	4,416
59	22,053	4,535
60	21,457	4,661
61	20,852	4,796
62	20,242	4,940
63	19,629	5,094
64	19,014	5,259
65	18,398	5,435
66	17,782	5,624
67	17,163	5,826
68	16,541	6,046
69	15,917	6,283
70	15,288	6,541
할인율 = 1,5%		

출처: Gazzetta Ufficiale, 24 May 2012.

2014년에 기여 목적의 최저임금은 주당 200.35유로였다(최저연금의 40%). 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 상한액은 새로운 제도에서는 연 100,123유로이며, 이는 최저연금의 199%를 약간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연금 지급액의 연동은 누진적이며 연금액이 낮을수록 좀더 관대한 연동이 이루어진다. ISTAT “생계비”지수에 따른 연금 급여액 연동은 2012년과 2013년에 중단되었다. 2012년에는 월 1,400유로 이상의 연금 급여액에 대해 중단이 이루어졌고 2013년에는 월 935유로를 초과하는 연금 급여에 대해 중단되었다. 2009년 1월 이후 규정은 연금액을 최저연금의 5배까지 연동하며 이 기준선을 넘으면 물가에 연동시키고 있다. 연금 지급액은 물가상승률의 75% 기준으로 조정되어 왔다. 2014-16년까지의 연금 지급액에 대한 새로운 연동규정은 다음과 같다: 최저연금의 3배(1,486.29유로)까지는 “생계비” 지수의 100%에, 최저연금의 4배(1,981.72유로)까지는 “생계비”지수의 95%에, 최저연금의 5배(2,477.15유로)까지는 “생계비”지수의 75%에, 최저연금의 6배(2,972.58유로)까지는 “생계비”지수의 50%에 연동함. 최대기준보다 높은 연금에 대해서는 연동을 하지 않고 13.08유로의 정액급여가 제공된다.

### 사회부조

중전의 확정급여형(DB) 연금제도에서 기여형 연금이 최저수준(2014년 월 500.88유로) 미만인 사람들은 사회급여(최저연금보충)를 수급해서 연간 연금소득이 6,511.44유로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명목계정 연금제도에서 기여형 연금 급여가 없는 사람은 65세부터 자산조사적 비과세 사회부조급여(assegno sociale: 노령사회수당)를 신청할 수 있다. 2013년부터 이 연령이 65세 3개월로 연장되었는데 기대여명의 증가에 따라 늘어난 것이다. 2014년에 독신자에 대한 사회부조급여(assegno sociale)의 가치는 연 5,813.15유로이며 1년에 13회 지급된다. 2015년에 이 급여는 연 5,824.83유로로 증가할 것이다. 70세 이상의 사회부조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190.15유로까지 추가로 지급받으며 연간 급여가 8,285.16유로에 이르게 된다.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기여 년수가 남성의 경우 최소 42년 6개월, 여성의 경우 41년 6개월이면 62세부터 금액 없이 연금의 조기수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요건은 기대여명의 증가와 함께 늘어나게 된다. 2016년에 또 다시 4개월이 추가 될 것이다. 연금의 조기수급 1년에 대해 연금 수급액은 1%p가 감액된다. 최저 연령인 62세를 2년 앞두고 수급을 개시하는 경우 조기수급 기간 동안 연 2%p로 감액폭이 커진다. 그러나 2017년까지 기여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에게는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여형 또는 혼합형 제도상에서는 수급자가 기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연령에 따른 페널티 없이 조기수급이 가능하다. 또는, 이들 근로자는 기여 년수가 20년 이상이며 연금액수가 명목 GDP의 5년 평균에 연동된 2012년 노령사회수당의 2.8배 이상이면 63세 3개월에 수급을 개시할 수 있다.

### 수급연기

연금 수급을 연기할 수 있고 더 높은 전환계수가 사용될 것이다.

### 육아

양육모는 자녀가 없는 여성보다 관대한 전환계수를 적용 받는다. 자녀 수가 한 명이나 두 명인 여성은 연금 수급액 산정을 위해 더 유리한 전환계수가 사용된다. 사용되는 연령은 실제 은퇴연령에 1년을 더한 것이다. 3자녀 이상을 둔 여성의 경우 실제 연령에 2년을 더한 연령이 사용된다.

### 실업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적부조가 개입해서 CIG(Cassa Intergrazione Guadagni)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소득을 제공한다. CIG는 임원, 실습생/견습생, 재택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다. 적용기간은 다양하지만 급여는 일반적으로 최대 12개월 또는 24개월간 지급된다. 금액은 마지막 임금의 80%이지만 한도가 있다. 2014년에는 최대 급여 한도액은 임금이 월 2,098.04유로 혹은 연 25,176.48유로까지의 근로자의 경우 월 969.77유로였다. 소득이 더 높아지면 수당은 월 1,165.58유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 지급액에서 사회기여금 5.84%가 차감되며 최대 월 순급여액은 각각 913.14유로와 1,097.51유로가 된다. 이 급여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의도치 않게 실직하게 된 사람들의 경우, 50세 미만이라면 최대 8개월까지, 50-55세인 경우 12개월까지, 그 이상인 경우 14개월까지 월 수당이 나온다.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해고되기 전 2년 중 최소 1년간의 완전 기여이력이 필요하다. 건설이나 농업 부문의 실습생/견습생이거나 근로자의 경우 요건이 완화된다. 실업수당은 개정되어 새 규정이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2016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채택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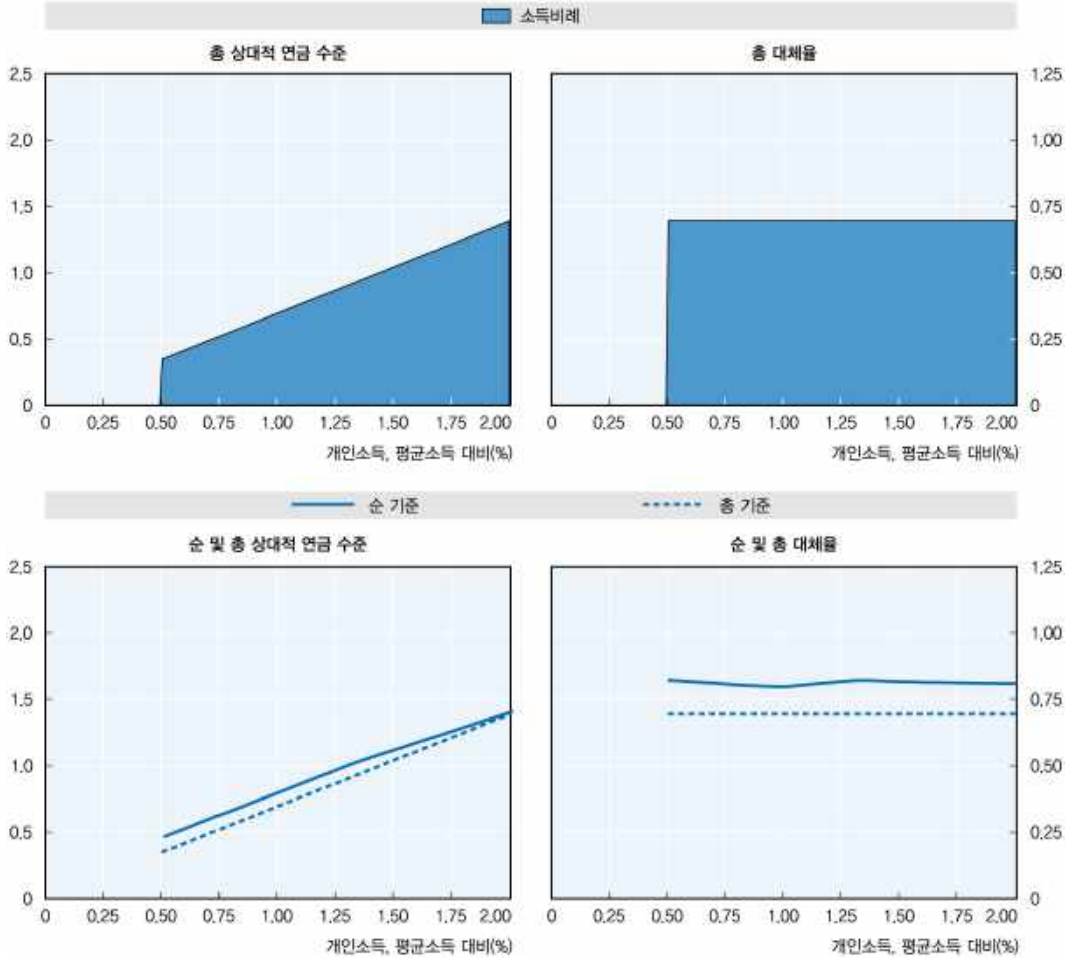
실업수당은:

- 인플레이와 연동된 일정 기준(2014년 1,192.98유로)보다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 해고되기 전 2년간 월 평균임금의 75%이다.
- 2014년에 1,192.98유로의 75%이며 다른 경우에 월 평균임금과 기준과의 차액의 25%이다.

2014년에 실업수당 상한선은 1개월에 1,165.58유로였다.

실직 6개월 이후에는 월 수당이 15% 낮아지고 12개월 후에는 15%가 더 삭감된다.

연금 모형화 결과: 이탈리아 2061년, 수급연령 67세



기준 시나리오: 입법 시나리오(최저 및 선별적 연금 급여의 물가 연동)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34.7	52.1	69.5	104.2	139.0	208.5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45.8	62.8	79.7	111.8	140.2	196.3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69.5	69.5	69.5	69.5	69.5	69.5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82.2	80.7	79.7	81.6	80.9	79.8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2.2	12.2	12.2	12.2	12.2	12.2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1.0	10.1	9.6	9.0	8.4	7.9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4년임.

<http://dx.doi.org/10.1787/888933301516>

## 일본

### 일본: 2014년 연금체계

공적연금체계는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층은 기초정액제도이며 2층은 소득비례제도(피용자연금)이다.

### 핵심 지표: 일본

		일본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엔(JPY, 백만)	4,88	4,79
	미달러(USD)	40,765	40,007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	10.2	7.9
기대여명	출생 시	83.5	80.0
	65세 시점	21.9	19.3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대비 %	26.4	16.2

<http://dx.doi.org/10.1787/888933301947>

## 수급요건

기초노령연금은 기여 연수가 최소 25년 이상일 때 65세부터 지급된다. 2017년 4월 1일부터는 기여 연수가 최소 10년이면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을 전액 받으려면 기여 연수 40년이 필요하며 기간이 짧거나 길면 그에 따라 비례적으로 급여액이 조정된다.

피용자연금은 65세부터 지급된다. 피용자연금은, 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고 있다면 최소 1개월의 기여기간을 충족했을 때 기초연금 외에 추가로 지급된다. “특별제공” 피용자연금 급여는 현재 단계적으로 사라지고 있으며 이 급여에 대한 연금연령이 점진적으로 상향되고 있다. 정액 부분에 대한 수급연령은 2013년에 남성이 65세로 늘어났고 여성은 2018년에 65세가 될 것이다. 소득비례 부분의 수급연령도 남성의 경우 2013-25년에 걸쳐, 여성의 경우 2018-30년에 걸쳐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 급여 산정

### 기초연금

2014년 완전 기초연금 급여액은 연 772,800엔으로 평균 근로자 소득의 16% 수준이다. 기초연금은 연금 수급자가 67세까지는 순 평균임금에 연동되고 68세 이후에는 물가에 연동된다.

### 사회부조

또한 사회부조가 연금제도를 보충한다. 2014년 도쿄에 거주하는 60세에서 69세 사이의 개인에 대한 사회부조급여는 주택급여와 기타 관련 급여를 제외하고 연 981,160엔이었다.

### 소득비례연금

소득비례연금의 급여액은 보수와 기여 연수에 달려있다.<sup>1</sup> 월 기여액 상한선은 620,000엔인데 이는 평균 근로자 소득의 15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025년까지 “특별제공” 피용자연금은 60-64세에 부분 지급이 가능하다. “특별제공” 피용자연금은 정액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액급여액은 출생년도에 따라 다르다.<sup>2</sup> “특별제공” 피용자연금은 남성의 경우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2018년부터 단계적



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피용자연금 지급액은 연금 수급자가 67세가 될 때까지는 순 평균소득에 연동되고 68세 이후에는 물가에 연동된다.

### 적용제외(Contracting out)

최소 1,000명 이상 피용근로자를 가진 사용자는 자체 퇴직연금제도를 가지고 있으면 소득비례 제도에서 “적용제외”할 수 있다. 근로자의 약 15%가 이러한 제도가 참여하고 있다. 적용제외되려면 공적 소득비례제도가 제공하는 급여의 최소 150%를 고용주가 제공해야 한다. 적용제외에 필요한 연금 산정은 생애 평균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연금액의 연동과 과거 소득의 재평가는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한다.

비례연금의 적용제외(contracting-out)제도의 기여율은 해당 근로자의 연령 구조와 계리적 가정에 따라 정부가 결정한다. 2005년 이후 기여율은 총 보수의 2.4%에서 5% 사이로 다양해졌다.

2001년부터 정부는 기존의 소득연계 기업퇴직연금제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장려해왔다. 2014년 4월부터 새로운 소득연계 퇴직연금제도의 설립이 불가능하다.

## 경력의 차이

### 조기수급

급여의 감액을 감수한다면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모두 조기수급이 가능하다. 급여는 월 0.5%씩, 즉 연 6% 감액된다. 개별 수급자는 60세에서 65세 사이에 피용자연금의 정액부분을 수급할 수 있다. 연금 지급액은 수급자가 67세가 될 때까지 순 평균소득에 연동되며 68세 이후부터는 물가에 연동된다.

### 수급연기

수급연기는 가능하며 연기함으로써 연금 수급액을 1개월 당 0.7%씩, 연 8.4%씩 증가한다. 연금 수급권은 매년 납부하는 기여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생한다.

2004년부터 65세 이후에 연금 수급과 근로를 병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 단 총 소득(근로소득과 연금을 합친 소득)이 46만 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액의 절반이 소득비례 연금에서 삭감된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전액 지급된다. 70세 이상의 근로자들은 기여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 육아

육아를 위해 유급 근로를 중단하는 경우 각 자녀에 대해 3년씩 그리고 막내가 3살이 될 때까지 소득비례제도에 크레딧으로 반영된다. 이 기간 중에는 육아휴직 직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기여금이 납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전체 기간이 기여기간으로 인정된다. 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여액은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연금 수급액은 이전의 전일제 근무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014년부터 출산휴가는 사회보험 보험료가 면제된다.

## 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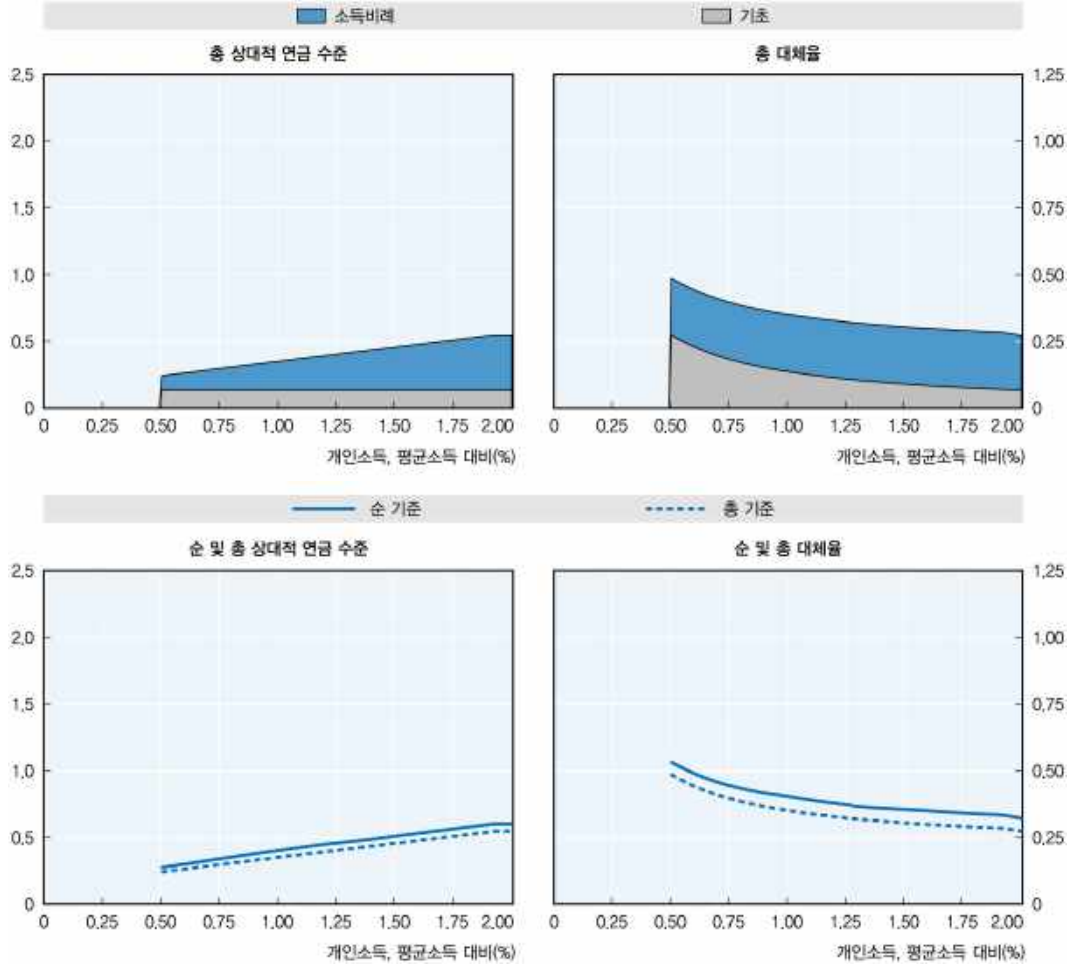
실업상태가 되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인 개인은 소득비례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나 기초연금에는 납부해야 한다. 실업인 경우 가구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기여금의 전부, 3/4, 절반 혹은 1/4만큼 기여금이 면제될 수 있다. 직전 연도의 소득이 57만 엔 미만인 독신자는 기여금 납부가 면제된다. 연 소득이 93만 엔 미만인 경우 기여금의 1/4, 141만 엔 미만인 경우 절반, 189만 엔 미만은 4/4을 납부한다.

완전 면제의 경우 기초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으며 1/4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5/8를 받을 수 있다. 기여금을 절반을 납부하는 기간 중에는 기초연금의 3/4을 받으며 3/4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7/8을 받을 수 있다. 수급요건을 평가할 때는 면제기간도 전부 가입기간으로 계산된다. 은퇴 후 받을 연금액을 증액하기 위해서 10년 후까지 기여금을 추납할 수 있다.

## 주

1. 평균 연금대상 보수월액  $\times$  0.7125%  $\times$  (2003년 3월까지의 기여기간) + (보너스를 포함한 평균 연금대상 보수월액)  $\times$  0.5481%  $\times$  (2003년 4월 이후의 기여기간)
2. 1,676엔  $\times$  (출생일에 따른 비율)  $\times$  (기여기간)  $\times$  0.961.

연금 모형화 결과: 일본 2059년, 수급연령 65세



기준 시나리오: 선별적 제도의 완전 임금 연동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24.4	29.7	35.1	45.7	54.7	54.7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27.5	33.9	40.4	51.1	60.4	60.4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48.8	39.6	35.1	30.5	27.4	18.2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53.3	44.5	40.4	35.5	32.1	22.6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9.1	7.4	6.6	5.7	5.1	3.4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8.1	6.6	5.9	5.0	4.4	3.0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실질 임금을 따르는 안전망 제도를 제외한 모든 제도는 입법화 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http://dx.doi.org/10.1787/888933301523>

## 한국

### 한국: 2014년 연금체계

한국의 공적연금제도는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소득비례연금이며 누적적 산식을 사용하는데 급여가 개인 소득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모두 연금산정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 핵심 지표: 한국

		한국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원(KRW, 백만)	39.8	43.7
	미달러(USD)	36,457	40,007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	2.2	7.9
기대여명	출생 시	81.4	80.0
	65세 시점	19.7	19.3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대비 %	13.0	16.2

<http://dx.doi.org/10.1787/888933301957>

## 수급요건

최소 10년 이상 기여금을 납부한 경우 연금수급개시연령은 현재 61세이다. 조기수급의 경우 56세 부터 감액된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정상 수급개시연령은 점차 연장되어 2033년부터 65세가 되며, 조기수급연령도 현재 55세에서 60세로 늘어날 것이다.

## 급여 산정

### 소득비례

소득비례연금의 목표 대체율은 2014년 기준 40년 가입기준으로 47%이고, 이는 2028년에 40%가 될 때까지 2008년부터 매년 0.5%p씩 줄어들고 있다. 연금 수급액은 명목 임금인상에 따라 재평가되는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의 절반과 물가에 따라 환산되는 수급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절반(A값)에 각각 목표대체율을 곱한 값으로 산정된다. 연금대상소득의 상한선은 2014년 기준 월 408만원으로 A값의 206%이다. A값은 2014년에 1,981,975원이었다.

연금 급여액의 최대수준은 개인소득의 100%이다. 지급되는 급여액은 물가에 연동된다. 60세를 넘은 사람은 기여액을 납부하지 않으며 이 연령 이후에는 급여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 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급여가 2014년 7월 1일에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했다. 최대 급여액은 소득비례연금(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A값)의 약 10%에 해당하는 20만원이다. 국민연금으로부터 매월 아무것도 받지 못하거나 30만원 미만을 받는 노인은 1개월에 2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나머지 노인들은 다음 산식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

$$(20만원 - \frac{2}{3} \times \text{국민연금의 A값}) + 10만원$$

부부의 경우 개인별 지급율은 독신자 지급액의 80%이다.

## 사회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사회부조) 급여의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수급가구의 인정소득액이 가구당 최저 생계비 미만이어야 한다. 둘째,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한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할 능력이 없는 자이거나 수급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

생활보장급여에는 주거급여, 생계급여(self-sufficiency benefits), 교육급여, 출산지원금, 장례지원금, 의료급여 등 7가지 급여가 있다.

## 경력차이

### 조기수급

조기수급연령이 현재 55세에서 2033년에 60세로 연장된다. 조기수급 시 연금 급여액은 조기수급 1년마다 6%p씩 감액된다. 5년 일찍 받는 경우 조기수급액은 노령연금 정상액의 70% 수준이 된다. 2014년에 60세에 수급하는 개인은 노령연금 전액의 94%에 해당하는 조기수급액을 받을 수 있다.

### 수급연기

수급연기가 가능하고 정상 수급연령보다 1년 늦어질 때마다 7.2%의 연금이 증액된다. 연금 수급은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가입자 평균보다 소득이 높은 61세를 넘은 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전액의 50%를 지급받고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급여액이 10%씩 증액된다. 이는 “재직자노령연금”이다. 61세에서 65세 사이의 연금 수급자가 근로를 하는 경우 “수급연기” 또는 “재직자노령연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육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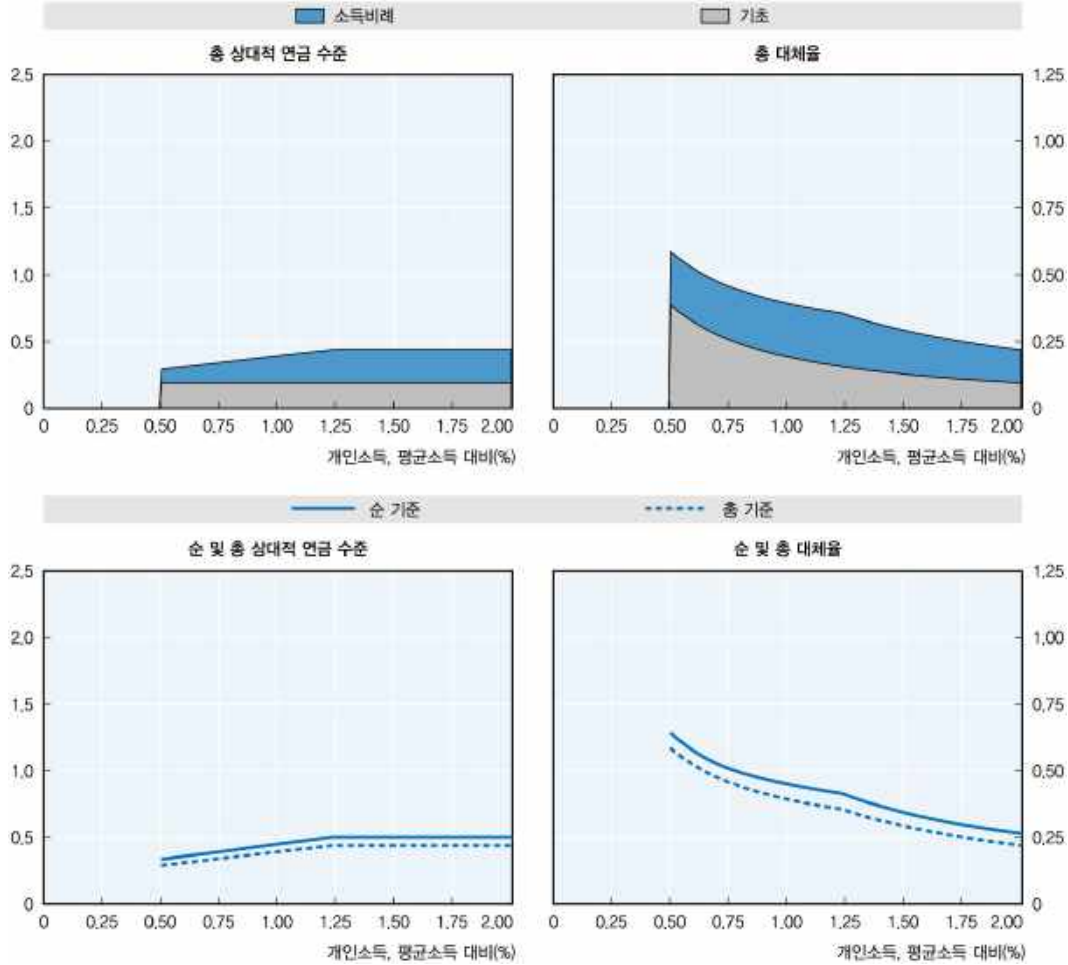
육아로 인해 근로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여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중에는 기여금 납부가 면제된다. 근로활동 재개 이후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첫째를 제외한 둘째 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입 여성에게는 연금 크레딧이 부여된다. 크레딧은 자녀 수에 따라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부여된다.

### 실업

실업상태의 개인은 기여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중에는 기여금 납부가 면제된다. 근로활동을 재개한 후 면제된 기여금을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연금 모형화 결과: 한국 2059년, 수급연령 65세



기본 시나리오: 입법 시나리오(선별적 제도의 물가 연동)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29.3	34.3	39.3	43.9	43.9	43.9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33.7	39.4	45	50.2	50.2	50.2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58.6	45.7	39.3	29.3	22	14.6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64.3	50.9	45	34.4	26.5	18.6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0.7	8.4	7.2	5.3	4	2.7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0.7	8.3	7.1	5.3	4	2.6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http://dx.doi.org/10.1787/888933301534>

## 룩셈부르크

### 룩셈부르크: 2014년 연금체계

공적연금제도는 기초균등부분과 소득 비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 최저연금도 있다.

### 핵심 지표: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유로(EUR)	54,560	33,036
	미달러(USD)	66,074	40,007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	7.7	7.9
기대여명	출생 시	80.5	80.0
	65세 시점	19.4	19.3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대비 %	14.4	16.2

<http://dx.doi.org/10.1787/888933301965>

## 수급요건

조기연금은 강제적이건 자발적이건 기여 년수가 40년이면 57세부터 수급이 가능하다. 강제적, 자발적 기여기간 혹은 크레딧 기간이 총 40년 이상인 경우 연금은 60세부터 지급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상 수급개시연령은 65세이다(기여 년수가 최소 10년이어야 함).

## 급여 산정

### 기초부분

2014년 기초균등연금은 40년 가입한 경우 월 453유로였다. 그에 미달하는 경우 급여액은 비례적으로 감액된다. 공식적으로는, 기초연금 수준은 기준소득의 일정 비율지표로 표현되며, 2014년에 이 비율은 23.725%이고 기준소득은 1,910유로였다.

기초연금에 부가적으로 지급되는 “연말수당”도 있는데 이는 기여 년수가 40년인 경우 61유로씩이다.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짧은 가입기간에 대해 비례적으로 감액되어 가입 1년당 월 1.53유로 정도 감액된다. 연말수당은 명목소득에 연동된다.

### 소득비례부분

소득비례부분의 지급률은 일정 비율지표로 표현되며, 가입 1년당 1.838%이 적용된다. 급여액 산정을 위해 산식에 사용된 소득지표는 명목소득 상승에 맞춰 재평가한 생애평균보수이다.

지급률은 고령으로 갈수록 그리고 기여 년수가 길어질수록 높아진다. 개인의 연령과 기여 년수의 합이 93을 초과하면 지급률이 매해 0.011%P씩 늘어난다. 두 파라미터는 2014년에 적용된 가치를 나타내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한다. 최대 지급률은 연 2.05%이다.

2014년 최대 연금은 월 7,958유로였다(공식적으로 기준금액의 25/6로 규정).

급여는 생계비 증감에 자동 연계된다(누적 인플레이가 최소 2.5%인 경우). 뿐만 아니라 실질임금 상승에 대한 조정도 매년 고려된다. 2013년 1월 1일부터 임금에 대한 연금액 조정은 연간 기여금 수입이 연금지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최저연금

최저연금은 기여 년수 40년인 경우 월 1,719유로(기준금액의 90%로 정의)이다. 최소 총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하며, 가입기간이 짧아지면 비례적으로 감액된다.

### 사회부조

사회부조 안전망 수준은 2014년 독신자의 경우 월 1,348유로이며 2명의 성인이 있는 가정은 월 2,022유로이다. 수급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개인은 최소 25세이며 합법적인 거주자여야 한다.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기여금 납부기간이 40년인 경우에는 57세에, 크레딧 기간을 포함한 가입기간이 40년인 경우에는 60세에 조기수급이 가능하다. 조기 수급자는 현재까지의 소득과 연금 수급액이 경력기간 중 최고 5년간 소득의 평균을 초과하지 않으면 근로를 병행할 수 있다. 조기수급에 대한 계리적 급여액에 대한 추가적 조정은 없다.

그 외에 여러 조기수급 프로그램이 있다. 그 중 본 보고서와 관련성이 있는 프로그램은 조기수급 연대제도와 조기수급 적응제도이다. 조기수급 연대제도는 고용주가 고용 당국에서 할당한 구직자를 고용하는 조건으로 조기 수급을 허용하는 것이다. 조기수급 적응제도는 고령 근로자가 구조조정이나 부도로 일자리를 잃는 경우 조기수급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 두 프로그램 하에서 근로자가 향후 3년 이내에 60세부터의 조기수급 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면 57세부터 연금 수급을 허용하고 있다. 조기수급 급여액은 1년차에는 이전 소득의 85%, 2년차에는 80%, 3년차에는 75%이다. 소득측정지표는 이전 3개월의 임금이다.

### 수급연기

연금 급여는 65세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연금 급여액의 삭감 없이 근로와 연금 급여 수급을 병행할 수 있다.

### 육아

육아휴직급여와 기간은 크레딧을 부여받고 연금 급여액 산식에 반영된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전일제 육아휴직은 6개월, 시간제 육아휴직은 12개월이며 한쪽 부모가 수급요건을 충족시키면 신청 시 허가된다. 이 기간 중 1,778유로(시간제 휴직의 경우 889유로)의 월 수당이 지급된다. 이 소득은 연금대상소득이고 육아휴직기간은 자격조건에 해당되므로 연금산식의 정액 부분에 반영된다.

“육아기간(baby years)”에 대해 한 자녀 2년, 두 자녀 4년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연금대상소득은 육아기간 신청 직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육아기간은 수급요건에 포함되며 연금산식의 정액 부분에 반영된다.

육아기간(baby years)을 신청하기에 기여 년수가 충분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은퇴 시 자녀 한 명당 109유로의 특별 월 수당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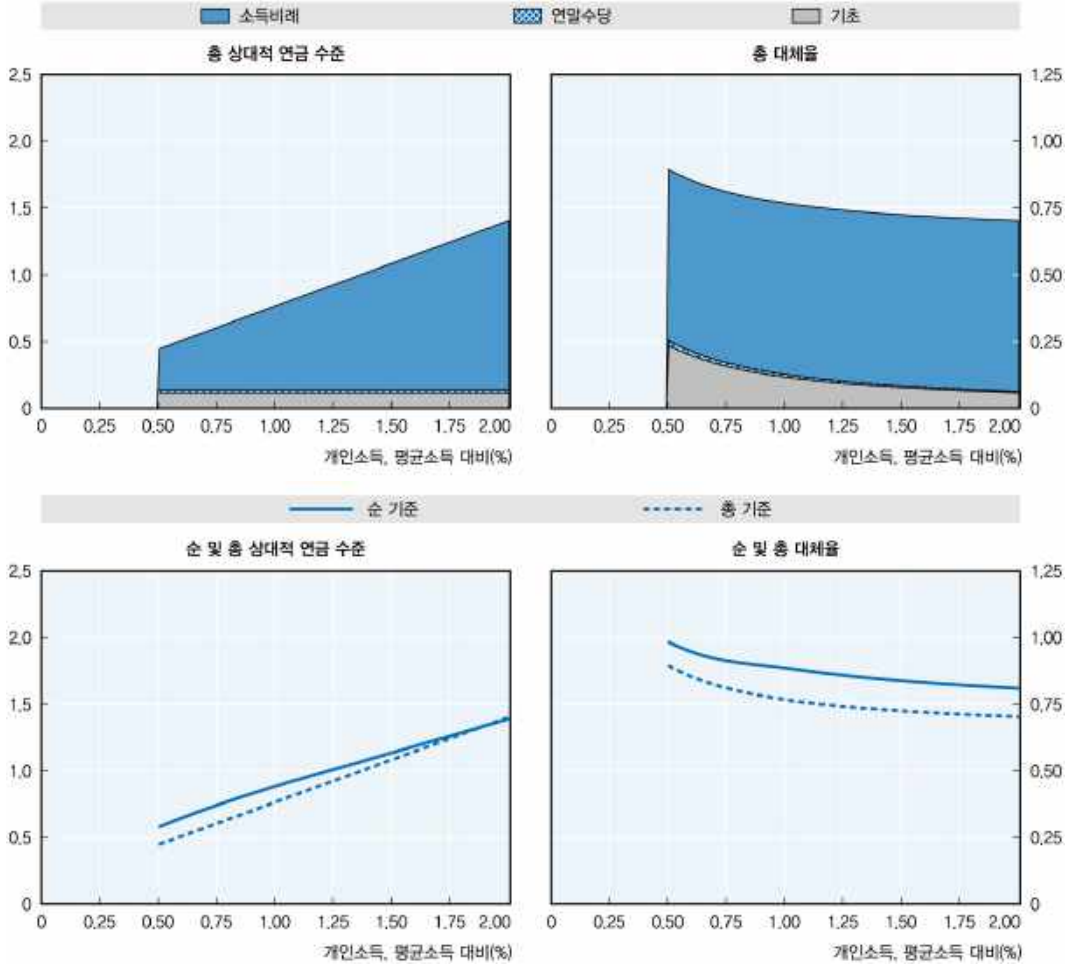


6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비기여기간은 수급요건에 포함된다.

### **실업**

실업급여액과 실업기간은 크레딧 대상이다. 연금 기여금은 국가(2/3)와 수익자(1/3)가 납부한다. 실업기간은 수급요건에 포함되며 연금산식의 소득비례부분에 반영된다. 이 기간 중에는 실업급여가 연금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연금 모형화 결과: 룩셈부르크 2054년, 수급연령 60세



기준 시나리오: 입법 시나리오(선별적 제도의 임금 연동)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44.8	60.8	76.8	108.8	140.8	187.8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58.1	74.4	88.6	113.9	139.1	176.2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89.5	81.0	76.8	72.5	70.4	62.6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98.4	91.3	88.6	83.7	80.9	70.9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20.8	18.8	17.8	16.8	16.3	14.5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23.8	21.6	20.4	19.3	18.7	16.7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8.9	16.1	14.4	12.4	11.3	9.6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21.7	18.5	16.5	14.2	13.0	11.0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http://dx.doi.org/10.1787/888933301543>

## 멕시코

### 멕시코: 2014년 연금체계

멕시코에는 65세 이상을 위한 자산조사 기반의 노령연금, 두 가지 강제적 확정기여형 연금제도(하나는 민간부문 근로자, 다른 하나는 최저연금이 있는 공무원을 위한 제도), 기타 개인 및 기업의 사적연금 제도 등 3층의 연금제도가 존재한다. 또한 주, 지방정부 및 국립대학교는 각자의 독립적인 연금제도를 가지고 있다.

### 핵심 지표: 멕시코

		멕시코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페소(MXN)	101,904	589,793
	미달러(USD)	6,912	40,007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	1.8	7.9
기대여명	출생 시	77.4	80.0
	65세 시점	18.8	19.3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대비 %	6.8	16.2

<http://dx.doi.org/10.1787/888933301970>

## 수급요건

최소 기여기간이 민간부문 근로자의 경우 1,250주(약 24년) 이상(공무원인 경우 25년 이상)이고, 남성과 여성 모두 65세이면 정상적인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 확정기여형연금

개인저축계좌에 대해 소득의 총 6.5%를 기여하는데, 그 중 근로자가 1.125%, 고용주가 5.150%, 정부가 0.225%를 각각 기여한다. 고용주의 추가 5% 기여가 근로자주택기금계좌(INFONAVIT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며, 개인이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퇴직계좌로 들어간다. 기여액의 상한선은 최저임금의 25배의 6.5%이다.

또한 정부가 기여일마다 누진적 액수를 개인퇴직계좌에 기여하는데 이를 국고보조금(cuota social) 또는 사회급여(social fee)라 한다. 2014년 12월 기준 사회급여는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까지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들의 경우 사회급여는 4.78130페소이다. 최저임금의 1.01배에서 4배까지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들은 4.58208페소, 4.01배에서 7배는 4.38286페소, 7.01배에서 10배는 4.18364페소, 마지막으로 10.01배에서 15배까지는 3.98442페소이다. 그보다 높은 임금의 근로자들에게는 사회급여 기여가 없다. 사회급여는 3개월에 한 번씩 인플레이에 연동된다.

## 급여 산정

은퇴 시, 개인은 누적된 계좌 잔액(유족급여보험을 위한 보험료를 할인하면서)을 물가연동연금 또는 프로그램화된 지급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연금률은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

프로그램화된 지급을 선택한 연금 수급자는 월 종신연금 가치가 보장된 연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언제든지 종신연금을 구입할 수 있다.

## 최저연금

은퇴 시, 근로자가 65세이고 최소 1,250주(약 24년)의 기여를 했지만, 계좌에 누적된 자산이 적어도 최저연금에 상당하는 연금을 구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자산은 정부로 이전되고 최저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된다(정부가 지급함).

최저(보장)연금은 연간 31,211.52페소(2014년 12월)이며 매년 물가에 연동된다.

### 연금 지급불가 고지(Negativa de pension)

은퇴 시 기여기간이 1,250주 미만인 경우 연금 수급 자격이 없으며 “연금 지급불가 고지(negativa de pension)”를 받는다. 그러면 퇴직자는 자신의 계좌에 누적된 액수를 일시불로 받는다.

### 비기여형 자산조사 기반 노령연금 또는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안전망

65세가 되었고 사회보장기관으로부터 연금을 받지 않는 인구를 대상으로 한 노령연금(PAM)이 있다. 각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월 액수는 580페소이다.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조기수급은 남성과 여성의 경우 모두 60세부터 64세까지 가능하다. 다만 고용상태에 있지 않아야 하며 최소 1,250주간의 기여기간 충족이 필요하다.

가입자는 계좌에 누적된 금액으로 최저보장연금보다 최소 30% 높은 중신연금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라면 60세 이전에 언제든 수급을 개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최소 1,250주 동안 기여액 납부가 되어있어야 한다.

### 수급연기

65세 수급개시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민간 및 공공부문 근로자 모두의 경우 65세 이후로 연금 수급을 연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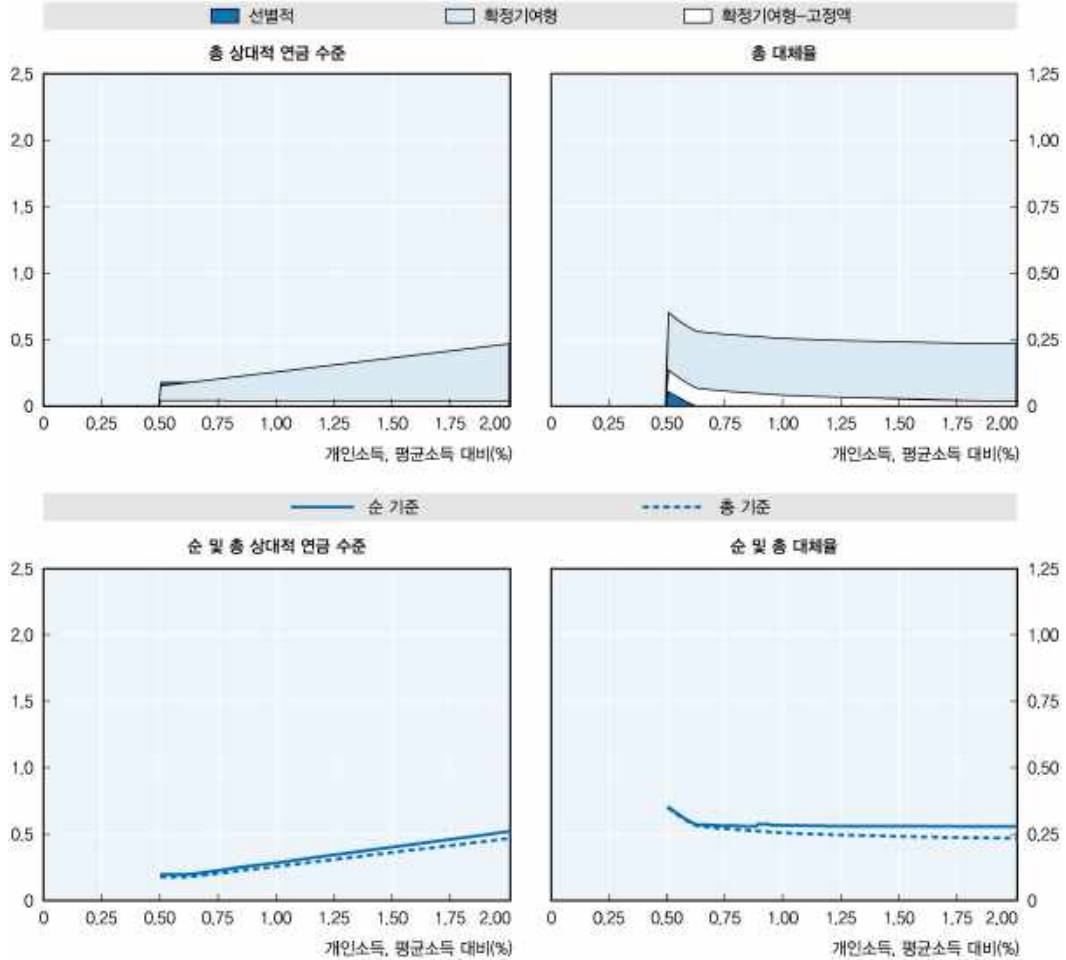
### 실업

실업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크레딧 메커니즘이 없다. 근로자가 실직 상태가 되면 5년에 한번 본인의 노령/퇴직저축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권리를 가진다. 실직상태인 가입자는 기여금을 납부한 마지막 250주간의 평균임금의 90일분과 계좌 잔액의 11.5% 중 낮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급여는 최대 6번의 월 할부로 지급될 수 있다. 개인계좌를 실업기간 최소 3년 전에 개설했고 최소 2년간 기여금을 납부한 가입자는 최대 30일분의 임금(한도: 월 최저임금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인출할 수 있다.

### 육아

자녀양육기간에 대한 크레딧은 없다.

연금 모형화 결과: 멕시코 2059년, 수급연령 65세



기준 시나리오: 입법 시나리오(선별적 제도의 물가 연동)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17.5	20.3	25.5	36.3	46.9	68.0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19.5	22.6	28.4	40.3	52.1	75.7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35.0	27.0	25.5	24.2	23.4	22.7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35.5	28.1	28.4	28.1	27.9	27.9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6.1	4.7	4.5	4.2	4.1	4.0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6.1	4.7	4.5	4.2	4.1	4.0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실질 임금을 따르는 안전망 제도를 제외한 모든 제도는 입법화 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4년임.

**연금 모형화 결과: 멕시코 2059년, 수급연령 65세(계속)**

대안적 시나리오: 선별적 제도의 완전 임금 연동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30.6	30.6	30.6	36.3	46.9	68.0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34.1	34.1	34.1	40.3	52.1	75.7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61.3	40.8	30.6	24.2	23.4	22.7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62.0	42.5	34.1	28.1	27.9	27.9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0.7	7.2	5.4	4.2	4.1	4.0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0.7	7.2	5.4	4.2	4.1	4.0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실질 임금을 따르는 안전망 제도를 제외한 모든 제도는 입법화 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4년임.

<http://dx.doi.org/10.1787/888933301556>

## 네덜란드

### 네덜란드: 2014년 연금제도

연금체계는 3층, 즉 최저임금에 연동되고 급여세(payroll tax)를 통해 재원이 마련되는 정액 국가연금(AOW), 적립형 기업퇴직 연금제도, 개인 저축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연금제도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산업별 노사 협약 덕분에 피용근로자의 91%가 가입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들 제도는 준 강제적 제도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 핵심 지표: 네덜란드

		네덜란드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유로(EUR)	48,856	33,036
	미달러(USD)	59,165	40,007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	5.5	7.9
기대여명	출생 시	80.9	80.0
	65세 시점	19.3	19.3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대비 %	18.1	16.2

<http://dx.doi.org/10.1787/888933301981>

## 수급요건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에 65세 2개월부터 수급이 가능하다. 모든 거주자들은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상 수급개시연령은 기업퇴직연금의 경우에도 대개 65세이다. 법정 연금연령은 점차 상향 조정되어 2018년에 66세, 2021년에 67세가 된다. 그 이후에는 표준 연금연령은 기대여명의 증가에 연계될 것이다.

## 급여 산정

### 기초연금

독신자에 대한 기초연금 급여액은 2014년 기준 월 1,099.37유로였다. 또한 2014년에 1인당 50.11유로의 추가 휴가수당이 있었다. 이로써 독신자의 경우 총 1,149.48유로, 커플의 경우 1,619.29유로를 받는다. 급여액은 격년마다 조정되는 순 최저임금의 변화에 연동된다.

기초급여는 개인이 네덜란드에서 살거나 일하는 기간의 매 1년에 대해 완전액의 2% 수준으로 지급된다. 네덜란드 거주기간이 50년 미만이고 기타 다른 생계수단이나 자산이 없는 노인 혹은 가구에 대해 자산조사에 기반하는 사회부조급여가 제공된다. 이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된 급여액을 보충하는데, 최대 액수는 순 기초연금과 동일하다.

### 퇴직연금제도

네덜란드는 가입률이 높은 사적 퇴직연금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 제도는 2012년 초에 544개의 연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2012년 말에는 414개였는데 이중 74개가 업계(industry-wide) 차원의 제도였다. 특정 조건 하에서 네덜란드의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동일한 급여액을 제공하는 자사의 연금제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업계 차원의 제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외에도 327개의 단일 고용주 제도도 존재하며 그 외에도 주로 중소 고용주에 속하는 40,818개(2011년 말 기준)의 제도는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연금보험을 제공한다.

적용근로자의 약 94%(2012년 초 기준)는 확정급여형제도에 가입되어 있다. 나머지는 확정기여형

제도에 가입되어 있다.

확정급여형(DB)제도 가입자의 거의 98%는 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지표가 생애 평균소득에 근거하고 있으며 1% 미만은 최종임금에 근거한다. 나머지는 두 가지의 혼합형이거나 정액이다.

대부분의 최종임금제도는 근무 1년당 소득의 1.75%의 지급률을 가지고 있다. 이로써 40년 가입 시 소득대체율이 70%에 달한다. 대부분 평균임금제도에서는 지급률이 근무 1년당 1.75%에서 2.25%까지 다양하다. 2014년부터 최대 허용 EET 지급률(세금면제 기여금과 함께 지급됨)은 최종임금제도의 경우 2%에서 1.9%로, 평균임금제도의 경우 2.25%에서 2.15%로 낮아질 것이다. 2015년 기준 최대 평균임금 지급률이 더 낮아져서 1.875%가 되었고 10만 유로의 소득까지만 보장한다. 더 높은 소득에 대한 연금 기여금은 현재 과세대상 기여금으로 지급된다. 새로운 연금 수급권 구축을 위해 낮아진 지급률과 함께 수급연령 역시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

과거 소득에 대한 재평가 방법은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관행은 사회적 파트너가 합의한 규정에 따라 제도마다 다르다. 평균임금제도 가입자의 약 90% 정도는 과거 소득이 평균소득 증가에 맞춰 재평가되는 반면 10%는 물가를 따르는 것이 목표이다. 상향 조정에 대한 법적 요건은 없지만 대부분의 연금 지급액은 매년 상향 조정된다. 연금 지급액의 거의 55%가 개별 산업의 임금 인상을 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금의 약 42%는 물가에, 3%는 임금과 물가 인상에 연계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직 시에도 연금 수급권의 100% 이전이 보장된다. 연금액은 연동되어야 한다는 법적 규정과 함께, 은퇴 전에 연금제도를 떠나는 사람들의 연금 수급권도 연계되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존재한다. 수급권 부여를 위한 최소재직요건(vesting period)은 매우 짧다. 기업퇴직연금과 공적연금은 통합적인 관점에서 운영된다. 현 세법에서는 공적제도와 사적제도 모두 65세에 최종 임금의 최대 100% 급여를 허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제도는 총 대체율 목표를 최종 임금의 70%로 잡고 있어서 사적급여는 기초 국가연금에 해당하는 franchise 금액만큼 감액된다.

## 경력차이

### 조기수급

기초연금 65세 이전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퇴직연금은 조기수급이 가능하지만 급여가 조정된다.

### 수급연기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을 65세(2021년 67세로 점차 연장 중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초연금 수급과 근로를 병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연금 수급연기 규정은 퇴직연금제도마다 다르다. 퇴직연금을 수급하면서 근로를 병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실제로, 일부 제도에서는 가입자가 연금을 수급하면서 동일 직장에서 계속해서 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 육아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 유급 근로를 중단한 기간은 자동적으로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퇴직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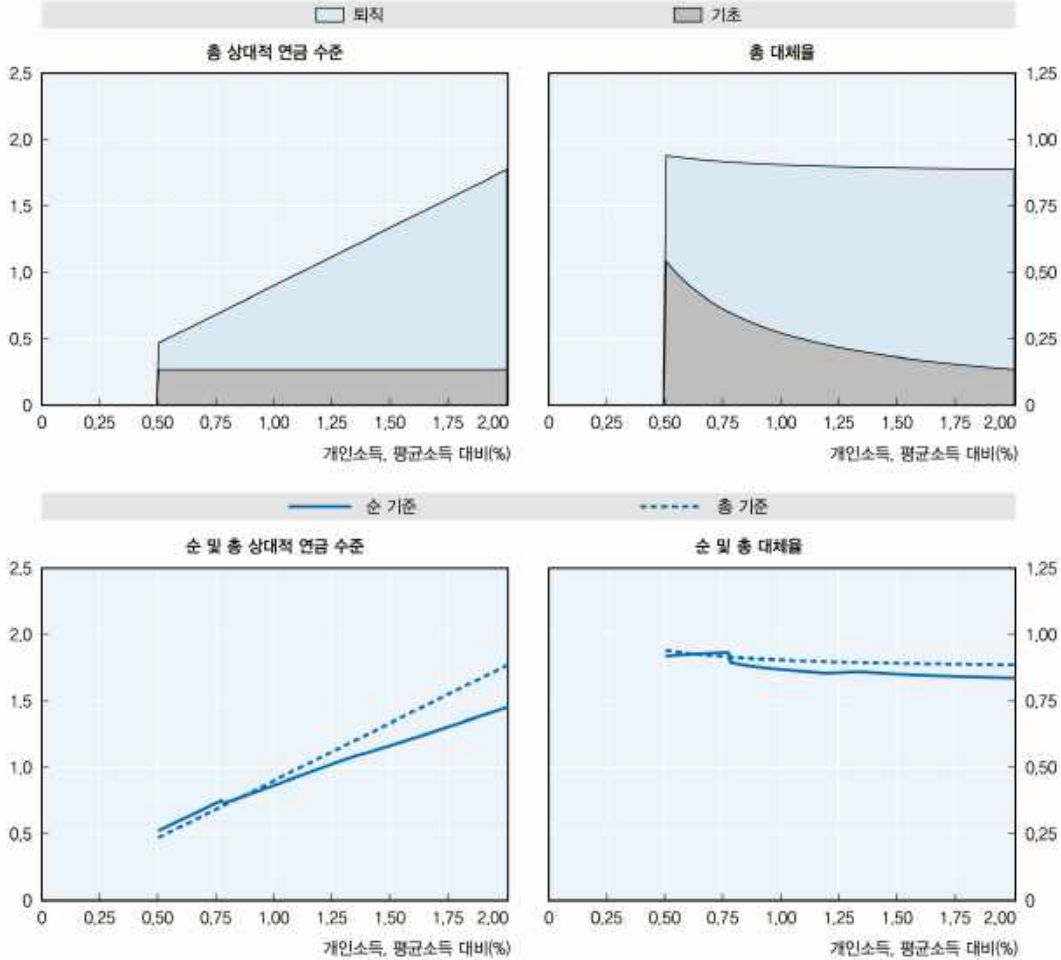


제도에서는 육아를 위해 유급 근로를 중단한 기간에 대한 크레딧이 없지만 연금 수급권 발생은 남은 근로기간 동안 계속된다. 그러나 많은 제도에서 육아로 인한 근로중단기간에도 자발적 기여금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 실업

퇴직연금제도에서 실업기간에 대한 크레딧은 없다. 반면,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그 기간을 자동으로 보장한다. 또한 사회적 파트너들이 기금(FVP)을 통해 고령 근로자들이 실직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 발생(pension accrual)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기금과 공식적인 관련이 없다. FVP기금은 현재 청산 중이며 어떤 새로운 기능도 맡지 않을 계획이다.

연금 모형화 결과: 네덜란드 2061년, 수급연령 67세



기본 시나리오: 입법 시나리오(기초 제도의 임금 연동)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47,0	68,7	90,5	134,0	177,4	264,4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57,6	80,9	95,7	128,4	160,1	223,5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94,0	91,7	90,5	89,3	88,7	88,1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101,3	102,6	95,7	94,1	92,6	90,9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7,8	17,4	17,2	16,9	16,8	16,7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3,6	12,8	11,3	10,1	9,5	8,8
	15,6	14,6	12,9	11,6	10,8	10,1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http://dx.doi.org/10.1787/888933301564>

## 뉴질랜드

### 뉴질랜드: 2014년 연금체계

공적연금은 거주조사에 기반을 둔 정액 연금제도이다. 퇴직연금제도 가입률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키위세이버(KiwiSaver) 자발적 직장저축제도의 가입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 핵심 지표: 뉴질랜드

		뉴질랜드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뉴질랜드달러(NZD)	54,733	51,260
	미달러(USD)	42,718	40,007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	4.9	7.9
기대여명	출생 시	81.0	80.0
	65세 시점	19.9	19.3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대비 %	14.7	16.2

<http://dx.doi.org/10.1787/888933301991>

## 수급요건

20세부터 10년간 거주하면(50세 이후 5년 포함) 65세부터 공적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 급여 산정

### 기초연금

홀로 거주하는 독신자의 연금은 2014년 4월 1일부터 주당 총 421.76뉴질랜드달러였다. 2013/14년에는 410.32뉴질랜드달러였다. 이렇게 연금액이 증가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아래에서 설명할 정상 연간조정 프로세스와, 역시 아래에서 설명할 정부의 의지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총 연금액은 평균 소득의 40%에 해당하는 21,932뉴질랜드달러가 된다.

지급될 총 공적연금 산정 시 타국으로부터 받는 공적연금 수급액을 고려한다.

공적연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CPI)의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되지만 또한 평균 세후 주급과의 관계도 유지되어야 한다. 커플의 경우 관련 법에서는 매년 4월 1일 기준 세후 연금액이 조사된 세후 주급지표의 65%에서 72.5% 사이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신자의 세후 연금액은 커플의 세후 연금액의 65%(혼자 사는 경우)와 60%(주거지 공유 시)로 설정되어 있다. 물가 변동이 조사된 세후 주급의 변동보다 지속적으로 낮을 경우는 실질적으로 세후 주급의 변동이 연금의 연동지수(index)가 된다.

현 정부는 매년 4월 1일 기준 세후 연금액이 세후 소득지표의 65%가 아니라 최소 66%가 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자산과 소득이 적은 노인은 또한 주거보조금(Accommodation Supplement)을 수급할 수 있다. 주거보조금은 일정 기준(혼자 사는 독신 연금 수급자의 경우 2014년 4월 1일 기준 주당 92뉴질랜드달러)을 초과하는 주거비의 70%를 보조하는데, 상한선은 거주지역과 가구 구성에 따라 다르다.

### 자발적 사적연금

기업퇴직연금제도 가입률은 한동안 하락해왔다. 고용된 근로자 중 고용주가 후원하는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비율은 2003년 13.89%에서 2012년 9.98%로 하락했다. 이들 제도는 세제나 기타 장치를 통해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제도가 아니다.

키위세이버(KiwiSaver)는 정부가 보조하는 자발적 퇴직저축제도로써 2007년 7월 1일에 도입되었다. 2014년 6월 30일 기준 18-64세 뉴질랜드인의 약 67%가 실제 또는 잠정적 키위세이버 가입자이다. 이 제도에 대한 기본 최저 기여율이 2013년 4월 1일에 소득의 4%에서 6%로 증가했고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납부한다. 근로자는 4% 또는 8%의 더 높은 개인적 기여율을 선택할 수 있다.

적격자에게는 정부 보조금이 연 최대 521뉴질랜드달러까지 지원된다. 가입자들은 또한 가입 시 1,000뉴질랜드달러를 받는다. 키위세이버 가입자들은 65세부터 연금액을 일시불로 인출할 수 있으며 연금의 형태로 수급하지는 않는다. 기금은 대개 65세까지 “묶여있는(locked-in)” 상태인 반면 생애 첫 주택구매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장제적 수급개시연령은 없다. 하지만 정상 수급개시연령인 65세 이전에 연금을 수급할 수는 없다. 65세 이상 수급자에는 연금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파트너도 포함되며 이 경우 커플의 총 소득이 소득조사의 대상이 된다.

### 수급연기

공적연금 수급은 은퇴 시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연금과 고용을 병행할 수 있다. 65세 이상 인구의 약 21%는 현재 다양한 유급 근로를 하고 있다.

수급가능연령에 도달했다고 해서 공적연금을 반드시 수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급을 연기했다고 해서 발생하는 이득은 없으며 연금의 소급도 허용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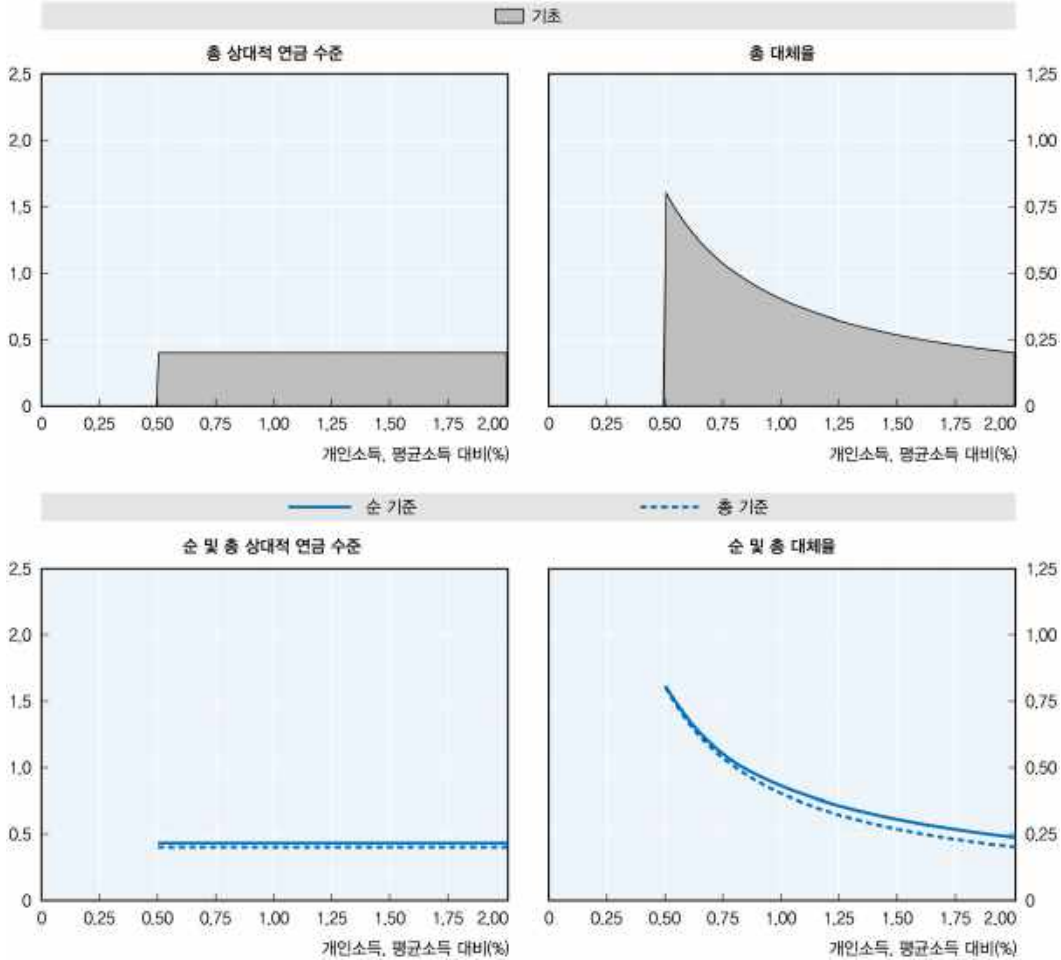
### 육아

궁극적인 공적연금 수급액은 육아 목적으로 유급 근로를 중단한 기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실업

궁극적인 공적연금 수급액은 실업기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연금 모형화 결과: 뉴질랜드 2059년, 수급연령 65세



기본 시나리오: 입법 시나리오(완전 임금 연동)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40.1	40.1	40.1	40.1	40.1	40.1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42.5	42.5	42.5	42.5	42.5	42.5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80.1	53.4	40.1	26.7	20.0	13.4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80.8	55.0	43.0	30.4	23.7	16.4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6.6	11.1	8.3	5.5	4.2	2.8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4.4	9.6	7.2	4.8	3.6	2.4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실질 임금을 따르는 안전망 제도를 제외한 모든 제도는 입법화 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http://dx.doi.org/10.1787/888933301571>

## 노르웨이

### 노르웨이: 2014년 연금체계

2011년에 시작된 새로운 공적연금제도는 소득비례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이 없거나 소액인 사람들을 위한 최저보장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저보장연금은 소득비례 연금에 대한 소득조사적 연금제도다. 2006년에는 공적연금을 보충하기 위해 민간부문에 강제적 퇴직연금이 도입되었다.

### 핵심 지표: 노르웨이

		노르웨이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크로네(NOK)	542,386	298,884
	미달러(USD)	72,602	40,007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	5.4	7.9
기대여명	출생 시	81.7	80.0
	65세 시점	19.8	19.3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대비 %	16.4	16.2

<http://dx.doi.org/10.1787/888933302008>

## 수급요건

16세에서 66세(포함) 사이에 노르웨이 거주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인 경우 신제도의 최저보장연금을 수급할 자격이 생긴다. 거주기간이 40년인 경우 최저보장연금이 전액 지급되며, 거주기간이 그보다 짧으면 그에 비례하여 감액된다.

## 급여 산정

### 소득비례연금

신제도에서 연금 수급액은 13세에서 75세 사이에 발생하는 근로소득 등을 통해 누적된다. 개인은 연금대상소득의 18.1%부터 상한선까지에 해당하는 연금 수급권을 매년 적립하게 된다. 연금 수급권은 매년 임금상승률에 맞춰 증액된다.

국가보험제도의 여러 급여는 기초금액(G)에 연동하여 결정되며, 2014년 기초금액 평균은 85,245 크로네였다. 새로운 소득비례연금의 상한액은 기초금액의 7.1배였다. 2014년 노르웨이의 전일제 근로자 평균임금은 OECD 추정자료를 기준으로 약 542,386크로네였다. 그러므로 연금소득 상한액은 평균임금의 약 112%가 된다.

2011년부터 계리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하는 62-75세 연령집단의 탄력 은퇴제가 공적연금제도에 도입되었다. 62세부터 소득조사 없이 근로와 연금 수급을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병행할 수 있다. 또 2011년부터 신규 노령연금 수급자를 위한 연금의 기대수명 조정장치가 도입되었다. 기대수명 제수(divisor)는 주로 기대여명을 바탕으로 각 인구집단(cohort)별로 설정된다. 제수는 인구집단이 61세가 되면 결정되며 이후에는 조정되지 않는다. 각 인구집단은 62세부터 75세까지 일련의 기대여명 제수를 받게 된다. 은퇴 시 연간 연금액은 누적된 기여금적립액을 기대여명 제수로 나누어 산정된다.

은퇴 후 받는 소득비례연금은 매년 임금상승률에서 연 0.75%의 고정계수를 차감한 값으로 인상된다.

### 기초연금(최저보장연금)

최저보장연금은 기존 연금제도의 최저연금을 대체하게 되며 최저연금과 동일한 수준이 될 예정이다. 최저보장연금은 소득조사 시 소득비례연금의 80%까지 반영한다.

독신연금 수급자의 최저연금은 2014년 평균 167,963크로네였으며 이는 평균소득의 약 31%에 해당한다.

최저보장연금은 임금에 연동되지만 67세에 기대여명 요인의 영향에 따라 조정된다. 노르웨이 통계청의 장기 전망에서 67세의 기대여명은 대략 연 0.5%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 전망에 따라 최저보장연금은 임금에 따라 조정된 후 기대여명 조정으로 인해 대략 연 0.5%의 계수를 차감하게 된다.

### 확정기여형(DC) 제도

2006년부터 고용주들은 최소 근로자소득의 2%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에 납부해야 한다. 이를 대신하여 고용주가 확정급여형(DB)제도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액은 2%의 강제적 기여금에 의한 예상 급여액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기여금은 기초금액과 기초금액의 12배 금액 사이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납부한다.

연금개혁의 일환으로 62세부터 탄력적 은퇴제도가 2011년부터 확정기여형(DC)제도에도 도입되었다. 급여는 종신연금(life annuity) 형태로 최소 77세까지는 인출되어야 한다.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위해 이 급여는 남녀공통의 사망률 표를 이용해 산정된 몰가연동 연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 자발적 사적연금

공적연금과 기업퇴직연금을 보충하기 위해 자발적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 경력의 차이(공적 제도)

### 조기수급

전체 근로자의 약 2/3가 AFP(근로계약에 의한 조기수급제도)에 참여하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 1989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62세부터 연금 수급을 허용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또한 2011년부터 공적노령연금제도에 62세부터의 탄력적 은퇴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62-66세 연령집단에 대한 AFP제도가 연장 운영되고 있다. 소득조사 없이 근로와 연금 수급을 병행할 수는 없다. 특정 수급요건이 존재한다. 연 소득이 은퇴 시 최소 기초금액(G) 수준이어야 한다. 또한 연간 임금이 50세 이후 최소 10년간 최소금액(G)을 초과해야 한다. 1967년부터 은퇴 직전연도까지 최고 10년간의 소득은 최소 기초금액의 두 배를 초과해야 한다. AFP연금은 영구적 장애연금(67세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연금포인트 취득)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된다. 또한 AFP연금 수급자는 소위 AFP보충연금을 수급한다.

2011년부터 시행 중인 민간부문의 AFP제도는 공적노령연금제도의 종신보충연금에 해당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공적노령연금, AFP보충연금, 소득조사 없는 근로를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충연금은

연금대상소득의 약 4.2%에 해당하며 최대 62세까지 적용될 수 있다. 보충연금은 계리적 중립성과 기대여명 조정을 바탕으로 하며 62세에서 70세 사이에 인출할 수 있다.

민간부문 AFP연금에는 일정한 수급요건이 있다. 첫째, 근로자는 62세에 지난 5년 중 3년간 사적 AFP제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인출연령을 기준으로 마지막 3년간 제도에 참여하는 직장에 고용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은퇴 직전 연간 소득이 기초금액(G) 이상이어야 한다.

### 수급연기

67세 이후로 연금 수급을 연기하고 근로를 지속할 수 있으며 연금 수급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다.

### 육아

돌봄 제공자는 소득비례연금에 연 기초금액의 4.5배 또는 약 383,603크로네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적립할 수 있다. 이는 평균 전일제 임금의 약 71%에 해당한다. 대상자는 6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는 부모와 가정에서 장애인, 환자 또는 노인을 무급으로 돌보는 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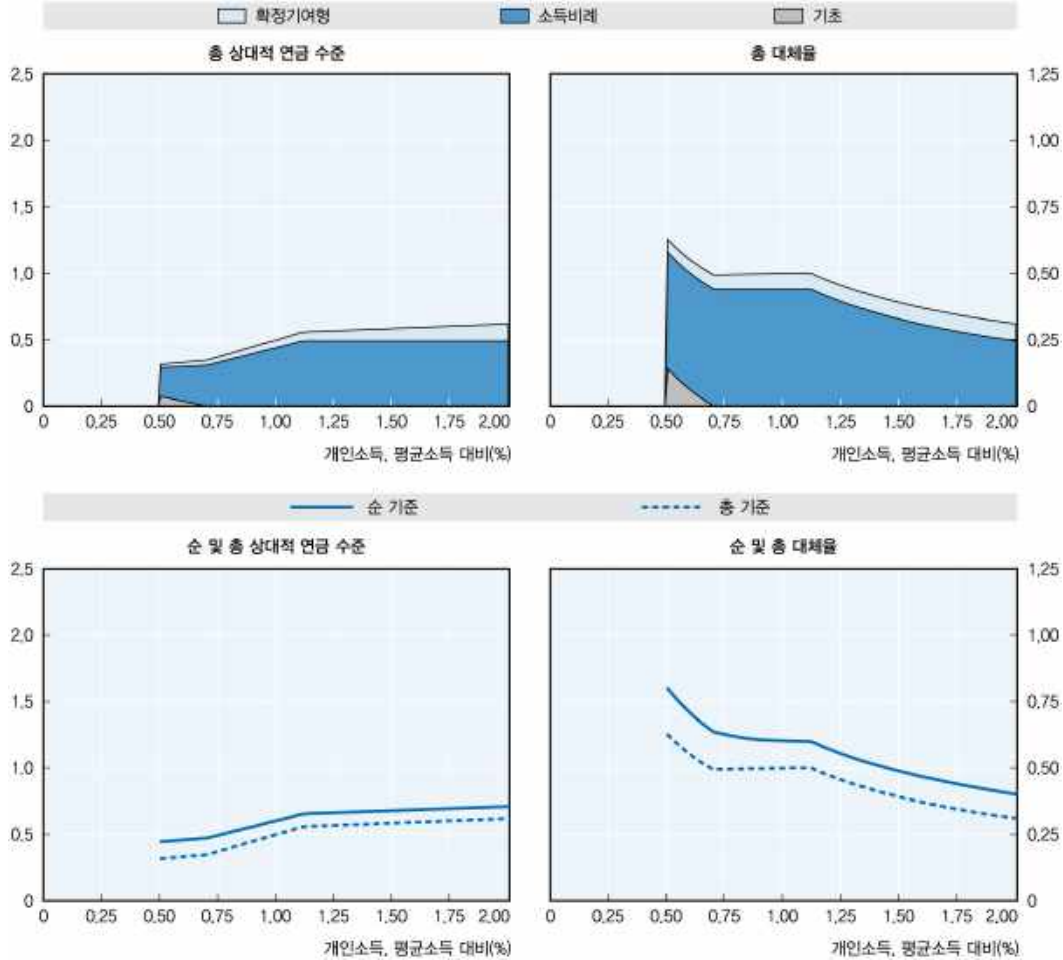
연 소득이 기초금액의 4.5배 미만인 부모는 이 금액까지 소득이 인정된다. 하지만 연 소득이 기초금액의 4.5배를 넘는 부모는 해당되지 않는다. 연금소득은 가족 단위로 신청하며 모 대신 부가 수급하는 것으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연금소득은 특정 년도에 대해서 부모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다른 집단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은 개인 단위로 수급한다.

### 실업

실직 직전 소득을 근거로 연금소득을 적립할 수 있으며 상한선은 기초금액의 7.1배이다.



연금 모형화 결과: 노르웨이 2016년, 수급연령 67세



기본 시나리오: 입법 시나리오(최저연금의 임금 연동)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31.4	37.1	49.8	58.4	61.9	62.2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44.3	49.2	60.2	67.9	71	71.3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62.8	49.5	49.8	38.9	30.9	20.7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80.1	62.6	60.2	48.6	40	28.1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1.9	9.4	9.4	7.3	5.8	3.9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3.8	10.8	10.8	8.4	6.7	4.5
순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1.6	8.5	7.8	5.8	4.6	3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3.3	9.8	9	6.7	5.2	3.5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http://dx.doi.org/10.1787/888933301582>

## 폴란드

### 폴란드: 2014년 연금체계

연금제도는 두 개의 명목계정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2014년부터 적립식 계도에 대한 참여는 자발적인데, 근로자들이 자신의 명목확정기여형(NDC)계정에 대한 기여금을 사적 확정기여형(DC)제도에 할당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 핵심 지표: 폴란드

		폴란드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즈워티(PLN)	42,360	141,489
	미달러(USD)	11,978	40,007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	10.8	7.9
기대여명	출생 시	76.3	80.0
	65세 시점	17.4	19.3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대비 %	15.3	16.2

<http://dx.doi.org/10.1787/888933302015>

## 수급요건

2014년에 연금수급연령은 남성의 경우 65세 3개월, 여성의 경우 60세 3개월이다. 2013년 1월 1일부터 연금수급연령은 매년 1월, 5월, 9월에 1개월씩 연장되어 남녀 공히 67세가 될 전망이다, 여성은 2040년, 남성은 2020년에 도달하게 된다. 최저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21년의 기여 년수가 필요하다. 이 년수는 남성은 2020년, 여성은 2022년에 25년으로 상향 조정된다.

## 급여 산정

### 소득비례연금

두 개의 명목계정제도가 존재한다. 16.6%의 기여금이 개인의 주된 명목계정에 적립된다. 명목금리는 적용된(covered) 임금상승률이지만 물가상승률 이상이다. 이 명목금리는 2000년부터 계정에 소급 적용된다.

소득의 2.92%인 기여금은 사회보장기금(ZUS)의 추가적 하위계정에 적립된다. 기여금을 하위계정에 적립하는 것은 사회보장기금(ZUS)에 이미 존재하는 계정에 기여하는 것과 성격이 다르다. 또한 이는 상속의 대상이 된다. 명목금리는 최근 5년간 명목 GDP의 연간 성장율이다.

나아가 근로자들은 자신의 총 임금의 2.92%를 사적으로 운용되는 DC제도(OFE)에 할당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2014년 2월에 사적으로 운용되는 연기금 순 자산의 51.5%가 사회보장기금(ZUS)으로 이전되었다. 게다가 사적으로 운용되는 기금에 머물기로 선택한 사람의 자산은 은퇴연령 10년 전에 공적제도로 점차 이전될 것이다. 사적으로 운용되는 연기금의 기능의 변화와 더불어 그러한 기금에 누적된 자산의 지급 메커니즘이 설정되었다. 확정기여형(DC)연금은 명목확정기여형(NDC) 부분과 결합된 급여로써 사회보장기금(ZUS)에 의해 산정되고 지급된다.

은퇴 시, 누적된 명목 자산을 “g값”으로 나누어 연금 급여액이 산정된다. g값은 은퇴연령 당시 평균 기대여명이다. 이 과정은 적립식 연금제도의 연금화(annuitisation) 과정과 동일하다. g값은 중앙 통계국에서 발간하는 생명표(life table)를 이용해 산정한다.

기여 및 연금대상소득의 상한선은 전년도의 평균 기본액의 2.5배로 설정되었다. 2014년에 상한선은 112,380즈워티였다.

연금 급여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연동된다. 2010년 3월 1일부터 최저연금액(사회연금 포함) 역시 연동의 결과로 인상되었다. 연금연동은 연동일로 지정된 3월 1일 이전에 부여된 연금 급여액에도 적용된다. 연동은 직권으로 이루어지며 지급될 모든 급여액에 적용된다. 2012년에는 연금 급여액 연동에 예외가 적용되었으며 2012년 3월 1일에 모든 연금이 71즈위티씩 인상되었다. 2013년에는 연금에 대한 연동지수가 104%(2013년 3월 1일부터)였고 2014년에는 101.6%였다.

### 최저연금

부과방식제도에 최저연금을 두고 있다. 2014년 3월 1일부터 보장된 최저 노령연금은 844.45즈위티였다.

연동방식은 부과방식제도로부터 얻는 연금과 동일하다. 급여의 정기적 연동이 없을 때에는 연금 수급액이 적은 수급자들을 위한 추가적 일시불이 지급되었다(2005년과 2007년).

신연금제도에서는 최저은퇴보장(minimum retirement guarantee)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가예산에서 지원하며 총 강제적 노령연금액이 최저연금보다 낮으면 지급한다.

## 경력차이

### 조기수급

일반 연금제도에서는 조기수급에 관한 규정이 없다.

종전의 노령연금제도(1949년 이전 출생자에 적용)는 광부, 철도 노동자, 교사, 특별한 조건에서 근로하는 자, 여성 등 특정 집단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조기수급을 허용했다. 광부들의 경우 2005년부터 조기수급제도가 1999년 이전의 규정에 따라 부활했다.

2009년부터 발효된 가교(bridging)연금제도는 약 27만 개로 구성된 새로운 목록(의학적으로 검증된)을 바탕으로 특별한 조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 근로자들은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기 전 최고 5년 동안 가교연금을 수급하게 된다(파일릿, 제철소 근로자 등 일부 직종은 10년). 이 급여는 국가예산으로 재원을 충당한다(2010년부터는 고용주가 납부한 기여금으로도 충당). 가교연금은 소득 비례제도의 연금산식과 마찬가지로 60세 시점의 남녀공통 기대여명을 바탕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가교연금의 수급자격이 없고 특수한 조건에서 15년간 근무했거나 2009년 1월 1일 이전에 특별한 특성을 가진 근로자들은 새로운 법규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보상은 은퇴시점에 산정되며(여성: 최소 60세, 남성: 최소 65세) 초기 자본에 추가로 적립된다.

2009년 7월부터 보상급여는 교사의 경우도 여성은 55세, 남성은 현재 55세이고 2018년부터는 57세부터 수급이 가능하지만 가입 근로기간이 30년(시간제 근로 20년 포함 가능)을 초과해야 하며 고용을 종료해야 한다.

### 수급연기

연령제한 없이 명목확정기여형연금 및 적립식 확정기여형(DC)연금 둘 다 연기할 수 있다. 연금 수급을 정상 연금수급연령 이후로 연기하는 경우 기여를 계속하면서 연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근로와 연금 수급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금 전액을 수급하기 전에 고용계약을

종료해야 한다. 종료 이후에 새로운 계약을 바탕으로 근로를 계속하면서 전액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현재 근로 중이며 법정 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 연금을 수급하고 있거나, 장애연금도 수급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받았다면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병행해서 신청하는데 일부 제한이 있다. 모든 소득(연금 급여액 포함)은 과세대상이다.

### 육아

출산휴가기간 중에는 연금제도에 대한 기여금을 출산급여를 바탕으로 국가예산에서 납부해 주는데 출산급여는 지난 12개월간의 평균임금에 사회보장기여금을 뺀 값이다. 2009년부터 지급 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며 한 자녀의 경우 20주, 두 자녀의 경우 31주, 세 자녀의 경우 33주, 네 자녀의 경우 35주, 다섯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는 37주이다.

2010년 1월 1일부터 부나 모가 자녀 한 명당 최대 4주까지 추가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이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6주로 연장되었다. 쌍둥이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은 늘어난다. 추가적인 출산휴가 중인 부모는 시간제로 근로할 수 있다(단, 최대 50%). 이 경우 출산휴가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줄어든다. 은퇴 연령 균등화 과정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여성의 근속년수(seniority) 조건은 2022년에 25년 수준으로 연장될 것이다. 2014년 여성의 최저연금에 대한 근속년수 조건은 21년 수준으로 정해졌다.

2010년 1월 1일부터 부(남성)에게 2주간 육아수당(parental benefit)을 수급할 권리가 부여되었다. 육아휴직은 자녀 한 명당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 중에는 가입자로 있는 제도에 연금 기여금이 납부되며 사회복지급여액이 연금, 장애 및 보건 기여금에 대한 기준(420즈워티)으로 사용되었다. 2009-11년에는 기여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 최저임금(평균임금의 약 40%)이었으며 2012년부터는 평균임금의 60%이다(그러나 기준은 지난 12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두 경우 모두 휴직 중인 부모를 대신해 정부가 기여금을 납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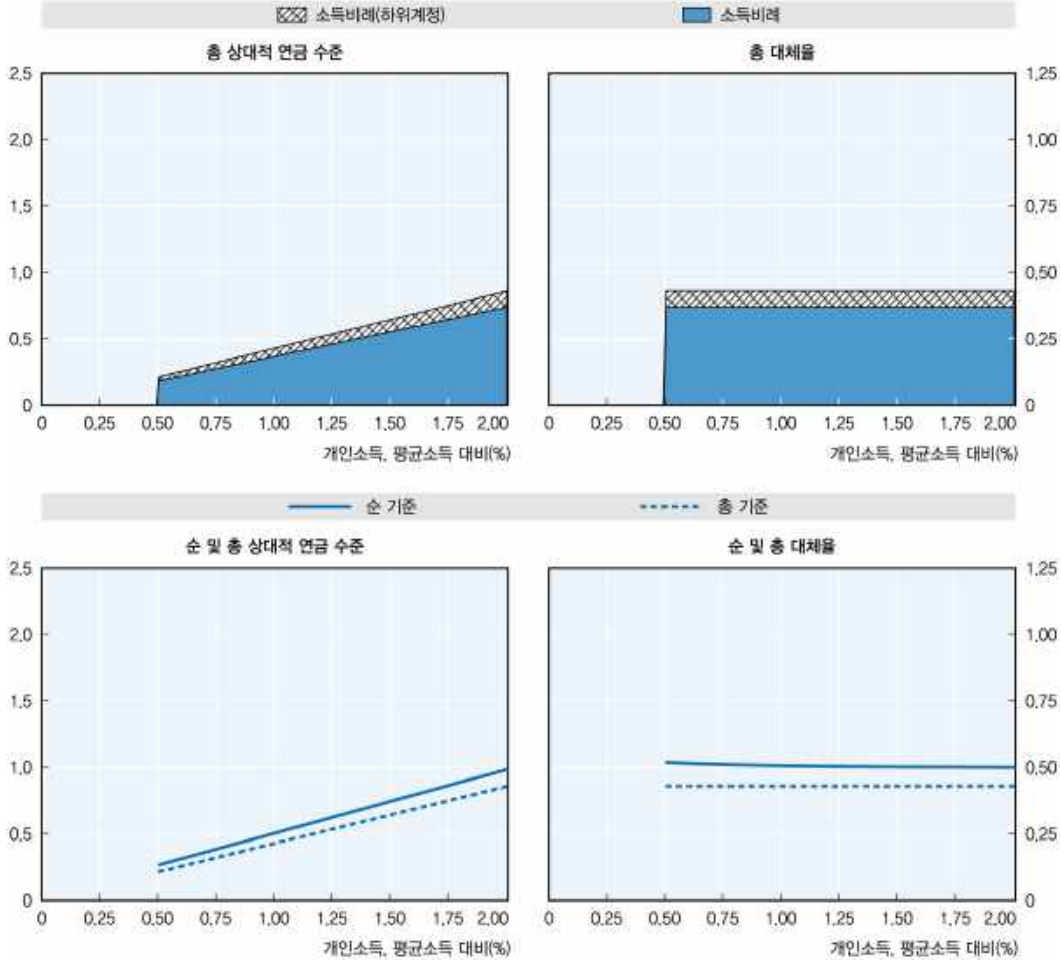
기여금이 납부되는 모든 기간이 최저연금보장 조건에 포함된다.

### 실업

정리 해고된 사람들(청산, 파산,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실업)을 대상으로 하는 은퇴 전 수당제도가 있다. 은퇴 전 수당은 국가예산에서 지급되는데 여성은 55세부터, 남성은 60세부터 연금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지급된다. 이들 규정은 2004년 5월부터 발효되었다. 이전의 은퇴 전 급여는 여성은 50세부터, 남성은 55세부터 지급되었다. 은퇴 전 급여는 연금제도에 대한 기여의 대상이 아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정부는 실업급여액을 기준으로 연금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한다. 기여금이 납부된 모든 기간은 최저연금보장 조건에 포함된다.

연금 모형화 결과: 폴란드 2061년, 수급연령 67세



기준 시나리오 : 입법 시나리오(안전망 제도의 물가 연동)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21,5	32,3	43,1	64,6	86,2	114,3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27,7	40,3	52,8	77,9	103	135,8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43,1	43,1	43,1	43,1	43,1	38,1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54	53,2	52,8	52,4	52,2	47,1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6,5	6,5	6,5	6,5	6,5	5,7
순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7,7	7,7	7,7	7,7	7,7	6,8
순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6,0	5,8	5,7	5,6	5,6	4,9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7,1	6,9	6,8	6,7	6,6	5,8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연금 모형화 결과: 폴란드 2061년, 수급연령 67세(계속)**

대안적 시나리오 : 안전망 제도의 임금 연동						
남성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23.9	32.3	43.1	64.6	86.2	114.3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30.5	40.3	52.8	77.9	103	135.8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47.8	43.1	43.1	43.1	43.1	38.1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59.4	53.2	52.8	52.4	52.2	47.1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7.2	6.5	6.5	6.5	6.5	5.7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8.6	7.7	7.7	7.7	7.7	6.8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6.6	5.8	5.7	5.6	5.6	4.9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7.8	6.9	6.8	6.7	6.6	5.8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http://dx.doi.org/10.1787/888933301593>

## 포르투갈

### 포르투갈: 2014년 연금체계

포르투갈은 자산조사에 기초하는 사회 안전망과 함께 소득비례 공적연금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 핵심 지표: 포르투갈

		포르투갈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유로(EUR)	17,436	33,036
	미달러(USD)	21,115	40,007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	13.0	7.9
기대여명	출생 시	79.8	80.0
	65세 시점	19.0	19.3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대비 %	19.4	16.2

<http://dx.doi.org/10.1787/888933302025>

## 수급요건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2014년에 66세였다. 이는 2015년에 66세 2개월로 연장될 것이다. 이러한 추이는 정상 연금수급연령을 최근 2년간 증가한 65세 기대여명 평균의 2/3만큼 연장시키는 자동 프로세스에 따른 것이다.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수혜자가 65세가 되면 40년을 넘는 기여기간 1년당 4개월씩 줄어들 수 있다.

사회연금(social pension)은 2014년 기준 66세부터 수급할 수 있다. 수급자는 또한 매년 7월과 12월에 자신의 월 연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추가로 받는다. 2014년에는 그 대신 12월의 추가연금이 12개월로 나누어 매달 지급되었다. 월 1,000유로를 초과하는 연금소득에 대해 누진적 특별연대기여세제(CES)가 시행되고 있다.

## 급여 산정

### 소득비례연금

연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다.

$$\text{연금액} = \text{기준소득} \times \text{지급율} \times \text{지속가능성지수}$$

사회보장(social security)에 등록되고 기준소득 산정(RE)에 반영된 연 소득은 주택가격이 제외된 소비자 물가지수(CPI)에 따라 조정된다.

전체 근로이력에 따라 연금을 산정하려는 목적으로, 2002년 1월 1일에서 2011년 12월 31일 사이에 등록된 소득 금액은 CPI의 75%, 그리고 사회보장에 들어가는 기여금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평균 변화가 CPI보다 클 경우 이 변화의 25%의 가중치를 적용한 지수를 적용하여 조정된다. 연간 조정 지수는 CPI + 0.5%보다 높을 수 없다.

조정은 고려대상인 각 연도에 해당하는 계수를 기준소득 산정에 고려된 연 소득에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산정기준 조정을 위한 지수는 재평가될 예정이다.

소득 등록기간이 4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소득은 조정된 최고소득 40년간의 연 소득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연금은 기여 연수 20년 미만인 경우 기여기간의 각 1년에 대해 소득기준의 2% 수준에서 지급되며

하한선은 30%이다. 기여 연수 21년 이상의 수급자들의 경우 지급률은 소득에 따라 2%에서 2.3%의 범위이다. 지급률 스케줄은 IAS(사회적 지원급여지수: 2014년 419.22유로)의 값에 비례한 개인소득에 따라 다르다. 소득구간별(tier)로 서로 다른 비율로 연금 수급액을 발생시킨다. 연금은 최대 40년간 발생한다.

기준소득/IAS	≤ 1.1	> 1.1-2.0	> 2.0-4.0	> 4.0-8.0	> 8.0
지급률 (%)	2.3	2.25	2.2	2.1	2

연금대상소득지표는 최종 15년 중 최고소득을 올리는 10년간이었다. 현재 이 기준은 연장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생애평균소득이 된다. 2001년 12월 31일까지 이미 기여금을 납부했고 노령연금에 대한 수급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은 다음 3가지 산식 중 가장 유리한 산식에 근거하여 연금이 산정된다: 1) 이전 규정 적용(기여 1년당 2% 지급률 및 최종 15년 중 최고 10년간 소득 기준). 2) 위에서 설명한 신규정을 기여경력 전체 적용 3) 기여경력에 따라 두 규정을 안분하여 적용. 2001년 12월 31일까지 기여금은 납부했지만 해당일 현재 노령연금 수급요건은 충족하지 못한 이들의 경우, 2002년에서 2016년 사이에 은퇴한다면 위의 3가지 산식 중 가장 유리한 산식으로 연금을 산정할 수 있고 2016년 12월 31일 이후에 은퇴하는 경우라면 2)번과 3)번 산식 중 유리한 산식을 선택할 수 있다. 2002년 이후 제도에 가입한 사람들은 전적으로 신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기여 연수가 40년 이상인 사람들은 최고 소득기간 40년만 급여산식에 반영된다.

지속가능성지수(factor)는 수명 변동에 대한 연금제도의 적응 장치이다. 이 지수는 2000년(이전에는 2006년) 65세 인구의 평균 기대여명과 연금 청구 직전 년도의 평균 기대여명 사이의 관계를 통해 산정된다.

정상 수급연령은 현재 수명증가에 연동된다. 매년 초에 이전 3년의 첫 2년과 기준연도인 2000년의 65세 인구의 평균 기대여명 간 비율을 반영한 조정이 이루어진다.

지속가능성지수는 현재 정상연령 이전 연금 수급 시 또는 장애연금(invalidity pension)이 노령연금으로 전환되는 때에만 고려된다(이러한 전환은 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될 때 이루어짐). 이 지속가능성지수는, 가입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작되는 장애연금의 전환으로 발생하는 노령연금이나 총 장애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가입자의 65번째 생일 전날을 기준으로, 이미 20년 이상 이 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 2007년 6월 1일에 사회보장제도에 등록되어 있었으며 해당 일자부터 65번째 생일 전날까지의 기간 중 절반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연금을 수급했다.

2014년에 대한 지속가능성지수는 정상 수급연령 이전의 노령연금 수급에 대해 11.73%였고 65세 장애연금에서 노령연금으로의 전환에 대해 5.43%였다.

연금 지급액 발생에 대한 물가연동 메커니즘이 이미 존재하며 연금액이 적을수록 많이 증가하는 형태로 물가에 연동되었으나 이 메커니즘은 2013년에 중단되었다.

근로소득과 노령연금을 병행하는 경우 연간 연금액은 등록된 총 근로소득의 2%씩 증가한다. 이러한 증가율은 매년 1월 1일 발효되며 전년도에 등록된 근로소득을 참조한다.



특별연대기여세(CES)는 그 출처(공적연금, 사적연금, 사적 적립식 은행상품 등)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연금소득에 대해 부과되어 왔다. 특별연대기여액은 세전소득 기준으로 산정된다. 다음의 표는 2014년 연금소득에 대한 특별연대기여율 스케줄이다.

연금소득층	연금소득층(유로 기준)	2014년 특별연대기여(CES)
1	1,000	0.0%
2	> 1,000 and ≤ 1,800	3.5% × PA
3	> 1,800 and ≤ 3,750	3.5% × [1,800] + 16% × [PA - 1,800]
4	> 3,750 and ≤ 4,611	10% × PA
5	> 4,611 and ≤ 7,126	10% × [4,611] + 25% × [PA - 4,611]
6	> 7,126	10% × [4,611] + 25% × [2,515] + 55% × [PA - 7,126]

2015년의 경우, IAS(사회적 지원급여액)의 11배 미만인 연금(4,611유로)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며, 기여율 스케줄은 아래 표와 같다.

연금소득층	연금소득층(유로 기준)	2015년 특별연대기여(CES)
1	> 4,611 and ≤ 7,126	15% × [PA - 4,611]
2	> 7,126	15% × [2,515] + 40% × [PA - 7,126]

### 최저연금

소득비례제도의 수급자격이 없는 66세 이상 인구가 수급할 수 있는 이 사회연금(social pension)은 2014년에 월 199.53유로였다.

이것은 독신자의 총 연금이 IAS의 40%, 커플의 경우 6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만 지급된다. 또한 월 급여가 연 14회 지급되지만, 위기에 대처하도록 돕기 위해서 14번째 월의 지급액은 12개월에 걸쳐 나누어 지급되었다.

사회연금 수급자들은 연금 외에 추가연대보충수당(Solidarity Extra Supplement)을 수급할 수 있다. 이 급여의 월 지급액은 70세 미만인 경우 17.54유로, 70세 이상은 35.06유로이다.

### 선별적 연금

노인 빈곤에 대응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주요 선별적 급여인 노인연대보충급여(SSE, Solidarity Supplement for the Elderly)는 수급자격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2008년에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추가적 조건은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수급하고(자산조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저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국민들 역시 수급자격을 가질 수 있음) SSE의 매우 포괄적인 자산조사를 충족해야 한다.

SSE는 사회부조급여(Social Insertion Income)와 비슷한데, 이유는 SSE의 보충수당이 수급자의 소득과 해당 기준간의 차이와 동일하고 이는 동시에 자산조사 조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SSE는 수급자의 소득과 다음의 기준금액(RA, Reference Amounts) 간의 차이와 같다.

- 독신자의 경우 연 4,909.00유로
- 부부는 연 8,590.75유로

수급자의 소득은 본인 소득, 배우자 소득, “가족연대(family solidarity)”라고 불리는 자녀가구의 소득 일부로 구성된다. “가족연대(family solidarity)” 소득이 수급자의 소득에 합산되는 것은 SSE의 수급권과 수급액을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가족연대소득(family solidarity)”은 각 아들/딸 가구의 총 연 소득을 구한 후 해당 가구에 속하는 성인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균등화 척도: 첫 번째 성인은 1, 이후 각 성인당 0.7, 미성년자 각각에 대해 0.5). 그리고 다음의 표에 따라 가족연대소득은 가구균등화소득의 비율로 결정된다. 자녀의 가구균등화소득이 네 번째 계층(tier)에 속하는 경우는 SSE를 수급할 수 없다.

층	가구균등화소득	가족연대(균등화소득의 %)
1st	$2.5 \times RA$	0
2nd	$> 2.5 \times RA$ and $\leq 3.5 \times RA$	5
3rd	$> 3.5 \times RA$ and $\leq 5 \times RA$	10
4th	$> 5 \times RA$	Exclusion from SSE

## 경력차이

### 조기수급

장기 기여이력으로 인한 조기수급은 2012년부터 잠시 중단되었다. 이전에는 가입자가 최소 55세이고 소득 등록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조기수급이 가능했다. 고된 일을 하는 특정 직종에 속한 근로자들은 조기수급이 가능하다(규정이 여기 명시되지 않음; 아래의 장기실업으로 인한 조기수급에 대한 실업 섹션 참조).

2015년에 기여이력이 최소 40년 이상이고 60세 이상의 개인에 대해 재정비된 임시적 조기수급 제도가 도입되었다. 조기수급에 대한 페널티는 동일했는데, 정상 수급연령이 될 때까지 매달 0.5%씩 감액된다. 40년을 초과한 매 1년의 기여에 대해 페널티가 4개월씩 줄어든다. 2016년 이후에, 2012년의 조기수급 중단 이전의 규정이 재도입되었다(아래 단락을 참조).

장기 기여이력으로 인한 조기수급(일시 중단됨) 덕분에 사회보장 수혜자들은 정상 수급연령 이전에 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연금액은 조기수급 1개월 당 0.5%씩 감액된다. 그러나 30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매 3년마다 12개월씩 예상 개월 수가 줄어들게 된다.

예상 개월 수는 예상되는 연금 수급일과 가입자의 66번째 생일 전날 사이로 결정된다. 감액된 예상 연금을 수급하고 활동을 중단한 가입자는 연금액을 증액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여금을 계속해서 납부할 수도 있다.

가입자가 감액요인 적용 없이 예상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했는데 수급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연금은 요건이 충족된 월부터 가입자가 65세에 도달한 날 또는 65세 이전이라면 연금 시작일 사이의 개월 수에 0.65%를 적용하여 증액된다.

### 수급연기

가입자가 정상 수급연령을 초과한 시점에 노령연금을 신청하고 그 연령에 표준 수급자격이 있다면, 연금액은 각 월별 증액지급율에 연금 시작 월부터 정상 수급연령도달 월까지의 개월 수를 곱하여 증액되는데 연령 상한선은 70세이다.

월 증액률은 연금 시작일까지의 소득 등록 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연령	기여 이력(년수)	월 증액률
65세 초과	15-24	0.33
	25-34	0.50
	35-39	0.65
	40년 이상	1.00

전체적인 증액률을 산정할 때는, 유효 근로로 인한 소득 개월 수가 고려된다. 증가한 연금액은 법정 연금 산정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던 기준소득 중 최고 기준소득의 92%를 초과할 수 없다. 만약 수급자가 연기된 노령연금을 필요로 하기 전 사망한 경우 수급연기에 대한 보너스는 적용 가능한 경우 유족연금 산정에 사용될 것이다.

### 육아

출산휴가기간(완전한 휴가 및 시간제 근로)은 연금 수급액 산정 시 포함된다. 이 기간은 수급요건을 따질 때 포함된다. 이 기간의 연금대상소득은 휴가가 시작되기 두 달 이전의 6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2002년부터 12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며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전일제 근로기간으로 간주해준다.

### 실업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금 수급액 산정 시 포함된다. 이 기간의 연금대상소득은 실업기간이 시작되기 두 달 이전 6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것은 실업보험급여 및 사회적 실업급여 산정 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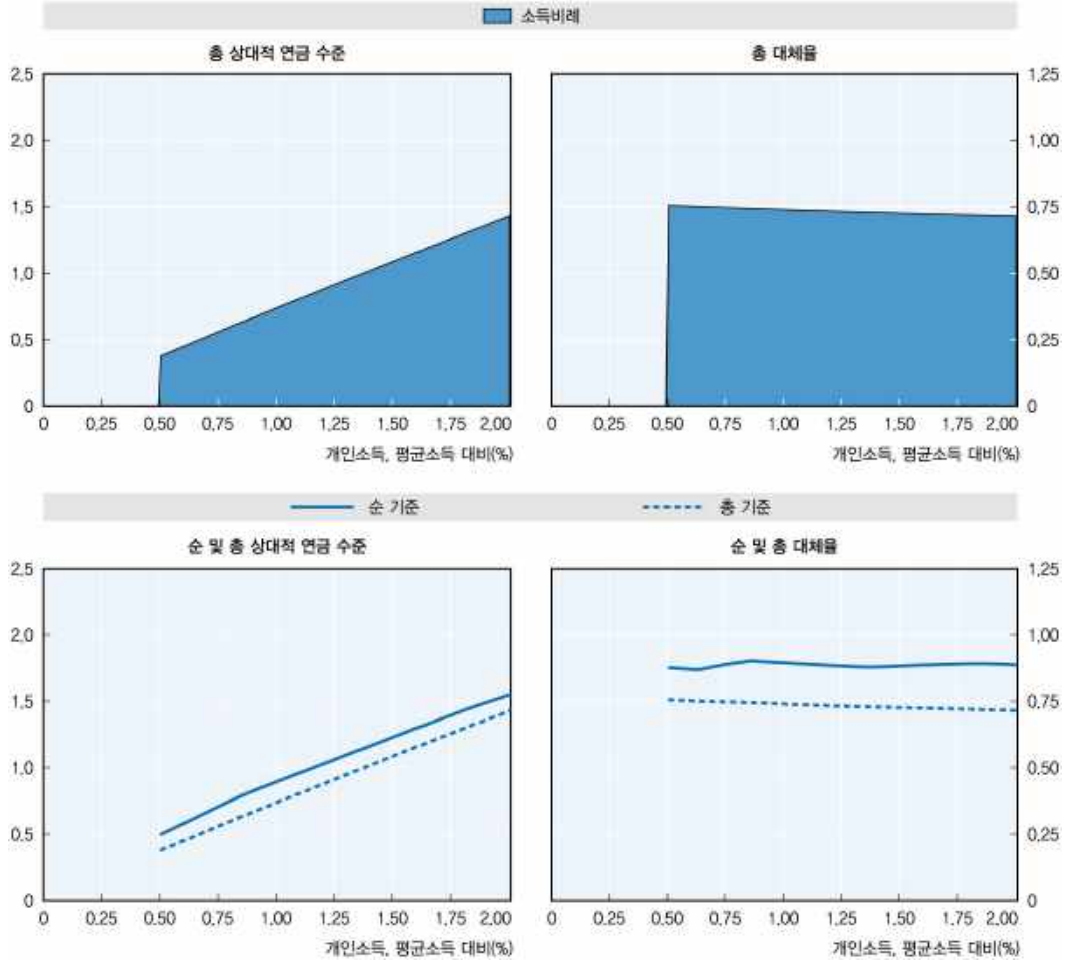
장기실업자에게 적용되는 특별규정이 있다. 오랜 기간 실업상태로 있는 57세 이상인 자는 62세에 감액 없이 연금 전액을 수급할 수 있다. 최저 기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조기수급은 또한 실직 당시 52세 이상인 경우 22년의 기여 년수를 확보하고 있다면 57세부터 가능하다. 이 경우 연금은 월 0.5%씩 감액되며 최대 5년의 감소가 적용된다. 다음 표는 실직된 날을 기준으로 한 규칙들을 제시한다.

실업급여 요건	조건		연금액에 대한 페널티/감액
	실직된 날	연금 지급일	
2006년 12월 31일 이전	50세 이상, 최소 20년의 등록된 소득 확보(50세)	55세 이상 실업/실업부조급여가 종료되었고 여전히 비자발적 실업상태	60세까지 예상되는 매 1개월마다 0.5%
	55세 이상	60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권(15년의 등록된 소득 확보) 실업/실업부조급여가 종료되었고 여전히 비자발적 실업상태	감액 없음
2007년 1월 1일 이후	52세 이상, 최소 22년의 등록된 소득 확보(50세)	57세 이상 실업/실업부조급여가 종료되었고 여전히 비자발적 실업상태	62세까지 예상되는 매 1개월마다 0.5%
	57세 이상	62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권(15년의 등록된 소득 확보) 실업/실업부조급여가 종료되었고 여전히 비자발적 실업상태	감액 없음

실업이 합의된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것이라면 연금액은 추가 감액률의 대상이 되며 이는 연금 수급자가 정상 수급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된다. 등록된 기여기간이 실업 전 12개월 중 180일을 초과하고 실업 전 월 소득이 최저임금의 80% 미만이면 자산조사적 실업부조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 수당은 수급자가 실업상태가 됐을 때가 50세인 경우 조기수급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연장될 수 있다.

연금 모형화 결과: 포르투갈 2060년, 수급연령 66세



기준 시나리오: 입법 시나리오(안전망의 물가 연동)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37,5	55,9	73,8	108,7	142,9	209,5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49,6	70,8	89,5	123,3	154,8	207,1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75,1	74,5	73,8	72,5	71,4	69,8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87,7	88,9	89,5	88,4	88,7	84,4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2,7	11,9	11,8	11,6	11,4	11,2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4,8	13,6	13,4	13,2	12,9	14,8
순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2,4	11,2	10,6	9,7	9,2	8,2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4,5	12,3	11,2	10,6	9,4	14,5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계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http://dx.doi.org/10.1787/888933301603>

## 러시아

### 러시아: 2014년 연금체계

강제적 노령연금은 기초정액급여를 포함한 명목계정제도와 적립식 확정기여형(DC)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법정 사회연금과 사적 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자발적 사적연금이 있다.

### 핵심 지표: 러시아

		러시아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루블(RUB)	391,920	2,343,357
	미달러(USD)	6,691	40,007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	8.5	7.9
기대여명	출생 시	67.9	80.0
	65세 시점	14.4	19.3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대비 %	13.2	16.2

<http://dx.doi.org/10.1787/888933302037>

## 수급요건

2014년에 노령노동연금의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가입기간이 최소 5년인 남성의 경우 60세, 여성의 경우 55세이다. 근로기간 이외에 보험 적격기간에는 군복무 및 사회복무기간, 사회보험급여 수급기간, 돌봄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국가고용청이 명한 유급의 공공근로 참여기간이나 이동기간, 부당한 감금기간, 부당한 압제기간, 부당한 재할 혹은 부당한 망명기간 등이 포함된다. 가장이 군복무 또는 공무수행 중인 경우 피부양자 역시 보험자격기간을 획득할 수 있지만 총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방사능이나 기타 인재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는 50세 이상의 남성 또는 45세 이상의 여성이 근로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적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장애인이나 노인(남 65세, 여 60세 이상)은 국가사회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사회연금은 해외로 지급되지 않는다. 연금 수급은 은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연금 수급과 근로를 병행하는 경우에도 소득조사는 없다.

## 급여 산정

연금 급여는 강제적 연금보험제도(명목 확정기여형)에 대한 기여금으로 재원이 마련된다. 2014년 고용주의 기여율은 62만 4천 루블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는 22%, 62만 4천 루블을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10%였다.

### 노령노동연금

노령노동연금은 다음 두 가지 제도로부터 나오는 연금의 합으로 산정된다.

- 명목 확정기여형연금(기초정액부분 포함): 명목계정에 기반한 급여
- 적립식 확정기여형연금: 2016년부터 개인계정의 적립금에 기반한 급여로, 6%의 기여율에 이자를 더하여 계산됨.

기초정액부분은 2014년 기준 1개월당 4,687루블이었다. 80세 이상 수급자들에게는 기초정액급여의 2배를 지급한다.

기초정액급여와 명목확정기여형(NDC) 급여에 대한 통합 기여율은 임금이 62만 4천 루블 미만이면 16%이고 그 이상이면 10%이다. 명목계정급여(기초정액급여는 제외)는 국가 법률에 따라서 매년 조정되는 누적 명목자본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연금자본의 연동을 위한 연간 계수는 2014년 1월

1일에 1.083이었다.

월 연금액은 연금자본액수를 예상 연금지급 개월 수로 나눈 값으로 결정된다. 이는 2014년에 228개월이었다(19년). 할당된 명목확정기여형 급여 역시 국가의 법률에 따라서 조정된다. 적립식 요소의 연금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불로 지급될 수 있다.

노령노동연금은 방사능 및 인재로 인한 질병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지급 가능하다. 금액은 사회연금의 250%이다.

공식적인 최저 또는 최대 월 연금은 없다.

### 국가사회연금

이 연금은 노동연금의 기초정액연금의 일부로 설정된다. 급여액은 인플레이션과 평균임금의 변동에 따라 조정된다.

### 안전망 급여

모든 범주의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다양한 사회부조급여가 있지만 그 유형과 액수는 러시아 연방의 지역에 따라 다르다(예: 교통비, 의료비 등). 연금 수급자는 현물 또는 현금급여를 선택할 수 있다.

근로하지 않는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사회부조급여는 국가(연방)와 지역 단위로 나뉘어지는 러시아 내의 최저 생계수준을 기반으로 한다. 2014년에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연방 생계비 수준은 1개월에 6,617루블이었다. 이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총 소득이 연금 수급자의 생계비보다 적은 비근로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부조급여에는 몇 가지 옵션이 있다.

1. 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방 생계비보다 소득이 낮은 개인을 위한 연방보충사회부조(연방 생계비 수준까지); 러시아연방 연기금이 지급.
2. 연금 수급자가 받는 지역 생계비보다 소득이 낮은 개인을 위한 지역보충사회부조(지역 생계비 수준까지); 연방부조보다 액수가 높고 지방 사회보장당국에서 지급.

비근로(non-working) 연금 수급자의 총 소득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연금(또는 부분연금), 보충현금 급여, 월간 현금급여(사회적 서비스 금액 포함), 지방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된 기타 사회부조 급여(일시불로 지급된 사회부조 제외), 전화, 주거, 전기/수도/가스, 대중 교통비에 대한 사회부조 급여의 현금 등가물.

## 경력의 차이

### 조기수급

정상 연금수급연령 이전에 연금을 수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건강에 해로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특정 집단의 사람들의 경우 조기수급이 가능하다. 건강에 해로운 환경에서의 필요 근무년수는 근로조건과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조기수급급여는 국가에서 부과방식으로 지급한다. 2013년 1월 1일 기준 특수한 조건을 가진 직종의 고용주와 조기연금 수급자격을 가진

근로자들은 강제적 연금보험제도에 추가 보험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4년에 고용주는 4%, 근로자는 6%를 추가로 기여하고, 2015년에 6%와 9%를 각각 추가로 기여해야 한다.

### 수급연기

노령노동연금은 수급을 연기할 수도 있다. 수급연기 1년마다 예상 연금지급기간을 1년 줄이게 되므로 그 결과 연금 급여액을 늘린다. 최저 예상 연금지급기간은 14년이다.

### 육아

18개월 이하 자녀 1인당 총 3년 이내의 육아기간이 보험적용기간에 포함된다.

**육아수당:** 지역적으로 정해진 최저 생계비 수준 미만 소득 가정에 지급된다. 자녀가 가구 내에 거주해야 한다. 수당은 지역적 위치에 따라 다양하고 18개월부터 18세 자녀(전일제 학생인 경우 23세)까지 각 자녀에 대해 지급된다. 보충액은 만약 이혼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된다. 편부모는 두 배의 육아수당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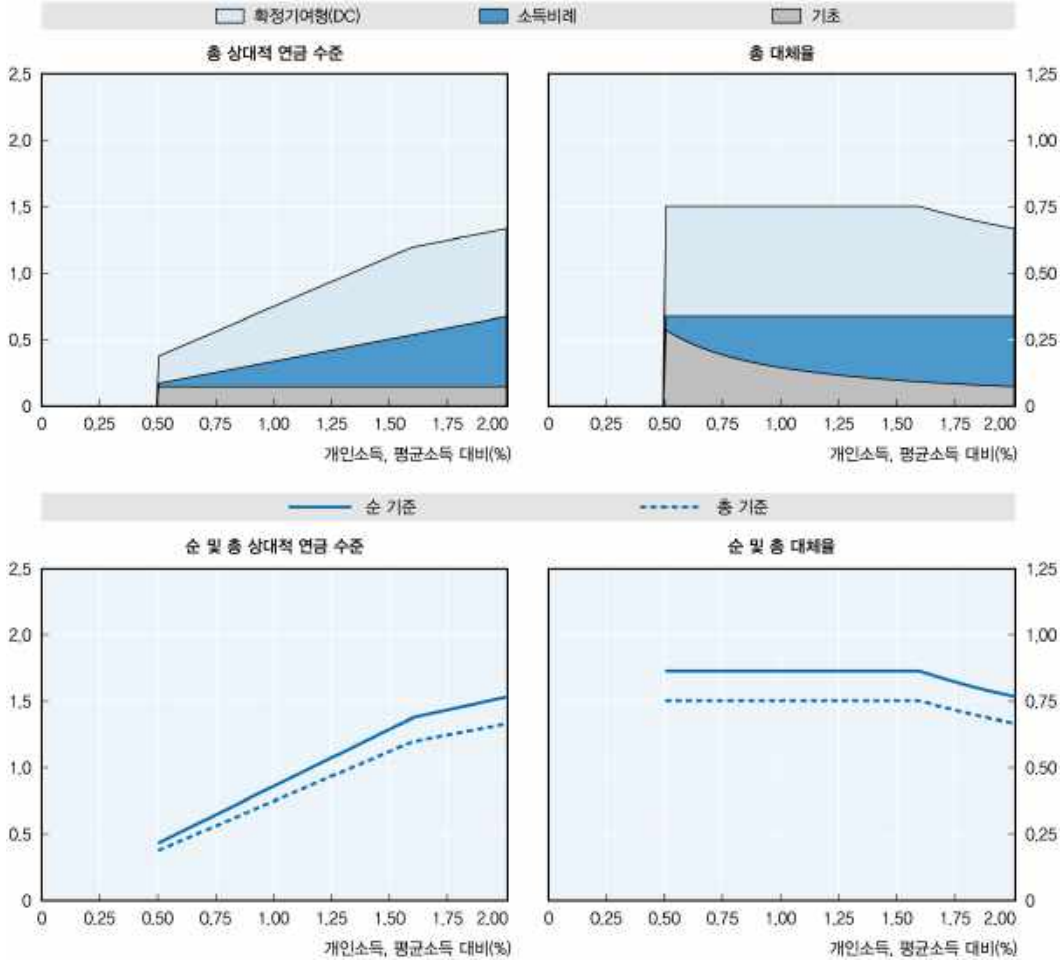
**가족(모성지원)보조금:** 2007년 1월 1일 이후 둘째, 셋째 또는 그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여성에게 지급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 자녀를 입양한 경우 남성이 수급할 수 있다. 지급액은 2014년에 429,408루블이었다. 법률로 정해진 자본투자에 대한 세 가지 옵션 중 하나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법정 적립연금의 재원을 대는 것이다.

### 실업

국가고용청의 제안이 있고 일자리가 부족한 경우, 실업자에게 최대 60세(남성)와 55세(여성)까지 연금이 지급될 수 있지만, 정상수급연령으로부터 2년 앞선 시점부터만 지급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기간이 남성은 25년, 여성은 20년을 넘어야 하고 회사나 사주의 부도, 직원 감원의 경우 조기수급의 근무기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금액은 노동노령연금 보장 부분의 경우 러시아연방의 노동연금 법에 따라 결정된다.



연금 모형화 결과: 러시아 2054년(2049년), 수급연령 60세(55세)



기준 시나리오: 입법 시나리오(기초 제도의 임금 연동)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37,6	56,4	75,2	112,8	133,4	167,1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43,2	64,8	86,4	129,6	153,4	192,1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75,2	75,2	75,2	75,2	66,7	55,7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86,4	86,4	86,4	86,4	76,7	64,0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9,6	9,6	9,6	9,6	8,6	7,1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9,6	9,6	9,6	9,6	8,6	7,1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4년임

<http://dx.doi.org/10.1787/888933301616>

## 사우디아라비아

### 사우디아라비아: 2014년 연금체계

의무 공적연금제도는 소득비례 노령 연금과 노령정착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지표: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리얄(SAR)	183,989	150,161
	미달러(USD)	49,020	40,007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		7.9
기대여명	출생 시	75.4	80.0
	65세 시점	15.5	19.3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대비 %	3.0	16.2

<http://dx.doi.org/10.1787/888933302047>

### 수급요건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이며 납부기간 또는 크레딧 인정 기여기간이 120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연금 수급은 300개월(25년)간 기여액을 납부하면 어느 연령에서든 가능하다.

### 급여 산정

#### 노령연금

연금은 매 기여 년수에 대해 가입자의 은퇴 직전 2년간 월 평균소득의 2.5%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100%까지이다.

급여산정 목적의 최저 월 소득은 1,500리얄이다. 급여산정 목적의 최대 월 소득은 45,000리얄이다.

급여산정 목적의 월 평균소득은 최종 5년의 기여기간 시작 시점의 가입자 월 소득의 150%를 초과할 수 없다.

가입자의 월 소득이 은퇴 전 마지막 2년간 감소한다면 급여산정 목적으로 사용된 월 평균소득을 조정하기 위해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최저연금은 월 1,984리얄이다.

#### 노령일시금(Old-age settlement)

기여기간 첫 5년간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은퇴 직전 2년간 월 평균소득의 10%를, 그 외의 추가 기간에 대해서는 12%를 일시불로 지급한다.

### 경력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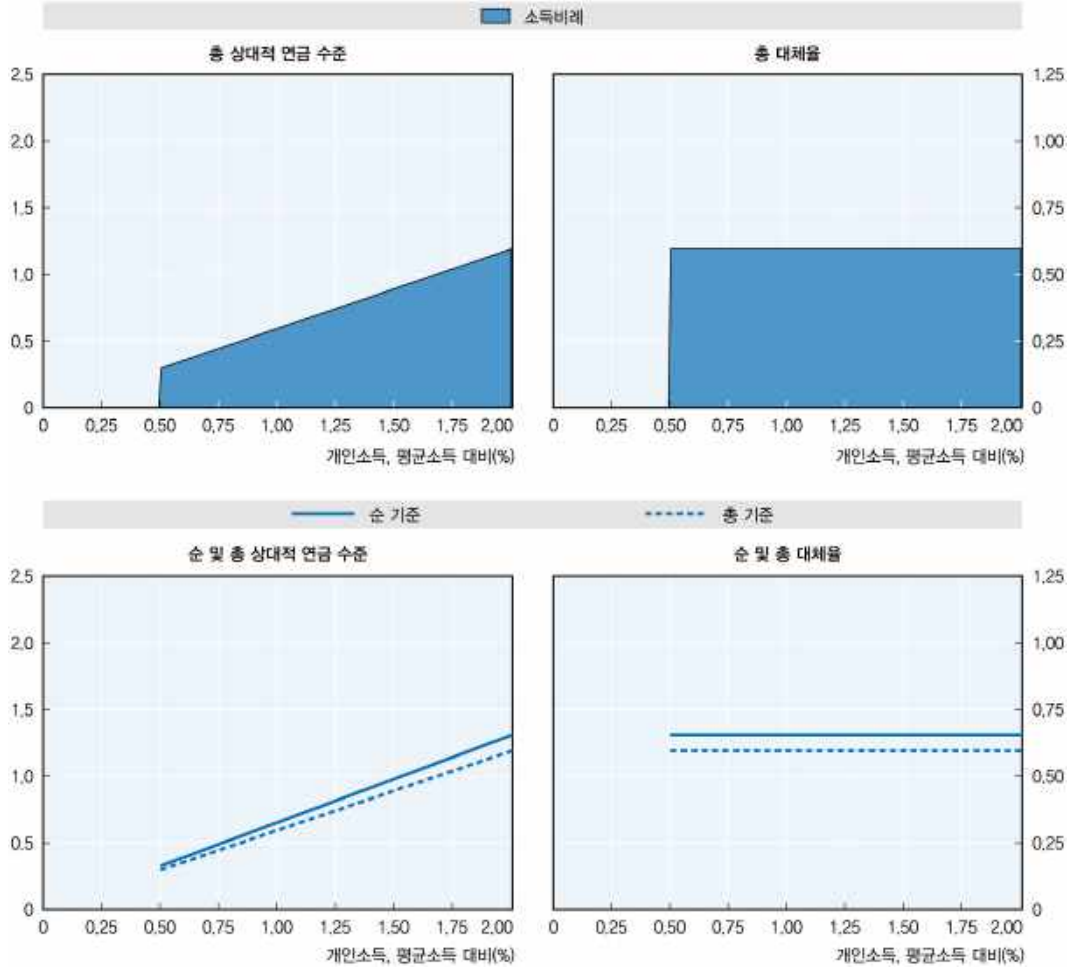
#### 조기수급

기여기간이 300개월 이상이고 더 이상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조기수급이 가능하다.

#### 수급연기

수급연기는 불가능하다.

연금 모형화 결과: 사우디 아라비아 2039년, 수급연령 45세



기준 시나리오: 기초 연금 급여의 임금 연동						
남성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29.8	44.7	59.6	89.3	119.1	174.8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32.7	49.1	65.4	98.2	130.9	192.1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59.6	59.6	59.6	59.6	59.6	58.3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65.4	65.4	65.4	65.4	65.4	63.9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4.8	14.8	14.8	14.8	14.8	14.5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5.6	15.6	15.6	15.6	15.6	15.2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4년임.

<http://dx.doi.org/10.1787/888933301627>

## 슬로바키아

### 슬로바키아: 2014년 연금체계

소득비례 공적제도는 포인트제도와 유사하여 평균소득 대비 개인소득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진다. 저소득 근로자들은 연금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저 소득금액을 통해 보호받는다. 모든 연금 수급자는 사회부조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05년에 자발적 확정기여형(DC)제도가 도입되었다.

### 핵심 지표: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유로(EUR)	10,342	33,036
	미달러(USD)	12,525	40,007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	7.0	7.9
기대여명	출생 시	75.3	80.0
	65세 시점	16.2	19.3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대비 %	13.6	16.2

<http://dx.doi.org/10.1787/888933302052>

## 수급요건

연금수급연령은 현재 62세로 기여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자녀가 있는 여성의 연금수급 연령이 낮춰졌다. 예를 들어 자녀가 5명 이상인 여성은 2014년 기준 57.5세에 수급이 가능하다. 여성의 연금수급연령이 점차 연장되어 모든 여성의 수급연령이 2024년에 62세 이상이 될 전망이다. 2017년부터 법정 연금수급연령은 은퇴 시 기대여명 증가에 연계될 것이다. 실제 증가는 기준기간 대비 평균 기대여명의 변화로 산정되며 결과는 일수로 나타난다. 확정기여형(DC)제도에서 연금수급 자격을 가지려면 최소 10년의 기여금 납부가 필요하다.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취소되었다.

## 급여 산정

### 소득비례연금

연금포인트는 전국 평균소득 대비 개인소득의 비율로 산정된다. 또한 평균 연금포인트가 1.25를 초과하면 감액하는 “연대요소(solidarity element)”가 존재한다. 감액계수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84%에서 60%로 점차 하락할 것이다. 1 미만의 포인트 값은 비슷한 방식으로 증가했고 증액계수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6%에서 22%로 점차 증가할 것이다.

은퇴 시 연금 급여액은 기준기간(일반적으로 1984년 이후 기간)의 모든 연금포인트의 평균에 총 연금가입기간과 은퇴시점의 연금포인트 값을 곱한 것이다. 2014년에 연금포인트 값은 10.2524유로였다. 연금포인트 값은 평균소득 증가에 연동된다(매년 3분기). 2014년에 전국 평균소득은 월 858.00 유로였다. 포인트 값을 소득으로 나누면 확정기여형제도의 지급률이 나오는데 1.25%에 불과하다.

기여소득에는 상한선이 있으며 평균소득의 5배로 설정되어 있다. 소득자료가 뒤쳐진다. 뒤쳐진다는 것은 상한선이 평균소득의 5배에 약간 못 미친다는 의미이다.

연금 지급액은 평균소득 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을 결합한 상승률에 연동된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금 급여액은 고정금액만큼 증액된다. 연금연동에서 소득 증가율과 인플레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40:60, 2015년 30:70, 2016년 20:80, 2017년 10:90으로 바뀔 것이다. 2018년부터 연금연동은 연금 수급자 가구에 대한 소비자 물가의 추이를 따를 것이다.

확정기여형(DC)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공적 소득비례제도로부터 비례적으로 조정된 자신의

급여를 갖는다.

### 최저연금

최저연금제는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연금의 최저평가기준은 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최저평가기준은 퇴직 2년 전 평균임금의 50%이다. 최저임금은 352.00 유로였으며 자영업자의 최저평가기준은 2014년 1월 초부터 402.50유로였다.

### 사회부조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Assistance in Material Need)은 저소득으로 인해 악화된 사회적 형편 때문에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자, 무소득자 및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급여는 보편적이고 비기여형이며 일반 과세를 통해 재정이 충당된다. 급여의 목표는 기초 생활조건을 보장하고 불리한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다.

2014년 1월 1일 기준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Assistance in Material Need)의 노령연금 수급자를 위한 최저소득 보장은 다음과 같다:

1. 월 급여액은 61.60유로(독신 연금 수급자)와 107.10유로(무자녀 부부 연금 수급자)
2. 월 주택수당은 55.80유로(독신 연금 수급자)와 89.20유로(무자녀 부부 연금 수급자)
3. 월 보호수당은 63.07유로(독신 연금 수급자)와 126.14유로(무자녀 부부 연금 수급자)
4. 총 월액: 180.47유로(독신 연금 수급자)와 322.44유로(무자녀 부부 연금 수급자). 이 액수는 연금을 수급하지 않고 어떠한 개인소득도 없는 자가 은퇴연령에 도달한 때 보장되는 총 소득액을 말한다.

연금액이 적은 개인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Assistance in Material Need)을 받게 되는데, 지원자격을 따질 때 연금액의 25%는 고려하지 않는다. 연금 가입기간 25년을 초과한 때 1년 마다 1%P가 추가로 고려되지 않는다(예를 들어 연금을 40년간 기여한 경우 연금소득의 40%가 고려되지 않는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급여액이 연금 수급자에게 주는 최대액수가 아니며 급여액은 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 자발적 확정기여형(DC) 제도

자발적 기여형(DC)제도의 기여율은 소득의 4%이다. 2012년 9월 1일에 기여율이 4%로 인하됐다. 그러나 2017년 1월 1일부터 기여율은 매년 0.25%P씩 인상되어 2024년에 목표수준인 6%에 도달할 것이다. 2005년 1월 1일부터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한 근로자는 확정기여형제도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했다. 다른 근로자들은 혼합형 제도에 가입하거나 2006년 6월 1일까지 공적제도에 잔류할 수 있었다.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혼합형 제도에 대한 참여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동으로 인해 제도는 2년간 탈퇴를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동가입제도로 바뀌었다.

자동가입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신규 근로자들에 대해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며 자발적 가입은 35세 미만인 경우 가능하다. 확정기여형연금은 종신연금, 정기연금 혹은 프로그램화된 인출 형태로 수급할 수 있다. 종신연금 산정을 위해 남녀공통 세대간 사망률표가 있는 현금흐름모형을 사용하고 제도의 비용을 고려했다.

## 경력차이

### 조기수급

조기수급은 가능하고 연금 급여는 30일에 0.5%씩 감액되는데 연 6.5% 수준이다. 조기수급 연금액은 성인 최저생계비의 1.2배에 해당하는 237.71유로보다 높아야 한다. 최저생계비는 198.09유로이며 2013년 7월 1일 이래 그 수준이었다. 2011년 1월 1일부터는 노령연금을 조기에 수급하면서 강제적 연금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졌다.

### 수급연기

수급연기는 가능하고 연금 급여는 30일에 0.5%씩 증액되는데 연 6% 수준이다. 2015년 1월 1일부터 매년 또는 신청 시, 연금을 수급하면서 근로를 지속하는 이들의 경우, 그 기간 중 취득한 포인트의 절반을 추가하여 실제 은퇴시점에 연금 급여액이 자동적으로 재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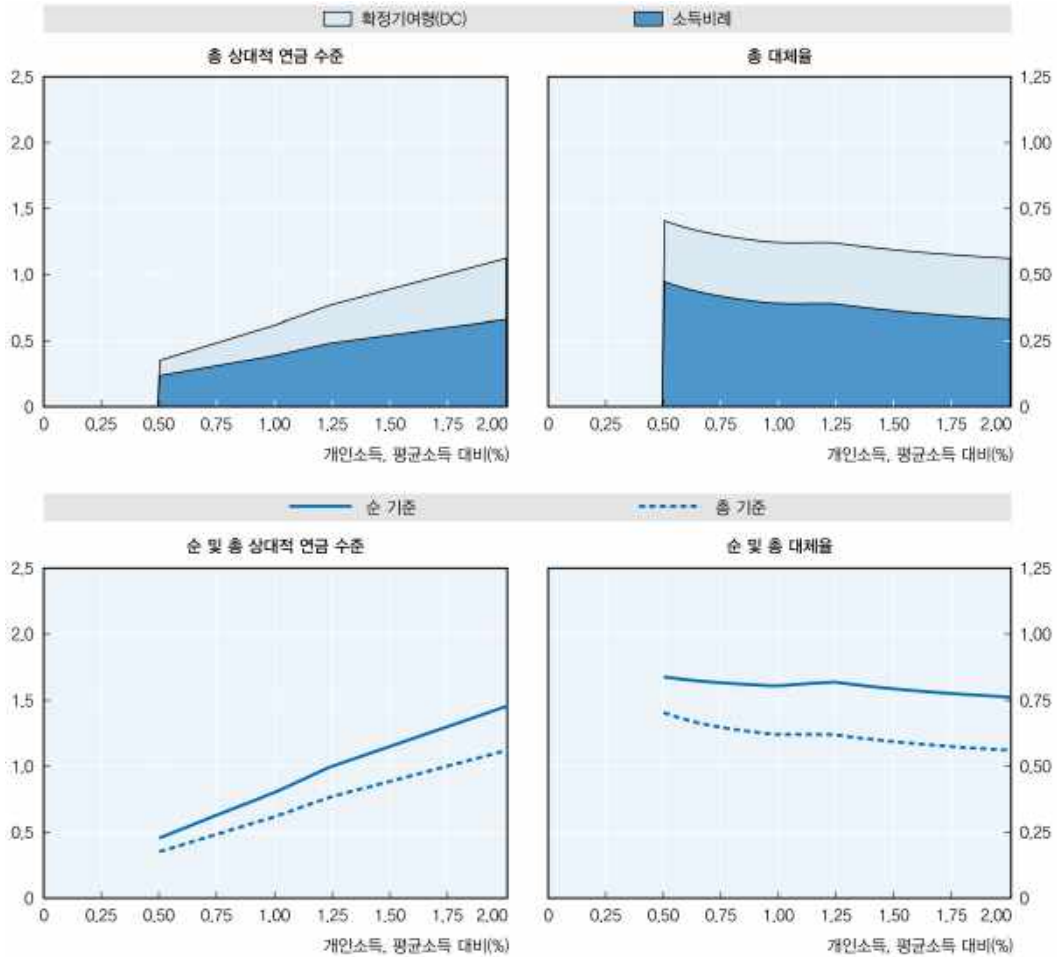
### 육아

6세까지의 자녀를 돌보는 사람들은 국가가 납부하는 연금 크레딧을 인정받는다. 연금 기여금에 대한 평가기준은 육아휴직 직전 평균소득의 60%이다. 2011년 1월 1일부터는 평가기준이 일반 상한선 규정에 맞춰 조정되었고 연 평균임금으로 휴직년도 2년 전의 연 평균임금을 적용한다. 장애아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좀더 관대한 조항이 적용된다. 양육자와 자녀 모두 영구 주소지가 있어야 하고 양육자는 등록되어야 한다. 동일한 규정이 확정기여형(DC)제도(노령연금저축 제도)에도 적용된다.

### 실업

실업기간은 연금제도에서 크레딧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업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연금보험에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기여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연금 모형화 결과: 슬로바키아 2061년, 수급연령 67세



핵심 파라미터의 임금 연동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35,2	48,6	62,1	88,9	112,2	158,7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45,7	63,1	80,6	115,5	145,7	206,0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70,4	64,8	62,1	59,3	56,1	52,9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84,0	81,7	80,6	79,4	76,2	74,2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9,8	9,0	8,6	8,2	7,8	7,3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1,6	10,7	10,2	9,8	9,2	8,7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9,8	9,0	8,6	8,2	7,8	7,3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1,6	10,7	10,2	9,8	9,2	8,7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http://dx.doi.org/10.1787/888933301632>

## 슬로베니아

### 슬로베니아: 2014년 연금체계

연금체계는 소득비례 공적제도와 최저 연금 그리고 선별적 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 핵심 지표: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루피(INR)	17,851	33,036
	미달러(USD)	21,618	40,007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	11.4	7.9
기대여명	출생 시	79.5	80.0
	65세 시점	18.9	19.3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대비 %	17.9	16.2

<http://dx.doi.org/10.1787/888933302061>

## 수급요건

2014년 기준 남성의 연금수급연령은 58세 8개월이고 필요한 기여기간이 최소 40년이며, 여성은 58세 4개월이고 최소 38년 8개월이다. 연금수급연령과 필요한 기여 연수가 점차로 연장되어 남성은 2018년에, 여성은 2020년에 연금수급연령이 60세가 되고 40년의 기여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기여 연수가 40년 미만이면 연금수급연령이 2020년부터 남성과 여성 모두 65세가 될 것이다.

남성(2014년)	기여 연수	15년	20년	40년
	연금수급연령	65세	64세	58세 8개월
남성(2018년)	기여 연수	15년	20년	40년
	연금수급연령	65세	65세	60세
여성(2014년)	기여 연수	15년	20년	38년 8개월
	연금수급연령	64세	62세	58세 4개월
여성(2020년)	기여 연수	15년	20년	40년
	연금수급연령	65세	65세	60세

2019년까지 개인은 연금 급여 수급을 위해 20년의 기여 연수가 필요하다. 그 이후 15년의 보험가입으로 충분하다.

## 급여 산정

### 소득비례연금

노령연금 급여액은 세금을 공제하고 산정된다. 소득비례제도는 최저 수급요건(기여 연수 15년)이 충족되면 남성은 연금 평가기준(rating base)의 26%, 여성은 29%를 지급한다. 그 이후 남성에 대한 지급률은 연 1.25%이다. 여성의 경우 2014년 지급률이 연 1.41%였다. 여성에 대한 지급률은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2023년에 목표율인 1.25%에 도달할 것이다. 40년간의 기여 이후 총 지급률은 2014년 기준 남성은 57.25%, 여성은 64.25%였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경우 추가되는 매 1년마다 총 지급률이



1.25%가 되며 40년간 기여에 대한 지급률은 60.25%가 될 것이다. 연금 평가기준은 순 임금의 최고 24년의 평균을 사용하여 산정된다. 과거의 순 임금은 명목 순 임금의 상승에 따라 상향 조정된다. 2014년에 최고의 20년간이 연금 평가기준을 산정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소득지표는 1970년 이후 최고 순차년도로 이루어진 기간에 기반한다. 평가기간은 2013년 이래 연장되어 2018년에 24년이 될 것이다.

모든 연금대상소득에 적용되는 최저연금 평가기준(rating base)이 존재한다. 최저연금 평가기준은 매년 1월 1일에 설정되는데 평균임금의 76.5%이다. 2014년 11월에 이 임금은 세금과 기여금 공제 후 762.76유로였다. 연금대상소득에 대한 상한선도 있는데 최저연금 평가기준의 4배로 설정되었고 2014년 11월에 1개월당 3,051.04유로이다. 지급되는 연금 급여액은 총 평균임금 상승률의 60%와 소비자물가의 40%를 고려하여 연동되지만, 2014년에 연금 급여액은 상향 조정되지 않았다.

### 최저연금

최저연금은 남성의 경우 최저연금 평가기준의 26%, 여성의 경우 29%로 정의된다.

### 선별적 연금

저소득 연금 수급자에 대한 자산조사적 사회보장수당이 있었다(2011년 12월 31일까지). 2012년 1월 1일부터 이 수당은 사회보호법으로 이전되었다.

## 경력의 차이

### 조기수급

조기수급의 경우 연금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감액된다.

연령(하한선)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여성 2014년	4개월					
감액(월, %)	0,3	0,3	0,3	0,3	0	
감액(연, %)	2,4	3,6	3,6	3,6	0	
<b>총(%)</b>	<b>13,2</b>	<b>10,8</b>	<b>7,2</b>	<b>3,6</b>	<b>0</b>	
연령(하한선)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64세
남성 2014년	8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감액(월, %)	0,3	0,3	0,3	0,3	0,3	0
감액(연, %)	1,2	1,8	1,8	1,8	1,8	0
<b>총(%)</b>	<b>18(최대)</b>	<b>16,2</b>	<b>12,6</b>	<b>9,0</b>	<b>5,4</b>	<b>0</b>

연금 급여액 감액 산정을 위한 상한선은 65세로 설정된다. 그러나 과도기가 존재하므로 2014년에 상한선은 여성의 경우 62세, 남성의 경우는 64세이다. 이 상한선이 매년 6개월씩 점차 증가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 65세가 될 것이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노령연금 최대 감액은 18.0%이다.

### 수급연기

수급연기는 가능하고 연금 급여액은 연기된 기간에 대해 조정된다.

- 새로운 연금 급여 보너스는 개인이 연금 수급에 대한 연령조건을 충족한 후 근로하는 매 3개월마다 지급된다. 현재 수급연령은 60세이고 연금 수급자격기간(구매된 기간 없이)은 40년이다. 연금 수급연기에 대한 최대 보너스는 12%이다(3년).

현재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최저연령이 2014년 기준 남성은 58세 8개월이며 수급자격기간(구매된 기간 없이)은 40년인데, 여성은 58세 4개월이며 수급자격기간은 38년 8개월이다. 이 연령은 2019년부터 60세로 균등화되는데, 수급을 연기하면 전액연금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가입년도가 추가될 때마다 지급률이 높아진다.

구매된 기간 없는 기여 년수(하한선) 2014년			
남성	41년	42년	43년
여성	39년 8개월	40년 8개월	41년 8개월
지급률(%)	4	8	12

### 육아

출산휴가 최대 1년까지는 연금제도에 의해 보장된다. 이 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모(여성)의 근로소득을 근거로 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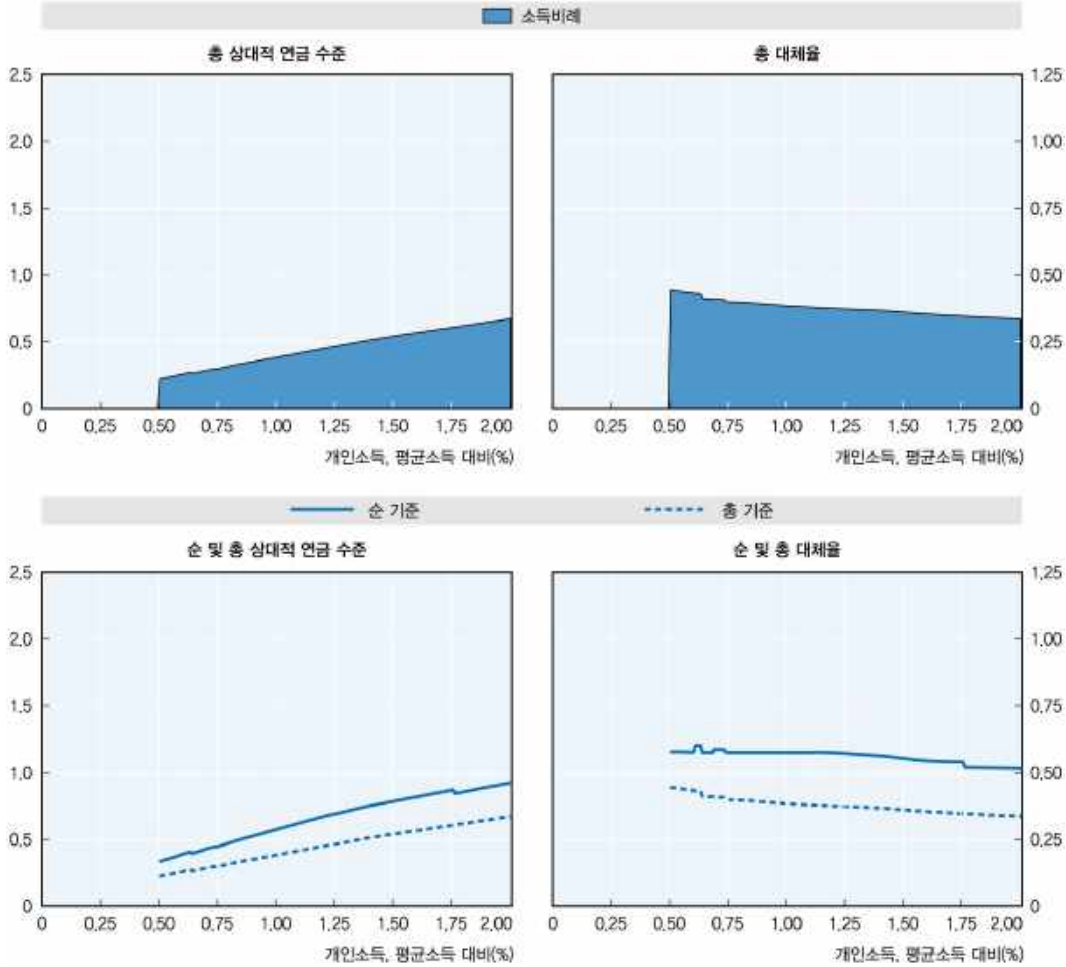
또한 자녀가 3세 이하일 때 시간제 일자리로 옮긴 한쪽 부모는 전일제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기여금 납부에 대한 기준은 수급할 보상액 혹은 급여액에 따른다. 또한 휴직기간 동안에 자발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다(육아기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 실업

실업보험급여의 수혜자는 연금 크레딧을 받는다. 이때 기여금은 고용청이 납부한다. 25년간 가입한 50세를 넘은 사람들은 19개월, 25년간 가입한 55세를 넘은 사람들은 25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는다.

실업급여 수급권이 소진된 장기 실업자를 위해서 국가는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기여금(실업연장기여금)과 크레딧을 최대 1년까지 지급한다. 적어도 57세가 되었거나 최소 35년간 가입한 실업상태의 사람들을 위해서 실업연장기여금이 수급 조건이 충족되기 2년 전까지로 확대되었다. 실업급여의 가치(보험과 부조 지급)는 연금 급여를 산정할 때 고려된다.

연금 모형화 결과: 슬로베니아 2054년, 수급연령 60세



기준 시나리오: 입법 시나리오(임금 연동)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22,2	29,9	38,4	54,0	67,2	72,6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33,3	44,7	57,4	78,6	92,3	97,4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44,4	39,8	38,4	36,0	33,6	24,2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57,6	57,4	57,4	55,1	51,7	39,4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9,8	8,8	8,5	7,9	7,4	5,3
순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9,8	8,8	8,5	7,7	6,8	4,8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http://dx.doi.org/10.1787/888933301642>

## 남아프리카공화국

### 남아프리카공화국: 2014년 연금체계

공적연금은 거주조사를 기반을 하는 정액의 제도이다. 또한 퇴직연금제도가 다수 존재하지만 저소득층의 가입률은 높지 않다.

핵심 지표: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공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랜드 (ZAR)	144,627	461,978
	미달러(USD)	12,525	40,007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		7.9
기대여명	출생 시	57.1	80.0
	65세 시점	13.2	19.3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대비 %	5.7	16.2

<http://dx.doi.org/10.1787/888933302077>

### 수급요건

연금수급연령은 2010년에 남성과 여성 모두 60세로 통일되었다.

### 급여 산정

#### 노령연금

자산조사적 연금으로 독신자는 소득이 64,680랜드, 부부는 129,360랜드 미만이고, 자산은 독신의 경우 930,600랜드, 부부는 1,861,200랜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급여액은 독신자는 월 1,410랜드, 부부는 2,820랜드까지 지급된다. 급여액은 75세를 넘은 사람의 경우 1,430랜드로 증가한다.

#### 자발적 사적연금

퇴직제도의 평균 기여율은 소득의 약 15%로 근로자와 고용주가 분담한다.

### 경력차이

#### 조기수급

정상 연금수급연령인 60세 이전에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수급연기

노령연금 수급은 은퇴여부와 관계없다. 그러므로 수급자의 소득이 자산조사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금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다.

적격 연령에 도달했다고 해서 공적연금을 수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급연기에 따른 이점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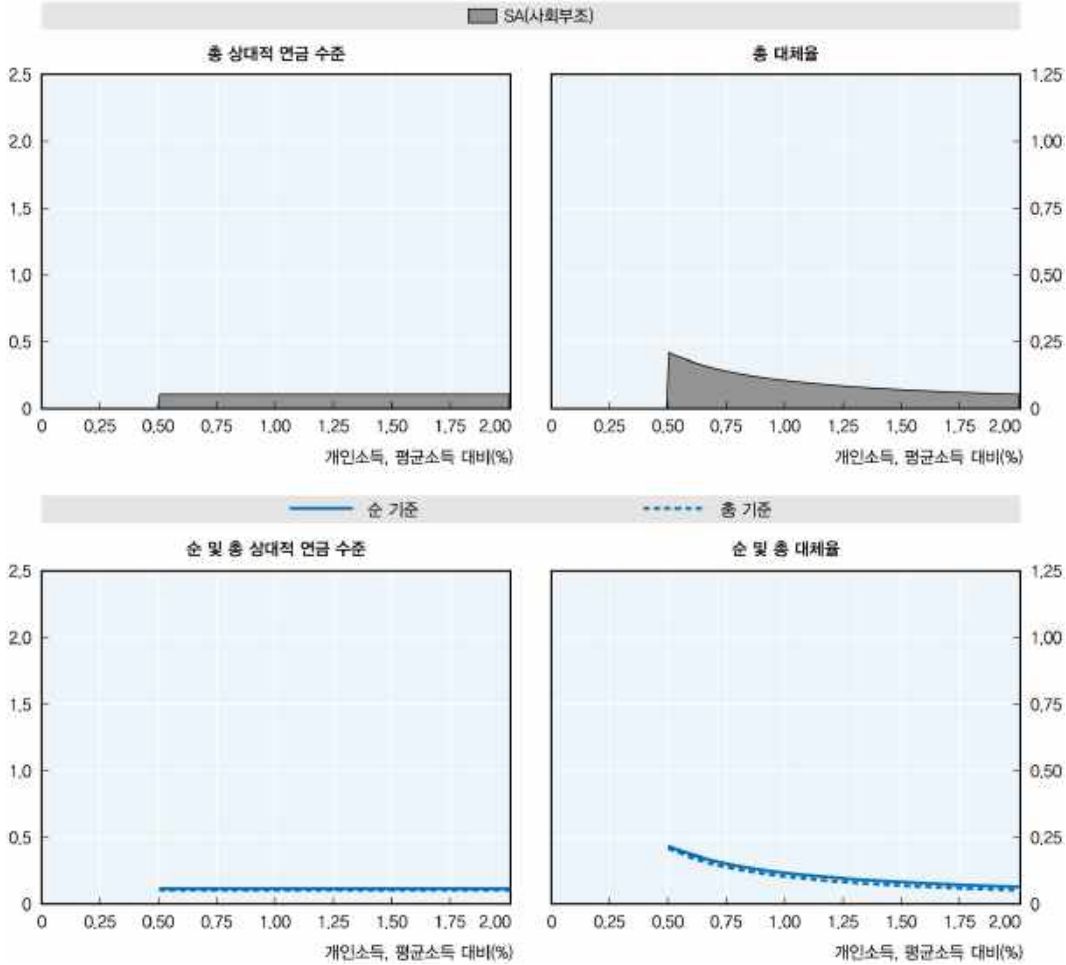
#### 육아

공극적인 공적연금 수급액은 육아 목적으로 유급 근로를 중단한 기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실업

공극적인 공적연금 수급액은 실업기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연금 모형화 결과: 남아공 2054년, 수급연령 60세



입법 시나리오(안전망 제도의 임금 연동)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10.5	10.5	10.5	10.5	10.5	10.5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11.8	11.8	11.8	11.8	11.8	11.8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20.9	13.9	10.5	7.0	5.2	3.5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21.7	15.2	11.8	8.3	6.5	4.6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2.9	1.9	1.4	1.0	0.7	0.5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3.6	2.4	1.8	1.2	0.9	0.6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http://dx.doi.org/10.1787/888933301654>

## 스페인

### 스페인: 2014년 연금체계

스페인의 공적연금제도는 기여를 전제로 하는 단일의 소득비례연금과 자산조사의 최저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비기여형 자산조사형 급여제도도 있는데 이것은 종전의 특별사회부조제도를 대체한 것이다.

### 핵심 지표: 스페인

		스페인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유로(EUR)	26,162	33,036
	미달러(USD)	31,683	40,007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	10.5	7.9
기대여명	출생 시	82.0	80.0
	65세 시점	20.5	19.3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대비 %	18.3	16.2

<http://dx.doi.org/10.1787/888933302084>

## 수급요건

2011년 연금개혁에 따라 전액연금 급여의 수급개시연령은 기여기간이 35년 6개월 미만인 경우 2014년에 65세에서 65세 2개월로 연장되었다. 법정 수급개시연령은 2027년에 남성과 여성 모두 67세가 될 것이다. 그러나 38년 6개월간 기여금을 납부한 경우, 전액연금의 수급이 65세부터 가능하다. 연금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5년의 기여기간이 필요하다.

## 급여 산정

### 소득비례연금

이전에는 급여가 다음 스케줄에 따라 발생했다. 처음 15년간의 기여는 소득 기준의 50%가 되었다. 다음 10년간은 매년 추가로 3%가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1년당 2%가 발생했다. 최대 지급률은 소득 기준의 100%이며 기여기간 35년 이후에 도달했다. 개혁 이후에 지급률은 기여기간 15년 후에 여전히 50%이며 37년 이후에는 100%에 도달하게 된다(15년부터 추가되는 1-248개월까지 매달 지급률이 0.19%씩 증가하며, 그 이후에는 매달 0.18%씩 증가함). 최대 지급률은 여전히 소득기준의 100%가 될 것이다.

새로운 연금조정지수(IRP)가 2014년부터 적용되고 지속가능성계수(FS)는 2019년에 도입될 예정이며 이는 신규 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될 것이다. 이 계수는 신규 연금 수급자들의 기대수명 연장을 반영하게 된다.

소득기준은 퇴직 전 최종 17년간의 과거 소득인데 이전에는 최종 15년간의 과거 소득이었다. 2022년부터 소득기준은 최종 2년을 제외한 과거 25년의 연 소득을 바탕으로 하고 물가에 따라 재평가 될 것이다. 이는 최종임금 대비 최대 대체율이 100% 미만임을 의미한다.

2014년에 기여금과 급여 목적의 소득상한은 43,164유로였다.

2014년 이래 연금 급여는 기여에 기초하는 연금 급여의 수, 평균연금액의 차이, 사회보장제도의 세입과 비용 간 밸런스(balance) 등 여러 다른 요소들에 따라 산정된 새 조정지수(Adjustment Index)에 연동된다. 지수는 최소 0.25%에서 최대 소비자물가지수+0.50%까지 다양한 범위의 값을 산출할 것이다.

### 최저 및 최대연금

65세부터 지급되는 최저연금은 독신 수급자의 경우 월 632.9유로, 피부양 배우자가 있는 수급자의 경우 월 780.9유로이다. 연 14회 지급된다. 또한 자녀가 있는 미망인을 위한 월 731.9유로의 최저연금과 고아를 위한 최저연금이 있다.

최대연금은 2014년 기준 월 2,554.49유로이며 연 14회 지급된다.

### 비기여형 연금

비기여형 연금은 65세 이상이고 기여형 연금의 수급자격이 없는 노인에게 지급되며, 지급액은 2015년 기준 연 5,136.6유로 미만이다. 연금액은 가족구성과 가구소득에 따라 다르다.

## 경력 차이

### 조기수급

조기수급은 비자발적 실업인 경우 기여 년수가 33년이면 수급개시연령 4년 전에 가능하며, 자발적 실업인 경우 기여 년수가 35년이면 법정 수급연령 2년 전에 가능하다. 이전에는 조기수급 최저연령이 비자발적 실업이고 33년간 기여한 경우 61세였다. 조기수급에 대한 연금 급여의 계리적 감액은 기여 기간에 따라 분기당 2%에서 1.5%까지 다양하다.

조기수급자에 대한 최저연금은 피부양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592.0유로, 피부양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731.9유로이다. 최저연금은 65세 이후 증가한다.

신규 근로자에 대한 부분수급이 2014년 기준 61세 2개월부터 가능하다. 2027년에 개혁이 완료되면 부분수급이 36년 6개월 기여한 경우 63세, 33년 이상 36년 6개월 미만 기여한 경우 65세에 가능할 것이며, 또는 2014년에 65세 2개월(대체 없음)부터 가능하다. 신규 근로자와 부분수급 근로자 모두 연금제도에 완전하게 기여하게 된다. 개혁 이전에 부분 수급자는 실제로 근로한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기여금을 납부했다.

### 수급연기

정상 수급연령 이후로 연금 수급을 연기할 수 있다. 기여 년수가 15년에서 25년 사이이고 67세 이후에 계속해서 근로하는 경우, 연금 급여액은 추가된 1년당 산정기준의 2%씩 증가한다. 기여 년수가 25년에서 37년까지는 추가된 1년당 산정기준의 2.75%, 37년인 경우 4% 증가한다.

67세부터는 부분수급과 시간제 근로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근로시간을 대체할 의무는 없다.

2013년 3월 이후 정상 수급연령을 넘은 개인들은 연금 급여의 수급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연금 급여는 50%까지 삭감된다.

### 육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이 반영된다. 은퇴연금, 영구장애연금, 미망인 및 고아연금, 출산휴가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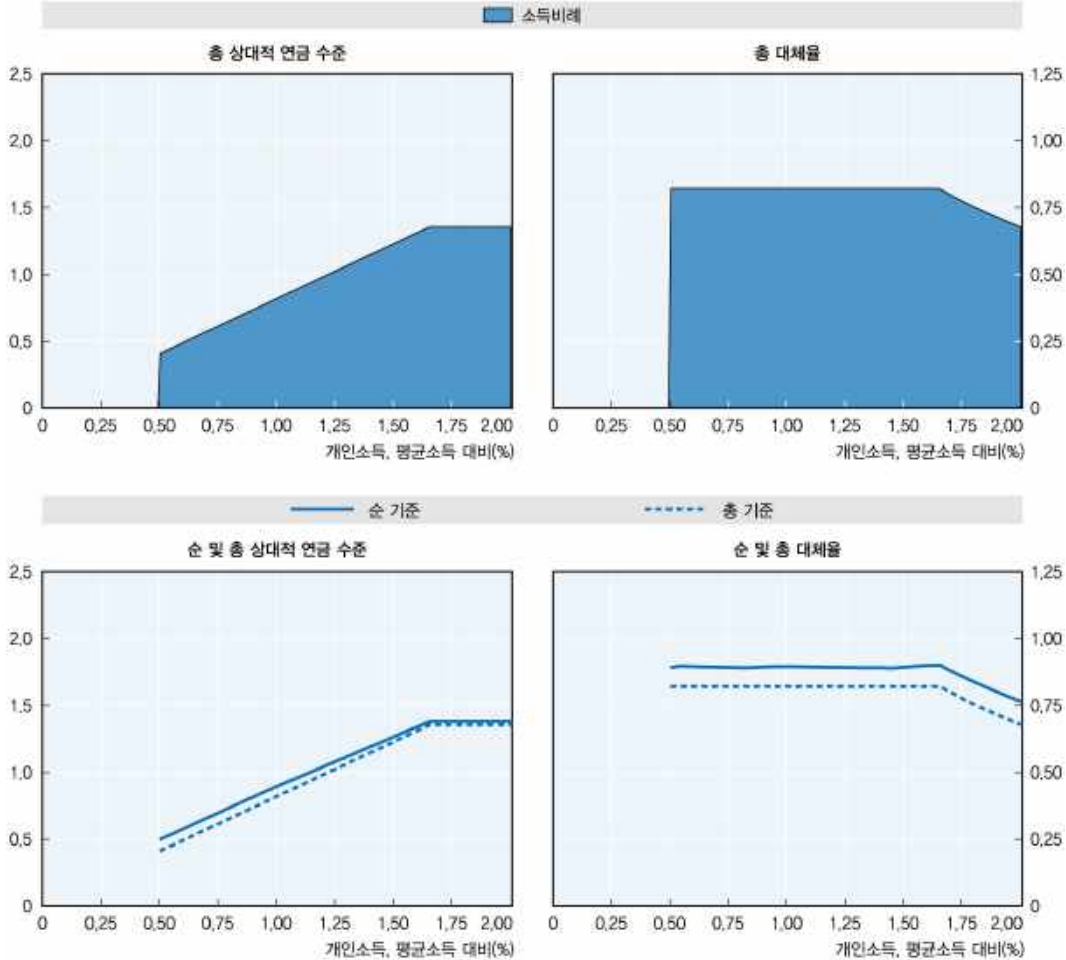
육아휴직급여 등의 급여에 3년간 기여금이 납부된다.

### **실업**

실업수당 수급기간 중에 정부는 고용주의 기여분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개인의 기여분을 납부한다. 기여에 대한 기준임금은 실직 전 6개월 간 평균임금이다. 실업급여 기간은 이전 6년 간의 기여 일수에 따라 다르며 4개월에서 2년 사이이다. 이후 지급되는 실업부조는 기여금을 정부가 연금수급연령까지 납부해주는 55세 이상인 자를 제외하고는 어떤 연금 크레딧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 기여금은 2014년 월 753유로인 최저 기준의 100%에 불과하다.



연금 모형화 결과: 스페인 2059년, 수급연령 65세



기준 시나리오: 입법 시나리오(기초 제도의 물가 연동)

남성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40.9 44.1	56.3 57.8	71.6 71.5	102.4 98.8	133.2 126.1	194.7 180.8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52.8 56.9	71.3 73.0	87.5 87.3	117.9 114.4	146.7 140.3	200.0 188.1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81.8 88.2	75.0 77.0	71.6 71.5	68.3 65.9	66.6 63.1	64.9 60.3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96.4 104.0	92.8 95.0	87.5 87.3	80.8 78.4	77.6 74.2	72.6 68.2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2.9 18.4	11.8 16.0	11.3 14.9	10.7 13.7	10.5 13.1	10.2 12.5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2.5 17.8	11.2 15.2	10.3 13.6	9.3 11.9	8.7 11.0	7.9 9.8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http://dx.doi.org/10.1787/888933301664>

## 스웨덴

### 스웨덴: 2014년 연금체계

공적연금에는 부과식 명목계정제도, 강제가입의 적립식 확정기여형연금, 소득 조사에 기초하는 확정기여형 보충제도(최저 보장연금)로 구성되어 있다. 확정기여형 및 확정기여형 요소를 갖춘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률이 높다.

### 핵심 지표: 스웨덴

		스웨덴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크로나(SEK)	407,974	312,251
	미달러(USD)	52,272	40,007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	7.4	7.9
기대여명	출생 시	81.7	80.0
	65세 시점	19.9	19.3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대비 %	20.0	16.2

<http://dx.doi.org/10.1787/888933302090>

## 수급요건

소득비례 국민연금은 61세부터 수급이 가능하다. 최저보장연금의 수급자격을 갖추려면 3년간 거주가 필요하고 보장연금 급여는 65세부터 수급이 가능하다. 보장연금 최고액은 거주기간이 40년이면 받을 수 있고 그 기간보다 짧으면 비례적으로 감액된다.

## 급여 산정

기여율은 연금대상소득의 18.5%이며 전국 평균소득의 3년 이동평균에 맞춰서 조정된다. 연금 대상소득은 소득에서 연금제도에 대한 종업원 기여분을 뺀 것(명목계정제도와 확정기여형제도 모두)인데, 종업원 기여분은 총 소득의 7%로 총 소득에 대한 유효기여율은 17.21%, 그중 14.88%는 명목계정제도에 대한 기여이고 2.33%는 확정기여형(DC) 적립식 연금에 대한 기여이다. 기여금은 연 소득이 2015년 평균소득의 5%를 약간 밑도는 18,824크로나를 초과할 경우에만 납부하며, 소득이 그 하한선을 넘는 모든 국민들에게 소득 전체에 대해 기여금이 부과된다. 연금대상소득 측면에서 산정된 급여에 상한선이 있으며 2015년 기준 435,750크로나로, 총 소득 대비 실질 상한선은 2015년에 468,867크로나였다(평균소득의 115%를 약간 하회). 고용주 기여분은 상한선까지만 납부된다. 65세까지 상한선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금이 있고 이 세금은 연금 기여금과 동일한 비율이다.

### 소득비례연금

소득비례제도는 명목계정을 이용한다. 명목계정은, 생존자와 같은 연령의 사망자 연금잔액의 분포만큼 매년 증가한다(상속이익(inheritance gains)). 이때 상속이익은 연금 수급이 가능한 최저연령(61세) 이전에 사망한 사람들로부터 나오게 된다. 이 연령 이후의 상속이익(inheritance gains) 요소는 이전 기간 동안 관찰된 사망률을 기준으로 추정된다(5년 단위 남녀공통 사망률 표로 산정).

은퇴 시, 누적된 명목자본이 연금으로 전환된다. 산정 시에는 개인 은퇴연령과 당시 기대여명(이전 5년간 남녀공통 사망률 표에 근거)에 따른 계수를 사용한다. 연 1.6%의 실질할인율도 연금산정에 포함된다.

은퇴 후, 연금은 명목 평균소득 상승률에서 연금제수(annuity divisor)의 귀속이자율 1.6%를 뺀 값에 맞춰 조정된다. 또한 “재정균형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는 자산(완충기금에 향후 기여수입의 추정치를 합산한 금액)이 부채(발생한 명목 연금자본과 향후 지출될 연금의 추정치) 수준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균형이 회복될 때까지 연금 연동율과 명목계정에 반영되는 수익률을 자산 대비 부채 비율만큼 감소시킨다. “t년도”에 대한 균형비는 t+2년에 균형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 또는 균형값(balance number)을 산정하는데 사용된다. 활성화된 균형 메커니즘은 공적연금의 낮아진 대체율을 의미하지만 연금재정이 회복되고 균형값이 높아지면 더 좋은 결과를 산출할 것이다(균형지수는 회복 기간 중 소득지수를 초과할 수 있다). 2012년의 균형비와 2014년의 균형값은 0.9837이다.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균형비	0.9837	1.0198	1.0024	0.9549	0.9826	1.0026

모형화를 위해서, 연금계수(annuity coefficients)는 위의 규칙과 UN 인구데이터베이스의 관련 사망률 자료를 이용해서 산정했다. 또한 균형 메커니즘이 급여 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 기초연금(최저보장연금)

“최저보장연금”은 명목계정으로부터 낮은 연금을 지급하는 사람에게 소득조사적 보충연금을 제공한다. 독신자의 경우 2014년 기준 완전 보장 급여액은 1938년 이후 출생자는 94,572크로나였으며 이는 총 평균소득의 24%에 해당한다.

보장연금은 2014년 기준으로 독신자의 경우 소득비례연금이 55,944크로나에 달할 때까지는 100% 감액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48% 감액된다. 이 기준선은 평균소득의 14%에 해당한다. 소득비례연금이 평균소득의 35%에 가까운 136,420크로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장연금 지급권이 소진된다. 보장연금은 매년 물가에 연동된다.

또한, 독신인 연금 지급자에 대해 월 최대 5,000크로나의 주택수당이 있어 주택비용의 93%를 충당할 수 있다. 2012년 1월 1일부터 1인당 170크로나가 주택수당에 추가되었다. 2013년 1월 1일부터 가구당 340크로나가 추가된다. 이 수당은 스웨덴 연금 지급자의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자산조사적 급여는 모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 확정기여형(DC) 제도(프리미엄연금)

연금대상소득의 추가 2.5%(총 소득에 대한 유효 기여율은 2.33%가 됨)가 기금의 투자처에 대한 폭넓은 선택권을 개인에게 제공하는 강제 적립식 확정기여형제도에 납부된다.

은퇴 시점에 급여 인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누적된 연금계정은 투자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종신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는 변액연금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는 자신이 선택한 펀드매니저가 자금을 계속해서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 연금은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다. 연금 급여액 산정 원칙은 계정의 가치를 연금계수(annuity divisor)로 나누는 것이다(추정 평균 기대여명에 근거). 그리고 연금 급여액에는 추정된 미래금리 3%에 관리비를 제한 값이 추가된다. 수익률이 3%를 초과하면 추가 지급이 이루어지거나 계정 잔액이 높아져 연간 연금산정 기준선도 높아진다.

## 준강제적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률은 전체 근로자의 90%에 가깝다. 주요 퇴직연금제도는 4개뿐이다. 모형에서는 사무직 근로자를 위한 ITP제도를 사용했는데 이 제도는 1979년 및 그 이후 출생자에 대한 적립식 확정기여형 급여이다.

### ITP1

2007년 1월 1일부터, 1979년 및 그 이후에 출생한 임금 근로자는 25세부터 새로운 ITP1제도에 따른 퇴직연금을 적용 받기 시작했다. 이 제도는 완전한 확정기여형제도다. 기여율은 임금의 4.5%이며 상한선은 소득기본액의 7.5배이다(2014년 기준 426,750크로나). 기본액의 7.5배를 초과하는 임금 부분(12로 나뉘 1개월분 산출)에 대한 기여율은 30%이다. 연금대상소득은 실비보상금을 제외한 현금성 임금 총액이다. 보험료는 모든 임금에 대해 부과된다.

근로자는 저축 형태와 펀드 관리자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여금의 최소 절반은 전통적인 연금 보험에 투자된다. 근로자는 또한 5, 10, 15 또는 20년 동안의 연간 물가 기준액의 1, 2, 3, 또는 4배의 상환보장과 가족보장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환보장이나 가족보장 없이 전통적 연금보험에 투자된다. 이 기본 선택이 모형에 반영되었다.

근로자의 연봉이 소득기준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2014년 기준 549,000크로나) 고용주와의 계약에 따라 신제도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해당 근로자가 전통적인 ITP2 제도를 갖고 있느냐 대안적 ITP를 선택했느냐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 경력의 차이

### 조기수급

소득비례연금 인출은 국민연금제도에서 61세부터 가능하다. 정해진 수급연령은 없다. 명목계정과 연금 산정은 수급연령에 따라 자동 계리적 감액을 제공한다.

소득조사 보장연금은 65세 이전에는 수급할 수 없다. 명목계정연금을 65세 이전에 인출하든 이후에 인출하든 관계없이, 보장연금은 65세에 인출한다는 전제하에 산정된 명목계정연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신제도인 ITP1제도에서는 연금 급여가 일반적으로 65세에 지급되지만 55세부터 지급될 수도 있다. 연금은 평생 지급되지만 최소 5년 등 제한적인 기간 동안 전액 또는 일부 지급될 수 있다. 종신연금은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모형에 반영했다. 연금의 규모는 납부된 보험료 금액과 수익률, 수수료와 세금, 연금 지급기간 등에 따라 결정된다.

### 수급연기

명목계정연금과 프리미엄연금은 연령 상한선 없이 연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자동 계리적 조정이 이루어진다. 또한 근로와 연금 수급을 병행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연금은 부분적으로 인출할 수도 있다(연금 전액의 25%, 50%, 75%). 보장연금은 스웨덴 노령연금제도의 다른 연금 및 유사한 외국의 공적연금에 맞춰 조정되지만 임금소득, 자본소득, 퇴직연금 또는 사적연금보험에

따라 감액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보장연금을 수급하면서 근로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65세 이후로 ITP1 퇴직연금 수급을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용주와 특별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65세 이후에 추가적인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 육아

4세 이하의 자녀와 동거한 기간은 공적연금제도에 반영이 된다. 두 부모 가구의 경우 특별히 선택하지 않았다면 소득이 적은 쪽으로 크레딧이 간다. 크레딧 산정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유리한 방식이 적용된다. 첫째, 소득이 없거나 이전 소득보다 낮을 경우 크레딧은 자녀 출생 전년도 소득에 근거한다. 둘째, 저소득 근로자나 육아 책임이 발생하기 전에 근로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의 경우 크레딧은 국가 평균소득의 75%에 근거한다. 셋째, 육아 책임이 시작되면서 소득이 실제로 증가하거나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면, 크레딧은 소득 기준액의 100% 수준에 설정된다. 세 가지 경우 모두 정부가 소득비례 국가연금제도에 대한 기여금을 전액 납부한다(명목계정과 적립식 확정기여형 제도 모두).

게다가 지급된 육아급여는 또한 연금대상소득으로 간주된다. 수혜자는 육아급여 소득의 7%를 종업원 연금 기여금으로 납부한다. 정부는 육아급여가 포함된 사회보장으로 인한 소득의 10.21%인 “고용주 기여분”을 전부 납부한다.

육아급여는 다음과 같이 480일간 지급 가능하다.

- 부모 연 소득의 80% 수준에서 390일. 한도는 물가 기준액의 10배에 달하는 금액(2014년 연봉 444,000 크로나에 상당함).
-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하루 180크로나의 정액으로 90일.

저소득이거나 소득이 없는 부모는 하루 180크로나의 최저보장급여를 받는다. 현금 급여 지급일 480일은 부모에게 똑같이 나눠 적용된다(부모 한 명당 240일씩). 부모 간에 최대 180일까지 양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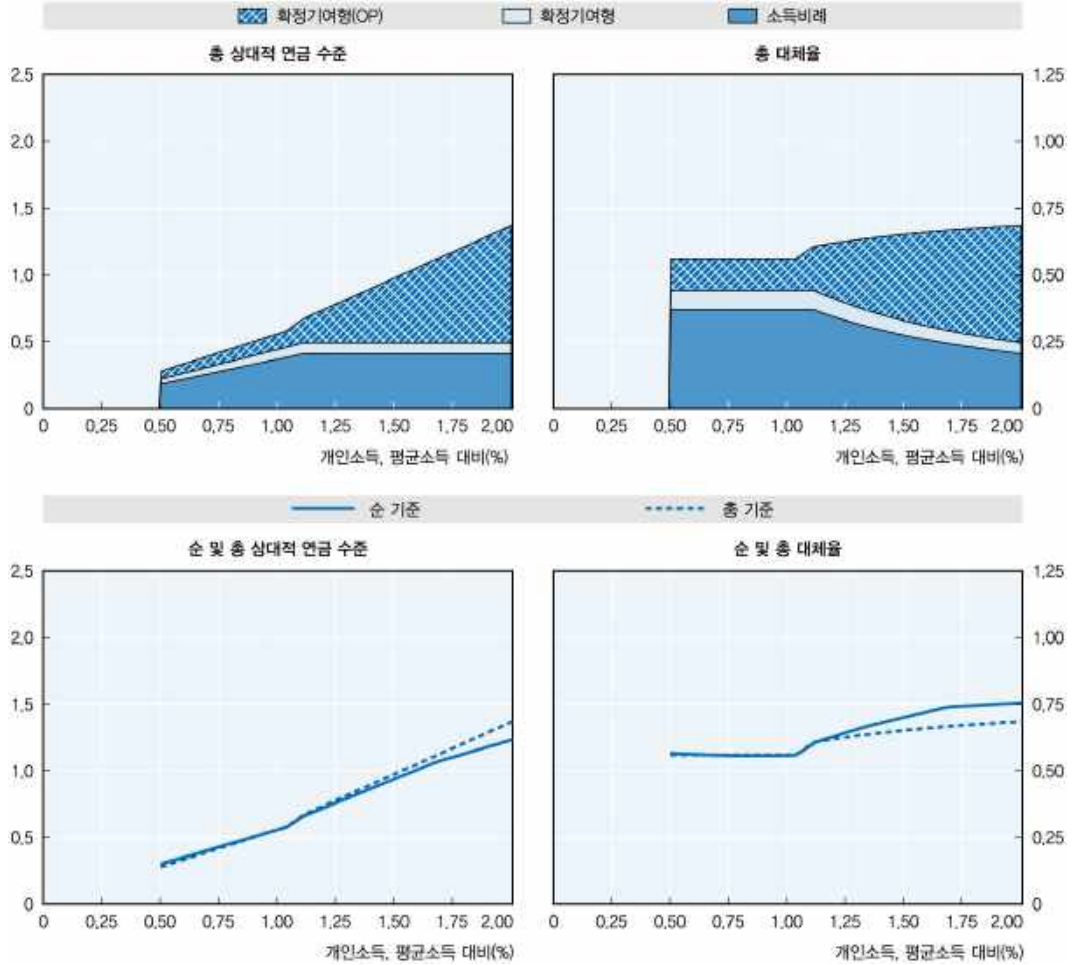
ITP 퇴직제도에서는 고용주가 보험을 통해 육아휴직기간 최대 13개월간 종업원의 연금에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대부분이 권고대로 이행하고 있음).

### 실업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와 교육수당은 연금대상소득으로 인정하고 정부는 “고용주” 기여분을 납부해준다. 소득연계 실업급여는 최초 200일 동안은 이전 소득의 80% 수준이다. 201일부터 300일까지는 이전 소득의 70% 수준이 된다. 그 이후에는 급여기간이 종료되나, 다만 급여 수혜자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 급여는 150일 동안 이전 소득의 70% 수준으로 연장 지급된다. 실업급여는 일 최대 680크로나까지 지급되며 최저 지급액은 일 320크로나이다(수급자가 실직 전 12개월간 전일제로 근로한 경우에만 적용).

실업급여를 받으면 수급자는 직업개발보장 프로그램에 등록할 자격을 부여받는다. 직업개발보장 프로그램 참가자는 활동지원 또는 개발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구직자가 직업개발보장 프로그램 등록 전에 실업급여를 받아왔다면 이 수당은 실업 전 소득의 65% 수준이 된다(최대 일 680크로나). 구직자가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223크로나의 일 급여를 수급한다.

연금 모형화 결과: 스웨덴 2059년, 수급연령 65세



기준 시나리오: 입법 시나리오(보장 연금의 물가 연계)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28.0	42.0	56.0	97.8	137.0	215.3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30.2	43.0	55.8	94.2	123.3	170.0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56.0	56.0	56.0	65.2	68.5	71.8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56.7	55.8	55.8	70.1	75.5	76.9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9.7	9.7	9.7	11.4	12.1	12.7
순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7.8	7.4	7.2	8.2	8.1	7.5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연금 모형화 결과: 스웨덴 2059년, 수급연령 65세(계속)**

대안적 시나리오: 보장 연금의 임금 연동						
남성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33.5	42.4	56.0	97.8	137.0	215.3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35.2	43.4	55.8	94.2	123.3	170.0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66.9	56.5	56.0	65.2	68.5	71.8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66.1	56.3	55.8	70.1	75.5	76.9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1.7	9.8	9.7	11.4	12.1	12.7
순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9.2	7.5	7.2	8.2	8.1	7.5
	10.3	8.4	8.1	9.2	9.1	8.4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http://dx.doi.org/10.1787/888933301679>

## 스위스

### 스위스: 2014년 연금제도

스위스의 연금체계는 크게 세 가지 계도로 구성되어 있다. 공적연금인 소득비례제도이며 누적적인 산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조사 보충급여가 존재한다. 강제적 퇴직연금제도는 1985년에 도입되었으며, 퇴직연금은 자발적으로 보충할 수도 있다.

### 핵심 지표: 스위스

		스위스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스위스프랑(CHF)	90,522	39,719
	미달러(USD)	91,179	40,007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	6.6	7.9
기대여명	출생 시	82.5	80.0
	65세 시점	20.8	19.3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대비 %	18.2	16.2

<http://dx.doi.org/10.1787/888933302103>

## 수급요건

공적연금과 강제적 퇴직연금의 연금수급연령은 현재 남성 65세, 여성 64세이다. 금액없이 연금액 전액을 수급하려면 남성 44년, 여성 43년의 기여기간이 필요하다.

## 급여 산정

### 소득비례

공적 소득비례연금은 생애 평균소득에 기반한다. 생애 평균소득은 기여금을 납부한 연수와 20세부터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할 때까지의 평균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급여액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존재한다. 이 두 기준선 사이에서는 “two-branch” 급여산식으로 평균소득이 선호된다. 급여산식은 고소득에서 저소득으로 재분배하는 경향이 있다. 전체 기여기간을 모두 채운 경우, 급여액은 14,040 프랑에서 28,080프랑 사이이다. 이는 각각 평균소득의 16%와 31%에 해당한다. 최대 급여는 생애 평균소득이 국가 평균소득의 93%에 해당하는 84,240프랑일 때 수급할 수 있다. 부부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은 독신에게 지급되는 최대 급여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다.

지급되는 연금 급여액은 2년에 한 번씩 조정되는데 50%는 물가에, 50%는 명목소득에 연계된다.

### 강제적 퇴직연금

강제적 퇴직연금보험제도는 1985년에 도입되었다. 이는 개인의 연금계정에 대한 “확정 크레딧 (defined credits)”을 중심으로 수립되었으며 연 최소 21,060프랑의 소득을 올리는 이들에게 적용된다. 본 확정 크레딧은 연령에 따라 다르다.

연령	25-34	35-44	45-54	55-64/65
노령 크레딧 (조율된 임금 중 %)	7	10	15	18

은퇴 시 누적된 크레딧의 가치는 초기 년도의 기여금에 적용된 필요 이자에 따라 달라진다. 금리는 현재 1.75%이다. 노령 크레딧은 매년 조정된 임금의 비율로 산정된다. 이는 총 연간소득에서 조정



공제(24,570프랑)를 뺀 것이지만 많아야 59,670프랑이다. 금리가 조정된 임금의 인상률과 대체로 일치하는 경우, 완전경력을 가진 65세 수급자는 조정된 임금의 500%에 해당하는 누적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금리가 조정된 임금의 인상률을 초과하면(밑돌면) 더 높은(낮은)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모형에서는 크레딧에 적용된 금리가 조정된 임금의 인상률과 장기간 동안 동일할 것이라 가정한다.

고용주는 이러한 노령 크레딧의 최소 절반을 납부해야 하며 종업원이 나머지를 납부한다.

개인연금계정은 은퇴 시 연 퇴직급여로 전환되며 6.80%의 전환율을 사용한다. 뿐만 아니라 퇴직자는 퇴직자산의 최소 25%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강제제도는 법에서 보장하는 법정 최저연금을 제공한다. 등록된 연금기관(연기금)은 법에서 정한 수준을 초과하는 급여액을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연금 급여액은 “의무초과(over-obligatory)”급여로 불린다. 강제제도에 가입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이런 종류의 “의무초과(over-obligatory)”급여를 받는다.

### 선별적 연금

소득비례연금과 기타 소득원으로는 기초 생계비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 자산조사적 보충급여가 지급된다. 지급되는 연 급여액은 인정된 지출액과 산정된 소득액(급여, 근로소득, 자산수익 등) 간의 차액에 해당한다. 개인의 경우 산정된 비용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보충급여(PC) 산정 시 고려되는 요인	연 금액(집에서 거주하는 개인)
생활 필수품	19,210스위스프랑
총 집세 한도액	13,200스위스프랑
질병 및 장애비용 환급 한도액	25,000스위스프랑

보충급여는 공적 노령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연계된다. 저소득 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州)별로 재량적 부가수당이 있다. 이 부분은 모형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 사회부조

어려운 상황일 때 사회부조를 수급할 권리는 연방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주(州)에서 제도를 시행하고 재정을 충당한다.

### 자발적 연금

기여금에 대한 비과세를 통해 자발적 연금저축을 장려하고 있다. 기여금은 은행계좌에 저축하거나 전용 보험증권에 납부할 수도 있는데 인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2014년, 투자 가능한 최대금액은 근로자 6,739프랑, 자영업자 33,696프랑이었다. 정상 연금수급연령 이후 최대 5년까지 추가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다. 자발적 사적연금은 연금수급연령 이전 최대 5년까지는 인출이 불가능하다. 급여액은 소득세 대상이 된다.

## 경력차이

### 조기수급

공적연금제도 조기수급이 남성은 63세, 여성은 62세에 가능하다. 조기연금 수급 시, 전체 급여액은 1년당 6.8%씩 감액된다.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조기수급이 가능하며 58세부터 청구가 가능하다. 조기수급의 조건을 정의하는 것은 연기금이다. 일반적으로는 연 연금 급여액의 확보를 위해 근로자의 연금자산에 적용되는 전환율은 매년 0.15-0.2%p씩 감소한다. 0.2포인트 감소는 전통적으로 측정되는 조기수급의 연 2.95%의 계리적 조정에 해당한다(조기수급의 정도에 따라 증가). 조기수급의 결과로 발생하는 기여금과 크레딧 손실분도 반영하면 이론적 급여액은 조기수급 기간 1년당 7.1%(1년)에서 6.35%(5년) 씩 낮아진다. 연금 수급과 유급 근로를 병행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 수급연기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모두 정상 연금수급연령 이후로 연기가 가능하다. 공적연금은 최대 5년간 수급을 연기할 수 있다. 공적연금은 다음 표에 따라 증액된다.

연기	1년	2년	3년	4년	5년
조정(%)	5.2	10.8	17.1	24.0	31.5

소득이 연 16,800프랑 미만인 경우 남성은 65세 이후, 여성은 64세 이후에는 기여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소득이 이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여금은 부과되지만 추가적인 연금 급여를 취득할 수는 없다. 퇴직연금 급여는 70세까지 수급을 연기할 수 있다. 연기금에서 자체적으로 조건을 규정한다. 일반적으로는 연방사회보험국의 권고에 따라 연기된 기간에 대해 연 0.2%p씩 전환율이 증가한다. 원칙적으로는 연금 수급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다. 공적연금제도에서는 65세 이후에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 육아

16세 미만 자녀의 육아기간은 양육 크레딧의 취득이 가능하며, 양육 크레딧의 소득인정액은 부모가 은퇴하는 연도의 최저연금의 3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2014년의 양육 크레딧 소득인정액은 42,120프랑이었다. 양육자가 이 양육기간 중 결혼하는 경우 크레딧은 배우자 또는 등록된 파트너와 똑같이 나누어 취득하게 된다. 육아에 대한 크레딧은 퇴직연금에서는 제공되지 않는다.

### 친지 돌봄

친지를 돌보는 기간은 돌봄(care-taking) 보너스가 발생한다. 이 크레딧은 자녀양육 크레딧과 동시에 취득할 수 없다. 이 보너스는 최저 노령연금 1년 급여액의 3배에 해당한다. 결혼(또는 등록된 파트너십)기간 중 취득한 보너스는 파트너와 절반씩 나눈다. 퇴직연금에서는 친지 돌봄 크레딧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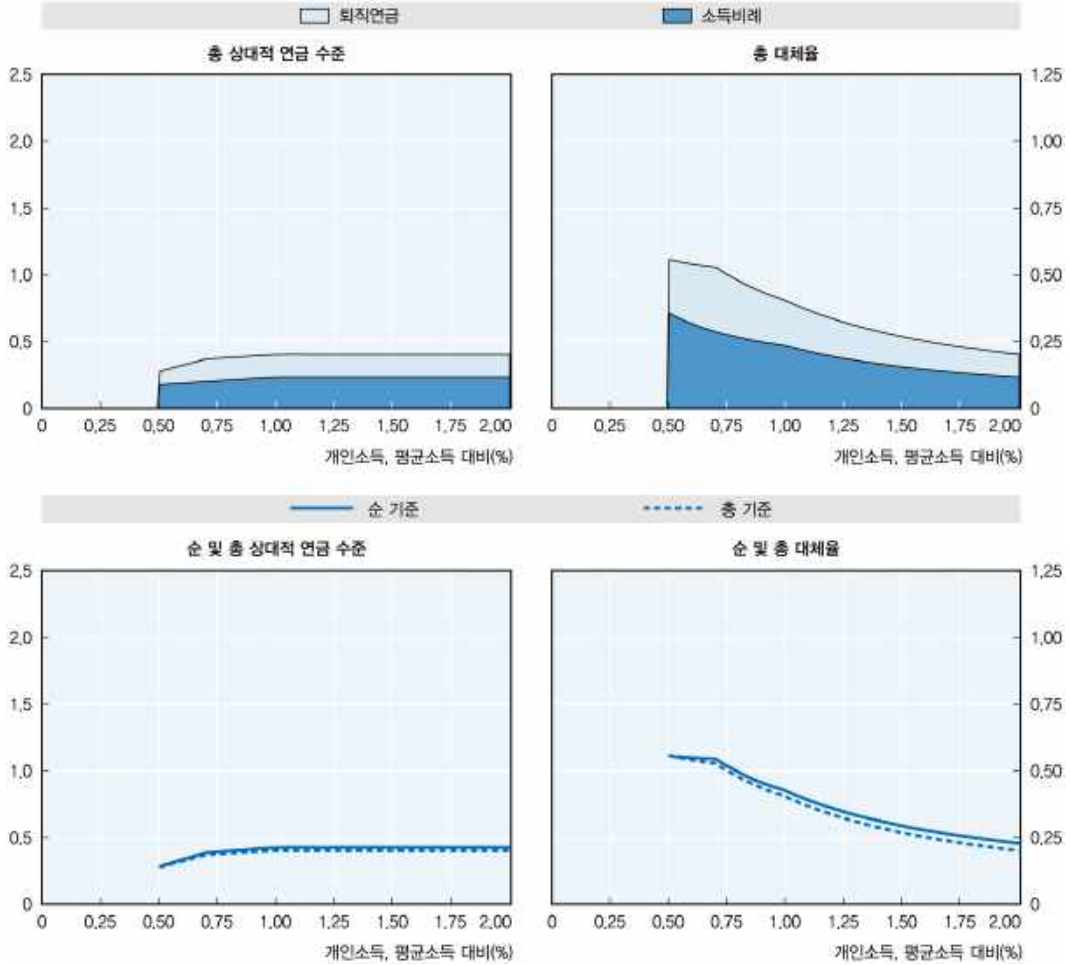
## 실업

실업급여는 사회보장기여금 대상이며, 본 급여는 공적연금 계산 시 소득으로 인정된다. 실업보험에서는 이전 소득의 80%를 지급한다. 피부양 자녀가 없고 140프랑을 초과하는 일 수당을 수급하거나 장애가 없는 경우 가입임금(insured salary)의 70%를 수급한다. 실업보험기간은 90일에서 640일까지 다양하다. 사회부조를 받는 개인은 기여금을 내지 않는다. 소득이 매우 낮은 경우 지방정부가 종종 최소 기여금을 납부한다.

일당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실업자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사망 및 장애위험에 대비해 강제적 기준의 보장을 계속해서 받는다. 그러나 노령연금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자는 노령연금 기여금을 납부할 수는 있다(근로자분과 고용주분 모두).

질병/사고로 인해 수급한 일별 수당은 마찬가지로 기여의 대상이 된다.

연금 모형화 결과: 스위스 2059년(2058년), 수급연령 65세(64세)



기준 시나리오: 입법 시나리오(선별적 연금의 50% 임금, 50% 물가 연동)

남성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27.9	37.5	40.2	40.2	40.2	40.2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31.7	43.5	46.9	46.9	46.9	46.9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55.7	50.0	40.2	26.8	20.1	13.4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61.4	57.1	46.9	31.5	24.2	16.9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0.7	9.5	7.7	5.1	3.8	2.6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8.5	7.7	6.2	4.2	3.1	2.1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여성의 경우 연금수급연령은 64세임.

**연금 모형화 결과: 스위스 2059년(2058년), 수급연령 65세(64세)(계속)**

대안적 시나리오: 최저 연금의 완전 임금 연동						
남성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28,4	40,9	49,9	53,4	53,4	53,4
(평균 총 소득 %)	28,2	40,4	49,1	52,6	52,6	52,6
순 상대적 연금 수준	32,4	47,7	57,8	62	62	62,0
(순 평균소득 %)	32,2	47,1	56,9	61,0	61,0	61,0
총 대체율	56,9	54,5	49,9	35,6	26,7	17,8
(개인 총 소득 %)	56,5	53,8	49,1	35,1	26,3	17,5
순 대체율	62,8	62,6	57,8	41,7	32	22,3
(개인 순 소득 %)	62,3	61,7	56,9	41,0	31,5	22,0
총 연금자산	13,7	14,2	13,4	9,4	7,1	4,7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5,4	15,7	14,8	10,4	7,8	5,2
순 연금자산	10,9	11,5	10,8	7,6	5,7	3,8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2,2	12,8	11,9	8,4	6,3	4,2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여성의 경우 연금수급연령은 64세임.

<http://dx.doi.org/10.1787/888933301681>

## 터키

### 터키: 2014년 연금제도

연금체계는 소득비례공적연금, 소득 조사적 안전망 및 정액보충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 핵심 지표: 터키

		터키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터키리라(TRY)	28,370	93,305
	미달러(USD)	12,164	40,007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	7.5	7.9
기대여명	출생 시	75.1	80.0
	65세 시점	16.8	19.3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대비 %	7.7	16.2

<http://dx.doi.org/10.1787/888933302119>

## 수급요건

현재 연금수급연령은 기여일이 7,200일 이상인 경우 남성은 60세, 여성은 58세이다. 연금수급연령은 점차 연장되어, 남성은 2036-44년에, 여성은 2036-48년에 65세가 될 것이다. 1999년 9월에서 2008년 10월 사이 연금제도 신규 가입자는 기여기간이 7,000일 이상이면 남성 60세, 여성 58세에 수급이 가능하다. 또는, 기여일이 4,500일이며 가입기간이 25년이면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2008년 10월 이후 기여기간이 최소 5,400일이면 65세에 수급이 가능하다. 자산조사적 연금 급여는 다른 사회보장 수급권이 없고, 장애가 있거나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지급이 가능하다.

## 급여 산정

### 소득비례연금

#### 1999년 9월에서 2008년 10월 사이

제도상의 연금은 생애평균소득에 근거하며 실질 GDP 성장과 CPI 증감에 따라 재평가된다 $[(1 + GDP) \times (1 + CPI)]$ . 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비선형(non-linear) 산식에 따라 산정된다. 첫 10년은 임금의 35%의 연금을 취득하며 이후 15년간은 연 2%, 그 이후에는 연 1.5%씩 추가된다.

#### 2008년 10월 이후

신제도상의 연금은 생애평균소득에 근거하며 실질 GDP 성장과 CPI 증감에 따라 재평가된다 $[(1 + CPI + 30\% GDP)]$ . 지급률(accrual rate)은 가입기간 1년당 2%이며 연금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소득이 하한선을 초과하면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하한선은 2014년 상반기에는 1,071.0리라였고 하반기에는 1,134.0리라였다.

연금대상소득 상한선이 있으며 2014년 상반기에는 6,961.5리라, 하반기에는 7,371.1리라였다.

1999년에 제정된 법에 따르면 연금이 매월 소비자물가지수에 연계된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연금 지급액 연계는 예산법/기타법 또는 내각위원회(Board of Cabinet)에 의해 연 1회 또는 2회 결정된다. 개혁으로 인해 연금은 이전 6개월간의 소비자물가지수에 연 2회, 즉 1월과 7월에 연계된다. 연금은 2014년 상반기에 3.27% 증가했고 2014년 하반기에 5.70% 증가했다(이 규칙은 공무원과 서비스 부문

에서 이행되지 않는데, 공무원의 재정 및 사회적 권리에 관한 단체협약 때문임). 2014년에 공무원의 연금은 175리라 증가했다.

### 최저연금

최저연금 수준은 근로자의 경우 2014년 상반기에 952.7리라, 하반기에 1,007.0리라, 자영업자의 경우 상반기에 671.5리라, 하반기에 709.85리라, 공무원의 경우 2014년 전체적으로 1,261.1리라였다. 명시된 이들 수치는 연금의 최저수준이다.

가입자에게 피부양 배우자나 자녀가 있고 소득은 하한선 수준으로 감안하면, 대략 연금액은 신청 년도의 1월에 결정된 평균 월 소득의 35% 또는 40%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최저연금은 가입자마다 다르다. 이 규정을 제외하면 명시된 최저연금은 없다.

### 선별적 연금

자산조사적 연금은 분기별로 지급된다. 2014년에 연금은 월 141.56리라였다.

## 경력차이

### 조기수급

특정 산업(광산업 등)의 근로자 및 장애인은 조기수급이 가능하나 그 외 근로자들은 연금수급연령 이전에 연금을 수급할 수 없다.

### 수급연기

연금 수급을 정상 연금수급연령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공무원의 경우 법정 은퇴연령은 65세이며 특정 집단에 대한 일부 예외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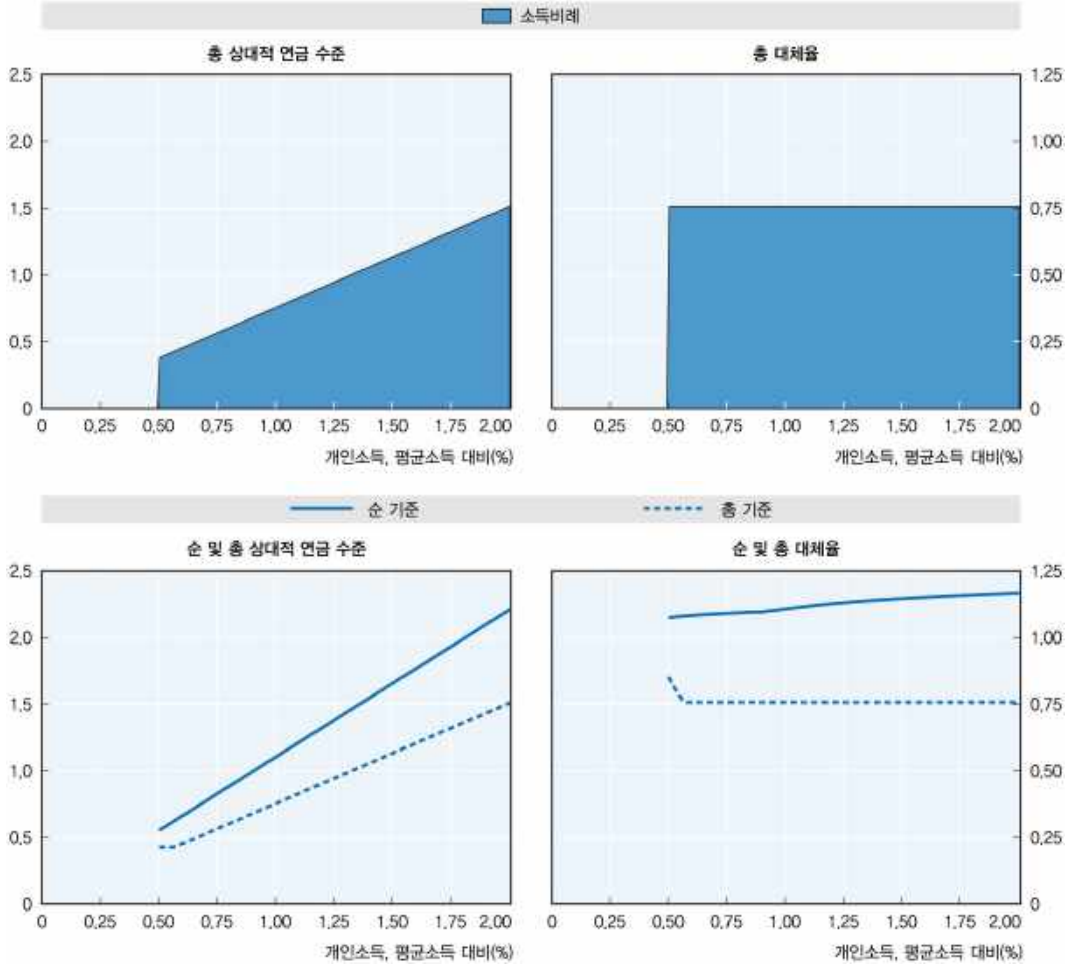
### 육아

가입자가 기여금을 납부하는 경우, 자녀 한 명당 2년씩 최대 3명까지 육아기간이 반영된다.

### 실업

실업기간에 대한 크레딧은 없다.

연금 모형화 결과: 터키 2059년, 수급연령 65세



기준 시나리오: 입법 시나리오(최저 연금 급여의 물가 연동)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37.9	56.8	75.7	113.6	151.4	227.1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52.4	78.6	104.8	157.2	209.6	314.5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75.7	75.7	75.7	75.7	75.7	75.7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98.0	102.5	104.8	109.9	113	115.1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2.3	12.3	12.3	12.3	12.3	12.3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4.3	14.3	14.3	14.3	14.3	14.3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연금 모형화 결과: 터키 2059년, 수급연령 65세(계속)**

대안적 시나리오: 최저 연금 급여의 임금 연동						
남성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42.6	56.8	75.7	113.6	151.4	227.1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59.0	78.6	104.8	157.2	209.6	314.5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85.2	75.7	75.7	75.7	75.7	75.7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110.3	102.5	104.8	109.9	113	115.1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3.9	12.3	12.3	12.3	12.3	12.3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6.1	14.3	14.3	14.3	14.3	14.3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3.9	12.3	12.3	12.3	12.3	12.3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6.1	14.3	14.3	14.3	14.3	14.3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http://dx.doi.org/10.1787/888933301693>

## 영국

### 영국: 2014년 연금제도

2층(tier) 공적제도(정액기초연금과 소득 비례 부가연금)를 가지고 있으며 대규모의 자발적 사적연금 부문으로 보완된다. 공적 제도는 현재 정액기초연금으로 개혁되고 있는 중이다. 소득연계 비과세 급여(Pension Credit)는 극빈층 연금 수급자에 대한 추가적 지출을 목표로 한다.

### 핵심 지표: 영국

		영국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파운드(GBP)	35,633	25,668
	미달러(USD)	55,539	40,007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	5.6	7.9
기대여명	출생 시	80.4	80.0
	65세 시점	19.4	19.3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대비 %	18.1	16.2

<http://dx.doi.org/10.1787/888933302120>

## 수급요건

국가연금 수급연령은 현재 남성은 65세, 여성은 62.5세이다. 여성의 연금수급연령은 점차 상향 조정되어 2018년 11월에 65세가 될 전망이다. 국가연금 수급연령을 2020년 10월까지 66세, 2026년에서 2028년 사이에 67세로 연장하기로 입법화되었다. 정부는 또한 기대수명의 변화를 바탕으로 이후에 국가연금 수급연령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예전 제도 하에서, 국가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은 잠재적 근로기간 중 30년간 국가보험 기여금을 (1) 납부하거나 (2) 납부했던 것으로 취급되거나 (3) 납부한 것에 상응하는 크레딧을 취득함으로써 전액기초국가연금 수급자격을 얻는다. 30년 미만인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감액된 기초국가연금이 지급되며, 최소 수급요건기간은 기여 연수 또는 크레딧 1년이다. 2016년 4월 6일부터 국가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새로운 국가연금 전액을 받으려면 35년간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며 최소 수급요건기간은 10년이 될 것이다.

## 급여 산정

### 기초연금

개인에 대한 전액기초국가연금은 2014년/2015년에 주당 113.10파운드였다. 발표된 정책의 목적은 새로운 국가연금의 만액(full pension)을 현재의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 수준보다 높이려는 것이다.

### 소득비례연금

기초국가연금 외에도, 현재 제도에서 사람들은 추가적인 소득비례 국가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근로 이력에 따라 주당 1파운드 미만에서 거의 200파운드까지 다양하다. 이 소득비례제도는 새로운 국가연금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 2016년 4월부터 국가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을 것이다.

### 적용제외(Contracting out)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서는 국가연금의 추가 연금요소에 대해 “적용제외”를 선택할 수 있었다. 새로운 국가연금의 채택으로 “적용제외” 옵션이 폐지될 것이다.

## 직장 사적연금제도

2012년 10월에 정부는 직장연금제도의 자동가입을 도입했다. 2018년 2월에 완료가 되면, 모든 고용주는 2014년/2015년 기준 10,000파운드 이상 소득이 있는 22세부터 국가연금 수급연령까지의 모든 근로자들을 직장 연금제도에 가입시켜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갖게 된다. 최저 기여는 2018년 10월 까지 2014년/2015년 기준 5,772파운드에서 41,865파운드에 이르는 법정 소득 범위(earnings band)의 8%까지 구축된다.

자동가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는 신탁기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인 국민고용저축신탁(NEST)을 설립했다. NEST는 고용주가 자동가입시킨 근로자를 받아들이고 시장의 서비스를 받기 힘든 중·저소득 근로자와 전환기의 근로자, 영세 사업주에게 저비용의 질 좋은 연금을 제공할 공공서비스 의무가 있다.

## 선별적 연금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은 저소득층을 위한 비과세(tax free) 주간 급여이며 모든 연금 수급자에게 특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한다. 연금 크레딧은 소득비례급여이며 국가보험 기여금에 기반하지 않는다. 연금 크레딧에는 보장 크레딧과 저축 크레딧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보장 크레딧은 적격 연령(다음 내용 참조)에 도달했고 소득이 표준 최저 보장금액 미만인 사람들에게 재정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소득의 최저수준을 보장한다. 2014/2015년에 개인은 148.35파운드, 부부는 226.50파운드였다(이 금액은 중증장애, 돌봄 책임 또는 특정 주택비용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더 높아질 수 있다).

저축 크레딧은 비교적 소액의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수급하는 추가 금액이다. 이것은 유효 급여 지급률을 예전의 100%에서 40%로 낮추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소득(보장 크레딧 제외)이 보장 크레딧 최저 보장수준 미만이고, 2014/2015년에 개인 기준 120.35파운드 및 부부 기준 192.00파운드인 저축 크레딧 기준선을 초과하는 사람들은 소득과 기준선 간 차액의 60%를 수급하며 상한선은 개인 16.80파운드, 부부 20.70파운드이다. 소득이 보장 크레딧의 최저 보장액을 초과하는 사람들(즉, 보장 크레딧 수급 자격이 없는 이들)의 경우, 저축 크레딧 최고액은 보장 수준을 초과한 소득분의 40%만큼 감소한다.

연금 크레딧의 적격 연령은 여성의 국가연금 수급연령 상승과 함께 65세로 점차 연장되고 있으며, 국가연금 수급연령이 남성과 여성 모두 65세 이상으로 연장됨에 따라 더 높아질 것이다. 저축 크레딧은 2016년 4월 6일 이후에 국가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는 사람에게 지급되지 않을 것이다(즉, 새로운 국가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인구집단).

## 경력차이

### 조기수급

국가연금의 조기수급은 가능하지 않다. 자발적 연금 급여는 제도에 의해 허용된 연령부터 청구 가능하다.

## 수급연기

국가연금 추가 증액을 위한 수급연기는 항상 가능했다. 이러한 추가 국가연금은 해당 수급자가 최초로 또는 다시 연금을 수급할 때 정상 국가연금 외에 추가로 지급된다.

2005년 4월 6일까지는 국가연금 수급을 연기하면 1년당 약 7.5%(7주당 1%)씩 추가 연금이 발생했다. 2005년 4월 6일부터 증액률은 1년당 약 10.4%(5주당 1%)로 증가했다.

확보되는 추가 금액은 국가연금을 얼마 동안 연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의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더 높은 주당 종신 국가연금(국가연금을 5주 이상 연기하는 경우)
- 일회성 과세 대상 일시불 지급(국가연금이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기된 경우). 일시불 금액은 연기된 기간 중 받지 못한 국가연금액에 (영국은행) 기준금리보다 최소 2%p 높은 보장금리를 더한 값이다. 이 옵션은 국가연금을 수급할 때 선택할 수 있다.
- 2016년 4월부터 국가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사람은 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더 높은 주당 종신 국가연금을 받기 위해서 국가연금은 9주 이상 연기되어야 할 것이다. 수급연기에 대해 받는 국가연금 추가액의 요율은 2016년 4월 이전보다 낮아질 것이다.

## 육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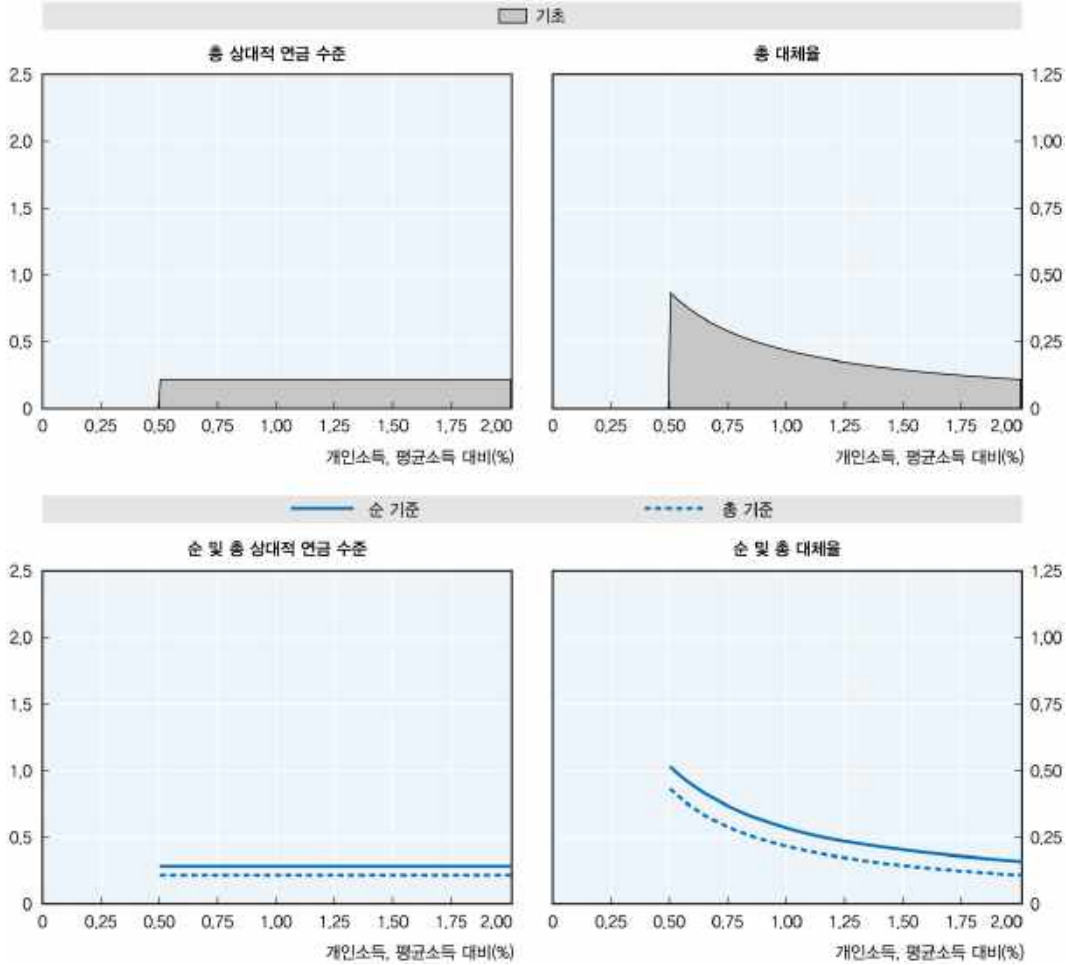
공적연금제도의 2층(기초공적연금과 제2국가연금) 모두가 육아기간을 보호하고 있다. 유급 근로를 중단한 사람과 근로를 하고 있으나 소득이 소득 하한선(LEL) 미만이어서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들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2010년 4월 6일 이전에는 기초연금의 경우 HRP(가족의무보호제)에서 보호를 제공했고 16세 미만 자녀 최소 한 명에 대해 육아수당이 지급되는 년수에 대해 보장되었다. HRP는 기초연금 전액 수급에 필요한 년수를 감소시켜 HRP가 충분한 경우, 근로기간은 20년만 필요하다(국가보험기여금의 크레딧 기간 포함). 제2국가연금의 경우, 6세 미만 자녀에 대해 육아수당이 지급되는 기간이 크레딧으로 적립된다. 양육 부모는 저소득 기준선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HRP는 부모와 돌봄자(carers)에 대한 주당 국가보험 크레딧 제도로 대체되고 있다. 2010년 이후 국가연금 수급연령을 달성한 이들은 12세 미만 자녀에 대해 양육수당을 받는 경우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 크레딧은 기초연금과 제2국가연금 수급액 산정 시 반영될 수 있다. 2010년 이전에 취득한 HRP 년수는 국가보험 크레딧(National Insurance Credit)의 수급 기간으로 전환되었다.

## 실업

보험금이나 부조급여를 수급하는 실업기간은 기초연금을 위한 국가보험 기여 기록에 크레딧이 반영된다. 제2국가연금의 경우 이들 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가보험 크레딧은 없다.

연금 모형화 결과: 영국 2022년, 수급연령 68세



기본 시나리오: 입법 시나리오(기초 연금 급여의 임금 연동)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21.6	21.6	21.6	21.6	21.6	21.6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28.5	28.5	28.5	28.5	28.5	28.5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43.3	28.9	21.6	14.4	10.8	7.2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51.7	36.7	28.5	20.3	16.0	11.4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7.1	4.7	3.6	2.4	1.8	1.2
순 연금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7.1	4.7	3.6	2.4	1.8	1.2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http://dx.doi.org/10.1787/888933301701>

## 미국

### 미국: 2014년 연금제도

사회보장으로 알려져 있는 공적연금(누진적 급여산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저소득 연금 수급자에게는 자산조사적 보충급여가 제공된다.

### 핵심 지표: 미국

		미국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미달러(USD)	50,075	40,007
	미달러(USD)	50,075	40,007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	6.7	7.9
기대여명	출생 시	78.9	80.0
	65세 시점	19.3	19.3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대비 %	14.7	16.2

<http://dx.doi.org/10.1787/888933302132>

## 수급요건

연금수급연령(정상은퇴연령)은 2014년에 66세였으며 2022년까지 67세로 연장될 전망이다. 연금 급여에 대한 자격요건은 기여 년수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0년의 기여 년수가 필요하다.

## 급여 산정

### 소득비례

소득비례연금 급여의 산식은 누진적이다. 해당 소득 중 월 소득의 첫 816달러는 90%의 대체율이 적용된다. 월 816달러에서 4,917달러까지의 소득 범위는 대체율이 32%이다. 이 기준선은 2012년 국가 평균임금지수의 각각 22%와 133%에 해당한다. 15%의 대체율은 4,917달러 기준선에서 소득 상한선까지 적용된다. 50%의 피부양자 추가연금이 기혼 부부에게 제공되는데 부소득자(secondary earner)의 수급액이 더 적고 자격요건을 갖춘 피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전 소득은 수급자가 60세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국가의 평균소득 증가에 맞춰 재평가된다. 60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소득 조정이 없다. 기초급여는 62세에 지급하기 위해 산정된다. 그 이후에는 기초급여가 물가 인상에 따라 조정된다. 급여는 재평가 후, 필요한 경우 소득이 전무한 기간부터 총 35년까지를 포함하여 소득 최고 35년에 대한 생애 평균소득에 근거한다.

기여금과 급여에 대한 소득 상한선은 연 117,000달러이며 2012년 국가 평균임금지수의 264%에 해당된다. 이 지수는 국가차원의 임금 증가율을 따른다.

연금 지급액은 물가상승에 맞춰 조정된다.

### 선별적 연금

보충보장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이라고 하는 노인(65세 이상)에 대한 자산조사적 급여가 존재한다. 수급 자격을 갖춘 배우자가 없는 65세 이상 개인은 자산 및 기타 소득에 따라 연 8,652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급여액은 12,984달러(개인보다 50% 높음)이다. 이들 급여액은 2014년 평균소득의 약 19%와 29%에 각각 해당된다. 최대 급여액은 물가상승에 연동된다.

자산조사는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적격 배우자(eligible spouse)가 없는 개인은 자산 2천달러까지, 부부는 3천달러까지로 제한되며 개인 소유물, 주택, 자동차, 장례보험, 생명보험(마지막 2개는 가액

최대 1,500달러까지)은 제외된다. 급여 산정에 있어 대부분의 소득 유형에 대해 소규모(월 20달러)의 “공제(disregard)”가 적용된다. 월 65달러의 소득과 나머지 소득의 절반에 대해 또 다른 공제(disregard)가 제공된다. 모든 해당 공제가 적용된 후 급여액은 이 수준을 초과하는 총 소득에 대해 1:1로 감액된다.

연방에서 결정한 최저연금을 각 주와 DC(District of Columbia)에서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이 복잡해진다. 6개 주에서는 연방 최저연금만 지급하는 반면 32개 주는 자체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6개 주에서는 연방 사회보장국(SSA)에서 운영하는 보충연금을 제공하며 7개 주에서는 주와 연방 사회보장국 모두에서 운영하는 보충연금을 제공한다. 이들 13개 주에서 사회보장국이 운영하는 평균 보충 지급액은 적격 배우자가 없는 연금 수급자의 경우 최대 연방 급여의 18%, 부부 둘 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30%이다. 모형에서는 이들 추가 지급액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 자발적 사적연금

부가적인 자발적 연금이 존재하며 확정기여형(DC)인 것으로 가정했다. 기여율은 9%로 가정했다.

## 경력차이

### 조기수급

조기수급은 62세부터 가능하며 계리적 감액 대상이 된다. 정상 연령 이전의 조기수급 기간 중 급여액은 연 6.67%씩 감액된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후에는 감액률이 5%로 떨어진다. 이는 65세 이상인 정상은퇴연령(NRA)의 수급자에게 적용된다.

### 수급연기

연금의 최초 수급은 정상은퇴연령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가능하고, 크레딧은 최대 70세까지 연기된 경우만 발생한다. 2012년 및 그 이후 62세에 도달한 경우 계리적 증액은 연기한 기간에 대해 연 8%이다.

근로와 연금 수급을 병행할 수도 있으며 소득조사의 대상이 된다. 정상은퇴연령에 도달하는 년도 이전에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연금은 15,480달러를 초과하는 소득분의 50%만큼 감액된다. 정상은퇴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의 경우 소득에 근거한 급여액 감액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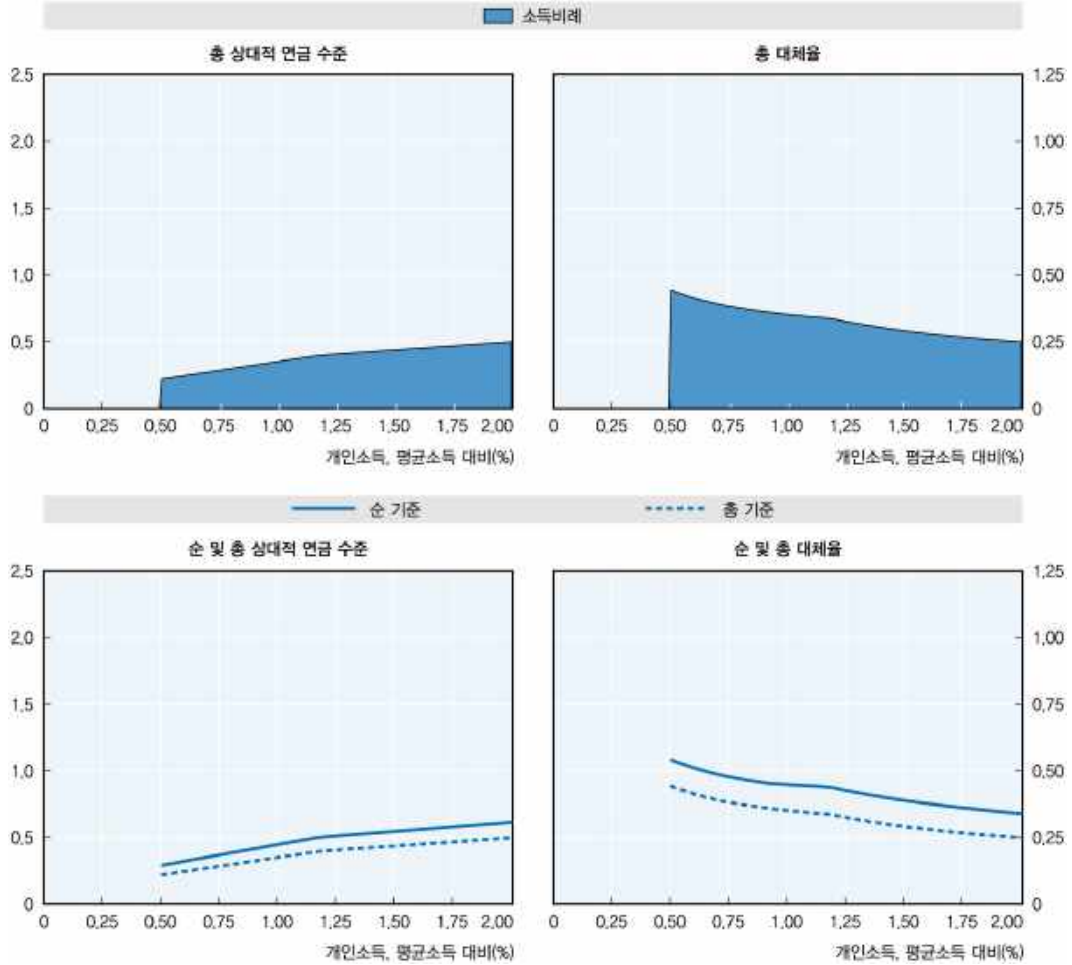
### 육아

육아크레딧에 대한 조항은 없다(젊은 나이에 장애인이 된 근로자의 경우 급여 산정 시 육아기간을 배제하므로 예외).

### 실업

실업크레딧에 대한 조항은 없다. 그러나 급여 산정 시 소득 최고 35년을 고려하므로 실업기간은 급여 목적을 위한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장애기간은 고려 대상이 되는 소득기간 35년에서 제외된다.

연금 모형화 결과: 미국 2061년, 수급연령 67세



기준 시나리오: 입법 시나리오(선별적 연금 급여의 물가 연동)

남성 여성(남성과 다른 경우)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3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22.2	28.7	35.2	43.7	49.8	53.9
순 상대적 연금 수준 (순 평균소득 %)	29.3	37.0	44.8	54.7	61.6	66.2
총 대체율 (개인 총 소득 %)	44.4	38.2	35.2	29.1	24.9	18.0
순 대체율 (개인 순 소득 %)	54.3	47.8	44.8	38.9	34.0	25.1
총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7.2	6.2	5.7	4.7	4.0	2.9
순 연금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7.1	6.0	5.5	4.4	3.7	2.7

가정: 실질수익률 3%, 실질소득성장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 모든 제도는 입법화된 대로 모형화되고 연동됨. 해당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적용됨. DC 전환율은 85%임. 노동시장 진입은 2014년에 20세에 발생함. 최신 세제는 2013년임.

<http://dx.doi.org/10.1787/888933301712>



# 경제협력개발기구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세계화에 따른 경제, 사회,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함께 모여 노력하는 포럼이다. OECD는 기업 지배구조, 정보경제, 인구 고령화와 같은 새로운 변화와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를 이해하고 돕는데 앞장서고 있다. OECD는 각국 정부가 각자의 정책경험을 비교하고 공통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모범사례를 확인하고 국내외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이다. 유럽 위원회도 OECD의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OECD 출판물은 회원국이 동의한 협약, 지침, 기준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적 사안에 관하여 수집된 통계와 연구 결과를 널리 전파한다.



## 한 눈에 보는 연금 2015

OECD 회원국과 G20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제도

발 행 일 : 2017년 4월

원        저 : OECD

번역·발행 :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사회정책본부)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5층

Tel. 02 3702 7145 Fax. 02 3210 1313

[www.oecdkorea.org](http://www.oecdkorea.org)

인        쇄 : 월드프린테크





# 한 눈에 보는 연금 2015

OECD 회원국과 G20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제도

Pensions at a Glance 2015

OECD AND G20 INDICATORS

## 목차

- 제 1장 최근의 연금개혁 동향
- 제 2장 1층 연금제도의 역할
- 제 3장 불완전 직업경력이 연금 수급액에 미치는 영향
- 제 4장 모형 파라미터에 대한 소득대체율 민감도
- 제 5장 연금제도의 설계
- 제 6장 연금 수급액
- 제 7장 인구 및 경제적 측면
- 제 8장 노후소득과 노인빈곤
- 제 9장 연금제도의 재정
- 제10장 사적연금과 공적연금 적립금
- 제11장 한 눈에 보는 연금 2015: 국가별 현황

본 출판물의 원본은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영문 및 불문으로 발간되었습니다.

*Pensions at a Glance 2015: OECD and G20 indicators/ Panorama des pensions 2015 : Les indicateurs de l'OCDE et du G20*  
© 2015,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Paris.

본 번역물은 OECD와의 합의를 거쳐 발간한 것으로 OECD의 공식 번역물은 아닙니다.

영문본: ISBN: 9789264240636 / DOI: 10.1787 / pension\_glance-2015-en

불문본: ISBN: 9789264249318 / DOI: 10.1787 / pension\_glance-2015-fr

[www.oecdbookshop.org](http://www.oecdbookshop.org) - OECD 온라인 서점

[www.oecd-ilibrary.org](http://www.oecd-ilibrary.org) - OECD 전자도서관

[www.oecd.org/oecddirect](http://www.oecd.org/oecddirect) - OECD 알림 서비스

비매품



ISBN 979-11-86043-080